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5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자 서문

이 책에서 번역하여 소개하는 자료는 원래『清季中日韓關係史料』라는 제목으로 편찬된 사료집의 일부다.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사료집은 타이완(臺灣)의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당안관(檔案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청말(淸末)의 외교 관계 문서(중국에서는 이러한 기록 문서를 보통 '檔案'이라고 부른다) 가운데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외교 관계에 관련된 사료를 주제별로 골라 뽑아서 출판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864년부터 1912년까지 청말의 외교를 담당한 부서인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과 외무부(外務部. 1901년 이후), 그리고 중화민국 시기의 외교부(外交部. 1912년 이후) 문서 가운데, 특히 조선·대한제국과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선별하여 편찬한 것으로, 총 11권 7,300여 쪽(4,300건. 색인 1권 포함)의 방대한 분량이다.

따라서 청말 또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중국과 한국 사이에 주고받은 외교 관계 문서(이것은 따로 朝鮮檔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대부분 모두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중 관계나 동아시아사의 연구에서 이 사료집이 가지는 위치는 그야말로 독보적인 셈이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집의 출판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보충하는 자료는 몰라도 이 사료집을 대신할 만한 정도의 비중을 갖춘 것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미 출간한 지 40년이 되었지만, 이 사료집은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의 위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료집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로『총리각국사무아문 당안』에 포함된 자료를 다음의 여덟 가지의 주제로 분류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朝·淸 通商 및 외교 교섭
(2) 朝·淸 국경 교섭
(3) 청일전쟁 이전 조선과 각국의 외교 교섭
(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5) 청일전쟁
(6) 청·일 통상 및 외교 교섭
(7) 러·일전쟁과 청의 입장
(8) 일본의 중국 동북 지역 침략

이 주제의 목록을 일별하면 알 수 있듯이, 여기에는 근대 동아시아 정세 변화와 관련된 모든 중요 사안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료집은 1972년에 처음 출간되자마자 곧 근대 한국과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또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되었다. 특히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 당안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리각국사무아문 당안』 가운데 「조선당(朝鮮檔)」 부분은 거의 모두 여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료집의 출판은 근대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의 진전과 활성화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오늘날에는 인터넷상으로도 이 「조선당」이 모두 공개되어 있다). 또한 이 사료집은 목차가 일자별로 분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별로도 분류되어 있어, 그간 편집된 편년체 위주의 자료집에 비하여 검색이 용이하므로 연구자에게 더욱 유용한 자료로서의 기능과 장점을 갖추고 있다. 또한 근대 시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외교문서 관련 자료집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사료의 약 86%(3,600건)가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라는 점도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료집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출간은 특히 다음의 두 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리라 예상된다.

첫째,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 분야다. 조선은 1899년 한청조약(韓淸條約)이 체결되기까지 청과 불평등한 책봉·조공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구 세력의 진출과 더불어 '만국공법(萬國公法)'이 주지하는 조약체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청 자신도 여기에 편입되었다), 청은 기존의 불간섭 원칙을 버리고 적극적인 간섭주의를 채택하면서 기존 조공 체체 내의 '속방(屬邦)'이었던 조선을 근대적 외교 관계 속의 '속국(屬國)'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특히 외교 부분에서 두드러졌다. 1876년 일본과 조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에서 체결한 구미 각국과의 조약은 대부분이 청의 종용 혹은 중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청과의 협의하에 외교권을 행사했고, 다양한 외교 활동도 대부분 청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조선의 외교 활동 및 이에 대한 청의 대응, 청의 요구와 조선의 대응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사료집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1880년대 이후가 되면 청은 외교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직접 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까지 개입하는 적극적인 간섭주의로 나섰으므로, 이 사료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마찬가지로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에서 최근 공개한 「주한사관당안(駐韓使館檔案)」도 이 사료집을 보완하는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는 점을 알려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사료집은 근대 조선(그리고 대한제국)과 청의 변경 및 국경 문제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활용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근대 시기는 주권이라는 개념과 함께 근대적 영토의 관념이 형성되는 시기다. 조선의 영토는 북으로 청의 봉금(封禁) 지역과 맞닿아 있었다. 봉금 지역에 대한 청의 관리는 아편전쟁 이후 급격히 무너져갔고, 이에 따라 중국 본토의 한족(漢族)뿐만 아니라, 조선인까지 봉금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활발한 이주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 전통적 무주공간(無住空間)의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점은 조선과 청 양국의 최초 경계 설정 과정 국경 관념의 형성, 그리고 양국의 분쟁이 낳은 국경 조사 및 회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 분야에 관한 이미 상당한 분양의 자료집과 연구서를 출간하였지만, 이 사료집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수많은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연구의 진전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료집이 가지고 있는 질적·양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까지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해 왔다. 우선은 방대한 분량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외교 문서가 공식 형식에 맞추어 매우 미묘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읽어 낼 수 있는 독법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법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문, 그것도 조선의 한문과는 차이가 있는 19세기 청대(淸代)의 한문을 미묘한 뉘앙스까지 파악하면서 분명하게 독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책이 그 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관련 연구자들에게는 자료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대 공문서와 외교문서의 형식[程式]이라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사료집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포함된 자료의 대부분은 청대 공문서와 외교 문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주고받은 것들이다. 청대 공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문서 작성 이전에 수신한 문서를 새로운 문서의 본문 속에서 거의 그대로 또는 줄여서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문서의 주제가 간단한 경우라도 주고받은 정부 기관이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만약 해당 문서가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오르내리거나 회람될 경우, 문서 안에서 인용하는 화자(話者)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다. 각각의 화자들은 사건의 보고 및 처리 주체를 가리키며, 사건의 처리 시점도 아울러 여기에 반영된다. 따라서 상하 관계 또는 대등한 관계를 반영하는 화자의 구분은 공문서나 외교 문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당시 문서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자명한 사실이었겠지만, 오늘날의 한국의 독자에게 낯선 청대 관료 체계의 다양한 직급에 걸쳐 존재하는 화자의 위치와 상하 관계, 직무와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청대사나 외교사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 사료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문서는 화자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자의 편의를 위해 출판에 앞서 원 문서에 구두점을 찍는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누가 화자이며, 그의 발언이나 문서 인용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가리켜주는 부호는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서술한 어려움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화자의 정확한 위상을 구분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대 공문서의 작성 방식과 관련 용어들에 대한 숙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독해의 편의를 위해 형식이 복잡한 문건에 대해 먼저 구조 분석을 하여 가장 중요한 난제인 화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단락을 구분하여 보여주는 번역을 실시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사료 본문의 내용에 대해 보다 용이한 접근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능한 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을 추가하고자 하였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 때문에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전체 및 시기별 자료 분량은 다음 표와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분	기간	분량(쪽)	글자 수
고종 시기	1864.8 ~ 1897.8(33년)	5,042	2,541,000
대한제국 시기	1897.8 ~ 1910.8(13년)	2,094	1,055,000
총독부 시기	1910.8 ~ 1912.3(2년)	121	60,900
합계	1864 ~ 1912(48년)	7,257	3,656,900

이것은 한 쪽에 최대로 기입한 한문 글자 수를 20자(열)×18(행)×2(면)=720자로 파악하고, 한 쪽당 평균 여백을 30%로 잡아 720자-216자(여백)=504자 정도를 한 쪽 평균 글자 수로 추정한 것이다. 한문을 한글로 번역할 경우 한자 대 한글의 글자 수 분량 비율이 대략 1 : 3 정도가 되므로 번역본의 경우 원본 사료집보다 크게 분량이 늘어난다.

그리고 위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청계중일한관계사료』에서 다루는 시기는 1864년 8월부터 1912년까지로 약 48년에 이른다. 문서의 전체 분량은 7,257쪽(원 사료집)이며 글자 수는 약 365만 자이다. 이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약 18,250매에 해당하며, 한글로 번역했을 때 약 54,750매 정도의 분량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료를 번역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거대한 분량을 짧은 시간 내에 번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책은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번역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5』는 그러한 장기 번역 작업의 다섯 번째(2년 동안 중단되었다 다시 시작된 5년차) 성과다.

그리고 이상의 요건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진은 제4·5차 연도 번역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청계중일한관계사료』의 두 번째 주제 항목인 Ⅱ. 청일전쟁 이전 조선과 각국의 관계(甲午戰前韓與各國關係)는 총 여덟 가지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에 대한 중국의 권고(中國指導朝鮮與各國通商) 외에 2. 한·영관계(英韓關係), 3 한·불관계(法韓關係), 4. 한·일관계(日韓關係), 5. 한·러관계(俄韓關係), 6. 한·미관계(韓美關係), 7. 한·독관계(德韓關係), 8. 한·오스트리아관계(奧韓關係)이다.

하지만『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4·5로 출간될 4년차(2017년)·5년차(2018년) 작업에서는 번역의 분량 문제 때문에 먼저 1.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에 대한 중국의 권고(中國指導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鮮與各國通商) 부분 전체를 나누어 두 해에 걸쳐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목차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만, 여기서 1.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에 대한 중국의 권고(中國指導朝鮮與各國通商) 부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으로도 사실상 2년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또한 2016년에 이 번역 작업이 다시 중단되어 전체의 번역도 더 지체되었다).

그리고 사실 조선과 미국이 최초로 맺은 「조·미수호통상」 조약에 관련된 이 부분에 비하면, 한·영, 한·불, 한·미, 한·일, 한·러, 한·미, 한·독, 한·오스트리아 관계 부분은 그 분량도 훨씬 적고, 사실상 「조·미수호통상」을 바탕으로 조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중국과의 관련이나 중국의 개입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료적 중요성도 훨씬 줄어든다. 따라서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4·5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제6권의 발행 이후에는 전체 번역 계획을 다시 재조정하여 이 뒷부분에 대한 번역은 생략하고 임오군란, 갑신정변, 원세개의 조선 내 활동,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한청조약 등은 근대 한중 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 관련된 부분으로 번역 대상을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번역된, 그리고 이 책에 번역될 부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권]

I. 중국과 조선의 변경 방어와 국경 문제(中韓邊防界務)
1. 월경 벌목(越界伐木)
1) 조선 지방관의 벌목 청구(韓地方官請求伐木)
2) 조선 백성의 월경 벌목(韓民越界伐木)
2. 조선 백성의 월경(韓民越界)
1) 길림의 월경 조선 백성 송환(吉林遣回越界韓人)
2) 러시아인의 조선 백성 개간 유인(俄人招引韓人開墾)
3) 월경 조선 백성의 체포 및 저지(查拿及禁阻韓人越界)
4) 월경 조선 백성 송환을 위한 중국·러시아 교섭(中俄交涉逐回越界韓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2권]

3. 감계(勘界)
1) 감계에 관한 논의(商議勘界)
2) 변경 답사(履勘邊界)
4.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韓民越墾)
1) 조선 백성의 월경 개간과 쇄환(韓民越墾與刷還)
2) 간민 호적 편입과 개간지 측량(墾民編籍與丈量墾地)
3) 관청을 두어 다스리는 문제(設官撫治)
5. 일본인이 동북 지역을 여행하기 위한 통행증을 신청한 문제(日人請照遊歷東北)
6. 도문강 항행과 나루터 설치(圖們江航行及設渡)

[제3·4권]

II. 청일전쟁 이전 조선과 각국의 관계(甲午戰前韓與各國關係)
1.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에 대한 중국의 지도(中國指導朝鮮與各國通商)
1) 조선과 각국 사이의 조약 체결 및 통상 권도(勳導朝餘與各國立約通商)

[제5권]

2. 조선의 무비 강화 협조(協助朝鮮武備)
3. 조선의 사절 파견과 체제 문제(朝鮮遣使與體制問題)

[제6권]

3. 조선의 사절 파견과 체제 문제(朝鮮遣使與體制問題)
4. 조선 국왕의 중국 사절에 대한 궤송 금지(禁韓王饋送華使)
5. 기타(其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책의 발간은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및 근대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의도된 것이다. 단순한 한문 텍스트와 제공이 아니라 한글 번역 작업까지 수반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료집의 활용이 관련 분야의 연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이 작업을 맡은 연구진에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연구 작업은 필자 및 김두현·김창수 박사, 필자가 재직하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박사과정 조병식 군에 의한 공동 작업의 소산이다. 짧은 시간과 힘든 원문 입력의 수작업에도 기꺼이 여기에 참가해 준 김두현 교수, 김창수 박사, 조병식 군 그리고 원문 입력에 힘써 준 김경·장보 군 등에게 우선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러한 장기적 번역 작업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업을 맡아주신 동북아역사재단 김도형 이사장 및 최덕규 연구위원, 그리고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2월

연구책임자 김형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러두기

1. 이 책은『中國近代史資料彙編 淸季中日韓關係史料』(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編, 1972)의 세 번째 주제 항목인 '甲午戰前韓與各國關係'의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소항목 '協助朝鮮武備', '朝鮮遣使與體制問題', '禁韓王饋送華使', '其他'로 분류된 문서의 후반부 부분에 대한 표점과 번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건은 문서정보와 원문, 번역문의 순서에 입각하여 정리 및 번역되었다.
2. 각 문건의 문서번호는 '가-나-다-라(마, 바)'의 양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가'·'나'·'다'의 숫자는 原書의 주제 분류에 입각한 번호체계를 표현한 것이며, '라'는 각 분류체계 내에서의 문서의 수록 순서를 나타낸다. 괄호 안의 '마'는 原書에서 각 문건에 부여한 번호이며, '바'는 해당 문서가 수록된 쪽수를 가리킨다.
3. 각 문건의 문서정보에는 문서번호 다음으로 '사안'과 '첨부문서', '날짜', '발신', '수신' 등에 관한 정보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사안'은 原書의 '淸季中日韓關係史料分類目錄'에서 정리한 '事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문건의 핵심 요지를 정리하고 있다. '첨부문서'는 原書에 수록된 문건 안에 附件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事項'을 정리하였다. '날짜'는 해당 문건의 발신일/수신일(문서에 따라 다름)을 의미하며, 음력 날짜와 양력 날짜를 함께 표기하였다. '발신'과 '수신'은 각각 해당 문건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의미한다.
4. 본서의 표점과 번역은 문서 안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누구의 진술인지 밝히는 것에 유의하였는데, 이를 위하여『국역『同文彙考』疆界 史料』(배우성·구범진 역, 동북아역사재단, 2008)의 편집 양식을 활용하였다.
5. 원문 및 번역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 기본적인 부호만을 사용하여 표점을 하였다. 원본의 분명한 오류로 보이는 글자에 대해서는, '實據(→據實)'의 경우처럼 원문의 글자는 그대로 두고, 괄호 안에 화살표와 함께 바른 글자를 밝혀 두었다.
6. 번역문에서는 문장의 의미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괄호를 사용하여 접속사나 단어 등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명사들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간단한 설명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유사한 맥락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원문에서 '本部'·'本衙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번역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禮部'·'總理衙門' 등으로 풀어서 번역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 역자 서문 ·····3
- 일러두기 ·····11

Ⅱ. 청일전쟁 이전 조선과 각국의 관계(甲午戰前韓與各國關係)

2. 조선의 무비 강화 협조(協助朝鮮武備) ····· 23

(1) 문서번호 : 2-1-2-01(327, 394a-396b) ·····25
(2) 문서번호 : 2-1-2-02(339, 416a-421a) ·····31
(3) 문서번호 : 2-1-2-03(340, 421a-430a) ·····43
(4) 문서번호 : 2-1-2-04(352, 459b-460b) ·····61
(5) 문서번호 : 2-1-2-05(353, 461a-462a, 467b-472b, 475a-480a) ·····64
(6) 문서번호 : 2-1-2-06(355, 483a-490a) ·····66
(7) 문서번호 : 2-1-2-07(357, 491a, 493a-498a) ·····68
(8) 문서번호 : 2-1-2-08(359, 499a-500a) ·····7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문서번호 : 2-1-2-09(360, 500b - 503b) ·····73
(10) 문서번호 : 2-1-2-10(377, 525b) ·····79
(11) 문서번호 : 2-1-2-11(381, 536) ·····81
(12) 문서번호 : 2-1-2-12(385, 538b - 542b) ·····84
(13) 문서번호 : 2-1-2-13(386, 543a) ·····91
(14) 문서번호 : 2-1-2-14(589, 976a - 976b) ·····92
(15) 문서번호 : 2-1-2-15(628, 1047a - 1048a, 1049b - 1052a) ·····95
(16) 문서번호 : 2-1-2-16(639, 1062b - 1063a) ·····104
(17) 문서번호 : 2-1-2-17(662, 1088b - 1090b) ·····106
(18) 문서번호 : 2-1-2-18(665, 1094a) ·····111
(19) 문서번호 : 2-1-2-19(723, 1151) ·····113
(20) 문서번호 : 2-1-2-20(833, 1348) ·····115
(21) 문서번호 : 2-1-2-21(954, 1653a) ·····118
(22) 문서번호 : 2-1-2-22(1794, 3145b - 3149a) ·····120
(23) 문서번호 : 2-1-2-23(1802, 3160) ·····1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4) 문서번호 : 2-1-2-24(1818, 3187b - 3188a) ·····133
(25) 문서번호 : 2-1-2-25(1819, 3188b - 3189b) ·····136

3. 조선의 사절 파견과 체제 문제(朝鮮遣使與體制問題) 139

(26) 문서번호 : 2-1-3-01(705, 1137a) ·····141
(27) 문서번호 : 2-1-3-02(706, 1137b) ·····143
(28) 문서번호 : 2-1-3-03(709, 1139) ·····144
(29) 문서번호 : 2-1-3-04(710, 1140a) ·····146
(30) 문서번호 : 2-1-3-05(745, 1177b) ·····148
(31) 문서번호 : 2-1-3-06(746, 1178a) ·····150
(32) 문서번호 : 2-1-3-07(796, 1288a) ·····152
(33) 문서번호 : 2-1-3-08(798, 1311b - 1313a) ·····153
(34) 문서번호 : 2-1-3-09(801, 1317a) ·····158
(35) 문서번호 : 2-1-3-10(802, 1317b) ·····159
(36) 문서번호 : 2-1-3-11(829, 1342b) ·····16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7) 문서번호 : 2-1-3-12(963, 1666a) ·····162
(38) 문서번호 : 2-1-3-13(1006, 1853a) ·····164
(39) 문서번호 : 2-1-3-14(1007, 1853b) ·····165
(40) 문서번호 : 2-1-3-15(1013, 1861) ·····166
(41) 문서번호 : 2-1-3-16(1014, 1892a) ·····169
(42) 문서번호 : 2-1-3-17(1186, 2177a) ·····171
(43) 문서번호 : 2-1-3-18(1255, 2336a-2337a) ·····173
(44) 문서번호 : 2-1-3-19(1259, 2341) ·····177
(45) 문서번호 : 2-1-3-20(1260, 2342a) ·····180
(46) 문서번호 : 2-1-3-21(1261, 2342b) ·····182
(47) 문서번호 : 2-1-3-22(1262, 2342) ·····183
(48) 문서번호 : 2-1-3-24(1264, 2345b) ·····186
(49) 문서번호 : 2-1-3-25(1268, 2352a) ·····187
(50) 문서번호 : 2-1-3-26(1269, 2352b-2353b) ·····188
(51) 문서번호 : 2-1-3-27(1270, 2354) ·····192
(52) 문서번호 : 2-1-3-27(1271, 2355a-2361a) ·····19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3) 문서번호 : 2-1-3-28(1272, 2361b-2362b) ·····211
(54) 문서번호 : 2-1-3-29(1273, 2363) ·····215
(55) 문서번호 : 2-1-3-30(1274, 2364a-2365b) ·····218
(56) 문서번호 : 2-1-3-31(1275, 2366a) ·····222
(57) 문서번호 : 2-1-3-32(1276, 2366b) ·····224
(58) 문서번호 : 2-1-3-33(1277, 2367a) ·····226
(59) 문서번호 : 2-1-3-34(1279, 2368a-2369a) ·····227
(60) 문서번호 : 2-1-3-35(1282, 2370b-2371b) ·····231
(61) 문서번호 : 2-1-3-36(1283, 2372) ·····235
(62) 문서번호 : 2-1-3-37(1284, 2373a) ·····237
(63) 문서번호 : 2-1-3-38(1285, 2373b-2376a) ·····239
(64) 문서번호 : 2-1-3-39(1286, 2376b) ·····242
(65) 문서번호 : 2-1-3-40(1287, 2377) ·····244
(66) 문서번호 : 2-1-3-41(1288, 2378a) ·····246
(67) 문서번호 : 2-1-3-42(1289, 2378b) ·····24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8) 문서번호 : 2-1-3-43(1290, 2379a) ·····248
(69) 문서번호 : 2-1-3-44(1291, 2379b-2382a) ·····249
(70) 문서번호 : 2-1-3-45(1294, 2384a-2386a) ·····256
(71) 문서번호 : 2-1-3-46(1304, 2415b-2418a) ·····262
(72) 문서번호 : 2-1-3-47(1306, 2419b) ·····269
(73) 문서번호 : 2-1-3-48(1308, 2421a-2425a) ·····270
(74) 문서번호 : 2-1-3-49(1309, 2425b-2427b) ·····281
(75) 문서번호 : 2-1-3-50(1310, 2428a) ·····287
(76) 문서번호 : 2-1-3-51(1311, 2428b) ·····288
(77) 문서번호 : 2-1-3-52(1312, 2429a) ·····289
(78) 문서번호 : 2-1-3-53(1313, 2429b) ·····290
(79) 문서번호 : 2-1-3-54(1315, 2430b) ·····291
(80) 문서번호 : 2-1-3-55(1316, 2431a) ·····292
(81) 문서번호 : 2-1-3-56(1320, 2436a) ·····293
(82) 문서번호 : 2-1-3-57(1321, 2436b-2437b) ·····29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3) 문서번호 : 2-1-3-58(1323, 2438b) ·····296
(84) 문서번호 : 2-1-3-59(1324, 2439a-2440b) ·····297
(85) 문서번호 : 2-1-3-60(1325, 2441a-2444a) ·····303
(86) 문서번호 : 2-1-3-61(1326, 2444b-2449b) ·····313
(87) 문서번호 : 2-1-3-63(1335, 2468a-2469b) ·····326
(88) 문서번호 : 2-1-3-64(1336, 2470a) ·····332
(89) 문서번호 : 2-1-3-65(1337, 2470b) ·····333
(90) 문서번호 : 2-1-3-66(1338, 2471a) ·····334
(91) 문서번호 : 2-1-3-67(1339, 2471b) ·····336
(92) 문서번호 : 2-1-3-68(1341, 2473a) ·····338
(93) 문서번호 : 2-1-3-69(1342, 2473b) ·····339
(94) 문서번호 : 2-1-3-70(1343, 2474a-2475a) ·····340
(95) 문서번호 : 2-1-3-71(1344, 2475b) ·····345
(96) 문서번호 : 2-1-3-72(1345, 2476a-2476b) ·····34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7) 문서번호 : 2-1-3-73(1346, 2477a) ·····350
(98) 문서번호 : 2-1-3-74(1350, 2481b-2482a) ·····351
(99) 문서번호 : 2-1-3-75(1359, 2494a-2497a) ·····354
(100) 문서번호 : 2-1-3-76(1360, 2497b-2498a) ·····364
(101) 문서번호 : 2-1-3-77(1364, 2502a) ·····367
(102) 문서번호 : 2-1-3-78(1365, 2502b) ·····368
(103) 문서번호 : 2-1-3-79(1379, 2521b) ·····369
(104) 문서번호 : 2-1-3-80(1394, 2544a-2549a) ·····370
(105) 문서번호 : 2-1-3-81(1404, 2555b) ·····383
(106) 문서번호 : 2-1-3-82(1405, 2556a) ·····384
(107) 문서번호 : 2-1-3-83(1407, 2557a-2558b) ·····386
(108) 문서번호 : 2-1-3-84(1411, 2564a-2568b) ·····391
(109) 문서번호 : 2-1-3-85(1420, 2576a-2576b) ·····402
(110) 문서번호 : 2-1-3-86(1495, 2714b-2721a) ·····4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1) 문서번호 : 2-1-3-87(1501, 2729a) ·····422
(112) 문서번호 : 2-1-3-88(1504, 2731b-2733a) ·····423
(113) 문서번호 : 2-1-3-89(1509, 2744a-2745b) ·····429
(114) 문서번호 : 2-1-3-90(1556, 2814a-2815b) ·····435
(115) 문서번호 : 2-1-3-91(1561, 2823a-2825a) ·····440
(116) 문서번호 : 2-1-3-92(1597, 2877a) ·····447
(117) 문서번호 : 2-1-3-93(1633, 2922a-2923a) ·····449
(118) 문서번호 : 2-1-3-94(1634, 2923b-2925b) ·····454
(119) 문서번호 : 2-1-3-95(1635, 2926a) ·····460
(120) 문서번호 : 2-1-3-96(1642, 2930a-2930b) ·····462
(121) 문서번호 : 2-1-3-97(1646, 2937a) ·····464
(122) 문서번호 : 2-1-3-98(1880, 3300a) ·····467
(123) 문서번호 : 2-1-3-99(1890, 3309b) ·····468
(124) 문서번호 : 2-1-3-100(1893, 3311a) ·····47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조선 국왕의 중국 사신에 대한 궤송 금지
(禁韓王饋送華使) ·····473

(1) 문서번호 : 2-1-4-01(1573, 2841b) ·····475
(2) 문서번호 : 2-1-4-02(1574, 2842) ·····477
(3) 문서번호 : 2-1-4-03(1575, 2843a) ·····480
(4) 문서번호 : 2-1-4-04(1576, 2843b) ·····482
(5) 문서번호 : 2-1-4-05(1577, 2844a) ·····484
(6) 문서번호 : 2-1-4-06(1578, 2844b) ·····486
(7) 문서번호 : 2-1-4-07(1579, 2845b) ·····488
(8) 문서번호 : 2-1-4-08(1580, 2845b) ·····490
(9) 문서번호 : 2-1-4-09(1581, 2846a-2849b) ·····493
(10) 문서번호 : 2-1-4-10(1583, 2850b) ·····505
(11) 문서번호 : 2-1-4-11(1584, 2851a) ·····507
(12) 문서번호 : 2-1-4-12(1589, 2867a) ·····509
(13) 문서번호 : 2-1-4-13(1590, 2867b) ·····51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문서번호 : 2-1-4-14(1591, 2868a) ·····512
(15) 문서번호 : 2-1-4-15(1592, 2868b) ·····513
(16) 문서번호 : 2-1-4-16(1593, 2869a-2871b) ·····514
(17) 문서번호 : 2-1-4-17(1598, 2877b-2878a) ·····521
(18) 문서번호 : 2-1-4-18(1602, 2882b) ·····524

5. 기타(其他) ·····527

(1) 문서번호 : 2-1-5-01(51, 60b-62a) ·····529
(2) 문서번호 : 2-1-5-02(90, 107b-109b) ·····535
(3) 문서번호 : 2-1-5-03(91, 110) ·····544
(4) 문서번호 : 2-1-5-04(274, 332a) ·····547
(5) 문서번호 : 2-1-5-05(275, 332b) ·····548
(6) 문서번호 : 2-1-5-06(276, 332b) ·····549
(7) 문서번호 : 2-1-5-07(1188, 2178a-2179a) ·····551

• 찾아보기 ·····55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조선의 무비 강화 협조 (協助朝鮮武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의 무비 강화 협조 (協助朝鮮武備)

(1) 문서번호 : 2-1-2-01 (327, 394a-396b)

사안 : 조선은 서양과의 통상을 굳게 거부하지만, 따로 훈련 인원을 天津에 보내 무기와 군사 학습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뜻을 갖고 있습니다(朝鮮堅不欲與西洋通商, 另有練員請准來津學習軍器, 武備之意).

첨부문서 : 1.「조선 太師 李裕元이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보낸 서신(朝鮮太師 李裕元致北洋大臣李鴻章函)」: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하는 일을 비밀리에 권유하였으며, 자문전달관 이용숙에게 답신을 가지고 가서 자초지종을 전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密勸與泰西立約通商事, 請齎咨官李容肅便帶覆函, 轉達下情原委」).

2.「北洋大臣 李鴻章이 조선 原任太師 李裕元에게 보낸 답장(北洋大臣李鴻章覆朝鮮致仕太師李裕元函)」: 인원을 선발하여 천진에 와서 무기 제조와 무비를 학습하는 일은 응당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영평부 지부 유지개에게 부탁하여 전달하게 하였습니다(「揀員來津習軍器, 武備事, 應屬可行, 已囑永平游守轉達」).

날짜 : 光緒五年十一月十五日(1879년 12월 2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十一月十五日，北洋大臣李鴻章函稱：

七月間欽奉寄諭，並五百三十八號鈞函，令查照雨生所陳各節，轉致朝鮮，勸與泰西各國立約通商，以杜日本之詭謀．當即遵旨寫書朝鮮致仕太師李裕元，密爲勸導，已繕疏覆奏，並泐函略陳梗概在案．旋於十月初七日，由永平游守智開遞到李裕元來信，絕不提及前事，似有未便明言之隱．據游守密稟，接李裕元另函謂：

該國本意不欲與其他國往來，日本開港，實出於不得已．若西人通商，則莫敢開口．渠前於七月晦間，奉到敝處書緘，曲爲小邦多方指導，既勤且摯，當經言之於朝，而以解官歸鄉，不敢力爭，務求鑒原．此番如蒙賜覆，並求勿露七月間書函事，屬代爲密陳．等語．其賚咨官李容肅，復與游守籌商，欲來謁晤，將製器、練軍等事面陳一切．鴻章以既有要務，未便阻其前來，即函告游守，專派妥人伴送．茲接游守稟稱：

專人由京折回，攜到該賚咨官復信，謂身充使者，出入不得自由，躊躇中止，並云李裕元信中有要務細細面白者，蓋因該國與論擬仿古外國入學之例，咨請禮部揀選明幹人員，在天津等處學習軍器、武備，特屬游守轉達請示．

鴻章竊思李裕元之不能獨主謀議，與該賚咨官之不敢淹留內地，均係實情．而該國講求武備，實難再緩．因緘覆游守，告以所請似屬可行．將來該國咨文到部，應由禮部奏明，轉咨鈞署，酌度辦理．如以後朝鮮有員到津，敝處於練兵、製器之法，不難罄其秘要，隨宜指授，俾獲有成，藉作自強之基，增我藩籬之固．屬俟該賚咨官李容肅，道出永平，詳爲道達，並宣示朝廷微旨，務使該國規模日新，邊備日嚴，庶勿爲強鄰所窺伺．另復李裕元一函，則但作通候寒暄之語，不提七月間所商各節，令其順便攜交．謹將李裕元來函及敝處覆函，鈔呈鈞鑒．朝鮮既堅不欲與西人通商，中國自難強勸，敝處似不必再行瀆奏，可否請於召對之頃，敷陳及之，伏候卓裁．專肅密布．敬敍鈞祺．

1．照錄「朝鮮原任太師李裕元函稿」

肅毅伯爵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猥以海外微踪, 過蒙錯愛, 尺素不遐, 已積歲月, 下情慰感, 何日忘諸? 徂夏居秋, 涼燠不調, 鈞體候對時萬康. 寅亮鎭綏, 軍民樂生, 德望遠暨, 不勝攢頌. 小邦間有倭使之來留, 雖屬過境, 尚未出場, 極可悶然. 此去憲書咨官李容肅, 有所兼管特送者也. 此人曾與游太守有雅分, 故使之齎札入見, 且將其所幹細細面白爲喻矣. 游太守必以李容肅之言, 轉達於爵前, 幸忘卑賤, 特垂盛眷, 隨事周便, 到底指教, 俾完玆事, 千萬至仰. 小生優游鄉山, 調病便宜, 莫非國恩攸庇耳. 不備白.

小生李裕元再拜.

己卯八月二十二日.

2. 照錄「覆朝鮮原任太師李裕元函稿」

橘山尊兄太師閣下：

十月初旬, 由永平游太守遞到八月廿二日惠書. 過蒙藎注, 情誼綢繆, 耿耿微衷, 相喻於數千里外, 發函伸紙, 把玩無厭. 比諗養望林泉, 頤性駐齡, 內賛密勿, 則嘉謨入告, 外弭鄰釁, 則畺圍永綏, 遙企禽暉, 曷任抃頌? 倭人自與貴國通商以後, 時以關津小事, 憪然有不靖之意, 或派兵輪船巡海, 或遣書記官北行, 不知其意何在. 邇聞爭端暫戢, 未起波瀾, 鄙懷爲之稍慰. 貴國賫咨官李容肅, 與游太守相知稍久, 頃由游君轉達壹是. 鄙意頗盼李君惠然肯來, 益得聞所未聞, 稍罄鄙人之衷曲. 昨聞李君以使命在身, 未敢逗遛, 亟思返旆, 即已函囑游君轉述鄙愫. 台端忠謨奮發, 諒不河漢斯言, 冬寒惟珍衛. 不宣.

合肥李鴻章再拜.

十一月十二日.

11월 15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7월에 丁日昌이 진술한 각 항목을 그대로 조선에 전달하여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함으로써 일본의 간교한 음모를 막도록 권유하라는 기신상유(寄信上諭: 즉 군기처를 통해 전달되는 황제의 상유를 가리킨다)와 더불어 보내주신 538호 서신을 받았습니다. 즉시 諭旨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라 조선의 原任太師 李裕元에게 서신을 써서 비밀스럽게 설득하였고, 그 내용은 이미 베껴서 답장 상주[覆奏]를 올리고 아울러 그 대략의 내용을 써서 [귀 總理衙門에] 서신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월 7일 [直隸省] 永平府 知府인 游智開가 李裕元의 서신을 전달해 왔는데, 이전의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아마도 분명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游智開의 비밀 보고[密稟]에 따르면, 李裕元이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다른 서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 조선의 본뜻은 다른 나라와 왕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일본에 개항한 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서양인과 통상을 해야 한다면 감히 항구를 개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7월 말 무렵 北洋大臣의 서신을 받았는데, 은근히 조선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해주시는 것이 간절하고도 지극하였다는 점을 이미 조정에 아뢰었지만, 관직을 그만두고 귀향하게 되어 감히 힘써 다투지는 못하였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만약 답장을 주신다면 아울러 7월 서신에 관한 일은 드러내지 않도록 해주시길 대신 비밀리에 아뢰도록 부탁해왔습니다.

조선의 자문전달관[賫咨官] 李容肅이 다시 游智開와 상의하여 저를 만나러 와서 무기 제작, 군대 훈련 등에 관한 일을 직접 이야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막을 수 없어 游智開에게 서신을 보내어 적당한 사람을 함께 안내인으로 삼아 호송하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游智開가 서신을 받고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 [李容肅을 안내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 北京에서 돌아오면서 해당 자문전달관의 답장 서신을 가져왔는데, 사신의 임무를 맡은 자로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주저하면서 중지하였다고 하였으며, 또한 李裕元의 서신에서 자세하게 직접 아뢰겠다고 한 중요한 일은 조선의 여론 때문에 외국인으로 중국에 입학하였던 옛적의 선례에 따라 예부에 자문을 보내 능력 있는 인원을 선발하여 天津 등에 보내 무기와 군사 학습을 요청하겠다는 것으로서 제게 대인께 전달하여 지시를 내려달라고 특별히 부탁해 왔습니다.

생각건대, 李裕元이 홀로 謀議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과 자문전달관이 감히 내지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은 모두 실제 상황이며, 조선이 軍備를 강구하는 일은 실로 더이상 미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游智開에게 답장을 보내 그들이 요청한 바를 모두 실행할 수 있다고 알리게 하였습니다. 장래 조선이 자문을 보내면 마땅히 예부에서 상주하고 총리아문에도 咨文을 전달하여 적절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조선에서 인원을 天津으로 보내면, 天津에서는 병사를 훈련하고 무기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그 秘要를 모두 알려주고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自强의 기반을 만든다면 우리 울타리의 견고함을 더욱 늘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문전달관 李容肅이 永平府를 지나기를 기다려 상세하게 설명하고 아울러 우리 조정의 속뜻을 알려줌으로써 조선이 날로 법도를 일신하고 변경 방비에 더욱 엄격하게 힘쓰게 함으로써 강한 이웃 나라가 엿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따로 李裕元에게 답장을 보내는 서신은 다만 안부를 묻는 인사말 정도를 쓰고 7월에 논의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가는 길에 휴대하여 전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삼가 李裕元이 보낸 서신과 제가 쓴 답장 서신을 초록해서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조선이 굳게 서양인과의 통상을 거부하니 중국은 자연히 강권하기 어렵고, 이 문제로 제가 다시 쓸데없이 상주할 필요 없이 직접 召對를 하게 될 때 이 점에 대해 좀 더 아뢸 수 있을지 엎드려 총리아문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삼가 비밀리에 알립니다. 편안하시기를 빕니다.

첨부문서 : 淸摺 초록

1.「조선의 原任太師 李裕元이 보낸 서신」초록

李 中堂大人께.

海外의 미미한 사람으로서 외람되이 대인의 과분한 사랑을 입어 서신이 끊이지 않은 것이 이미 여러 해가 되었으니 마음속의 위안과 감사를 어느 날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서 추위와 더위가 일정하지 않으니 늘 대인의 신체가 건강하시길 빕니다. 황상을 잘 보필하시고 국가를 안정시켜 軍民이 즐겁게 생활하고 덕망이 널리 퍼지시니 찬송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는 간혹 일본의 사신이 와서 머무는데, 비록 경계를 지나가는 것일 뿐 아직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이번에 가는 자문전달관 李容肅은 겸하여 맡은 임무가 있어서 특별히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游智開知府와 인연이 있으므로 서신을 가지고 가서 대인을 만나 뵙게 하여, 직접 얼굴을 맞대고 다시 중요한 사무의 세세한 내용을 아뢰고자 합니다. 游智開知府가 반드시 李容肅의 말을 李 中堂大人께 전달하였을 것이니, 다행히 저를 잊지 않으시고 특별히 돌보아주셔서 일마다 주선을 해주시고 끝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르침을 주시어 일을 제대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우러러 바랍니다. 소생은 고향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병을 잘 조리하고 있으니, 國恩이 미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소생 李裕元이 다시 인사드립니다.
기묘년 8월 22일.

2.「조선의 原任太師 李裕元에게 보낸 답장」초록

橘山太師께 보냅니다.
10월 초순 永平府의 游智開知府를 통해 8월 22일에 보내주신 서신을 받았습니다. 과분한 관심을 받아 情誼는 더 두텁고 제 솔직한 마음을 수천 리 밖에서도 느낄 수 있으니,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손에 쥐고 감상하는데 전혀 싫증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은퇴를 고하시고 은거하여 보양하시면서도 안으로는 대신들을 도와서 좋은 의견을 임금께 아뢰시고 밖으로는 이웃과의 갈등을 막아 국토를 오랫동안 안정시키면서 멀리 광채를 빛내시니 어찌 박수를 치며 칭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倭人이 귀국과 통상을 한 이후에 때로는 교통 요지의 자그마한 일로 크게 불만의 뜻을 내비치면서 혹은 군대를 파견하여 輪船으로 바다를 순찰케 하거나 혹은 書記官을 북쪽으로 보내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분쟁의 실마리가 잠시 수그러들어 말썽이 일어나지는 않기에 제 마음에 약간 위로는 됩니다. 귀국의 자문전달관 李容肅이 游智開知府와 서로 안 지 조금 되었다고 하는데 방금 游君으로부터 일체를 전달받았습니다. 저로서는 李容肅君이 직접 왕림하여 미처 듣지 못한 것을 보태어 듣고 제 속뜻도 잠시 보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李容肅君이 使命을 띠고 있어 감히 머무르지 못하고 서둘러 귀국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바로 游君에게 서신을 보내 제 뜻을 전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귀하의 忠謨奮發은 진실로 이루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겨울 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合肥 李鴻章 再拜.
11월 12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문서번호 : 2-1-2-02(339, 416a-421a)

사안 : 조선이 武備를 강구하고자 하므로, 유지를 받들어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여 비밀리에 상주한 일을 자문으로 알립니다(咨送具奏朝鮮講求武備, 遵旨妥籌密陳摺).

첨부문서 : 1.「북양대신 이홍장의 奏摺(北洋大臣李鴻章奏摺)」: 조선이 이미 무비를 강구하겠다고 요청하였으니, 이 기회를 잘 이용하여 이끌고 그 군비를 충실하게 증가시키면 우리 울타리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朝鮮旣以講武爲請, 正可迎機善導, 增彼軍實, 固我藩籬」).

2.「조선 전임 태사 李裕元이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보내는 서신(朝鮮致仕太師李裕元致北洋大臣李鴻章函)」: 일본과의 교섭을 지도해주신 것에 대해 서신으로 감사드리며, 계속 국정을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函謝指導與日本交涉, 請繼續襄助國政」).

3.「목록[淸單]」: 조선의 전임 태사 李裕元이 이홍장에게 보내는 예물(「朝鮮致仕太師李裕元贈李鴻章禮物」).

날짜 : 光緖六年九月四日(1880년 10월 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四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竊照本大臣於光緖六年九月初四日, 由驛具奏朝鮮講求武備, 遵旨妥籌密陳一摺, 相應抄摺密咨. 為此合咨貴衙門, 謹請查核.

照錄「摺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奏為朝鮮講求武備，遵旨妥籌，恭摺密陳，仰祈聖鑒事.

竊臣承准軍機大臣字寄：

八月二十九日，奉上諭：

禮部奏. 據朝鮮國王咨稱：

該國講究武備，懇為轉奏請旨，俾該國匠工學造器械於天津廠.[1]

等語. 著李□□妥籌具奏. 其咨內所請簡選解事人員，或於邊外習教一層，並著李□□詳審其意，一併妥籌迅奏. 該國使臣業經該部安置居住，俟該督覆奏到日，再降諭旨，原咨著鈔給閱看.

等因. 欽此. 仰見聖謨廣運，眷顧東藩至意，欽佩莫名. 伏查朝鮮僻處海隅，向於外交之道、禦侮之方，漠不介意. 日本窺其孤弱，脅以兵威，先與立約通商，實則隱圖侵逼. 去年七月臣密奉諭旨，查照前福建撫臣丁日昌所陳各節，致書朝鮮原任太師李裕元，勸以密修武備，慎固封守，與英、法、德、美諸邦，逐漸立約，藉以牽制日本，即可備禦俄羅斯，並告以熟悉西國商情，軍火、利器不難購辦等語. 已將原稿鈔呈御覽. 是年十月朝鮮貢使入都，道出永平. 據前永平府知府游智開密稟，李裕元給伊另函謂：“該國本意不欲與他國來往，牽於眾議，不敢主持. 惟該國輿論，擬仿古外國入學之例，咨請禮部，揀選明幹人員，赴津學習練兵、製器之法.” 臣謂：“果有成議，未始非該國自強之基，” 曾密屬游智開，詳告該使. 本年二月復由游智開遞到李裕元去冬覆函，大致謂：“泰西之學素所深惡，不欲有所沾染.” 又以該國貧瘠不能多容商船為詞，已將原函鈔寄總理衙門存案.

竊思地球諸國，惟朝鮮風氣最晚. 該國士大夫囿於見聞，昧於時勢，墨守成法，閉拒忠謀. 雖日即於危弱而不顧，此殆有氣運主之，非人力所能為者. 今該國既以講武為請，正可因其一線之明，迎機善導，增彼軍實，固我藩籬. 惟是該國練習此事，即使始終勤奮，其收效亦在數年之後. 就目前事勢而論，則有迫不及待者. 自去冬以來，中俄和約未定，積有違言. 俄之鐵甲快船、兵船二十餘隻，陸續東駛，並厚集陸軍分布吉林海濱之海參崴、摩闊崴一帶,[2] 豫儲煤糧、軍火甚富. 六月間有美國水師總兵蕭佛爾赴朝鮮議約被拒，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來津與臣會晤. 據稱美國尚無用兵逼勒之意. 但俄人已費巨餉, 遣將調兵, 勢必不肯中止. 若不圖中華, 恐遂吞併朝鮮. 八月間法國水師提督瞿貝賚過談, 謂："探聞俄海部尚書里沙士幾之意,[3] 欲赴琿春攻奪朝鮮海口, 陸則斷奉吉之右臂, 水則扼北洋之襟侯, 規畫甚為雄遠." 又謂："朝鮮東界海口, 形勝為東方之最, 俄人故欲取之, 以與琿春、海參崴等處特角." 其餘各處探報及新聞紙所論大致相同. 蓋俄人所據之海參崴、綏芬河、[4] 圖們江各境, 皆與朝鮮東北接壤, 彼既佔東海口岸為巢穴, 自必漸圖開拓. 若吞併朝鮮, 即拊我東三省之背, 使中國岌岌不能自安. 是朝鮮與我國實有唇齒相依之勢, 不能無休戚相關之情. 當此兵餉兩絀, 中國沿海各口尚未能處處周防, 斷無餘力兼顧藩服, 以只能就其力所逮者而利導之. 萬一俄事稍紓, 俾朝鮮得於數年內力擴新機, 整軍經武, 保衛東隅, 未始非中國之幸也. 惟該國匠工來津學習機器, 此中亦有繁難之處. 查天津初設機器局, 不過仿造洋火、洋銅帽等項, 厥後叠次擴充, 添購機器、火葯, 多出數倍, 自造士乃得、林明登後膛槍子,[5] 克鹿卜、格林後門礮子、蚊船大礮子之屬.[6] 光緒元二年間, 亦曾自製後門槍, 因工費甚鉅, 較購自外洋者價幾逾倍, 即經停止. 各軍所用槍礮, 專向西洋定購, 但源源供給子葯、零件. 今朝鮮匠工來學, 即使盡嫻各法. 聞該國所用土槍, 僅與中國緑營之撬鳥槍相等. 其製造機器及新式槍礮, 仍須購自外洋, 是無其器而不能用也. 西洋槍礮其準線、口令、步伍, 非操演數年, 難以純熟, 是無其人而不能用也. 臣愚以為既准該國來習機器, 將來必須代為購器, 代籌練兵, 皆事之連類而及, 缺一不可者. 又該國匠工言語不通, 來局之後, 應如何設法教導, 俾獲漸窺門徑, 擬請勅下禮部, 揀派通事人員, 伴送該國使臣卞元圭到津, 由臣督同局員, 與之熟商辦法, 再行奏明, 請旨施行. 至該國王原咨內所稱："簡選解事人員, 或於邊外習教及來學往教"等, 文義似未甚明晰, 臣就事理度之. 今如中國派員往教, 該國既無機器匠工, 又無現成槍礮, 斷難獲益, 自應先由該國挑選匠工, 來廠學習, 並選聰穎子弟來津, 分入水雷、電報各學堂, 俾研西法, 本末兼營, 較有實際. 至練兵一事, 將來或選派熟悉員弁往教, 或由該國派隊來從我兵操演. 購器一事, 或乘中國訂購之便, 寬為籌備劃付, 均應隨時酌度情形, 妥商辦理. 臣比接李裕元來書, 頗知戒備不虞, 以講戎敕械為兢兢. 並致送禮物甚厚, 想因所圖之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關係頗重, 意在豫聯情誼. 從前李裕元以該國邊事與臣通問, 每附土儀數種. 臣援古人贈帶獻衣之義, 兼仿盛世薄來厚往之經, 必為加倍酬答. 此次禮物較多, 未敢擅便, 謹將原函及禮單鈔呈御覽, 應否收受, 由臣加倍酬答之處, 伏候聖裁. 至朝鮮與西人通商一節, 實係謀國要圖, 與練兵、製器相輔而行. 其李裕元來函, 俟奉諭旨後, 即當裁復. 臣仍擬不憚苦口, 善為開導, 冀其或有轉機, 庶免為他國所兼併. 所有朝鮮講求武備, 遵旨妥籌緣由, 恭摺由驛密陳, 是否有當, 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 謹奏.

2. 謹將朝鮮國致仕太師李裕元來函並禮單, 敬繕清單, 恭呈御覽.

文華殿大學士肅毅伯爺前：

本年季春貢使回, 得承永平游太守書. 盛傳爵前仁政布於寰內, 威名施諸海外, 莫非尊主庇民, 有辭千秋. 小邦黎庶, 咸思霑溉之恩, 非不欲種種恭探鈞節. 山海漠漠, 界疆有限, 末由展誠, 景仰結轖, 曷有其極? 秋涼驟至, 鈞體度對時萬康. 警鐸不動,[7] 衛戟凝瑞,[8] 瞻望津雲,[9] 若拜床下. 小邦日本之人稍似講好, 德源開港, 商舶來往, 江户送使, 書契修謝, 姑無圭角, 實賴爵前左右之力, 實遵爵前指教之方. 而忽於春夏間, 佛國及米國書本自萊館要其送納, 小邦以非約條中事, 措辭退却. 蓋他國書之自日本藉送不得施行, 曾有交鈐而然也. 若有意外層節, 則不得不仰告於爵前. 更蒙乙亥冬斥退森有禮之澤, 此舉國之所仰望也. 小邦國王, 此際憂虞, 宵旰靡弛, 文而崇儒重道, 武而講戎敕械, 先選六條之士,[10] 廣開百技之門. 惟我上國是則, 亦惟我爵前是倚, 派定別咨官卞元圭, 前往京都, 齎文陳白於禮部, 未知回施之如何. 而上年因游太守言, 已知爵前之微意. 故敢將咨草先從永平以為轉達. 伏維慈惠之念, 必有周全. 若或准可, 則下次事無鉅無細, 專仰爵前稟定. 而不以卑鄙, 隨處戒飭, 俾有實效, 奚特一邦之幸? 亦獲藩屏之固矣. 小生依舊在林泉逍遥之間, 老瞶轉甚, 無足相問. 而今於茲事不敢辭, 為皇愧衷, 兼奉禮單, 庶或亮收不備. 謹呈直隸總督伯爺爵前.

庚辰七月初九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禮單」

倭繒疋紐十端. 曲生綃十端. 土紬二十端. 上黃細絺布十端. 上白細絺布十端. 加重生紬五十端. 細綿布五十. 大漆箑二百把. 芭蕉圓扇一百柄. 大圓扇十柄. 細簾子五雙. 滿花席子十立. 色紙二十苧. 大搗厚紙三十苧. 白楮二百束. 上上製山秬清心元一百丸. 紅仁參五十觔. 白仁參三十觔. 大鰒魚二百箇. 江瑤珠一百缸. 柚子清一缸. 薑果一缸.

計：二十二種

---

1) 여기서 천진창(天津廠)은 천진기기제조국(天津機器制造局. 天津機器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천진기기제조국은 관판 군용기업(官办军用企业)으로 1867년 삼구통상대신(三口通商大臣) 숭후(崇厚)가 천진에서 창설하였는데(원명은 军火機器总局), 1870년 이후 직예총독 이홍장이 이어받아 천진기기제조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탄약 생산을 주로 한 북방 최대의 군수공장으로 동·서 양국으로 나뉘는데, 동국(東局)은 화약·창포·탄약·수뢰 제조를 주로 하였고, 서국(西局)은 군용 기구, 개화포탄 및 수뢰포 치용 윤선 등의 제조를 주로 하였다. 1895년 북양기기제조국(北洋機器制造局)으로 바뀌었다.

2) 마활외(摩闊崴)는 와활외(窩闊崴)라고도 하는데, 원래 길림 동남부의 작은 어촌이었다. 1860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 영토가 되었는데, 러시아 해군 장군 K.N. 포시예트(波西耶特. 波谢特, 1819~1889)를 기념하여 이 해안을 포시예트만으로, 마활외 거민 지역을 포시예트로 바꾸었지만, 항구 기능은 지리적으로 우월한 블라디보스토크에 넘겨주었다.

3) 스테판 레소프스키(Stepan S. Lessovski. Лесовский , Степан Степанович. 1817~1884)는 러시아의 군인으로 1881년까지 해군 제독을 역임하고 그해 전역하였다. 여기에는 '里沙士幾'로 표기되어 있지만, 뒤의 (9) 문서번호 : 2-1-2-09(360, 500b-503b)에는 '理疏富斯基'로 표기되어 있다. 뒤의 경우가 보다 정확한 표기인 것 같다.

4) 수분하(绥芬河)는 흑룡강성(黑龙江省) 동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동쪽으로 러시아의 연해지역과 접경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5) 사내득(士乃得)은 영국 육군의 전장식(前裝式) 엔필드 소총을 후장식(後裝式)으로 개조한 1866년식 스나이더-엔필드(Snider-Enfield) 소총을 가리킨다. 초기 후장총(後裝銃)으로 대표적인 것이다. 임명등(林明登)은 미국의 레밍턴(Remington) 사에서 1865년부터 생산하고 다음 해 미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레밍턴 소총을 말한다. 상해의 강남제조국(江南製造局)에서도 1867~1883년 사이 약 2만 5천 정을 제작하였다.

6) 극녹복(克鹿卜)은 극로백(克虏伯)으로도 표기되는 독일의 대표적인 군수업체 크루프(Krupp) 사를 가리키며, 여기서 생산된 크루프대포(Krupp gun)는 이홍장이 적극 도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문선(蚊船)은 문자선(蚊子船)·문선(蟁船)이라고도 하는데, 1867년 영국의 조지 렌델(George Rendel)이 고안한 신형 군함으로 작은 함체에 주력함의 대구경 화포를 장착하여 일종의 움직이는 포대(炮台)로서 이용되었다.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대포의 위력이 무시무시하여 마치 모기 같다고 해서 이런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7) 경탁(警鐸)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큰소리를 내게 하던 목탁·동탁을 가리키는 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월 4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본 대신은 광서 6년 9월 4일 조선이 武備를 강구하고자 하므로, 諭旨를 받들어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여 비밀리에 아뢰는 주접을 역참을 통해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총리아문에도] 상주문을 초록하여 비밀리에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삼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淸摺 초록

1. 조선이 武備를 강구하고자 하므로, 諭旨를 받들어 이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여 삼가 주접으로 비밀리에 아뢰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軍機大臣의 다음과 같은 寄信上諭를 받았습니다.

8월 29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들었습니다.

예부에서 주를 올렸는데, 다음과 같은 조선 국왕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조선은 무비를 강구하고자 하니, [예부에서] 대신 주를 올려 조선 기술자가 천진기기제조국에서 기계 제조를 배울 수 있게 하라는 유지를 내려주시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홍장이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여 상주하게 하라. 조선 국왕의 자문에서 사리를 아는 인원을 선발하여, 변외(邊外)에서 배우고 가르치겠다고 한 부분도 이홍장이 그 의도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함께 적절한 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상주하게 하라. 조선 사신은 이미 예부에서 안치하여 머무르게 하였으니, 이홍장의 답장 상주가 도착하면 다시 유지를 내릴 것이다. 조선 국왕의 원 자문을 초록해 주어 볼 수 있게 하라.

같다.

8) 위사(衛士)들이 극(戟)을 잡고 서로 교차하는 것을 교극(交戟)이라 하는데, 안가 위사들이 지키는 장소 즉 궁정(宮廷)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위극(衛戟)은 궁정·관아를 지키는 위사들이 잡고 있는 무기(戟)나 시종 직무를 가리키기도 한다. 응서(凝瑞)는 상서로운 기운이 어려있다는 뜻이다.

9) 첨망(瞻望)은 멀리 또는 높은 곳을 우러러 본다, 삼가 우러러 보면서 희망을 깃들인다는 뜻이다.

10) 육조(六條)는 한대(漢代)에 자사(刺史)가 여섯 조항의 조서(詔書)를 반행하여 관리를 고찰하던 것, 또는 진(晉)의 군(郡) 중정(中正)이 현재(賢才)를 천거하던 여섯 가지 표준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후자의 뜻으로 쓰인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가 황상의 통치 방책이 한없이 넓고 멀며, 동쪽의 蕃國을 돌봐주시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보면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조선은 외딴 바다의 한 모퉁이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외교의 길과 외적의 침략을 막는 방법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본이 그 외롭고 약함을 몰래 살펴, 군사적 위협으로 압박하여 먼저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을 시작한 것은 실로 은근히 침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7월 신은 비밀리에 받은 유지를 받들어 전임 복건순무 丁日昌이 條陳한 각 항목대로 조선의 원임태사 이유원에게 서신을 보내, 비밀리에 무비를 정비하고 변경 방어를 신중하게 튼튼히 하면서, 영국·프랑스·독일·미국 등 여러 나라와 점차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을 견제하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였고, 또한 서양의 商情을 숙지할 것과 군수품이나 무기는 구하기 어렵지 않을 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이 서신 원고를 초록하여 황상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려보냈습니다.

올해 10월 조선의 조공 사신이 입경하면서 영평부를 거쳤는데, 前 永平府知府 游智開의 비밀 보고에 의하면, 李裕元이 그에게 보낸 별도의 서신에서, "조선의 본뜻은 다른 나라와 왕래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衆議에 끌려 [자신은] 감히 主持할 수가 없다. 다만 조선의 여론은 옛날 외국의 入學 사례를 모방하여, 예부로 자문을 보내 총명하고 재능 있는 인원을 선발하여 천진에 보내 연병과 기기 제작 방법을 학습하도록 요청하려는 것이다"라고 알려왔다고 합니다. 신은 이에 대해 "과연 이 논의가 성사되면 조선의 自强 기초가 되지 않음이 없다"고 생각하여, 일찍이 비밀리에 유지개에게 당부하여 해당 사신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다시 유지개가 이유원이 지난겨울에 보낸 답신을 전달하였는데, 대체로 "서양 학문을 본래 매우 싫어하여 거기에 물들고 싶지 않다"는 취지였고, 또한 조선은 척박하여 많은 상선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미 원 서신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보낸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지구상 여러 나라 가운데 조선의 풍기가 가장 늦었습니다. 조선 사대부는 견문에 사로잡혀 시세에 어두우며, 成法을 墨守하면서 충심에서 나온 [중국의] 계략을 막고 거절합니다. 비록 날로 즉 위약해져도 돌아보지 않으니, 이것은 대체로 氣運이 주관하는 것이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이 이미 무비 강구를 요청해왔으니, 바로 한 가닥 밝은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맞아 잘 이끌면서 그 군비를 충실하게 증가시키면 중국의 울타리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러한 일을 연습하면서 설령 시종 노력한다고 해도 그 효과를 거두려면 또 수년 이후가 될 것입니다. 목전의 형세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의하자면, 긴박하여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난겨울 이래로, 중국과 러시아의 和約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서로 어긋나는 말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철갑 쾌속선과 군함 20여 척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또한 육군을 두텁게 모아 길림 바닷가의 블라디보스토크[海蔘崴. 符拉迪沃斯托克]·포시예트[摩濶崴] 일대에 배치하여, 미리 석탄·식량·무기를 비축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6월에는 미국 해군제독 슈펠트[蕭佛爾]가 조선에 가서 조약 체결을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하였으며, 이후 곧 천진에 와서 신과 회견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병력을 이용하여 핍박할 의도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인은 이미 거대한 군비를 지출하였고, 장교와 병사를 파견하였으니 형세로 보건대 중지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중국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아마 조선을 병탄할 것입니다. 8월 중에 프랑스 해군제독 콜베르[瞿貝賽?]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러시아 해군부 장관 레소프스키의 뜻을 탐문해보니, 훈춘에 가서 조선 항구를 공격하여 뺏고자 하는데, 육지에서는 봉천·길림의 오른팔을 끊고, 바다에서는 즉 北洋의 목구멍을 틀어쥐려고 하는 계획이 아주 웅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는 "조선 동해안의 항구는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形勝이며, 러시아인이 그래서 그곳을 빼앗아 혼춘·블라디보스토크과 서로 맞대게 하려고 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나머지 각지에서의 탐문 보고 및 신문에서 논의하는 바와 대체로 같습니다.

러시아가 점거한 블라디보스토크·수분하(綏芬河)·두만강[圖們江] 각 지역은 모두 조선 동북 지역과 땅이 연결되므로, 그들이 동해안 항구를 차지하여 소굴로 삼으면 반드시 점차적인 영토 확장을 꾀할 것입니다. 만약 조선을 병탄하게 되면 바로 동삼성의 등을 치게 될 것이니, 중국은 스스로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과 중국은 실로 서로 입술과 이빨처럼 의지하는 형세이니, 상대방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상관하는 감정을 지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력과 군비 모두가 부족하여 연해 각 항구 또한 두루 방어할 수 없는 중국 지금의 상황에 즈음해서는 결코 藩服을 동시에 돌볼 여력이 없으니, 단지 그 힘이 미치는 곳에 대해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 뿐입니다. 만일 러시아와의 긴장이 조금 해소되어, 조선이 수년 내에 힘써 새로운 기회를 확충하여, 군대를 정비하고 무력을 강화하여 동쪽 변두리를 보위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선 기술자가 천진에 와서 器機를 학습하는 데에는 또한 번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진에 처음 機器局을 설립하였을 때, 성냥[洋火]과 서양식 탄환[銅帽][11] 등을 모방하여 제조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을 뿐인데, 그 후 누차 확충하여 첨가하여 구매함으로써 기계·화약의 생산이 몇 배로 늘었고 스나이더-엔필드·레밍턴 등 후장식 소총의 탄환, 크루프 후장식 대포나 문선(蚊船) 대포의 포탄 따위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1875·1876년에는 또한 스스로 후장식 소총을 제조하였지만, 제작비가 너무 많아 외국에서 구매하는 것에 비해 가격이 거의 배를 넘자 곧바로 중단하였습니다. 각 군에서 사용하는 총포는 오로지 서양에서 구매하기로 정하였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탄약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 기술자가 와서 배워 설사 각종 기술을 익히더라도 듣자 하니 조선에서 사용하는 구식 소총은 겨우 중국 녹영병의 대오총[擡鳥槍]과 비슷할 뿐입니다. 그 제조 기계나 신식 총포는 여전히 반드시 외국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기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 총포를 이용하기 위한 조준법[準線]·구령·대오 역시 몇 년 동안 조련하지 않으면 익히기 어려운데, 이것은 거기 맞는 사람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생각건대 조선이 와서 기계를 학습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니, 장래 반드시 그들을 대리하여 기계를 구매하고 병력을 훈련해야 할 터인데, 이것은 이런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조선 기술자는 언어가 통하지 않아, 기기국에 온 다음 응당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가르침으로써 점차 실마리를 엿볼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부에 지시하여 통역 인원을 골라 파견하여, 조선 사신 卞元圭와 함께 천진에 보내주시면, 신이 기기국 인원과 함께 방법을 잘 상의한 다음 상주하여 유지를 청한 다음 그에 따라 실행하겠습니다.

조선 국왕의 원 자문에서 "사리를 잘 아는 인원을 선발하여, 혹은 변외에서 배우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가서 배우고 와서 가르친다"고 한 내용은 그 뜻이 분명하지 않아 신이 사리에 근거하여 짐작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중국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가르치고자 하다면 조선에는 기계와 기술자가 없고 이미 갖추어져 있는 총포도 없어 단연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먼저 조선에서 기술자를 골라 기기국에 와서 학습하게 해야 하며, 아울러 총명한 자제를 선발하여 천진의 水雷·電報 각 학당에 나누어 입학시킴으로써 西法을 익히게 하여 본말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비교적 실제적인 방안일 것입니다. 연병 문제의 경우 장래 혹은 숙련된 관원이나 장교를 골라 파견하여 가르치게 하거나, 혹은 조선에서 부대를 보내 우리 부대를 따라 훈련하게 하면 됩니다. 기계 구입의 문제는 혹은 중국이 주문하여 구매하는 기회를

11) 동모(銅帽)는 구리로 만든 탄피나 비슷한 모양의 제품, 나아가 총탄을 가리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타서, 넉넉하게 사전에 준비하여 마련하면 될 것이니, 모든 일은 응당 수시로 상황을 헤아려 적절하게 논의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신은 최근 이유원이 보내온 서신을 받았는데, 뜻밖의 일에 미리 대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군대를 훈련하고 무기를 마련하는 것에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보내온 예물이 매우 많은 것은 생각건대 도모하는 일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사전에 정의를 다지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이유원이 조선의 변경 방어 문제로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매번 토산품 여러 종류를 보내왔습니다. 신은 허리띠를 바치고 옷을 보내는 옛사람들의 관행을 따르고, 게다가 적게 왔지만 후하게 돌려보내는 盛世의 이치를 모방하여 반드시 배로 답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물은 너무 비교적 많아 감히 제멋대로 결정하여 처분할 수가 없기에, 삼가 원 서신 및 예단을 초록하여 올려보내니 살펴보시고, 응당 받아야 하는지, 신이 배로 답례해야 하는지, 엎드려서 황상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조선과 서양인의 통상 문제는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아주 무거운 의미를 지닌 정책으로, 연병 및 기계 제조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원이 보내온 서신에 대해서는 유지를 받으면 즉각 답장하겠습니다. 신은 여전히 쓰디쓴 충고를 꺼리지 않고 잘 권고하여 그들이 혹시라도 轉機를 찾을 수 있어 다른 나라에 겸병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무비 강구 문제에 대해 유지를 받들어 적절한 계획을 마련하게 된 연유를 삼가 주접을 갖추어 역참을 통해 비밀리에 아뢰오니,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고 훈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2. 삼가 조선국의 퇴임 태사 李裕元이 보내온 서신 및 예단을 목록을 작성하여 공손하게 올려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文華殿大學士 李 中堂大人께.

올해 음력 3월에 조공 사신이 돌아오면서 永平府太守 游智開의 서신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李 中堂大人의 仁政이 천하에 퍼지고, 그 명성이 해외에까지 미친다고 널리 전해지고 있어, 임금을 받들고 백성을 보호함이 아주 오랫동안 일컬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 백성들이 모두 그 혜택을 골고루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모로 직접 찾아뵙고 싶지만, 산과 바다는 아득하고 광활하고, 疆界는 유한하니, 그 진심을 펼칠 방법이 없고 우러러 경모하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마음이 가슴에 맺히는데 어찌 그 끝이 있겠습니까?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갑자기 왔으니, 신체가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변고를 울리는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고 위사들이 지키는 관아(官衙)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몰려 있으니, 멀리서 천진의 구름을 쳐다보아도 마치 가까이에서 뵙는 것처럼 안심이 됩니다. 조선은 일본인이 조금은 우호를 생각하는 것 같아 德源 항구를 개항하여, 상선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에도[江户 : 즉 도쿄, 나아가 일본 정부를 말한다]에서 사신을 보내고, 국서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일 모두 조금도 모난 행동이 없으니, 실로 李 中堂大人께서 좌우에서 보살펴주신 힘에 의지한 것이고, 李 中堂大人께서 가르쳐주신 방편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봄·여름 사이에 갑자기 프랑스 및 미국 使臣이 倭館에 와서 文書의 送納[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지만, 조선은 약조된 일이 아니라는 구실을 대고 물리쳤습니다. 다른 나라가 일본을 통해 서신을 보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일찍이 그들과 전쟁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외의 곡절이 생기면, 즉 부득이하게 삼가 李 中堂大人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을해년 겨울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도발을 물리쳐주신 은택을 입었는데, 이 점에서는 온 나라가 우러러 받들고 있습니다. 조선 국왕께서는 이 근심과 걱정의 시절을 맞이하여 침식을 잊고 나랏일에 열중하여 조금도 느슨해질 겨를이 없으시며, 文의 방면에서는 유학을 숭상하고 도리를 중시하시며, 武의 방면에서는 군대를 훈련하고 무기를 마련하시면서, 먼저 천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골라 각종 기술 습득의 문을 크게 여셨습니다. 다만 上國만을 기준으로 삼으니, 또한 李 中堂大人께 의지할 뿐으로, 別咨官 卞元圭를 북경에 파견하여 문서를 가지고 가서 예부에 보고하게 하였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는 알지 못합니다. 지난해 游智開太守의 말을 듣고 이미 李 中堂大人의 은근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문의 초고를 먼저 游智開太守를 통해 전달합니다. 평소의 자혜로우신 염려를 생각건대, 반드시 빈틈없이 살펴주실 터라고 믿습니다. 만약 혹은 가능하다고 허락해 주신다면, 즉 다음부터 크건 작건 모두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졸렬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수시로 하여 타일러 주시어 실효를 거두게 한다면, 어찌 특히 조선의 행운에만 그치겠습니까? 중국 역시 강고한 울타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생은 여전히 은거하여 소요하면서, 늙은 눈이 더욱 어두워져 질문을 받기에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일에 관해서 감히 사양하지 못하여, 황망하게 속마음을 하소연해보며 아울러 예단을 바치니, 혹시라도 온전치 못한 이것을 받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삼가 直隸總督 李 中堂大人께 올립니다. 경진년 7월 9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예단」

倭繚疋紐 10단. 曲生綃 10단. 土紬 20단. 上黃細綀布 10단. 上白細綀布 10단. 加重生紬 50단. 細綿布 50. 大漆箑 200把. 芭蕉圓扇 100자루. 大圓扇 10자루. 細簾子 5쌍. 滿花席子 10立. 色紙 20묶음. 大搗厚紙 30묶음. 白楮 200묶음. 上上製 山秸清心元 100개. 紅仁參 50근. 白仁參 30근. 大鰒魚 200개. 江瑤珠 100항아리. 柚子清 1항아리. 薑果 1항아리

합계 : 22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문서번호 : 2-1-2-03(340, 421a-430a)

사안 : 조선의 무기 제조, 병력 훈련, 기계 구입을 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주접과 하급 문·무 관원의 선발·파견·학습에 관한 장정을 자문으로 보냅니다(咨送妥籌朝鮮學習製造, 練兵, 購器摺及揀派員弁來華學習章程).

첨부문서 : 1.「북양대신 이홍장의 주접(北洋大臣李鴻章奏摺)」: 유지를 받들어 조선의 제조 학습 및 연병과 기계 구입에 관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주를 올립니다(「具奏遵旨妥籌朝鮮學習製造及練兵, 購器事宜」).

2.「북양대신 이홍장의 奏摺과 附片(北洋大臣李鴻章奏片)」: 조선의 기계 제조 및 연병에 관한 네 가지 논의를 片奏로 올립니다(「片奏籌辦朝鮮製器, 練兵擬議四端」).

3.「(중국에)와서 학습하는 것에 관한 장정을 마련하였습니다(擬議來學章程)」: 조선의 卞元圭와 海關道 鄭藻如 등이 조선의 문·무 관원이 천진에 와서 제조 학습 및 조련에 관하여 논의한 장정(「朝鮮卞元圭與關道鄭藻如等所議 該國員弁來津學習製造, 操鍊章程」).

날짜 : 光緒六年九月二十八日(1880년 10월 3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二十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竊照本大臣於光緒六年九月二十七日, 在天津行館,[12] 由驛具奏遵旨詢問朝鮮一切情形, 妥籌學習製造及練兵、購器事宜一摺. 又附奏朝鮮揀派員弁來華學習製造、操練, 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擬章程四條一片，相應鈔稿咨送，為此合咨貴衙門，謹請查核施行.

照録「奏稿」

1. 奏為遵旨詢問朝鮮一切情形，妥籌學習製造及練兵、購器事宜，恭摺覆陳，仰祈聖鑒事.

竊臣承准軍機大臣字寄：

九月初六日奉上諭：

李鴻章奏遵籌朝鮮請派匠工學造器械一摺. 朝鮮為東北藩服，唇齒相依. 該國現擬講求武備，請派匠工前來天津學造器械，自宜俯如所請，善為指引，已諭令禮部揀派通事，伴送該國齎奏官卞元圭赴津，著李鴻章詢問一切情形，再行奏明辦理. 李裕元致李鴻章書函，並著酌度情形，作書答覆，俾知領會.

等因. 欽此. 仰見聖主撫字藩邦，有備無患至意，欽佩莫名. 旋准禮部遵派通事伴送朝鮮齎奏官卞元圭，於九月十六日抵津. 臣即委令津海關道鄭藻如、永定河道游智開及辦理機器、軍械各局候補道許其光、劉含芳，候補道王等，先行會同傳詢一切. 該道等連日與之筆談，稍知該國大概情勢. 復導往機器局、製造局、軍械所及西沽儲備火器、火藥各庫，徧加觀覽，俾識端緒.

臣旋於九月二十二日傳見卞元圭，亦與筆談良久. 該使臣頗留心時局，非囿於一隅拘執成見者可比，玩其辭旨，甚有憂國之志，亟欲整練士卒，購造利器，以備不虞. 其忧於外侮、迫不及待之情，與倚我聲援、切求保護之意，時於言外見之. 茲督同鄭藻如等，就時地之宜，與該國力所能逮者，酌擬辦法. 蓋製器必求用器之人，則與練兵相連，練兵而所用之器. 有非倉猝所能自製者，則又與購器相連. 今為該國籌畫製造一事，當擇易辦而急需者行之. 如子彈、火藥及修理軍械之機器，必須酌量購備. 朝鮮王城現兵三萬，應分礮隊、馬隊、步隊為用器之則，礮隊擬克鹿卜後膛鋼礮，馬隊擬前後膛槍各半，步隊以三分之二用前膛槍，其餘間用後膛槍. 而沿海要隘之需及水雷、電機之學，又在該國循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量力而行. 至來學往教兩層, 該國君臣初意, 重在往教. 查朝鮮義州與奉天新設之安東縣, 僅隔鴨緑江. 彼意欲購取機器, 邀往教師, 由中國揀派明幹人員, 即在安東設局, 傳習製器、操兵之要, 仍不時遣人到津, 通聲息而便觀摩. 惟機器購之西洋, 非經年不能運到, 應由該國先選聰穎藝徒來津, 就現成之器, 師衆工之巧, 可以事半功倍. 俟其粗得門徑, 然後器匠同歸, 即教者亦易為力. 此製器之宜來學而後往教也. 槍隊、礮隊操法不同. 若先派數員往教, 恐言語不通, 即步伐止齊、口令、手法, 呼應不靈. 若先選該國弁兵數十人來津分隸各隊, 朝夕操演, 耳濡目染, 所得較多. 俟槍礮購到, 然後隨同所之員, 歸司幫教, 庶可遞相傳授. 此練兵之宜來學而往教也.

該道等將此數端與該使臣往復籌議, 擬具節略, 均甚周妥. 惟舉辦之遲速, 購器之多寡, 視乎該國經費之優絀, 非該使臣所能豫定, 應俟歸報國王, 與其大臣妥商定議. 臣飭局先選來福前膛槍十桿, 酌配子藥、銅帽各項, 毛瑟後膛馬槍十桿, [13]連後門子二千個, 交該使臣携帶回國, 俾該國觀其式樣, 稍知梗概. 除已飭卞元圭回京候旨外, 謹將擬具來津學習製器、練兵各條, 鈔呈御覽, 擬請敕下禮部咨照該國王, 相度便宜, 自行酌辦. 李裕元寄臣書函, 亦即妥為答覆, 俾知領會. 所有遵籌朝鮮學習製造兼練兵、購器事宜, 恭摺由驛覆陳. 是否有當, 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 謹奏.

光緒六年九月 日

2. 再,[14] 臣督同津海關道鄭藻如等, 詢議朝鮮製器練兵事宜, 擬定大概規模, 已專摺具陳在案. 據該國使臣卞元圭呈稱：

朝鮮武備早宜講求, 所以遲至今日者, 實因外藩私購戎器, 有干例禁, 迨時勢既迫, 始敢籲請, 猶恐緩不濟急.

又稱：

該國義州距營口僅六百里, 由營口附輪船直達天津, 不過數日, 或自津門航海東駛, 可徑泊該國黄海道之長淵·豐川兩府, 將來領運器械、來學員弁, 當從海道為便捷.

等語. 雖格於定例, 而軍需緊要, 未便過涉拘泥, 轉阻其嚮化之誠. 因飭鄭藻如等, 與該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臣酌議章程四條, 於通融中略示限制. 查外藩派人來華習武, 本屬創舉, 自應因時變通. 如選派人員一條, 令其自備資斧, 以免供億之煩, 仍許借給住房, 用示綏懷之誼. 往來道路一條, 惟來學之員弁、兵匠及領運器械, 准其暫從海道. 此外朝貢及常行公事, 仍須恪遵成憲, 斟酌於經權之中, 似尚無甚流弊. 給發憑票一條, 所以備稽查而便約束, 至從人不必多派, 亦不得私帶商販貨物, 關稅可免短絀. 公文分咨一條, 若循向例, 朝鮮來文須由禮部轉行, 然練兵、學藝、購器諸務, 皆屬刻不容緩, 設事事由禮部核轉, 在該部既滋煩瑣, 兼恐有誤機宜. 今令該國分咨禮部及臣衙門, 以免迂折, 而昭迅速, 仍由臣隨時奏明辦理. 凡此四端皆已再三籌度, 不厭精詳, 謹將擬議來學章程, 鈔呈御覽. 是否有當, 伏乞聖鑒訓示施行. 謹附片具奏.

光緒六年九月 日

3. 謹將朝鮮賚咨官卞元圭與津海關道鄭藻如等, 擬議該國員弁來學製造、操練章程, 録呈御覽.

一. 擬選派三十八人, 分入東·南兩局, 學習製造, 以兩員分管之. 通事傳語者, 東局二人, 南局用一人. 又選派精明强壯弁兵四十人, 分隸親軍槍砲營內, 學習操練, 亦以兩員分管之. 通事傳語者二人. 以上共八十七人為額, 資斧、火食等項皆朝鮮國自備, 惟住房由中國借給.

一. 朝鮮國朝貢信使往來所經道路, 自必永遵成憲. 惟此次派人來學係屬破例之舉, 若得徑從海道, 更覺便捷. 且製造、操練等事, 一二年內當可探討門逕, 為期不至過久, 擬請酌量變通奏咨立案, 暫由海道來往, 不在[朝請]常行公事之例.[15] 除來學之弁兵、學徒、委員、通事、從人而外, 別人、別事不得援照辦理. 至朝鮮國請中國代購軍械、機器等件, 俟購到後, 由中國咨照朝鮮, 方可派員從海道前來領運. 委員、弁兵、學徒、通事人等, 由北洋大臣衙門給發空白憑票, 交朝鮮國按名填給, 并造名冊呈送北洋大臣衙門及禮部備查. 到中國後, 遵守中國規矩, 專心聽教. 倘或不遵約束, 由中國官發交派來委員, 查核辦理. 至隨從之人, 敷用為止, 不必多派, 亦按名給予憑票, 附列冊末, 一體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奉約束, 不得私帶商販及一切貨物.

一. 凡屬練兵、學藝、購器軍務公文, 由朝鮮國王分咨禮部及北洋大臣衙門, 以歸便擬. 謹將朝鮮派來學製器、練兵分條擬具清摺, 恭呈御覽. 製造一事所包甚廣, 不可不分別[別]難易緩急. 中國籌立各廠十有餘年, 費用、餉項,[16] 約數千萬, 得入門徑, 始知有必須自造者, 有不必自造者. 茲為該國籌畫, 當擇易辦而急需者行之. 如槍砲既購辦矣, 而子彈須源源接濟. 若專恃購辦, 必有緩急難恃之虞. 此必自行製造者, 一也. 軍械常有損壞修理, 必藉機器. 此必自行製造者, 二也. 蓋行遠必自邇, 登高必自卑, 所用機器, 除造後膛槍子須全分機器. 此外不必全藉汽機, 應以人力運動者為宜, 可擇汽機小者購一二具, 以運車床刨鑽而已. 軍械之中, 火藥為最要, 西藥佳處, 全在硝礦提淨, 壓至結實, 碾工與臼舂之工無異, 機器碾盤似可省也. 僅購提硝器具, 壓水機器皆用人力者, 則省費約十之六七. 至於造槍子、銅壳, 非購全副機器不可. 如購辦各種軍械、器具之議既定, 則擇該國年十五六以至年二十歲者數十人, 分入兩局, 學習各種技藝. 其選擇之人, 除畫圖、汽機而外, 應於該國素業銅·鐵·木各工匠內心思靈巧者, 選派來學. 如欲驟然奏效, 恐亦不能, 緣製造之學, 無窮盡也. 俟期年後, 略得要領, 及器具購到, 則隨之回國, 自有把握, 庶不致茫然從下手矣.

一. 畫圖本諸算學, 為製器之根深, 須擇年十五六聰明而有悟心能通文義者四人, 分隸學習, 工師之才, 由此出焉. 其學無止境.

一. 木樣廠. 凡製一物, 必須先做木樣, 應擇該國木匠有心思年二十內外者四人, 分隸學習.

一. 翻沙廠. 此種工夫, 較易學習. 惟鎔化銅鐵, 習練眼力, 分別火色, 配合料作, 亦非易事, 須擇年力精壯有膂力、有心思者四人, 分隸學習.

一.槍子廠、捲銅廠. 機器繁多, 應選四人, 專入東局學習.

一. 機器廠須寬為選派, 應擇年十五六者四人, 按照車床隨師教導. 但車床工夫是以機器製器, 能知煥用車刀, 分配齒輪, 便入門徑. 惟執錘用鑿用鋸, 以手製器, 工夫較難, 修槍工夫, 亦應學習, 此四人應分隸兩局學習.

一. 汽機鍋爐廠, 須選年二十上下者四人, 分隸學習汽機、煤爐之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一. 熟鐵廠, 須擇該國素業鐵工者四人, 分隸學習製造、鍋爐. 該國熟鐵工匠原不乏人, 有樣自可仿造, 惟於鍋爐、釘鐵工夫, 未易學習.

一. 火器廠, 須擇年十五六者四人, 分隸學習, 配合拉火、暴藥各科.

一. 電氣房, 須擇年二十以內者二人, 專隸南局學習. 電引、電機、電表各種技藝, 為水雷、引電之用. 蓋電學理極精微, 機關奧妙, 最難深造. 如聰明過人學之, 亦可漸入門徑.

一. 製火藥, 應擇該國向習此藝者三人, 專隸東局學習, 不必年輕, 為其已入門徑, 自知慎重, 則進益較易.

一. 製鎁水,[17] 應擇年二十內外聰穎者一人, 專隸東局學習.

以上共計約三十八人, 分入兩局學習. 居住之處, 兩局各有工匠住房, 無庸賃買.

練兵、購器兩事, 該國賚咨官書稱："王城現兵三萬, 馬兵居其一, 步兵居其九." 此時既據練兵, 應分砲隊、馬隊、步隊, 為用器之則. 除馬隊三千,已有成額, 則步兵二萬七千之中, 應分三千為砲隊, 砲可少用, 而砲兵不可少練也. 馬兵三千, 應備馬槍. 若全用後膛, 則經費太鉅, 不用後膛, 則禦侮無資, 擬以前膛、後膛各半, 後膛用德國毛瑟槍, 前膛用英國恩費爾來福槍. 其餘步隊二萬四千, 以四千人分執雜器, 應以二萬執槍, 即或用一半後膛. 其經費已恐難措, 應以三千桿為後膛槍, 一萬七千桿為前膛槍, 費用較省, 由漸而入, 另或能支. 砲位一項, 專宜求精, 與其購買英、法之前膛砲, 不若專購德國克鹿卜後膛鋼砲. 該國沿海要隘, 無從懸擬. 若以行仗論之,[18] 至少亦須四磅窄輪後膛砲十八尊, 過山後膛砲十八尊,[19] 連子彈價值, 費用已須六七萬兩, 合前·後膛槍槍子、銅帽各款, 已約二十餘萬. 而沿海要隘之需, 仍不在此數之內. 是在將來循次量力舉行, 更及水雷、電機之學.

至於練兵, 似宜先來學而復往教. 槍隊、砲操法, 各有不同, 若先派數員往教, 不但目前無器可習, 即步伐止齊、口令、手法殊難遍及, 且言語莫通, 事事倚仗通事. 是則教者之情, 難以周遠, 而學者之心志, 亦無所適從, 必須先選該國精明强壯之弁兵數千, 分隸天津槍隊、砲隊, 朝夕專習. 俟槍砲購到, 亦將期年, 而一年之中, 該弁兵耳聞目見, 志求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得, 必能麤有規模. 然後隨同所派之員, 帶器同歸, 分司幫教, 則教者易教, 而學者易學矣. 此練兵一層, 必須先來學而後往教者也. 合將約議代購槍砲經費, 附開於後.

擬以三千人為砲兵.
用克鹿卜四磅後膛砲十八尊, 連車架, 每尊約價 銀一千五百兩, 計銀二萬七千兩. 每砲配子三百箇, 共五千四百箇, 約價銀一兩, 計銀五千四百兩. 用克鹿卜兩磅過山後膛砲十八尊, 每尊配子三百箇, 價與前相等.

擬以三千人為馬兵
用後膛馬槍一千五百桿, 每桿約價銀六兩, 計銀九千兩. 每槍配子五百粒, 共七萬五千粒, 每千粒約價銀二十二兩, 計銀一萬六千五百兩. 用前膛馬槍一千五百桿, 每桿約價銀三兩六錢, 計銀六千五百四十兩.

擬以二萬人為洋槍步兵
用後膛槍三千桿, 每桿約價銀九兩, 計銀二萬七千[兩]. 每槍配子五百粒, 共一百五十萬粒, 每千粒約價銀二十二兩, 計銀三萬三千兩.
用前膛槍一萬七千桿, 每桿約價銀三兩, 計銀五萬一千兩. 共配銅帽一千七百萬粒, 每萬粒約價銀八兩, 計銀一萬三千六百兩.
以上共計銀二十二萬一千四百四十兩.

12) 행관(行館)은 관원이 밖으로 출행하였을 때 임시로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데, 원래 직예총독의 아문은 보정부(保定府)에 있지만, 북양대신을 겸한 이홍장은 천진에 머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관이라는 명칭이 출현하였다.
13) 모슬(毛瑟)은 마우저(Mauser)를 가리킨다. 모슬사(毛瑟社)는 1811년 프리드리히 1세가 프러시아의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오벤도르프(Oberndorf)에 세운 군수공장이다. 빌헬름 마우저(Wilhelm Mauser)는 여기에서 1867년 독일군에 채용되는 모슬 소총(71식 보창)을 제작하였다.
14) 재(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또는 주접 뒤에 부편(附片. 片奏)으로 간단한 내용을 덧붙일 때 쓰는 용어다. 가능하면 앞으로 '추가합니다'로 통일하겠다.
15) 원문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朝請'은 없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월 28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본 대신은 광서 6년 9월 27일 천진행관에서 諭旨를 받들어 조선의 일체 상황을 알아보고, 제조 학습 및 연병, 기계 구매에 관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주접을 역참을 통해 올렸습니다. 또한 조선에서 하급 문·무 관원을 선발하여 중국에 와서 제조 학습 및 조련하게 하는 일에 관하여 논의한 장정 4조를 附片으로 아울러 올렸습니다. 이에 마땅히 원고를 초록하여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삼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주접 원고」 초록

1. 유지를 받들어 조선의 일체 상황을 묻고, 제조 학습 및 연병과 기계 구입에 관한 일을 적절하게 처리한 것에 대하여 삼가 주접을 올려 답변을 드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신은 군기대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寄信上諭를 받았습니다.

9월 6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이홍장이 조선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와 제조를 학습할 것을 요청한 일에 유지를 받들어 처리하였다는 주접을 올렸다. 조선은 동북의 藩服으로 이와 잇몸처럼 서로 의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조선이 현재 武備를 강구하고자 하여, 기술자를 천진에 파견해 기계와 제조를 학습하겠다고 청해왔는데, 응당 청한 대로 하여 허락하여 잘 이끌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예부에 지시하여 통역관을 선발하여 조선의 상주문전달관[齎奏官] 卞元圭와 함께 천진에 가게 하였다. 이홍장으로 하여금 일체의 상황에 대해 물어본 다음 다시 주를 올려 처리하게 하라. 李裕元이 이홍장에게 보낸 서신에 대해서도 또한 상황을 잘 헤아려 답장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李裕元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16) 향(餉)은 원래 군인에게 매일 지급하던 봉록을 가리킨다. 따라서 군향(軍餉)이나 향항(餉項)은 군비를 가리킨다.
17) 강수(鏹水)는 강산(强酸)으로 유산(硫酸)·초산(硝酸)·염산(盐酸) 등을 가리킨다.
18) 행장(行仗)은 사전의 해석으로는 기물(器物)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혹시 사정거리를 가리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19) 과산(過山)도 뜻이 모호하다. 산을 넘는다는 뜻으로 보면 아마 야전포를 가리키는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라.

이상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황상께서 藩邦을 아끼고 근심이 없을 때 미리 대비하시는 지극한 뜻을 삼가 우러러보며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윽고 예부에서 유지를 받들어 통역관을 파견하여 조선의 상주문전달관 卞元圭와 함께 보내 9월 16일 천진에 도착하였습니다. 신은 곧 天津海關道 鄭藻如,[20] 永定河道 游智開 및 辦理機器·軍械局의 候補道 許其光·劉含芳, 候補道 王德均 등에게 지시하여 먼저 함께 [조선의 상황] 일체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도대 등은 연일 그와 필담을 나눠 조선의 대략적인 정세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機器局·製造局·軍械所 및 西沽의 화기·화약 비축 창고로 데리고 가서 두루 관람시켜 실마리를 알게 하였습니다. 신은 뒤이어 9월 22일 卞元圭를 불러내어 만났는데, 또한 그와 필담을 매우 오래 나누었습니다. 그는 시국에 상당히 신경을 쓰며 한쪽에만 사로잡혀 선입관을 고집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으며, 그 언사의 취지를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뜻을 깊게 지니고 있어, 조속히 사졸을 정돈하여 훈련시키고 利器를 구매·제조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외국의 침략과 압박에 두려워하고, 사태가 급박하여 기다릴 수 없다고 보는 상황이나, 우리의 성원에 기대 절실하게 보호를 구하는 뜻은 자주 그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에 정조여 등을 감독하여 때와 장소 및 조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바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계 제조는 반드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練兵과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연병을 하면서 사용할 기계는 갑자기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또한 이것은 기계 구매와도 관련이 됩니다. 현재 조선에서 기계 제조를 모색하고 있으니, 응당 쉽고 다급한 것을 골라 시행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탄환·화약 및 무기 수리 기계는 반드시 적절하게 헤아려 구입해야 합니다. 조선 왕성에 현재 병력 3만이 있는데, 마땅히 포병·기마병·보병에 따라 사용하는 기계의 표준을 나눠야 합니다. 포병은 크루프 後裝式 철강포로 하고, 기마병은 前裝式·後裝式 소총을 각기 반씩 갖추게 하며, 보병의 3분의 2는 전장식 소총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후장식 소총을 사용하게

20) 鄭藻如(1824~1894)는 자가 지상(志翔), 호가 예헌(豫轩. 玉轩)으로 광동성 향산(香山. 오늘날의 中山市) 출신이다. 1851년 举人에 합격하였고, 1854년에는 동향총국(东乡总局)의 단련(团练)을 조직하여 반란 진압을 도운 공로로 내각중서(内阁中书) 직함을 받았다. 이후 이홍장·증극번 등과 알게 되면서 막료로 뽑혀 양무·외교 사무에 간여하게 되었는데, 1869년 상해의 강남기계제조국 방판(帮办)이 되었고, 1878년 천진해관도(天津津海关道)로 임용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합니다. 연해 요충지의 軍需나 雷·電機學 또한 조선에서 순차적으로 역량을 헤아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선에서 와서 배우거나 가서 가르치는 문제를 보자면 조선 군신의 처음 의도는 우리 쪽에서 가서 가르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義州와 奉天에서 새로 설치한 安東縣은 단지 압록강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저들의 의도는 기계를 구매하고 교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중국이 능력 있는 인원을 선발하여 파견하면 安東에 공장을 설치하여 기계 제조와 병력 훈련의 요체를 傳習받게 되면, 언제든지 천진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통하고 견학하는 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서양에서 구매해도 해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간이 걸리니, 응당 조선에서 먼저 총명한 견습공을 선발하여 천진에 보내면 이미 갖추어져 있는 기기를 가지고 여러 기술자들의 기교를 배울 수 있으니 [이 방법이] 절반의 노력으로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이나마 그 입문을 깨우친 다음에 구입한 기계와 함께 귀국하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 또한 쉽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 제조는 마땅히 와서 배운 다음 이후에 가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총부대와 포병부대의 훈련 방법은 다릅니다. 만약 먼저 몇 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가서 가르치게 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제식훈련이나 구령, 신호 등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의 하급무관 수십 명을 선발하여 천진에 보낸 다음 각 부대에 분산 배치시켜 아침저녁으로 훈련시키면 항상 보고 들으면서 익숙해져 습관이 될 것이라 소득이 비교적 많을 것입니다. 소총과 대포가 구매되면, 그 다음에 중국 측 교련 인원과 함께 돌아가 그들이 교육을 도와주면 차츰 서로 번갈아 傳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병 역시 마땅히 와서 배우고 가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당 도대 등이 이러한 몇 가지 문제를 조선 사신과 왕복하면서 상의하여 그 節略을 만들었는데 모두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행의 느리고 빠름, 기계 구매의 많고 적음은 조선 측 경비의 넉넉함과 부족함을 살펴야 하는 것으로 조선 사신이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응당 돌아가서 국왕에게 보고하여 대신과 적절하게 상의·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신은 기기국에 지시하여 먼저 전장식 라이플 소총 10자루와 거기에 맞는 탄약, 탄피를 헤아려 짝을 맞추고, 후장식 기병용 마우저 소총 10자루와 탄환 2천 개를 해당 사신에게 주어 휴대하여 귀국하게 함으로써 조선이 그 사양을 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 알게 하였습니다. 이미 卞元圭에게 한양으로 돌아가 유지를 기다리게 한 것 외에, 삼가 천진에 와서 기계 제조 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학습, 연병을 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한 각 조항을 초록하여 올려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삼가 예부에 지시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그 편의 여부를 직접 헤아려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유원이 신에게 보낸 서신 또한 즉 적절하게 답변을 보내 알아들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조선의 기계 학습 및 제조와 연병, 기계 구매에 관하여 유지를 받들어 처리한 것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역참을 통해 답장을 올리니,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시고 훈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6년 9월 일.

2. 추가합니다. 신이 천진해관도 정조여 등을 감독하여 조선의 기계 제조 및 연병에 관한 일을 묻고 논의하여 대략적인 기준을 갖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접을 갖추어 아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신 卞元圭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무비를 조속히 강구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지체된 것은 실로 外蕃이 사사로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청조의 금지령을 위반하기 때문이었습니다.[21] 시세가 이미 긴박해져 비로소 감히 하소연하게 되었는데, 혹시 너무 늦어 급한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선의 義州는 營口로부터 겨우 600里 떨어져 있으며, 영구에서 輪船을 타면 천진에 직접 도착하는 데 며칠이면 되며, 혹은 천진의 입구에서 바다로 동쪽을 향해 가면, 조선 황해도의 長淵·豐川府에 곧바로 도달할 수 있으니, 장래 기계 운송과 문·무 관원의 유학은 海路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를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육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하여 중국에 오는 것은 기존] 定例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긴요한 군수 문제이므로 지나치게 그에 얽매여 도리어 그 嚮化의 정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정조여 등에게 지시하여 해당 사신과 장정 4조를 논의하게 함으로써 융통하는 가운데 제한하는 뜻을 대략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外藩에서 중국에 사람을 파견해

21) 이것은 청 초기 조선과의 관계에서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또는 양국간의 사대-자소가 확립되기까지 청조가 조선의 군비 강화 움직임(이를테면 築城이나 화약 재료인 硫黃·焰硝의 밀수) 등에 대해 꾸준히 감시하고 견제하였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홍성구, 「청질서의 성립과 조청관계의 안정화 : 1644~1700」, 『東洋史學研究』 제140집, 2017을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비를 학습하는 것은 본래 처음 있는 일이므로 응당 시세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인원의 선발·파견 조항은 그 여비를 직접 준비하게 하여 경비 제공의 번거로움을 피하되, 여전히 거주지를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여 위로하고 품어주는 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왕래하는 도로에 관한 조항은 다만 배우러 오는 하급 문·무관원과 병졸, 기술자의 왕래, 기계 운송에 대해서는 잠시 해로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밖에 조공 및 일상적인 公事는 여전히 반드시 기존의 법도를 준수[하여 육로로 왕래]하도록 하여, 원칙과 임기응변 사이에서 조절하면 또한 그다지 심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증명서 발급에 관한 조항은 조사에 대비하고 단속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며, 수행원을 반드시 많이 파견할 필요는 없고, 또한 사사로이 판매용 화물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면 관세의 결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문을 여러 방면에 나누어 자문으로 보내는 조항은 만약 예전의 원칙에 따른다면 조선이 보내온 공문은 반드시 예부를 통해 다른 부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병, 기계 제조 및 학습, 기계 구매에 관한 사무는 모두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니, 설령 모든 일을 예부에서 검토한 다음 전달하게 하면, 예부에 번거로움이 늘어나는 데다가 일 처리의 시기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선에 지시하여 예부 및 북양아문에 각기 자문을 나누어 보내게 함으로써 우여곡절을 피하게 하고 신속함을 보일 수 있게 하면 여전히 신이 수시로 주를 올려 처리하고자 합니다. 무릇 이 네 가지 사항은 모두 이미 여러 차례 고려를 거듭하면서 정밀하고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삼가 논의한 유학 관련 장정을 초록하여 올리니,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附片을 갖추어 주를 올립니다.

광서 6년 9월 일.

3. 삼가 조선의 자문전달관 卞元圭와 천진해관도 鄭藻如 등이 조선의 문·무 관원이 와서 기계 제조 및 학습과 연병하는 것에 관해 논의한 장정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 38명을 선발·파견하여, 東·南 양국에 나누어 배치하여 제조를 학습하게 하고, 두 명의 위원이 나누어 관리한다. 통역관으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東局이 2명, 南局이 1명을 사용한다. 또한 총명하고 건장한 병사 40명을 선발·파견하여 親軍의 槍砲營에 나누어 예속시켜 학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련 시키고, 역시 두 명의 위원이 나누어 관리한다. 통역관으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2명이다. 이상 도합 87명을 정액으로 하고, 여비와 식비 등은 모두 조선에서 직접 준비하되 다만 거주지는 중국이 빌려준다.

2) 조선국 조공 사신이 왕래할 때 통과하는 도로는 반드시 영원히 기존 법규를 지켜 [육로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이번에 인원을 파견하여 학습하게 된 것은 파격적인 조치에 속하므로, 만약 직접 해로를 따라 움직이면 더욱 편하고 신속할 것이다. 게다가 제조·훈련 등의 일은 1~2년 안에 당연히 그 입문을 탐구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는 않을 것이니, 주접과 자문을 통해 적절하게 변통하여 잠시 해로로 왕래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통은 조정에서 처리하는 [조공 등의] 일상적인 공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22] 천진에 와서 배우는 하급 무관과 병졸, 학도, 위원, 통역, 수행원 외에 그 밖의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은 이것을 선례를 삼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

조선이 중국에 대신 무기·기계 등을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매하여 도착한 다음 중국에서 조선에 자문을 보낸 다음 비로소 위원을 해로로 파견하여 수령해 갈 수 있다. 위원, 문·무 관원, 학도, 통역 등은 북양대신아문에서 [그 기입 사항을 써넣지 않은] 공백 증명서를 발급하여 조선에 넘겨주면, 조선에서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입하여 발급하고, 또한 그 명단을 책으로 작성하여 북양대신아문 및 예부에 올려보내 비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위에 열거한 사람들은] 중국에 도착한 후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교육에 열중해야 한다. 만약 혹은 통제를 벗어나면, 중국 관원이 조선에서 파견해 온 위원에게 넘겨 조사·처리하게 한다. 수행원은 꼭 필요한 수에 그쳐야 하며 많이 파견할 필요는 없고, 또한 사람 수에 따라 각기 증명서를 발급하고, 명단 끝에 덧붙여 기록하며, 모든 통제를 지켜야 하며, 사사로이 판매용 및 다른 화물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3) 연병, 기계 제조 및 학습, 기계 구매 등 軍務 관련 공문은 조선 국왕이 예부 및 북양대신아문에 나누어 자문을 보냄으로써 그 처리를 편하게 한다. 삼가 조선에서 와서 기계 제조 및 연병에 대해 배우는 문제의 각 조항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여 살펴보시도록 삼가 올리는 바입니다. 제조에 관한 일은 포함되는 분야가 너무 많아 어려움과 쉬움, 늦음과 빠름을 나누어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각종 공장을 창설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비용과 군비는

22) 원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듯하여 그 뜻이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앞서도 언급하듯이 종래의 조공 사무나 공문 전달 등은 반드시 육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약 수천만이었고, [이런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입문을 찾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반드시 직접 제조해야 하는 것과 직접 제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선을 위해 계획하자면 마땅히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서 다급한 것을 골라 시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소총과 대포는 이미 구매하기로 하였지만, 탄환은 반드시 계속해서 따로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로지 구매에만 의존한다면 반드시 늦고 빠름에 의지하기 곤란한 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직접 제조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기는 항상 훼손되어 수리할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직접 제조해야 하는 것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대개 먼 길을 가자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높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는 후장식 소총 탄환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밖에는 반드시 증기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응당 인력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선택하는 편이 적절하며, 증기로 움직이는 하나둘 갖추어 이동용 선반으로 깎고 구멍을 뚫게 하면 될 뿐입니다. 무기 가운데 화약이 가장 중요한데, 서양 화약의 뛰어난 점은 硝石을 완벽하게 정제·압착하여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그 연마공정은 절구로 찧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인력을 이용하는 절구를 사용하면] 기계용 맷돌선반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염초 정제 기구만을 구입하고 압착 기구는 모두 인력을 사용하면 그 비용은 대략 10에 6~7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총 탄환과 총포 탄피를 제조하는 것은 전체 기계를 구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각종 무기와 기계 구입에 관한 논의가 결정되면, 즉 조선의 나이 15·16세에서 20세인 사람 수십 명을 선발하고, 兩局에 나누어 들여보내 각종 기예를 학습시킵니다. 선택된 학도는 설계·증기기관 이외에는 마땅히 조선에서 종전부터 구리·철·나무 수공에 종사한 기술자 가운데 생각이 민첩하고 뛰어난 사람을 골라 파견해서 배우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을 파견하여]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조학은 끝이 없을 정도로 무궁하게 넓기 때문입니다. 1년 후 대략 요령을 파악하기를 기다리고, 또한 구매한 기계가 도착하였을 때 같이 귀국하게 하면 스스로 파악한 것이 있어 망연자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본래 설계[畫圖: 디자인]는 수학[算學]에 기초하고 있고, 기계 제조의 근본이므로, 반드시 나이 15·16세의 총명하고 각오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文義에 능통한 사람 4명을 선발하여 나눠서 학습시켜야 합니다. 工程師의 재능은 여기서 나오며, 그 학문의 경지는 끝이 없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木型 공장. 무릇 한 가지 물건을 제조하는 데 반드시 먼저 木型을 만드므로, 마땅히 조선의 木匠 가운데 지력이 있으면서 나이가 20세 내외인 사람 4명을 선발하고, 나누어 배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6) 모래 주형공장[翻沙廠]. 이 기술은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리와 쇠를 녹이는 것은 안목을 길러 불꽃 색깔을 구별하고 재료를 배합해야 하므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이가 젊고 혈기왕성하고 체력이 있고 지력이 있는 사람 4명을 선발하고, 나누어 배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7) 탄환공장, 구리코일[捲銅] 공장. 기계가 복잡하여 마땅히 4명을 선발하고, 東局에 들어가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8) 기계공장[機器廠]은 반드시 넉넉하게 선발하여 파견해야 하는데, 마땅히 나이 15·16세인 사람 4명을 선택하고, 선반[車床]에 따라 그 스승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반 기술은 기계로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므로, 선반용 칼날을 잘 사용하고, 톱니바퀴를 잘 분배할 수 있게 되어야 초보에 입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멍뚫기는 끌과 송곳을 사용하여 손으로 기계를 제작하므로, 기술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소총 수리 기술 또한 학습해야 하므로, 이 4명을 兩局에 나누어 배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9) 증기보일러 공장[汽機鍋爐廠]은 반드시 나이 20세 이상인 사람 4명을 선발하고 증기, 석탄난로로 나누어 배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10) 정련공장[熟鐵廠?]은 반드시 조선에서 예전부터 鐵工에 종사한 사람 4명을 선발하고, 제조·보일러로 나누어 학습시킵니다. 조선의 정련 기술자는 본래 부족하지 않으니, 모형을 직접 모방할 수 있을 터이지만, 다만 보일러와 펀칭[釘鐵?] 기술을 학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1) 화기공장[火器廠]은 반드시 나이 15·16세인 사람 4명을 선발하여 나누어 학습시키고, 도화선[拉火]·폭약 분야를 배합합니다.

12) 전기방[電氣房]은 반드시 나이 20세 이내인 사람 2명을 선발하여 南局에 전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電引·電機·電表 등 각종 기술은 水雷·引電에 쓰기 위한 것이다. 電氣學은 그 이치가 아주 정밀하고, 기관이 오묘하여 깊이 공부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총명함이 남을 능가하는 사람이 배워야 역시 점차 입문할 수 있습니다.

13) 화약 제조는 응당 조선에서 예전에 이 기예를 배운 사람 3명을 선택하여 東局에 전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나이가 젊을 필요는 없으며, 이미 입문하여 스스로 신중함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알고 있으면 학습의 진보가 비교적 쉽습니다.

14) 强酸[鏹水] 제조는 마땅히 나이 20세 내외로 총명한 사람 1명을 선발하고 東局에 전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도합 약 38명을 兩局에 나눠 배속시켜 학습하게 해야 합니다. 거주지는 兩局에 각기 기술자의 주택이 있으니 임대하고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병과 기기 구매 두 가지 일은 조선의 자문전달관의 서신에 따르면 왕성에 현재 병력 3만이 있는데, "기마병이 그중 1을 차지하고, 보병이 그중 9를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 연병을 하자면 마땅히 포병·기마병·보병을 구분하여 기계 사용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마병 3천이 이미 기존 정원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보병 2만 7천 가운데 응당 3천을 포병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대포는 그 수가 적어도 되지만, 포병 훈련은 결코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마병 3천은 응당 기병용 소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모두 후장식 소총을 사용하면 경비가 너무 커지지만, 후장식 소총을 사용하지 않으면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전장식과 후장식을 각기 반씩으로 하고, 후장식은 독일의 마우저 소총을 사용하고, 전장식은 영국 엔필드 라이플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보병 2만 4천 가운데 4천 명은 雜器를 나눠 주고, 2만 명이 소총을 잡게 하는데, 혹은 절반은 후장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경비는 아마 마련하기 곤란할 터이니, 응당 3천 자루는 후장식으로 하고, 1만 7천 자루는 전장식으로 하면 비용이 비교적 절약되고, 점차 후장식으로 교체해 나가면 혹은 지탱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포 구입은 응당 정교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의 전장식 대포를 구입하느니 차라리 독일의 크루프 후장식 철강포를 구입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 대포는?] 조선의 연해 요충지에는 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사정거리(?)로 따진다면, 최소한 역시 반드시 4파운드짜리 좁은 차륜의 후장식 대포 18문, 후장식 야전포(?) 18문이 필요하며, 포탄과 함께 계산하면 비용이 이미 6~7만 냥이고, 전장식·후장식 소총과 탄환·탄피 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20여 만 냥이 됩니다. 그러나 연해 요충지에 설치하는 비용은 여전히 이 숫자 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래에 순차적으로 힘을 헤아려 거행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더욱 나아가 수뢰·전기학에 미쳐야 할 것입니다.

연병에 관해서는 마땅히 먼저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총 부대와 포술은 각기 다른 점이 있는데, 만약 먼저 몇 사람을 파견하여 가르치고자 한다면, 현재 아직 익힐 수 있는 무기·기구도 없고, 제식훈련이나 구령·신호 등도 두루 미치기 어려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뿐만 아니라, 언어도 통하지 않아 모든 일을 통역에게 의지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 두루 멀리 미치기 어려우며, 배우는 사람의 心志 또한 믿고 따를 바가 없으니, 반드시 먼저 조선의 총명하고 건장한 하급무관과 병졸 수천을 선발하여 천진의 보병·포병부대에 나누어 배속시키고 아침저녁으로 전문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소총과 대포를 구매하여 받으려면 또한 장차 1년이 걸리는데, 1년 동안 해당 무관·병졸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의지로 구하고 마음으로 얻는다면 반드시 대략적인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파견된 이 인원들과 기계가 함께 돌아가게 하되 [같이 따라간 중국] 교관이 분야를 나누어 가르침을 도와주면,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연병은 한층 반드시 먼저 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가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마땅히 소총과 대포를 대리 구매하기로 약속하여 논의한 경비를 뒤에 덧붙여 열거합니다.

3천 명을 포병으로 할 경우.
크루프 4파운드짜리 후장식 대포 18문을 사용, 거치대[車架]와 함께 가격은 약 대포 1문당 銀 1,600냥으로 총액 은 27,000냥. 대포 1문당 포탄 300발이면, 모두 5,400발로 가격은 약 포탄 1개당 은 1냥으로 총액 은 5,400냥.
크루프 2파운드짜리 후장식 야전포(?) 18문을 사용하면, 1문당 포탄 300발에, 가격은 전과 동일.

3천 명을 기마병으로 할 경우.
후장식 기병용 소총 1,500자루를 사용하면, 1자루당 가격은 약 은 6냥으로, 총액 은 9천냥. 1자루당 탄환 500발로 모두 7만 5천 발을 구입할 경우 1천발당 탄환 가격은 약 은 22냥으로, 총액 은 16,500냥.
전장식 기병용 소총 1,500자루를 사용하면, 1자루당 가격은 약 은 3냥 6전이며, 총액 은 6,540냥.

2만 명을 서양식 소총 보병부대로 할 경우.
후장식 소총 3천 자루를 사용하면, 1자루당 가격은 약 은 9냥으로, 총액 은 27,000냥. 1자루당 탄환 500발로 모두 150만 발을 구입하면 1천발당 탄환 가격은 약 은 22냥으로 총액 은 33,000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장식 소총 1만 7천 자루를 사용하면, 1자루당 가격은 약 은 3냥으로, 총액 은 51,000냥.
탄환 1,700만 발을 합하면, 1만발당 가격은 약 은 8냥으로 총액 은 13,600냥.

이상 도합 은 22만 1,440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문서번호 : 2-1-2-04(352, 459b-460b)

사안 : 조선의 하급 문·무 관원이 천진에 와서 무비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0장을 발급하였음을 자문으로 보고합니다(咨報給發朝鮮員弁來津學習武備憑票十張).

첨부문서 : 1.「증명서(憑票)」: 조선의 하급 문·무 관원이 해로로 천진에 와서 무비를 학습하는데, 지나는 길의 군 부대와 세관에서는 점검 후 통과시켜 주십시오(朝鮮員弁從海道來津學習武備, 沿途營汛, 關卡查驗放行).

날짜 : 光緒七年二月三日(1881년 3월 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津海關道鄭藻如等會詳稱：

竊職道等於光緒七年正月二十日, 接到永定河道游道函稱：

朝鮮官李容, 肅為學習武備等事, 開列各條, 來津稟候中堂示遵.

等因. 准此. 查各條內有請給憑票一條, 以為朝鮮國學徒來津沿途呈驗之用, 業蒙俯准給發. 茲據李容肅備具押領, 請領憑票十張, 賫回該國呈收, 理合據情詳請憲台俯賜給發憑票十張, 以便轉交李容肅祗領, 實為公便.

等情. 到本大臣. 據此. 查朝鮮國派人由海道來津學習武備等事, 請給沿途憑單十張, 已於本年正月二十八日, 函交該國來員李容肅祗領. 除批示外, 相應咨明. 為此合咨貴總理衙門, 謹請查照備案施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照録「憑單」

欽差北洋大臣全銜李□□, 為給發憑單事.

照得本爵閣大臣於光緒六年八月二十九日, 奉上諭：

禮部奏, 據朝鮮國王懇請派人來津學習製器、練兵等事, 業經酌議章程覆奏.

九月二十九日奉旨：

所議該國來學員弁章程四條, 本日已諭令禮部咨照朝鮮國王酌辦矣.

等因. 欽此. 欽遵各在案. 查原奏章程內聲明："徑從海道, 更覺便捷, 除來學之弁兵、學徒、委員、通事、從人而外, 別人、別事不得援照辦理, 亦不私帶商販及一切貨物"等語. 茲准朝鮮國派來□□人, 由□□前來天津, 合給憑票. 凡經過北洋沿海營汛、關卡,[23] 一體查驗放行, 不得留難阻滯. 該□□亦不得夾帶商販貨物, 致干查究. 須至憑票者.

光緒七年　月　　日給

本爵閣大臣　　限到津日繳銷[24]

2월 3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천진해관도 정조여 등이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려왔습니다.

저희 도대 등은 광서 7년 정월 20일에 영정하도 유지개의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받았습니다.

조선 관리 이용숙이 무비 학습 등에 관한 각 조항을 열거하면서 천진에 와서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고 그 지시를 기다려 따르고자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사해보니 각 조항 내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조선국 학도가 천진에 오면서 연도에서 제출·검검을 받기 위한 용도이며, 이미 발급을 허락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용숙이 서명을 한 영수증을 갖추어 증명서 10장을 받아서 귀국하겠다고 수령을 요청해왔습니다. 마땅히 상황에 의거해 李 中堂大人께 증명서 10장의 발급을 허락해주셔

23) 영신(營汛)은 청대 녹영병의 부대 단위·주둔지를 가리키며 관잡(關卡)은 세관이나 그 분소(卡. 分所)를 가리킨다.

24) 격소(繳銷)는 그 문서를 반납하여 그 내용, 즉 문서의 효력을 말소한다는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이용숙에게 전달해 받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보고를 본 대신이 받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조선국에서 해로를 통해 인원을 천진에 파견하여 무비 등의 일을 학습하는데, 연도에서 사용할 증명서 10장의 발급을 요청해왔으므로, 이미 올해 정월 28일에 조선 위원 이용숙에게 서신으로 넘겨주어 받아가게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 마땅히 자문으로 귀 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총리아문에 자문을 보내야 하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증명서(憑單)」 초록

欽差北洋大臣銜을 지닌 李鴻章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본 대신은 광서 6년 8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주를 올렸다. 조선 국왕이 천진에 인원을 파견하여 기계 제조와 연병 등에 관한 일을 학습할 수 있기를 요청해온 것에 대해, 이미 관련 장정을 논의하여 답장 상주를 올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 9월 29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와서 배우는 문·무 관원에 관해 논의한 장정 4조는 이미 예부에 지시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려 적절하게 헤아려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 주접의 장정 내에서 "만약 직접 해로를 따라 움직이면 더욱 편하고 신속할 것이다.…… 와서 배우는 하급 무관과 병졸, 학도, 위원, 통역, 수행원 외에, 그 밖의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은 이것을 선례를 삼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으며, 또한 사사로이 상인 및 일체의 화물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국에서 파견한 □□명은 □□사유로 천진에 오고자 하니 마땅히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무릇 북양 연해의 군 부대와 세관은 이들에 대해 이 증명서를 점검하여 통과시키야 하며, 구실을 만들어 붙잡고 지체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당 □□도 판매용 화물을 몰래 끼고 들어와서 나중에 [발각되어] 조사·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광서 7년 월 일 발급.

본 대신 □□□ 천진에 도착하는 날 반납하여 말소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문서번호 : 2-1-2-05(353, 461a-462a, 467b-472b, 475a-480a)

사안 : 조선의 委員 李容肅이 天津을 방문하여 직접 만나 사정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조선이 서양과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朝鮮委員李容肅來津稟謁, 已開導該國與西洋立約通商各事).[25] [省略]

첨부문서 : 1. [省略][26]

2. 「조선 委員 李容肅과의 『問答節略』(與朝鮮委員李容肅『問答節略』)」 : 朝·日 교섭 상황을 탐문하고 아울러 조선 조정에 조속히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을 하고, 하급 문·무 관원을 天津에 보내 武備 관련 학습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探詢韓日交涉情形並勸導韓廷, 早與各國立約通商及派弁來津學習武備).[27] [省略]

3. 「조선 原任太師 李裕元로부터 온 서신 및 禮單(朝鮮原任太師李裕元來函, 附禮單)」 : 하급 문·무 관원을 천진에 파견하여 武備 학습을 시키는 일에 대해 국왕께서는 은덕을 내려주신 뜻에 깊이 감사를 표시합니다. 다만 준비하는데 아직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派員弁赴津武備事, 國君深感玉成德意. 惟備辦尙稍需時日).[28] [省略]

4. 「조선 原任太師 李裕元으로부터 보내는 답신(覆朝鮮致任太師李裕元函)」 : 武

---

25) 자료의 제목은 「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이다.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5~136쪽, 번역문 147~148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26)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첨부문서 1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6쪽, 번역문 150~151쪽).

27)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첨부문서 3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9~141쪽, 번역문 156~159쪽).

28)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첨부문서 4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1~142쪽, 번역문 159~16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備 진흥이 진실로 당장 힘써야 할 급무이지만, 나아가 선입견을 제거하고 원대한 계획을 확충하여 조속히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하기를 바랍니다(振興武備, 誠爲當務之急, 更希蠲成見, 擴宏規, 早與各國議約通商)」.[29] [省略]

5. [省略][30]

6. 「北洋大臣이 조선이 자문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답변한 내용(北洋大臣酌覆朝鮮詢問各條)」: 중국 상인이 조선의 각 개항장에 가서 무역을 하고, 부산·원산에 세관을 설치하고 관세를 정하며, 武備 학습을 할 하급 문·무 관원이 바닷길로 천진으로 올 때의 증명서 검사 및 일본 국서에 답할 때의 호칭 등의 사안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였습니다(核覆華商赴朝鮮各口貿易, 釜山, 元山設關定稅, 學習武備員弁海道來津之領照稽查及答日本國書稱謂各事).[31] [省略]

날짜 : 光緒七年二月三日(1881년 3월 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省略]

---

29) 이 자료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첨부문서 5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2-143쪽, 번역문 161~162쪽).

30) 자료의 제목은 「(조선을) 대신하여 기초한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조약(代擬朝鮮與各國通商約章)」: 馬建忠이 朝鮮과 각국 사이의 通商章程 초안 10개 조항을 대신 기초하였습니다(馬建忠代擬朝鮮與各國通商章程底稿十款)이다. 이 자료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첨부문서 6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3~144쪽, 번역문 162~164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31) 이 자료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문서번호 : 2-1-2-06(355, 483a-490a)

사안 : 기회를 보아 각국과 조약을 논의하고 통상을 하도록 조선에 권고하였습니다(相機開導朝鮮與各國議約通商). [省略]

첨부문서 : 1.「조선에서 문의한 각 조항에 대한 北洋大臣의 회답(北洋大臣酌覆朝鮮詢問各條)」: 중국 상인이 각 개항구로 가서 무역하는 문제, 부산·원산에서 세관을 설치하고 세금을 정하는 문제, 천진에 가서 武備 학습을 할 하급 문·무 관원의 증명서 수령 문제 및 일본에 답할 국서의 명칭 문제 등(華商赴各口貿易, 釜山元山設關定稅, 赴津習武備員弁領照及答日本國書稱謂等事)」.[32] [省略]

날짜 : 光緒七年二月初五日(1881년 3월 4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五日, 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稱：

奏為朝鮮委員來津請示, 斟酌答覆, 相機開導, 恭摺仰祈聖鑒事.[33] [省略]

32) 이 자료는『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 : 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그리고 바로 위의 5) 문서번호 : 2-1-2-0의 첨부문서 6(생략)과 같은 내용이다. 다만 위의 문서들은 사실상 金弘集과 李鴻章의 문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여기 문서는 똑같은 내용을 제1조에서 제7조로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는 차이가 있고, 앞부분에 "조선의 자문에 답한 각 조항을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謹將酌覆朝鮮詢問各條, 照繕清單, 恭呈御覽)"라는 구절과 끝부분에 "광서 7년 2월 4일 군기대신은 '읽어보았다'는 황상의 유지를 받았다(光緒七年二月初四日, 軍機大臣奉旨 : '覽.' 欽此)"는 구절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照錄「淸單」: [省略]

33)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8) 문서번호 : 2-1-1-18의 첨부문서와 중복된다(원문 171~172쪽, 번역문 173~17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문서번호 : 2-1-2-07(357, 491a, 493a-498a)

사안 : 조선 위원이 천진에 와서 자문을 요청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을 하고 기회를 틈타 권고하였다는 점을 北洋大臣의 奏摺을 자문으로 보냅니다(咨呈北洋大臣具奏, 朝鮮委員來津請示, 斟酌答覆, 相機開導摺).

첨부문서 : 1. [省略].[34]

2. 「조선에서 물어온 각 조항에 대한 北洋大臣 李鴻章의 답변(北洋大臣李鴻章酌覆朝鮮詢問各條) : 중국 상인이 각 개항구로 가서 무역하는 문제, 부산·원산에서 세관을 설치하고 세금을 정하는 문제, 천진으로 가서 武備를 학습할 하급 문·무 관원의 증명서 수령 문제 및 일본의 국서에 답장하는 명칭 문제 등 조선이 물어온 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였습니다(核覆朝鮮詢問關於華商赴各口貿易, 釜山·元山設關定稅, 赴津習武備員弁領照及答日本國書稱謂等事)」.[35] [省略]

날짜 : 光緒七年三月初二日(1881년 3월 31일)

발신 : 盛京將軍 岐元

수신 : 總理衙門

---

34) 바로 앞의 문서 (6) 문서번호 : 2-1-2-06(355, 483a-490a)과 같은 내용이다.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35) 바로 앞의 (6) 문서번호 : 2-1-2-06(355, 483a-490a)의 첨부문서 2, 그리고 그보다 앞의 (5) 문서번호 : 2-1-2-05(353, 461a-462a, 467b-472b, 475a-480a)의 첨부문서 6과 같은 내용이다.

36) 부당(部堂) 또는 독부당(督部堂)은 총독(總督)을 가리키는 별칭이다. 명·청 시대에는 각 아문의 장관(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三月初二日，盛京將軍岐元文稱：

會辦通商處案呈：

光緒七年二月十五日，准奉天督部堂咨開：[36]

為密咨事. 光緒七年二月初十日，准北洋大臣李咨開：

為照本大臣於光緒七年二月初二日，在天津行館，由驛密奏朝鮮委員來津請示，斟酌答覆，相機開導一摺. 除俟奉到諭旨，再行恭錄咨行外，相應鈔摺並酌覆詢問各條，密咨查照.

等因. 到本軍督部堂. 准此. 除分行外，相應粘鈔原摺並酌覆詢問各條密咨. 為此合咨，請煩查照施行.

等因. 前來. 除分行外，相應[照鈔]原摺各條粘單，咨呈貴衙門查照可也.

計：照鈔原摺、各條粘單一紙.

3월 2일, 盛京將軍[37] 岐元이[38]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會辦通商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7년 2월 15일 奉天將軍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비밀 자문에 관한 사안입니다. 광서 7년 2월 10일에 北洋大臣 李鴻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长)이 아문의 대당(大堂)에서 중요 공무를 처리하였으므로 당관(堂官)이라 불렀는데, 청대 각 성의 총독은 병무상서(兵部尚书)와 도찰원우부도어사(都察院右都御史)의 직함을 겸하고 있었으므로 부당(部堂)이라고 통칭하게 되었다. 총독은 지방 녹영군(綠營軍)을 통제하기도 하므로 제군(制軍)·제대(制臺)·총제(總制)라고도 불린다.

37) 1657년 '봉천승운(奉天承運)'의 뜻으로 오늘날의 심양(沈陽)에 봉천부(奉天府)가 개설되었다가 1634년 성경(盛京)으로 바뀌었다. 이곳을 관할하는 장군은 1665년에 봉천장군이라는 명칭이 되었다가 1747년에 성경장군(盛京將軍)으로 바뀌었다. 1876년에 이르러 성경장군은 봉천부윤(奉天府尹)을 겸관하게 되었다.

38) 기원(岐元)은 호가 자혜(子惠)로 만주정홍기(滿州正红旗) 출신이자 종실에 속하기도 한다. 광서 5년(1879) 성경장군(盛京長军)에 임명되었다가 광서 7년(1881) 성도장군(成都長军)으로 옮겼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받았습니다.

본 대신은 광서 7년 2월 2일에 천진행관에서 역참을 통해, 조선 위원이 천진에 와서 자문을 요청하기에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하고 기회를 틈타 권고하였다는 주접을 비밀리에 상주한 바 있습니다. 유지를 받들기를 기다려 다시금 공경히 기록하여 자문으로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주접을 초록하고 아울러 자문에 답변한 각 조항을 비밀 자문으로 알리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의 내용이 본 將軍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각기 나누어서 발송하는 외, 마땅히 원 주접과 자문에 답변한 각 조항을 초록을 첨부하여 비밀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문을 올려보내니 귀 아문에서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각기 나누어 발송하는 외, 마땅히 원 주접과 자문에 답변한 각 조항 첨부문서를 귀 아문에 자문을 통해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 : 原摺 및 각 조항 첨부문서 목록 : [省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 문서번호 : 2-1-2-08(359, 499a-500a)

사안 : 조선의 하급 문·무 관원이 해로를 이용하여 천진에 와서 무비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증명서를 북양대신이 발급해주는 문제를 자문으로 보고합니다(咨呈北洋大臣給發朝鮮員弁海道來津學習武備憑票).

첨부문서 : 1.「증명서(憑票)」: 조선의 하급 문·무 관원이 천진에 와서 무비를 학습할 수 있도록 북양대신 이홍장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北洋大臣李鴻章給發朝鮮員弁來津習武).[39] [省略]

날짜 : 光緒七年三月初二日(1881년 3월 31일)

발신 : 盛京將軍 岐元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二日 盛京將軍岐元文稱：

會辦通商處案呈：

光緒七年二月十五日，准奉天督部堂咨開：

為咨行事. 光緒七年二月初十日，准欽差北洋大臣直隸總督李□□咨開：

據津海關鄭道等會詳稱：[40]

[省略]

等因. 前來. 除分行外，相應照鈔憑票，咨呈貴衙門查照可也.

39) 앞의 (4) 문서번호 : 2-1-2-04(352, 459b-460b)의 첨부문서 1과 같은 내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照錄「憑單」: [省略]

3월 2일, 성경장군 기원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회판통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7년 2월 15일에 봉천장군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비밀 자문에 관한 사안입니다. 광서 7년 2월 10일에 북양대신 직예총독 이홍장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천진해관도 鄭藻如 등이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詳文을 보내왔습니다.

[省略]

[이상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각기 나누어 발송하는 외, 마땅히 원 주접과 자문에 답변한 각 조항 첨부문서를 귀 아문에 자문을 통해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 「증명서[憑單]」 초록 : 생략

40) 이하의 내용은 앞의 (4) 문서번호 : 2-1-2-04(352, 459b-460b)에 실린 것과 같은 내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문서번호 : 2-1-2-09(360, 500b-503b)

사안 : 시시도(宍戶) 공사가 귀국하여 한거하고, 그가 처리한 류큐 문제에 대해서는 듣자하니 일본 정부도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은 도쿄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또한 근래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여 교린·기계·선함 등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宍戶歸國閑居, 所辦琉球案, 聞日本政府亦有不滿. 朝鮮遣使東來, 及該國近設統理機務衙門, 注意交隣, 機械, 船艦等事).

첨부문서 : 1. 초단(「鈔單」) 초록 : 조선이 신설한 통리기무아문의 관제(朝鮮新設統理機務衙門官制).

날짜 : 光緒七年四月十五日(1881년 5월 12일)

발신 : 出使大臣 何如璋

수신 : 總理衙門

四月十五日, 出使大臣使如璋等函稱：

本月十四日肅寄第一百二十三號, 二十二日又寄第一百二十四號, 先後當邀垂鑒. 此間近況一切[平?]常, 外務卿井上馨現遊大阪仍未歸京, 宍戶公使眷屬現既到東. 宍戶自歸並未謁見其國主, 現在閒居, 亦未補授他官. 聞井上馨告人云, 此次所辦球案一事, 中·東兩國皆不討好, 則彼國政府不滿於彼可知也. 俄海軍卿理疏富斯基仍在長崎, 或云近日當來橫濱, 未知果否. 自俄皇亞力散得第二被弒, 論者多有莫予毒之言. 近日屢見電報, 亦稱新主登極, 意在體先君遺意, 以仁厚為政. 又稱新主布告其駐外使臣曰：“本國惟內政尚須改良, 至交涉政務, 既臻妥善, 不可再圖進取.” 其鯨吞蠶食之心, 似乎略為斂戢. 唯聞之歐洲人則皆曰：“俄國政體自先世彼得王以來, 皆以殺戮為耕作, 以開拓圖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強. 獨亞力散得第二政尚寬厚, 即位之初, 收贖奴僕三千餘萬人, 又開府縣會, 議使民人與聞政事. 各路統兵將軍, 常戒其毋肆用兵. 其為虛無黨所弒, 則以虛無黨意在無君, 非獨惡俄皇也. 今之新主亞力散得第三, 雄才大畧, 恐不如先君之仁"云云. 西人論大都如此, 總之鄰國多難, 固不可虞, 詰戎兵慎封守, 乃有國家者之常. 況今之所備, 又不止俄羅斯一國乎!

朝鮮所遣來遊日本各官, 於本月十八日到長崎, 現在將來大阪, 通共三十餘人. 其中有金玉均、閔鐘默諸人, 皆係高官, 素負名望者. 前遣之委員李東仁, 聞亦偕來. 前次李東仁、卓挺植歸國, 如璋告以若能定議與美約, 則不如遣員來東, 作為游歷. 如璋從中與美使密為周旋, 比之各國兵船劫盟城下者, 自不相同, 所訂條約, 自不至喫吃虧. 此次朝鮮遣員東來, 不審有意此事否. 俟其到日, 可以詳悉. 彼國自去歲至今, 政體頗有改革. 近仿中國軍機處、總理衙門之意, 設一統理機務衙門, 觀其所分各司, 有交鄰一司, 又有軍事、邊政、通商、機械、船艦、語學各司, 發奮有為之意, 既可畧見. 果能從此自強, 非唯朝鮮之幸, 亦中國之福也. 肅此. 佈臆. 敬乞代回堂憲察核為禱, 即請勛安.

1. 照錄「抄單」

朝鮮新設官制：統理機務衙門諸司,[41] 如下文.

總理大臣 領議政正一品 李最應. 左議政正一品 金炳國.

事大司

交鄰司 經理堂上 判敦甯從一品 李載冕. 從一品 趙甯夏. 主事 校理從三品 宋秉瑞. 章樂主簿正四品 洪在鼎. 宗廟令正五品 鄭憲時.

軍事司

邊政司

譏訟司 經理堂上 知中樞正一品 閔鎌鎬. 從一品 尹滋憙. 副主事 軍資直長七品 李暐. 從九品 柳協用.

通商司 經理堂上 京畿監司正一品 金輔. 禮曹參判從二品 金宏集. 主事 相禮從三品 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龍仁縣令正五品 李祖淵. 副主事 從九品 尹泰駿.

理用司 經理堂上 從一品 金炳德. 直提學從二品 閔永翼. 主事 從三品 李命宰. 修撰正四品 趙忠熙. 賢察正六品 樸永善 .

機械司

軍物司

船艦司 經理堂上 漢城判事正二品 鄭範朝. 刑曹判書正二品 申正熙. 主事 正六品 柳秀完. 副主事 從九品 具德秀. 檢書官 從九品 韓龍源.

典選司

語學司 經理堂上 從一品 閔致庠. 知敦甯正二品 沈舜澤. 主事 造紙別提正五品 任慶準. 長興主簿正六品 金勝均. 副主事 內資奉事正八品 李重夏. 參謀官 守門將正七品 李濟馬. 別選軍官正七品 李東仁. 參事 從一品 金景遂. 從一品 元昔運. 從一品 卞元圭. 從一品 李應憲.

4월 15일, 주일본공사 하여장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이번 달 14일에 제123호 서신을 보냈고, 22일에는 또 124호 서신을 보냈는데, 앞뒤로 응당 모두 받아보셨을 줄 압니다. 이곳의 최근 상황은 모든 것이 평상적이며, 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현재 오사카를 여행하고 있어서 아직 도쿄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시시도(宍戶) 공사의[42] 권속은 현재 이미 도쿄에 도착하였습니다. 시시도 공사는 귀환 이래 아직 그 국왕을 알현하지 않았으며, 현재 한가롭게 지내면서도 다른 관직에 임명되지도 않았습니다. 듣자하니 이노우에 가오루가 다른 사람에게 말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처리한 류큐 문제에 대해 청일 양국 모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일본 정부가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제독 레소프스키(Lessovski. 理疏富斯基)는[43] 여전히 나가

41) 원문은 '總理機務衙門'이나 당연히 '統理機務衙門'의 오류다.

42) 시시도 다시키(宍户玑. 1829~1901)는 죠주(長州) 번 번사(藩士) 출신 정치가로 1879년 주중국 공사가 되어 琉球문제를 둘러싸고 청조 측과 여러 차례의 교섭을 가진 다음 1881년 귀국하였다.

43) Stepan S. Lessovski(Лесовский, Степан Степанович. 1817~1884)는 러시아의 군인으로 1881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키에 있고, 혹은 근일에 요코하마에 올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가 시해되었는데,[44] 그 일을 따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더이상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것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근래 여러 차례 전보를 보니, 역시 새로운 국왕이 등극할 터인데 그 뜻은 선왕이 남긴 뜻을 실현하는데 있어 仁厚함으로 정치를 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새 국왕이 외국주재 사신들에게 포고하기를, "본국의 내정을 반드시 개량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외교 교섭 사무는 이미 적절한 수준이므로 더 이상의 進取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포고하였다고 합니다. 고래처럼 남의 영토를 잠식하려는 마음은 아마 대강 거두어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듣자하니 유럽인은 모두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선대 피터대제 이래로, 모두 살육을 耕作으로 삼고, 開拓으로 富强을 도모하였지만, 유독 알렉산더 2세의 정치만은 寬厚한 모습을 보여 즉위 초에 농노 3천여 만 명을 해방하였으며,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府縣會議를 열게 하여 그들이 정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각 방면의 장군들은 항상 사사로운 용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虛無黨에게 시해당한 것은 허무당의 뜻이 無君에 있기 때문이지, 오로지 러시아 황제만을 싫어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의 새 황제 알렉산더 3세의 웅대한 재능과 원대한 지략은 아마도 선대 군주의 인자함만 못할 것이다.

유럽인들의 논의는 대강 이와 같습니다. 요컨대 이웃 국가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본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침략을 비판하면서 방어를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국가를 가진 사람이 항상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하물며 지금 대비해야 할 것은 러시아 한 나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여 유람하는 각 관리는 이번 달 18일에 나가사키에 도착하였으며, 현재는 오사카로 가고 있는데, 모두 30여 명입니다. 그중 金玉均과 閔鐘默 등 여러 사람은 모두 고관이며 평소 명망을 널리 떨친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파견하였던 위원 李東仁도 듣자 하니 함께 온다고 하며, 지난번에 李東仁·卓挺植이 귀국할 때, 저는 조선이 결단을 내려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원을 도쿄로 파견하여 두루 遊歷시키는 것만 못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제가 중간에서 미국 전권사신과 은밀하게 주선하는 일은 각국 군함이 성 아래에 몰려와 맹약을

해군 제독을 역임하고 그해 전역하였다. https : //fr.wikipedia.org/wiki/Stepan_Lessovski 참조.

44)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1818~1881)는 1861년 농노해방령을 반포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1881년 3월 12일 나로드니키(인민주의자) 일파가 던진 폭탄으로 피살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체결하는 조약 역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선에서 위원을 파견하여 일본에 보낸 것은 과연 여기에 뜻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일본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면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치체제를 상당히 개혁하였습니다. 근래 중국의 군기처·총리아문의 뜻을 모방하여 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였는데, 그 나누어진 各司를 보면, 交隣司가 있고, 또한 군사·변정·통상·기계·선박·어학에 관련된 各司가 있어 분발하여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뜻이 대략 드러납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自强을 할 수 있다면, 조선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복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건강하시길 빕니다. 삼가 총리아문의 大人들께서 검토해 보시기를 간청합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1) 「抄單」의 초록

조선의 신설 官制 : 統理機務衙門의 各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리대신 領議政正一品 李最應. 左議政正一品 金炳國.
사대사
교린사 經理堂上 判敦甯從一品 李載冕. 從一品 趙甯夏. 主事 校理從三品 宋秉瑞. 章樂主簿正四品 洪在鼎. 宗廟令正五品 鄭憲時.
군사사
변정사
기송사 經理堂上 知中樞正一品 閔謙鎬. 從一品 尹滋憙. 副主事 軍資直長七品 李暐. 從九品 柳協用.
통상사 經理堂上 京畿監司正一品 金輔. 禮曹參判從二品 金宏集. 主事 相禮從三品 柳. 龍仁縣令正五品 李祖淵. 副主事 從九品 尹泰駿.
리용사 經理堂上 從一品 金炳德. 直提學從二品 閔永翼. 主事 從三品 李命宰. 修撰正四品 趙忠熙. 賢察正六品 樸永善.
기계사
군물사
선함사 經理堂上 漢城判事正二品 鄭範朝. 刑曹判書正二品 申正熙. 主事 正六品 柳秀完. 副主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從九品 具德秀. 檢書官 從九品 韓龍源.

전선사

어학사 經理堂上 從一品 閔致庠. 知敦甯正二品 沈舜澤. 主事 造紙別提正五品 任慶準. 長興主簿正六品 金勝均. 副主事 內資奉事正八品 李重夏. 參謀官 守門將正七品 李濟馬. 別選軍官正七品 李東仁. 參事 從一品 金景遂. 從一品 元昔運. 從一品 卞元圭. 從一品 李應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 문서번호 : 2-1-2-10(377, 525b)

사안 : 北洋衙門에서 조선 魚允中의 육로 귀국 증명서를 발급해 주십시오(北洋發給朝鮮魚允中旱路回國憑票).

날짜 : 光緒七年十一月初九日(1881년 12월 29일)

발신 : 盛京將軍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九日, 盛京將軍恩等文稱：45)

會辦通商處案呈：

光緒七年十月二十六日, 准直隸督部堂咨開：

為咨行事. 據署津海關道周馥稟：

朝鮮國人來津學習製器、練兵等事, 准給憑票, 以便沿途呈驗之用, 曾蒙奏准在案.

茲據朝鮮國宏文館應教經筵侍講官魚允中稟稱：

現因由日本游歷大國並天津, 叩見李爵中堂兩次稟商及學習機器製造等事. 今因海道水阻, 請照案發給護照, 以便由旱路回國. 本官游歷自備盤費, 毋庸沿途資給.

等情. 轉稟請給憑票一紙, 發道轉給祗領回國, 俾免沿途阻滯. 並懇俯賜分咨.

等情. 到本大臣. 據此. 除批准給票並分咨外, 相應咨明貴軍都部堂, 請煩查照轉飭經過沿途沿邊地方, 一体驗放施行.

等因. 前來. 除分行外. 相應咨呈貴衙門查照可也.

45) 성경장군(盛京將軍) 은(恩)은 이 해 잠시 서리(署理) 역할을 맡았던 은복(恩福)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月 9日, [서리]盛京將軍 恩福 등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會辦通商處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7년 10월 26일에 直隸總督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보냅니다. 署天津海關道 周馥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인이 天津에 와서 기계 제조 및 연병 등을 학습할 때, 증명서를 발급하여 연도에서 제출·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은 일찍이 상주하여 허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국 弘文館 應教 經筵侍講官 魚允中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을 통해 大國 및 天津을 여행한 후, 李 中堂大人을 뵙고서 두 차례 기계 제조 및 학습 등의 문제를 상의하였습니다. 지금 해로가 막혔으니 청컨대 기존 선례에 따라 증명서[護照]를 발급하여 육로로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본관의 이동은 스스로 경비를 준비할 것이므로 연도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대신] 증명서 한 장을 발급하여 보내주면 海關道臺가 대신 그가 받아서 귀국하게 지급함으로써 연도에서 지체되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각기 자문을 나누어 보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아 본 대신은] 증명서의 지급을 허락하고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장군에게도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어윤중이] 지나는 연도의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모두 그 증명서를 점검한 다음 통과시키게 해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요청을 받아] 나누어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응당 자문을 올리니 귀 아문에서는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문서번호 : 2-1-2-11(381, 536)

사안 : 조선에서 軍器 제조를 배우기 위해 다시 天津에 파견해 온 기술자 등은 이미 機器·製造 兩局에 보내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朝鮮改派到津學製軍器員匠人等, 已派赴機器, 製造兩局學習).

첨부문서 : 1.「첨부 명단(淸單)」: 조선에서 군기 제조를 배우기 위해 선발·파견한 人員 명단(朝鮮選派來津學習製造軍器人員名單).

날짜 : 光緒七年十二月初三日(1882년 1월 22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七年六月初一日, 准朝鮮國王三月二十九日來咨一件. 嗣於九月初一日, 據副司直李應浚呈稱：

初以趙龍鎬派差起程, 以閏月二十日為定. 前期幾日龍鎬意外身故, 更以金允植改差, 勢將遲滯幾旬.

等語. 十一月二十八日, 又據吏曹參議金允植賫到朝鮮國王九月二十六日咨文一件, 並選派赴津學習製造軍器委員、學徒、通事、隨從名數淸單. 到本閣爵大臣. 准此. 查朝鮮國擬派人來津, 學習製造及練兵、購器事宜, 前已督同各局員, 妥議節畧章程, 奏明請旨, 飭由朝鮮國王相度便宜自行酌辦在案. 玆既選派吏曹參議金允植. 率領員匠來津, 先行學習製器, 具見該國洞悉時艱, 講求武備, 以圖自強之計. 業經本閣爵大臣, 在保定省城傳見金允植等四員, 詳詢一切, 令將帶來匠徒, 同赴天津, 分派機器、製造兩局, 查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議定章程條規，認真學習．由各局委員，督飭工匠，盡心教導，以期技藝速成，俾得回國，轉相傳授．仍由金允植等，約束各匠徒，務須恪遵局規，講求製造，不得出外滋事及稍有懶惰、荒誤．除恭摺具奏並咨覆朝鮮國王查照外，相應鈔錄原咨、清單咨明．為此合咨貴衙門，謹請查照施行．

1．照錄清單：[詳見十二月初四日軍機處鈔交李鴻章鈔摺內]

12월 3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7년 6월 1일 조선 국왕이 3월 9일에 보내온 자문 1건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 1일에 副司直 李應浚이[46]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趙龍鎬의 출발 일정을 윤월 20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며칠 전에 조용호가 생각지 못하게 사망하여 다시 金允植으로 바꿔서 선발하였으니, 아마도 몇십일 늦어질 것입니다.

11월 28일 다시 吏曹參議 金允植이[47] 가져온 조선 국왕의 9월 26일 자문 1건 및 天津으로 보내 軍器 제조를 학습할 위원, 학도, 통역과 수행원의 이름 및 인원 수를 기재한 명단을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인원을 선발하여 天津에 보내 기계 제조를 학습하고 연병과 무기 구매를

46) 이응준(李應浚. 1832?~?)은 조선 후기의 역관(譯官)이다. 李鴻章은 조선 국왕으로부터 대미수교 방침을 통고받기 직전 조선 측에 學徒 인솔을 빙자한 隊員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 기회를 빌려 조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하려고 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領選使의 파견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역관 李應浚을 天津으로 파견하였다.

47)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은 자는 순경(洵卿), 호는 운양(雲養)으로 서울 출신이다. 1865년 출사하고, 1874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황해도 암행어사 등직을 역임하다 1880년 순천부사에 임명되었다. 정부의 개항 정책에 따라 영선사(領選使)로서 학도와 공장(工匠) 38명을 인솔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그들을 기기국(機器局)에 배치하여 일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위하여 북양대신 이홍장과 7차에 걸친 회담을 하였고, 그 결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김윤식은 청에 체류 중이던 이때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과 상의하여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오장경(吳長慶)·마건충(馬建忠)이 이끄는 청군과 함께 귀국하였다. 임오군란이 수습된 다음 그해 9월 재차 청으로 가서 학도·공장들을 본국으로 철수시켰지만, 또한 각종 기기를 도입, 기기창(機器廠)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추진하는 사안은 전에 이미 各局 위원들에게 절략과 장정을 적절히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관한 상주를 올려 황상의 유지를 청하였으며, 그 결과 조선 국왕이 적절하게 편리한 바를 헤아려 스스로 짐작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다시] 선발·파견된 吏曹參議 金允植이 위원·기술자 등을 인솔하여 天津에 와서 먼저 무기 제조의 학습을 하겠다고 하니, 조선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깨닫고 武備을 강구하여 自强할 계책을 도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미 본 북양대신은 保定省城에서 金允植 등 4명을 직접 불러서 만나 모든 사항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데리고 온 기술자·학도들을 같이 天津에 보내 機器·製造 兩局에 나누어 파견하여, 議定한 章程에 따라 정성스럽게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各局 委員에게 기술자들을 독려하여 진심으로 가르침으로써 반드시 技藝를 속성하여 귀국한 다음 서로 傳授할 수 있도록 꾀하였습니다. 또한 金允植 등에게는 각 기술자와 학도들을 단속하여 局의 규정을 삼가 지키고 製造를 講求하되, 밖에 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그르치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奏摺을 갖추어 상주하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咨文으로 답장하는 것 외에, 마땅히 原 咨文 및 명단을 초록하여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귀 아문에서는 삼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첨부문서 : 명단 초록[자세한 내용은 12월 4일 軍機處에서 鈔交한 李鴻章의 鈔摺을 참고할 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 문서번호 : 2-1-2-12(385, 538b-542b)

사안 : 조선에서 軍器 제조를 배우기 위해 파견하여 天津에 온 위원·기술자 등은 이미 機器, 製造 兩局에 보내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朝鮮改派到津學製軍器員匠人等, 已派赴機器, 製造兩局學習).

첨부문서 : 1.「조선 국왕 자문(朝鮮國王咨)」: 趙龍鎬를 天津에 파견하여 위원·기술자 등을 인솔하여 武備를 학습시키기로 하였으니 미리 李應浚을 보내 자문으로 보고합니다(已派趙龍鎬, 領率員匠赴津學習武備, 先差李應浚咨報).

2.「조선 국왕 자문(朝鮮國王咨)」: 金允植으로 고쳐 파견하여 위원·기술자 등을 인솔하여 天津에 와서 軍器 제조를 학습하게 하겠습니다(改派金允植, 率領匠員來津學習製造軍器).

3.「명단(淸單)」: 조선의 위원·학도·번역·수행원의 명단(朝鮮委員, 學徒, 通事, 隨從名單)

날짜 : 光緖七年十二月四日(1882년 1월 23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四日, 軍機處交出李鴻章鈔摺稱：

為朝鮮委員率領匠徒來津學習製器, 現已分派各員妥辦情形, 恭摺仰祈聖鑒事. 竊朝鮮懇請派人來津學習製造及練兵、購器事宜, 前經臣督同委管軍械、製造各員妥議節略章程, 於上年九月具奏請旨, 飭由該國相度便宜, 自行酌辦. 本年三月, 該國王擬派陪臣趙龍鎬帶匠徒赴津, 先命副司直李應浚齎咨來謁. 旋據李應浚呈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趙龍鎬病故，該國復有事耽誤．九月間始據改派陪臣吏曹參議金允植等，率領學徒人等共六十九員名，先行學習製器，因值海道封凍，仍從旱路入關．業由禮部奏明在案．

十一月二十八日，據朝鮮陪臣金允植等來保定稟到齎呈該國王咨臣文件．頗能洞悉時艱，講求武備，以圖自強之計．經臣傳見金允植、卞元圭等，詳詢一切，令將帶來隨員匠徒，同赴天津分派機器、製造局，查照前次議定章程條規，認真學習．並飭各委員，督飭工匠，盡心教導，以期技藝速成，俾得回國，轉相傳授．仍由金允植等，約束各匠徒，務須恪遵局規，講求製造，不得出外滋事及稍有懶惰、荒誤．除咨總理衙門、禮部查照並咨復該國王知照外，謹照錄朝鮮國王兩次來咨、清單，恭呈御覽，伏乞皇太后、皇上聖鑒．謹奏．

光緒七年十二月初四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單併發．

欽此．

照錄清單：謹將朝鮮國王兩次來咨照鈔，恭呈御覽．

1.「朝鮮國王咨」

朝鮮國王，為咨報事．

光緒六年十一月初一日，承准齎咨官行副司直卞元圭回自京師到禮部咨．照得傳宣聖旨，製器、練兵，曲紓籌策．竊伏念敝邦，僻處鰈域，厚沐鴻造，每荷覆幬之仁，偏被陶甄之德．今茲津廠利器，即係武庫秘藏．特令選士而來學，繼紆派員而往教，當職與一國臣庶．北望攢頌．已於節价之行，略伸叩謝之忱．而學造一款，不容少緩，現差陪臣吏曹參議趙龍鎬，領率匠工，送赴天津外，專差司譯院副司直李應浚，齎咨前往，探察海道，轉詣天津，預講奠接之方．為此先行咨報，煩乞貴衙門照詳轉奏施行．須至咨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光緒七年三月二十九日發, 六月初一日到.

2.「朝鮮國王咨」

朝鮮國王, 為派選匠工赴廠學造事.

上年冬齎咨官卞元圭之回自京師, 傳宣皇旨, 頒降節略、章程等件, 許令酌辦. 微私孚達, 隆渥誕敷, 北望攢頌, 隕越於下. 竊念敝邦, 至誠事大, 厚蒙字小, 亦惟中堂大人, 推廣聖朝均視之德, 善諒友邦同仇之義, 先事而慮當務之勉, 雖使敝邦自為之謀, 無以及此, 寤寐銜戢, 思有以舉而行之. 而就事審勢, 又不容不執其要而先其急, 顧今所患戎備之疏, 由於器械之不利, 而器械之不利, 職由工技之無學也. 故現在之兵, 無器可習, 已購之器, 有壞輒棄, 是以舉國之論, 咸謂選工學造, 為今務之最要而宜先者也. 用是專差陪臣吏曹參判金允植, 率領匠員前赴貴衙門恭聽指揮. 煩乞轉達天陛劃賜施行, 區區幸甚. 一行人員書目, 另具別錄外, 為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 須至咨者.

3.「清單」: 朝鮮國委員、學徒、通事、隨徒等名數

領選使 金允植

從事官 尹泰駿

官弁 白樂論

譯官 崔性學

醫員 柳鐘翕

伴倘 朴泳鈺 尹泰驛

學徒 高永喆 朴台榮 尚澐 李熙民 李昌烈 趙漢根 李苾善 秦尚彦 高永鎰
金光鍊 金台善 趙台源 安昱相 安浚 李章煥 李南秀李□崔圭漢 金聲
鄭在圭 金永元 韓得俊 黃貴成 金興龍 金泰賢 河致淡 金聖元 張榮煥
崔同順 朴奎性 皮三成 洪萬吉 宋景和 安應龍崔志亨 金成孫 朴永作
金德鴻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通事 鄭麟興 李文熙 崔志華

隨從 順得 仁錫 學甫 長孫 善基 萬吉 根成 龍成 興福 在吉 公祿 千萬 壽鳳
學祚 貞哲 同伊 仁石 石伊 漢傑

別遣堂上 卞元圭 堂下 李根培

光緒七年九月二十六日發, 十一月二十八日到.

光緒七年十二月初四日, 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12월 4일 軍機處에서 李鴻章의 다음과 같은 주접 초록을 보내왔다.

조선 委員이 기술자·학도를 데리고 天津에 와서 무기 제조를 학습하는 일에 대해 현재 이미 각 위원을 나누어 보내 적절히 처리하였다는 점을 삼가 주접으로 아뢰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에서 天津에 사람을 보내 무기 제조의 학습, 練兵, 기계 구입 등을 하겠다고 간청한 문제는 전에 臣이 軍械·製造局의 위원들을 독려하여 節略과 章程을 적절하게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이 점에 대해 상주하여 유지를 청한 결과 조선 국왕이 적절하게 편리한 바를 헤아려 스스로 짐작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3월 조선 국왕은 陪臣 趙龍鎬가 기술자·학도를 데리고 天津에 오도록 결정하였고, 미리 副使直 李應浚에게 咨文을 가지고 와서 제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이어 바로 李應浚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趙龍鎬가 병으로 작고하여 조선에서는 다시 지연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9월쯤에야 비로소 陪臣 吏曹參議 金允植 등이 학도 등 총 69명을 인솔하여 와서 먼저 기계 제조의 학습을 할 터인데, 마침 해로가 얼어붙어 육로로 入關한다고 합니다. 이미 禮部를 통해 上奏한 바 있습니다.

11월 28일 朝鮮 陪臣 金允植 등이 保定에 와서 조선 국왕이 제게 보낸 자문을 올리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못 시대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武備를 강구함으로써 自强의 계책을 도모하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臣은 金允植, 卞元奎 등을 만나 모든 사항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고, 데리고 온 위원·기술자·학도를 모두 天津에 데리고 가서 機器·製造局에 나누어 배속시키고 전에 議定한 章程에 따라 정성껏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委員에게도 지시하여 조선의 기술자들을 독려하며 진심으로 가르침으로써 반드시 技藝를 연성하고 돌아가 그들이 귀국한 다음 서로 傳授할 수 있도록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金允植 등에게는 각 기술자·학도 등을 단속하여 局의 규정을 삼가 지키고 製造를 講求하며, 밖에 나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조금이라도 나태하거나 그르치는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삼가 총리아문과 예부에 자문으로 알리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답장하는 것 외에, 조선 국왕이 두 차례 보낸 자문과 명단을 초록하여 올리니, 황태후·황상께서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7년 12월 4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첨부문서도 아울러 발송하라.
이상.

첨부문서 : 삼가 조선 국왕이 두 차례 보낸 자문을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1.「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 국왕이 咨文으로 알립니다.
광서 6년 11월 1일 자문전달관 行副使直 卞元奎가 京師로부터 돌아오면서 휴대하여 온 禮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기계 제조와 연병에 대해 곡진히 계획을 세워주시는 성지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생각건대, 조선은 구석진 모퉁이에 위치하면서도 큰 은혜를 도타이 입어, 매번 천지와 같이 감싸주시는 인자함을 받았고 훌륭히 다스려주시는 德을 유독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天津器機製造局의 利器는 바로 武庫의 秘藏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선발된 인원이 가서 배우도록 해주시고, 뒤이어 계속 인원을 파견하여 와서 가르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니, 본인[當職]은 온 나라의 신민들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며 송축할 뿐입니다. 이미 定期使行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대략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계 제조 학습 항목은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되기에, 陪臣 吏曹參議 趙龍鎬를 선발하여 기술자들을 인솔하여 天津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게 하는 것 외에 司譯院의 副司直 李應浚에에 전담 임무를 주어 직접 자문을 가지고 가서 해로를 살피고, 天津에 이르러서는 미리 정착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미리 자문으로 알리오니 번거롭더라도 귀 아문에서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서 7년 3월 29일 발송, 6월 1일 도착.

2.「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 국왕이 기술자를 선발하여 천진 제조국에 보내 기계 제조를 학습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보냅니다.

작년 겨울 자문전달관 卞元奎가 京師에서 돌아와 황상의 유지를 전달하였는데, 節略·章程 등의 문건을 내려주시고 조선에서 적절하게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미천한 제가 사사로이 아뢰었는데 우악한 은혜가 나왔으니, 북쪽을 보고 송축하면서도 너무나 송구합니다. 조선은 至誠으로 事大를 하면서 字小의 은혜를 두터이 받았습니다. 또 中堂大人께서 내·외를 똑같이 대해주는 聖朝의 덕을 확장시키고 友邦끼리 같이 원수에게 맞서는 의리를 잘 헤아려 주셔서, 일에 앞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살펴주시니 조선이 스스로 계획해도 이에 미치지 못할 바라 자나깨나 감사함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들을 거행하고자 하지만, 일의 정세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찾아 긴급한 것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 근심으로 여기는 武備의 소홀함은 器械가 不利한 데 말미암고, 器械의 불리함은 다만 工技를 배우지 못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때문에 현재 병사들은 익힐 만한 무기가 없고, 이미 구입한 무기는 손상되어 번번이 버려집니다. 이 때문에 온 나라의 논의는 모두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製造를 배우는 것이 지금 시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마땅히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에 陪臣 吏曹參判 金允植에게 전담 임무를 주어 기술자·위원들을 데리고 귀 아문으로 가서 공경히 지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번거롭더라도 황상께 대신 전달해주셔서 시행되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일행 人員의 명단은 별도로 목록을 갖추는 것 외, 이에 마땅히 자문으로 알리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명단」: 朝鮮國 위원·학도·통사·수행원의 이름과 인원수

領選使 金允植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從事官 尹泰駿

官弁 白樂論

譯官 崔性學

醫員 柳鐘翕

伴倘 朴泳鈺 尹泰驛

學徒 高永喆 朴台榮 尚濃 李熙民 李昌烈 趙漢根 李芯善 秦尚彦 高永鎰 金光鍊 金台善 趙台源 安昱相 安浚 李章煥 李南秀李□崔圭漢 金聲 鄭在圭 金永元 韓得俊 黃貴成 金興龍 金泰賢 河致淡 金聖元 張榮煥 崔同順 朴奎性 皮三成 洪萬吉 宋景和 安應龍崔志亨 金成孫 朴永作 金德鴻

通事 鄭麟興 李文熙 崔志華

隨從 順得 仁錫 學甫 長孫 善基 萬吉 根成 龍成 興福 在吉 公祿 千萬 壽鳳 學祚 貞哲 同伊 仁石 石伊 漢傑

別遣堂上 卞元圭 堂下 李根培

광서 7년 9월 26일 발송, 11월 28일 도착.

광서 7년 12월 4일,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 문서번호 : 2-1-2-13(386, 543a)

사안 : 天津에 와서 무기 제조를 학습하는 조선 위원·기술자들은 이미 各局으로 나누어 보냈습니다(朝鮮來津學習製器員匠人等已分派各局).

날짜 : 光緒七年十二月初四日(1882년 10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四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七年十二月初二日, 在保定省城, 由驛具奏朝鮮委員率領匠徒來津學習製器. 現已分派各局妥辦情形一摺. 相應鈔摺咨送. 為此合咨貴衙門. 謹請查照施行.

12월 4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7년 12월 2일에 保定省城에서 역참을 통해 조선 委員이 기술자·학도 등을 데리고 天津에 와서 기계 제조를 학습하려는 일에 대해, 현재 이미 각 局으로 나누어 파견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상황에 관한 주접을 올렸습니다. 이에 마땅히 주접을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귀 아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문서번호 : 2-1-2-14(589, 976a-976b)

사안 : 조선에서 練兵에 필요한 총포 등을 기증하여 보냅니다(贈送朝鮮練兵所需槍砲等件).

첨부문서 : 1.「조선에 총포·화약·탄환을 기증하여 보냅니다(撥贈朝鮮槍砲, 子藥, 銅帽各件清摺).」: 炸彈·木信·門火 등의 수량(炸彈, 木信, 門火等之數量).

날짜 : 光緒八年八月二十七日(1882년 10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七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為朝鮮六月初九日之變, 聞其軍伍渙散, 器械遺失, 現在重新整頓, 應以練兵、選器為保邦制治之本. 本署大臣仰體朝廷字小覆幬之仁, 因飭天津軍械所, 籌撥十二磅開花銅炮十尊, 英來福兵槍一千桿, 配齊炸彈、木信、門火、銅帽、洋藥各項, 另單開明, 便交赴朝鮮南陽各輪船陸續運往, 由廣東水師提督吳派員查核, 轉交朝鮮國王驗收, [收]備發練軍之用, 以濟急需, 而昭友誼. 除分別咨行外, 相應咨會貴衙門, 謹請查照.

1. 照錄鈔摺：謹將撥給朝鮮槍炮、子葯、銅帽等件, 開具清摺, 咨送查核.

計開：

十二磅銅開花砲 十尊[雙輪架子、葯箱、器具全]

天津機器局 開花子 三千顆

木信 三千六百枝[初習放砲, 此項加二成, 以防鎚裂]

門火 六千枝[初習放炮, 按子照配之外, 加空响一千五百枝, 另備拉空一千五百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砲藥 四千五百磅[按子每出一磅, 又試空砲一千五百磅.]

子膛內炸藥 一千五百磅[每子六兩, 核計半磅]

英來福兵槍 一千桿[每桿配藥五百出, 每出用藥一錢五分, 每八十出核藥一磅, 每槍計藥六磅二五, 應核槍藥六千二百五十磅, 從寬給發, 每槍帶藥十磅]

天津機器局 槍藥 一萬磅

大銅帽 一百萬顆

鉛箭皮紙, 該國自有, 無須發給.

8월 27일, 署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에서 6월 9일에 일어난 변란 때문에 군대가 흩어지고 무기는 유실되어 현재 다시 정돈을 하고 있는데, 練兵과 選器는 응당 나라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本 서리대신은 조정에서 조선을 아끼고 보살펴주는 인자함을 우러러 받들어 天津 軍械所에 지시하여 거기서 제조한 12파운드 開花銅炮 10문, 영국 라이플 소총 1천 자루, 그리고 함께 필요한 포탄·木信·도화선[門火]·탄피·화약 등 각 항목은 별도 목록으로 나열하여 즉시 조선 南陽으로 향하는 각 輪船으로 넘겨 계속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廣東水師提督 吳長慶에게 관원을 파견하여 철저하게 그것들을 점검한 다음 조선 국왕에게 확인·수령하게 넘겨줌으로써 군대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긴급한 수요를 충당해 주면서 아울러 友誼를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나누어 자문으로 알리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야 하니, 삼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주접 초록 : 삼가 조선에 발급한 槍炮·火藥·탄환 등에 관한 주접을 자문으로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첨부목록 :

12파운드 銅開花砲 10문(쌍륜 거치대와 화약상자, 기구 등을 모두 갖춘 것)
天津機器局 開花砲用 포탄 3,000발
木信 3,600枝[처음 발포를 연습할 때 이 항목은 2할을 더해 鎚裂을 방지한다.]
도화선[門火] 6천枝(처음 발포 연습할 때 포탄에 따라 화약을 장착한 것 외에, 空砲 1천5백枝를 더하고, 따로 拉空 1천 5백 枝를 준비한다.)
砲藥 4천 5백 파운드(포탄 한 발마다 1파운드를 장착하며, 또한 空砲 1천 5백 파운드로 시험한다.)
子膛內炸藥 1천5백 파운드(탄환당 6냥으로 합계하면 반 파운드)
영국 라이플 소총 1천 자루(한 자루당 탄환은 500발이 나간다. 각 탄환마다 화약 1錢 5分을 쓴다. 80발을 쏠 때 화약 1파운드가 든다. 각 총으로 계산하면 화약 6.25파운드가 사용되며, 합계하면 전체 6,250파운드. 여유 있게 지급하면 매 자루마다 화약 10파운드를 함께 지급한다.)
天津機器局 탄약 1만 파운드
탄피[大銅帽] 1백만 개
납화살[鉛箭]·가죽종이[皮紙] 등은 조선 스스로 보유하고 있으니 지급할 필요가 없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문서번호 : 2-1-2-15(628, 1047a-1048a, 1049b-1052a)

사안 : 조선 국왕의 자문 3건을 받고 이미 적당하게 답장을 하였습니다(接准朝鮮國王咨文三道, 已酌量答覆).

첨부문서 : 1과 2. [省略][48]

3.「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朝鮮國王來咨)」: 대신 상주하여 天津 機器, 製造 兩局의 학도를 귀환시켜주십시오(請轉奏撤還在天津機器, 製造兩局學徒).

4.「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覆朝鮮國王咨文)」: 金允植이 조선의 학도 전원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용하고자 합니다(擬准金允植, 將朝鮮學徒全數帶回).

5.「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來咨)」: 조선은 이미 병정을 선발하였으니 吳長慶에게 관원을 파견하여 교습해 주도록 자문으로 요청합니다(朝鮮已選集兵丁, 咨請吳長慶派員教習).

6.「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覆朝鮮國王咨文)」: 吳長慶이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병사를 교습하도록 하였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已悉吳長慶派員教習韓兵事).

날짜 : 光緒八年十月十四日(1882년 11월 24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48) 제목은「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朝鮮國王來咨)」과「조선 국왕에 대한 잡장 자문(覆朝鮮國王咨文)」이나 이 문제의 주제와 상관이 없는 대원군 송환 관련 문서다.『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十月十四日，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稱：

為接准朝鮮國王咨文三道，酌量答覆，恭摺仰祈聖鑒事.

竊十月初八日，朝鮮派來陪臣副護軍李載德、金奭準等賫呈該國王來咨，派往保定省問李昰應，並懇轉奏乞恩釋還等情. 臣飭李載德等馳赴保定，並咨署督臣張樹聲飭屬妥為照料，准其省問. 至所懇轉奏天陛，亟降許還之澤，顯與迭奉諭旨不符. 臣面屬李載德等，嗣後該國王務懍遵前旨，毋庸再行瀆請，並於咨覆文內聲明未敢冒昧代奏，以絕覬覦. 臣又密詢另起陪臣趙甯夏、金允植等，愈謂該國王私情，不能不代李昰應乞恩，而其國中臣民，則頗懼李昰應釋還，轉生內患也. 又同日領選使吏曹參判金允植，賫呈該國王咨文二件. 一因前派生徒在天津機器製造各局學習，先後遘病東還，所餘無幾，請准撤回. 另購小器，設局國中，自行製造.

臣查該學徒員役思歸，若強令久留，不能專心，更少進益，應聽其便. 將來代購小機器，酌派工匠往該國教導，業飭金允植隨時與局員妥商稟辦. 一係報明吳長慶派員教習該國兵隊，已兩起挑選一千人，臣分別酌量咨覆，並勸令該國王，及時簡器練軍，以圖自強，仰副朝廷綏靖藩服至意.

謹抄錄朝鮮國王咨文，並咨覆文各三道，恭呈御覽. 除分咨總理衙門、禮部知照外，理合繕摺具陳，伏乞皇太后、皇上聖鑒. 謹奏.

光緒八年十月十四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單併發.

欽此.

照錄清單：謹照抄朝鮮國王來咨並臣咨覆文，各　三道，恭呈御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朝鮮國王來咨」

為咨會事.

照得本年七月初二日, 領選吏書參判金允植, 奉署理北洋大臣張札飭隨軍東還. 緣彼時小邦有亂軍之變, 該陪臣倉猝回國, 生徒學習等事, 均屬未清. 現蒙天朝洪恩, 亂逆斯平, 該陪臣理應再赴天津, 照料學徒習業. 窃查學徒等自春以來, 不服水土, 遘病東還者前後相踵, 現今所餘無幾. 繼自聞變以後, 各念室家, 用志不專, 難望成效. 似宜就近撤還, 另購小器, 設局於國中, 使之溫理舊業, 為製造之基. 茲復遣領選使金允植稟商一切事宜, 撤還學徒. 煩請貴大臣, 將此事由轉奏天陛, 特賜允準, 不勝幸甚. 為此合行移咨, 請照驗轉奏施行. 須至咨者.

光緒八年九月二十七日發, 十月初八日到.

4.「覆朝鮮國王咨文」

為咨覆事.

准貴國王咨稱：

領選使吏曹參判金允植回國後, 學徒等不服水土, 遘病東還者相踵, 現所餘無幾. 聞變以後, 各念家室, 用志不專, 難望成效. 似宜撤還, 另購小器, 設局國中, 溫理舊業, 為製造之基. 煩請轉奏天陛, 特賜允准.

等因. 准此, 查光緒七年十一月間, 金允植率領員匠、生徒等來津學習製器. 業經本大臣奏明, 飭赴機器·製造局, 查照議定章程, 認真教導. 該學徒自春但秋, 多因不服水土, 遘病東歸, 現已所餘無幾. 擬准金允植全數帶回, 以示體恤. 惟貴國戎備之疏, 由於器械不利, 工技無學. 必須另購小機器, 設局國中, 遴派妥員嚴勤督率, 講求製造. 庶軍中所用洋槍、炸、礮等利器, 可隨時修整添備, 以期進益. 本署大臣已飭天津機器·製造局潘道、王道等與金允植妥商, 隨宜代為購辦, 庶盡友誼. 除恭摺據情代奏, 並分咨欽命總理各國事務衙門、禮部外, 為此合行咨覆, 貴國王查照辦理. 須至咨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朝鮮國王來咨」

為咨覆事.

照得敝邦向來僻居無事, 戎備積弛. 現與各國相通, 港口多事, 講求陰雨, 不容少緩. 茲值大兵來駐, 師受有資, 已飭所司, 選集民丁, 咨請吳軍門, 派員教習. 准本年九月二十三日吳軍門回咨, 據稱：

派慶字軍營務處袁世凱, 挑選一營五百人, 名為新建親軍, 督同王總兵得功, 認真訓練. 並續派朱提督先民, 督同何總兵增珠, 添選一營五百人, 以便訓練.

等因. 現方課日督習, 從此敝邦軍制, 庶日新之效. 實賴貴大臣仰體皇慈勤念藩服之至意, 實深感佩. 茲將選兵訓練事由, 先行咨送, 請貴大臣查照. 須至咨者.

光緒八年九月二十七日發, 十月初八日到.

6.「覆朝鮮國王咨文」

為咨覆事.

准貴國王咨稱：

大兵來駐, 師受有資, 已飭所司選集民丁, 咨請吳軍門派員教習, 先後挑選一千人, 認真訓練. 現方課日督習, 敝邦軍制, 庶有日新之效.

等因. 准此, 具見貴國王洞悉時艱, 講求戎備, 以圖自強之計, 欣佩莫名. 吳軍門久經大敵, 謀勇兼裕, 所部將弁多熟諳槍炮操法, 戰守得力之員. 茲既遴派督操, 必能盡心代謀. 本署大臣仰體聖朝廑念藩服至意, 甚盼貴國軍政日有起色, 及時整頓, 保邦禦侮之道, 胥基諸此. 為此合行咨覆貴國王查照. 須至咨者.

光緒八年十月十四日, 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14일, 軍機處에서 李鴻章의 다음과 같은 주접 초록을 보내왔다.

조선 국왕의 자문 세 통을 받고 이미 적절하게 답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삼가 주접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0월 8일 조선에서 보낸 陪臣 副護軍 李載德, 金奭準 등이 조선 국왕의 자문을 가지고 와 올렸는데, 保定省城으로 가서 李鼎應에게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대신 상주하여 은혜를 베풀어 그를 석방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李載德 등에게 保定으로 가도록 하고, 아울러 署直隸總督 張樹聲에게 자문을 보내 속하에게 지시하여 그들을 적절하게 돌보고, 아울러 그 省問을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신속히 그 석방 지시를 내려달라고 한 사안은 이미 여러 차례 받은 諭旨와 현저하게 어긋납니다. 臣은 李載德 등과 직접 만나, 이후 조선 국왕은 이전의 유지를 각별히 준수하는 데 힘쓰고 다시 번거롭게 요청해서는 안 되며, 아울러 답장 자문 내에서 감히 대신 상주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분명히 밝혀 기회를 보려는 그 행동을 끊었습니다. 臣은 또한 별도로 출발한 배신 趙寧夏, 金允植 등을 비밀리에 만나 조선 국왕의 私情 때문에 대원군을 대신하여 은혜를 간청할 수밖에 없겠지만 조선 臣民은 그의 석방이 도리어 내환을 낳을 것으로 자못 두려워하고 있다고 타일렀습니다.

또 같은 날 領選使 吏曹參判 金允植이 조선 국왕의 자문 2건을 가져와 올렸습니다. 하나는 전에 파견하여 天津 機器·製造 各局에서 학습하던 생도가 전후로 병에 걸려 귀국하여 남은 인원이 거의 없으므로 그 사업의 撤回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별도로 작은 기계를 도입하고 조선에 공장을 설치하여 스스로 제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臣이 살펴보건대 해당 학도와 위원 등이 모두 돌아가고 싶어하니, 만일 억지로 오래 잡아 놓으면 전념하지도 못해 진보와 이익이 더욱 적을 것이므로 응당 그 편의를 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장래에 작은 기계를 대신 구매해주고 적당하게 기술자를 조선에 파견하여 教導하는 사안은 이미 金允植에게 수시로 局員과 적절하게 상의한 다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사안은 吳長慶에게[49] 알려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인데, 이미

49) 오장경(吳長慶. 1829~1884)은 자가 소헌(筱軒)으로 안휘성 노강현(庐江县) 출신이다. 시호(諡號)는 무장(武壯)이다. 부친 오정향(吳廷香)은 우공(優貢) 출신으로 교직에 있었는데, 태평천국군이 안휘를 침범하자 단련을 창설하여 이에 대항하다 순직하였고, 오장경은 그 뒤를 이어받아 태평천국의 반란과 염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 명을 선발하였습니다. 臣은 각기 적당하게 헤아려 답장 자문을 보내었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제때에 맞추어 무기를 고르고 병사를 훈련시킴으로써 자강을 꾀하여 조정에서 藩服을 보살펴주는 지극한 뜻에 부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조선 국왕의 자문 및 臣의 답장 자문 각 세 건을 초록하여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총리아문 및 예부에 각기 자문을 보내 알리는 것 외에,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아뢰니 皇太后·皇上께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8년 10월 14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려라. 목록은 함께 발송하라.

이상.

첨부문서 : 삼가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과 臣의 답장 자문 세 건을 삼가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省略]

2. [省略]

3.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

의(捻軍) 봉기를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함풍(咸豊) 11년 증국번의 지시를 받아 노강(庐江)을 수복하자 그가 이끄는 5백 명의 부하로 회군(淮軍)의 경자영(庆字营)을 창립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후 태평천국과의 전투에서 계속 공을 세워 출세가도를 달렸으며, 태평천국이 진압된 다음 염군(捻軍)이 기세를 떨치자 이홍장을 따라 이를 진압하고 강남에 주둔하였다. 광서 6년에 절강제독(浙江提督), 뒤이어 광동수사제독(廣东水师提督)으로 발령을 받았으나, 청불전쟁 때문에 산동 군무를 방판(幇辦)하라는 지시를 받아 등주(登州)에 주둔하게 되었다. 때마침 광서 8년 조선에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오장경은 군대 3천 명을 이끌고 조선에 파견되었다. 임오군란의 평정에 공을 세운 오장경은 계속 한성에 주둔하다가 2년 후 귀환하였다. 이후 광서 10년 금주(金州)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곧 병사하였다. 그는 그의 부대를 따라 들어온 상인들이 조선에 진출하게 되면서 조선 화교의 시조로 떠받들어지게 되며, 이후 고종이 그의 업적을 기리는 사당(吳武壯公祠)을 세워주기도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문으로 알립니다.

살펴보건대, 올해 7월 2일 領選使 吏曹參判 金允植이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의 지시를 받아 [吳長慶의] 부대를 따라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조선에 군란의 변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창졸간에 귀국하게 되었고, 학도의 학습 사안 등은 모두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천조의 큰 은혜를 입어 亂逆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그는 마땅히 다시 天津에 가서 學徒들의 習業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學徒 가운데 봄부터 水土가 맞지 않아 병이 생겨 귀국한 사람이 잇따라 현재 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변란을 들은 이후 각자 집안을 걱정하며 뜻을 지키지 못하므로 성과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응당 가까운 시일에 철회하고 별도로 작은 기계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장을 설치한 다음 학도들로 하여금 옛 학업을 복습하며 製造의 기반으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영선사 金允植을 파견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상의하여 學徒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귀 대신께서는 이 사유를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셔서 특별히 윤허가 내려진다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9월 27일 발송, 10월 8일 도착.

4.「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장」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귀 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 領選使 吏曹參判 金允植이 귀국한 후, 學徒 가운데 水土가 맞지 않아 병이 생겨 귀국한 사람이 잇따라 현재 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변란을 들은 이후 각자 집안을 걱정하며 뜻을 지키지 못하므로 성과를 바라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응당 가까운 시일에 철회하고 별도로 작은 기계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장을 설치한 다음 옛 학업을 복습하며 製造의 기반으로 삼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황상께 대신 상주해 주셔서 특별히 윤허를 내려주십시오.

살펴보건대, 光緖 7년 11월 무렵 金允植이 기술자와 학도 등을 인솔하여 天津에 와서 기계 제조를 학습하였습니다. 본 대신은 이미 상주한 다음 그들을 機器·製造局으로 보내었고, 議定한 章程에 따라 정성껏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學徒들은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水土가 맞지 않아 병이 생겨 귀국하였기에 현재 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헤아리건대 金允植이 학도 全數를 데리고 귀국하는 일을 허락하여 體恤의 뜻을 드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선의 武備가 소홀한 것은 器械가 不利한 것에 말미암고 器械의 不利함은 工技를 배우지 않아서입니다. 반드시 별도로 작은 기계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적절한 관원을 파견하여 엄격하고 성실하게 통솔하여 製造를 강구해야 합니다. 軍에서 사용하는 洋槍·炸礮 등의 利器는 수시로 修整하고 첨가함으로써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本 署大臣은 이미 天津의 機器·製造局의 潘駿德道臺와 王德均道臺에게 金允植과 함께 잘 상의하여 대신 구매하도록 하였으니 아마도 友誼를 다 할 것입니다. 주접을 갖추어 정상에 따라 대신 상주하고, 아울러 總理衙門과 禮部에 각각 咨文을 보내는 외, 이에 마땅히 답장 자문을 보내니 귀 국왕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조선 국왕이 보내 온 자문」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살펴보니 조선은 지금까지 벽지에 자리 잡아 별일이 없었기에 무비의 점검이 해이해졌습니다. 현재 각국과 서로 통교하여 港口에서 많은 일이 생기고 있으니 불우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은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청조의 대군[즉 吳長慶의 부대]이 주둔하고 있으니, 가르침을 받을 바탕이 생겼기에 이미 담당 관원에게 지시하여 民丁을 선발한 다음 吳長慶提督에게 자문으로 관원을 파견하여 교습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9월 23일 吳長慶提督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자문을 받았습니다.

慶字軍 營務處의 袁世凱를 파견하여 1營 5백 명을 고른 다음 新建親軍이라고 명명하고 總兵 王得功을 독려하여 정성껏 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이어 提督 朱先民을 파견하고 總兵 何增珠를 독려하여 추가로 1營 5백 명을 골라 훈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독려하며 훈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선 군제는 아마 날로 새로워지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귀 대신께서 藩服을 항상 염려해 주시는 황상의 지극한 뜻을 떠받든 데 의지한 것이니 진실로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사를 선발하여 훈련하게 된 사유를 우선 자문으로 알리니, 귀 대신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서 8년 9월 27일 발송, 10월 8일 도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조선 국왕의 자문에 대한 답」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귀국 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군이 주둔하고 있으니, 가르침을 받을 바탕이 생겼기에 이미 담당 관원에게 지시하여 民丁을 선발한 다음 吳長慶提督에게 자문으로 관원을 파견하여 교습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귀 국왕께서 시대의 어려움을 잘 살펴보시고 武備를 강구하여 自强의 계획을 도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기쁜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吳長慶提督은 오랫동안 大敵을 상대해 봐서 지모와 용맹함이 모두 충분하고, 거느린 장수들도 槍炮 조종법에 매우 익숙하여 戰守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파견하여 훈련을 독려하게 되었으니 필시 진심으로 대신 노력해줄 것입니다. 本 署大臣은 藩服을 염려하는 聖朝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귀국의 軍政이 날로 진전되고 제때에 정돈되어 나라를 보호하고 외세를 막는 방도가 모두 여기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자문을 보내니 귀 국왕께서는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10월 14일,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6) 문서번호 : 2-1-2-16(639, 1062b-1063a)

사안 : 조선에서 기계 제조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조선 국왕의] 요청대로 철수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을 자문으로 알립니다(咨報朝鮮來學製器人等, 准如所請撤還).

날짜 : 光緒八年十一月初三日(1882년 12월 12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三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案准朝鮮國王咨稱：

前派生徒在天津機器、製造各局學習, 先後遘病東還, 所餘無幾. 請代奏准其撤回, 另購小器, 設局國中, 自行製造.

等情. 當以該學徒遠役思歸, 若強令久留, 不能專心, 更少進益, 應聽其便. 將來代購小機器, 酌派工匠往該國教導, 並飭金允植隨時與局員妥商稟辦. 業經本署大臣, 於十月十二日恭摺具奏, 並將摺稿及來往咨稿咨送貴衙門查照在案.

茲據天津機器、製造兩局道員潘駿德、王德均等詳：

據朝鮮領選使江華留守金允植呈報：

光緒七年十二月, 敝邦帶來學徒三十八人, 分隸兩局, 學習製造. 周年之間, 告病徑還, 所餘無幾. 茲奉國王諭旨, 業經咨明北洋大臣、禮部大人. 所餘兩局學徒, 一并撤還, 另買手器設局於國中, 使之溫習所學, 庶不負勤教之意.

等由. 據此. 查該領選使金允植帶領兩局學徒等, 業於十月十六日啟行回國. 現留機器局從事官金明均一員、通事一名、從人二名, 均屬安靜. 理合會詳察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等情. 到本署大臣. 據此. 除批示外, 相應咨明. 為此合咨貴衙門, 謹請查照.

11월 3일, 署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 국왕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전에 파견한 학도들이 天津의 機器·製造 각 局에서 학습하였는데, 전후로 병에 걸려 귀국하였기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청컨대 대신 상주하여 그들의 撤還을 허락해 주십시오. 별도로 작은 기계를 구매하고 국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스스로 제조하고자 합니다. 해당 학도들이 멀리서 일을 하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가령 억지로 장기간 머무르게 한다면 뜻을 지킬 수 없고 진보도 적을 것이니, 응당 그 편의를 들어줘야 합니다. 앞으로 작은 器機를 대신 구매하고 기술자들을 조선에 파견하여 가르치는 일은 모두 金允植으로 하여금 수시로 局員들과 적절하게 상의한 다음 보고·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本 署大臣은 10월 12일에 삼가 이에 대해 주접을 올렸고, 아울러 주접 원고 및 주고받은 자문을 귀 아문에 보내 살피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금 天津 機器·製造 兩局의 道員 潘駿德과 王德均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領選使 江華留守 金允植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서 7년 12월 조선에서 데리고 온 學徒 38명을 兩局에 나누어 製造를 학습하게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병을 알리고 곧장 귀국해서 남아 있는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국왕의 유지를 받았는데 이미 北洋大臣 및 禮部尙書에게 자문으로 알렸으니, 남은 兩局의 학도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별도로 手器를 구매하여 국내에 공장을 설치한 다음 그들이 배운 바를 복습하게 한다면 아마도 애써 가르쳐주신 성의를 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領選使 金允植이 인솔한 兩局 學徒는 이미 10월 16일에 출발하여 귀국하였습니다. 현재 기기국에는 從事官 金明均 1명, 통역 1명, 수행원 2명이 남아 있으며 모두 별일 없습니다. 마땅히 공동으로 보고하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 마땅히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삼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 문서번호 : 2-1-2-17(662, 1088b-1090b)

사안 : 조선 국왕이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의 議定에 대해 감사의 뜻을 펴고, 아울러 군수품을 확인하여 수령하였다는 原 咨文을 片文으로 올립니다(片呈朝鮮國王申謝所訂水陸貿易章程及驗收軍火原咨).

첨부문서 : 1.「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議定한 양국 「商民水陸貿易 [章程]」 8조가 모두 공정함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달합니다(申謝所訂兩國「商民水陸貿易」八條悉屬公允).

2.「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중국에서 조선으로 발송한 총포 각 건은 이미 확인해서 수령하였으며, 아울러 吳長慶提督의 지시를 받아 [조선 군대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中國發送朝鮮槍炮各件已驗收, 並請吳軍門指授練習).

날짜 :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1883년 1월 18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十日, 軍機處交出李鴻章抄片稱：

再, 臣同日接准朝鮮國王咨文二件. 一申謝所訂「商民水陸貿易章程」八條, 悉屬公允, 擬俟前項使行, 另行奉表叩謝恭伸感激之私. 一驗收臣處撥給來福槍、開花砲及藥彈、銅帽、門火各項, 現交該國新團勇丁領用, 由吳長慶指授練習, 次第整頓, 期有成效. 等因. 謹照抄該國王來咨, 恭呈御覽. 除分咨總理衙門、禮部外, 謹附片具陳, 伏乞聖鑒. 謹奏.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 軍機大臣奉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覽.

欽此.

照錄清單：照抄朝鮮國王咨文二件，恭呈御覽.

1.「朝鮮國王咨」

朝鮮國王，為咨覆事.

照得本邦於本年春間，咨請於已開口岸互相交易一摺,[50] 時值貴大臣奉諱回籍，未及核辦，旋由禮部據分咨奏蒙俞允，應詳定章程之處，著貴衙門妥議. 至秋間貴大臣勉膺諭旨，復起視務，督海關道台與問議官魚允中等，酌商擬定兩國「商民水陸貿易章程」八條覆奏，經總理各國事務衙門會議，奉旨："依議." 仍於九月二十六日，魚允中回承准貴大臣咨行，並抄錄總理各國事務衙門覆奏摺及兩國「商民水陸貿易章程」欽遵查照. 等因. 准此.

竊本邦久列藩封，一切典禮，均有定制，向賴貴大臣代籌，已與各國立約通商，而獨上國與本邦商民尚拘例禁，不能共霑利益，殊非中外一視之義. 所有前此瀆請，迺蒙皇仁，廣推洪慈，亦惟貴大臣亟恢遠圖，因時變通，務存體恤. 所訂章程八條，悉屬公允，喜出望外，並於章程之首聲明："中國優待屬邦，不在各與國均霑之列"等語，俾小邦感奮自強，用答我大朝懷柔之至意. 此誠數百年來勍有之特典，當職謹與一國臣庶，北望攢頌. 擬俟前項使行，奉表叩謝，恭伸感激之私. 除先通稱謝外，合行咨復，請貴大臣查照辦理. 須至咨者.

光緒八年十月十七日發，十二月初六日到 .

2.「朝鮮國王咨」

朝鮮國王. 為咨覆事.

照得貴大臣為念敝邦軍變以來，器械散失，練選時急，飭撥天津軍械所十二磅銅開花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十尊、英來福兵槍一千桿、配齊炸彈、木信、門火、銅帽、洋藥各項，運由提督吳軍門，派員交付. 茲遵計開驗收.[51] 仰惟貴大臣克體皇朝覆幬之仁，而軫屬邦急難之誼，攢手感頌，曷任銜結? 現今新團勇丁，率循吳軍門指授練習，次第整頓. 俾此無兵而有兵，無械而有械，用為保邦制治之本. 思自奮發，俟有成效. 嗣後情形，隨當無隱，冀紓遠籌，以惠終始. 為此合行咨復，請照驗施行. 須至咨者.

光緒八年十月十七日發，十二月初六日到.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12월 10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李鴻章의 抄片을 보내왔다.

추가합니다. 臣은 같은 날 조선 국왕의 자문 두 건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議定한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52] 8조가 모두 공평무사한 것에 거듭 감사하며, 앞으로 사행을 기다렸다가 별도로 表文을 올려 감격스러운 마음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臣處에서 지급한 라이플 소총, 開花砲 및 탄약·탄피·도화선 등을 확인해서 받아, 현재 조선에서 새로 편성한 勇丁들에게 지급하였으며, 吳長慶提督의 지시로 훈련을 받으면서 점차 정돈하고 있어 장차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삼가 조선 국왕이 보낸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總理衙門과 禮部에 각기 자문을 보내는 외, 삼가 附片을 갖추어 아뢰니 황상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

50) '一摺' 구절은 잘못 들어간 문자로 보인다.

51) 계개(計開)는 첨부 명단 또는 목록을 가리킨다.

52) 이 장정은 청과 조선의 사전 논의를 거치기는 하였지만, 청 황제가 반포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 만큼, 원래의 정식 명칭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權赫秀, 2010, 「조공관계 체제 속의 근대적 통상관계-『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8호를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광서 8년 12월 10일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첨부문서 : 조선 국왕의 자문 두 건을 초록하여 삼가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 국왕이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조선은 올해 봄 무렵 이미 개항한 항구에서 서로 교역을 하자고 자문으로 요청하였는데, 당시 귀 대신께서는 喪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갔기에 그 문제를 미처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뒤이어 예부를 통해 자문을 받았는데 상주하여 윤허를 받들었고, 응당 章程을 상세히 정해야 하는 문제는 귀 아문에서 적절히 논의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무렵 귀 대신께서 유지를 받들어 다시 업무를 보게 되자, 天津海關道[周馥으]로 하여금 問議官 魚允中 등과 함께 양국「商民水陸貿易章程」8條를 議定하도록 하여, 답장 상주를 하였습니다. 총리아문에서는 이 문제로 회의를 한 다음, [상주하여] "논의한대로 하라"는 유지를 받았습니다. 9월 26일 魚允中은 조선으로 돌아왔고,[53] 그를 통해 귀 대신의 자문을 받았는데 총리아문에서 답장 상주한 주접 및「[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초록하여 보내니 삼가 준수하고 살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藩封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체의 典禮에 대해서는 모두 정해진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래 귀 대신이 대신 계획하여 주신 덕분에 이미 각국과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게 되었는데, 유독 上國과 조선의 商民은 기존 금지령에 구애받아 함께 이익을 고루 누릴 수 없으니 이것은 중외를 하나로 보는 의리에 특히 어긋납니다. 이전에 번거로운 간청을 하자 皇仁을 입도록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귀 대신 또한 장구한 계책으로 시기에 맞는 변통을 통해 힘써 體恤해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議定한 章程 8조는 모두 공평무사하여 바라지 않은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울러 章程의 머리에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53) 고종은 9월 26일 어윤중과 保定府에 유폐된 李昰應을 問候하러 갈 李載德을 소견하였다(『조선왕조실록』 고종 19년 9월 26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조선으로 하여금 분발하여 스스로 自强을 이룸으로써 大朝가 懷柔해주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수 백년 동안 처음 있는 特典으로 當職은 삼가 조선 신민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며 송축할 뿐입니다. 앞으로의 使行을 기다려 表文을 올려 감사의 마음을 아뢰고 삼가 감격하는 사사로움을 펼치고자 하지만, 그보다 앞서 먼저 대강이나마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외에 마땅히 답장 자문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귀 대신께서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10월 17일 발송, 12월 6일 도착.

2.「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 국왕이 답장 자문을 보냅니다.
귀 대신께서는 軍亂 이후 조선의 器械가 산실되고 병사의 훈련·선발이 시급함을 염려하여, 天津軍械所의 12파운드 銅開花砲 10문, 영국제 라이플 소총 1천 자루 및 함께 필요한 포탄·목신·도화선·탄피·화약 등을 운반하여 吳長慶提督으로 하여금 관원을 파견하여 전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삼가 목록에 따라 확인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귀 대신께서 藩服을 어루만져 주시는 皇朝의 인자함과 속방의 위급함을 염려하는 情誼를 우러러 받드시니, 두 손을 모아 감격하면서 어찌 다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로 구성된 병사들은 吳長慶提督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면서 점차 정돈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사가 없던 나라에 병사가 생기게 해주셨고, 무기가 없는 군대에 무기를 제공해주신 것이니, 이것으로 나라를 보호하고 통치하는 근본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스스로 분발하여 앞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후의 상황은 응당 숨김없이 아뢸 터이니, 바라건대 장구한 계책을 세워 계속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10월 17일 발송, 12월 6일 도착.

광서 8년 12월 10일에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

알았다.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 문서번호 : 2-1-2-18(665, 1094a)

사안 : 조선 국왕이 관원을 파견해 함께 공동감계를 할 것을 요청한 사안, 무역장정을 議定하고, 총포와 탄약을 기부해 준 것에 대해 謝恩하는 내용 등을 북양대신이 상주하였는데, 이에 대해 내려진 황상의 유지를 초록하여 알리는 바입니다(北洋具奏朝鮮國王請派員會勘邊界及申謝訂定貿易章程, 撥給槍炮, 彈藥等摺片, 錄旨知照).

날짜 : 光緒八年十二月十二日(1883년 1월 20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二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光緒八年十二月初十日, 軍機處片交署北洋通商大臣李奏, 朝鮮國王咨請派員會勘邊界事宜一摺. 本日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片一件、單二件併發.

欽此. 又另片奏, 朝鮮國王申謝所訂商民水陸貿易章程, 並撥給槍炮、藥彈各項交該國王領回. 等因. 又照抄朝鮮國咨文二件, 均於本日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相應恭錄諭旨, 知照總理衙門查照可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월 12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禮部의]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8년 12월 10일에 署北洋通商大臣 李鴻章이 조선 국왕이 관원을 파견하여 함께 공동감계를 하자고 자문으로 요청한 내용을 대신 상주한 주접에 대해 오늘 군기대신이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附片 1건과 첨부자료 2건도 아울러 발송하라.

또 [이홍장이 부편으로] 함께 상주한 내용은 조선 국왕이 商民水陸貿易章程을 議定한 일과 총포·폭약 등을 지급하여 수령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내왔다는 것이었고, 李鴻章이 아울러 조선 국왕의 자문 2건을 초록하여 올렸는데, 이에 대해 오늘 군기대신은 각기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따라서 마땅히 삼가 유지를 초록하여 귀 총리아문에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 문서번호 : 2-1-2-19(723, 1151)

사안 : 조선에서 파견한 기술자 두 명이 다시 天津에 와서 軍器 제작을 배우는 사안에 대해 이미 체류를 허락하였습니다(朝鮮派工匠二名復來津習作軍器, 已准收留).

날짜 : 光緒久年四月十三日(1883년 5월 19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四月十三日, 署北洋大臣張樹聲文稱：

據津海關周道稟稱：

四月初六日, 接據朝鮮國內閣學士魚允中來函：

以向在東局學習朝鮮工匠宋景和、白文彬, 均有巧思, 自願更赴津局學成其業, 歸國效力. 茲派送前來, 請轉懇機器局, 使之入廠執藝. 應費、資糧籌畫以送.

等因. 查朝鮮學習工匠全撤回國, 前蒙奏明在案. 惟宋景和等遠道求師, 似不便拒而不收. 應否將該匠等酌留機器局, 作為本局學徒, 俾得學習之處, 理合稟請 查核示遵.

等情. 到本署大臣. 據此. 除批稟悉, 朝鮮前派匠徒來津學習製器, 上年朝鮮國王咨請撤回, 李閣爵大臣以該學徒遠異思歸, 應聽其便, 當經奏明在案. 據稱前次撤回工匠宋景和、白文彬二名, 現復來津, 自願入機器局, 學成其業. 既經該國內閣學士魚允中, 遠道函送, 自未便拒其就學之誠. 應准將該匠等酌留天津機器局, 作為本局學徒, 俾資學習, 以期藝成. 仰候札飭該局遵照[繳挂發並飭局遵照]外,[54] 相應咨呈貴衙門, 謹請查照.

54) 문맥상 [ ] 안의 부분은 아마도 抄寫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衍文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월 13일, 署北洋大臣 張樹聲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天津海關道 周馥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조선국 내각학사 魚允中이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에 東局에서 학습하였던 조선인 기술자 宋景和, 白文彬은 모두 뛰어난 재주가 있어 다시 天津局으로 가서 일을 배워서 귀국한 후 힘을 바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을 파견하여 보내니, 機器局에 대신 간청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장에 들어가 기예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필요한 비용과 식량은 마련해서 보내겠습니다.

조선에서 기계 제조를 學習하러 왔던 기술자들이 모두 철수하였던 것은 이전에 상주하여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宋景和 등이 먼 길을 와서 스승을 구하고 있으니 아마도 거절하여 받지 않는 것은 불편할 듯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機器局에 체류시켜 本局 학도로 삼아 학습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니 검토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알았다'고 결재를 하였지만, 조선에서 전에 파견한 工徒들이 天津에 와서 기계 제조를 학습하다가 작년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撤回를 요청하였고, 본 대신은 해당 學徒들이 먼 곳에서 고향을 생각하고 있으니 응당 그 편의를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주한 바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전에 철수하였던 기술자 宋景和, 白文彬 두 명이 현재 다시 天津에 와서 機器局에 들어가 학업을 완성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조선의 內閣學士 魚允中이 멀리서 편지를 보냈으니 그 학업 성취의 정성을 거절하기 불편합니다. 응당 해당 기술자들을 天津機器局에 체류시키면서 本局 學徒로 삼아 학습을 통해 기예를 완성시키도록 허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진기기국에 지시를 내려 따르도록 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올려야 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 문서번호 : 2-1-2-20(833, 1348)

사안 : 天津行營製造局에서는 이미 조선을 대신하여 造銅帽, 修槍機 등에 필요한 布達塞水銀을 구매하였으며, 모집한 기술자 2명은 이미 機器局에서 手藝를 시험해 보았습니다(天津行營製造局, 已代朝鮮購造銅帽, 修槍機等所需布達塞水銀, 其所募工匠二人, 已在機器局試看手藝).

날짜 : 光緒十年二月二十二日(1884년 3월 19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二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年二月初九日, 准朝鮮國王咨：

敝邦昇平日久, 戎政蕩弛, 所有軍器、軍火等物, 皆是古製, 不合時用. 年前派員選徒領赴津局, 未及周年, 因事徑撤多人, 空歸無所透悟. 每念時局, 用切憂歎. 現今親軍數營新募練教, 仍設機器諸廠, 留心製造, 實荷代籌, 深切感頌.

第其鋪置規矩, 以天津東南兩局, 視為準則, 故特派本局幫辦卞元圭, 使之前往津廠, 一切要務, 從長問議. 竣其回告, 必欲量力倣行. 至於匠目之可使者、物料之當備者, 幸知照東南局總辦, 因其所言, 酌量指劃, 則敝邦戎政, 藉有振刷之望. 伏乞貴大臣克體皇上隆眷, 深軫敝邦急務, 推始圖終, 副茲遠懇. 為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

等因. 准此. 當經札行天津機器局、行營製造局會商妥辦在案. 茲據該局等會詳稱：

伏查卞元圭於二月十二日到局, 經與會商妥議. 竊以該處機器製造甫經籌始, 招工購料, 不過預備造銅帽、修槍機等事. 所需布達塞水硃, 由製造局代為購備, 即交卞元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隨身帶去. 所募刺模捶及配爆藥工匠二名, 現在局試看手藝. 俟下次朝鮮商務委員來津, 再行派去. 至造銅帽用紫銅皮等料, 津郡無從購辦, 前曾由製造局代購二十餘磅, 想未用罄, 續俟購得, 再行寄交. 理合詳覆鑒核.

等情. 到本署大臣. 據此. 除咨朝鮮國王外, 相應咨明. 為此合咨貴衙門, 謹請查核.

2월 22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0년 2월 9일 다음과 같은 조선 국왕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武備가 전부 해이해지면서 모든 무기 및 군수품이 낡아빠져 지금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연전에 위원·학도 등을 선발하여 天津의 兩局에 보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사정 때문에 대부분 철수하면서 헛되이 돌아와 깨달은 바가 없었습니다. 매번 時局을 생각하면 더욱 근심스럽습니다. 현재 親軍 數營을 새로 모집하여 훈련하고, 기계 공장을 설치하여 제조에 유의하는 것은 실로 귀 대신께서 대신 계획해주신 바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배치 기준을 天津의 東·南 兩局을 준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本局의 幇辦 卞元圭를 특별히 天津에 보내 모든 要務에 대해 장기적으로 문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돌아와 보고할 때를 기다렸다가 역량을 헤아려 모방을 실행하겠습니다. 기술자 가운데 쓸 만한 사람과 준비해야 할 재료에 대해서는 다행히 東南局 總辦에게 알렸으니, 그의 말에 따라 계획해서 준비한다면 조선의 武備도 떨치고 일어날 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귀 대신께서 藩服을 돌봐주시는 皇上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긴급한 사안을 깊이 돌아보면서 시종일관 도와주시니 여기서 멀리나마 그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문을 받고 天津機器局과 行營製造局에 지시를 내려 함께 상의한 다음 적절하게 처리하게 하였는데, 지금 기기·제조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동보고를 받았습니다.

卞元圭가 2월 12일에 局에 도착하여 이미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조선의 기계 제조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이니 기술자를 초빙하고 재료를 구매하는 것은 미리 탄피 제조기와 총포수리기를 갖추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 필요한 布達塞水硯은 製造局에서 대신 구매한 다음 즉시 卞元圭에게 넘겨 가지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모집한 펀칭[刺模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및 폭약 장착 기술자 2명은 지금 局에서 手藝을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번 조선 상무위원이 天津에 올 때 다시 파견하겠습니다. 탄피 제조용 紫銅皮 등의 재료는 天津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데, 전에 製造局에서 대신 구매한 20여 파운드를 아직 다 쓰지 않았을 터이니, 뒤이어 구매할 때를 기다려 다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답장 보고를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에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오니 삼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 문서번호 : 2-1-2-21 (954, 1653a)

사안 : 조선 국왕이 자문을 보내 袁世凱를 계속 파견하여 親軍을 훈련하도록 요청하였는데, 袁世凱가 휴가를 청해 귀국하였으므로 吳長慶提督에게 지시하여 다른 관원을 파견해 살피도록 하였습니다(朝鮮國王咨請, 仍派遠世凱督練親軍, 以袁丞請假內渡, 飭提督派員照料).

날짜 : 光緒十日年正月二十六日(1885년 3월 12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一年正月二十三日, 准朝鮮國王十年十二月十五日咨開：

照得敝邦向無戎備, 所有兵士, 不知操練. 壬午冬請袁司馬督練親軍左·右營及沁營兵, 三年之間, 蔚有成效. 現值時事多虞, 不可忘危, 添建前·後·別三營, 以資宿衛. 惟此三營, 或招募民丁, 或步伐殊法, 難以整齊. 請貴大臣札派袁司馬, 再行督練, 應如左右兩營, 一律教習, 俾成終始之美, 貴大臣諒應樂聞而助成之也. 為此備文咨會, 請煩查照施行.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查袁丞現已內渡, 暫行請假, 應飭吳提督暫行派員照料督練具覆. 除分行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1년 1월 23일, 조선 국왕이 광서 10년 12월 15일에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종래 武備가 없었고 모든 병사들은 조련이란 것을 몰랐습니다. 임오년 겨울 袁世凱 司馬에게[55] 親軍 左·右營 및 沁營[56] 병사들을 훈련해달라고 청하였는데, 3년 동안 자못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時事가 우려스러운 바가 많은 때라 危亡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앞뒤로 3營을 증설하여 宿衛에 보태고자 합니다. 다만 이 3영은 혹은 民丁에서 모집하거나 혹은 훈련 기법이 서로 달라 가지런하게 정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귀 대신께서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다시 조련함으로써 左·右 兩營처럼 통일적인 교습으로 시작과 끝이 같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귀 대신께서 기꺼이 도와주셔서 성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문서를 갖춰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袁世凱는 지금 이미 귀국하여 잠시 휴가를 청하고 있으니, 응당 吳長慶提督에게 지시하여 다른 관원을 보내 훈련을 감독시키겠다고 답장을 보내겠습니다. 나누어 문서를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야 하니, 번거롭지만 살펴봐 주십시오.

---

55) 사마(司馬)는 중국 고대의 관직이지만, 계속 그 지위가 내려가다가 수(隋)대에 폐지되었고, 당대에는 절도사(節度使)의 속료 가운데 행군사마(行軍司馬)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후대에 부동지(府同知)를 사마(司馬)로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선사람들이 袁世凱를 '袁世凱사마(袁世凱司馬)'라고 부른 것은 아마 그가 오장경 부대에서 사마(司馬)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실제 그는 임오군란에서 공을 세운 이후 이홍장의 추천으로 '분성보용동지(分省補用同知)' 직함을 받았으므로 '사마'라는 명칭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56) 심영(沁營)은 고종(高宗) 때 강화도에 두었던 친군영(親軍營)을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2) 문서번호 : 2-1-2-22(1794, 3145b-3149a)

사안 : 조선에서 학생을 천진에 파견해 水師·武備 各 學堂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朝鮮擬派學生來津在水師, 武備各學堂肄業).

첨부문서 : 1.「조선 국왕이 보낸 서신(朝鮮國王來函)」: (1) 조선의 국경이 평안하게 되었으니 배려에 감사합니다(韓境平謐, 感謝垂注). (2) 소년 자제 가운데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 약간을 뽑아 천진에 보내려고 하니 水師·武備學堂에 들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請准揀選少年子弟才堪造就者若干名, 來津入水師, 武備等學堂肄業).

2.「이홍장이 조선 국왕에게 보낸 답장 서신(李鴻章覆朝鮮國王函)」: (1) 邊督理가 조선으로 돌아가기에 선물 열 가지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邊督理東旋附呈菲儀十事). (2) 袁世凱가 조선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충성스러운 성품을 지녔으니 바라건대 일이 생길 때 자문을 하면 마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遠道在韓年久, 秉性忠誠, 盼遇事諮訪, 當有補裨). (3) 조선에서 사람을 천진으로 보내 武備를 학습하려고 하니, 20살 미만의 자질이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을 뽑아서 먼저 武備·水雷 各 學堂에 입학시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할 인원의 숫자가 정해지면 서신으로 먼저 알려주십시오(派員來津學習武備事宜, 揀選年二十以內資性聰款者, 可先入武備, 水雷各堂, 講習以期適用. 俟派定人數, 祈先函知).

날짜 : 光緒十九年三月二十三日(1893년 5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三月二十三日，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道員袁世凱稟稱：[57]

韓王擬揀派學生赴津，在水師、武備各學堂肄業.

等情. 批令俟該國王函請，自可酌覆允派. 惟所派學生必須年輕而熟悉華語者，方有進益. 當經咨明貴衙門查核. 旋於三月十九日，據袁道來電：

頃王遣人來覆送津學生事. 遵選幼童質能通漢語者十名遣往. 俟選妥即送，姑無須定時期云. 韓人遲緩，似非數月後，不能成行，漢語幼童，尤難多得.

等情. 亦經分行各堂查照在案. 茲據朝鮮新派駐津督理商務李晃相來津，賫呈朝鮮國王信函，內稱：

刻擬揀選少年子弟才堪造就者若干名，送請分發各局堂，聯席肄業，俾得材成有用.

等情. 前來. 除分晰函復並分行外，相應將來往函稿照錄咨送貴衙門，請煩查照.

1.「與朝鮮國王來往函稿」

照錄朝鮮國王來函

李傅相大人閣下：

波嶼縈洄，千山遙隔，欽遲無已，翹企方勞. 去歲欣逢覽良辰，恭頌松齡，曾將芹意，辱勞致謝，歉汗益增. 是夏袁總理奉命回差，藉諗閣下瑞集奎桓，勛隆簪笏，治調玉燭，職懋金甌. 逖聽之餘，彌殷篆慕. 是秋以不佞年開五旬，曾由袁總理寄頒幛聯，並惠多儀，拜登厚貺，感切五中. 隨即電飭駐津商員，代鳴謝臆，想經轉達台端矣. 敝邦年來諸托樾蔭，尚稱平謐，幸堪告慰注存. 專肅覆函，並申謝悃. 敬頌台祺，維祈面照不備.

朝鮮國王李熙 頓首.

光緒十九年二月二十二日.

敬再啟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查敝邦逼處強隣, 久虞耽視, 幸賴閣下統籌時局, 俾與各國訂約通商, 隱資防範. 十數年來, 鯨波無警, 中藏高惠, 實與援護, 大德永矢不諼. 年前以西人等鼓弄浮言, 惑聞遠近, 每經回首, 殊多憾惜. 然素荷垂愛, 當邀亮察. 惟近年時事愈切隱憂. 北鄰鐵路, 漸逼邊陲, 東海通漁, 滋擾各島. 敝邦陸兵、水師, 似皆宜早為部署, 聊為自固之謀. 若果不先事儲才, 豈必能驟期效用? 曩聞閣下創立武備·水師·機器各局堂, 規制精詳, 洵為儲才之根本, 欽佩久深. 刻擬檢選少年子弟才堪造就者若干名, 送請閣下分發各局堂, 聯席肄業, 俾得材成有用, 為將來捍禦之資. 閣下東顧甚殷, 當亦如所願, 倘蒙金諾, 尚冀示知. 當即檢送, 書不盡言. 已命駐津去員李晃相, 隨時面稟矣. 再泐布臆. 統候裁教, 并維時惠德音. 光緒十九年二月二十二日發, 光緒十九年三月十五日到.

2.「復朝鮮國王函」

(1) 朝鮮大王殿下：

海天遙接, 風候時通, 遠望光塵,[58] 無任馳仰. 去歲欣逢千春集慶, 大衍開祥, 薄貢菲忱, 藉申松祝, 尚勞專電致謝. 昨李督理來津, 奉到惠書. 重蒙齒及, 並拜多儀之賜. 殷拳雅意, 紉荷曷勝? 頃聞接見敬問起居, 就讌錫福宜民, 綏猷篤祜. 慰九宸之仁顧, 撫八道以同風, 引企德暉, 式符臆頌. 老膺重寄, 勉濟時艱. 所幸轄境敉平, 精力猶堪支拄, 足紓注系. 茲因邊督理東旋之便, 附呈徵儀十事, 聊以將意, 尚希莞存. 泐復布謝, 敬頌崇祺. 諸惟霽照不宣.

欽差大臣辦理北洋通商、會辦海軍事宜、太子太傅、文華殿大學士、直隸總督、一等肅毅伯李鴻章頓首.

光緒十九年三月十九日.

(2) 敬再啟者：

祗誦別牋, 過蒙推重, 媿荷曷任. 中國與朝鮮誼均休戚, 鄙人職任所在, 固屬義無可辭. 仰惟朝廷眷顧東藩, 自樞府、譯署、海軍諸王大臣於貴邦之事, 亦俱視同在己, 無不極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維持. 側聞殿下年來歸嚮中朝之誠, 更為堅定, 從前羣小煽搆, 均已洞燭其姦. 逖聽之餘, 莫名欣慰.

袁道在韓年久, 內外利弊, 知之甚詳. 其秉性忠誠, 近亦深蒙鑒察, 遇事諮訪, 當有補裨. 如有重要事件, 令由該道電達敝處, 但能代謀, 自應勉為匡助. 並飭該道於貴邦政府籌商各節, 知無不言, 言無不盡, 用副殿下顧待之殷. 該道現經簡授浙江溫處道實缺, 尚須暫留一時, 未能交替赴任也.

伏讀聖祖仁皇帝聖諭, 屢稱僖順王之賢, 凡國事有關係者, 必奏取進止. 其時中外太平, 號為極盛. 我聖祖臨御六十一年, 僖順王享國五十年, 為前古帝王所罕有, 傳之千載, 以為美談. 中韓之親, 由來舊矣. 今日時事多虞, 強鄰窺伺. 夫患難相恤, 楚越猶可一家. 況本一家之親, 豈可視同楚越. 我皇帝撫念藩封, 同符聖祖, 亦願殿下紹述僖順王之遺烈, 同心合德, 共濟艱難, 不勝至願.

承示擬揀派年少子弟來津, 分赴各學堂肄業, 以備陸兵、水師之用. 仰見留意儲才, 綢繆疆宇, 思慮深遠, 欽佩何窮. 貴邦三面負海, 以地勢論, 原應操練水師. 惟須購鐵艦、快船多隻, 方足練成一隊, 需費過鉅, 斷斷無此財力. 鄙意不知先練陸路守口之兵, 以為固圍之計. 如礮台、水雷、魚雷等皆必不可少, 需要精求西法, 操練純熟, 始能制勝. 天津設立武備學堂, 專練陸路戰陣、台壘、槍礮, 水師學堂專習駕駛、管輪. 又於旅順、威海各口, 分設學堂, 練習水雷、魚雷. 講習累年, 頗多成材之選. 前此貴邦派來學生四名, 在機器局肄習, 緣年已長大, 時過後學, 勤苦難成. 此次如再遴派學生, 須選二十歲以內資性聰穎者, 庶學習英文、英語易於入門, 尤必先通漢語, 方便指授. 到津後擬分派武備、水雷、魚雷各學堂, 隨眾認真講習. 其水師學堂, 似可緩派, 或擇尤為穎異者, 酌派一二人, 俟將來購有師船, 再議續派. 蓋學貴適用, 事貴因時, 必當先其所急, 期於有成耳. 尊處酌定派來人數後, 並祈先期示知, 俾可預為籌備位置.

北鄰鐵路漸逼東陲, 此實中韓同憂之事. 現在東三省添練邊軍, 接造鐵路, 即為捍禦朔庭, 屏蔽東國. 濟州魚捕一案, 本係誤許於先. 此時若以要地相易, 更為失算. 惟有徐圖補救. 固知事當慎始, 乃無後悔也. 杜牧有言："上策莫如自治." 儲有用之才, 則國無弱, 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無益之費, 則國無貧. 皆皆古人自治之要言, 寔為今日救時之急務. 而根本之效, 尤在親君子而遠小人. 殿下嗣服以來, 疊經多故, 殷憂之啟, 端在賢明. 從前更歷各端, 何事不資儆省, 固不待顧縷瀆陳. 恃蒙知愛, 輒敢盡言. 區區之忱, 定荷鑒察. 李督理貴胄高科, 才地並美. 頃經接談, 備述盛意肫摯, 良深銘佩. 自當隨時照拂, 請紓系懷. 附泐, 載頌榮綏. 鴻章再啟

3월 23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 직함을 지닌 道臺 袁世凱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 국왕이 학생을 골라 천진으로 파견하여 水師·武備 學堂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조선 국왕이 서신으로 파견을 요청하기를 기다려 그때 적당히 참작하여 파견을 허락하면 될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만 파견되는 학생은 반드시 어리고 중국어에 능숙하여야 비로소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 살펴보시게 한 바 있습니다. 그 뒤 3월 19일 道臺 袁世凱가 보내온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전에 국왕이 사람을 천진에 보내 다시 학생을 파견하겠다고 하였고, 중국 측 요청에 따라 어린아이 가운데 자질이 뛰어나고 중국어에 능통한 10명을 파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발이 되면 바로 보내야 하는데 일단 시기를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인이 일을 느리게 처리하다보니 수개월 이후가 아니라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어린아이는 많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이 점에 대해 각 학당에 나누어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진에 새로 파견된 駐津督理商務 李冕相이 천진에 와서 조선 국왕의 다음과 같은 서신을 올렸습니다.

곧바로 소년 자제 가운데 자질이 있는 사람 약간을 선발하여 各局 學堂으로 보내고자 하니 입학시켜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유용한 기예를 완성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장을 각기 나누어 알리는 것 외에, 마땅히 왕래한 서신 원고를 초록하여 귀

57) 총리(總理)는 원문에는 총판(總辦)으로 되어 있지만, 분명한 오류라 바로잡았다.

58) 광진(光塵)은 상대방의 풍채를 가리키는 경사(敬詞)이다. 또는 세속(世俗)을 비유하기도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문에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1.「조선 국왕과 왕래한 서신 원고의 초록」

李 中堂大人께.

파도와 섬이 굽이지고 얽힌 데다가 千山으로 멀리 떨어졌 있지만, 공경하는 마음 그치지 않아 몹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지난해 기쁘게도 생신을 맞아 축하드리는 뜻에서 변변치 못한 것을 보내드렸는데 수고롭게도 고맙다고 하시니 죄송한 마음만 늘어납니다. 이번 여름 袁世凱總理가[59] 받아온 회답을 통해 각하께 상서로운 일만 생기고 하시는 일도 아주 잘 되어 가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정을 베푸시어 국토가 더욱 굳건하니 멀리서나마 듣고 더욱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제 나이가 오십이라고 일찍이 袁世凱總理를 통해 幛聯을 보내주시고 아울러 많은 선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게 후한 예물을 받고서 절절한 마음이 몇 배나 되었습니다. 뒤이어 駐天津 商務委員에게 전보를 보내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였으니 이미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조선에서 최근 몇 년간 많은 것을 부탁하고 의지하였는데 두루 평온하다고 하니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감사하는 정성을 다해서 회답을 드리니 삼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조선 국왕 李熙 頓首

광서 19년 2월 22일

삼가 다시 아룁니다.

조선은 이웃의 강국에게 핍박을 받아 그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오랫동안 염려해 왔지만 다행히 각하께서 시국을 통솔하는 데에 힘입어 각국과의 조약을 맺고 통상을 하여 은근히 방어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십수 년 동안 사나운 파도에도 큰 걱정이 없었던 것은 높은 은혜로 실제 구호해주신 바로 그 큰 은덕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연전에 서양인들이

59) 1885년 11월 원세개(袁世凱)는 '주찰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駐紮朝鮮總理通商交涉事宜)로 임명되어 조선에 다시 파견되었다. 이후 袁世凱는 원총리(袁總理)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뜬소문을 부추기고 그것들이 멀고 가까운 지방에 퍼져 매번 고개를 돌리면서 유감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평소 아낌을 받아왔기에 마땅히 밝게 살펴보셨을 줄 압니다. 다만 최근 시국의 일들은 더욱 근심스럽습니다. 북쪽 나라의 철로는 점점 변방으로 다가오고, 동해에서 고기잡이를 허용한 일은 섬마다 소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조선의 陸軍·水師는 모두 조속히 재배치하여 스스로를 굳히는 계책으로 삼아야 할 듯 합니다. 만약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인재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 들으니, 각하께서 창립하신 武備·水師·機器 各局堂은 規制가 정밀하여 참으로 재능을 발굴하는 근본이라고 하여, 이를 흠모해 온 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곧바로 소년 자제들 가운데 재능이 뛰어난 사람 약간 명을 엄선하여 보내고자 하니, 청컨대 각하께서 各局堂에 나누어 보내 그곳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여 유용한 기예를 갖춘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장차 국방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각하께서 항상 조선을 크게 돌봐주셨으므로 응당 이번 일도 바라는 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승낙해 주신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즉시 엄선해서 보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이미 천진에 주재하러 간 李冕相[60]에게 지시하여 수시로 직접 찾아뵙고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결정을 기다리며 아울러 때때로 소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19년 2월 22일 발송, 광서 19년 3월 15일 도착.

2.「조선 국왕에게 보낸 서신」

(1)

朝鮮 大王 殿下께.

바다의 하늘로 아득히 접하여 風候가 때로 통하니, 멀리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려가 뵙고 싶은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지난해 기쁘고 경사스러운 생신을 맞아 상서로움이 크게 넘쳤는데 보잘것없는 선물로 축하드렸더니 수고스럽게도 전보로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어제 李冕相督理가 천진에 와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듭 좋은 말씀을 듣고 아울러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뜻을 받았으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

60) 李冕相(1846~?) :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1887년 문과 급제하였다. 고종 29년(1892) 10월 4일 駐津督理에 발탁되어, 이듬해 2월 22일에 사폐하고 8월 28일에 귀국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까? 최근 듣기에 접견할 때 조심스럽게 어찌 지내는지를 묻고,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셔 편안하고 도탑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인자하신 마음으로 九宸을 위로하고 한결같은 기풍으로 팔도를 다스리셔서 훌륭한 덕을 끌어내고 칭송하는 마음에 부응하셨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요한 임무를 맡아 억지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내는 평안하고 정력은 여전히 그럭저럭 버틸 만하여 충분히 관계를 풀어나가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邊錫運 從事官이[61] 조선으로 귀국하는 편에 변변치 못한 예물 열 가지를 보내오니 헤아리시고 양해하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삼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欽差大臣으로 辦理北洋通商을 처리하며 海軍事務의 처리를 돕는 太子太傅이자 文華殿大學士이며 直隸總督으로 一等肅毅伯 李鴻章이 고개를 숙입니다.

광서 19년 3월 19일.

(2)

삼가 다시 아룁니다.

별도의 편지를 삼가 읽어보았는데 지나치게 존중해 주시니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중국과 조선은 행복과 불행을 모두 함께하고 있으며, 제 직임이 관련된 바이자, 명분상 사양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조정에서 東藩을 돌보아주는 일은 樞府[軍機處]나 총리아문, 海軍의 諸王大臣께서 조선에 대해서는 모두 자기 일처럼 생각하여 지극한 성의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얼핏 들으니 전하께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조정에 귀부하는 성심이 더욱 굳게 안정되었으며, 종전에 소인배들이 옆에서 부추긴 짓에 대해 그 간악한 상황을 이미 고루 통촉하셨다고 합니다. 멀리서 들은 다음 기쁨과 위로를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袁世凱道臺는 조선에 머문 지 오래되어 안팎의 이득과 폐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성품을 가진 데다 근래에 잘 보살펴 주셨으니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요한 사건이 생겨 그를 통해 제게 전보를 보내시면, 대신 계획할 수 있을 경우 당연히 애써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袁世凱道臺에게 지시하여 조선 정부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에 대해 아는 것은 모두 말하고 말할 때 숨김이 없도록 하여

61) 원문은 '邊督理'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891~1893년 사이 천진에서 근무한 駐津從事官 邊錫運을 가리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하께서 고대하시는 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현재 이미 浙江溫處道臺의 實缺을 除授받아 잠시 머물러야 하기에 아직 교체하여 부임시킬 수 없습니다.

삼가 聖祖仁皇帝의 聖諭를 읽어보니 거듭 僖順王(肅宗)의 현명함을 칭송하셨는데, 관계가 있는 중요한 국사는 반드시 上奏하여 실행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中外가 태평하여 極盛의 시대로 불렸습니다. 聖祖 康熙帝께서 재위하신 기간은 61년인데 희순왕이 나라를 다스리신 기간도 50년으로 이전 옛 帝王로서는 모두 드문 일입니다. 천 년 동안 전해져 미담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과 조선의 친교는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시국의 일은 염려되는 일이 많고 이웃 강국들이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환난에서는 서로 도와야 하며 楚나라와 越나라처럼 서로 원수같은 사이라도 오히려 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 집처럼 친한 사이에 어찌 초나라·월나라 사이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황상께서 藩封을 어루만져 聖祖처럼 되고자 하시며, 전하께서도 희순왕이 남기신 功烈을 이어받고자 하시니 같은 마음으로 덕을 합쳐서 서로를 어려움에서 구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어린 자제들을 뽑아 天津의 各 學堂에 나누어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陸軍·水師의 인재로 대비하려고 한다는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재의 비축에 유의하여 국가를 방어하려고 하시니, 심려원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地勢로 논한다면 원래 마땅히 水師를 조련해야 합니다. 다만 철갑선과 快船 여러 척으로 구성해야 비로소 1개 함대를 만들 수 있는데 소요 비용이 지나치게 크며, 결코 이러한 재력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陸路 요충지를 지키는 병사를 먼저 훈련하여 단단히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포대·수뢰·어뢰 같은 것들은 모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며 서양식 방법을 정밀하게 추구하고 능숙하게 훈련해야 비로소 승리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天津에 설립한 武備學堂에서는 전문적으로 陸路의 진법·진지·총포를 훈련하고 水師學堂에서는 전문적으로 군함 운항과 관리를 익힙니다. 또 旅順과 威海의 각 항구에 나누어 설립한 學堂에서는 水雷·魚雷를 연습합니다. 몇 년간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뛰어난 기능을 지닌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선에서 파견한 학생 4명은 機器局에서 기술을 익혔는데 나이가 이미 많아 좋은 시기가 지난 다음 배우느라 고생만 하고 성과를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파견하는 학생은 반드시 20세 미만의 자질이 있고 총명한 사람으로 뽑아야만, 英文·英語를 배울 때 쉽게 입문할 수 있으며, 반드시 우선 중국어를 먼저 익혀야 비로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하게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진에 도착한 다음 武備·水雷·魚雷 각 학당에 나누어 파견하여 남들과 함께 강습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水師學堂에는 천천히 파견해도 될 듯하니, 혹시 매우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1~2명 파견하도록 하고 장래 군함을 구입하게 되면 다시 파견하는 것을 논의하면 됩니다. 대개 배움은 적용을 귀하게 여기고 일은 때에 맞추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반드시 급한 곳을 먼저해야 성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파견할 사람 수를 정하면 아울러 먼저 알려주시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리 그 자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쪽 나라의 철로가 점점 조선으로 다가오는 것은 실로 중국과 조선이 함께 우려하는 일입니다. 현재 東三省에서 변방 군대를 추가로 양성하여 건설 중인 [시베리아] 철로를 마주치게 하면 즉 러시아[朔庭]를 막고 조선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濟州에서 어로작업을 허용한 사안은 본래 앞서 허가해 준 일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때 만약 요지와 서로 바꾼다면 더 큰 잘못이 될 것이니, 오로지 천천히 도모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진실로 일은 마땅히 시작을 신중하게 해야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杜牧의[62] 말에 "좋은 계책은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일[自治]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유용한 인재를 비축하면 국가가 약해질 리 없고, 무익한 비용을 없애면 국가가 가난해질 리 없습니다. 이 모두 옛 사람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要言이니, 이것은 실로 오늘날 시국의 급무를 구할 방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성취는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많은 변고를 겪고 큰 우환도 많았는데, 그 해결의 단서는 현명함에 있습니다. 종전에 겪었던 여러 문제 가운데 어떤 것도 경계하고 반성하는 밑천이 될 것이라는 점은 정말 다시 아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알아주고 아껴주시는 것을 믿고 감히 가리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구한 정성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李冕相督理는 명문 출신인 데다가 재주가 뛰어납니다. 전에 면담해 보았는데 귀 국왕의 盛意를 간곡하게 모두 갖추어 제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것을 진실로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응당 수시로 돌아보고 마음속 회한을 푸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鴻章이 다시 아룁니다.

---

62) 두목(杜牧. 803~852?)은 자가 목지(牧之), 호가 번천거사(樊川居士)로 당대(唐代)의 뛰어난 시인이자 문장가이며, 『통전(通典)』의 저자로 유명한 재상 두우(杜佑)의 손자다. 여기 인용된 그의 발언은 자신의 문집 『번천문집(樊川文集)』 권5의 「죄언(罪言)」에 나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3) 문서번호 : 2-1-2-23(1802, 3160)

사안 : 조선에 총포를 기증하기 위해 이미 관원을 파견하여 운송하였고, 袁世凱로 하여금 확인한 다음 조선 국왕에게 올리도록 하였습니다(撥贈朝鮮槍砲, 已派員運解, 由遠世凱驗明, 轉呈朝鮮國王).

날짜 : 光緒十九年四月十三日(1893년 5월 2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四月十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委辦天津軍械總局道員張士珩詳稱：

竊照職局於本年四月初四日, 奉憲扎：

照得本閣爵大臣於四月初四日, 寄復駐紮朝鮮總理交涉通事宜袁道電云：

頃飭查毛瑟槍, 每桿連刀頭、佩帶、子盒全份, 約銀四兩六七錢. 每槍隨子五百粒, 約銀四兩五錢. 克鹿伯七生半過山砲連駝鞍車架子, 彈箱每尊隨子彈五百箇, 六尊一隊, 約銀一萬七千餘兩. 再敝處現存槍砲內可送給韓王毛瑟槍五百枝, 連子十萬粒, 自製兩磅過山小砲八尊, 連子二千箇, 以助捺防, 酌派領運.

等因. 四月初六日, 復奉憲台發閱袁道電稟：

歌電敬悉. 昨以憲送槍砲告, 王極忻感. 清州兵現用土槍, 京營械不敷勻撥, 待械甚亟. 已電操江, 明日開津領, 乞飭張道備發. 再韓托購械數, 尚未覆定. 凱稟.

等情. 飭即撥發領運. 各等因. 奉此. 職局遵即在於庫存項下, 選撥甯局兩磅後膛熟鐵過山砲八尊, 隨砲砲閂、車架、器具、零件均全. 配撥包鉛開花子一千顆, 銅五件, 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包鉛實心子八百顆, 鉛羣子二百顆, 鋼管門火六千枝, 後膛毛瑟刀頭步槍五百桿, 背槍皮帶五百根, 皮腰帶五百根, 銅釦全皮刀插五百箇, 皮子盒五百箇, 機器局造毛瑟槍子十萬粒. 一併裝箱封釘堅固, 派員雇船駁赴大沽口, 點交操江輪船王管駕永發, 妥慎運解袁道驗明, 轉呈朝鮮國王飭收撥用, 俾濟要需. 除批咨解朝鮮交涉通商事宜袁道查收外, 理合繕摺詳報鑒覈, 分別咨行查照.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批示並分咨暨飭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浙江溫處道袁世凱, 俟前項軍械運到驗明轉送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4월 13일, 북양대신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天津軍械總局을 맡고 있는 道員 張士珩으로부터[63]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 4일에 다음과 같은 上司[李鴻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本閣爵大臣은 4월 4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事宜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이 전보로 답장을 하였다.

지난번에 살펴보니, 마우저 소총 매 자루마다 총검과 요대·탄약상자를 갖추게 하면 약 은 4냥 6~7전, 매 자루마다 탄환 500발을 지급하면 약 은 4냥 5전이 필요하다. 크루프 7.5구경 야전포에 거치대까지 포함하고 포탄상자는 대포 1문마다 포탄 500발에, 6문을 한 단위로 하면 약 은 1만 7천여 냥이 필요하다. 또한 이곳 총포 가운데 조선 국왕에게 보낼 수 있는 마우저 소총 500자루에 탄환 10만 발, 자체 제작한 9mm 야전포 8문에 포탄 2천 발을 조선의 방어에 도움을 주고자 관원을 파견하여 지급하고자 한다.

또 4월 6일 李 中堂大人께 보내온 袁世凱의 다음과 같은 電報를 전달받았습니다.

5일 전보를[64] 확인하였습니다. 어제 李 中堂大人께서 총포를 보내주신다고 알렸더니

63) 장사형(長士珩. 1857?~1918)은 안휘성 합비(合肥) 출신으로 이홍장의 외조카(外甥)이다. 광서 14(1888)년 북경에서 진사(進士) 학위 획득에 실패하자 이홍장 휘하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공을 세워 분성보용도(分省补用道) 직함을 얻은 그는 북양군계국(北洋军械局) 총판으로 무비학당을 아울러 관리하기도 하였다.

64) 원문은 '가전(歌電)'인데 전보에서 날짜 대신 사용하는 운목(韻目)으로 가(歌)는 5일을 나타내는 글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왕이 매우 기뻐하고 감격하였습니다. 淸州兵은 현재 土槍을 사용하고 있고 京營의 무기는 모두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무기의 공급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윤선 操江호에 전보를 보내 내일 천진에서 출발하라고 요청하였으니, 張士珩道臺에게 준비하여 지급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한편 조선에서 부탁한 무기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袁世凱가 아룁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곧바로 무기를 뽑아 지급함으로써 수령하여 운반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창고에 보존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金陵機器局[甯局]에서 제조한 2파운드 후장식 야전포 8문과 砲門· 車架·器具·部品 등 일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 납으로 감싼 開花砲彈[65] 1천 발, 銅 5件, 납으로 감싼 實心彈[66] 800발, 鉛羣子 200발, 鋼管門火 6,000개, 후장식 마우저소총과 총검 500자루, 背槍皮帶 500개, 가죽요대 500개, 銅釦全皮刀插 500개, 가죽상자[皮子盒] 500개, 機器局에서 제조한 마우저 소총 탄환 10만 발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자로 꾸리고 못을 박아 밀봉한 다음 관원을 보내 배를 빌려 서둘러 大沽口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操江輪船의[67] 王永發 선장에게 넘겨 신중하게 운반하여 袁世凱道臺가 확인한 다음 조선 국왕에게 대신 전달하여 수령·사용케 함으로써 급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과 더불어 화물을 보내 朝鮮交涉通商事宜 袁世凱道臺가 그것을 점검하여 수령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상세하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나아가 각기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68]

이러한 보고를 받아 [본 북양대신 이홍장은] 批示를 내리고, 자문을 보내고, 나아가 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의 직무를 맡은 浙江溫處道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앞서 언급된 무기가 도착하면 점검하여 대신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도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하나이다.

65) 개화자(開花子)는 개화탄(開花彈)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유탄(榴彈)처럼 폭발로 살상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66) 실심탄(實心彈)은 탄피 안에 폭약이 아닌 모래 등을 채워 장갑을 뚫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67) 조강함(操江艦)을 가리키는데, 상해의 강남제조국에서 제조되었으며 1871년 북양수사에 배속되었다.

68)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상세하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나아가 각기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라는 번역문의 원문 "理合繕摺詳報鑒核, 咨行查照" 부분은 사실상 天津軍械總局의 道臺가 주접을 올리거나 자문을 보낼 수 있는 직급의 관원이 아니므로 무언가의 오류로 잘못 들어간 부분처럼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4) 문서번호 : 2-1-2-24(1818, 3187b-3188a)

사안 : 조선에 기증한 무기는 이미 조선 정부 위원이 확인·수령하였고, 아울러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해 왔습니다(贈朝鮮軍火, 已由該政府委員驗收, 並達謝忱).

날짜 : 光緒十九年五月二十五日(1893년 7월 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浙江溫處道袁世凱呈稱：

竊照本年四月二十日奉憲台扎開：

據委辦天津軍械總局張道詳稱：

竊奉憲扎遵即在於庫存項下, 選撥甯局兩磅後膛熟鐵過山砲八尊, 隨砲砲閂、車架、器具、零件均全. 配撥包鉛開花子一千顆, 銅五件, 全包鉛實心子八百顆, 鉛羣子二百顆, 鋼管門火六千枝, 後膛毛瑟刀頭步槍五百桿, 背槍皮帶五百根, 銅釦全皮刀插五百個, 皮子盒五百個, 機器局造毛瑟槍子十萬粒. 一併裝箱封釘堅固, 派員雇船駁赴大沽口, 點交操江輪船王管駕永發, 妥慎運解袁道驗明, 轉呈朝鮮國王飭收撥用, 俾濟要需. 理合繕摺詳報鑒核, 咨行查照.

等情. 據此. 扎飭俟前項軍械運到驗明, 轉送朝鮮國王飭收濟用具報, 計抄摺.[69]

各等因. 奉此. 同日並准軍械總局張道咨同前因. 伏查前項軍械等件, 於二十二日由操江兵輪員弁並仁川分署員弁, 一併妥為運解到漢, 當即驗明, 並即抄摺照會朝鮮政府派員前來, 按照抄摺件數, 逐細驗明, 轉呈朝鮮國王收用. 暨派員會同該政府委員驗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交清各在案. 茲於五月初八日, 接准該政府領議政沈舜澤照覆：

四月二十二日, 接准貴總理抄摺照會. 等因. 當即派員前往, 會同貴署委員, 按照抄摺件數, 詳細驗明轉呈. 惟念北洋大臣顧念大局, 誼切助防, 飭知軍械所協撥槍砲, 領運到漢, 以濟要需. 洵屬重貲利器, 實不勝攢頌銜感之至. 相應照覆查照.

等因. 准此. 除咨復軍械局張道查照外, 理合申復查核, 實為公便.

等情. 到本閣爵大臣.[70]

5월 25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袁世凱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 20일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委辦天津軍械總局 張士珩道臺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다.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고 즉시 창고에 보존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金陵機器局[甯局]에서 제조한 2파운드 후장식 야전포 8문과 砲門·車架·器具·部品 등 일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 납으로 감싼 開花砲彈[71] 1천 발, 銅 5件, 납으로 감싼 實心彈[72] 800발, 鉛羣子 200발, 鋼管門火 6,000개, 후장식 마우저소총과 총검 500자루, 背槍皮帶 500개, 가죽요대 500개, 銅釦全皮刀插 500개, 가죽상자[皮子盒] 500개, 機器局에서 제조한 마우저소총 탄환 10만발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자로 꾸리고 못을 박아 밀봉한 다음 관원을 보내 배를 빌려 서둘러 大沽口로

69) (25) 문서번호 : 2-1-2-25(1819, 3188b-3189b)에 따르면 '轉送朝鮮國王飭收濟用具報, 計抄摺' 부분은 아마 抄寫 과정에서 문장의 오류가 생긴 것 같다. 바로 윗줄의 문장을 보더라도 '飭收濟用具報'보다는 '飭收撥用見復'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뒷부분도 "俟前項軍械運到驗明轉送外, 相應咨會查照飭收見復, 計咨送清摺一扣"과 비슷한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抄寫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70) 바로 앞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到本閣爵大臣' 뒤에는 총리아문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 완전한 문서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71) 개화자(開花子)는 개화탄(開花彈)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유탄(榴彈)처럼 폭발로 살상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72) 실심탄(實心彈)은 탄피 안에 폭약이 아닌 모래 등을 채워 장갑을 뚫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냈습니다. 그리고 操江輪船의[73] 王永發 선장에게 넘겨 신중하게 운반하여 袁世凱道臺가 확인한 다음 조선 국왕에게 대신 전달하여 수령·사용케 함으로써 급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과 더불어 화물을 보내 朝鮮交涉通商事宜 袁世凱道臺가 그것을 점검하여 수령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상세하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나아가 각기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 [본 북양대신 이홍장은] 앞서 언급된 무기가 도착하면 점검하여 대신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여 수령·사용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은 바 있는데], 같은 날 軍械總局 張士珩道臺로부터 같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항목의 무기는 22일에 操江兵輪과 仁川分署의 문·무 관원을 통해 모두 적절하게 운반되어 한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아울러 목록을 초록하여 조선 정부에 알려 관원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록한 목록의 숫자에 비추어 상세하게 확인한 다음 조선 국왕에게 올려 수령·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정부의 위원과 함께 확인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5월 8일 조선 정부 영의정 沈舜澤의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4월 22일 귀 총리로부터 초록한 照會를 받았습니다. 이에 즉시 관원을 파견해 보내 貴署의 委員과 함께 초록한 목록의 숫자에 비추어 상세하게 확인한 다음 국왕에게 올렸습니다. 다만 北洋大臣께서 大局을 고려하여 조선의 방어를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軍械所에 지시하여 총포를 골라 한양으로 운반함으로써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거액의 무기에 해당하므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軍械局 張士珩道臺에게 답장 자문을 보내 확인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다시 알려 검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가] 본 북양대신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

73) 조강함(操江艦)을 가리키는데 상해의 강남제조국에서 제조되었으며 1871년 북양수사에 배속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5) 문서번호 : 2-1-2-25(1819, 3188b-3189b)

사안 : 조선 국왕이 방어용 무기를 기증해준 것에 대해 자문으로 감사의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朝鮮國王咨謝撥給協防軍火).

날짜 : 光緒十九年六月初三日(1893년 7월 15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六月初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五月二十七日, 准朝鮮國王咨：

本年四月二十二日, 准貴大臣咨開：

據委辦天津軍械總局張道士珩詳稱：

竊照職局於本年四月初四日, 奉憲台札開：

照得本閣爵大臣於四月初四日, 寄復駐紮朝鮮總理交涉通事宜袁道電云.

頃飭查毛瑟槍, 每桿連刀頭佩帶子盒全份, 約銀四兩六七錢. 每槍隨子五百粒, 約銀四兩五錢. 克鹿伯七生半過山砲連駝鞍車架子, 彈箱每尊隨子彈五百箇, 六尊一隊, 約銀一萬七千餘兩. 再敝處現存槍砲內可送給韓王毛瑟槍五百枝, 連子十萬粒, 自製兩磅過山小砲八尊, 連子二千箇, 以助捺防, 酌派領運.

等因. 奉此. 職局遵即在於庫存項下, 選撥甯局兩磅後膛熟鐵過山碗八尊, 隨碗碗閂車架器具零件均全. 配撥包鉛開花子一千顆, 銅五件, 全包鉛實心子八百顆, 鉛羣子二百顆, 鋼管門火六千枝, 後膛毛瑟刀頭步槍五百桿, 背槍皮帶五百根, 皮腰帶五百根, 銅釦全皮刀插五百箇, 皮子盒五百箇, 機器局造毛瑟槍子十萬粒. 一併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裝箱封釘堅固，派員雇船駁赴大沽口，點交江輪船王管駕永發，妥慎運解袁道驗明，轉呈朝鮮國王飭收撥用，俾濟要需．除填批咨解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袁道查收外，理合繕具細數清摺，詳報鑒核，分別咨行查照．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除批示並分咨暨飭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浙江溫處道袁世凱，俟前項軍械運到驗明轉送外，相應咨會查照，飭收見復，計咨送清摺一扣．

等因．並據駐紮朝鮮總理商務袁道，將前項砲位、槍彈等件運到漢城，點交政府驗明轉呈前來．竊念貴大臣統籌大局，輒費巨款，分撥利械，以助操防．雖貴大臣中外一視，克恢遠畧，而在敝邦感頌之私，無容名言．相應咨復貴大臣查照．

等因．到本閣爵大臣．准此．除分咨外，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6월 3일, 北洋大臣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5월 27일, 조선 국왕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 22일 귀 대신의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委辦天津軍械總局 道員 張士珩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4월 4일에 다음과 같은 上司[李鴻章]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本閣爵大臣은 4월 4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事宜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이 전보로 답장을 하였다.

지난번에 살펴보니, 마우저소총 매 자루마다 총검과 요대·탄약상자를 갖추게 하면 약 은 4냥 6~7전, 매 자루마다 탄환 500발을 지급하면 약 은 4냥 5전이 필요하다. 크루프 7.5구경 야전포에 거치대까지 포함하고 포탄상자는 대포 1문마다 포탄 500발에, 6문을 한 단위로 하면 약 은 1만 7천여 냥이 필요하다. 또한 이곳 총포 가운데 조선 국왕에게 보낼 수 있는 마우저소총 500자루에 탄환 10만발, 자체 제작한 9mm 야전포 8문에 포탄 2천 발을 조선의 방어에 도움을 주고자 관원을 파견하여 지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고 즉시 창고에 보존하고 있는 항목 가운데 金陵機器局[甯局]에서 제조한 2파운드 후장식 야전포 8문과 砲門·車架·器具·部品 등 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체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 납으로 감싼 開花砲彈[74] 1천 발, 銅 5件, 납으로 감싼 實心彈[75] 800발, 鉛羣子 200발, 鋼管門火 6,000개, 후장식 마우저소총과 총검 500자루, 背槍皮帶 500개, 가죽요대 500개, 銅釦全皮刀插 500개, 가죽상자[皮子盒] 500개, 機器局에서 제조한 마우저소총 탄환 10만 발을 골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상자로 꾸리고 못을 박아 밀봉한 다음 관원을 보내 배를 빌려 서둘러 大沽口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操江輪船의 王永發 선장에게 넘겨 신중하게 운반하여 袁世凱道臺가 확인한 다음 조선 국왕에게 대신 전달하여 수령·사용케 함으로써 급한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과 더불어 화물을 보내 朝鮮交涉通商事宜 袁世凱道臺가 그것을 점검하여 수령하게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주접을 갖추어 상세하게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나아가 각기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아] 본 북양대신은 지시를 내리고, 자문을 나누어 보내는 일 및 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浙江溫處道 袁世凱로 하여금 위 항목의 무기가 도착하면 확인한 다음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것 외에, 마땅히 자문으로 알리는 바이니, 확인하여 수령하라고 지시한 다음 답장을 보내되, 수령한 무기 목록 1건을 자문으로 보내주십시오.

[조선 국왕은 이상과 같은 북양대신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駐紮朝鮮總理商務 袁世凱道臺가 위 항목의 총포·탄약 등을 한성으로 운반해와서 조선 정부에 확인하여 넘겨 수령하도록 하였습니다. 귀 대신께서 大局을 통괄하시면서 거금을 들여 훌륭한 무기를 보내주심으로써 조선의 국방을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대신께서 中外를 하나로 보고 원대한 계략을 품으셨겠지만 조선으로서는 정말 감사하고 송축하는 마음을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대신께 답장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선 국왕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문을 나누어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74) 개화자(開花子)는 개화탄(開花彈)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유탄(榴彈)처럼 폭발로 살상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75) 실심탄(實心彈)은 탄피 안에 폭약이 아닌 모래 등을 채워 장갑을 뚫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조선의 사절 파견과 체제 문제
(朝鮮遣使與體制問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의 사절 파견과 체제 문제 (朝鮮遣使與體制問題)

(26) 문서번호 : 2-1-3-01 (705, 1137a)

사안 : 조선 국왕이 修信使 朴泳孝가 일본에 가서 답장 방문을 하고 일을 마쳤다고 돌아와 보고하였음을 자문으로 알려 왔습니다(咨送朝鮮國王爲修信使朴泳孝, 前往日本答聘竣事咨文).

날짜 : 光緒九年二月二十一日(1883년 3월 29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一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准盛京禮部遞到朝鮮國修信使朴泳孝等前往日本竣事告還, 該國王咨報及總理各國事務衙門並北洋大臣咨文各一件. 除將該國修信使還國等情, 業由本部定於二十二日, 據咨轉奏, 並咨送北洋大臣外, 相應將該國王咨報貴衙門來文一件, 咨送查照可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월 21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盛京禮部에서 조선국 수신사 朴泳孝 등이 일본으로 가서 일을 끝내고 귀국하였다고 조선 국왕이 알리는 자문 및 총리아문 및 북양대신에게 조선 국왕이 보내는 자문 각 1건을 받았습니다. 조선 수신사의 귀국 등은 본 예부에서 이미 22일에 자문에 따라 상주하고 북양대신에게 자문을 알렸으므로, 마땅히 조선 국왕이 귀 총리아문에 알리기 위해 보내온 문건을 자문으로 보내 살펴보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7) 문서번호 : 2-1-3-02(706, 1137b)

사안 : 修信使 朴泳孝 등이 일본에 답장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일본 사신 다케조에가 함께 왔습니다(修信使朴泳孝等, 赴日答聘竣事返國, 日使竹添與之偕來).

날짜 : 光緒九年二月二十一日(1883년 3월 29일)

발신 : 朝鮮國王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一日, 朝鮮國王文稱：

光緒八年八月十二日, 差遣全權大臣兼修信使、錦陵尉朴泳孝、全權副官兼修信副使、副護軍金晩植、從事官、副正字徐光範, 前往日本緣由, 業已具咨轉報矣. 修信使一行始於本年十一月二十八日竣事告還. 在日四朔, 邀接益摯, 館餼無缺, 足見賓主孚感, 隣邦輯睦. 仍與日本公使竹添進一郎偕來, 見駐公館, 前後事情, 宜亟上聞. 為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

2월 21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8년 8월 12일, 全權大臣 겸 修信使 錦陵尉 朴泳孝와 全權副官 겸 修信副使 副護軍 金晩植, 從事官 副正字 徐光範을 일본으로 보낸 연유는 이미 자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수신사 일행은 올해 11월 28일 일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4개월 동안 접견은 매우 빈번하였고 관소의 대접은 문제가 없었으니, 손님과 주인의 마음이 잘 통하였다는 것과 이웃나라가 화목하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가 함께 와서 상주할 공관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후 사정은 응당 서둘러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8) 문서번호 : 2-1-3-03(709, 1139)

사안 : 修信使 朴泳孝 등이 일본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려온 것을 대신 상주합니다(轉奏朝鮮國王咨報, 修信使朴泳孝等赴日竣事返國).

첨부문서 : 1.「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修信使 朴泳孝 등이 일본에 가서 일을 마쳤습니다(修信使朴泳孝等赴日竣事).

날짜 : 光緒九年二月二十三日(1883년 3월 31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三日, 軍機處交出禮部尚書恩承等摺稱：

奏為據咨轉奏事.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一件. 臣等公同閱看, 係因該國前派修信使朴泳孝等前往日本, 現已竣事告還等情. 該國王咨報到部, 謹抄錄原咨, 恭呈御覽. 為此謹具奏聞.

光緒九年二月二十二日, 軍機大臣奉旨：

知道了.

欽此.

照錄「清摺」

1.「朝鮮國王咨文」

朝鮮國王, 為咨報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光緒八年八月十二日, 差遣全權大臣兼修信使、錦陵尉朴泳孝、全權副官兼修信副使、副護軍金晩植、從事官、副正字徐光範, 前往日本緣由, 業已具咨轉報矣. 修信使一行, 始於本年十一月二十八日竣事告還. 在日本四朔, 邀接益摯, 館餼無暫, 足見賓主孚感, 鄰邦輯睦. 仍與日本公使竹添進一郎偕來, 見駐公館, 前後事情, 宜亟上聞. 為此合行移咨, 請照驗施行.

2월 23일, 軍機處에서 예부상서 恩承 등의 다음과 같은 摺을 보냈습니다.

자문을 받고 대신 상주합니다. 盛京 禮部에서 조선 국왕의 자문 1건을 보내왔습니다. 신 등이 함께 열람해보니 조선에서 修信使 朴泳孝 등을 파견해서 일본으로 보냈었는데, 지금 일을 끝내고 귀국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국왕의 자문이 본 예부에 도착하였으니, 삼가 원 자문을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9년 2월 22일, 軍機處는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상.

첨부문서 : 「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1. 「조선 국왕의 자문」

광서 8년 8월 12일 全權大臣 겸 修信使 錦陵尉 朴泳孝와 全權副官겸 修信副使 副護軍 金晩植, 從事官 副正字 徐光範을 일본으로 보낸 연유는 이미 자문으로 알려 전달한 바 있습니다. 수신사 일행은 올해 11월 28일 일을 마치고 귀국 보고를 하였습니다. 일본에 있었던 4개월 동안 접견은 매우 빈번하였고 관소의 대접은 문제가 없었으니, 손님과 주인의 마음이 잘 통하였다는 것과 이웃 나라가 화목하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가 함께 와서 상주할 공관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후 사정을 응당 서둘러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9) 문서번호 : 2-1-3-04(710, 1140a)

사안 : 본 예부의 原奏 및 조선 국왕이 修信使 朴泳孝가 일을 마치고 귀국하였다는 자문을 알립니다(知照本部原奏及朝鮮國王爲修信使朴泳孝竣事告歸咨文).

날짜 : 光緒九年二月二十三日(1883년 3월 31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三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抄錄朝鮮國王咨文轉奏一摺, 於光緒九年二月二十二日具奏, 本日軍機處發出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原文、原奏詳見本月二十三日軍機處抄摺]

2월 23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본 예부에서 조선 국왕의 자문을 초록하여 대신 상주한 주접을 광서 9년 2월 22일 상주하였는데, 오늘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유지를 보내왔습니다.

알았다.

이상. 따라서 마땅히 조선 국왕의 원 자문 및 본 예부의 原奏를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알려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할 것입니다.

[원 자문과 原奏는 이번 달 23일 軍機處의 抄摺에 자세히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0) 문서번호 : 2-1-3-05(745, 1177b)

사안 : 앞으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논의할 때 마땅히 중국의 年月을 사용함으로써 屬邦體制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嗣後與他國議約, 當遵寫中國年月, 以符屬邦體制).

날짜 : 光緒九年七月十四日(1883년 8월 16일)

발신 : 朝鮮國王

수신 : 總理衙門

七月十四日, 朝鮮國王文稱：

光緒九年六月二十六日, 承准貴衙門咨, 節該：[1]

查朝鮮國前與美國所訂條約, 註明中國光緒某年月日. 此次補訂專條, 未經書寫中國年月, 與上次辦法不符. 嗣後朝鮮國無論與何國辦理交涉文件, 仍應查照上年與美國所訂條約, 一律繕寫中國年月日, 以符體制.

等因. 謹已閱悉, 仍當遵照無違. 相應咨覆貴衙門, 請煩查照.

7월 14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9년 6월 26일 다음과 같은 귀 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전에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中國 光緒 某年 月日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에 專條를 보완할 때, 중국의 年月을 쓰지 않았으니 앞서 방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선국은 어떤 나라와 교섭 문건을 처리하건 간에 작년 미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한결같

1) 절해(節該)는 보통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복을 피해 생략되거나 요약된 형태임을 나타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중국의 年月日을 사용함으로써 체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삼가 확인하였습니다. 마땅히 이를 준수하여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귀 아문에 답장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1) 문서번호 : 2-1-3-06(746, 1178a)

사안 : 앞으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논의할 때 마땅히 중국의 年月을 사용함으로써 屬邦體制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조선 국왕이 답장 자문을 보내왔습니다(朝鮮國王咨覆. 嗣後與他國議約, 當註明中國年月, 以符屬邦體制).

날짜 : 光緒九年七月十四日(1883년 8월 1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十四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本年七月十一日, 准朝鮮國王咨開：

光緒九年六月二十六日, 承准貴大臣咨, 節該：

查上年朝鮮國與美國所訂條約, 註明中國光緒某年月日. 此次補訂專條, 未經書寫中國年月, 與原約辦法不符. 嗣後貴國無論與何國辦理交涉文件, 仍應查照上年與各國所訂條約, 一律註明中國年月日. 以符體制.

等因. 謹已閱悉, 仍當遵照無違. 相應咨覆貴大臣, 請煩查照.

等因. 到本大臣. 准此. 除咨行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7월 14일, 署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올해 7월 11일, 다음과 같은 조선 국왕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광서 9년 6월 26일 다음과 같은 귀 아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은 전에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中國 光緒 某年 月日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에 專條를 보완할 때, 중국의 年月을 쓰지 않았으니 앞서 방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선국은 어떤 나라와 교섭 문건을 처리하건 간에 작년 미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한결 같이 중국의 年月日을 사용함으로써 체제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삼가 확인하였습니다. 마땅히 이를 준수하여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귀 아문에 답장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자문으로 알리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2) 문서번호 : 2-1-3-07(796, 1288a)

사안 : 조선 국왕의 자문 및 영국·독일과 다시 체결한 조약문을 자문으로 보냅니다(咨送朝鮮國王咨文及與英, 德重訂條約).

날짜 : 光緒九年十二月初二日(1883년 12월 3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二日, 署北洋大臣李鴻章文稱：

現准朝鮮國王遞到咨文三分, 鈔錄朝鮮與英、德兩國重訂條約、章程、稅則及善後續條各件. 除將來文抄本分別存送外, 相應將遞寄貴衙門公文鈔本咨送. 為此合咨貴衙門, 請煩查收.

12월 2일, 署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지금 조선 국왕이 자문 3건과 조선과 영국·독일 양국이 다시 체결한 조약문, 장정, 稅則 및 善後續條 각 건의 초록을 보내왔습니다.[2] 도착한 문서의 초록을 각기 보존·발송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보내는 공문 초본을 자문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확인하여 수령하십시오.

2) 1882년 6월 6일(음력 4월 21일) 조선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와 영국의 윌리스(G.O. Willes, 韋力士)는 제물포에서 제1차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주청영국공사 파크스 등은 조선과의 조약이 일본의 조약 개정 요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선과의 조약 비준을 반대하였다. 이듬해 영국은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수정을 위한 교섭을 펴게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에 수정된 안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3) 문서번호 : 2-1-3-08(798, 1311b-1313a)

사안 : 새로운 조·영조약에 조선이 중국 소속이라는 것이 명확히 실려 있지 않으니, 즉시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英韓新約未明載朝鮮爲中國所屬, 應卽令其更正).

첨부문서 : 1.「上海字林西字報의 번역문(上海字林西字報譯文)」: 영국·조선의 새 조약 12항목(英韓新約十二款)

날짜 : 光緒九年十二月初五日(1884년 1월 2일)

발신 : 江海關道 邵友濂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五日, 江海關道邵友濂函稱：

頃閱『字林西字報』所載, 本年十月二十七日, 高麗與英國新立合約十二款, 業已簽名, 並無認高麗為中國所屬之語. 查去年西字報載, 高麗與美國立約, 第一款即註明向來高麗入貢歸附中國, 美國亦以為是. 茲與英國立約不載此條, 深恐將來又成法越故事, 多費唇舌. 應否乘其合約未定時即令更正之處. 茲將譯出西報所載高麗與英國所立新約十二款, 並美高合約第一款, 一並照抄, 送祈察閱. 應否轉呈堂憲核辦之處, 並乞卓裁是幸. 專泐. 敬請台安.

照錄清摺

1.「『上海字林西字報』譯文」

謹將『字林西字報』所登, 十月二十七日, 高麗與英新立和約, 業已簽名, 共十二款, 譯列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如左：

一. 兩國和好後, 彼此遇有事變, 凡力能撮合者, 各宜代勞.

二. 各設公使、領事.

三. 無論高麗官民, 或別國人控告英人者, 全歸英員審判. 若有背約應罰及充公等事, 亦歸英員審斷.

四. 議開仁川、元山、釜山、漢陽楊花鎮與英國通商. 若楊花鎮、釜山二處不合通商之用, 准在附近擇取. 若日後華人不來漢陽貿易, 英人亦不在此貿易. 以上五處, 准英人買地、建屋、儲倉、設廠. 惟租界地方及工部局章程, 須各國官員會同分界, 商議一切. 英民任在內地游歷貿易, 又須遵工部局管轄, 及依兩國所議章程.

五. 英人可由外國運貨到高麗. 犯禁貨不計. 如貨已在高麗納稅, 後運往別處發售者 須憑原票給還稅銀. 其進口貨曾經納稅者, 後往內地及高麗別口岸, 不得重稅. 經稅出口土產後, 仍運往高麗別口岸發售者, 原稅亦應給還. 船入高國通商口岸, 無論四個月內入多少次. 每四個月只納船鈔一次, 每次每噸規銀三角. 以為建燈塔築壩頭通水道之用.

六. 若西商運貨到未經通商口岸, 以圖漏稅, 即將該貨充公, 另照貨價倍罰.

七. 英船在高麗若有觸石擱淺, 高國須代保護貨物, 及供給衣食與遇難英民.

八. 英國戰船可到高麗各口岸, 船上器械暫儲通商口岸處. 海邊深淺, 悉任英人繪圖丈量.

九. 英人可雇高麗人辦理各事, 違例者不准.

十. 高麗以後如與別國立約, 凡有益外國者, 英亦同沾利益.

十一. 此和約及稅則, 十年後兩國再訂交換.

十二. 約中字有疑義, 以英文為証.

查此和約係駐北京英使巴夏禮所議. 華曆十月二十七日, 已在高麗簽名. 前日英提督威厘士所議和約, 已置不用.

現聞德國亦派有公使在高麗, 議再立約云云.

12월 5일, 江海關道 邵友濂의[3] 다음과 같은 서신이 도착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난번『字林西字報』[4]에 실린 바를 보니, 올해 10월 27일 高麗와 영국이 새로 12항목의 조약에 이미 서명하였다고 하는데, 고려가 중국의 소속이라는 말을 결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작년『西字報』에 고려와 미국의 조약이 실려 있었는데 제1조에 종래 고려는 중국에 入貢하며 歸附하였다고 명확히 밝혔고, 미국 또한 이를 옳다고 여겼습니다.[5] 이번에 영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이 조항이 실려 있지 않으니, 앞으로 또 프랑스와 베트남의 선례처럼 되어, 수많은 논쟁을 되풀이해야 되지 않을까 몹시 염려됩니다.[6] 응당 그 조약이 아직 교환되지 않았을 때 즉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西報에 실린 고려와 영국이 맺은 12조의 새 조약 번역문과 미국·고려의 합약 제1조를 함께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보내니, 李 中堂大人께 대신 보고하여 검토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특별히 서신을 보냅니다. 삼가 안녕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첨부문서 : 1.「『上海字林西字報』기사의 번역문」[7]

---

3) 소우렴(邵友濂, 1841~1901)은 자가 소춘(筱春. 또는 小村, 攸枝)으로 절강성(浙江省) 여요(余姚) 출신이다. 일찍부터 부친의 공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1874년에 총리아문의 장경(章京)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1878에는 숭후(崇厚)를 수행하여 러시아에 가서 이리교섭에 참가하였다. 1882년 소송태도대(苏松太道道臺), 1886년 하남안찰사(河南按察使), 1887년 대만포정사(台湾布政使), 1889년 호남순무(湖南巡抚), 1891년 대만순무(台湾巡抚) 등에 부임하였다.

4)『자림서보(字林西報. (North China daily news)』는 자림양행(字林洋行)에서 1850년 최초로 발행을 시작한 영자신문『북화첩보(北华捷报. North-China Herald)』의 부속지『항운상업신문(航運商業新聞)』을 1864년부터 종합일간지로 승격한 것이다. 이후『자림서보』의 일반 보도가 점차 늘어나면서『북화첩보』를 대체하게 되었다.

5) 중국 측이 마련한 조약 초안의 제1조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교섭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반대로 삭제하였고, 대신 조선 측에서 미국에 이른바 같은 취지의「속방조회」를 보내기로 타협하였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서술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것이다.

6) 프랑스에 대해 청은 조공국인 베트남이 자신의 속방(屬邦)이므로, 프랑스와 베트남의 관계에 개입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베트남과의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프랑스가 청이 주장하는 이러한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양국이 논쟁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가리킨다. 청불전쟁의 결과 청조는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과 프랑스와 베트남이 맺은 조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7) 제2차 조·영수호조약의 한문본은 규장각의『朝英通商條約』(奎23364) 및『고종실록』20년 10월 27일 수록되었으며 영문은 동북아역사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 : //contents.nahf.or.kr/id/NAHF.gk.d_0007_2220. 제1차 조·영조약은 김형종 등역,『국역『청계중일한관계사료』4』(동북아역사재단, 2018) (25) 문서번호:2-1-1-84(455, 718b-726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가『字林西字報』에 실린 바에 의하면 10월 27일 고려와 영국이 새로 조약을 체결하여 이미 서명을 하였는데, 그 12개 조항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1. 양국은 和好 이후 피차 한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힘과 능력을 모은 사람이 각각 상대국을 대신하여 노력한다.
2. 각기 공사와 영사를 설치한다.
3. 고려의 관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이 영국인을 고소할 경우 모두 영국 관원에게 넘겨 재판한다. 가령 조약을 여겨 응당 벌을 받거나 몰수하는 사안도 또한 영국 관원에게 넘겨 재판한다.
4. 仁川, 元山, 釜山, 漢陽 楊花鎭을 열어 영국과 통상한다. 가령 양화진과 부산 두 곳이 통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근에서 항구를 선택하는 것을 허락한다. 가령 이후 중국인이 漢陽에 와서 무역하지 않는다면 영국인도 또한 이곳에서 무역하지 않는다. 이상 다섯 곳에서는 영국이 땅을 사고 가옥과 창고, 공장을 짓는 것을 허락한다. 조계 지역 및 工部局章程에[8] 대해서는 각국 관원이 함께 分界하여 모든 사안을 상의한다. 영국민이 내지에서 이동하며 무역할 때는 工部局에서 관할하며 양국이 논의한 장정을 따른다.
5. 영국인이 외국에서 고려로 화물을 가져올 수 있다. 금지된 화물은 제외한다. 가령 외국에서 가져온 화물을 고려에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다른 곳으로 가져가 파는 경우, 원래의 관세납부 증명서에 근거하여 관세를 환급한다. 수입화물에 대해 이미 관세를 납부한 경우, 內地 및 고려의 다른 개항장으로 가져갈 때는 다시 정식 관세를 거두지 않는다. 수출세를 낸 토산물을 고려의 다른 개항장으로 가서 파는 경우, 원래의 관세 또한 마땅히 환급한다. 배가 고려의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 4개월 내에는 몇 차례 드나들던 관계없이 4개월마다 톤세[船鈔]를 한 차례만 납부하며, 매 톤당 은 3角으로 정한다. 이것을 등대, 탑, 제방 및 수로 건설 등에 사용한다.
6. 서양 상인이 아직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서 탈세를 꾀한다면 해당 화물을 몰수하고 따로 화물 가격에 따라 벌금을 매긴다.
7. 영국 선박이 고려에서 암초를 만나 부서진다면 고려는 대신 화물을 보호하고 조난당한

8) 공부국(工部局. The Municipal Council)은 청말 열강이 중국의 조계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구, 즉 시정위원회이다. 상해에도 공동조계에 설치되어 재정·토목·위생·교육·경찰 등 일반행정을 담당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영국민에게 衣食을 공급한다.

8. 영국 전함은 고려의 각 항구에 갈 수 있으며 선상의 무기는 잠시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다. 해안의 깊이는 모두 영국인이 지도를 그리고 측량할 수 있다.
9. 영국인이 고려인을 고용해 각종 사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을 어기는 경우 허락하지 않는다.
10. 고려는 이후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외국에 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영국 역시 그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다.
11. 이 조약 및 稅則은 10년 후 양국이 다시 논의하여 교환한다.
12. 조약 가운데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英文으로 증빙한다.

조사해보건대, 이 조약은 북경주재 영국공사 파스크[巴夏禮]가 주도한 것입니다. 음력 10월 27일 파크스가 고려에서 서명하였고, 이전에 영국 제독 윌리스(George O. Willes, 威厘士)가 체결한 조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도 또한 공사를 파견해서 고려와 논의한 다음 다시 조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4) 문서번호 : 2-1-3-09(801, 1317a)

사안 : 조선과 영국·독일이 조약을 맺었는데, 빠뜨리고 서술해서 응당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邵友濂道臺가 보낸 서신을 초록하여 보내니 참작하십시오(朝鮮與英德所訂條約有漏敘, 應更正之處. 鈔寄邵道來函參酌).

날짜 : 光緒九年十二月十一日(1884년 1월 8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署北洋大臣李鴻章

十二月十一日, 致署北洋大臣李鴻章函.[詳見密啟]

浮籤 : 函述朝鮮與英、德兩國換約內有漏敘之處, 應行更正, 並抄邵道來函附閱由.

12월 11일, 署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상세한 내용은 密啟에 보인다].

첨부 내용 : 조선과 영국·독일이 맺은 조약 가운데 빠뜨리고 서술한 곳이 있으니 응당 바로잡아야 하며, 邵友濂道臺가 보낸 서신을 초록하여 보내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5) 문서번호 : 2-1-3-10(802, 1317b)

사안 : 조선과 영국·독일이 조약을 교환한 사안(朝鮮與英, 德換約事).

날짜 : 光緒九年十二月十四日(1884년 1월 1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四日, 署北洋大臣李鴻章函[詳見密檔].

浮籤 : 函覆朝鮮與英、德換約各情由

12월 14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密檔에 보인다].

첨부 내용 : 조선과 영국·독일이 조약을 교환한 각 사유를 서신으로 답장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6) 문서번호 : 2-1-3-11(829, 1342b)

사안 : 조선에 파견된 襄辦商務委員 馬建常의 귀국을 허락합니다(准派赴朝鮮襄辦商務委員馬建常回國).

날짜 : 光緒十年十二月十四日(1884년 1월 1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派赴朝鮮襄辦商務委員、中書科中書馬建常稟程：

竊自光緒八年秋, 特奉奏調來韓, 襄辦善後事宜. 迄今兩易春秋. 深幸國王留情時務, 人材輩出, 內政、外交日新月異. 並經廣攬洋人, 徵收關稅, 開採礦地, 風氣駸駸. 建常留此, 秋毫無補, 而家母多病, 倚閭為勞. 用敢陳情歸讅, 並懇移咨朝鮮國王查照施行. 等情. 到本署大臣. 據此. 查該員現因母病, 自應准其歸省. 除批示並分咨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2월 1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에 파견된 襄辦商務委員 中書科中書 馬建常이[9]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9) 마건상(馬建常. 1840~1939)은 원명은 마지덕(马志德)이고 약슬(若瑟)·흠선(钦善)·건상(建常)·량(良)이란 이름도 사용하였다. 자는 사장(斯藏) 또는 상백(相伯) 등인데, 마상백, 또는 마량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청말의 저명한 외교관 마건충(馬建忠)의 형이기도 하다. 주일 영사를 지낸 다음 1882년에 정부 기구가 개편된 후 이홍장의 추천으로 조선에 와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참의(參議)가 되고, 후에 참찬(參贊)으로 승진하였다. 1884년 귀국 이후에는 복단공학(复旦公学) 등의 창시 등 교육가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光緖 8(1882)년 가을 奏派되어 조선에 와서 善後事宜를 도와 처리하였고 지금까지 두 해가 지났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국왕이 時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재가 배출되어 내정 및 외교가 날로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울러 널리 서양인을 고용하여 關稅를 징수하고 鑛山을 개발하는 등 풍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러도 조금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병이 잦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히 상황을 아뢰며 돌아가 뵙고자 하니,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살펴보건대, 마건상은 현재 모친의 병 때문에 당연히 그 귀성을 허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자문을 나누어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리오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이름을 떨쳤으며 천주회 신부이자 신학박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7) 문서번호 : 2-1-3-12(963, 1666a)

사안 : 이미 禮曹參判 徐相雨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우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已派禮曹參判徐相雨等, 齎國書前往日本修好).

날짜 : 光緒十一年二月十一日(1885년 3월 27일)

발신 : 朝鮮國王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一日, 朝鮮國王文稱：

照得敝邦自經變亂, 鄰交未孚. 去年十一月十八日, 日本特派全權大使井上馨前來修約, 言歸于好. 敝邦廷議, 以為交際以安民為主, 不可妄啟爭端, 既釋悁忿, 禮宜報聘. 遂於十二月二十一日派禮參判曹徐相雨、兵曹參判穆麟德, 充正副大臣, 前往日本東京, 申諦交誼. 茲將抄錄往復國書, 庸備鑒閱外, 於應備文咨會. 請煩貴王公諸大臣照驗轉奏大陛, 以表小邦無事不達之忱. 須至咨者.

2월 11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은 변란을 겪은 이후, 鄰交가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18일 일본에서 全權大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특별히 파견하여 조약을 맺고[10] 다시 우호 관계를 회복하

10) 이것은 한성조약(漢城條約)을 가리킨다. 일본은 갑신정변 뒷처리를 위해서 1884년 12월에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서기관 곤도[近藤眞鋤],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D. W. Stevens) 및 2개 대대병력과 7척의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한성에 들어왔다. 조선에서는 좌의정 김홍집(金弘集)을 전권대사로 삼아 협상을 시작하였다. 일본 측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고종 22년 11월 24일(서기 1885년 1월 9일)에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였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交際는 安民을 위주로 하되 헛되이 쟁단을 열어서는 안 되며, 기왕의 분노를 풀고 예의상 마땅히 답장 방문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월 21일 예조참판 徐相雨, 병조참판 묄렌도르프(穆麟德)를 선발하여 正·副大臣으로 임명한 다음 일본 도쿄로 가서 우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왕래한 국서를 초록하여 열람하도록 갖추는 것 외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귀 王公諸大臣께서 확인하시고 황상께 대신 상주해주셔서, 모든 일에 아뢰지 않는 경우가 없는 조선의 정성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8) 문서번호 : 2-1-3-13(1006, 1853a)

사안 : 조선 국왕이 徐相雨를 일본으로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한 일을 자문으로 알려왔습니다(朝鮮國王咨報遣徐相雨等赴日締交).

날짜 : 光緒十一年五月二十三日(1885년 7월 5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三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准盛京禮部遞到朝鮮國遣使徐相雨等, 前往日本申諦交誼, 信使回還, 該國王咨報本部及總理各國事務衙門並北洋大臣咨文各一角. 除將該國王咨報緣由, 本部另行辦理外, 相應將該國王文一件, 咨送總理各國事務衙門查照可也.

5월 23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盛京禮部로부터 朝鮮國에서 파견한 徐相雨 등이 일본으로 가서 다시 우호 관계를 회복한 다음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조선 국왕이 본 禮部 및 총리아문, 그리고 北洋大臣에게 보내는 자문을 각 한 통씩 받았습니다. 조선 국왕이 자문을 보낸 연유에 대해서는 예부에서 따로 처리하는 것 외에, 마땅히 조선 국왕의 문서를 총리아문에도 자문으로 보내야 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9) 문서번호 : 2-1-3-14(1007, 1853b)

사안 : 일본에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한 다음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을 자문으로 알립니다(咨報遣使赴日本締交, 事竣告還).

날짜 : 光緒十一年五月二十三日(1885년 7월 5일)

발신 : 朝鮮國王

수신 : 總理衙門

五月二十三日, 朝鮮國王文稱：

光緒十年十二月二十一日, 差遣信使禮曹參判徐相雨、兵曹參判穆麟德, 前往日本, 申諦交誼之緣由, 業已具咨轉報矣. 信使一行, 始於本年二月二十日竣事告還. 而日本之邀接館饌, 照例無虧, 足見誠信相孚, 和好益摯. 將此事情宜亟上聞. 為此合行移咨, 請照驗轉奏施行.

5월 23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0년 12월 21일, 修信使 禮曹參判 徐相雨, 兵曹參判 穆麟德를 일본으로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한 연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문을 갖추어 알린 바 있습니다. 修信使 일행은 올해 2월 20일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의 접견과 숙소의 대접은 전례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으니 성의와 신뢰가 서로 부합하고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응당 서둘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0) 문서번호 : 2-1-3-15(1013, 1861)

사안 : 일본에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조선의 자문을 받고 禮部에서 대신 상주합니다(禮部轉奏朝鮮遣使赴日締交咨文).

첨부문서 : 1.「예부의 奏摺(禮部奏摺)」: 조선 국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고 일을 마치고 귀국하였다는 내용을 자문으로 알려 왔습니다(朝鮮國王咨報遣使赴日 已事竣告還).

2.「조선 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文)」: 修信使 禮曹參判 徐相雨 등이 일본을 방문한 다음 일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咨報信使禮曹參判徐相雨等聘日已事竣還國).

날짜 : 光緒十一年六月初三日(1885년 7월 14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六月初三日, 軍機處交片稱：

本日禮部奏, 朝鮮國遣使前往日本締交, 據咨轉奏摺,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原摺咨文各一件, 知照貴衙門欽遵可也.

照錄抄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禮部奏摺」

禮部尚書臣宗室延煦等跪奏，為據咨轉奏事.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一件. 臣等公同閱看，係因該國前遣使徐相雨等前往日本，申諦交誼，現已竣事告還，咨請臣部，代為轉奏等情. 臣等查上年十月間，該國變亂後，日本國遣使井上馨，先赴朝鮮修約，言歸於好. 朝鮮於十二月間遣禮曹參判徐相雨、兵曹參判穆麟德，充正副使，前往日本，申諦交誼. 本年二月該國王遣使齎咨來京，並鈔錄該國與日本往復國書報部，經臣等據咨轉奏在案. 今該國王將信使竣事造還緣由，咨報到部. 謹鈔錄原咨，恭呈御覽，奏聞.

2.「朝鮮國王咨文」

朝鮮國王，為咨報事.

光緒十年十二月二十一日，差遣信使，禮曹參判徐相雨、兵曹參判穆麟德，前往日本，諦交誼之緣由，業已具咨轉報矣. 信使一行始於本年二月二十日竣事告還. 而日本之邀接館餼，照例無虧，足見誠信相孚，和好益摯. 將此事情宜亟上聞. 為此合行移咨，請照驗轉奏施行.

6월 3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다.

오늘 禮部에서 조선국이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자문을 받고 대신 상주하였고, 이에 대해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따라서 마땅히 원 주접과 자문 각 1건을 초록하여 귀 아문에 알리니 삼가 준수하십시오.

첨부문서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예부의 奏摺」

禮部尙書인 臣 宗室 延煦 등이 삼가 무릎을 꿇고 아룁니다. 조선 국왕의 자문을 받고 대신 상주합니다.

盛京 禮部에서 보낸 조선 국왕의 자문 1건을 받았습니다. 신 등이 함께 열람해보니, 조선에서 전에 徐相雨 등을 일본으로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하고 현재 일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禮部에서 대신 상주해 달라는 자문이었습니다. 신 등이 살펴보건대 작년 10월 무렵 조선에서 변란이 발생한 후 일본에서는 사신 이노우에 가오루를 파견하여 먼저 조선에 가서 조약을 맺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12월 무렵 禮曹參判 徐相雨, 兵曹參判 穆麟德을 선발하여 正·副使에 임명한 다음 일본에 가서 다시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올해 2월 조선 국왕은 자문전달관을 북경으로 보내고 아울러 조선이 일본과 주고받은 국서를 초록하여 본 예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신 등은 이 자문을 받고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지금 조선 국왕이 修信使가 일을 마치고 귀국한 연유를 본 예부에 자문으로 알려왔으니, 삼가 원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조선 국왕의 자문」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광서 10년 12월 21일 修信使 禮曹參判 徐相雨, 兵曹參判 穆麟德를 일본으로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한 연유에 대해서는 이미 자문을 갖추어 알린 바 있습니다. 修信使 일행은 올해 2월 20일에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일본의 접견과 숙소의 대접은 전례에 비추어 문제가 없었으니 성의와 신뢰가 서로 부합하고 우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응당 서둘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내니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1) 문서번호 : 2-1-3-16(1014, 1892a)

사안 :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한 일에 대해 대신 전달하여 알립니다(朝鮮遣使往日締交事, 轉行知照).

날짜 : 光緒十一年六月初五日(1885년 7월 16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六月初五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抄錄朝鮮國王咨文轉奏一摺, 於光緒十一年六月初三日具奏, 准軍機處片交：

本日禮部奏, 朝鮮國遣使前往日本諦交一摺, 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除將原摺咨文抄交總理各國事務衙門外, 相應傳知禮部欽遵.

等因. 前來. 除原奏及咨文已由軍機處抄交外, 相應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6월 5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本 禮部에서 조선 국왕의 자문을 초록하여 대신 아뢰는 주접을 광서 11년 6월 3일에 상주하였고, 軍機處로부터 다음과 같은 片文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부에서 조선국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회복하였다는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였는데,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에 원 주접과 자문을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넘기는 것 외에, 마땅히 예부에 전달하니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禮部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 주접 및 자문은 이미 군기처에서 초록하여 넘긴 것 외에, 마땅히 총리아문에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2) 문서번호 : 2-1-3-17(1186, 2177a)

사안 : 親政을 축하하는 表文 양식을 자문으로 보냅니다(咨送親政賀表式樣).

날짜 : 光緒十二年十一月初十日(1886년 12월 5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十一月初十日, 行北洋大臣李鴻章文稱：

十月初八日, 接准貴大臣電稱：

袁世凱本日來電：

頃金允植函稱：

明年皇上親政, 朝鮮王應呈賀表. 惟禮部賀表式, 尚未頒到.

等語. 當即咨查禮部. 去後, 茲准禮部文稱：

當經片查內閣, 據稱：

撰擬表文式樣於十一月初一日進呈.

將表式頒發到部, 除本部刊刻完竣時, 仍查照向例頒發朝鮮國王外, 先行抄錄表式一分片送貴衙門, 轉行北洋大臣酌核辦理.

等因. 前來. 相應轉咨貴大臣查照可也.

11월 10일, 行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10월 8일 귀 대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袁世凱가 오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지난번 金允植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명년 皇上의 親政 때 조선에서 응당 축하하는 表文을 올려야 하는데 禮部의 축하표문 양식이 아직 반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보를 받고] 즉시 禮部에 자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지금 禮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內閣에 片文을 보내 확인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답장을 하였습니다.

表文 양식을 11월 1일에 만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禮部에서는 表文 양식을 받으면 禮部에서 刊刻을 완료하고, 나아가 종전의 선례에 따라 조선 국왕에게 반포하는 것 외에, 먼저 表文 양식 1부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片文으로 보내니, 北洋大臣에게 대신 전달하여 살펴보고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마땅히 귀 北洋大臣에게 자문을 전달하여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3) 문서번호 : 2-1-3-18(1255, 2336a-2337a)

사안 : 조선에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일에 대해 袁世凱가 徐承祖에게 서신을 보내 비밀리에 방비할 것을 알렸습니다(朝鮮遣使日本, 袁世凱已函告徐星使密防).

첨부문서 : 1.「袁世凱가 徐承祖에게 보낸 서신(袁世凱致徐承祖星使函)」: 듣건대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는 데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니, 비밀리에 조사하고 방비하여 大局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聞朝鮮遣使日本存有深意, 請密爲查防, 不令敗壞大局).

날짜 : 光緒十三年七月初四日(1887년 8월 2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初四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韓廷新派閔泳駿駐使日本, 金嘉鎭為參贊, 金良默為隨員, 已於六月十四日乘倭商船前往. 並擬致函駐倭徐星使, 密為防備各情形, 業經電稟憲台並接奉電諭各在案. 卑府當即遵照密致徐星使一函, 請其隨時防備, 倘有所聞, 即密示知, 以便設法杜絕, 不致遺誤大局.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袁世凱致徐承祖星使函」：謹將致徐星使密函繕呈憲鑒

敬密啟者：

朝鮮臣服我朝，閱四甲子矣. 朝廷優柔撫卹，無微不至. 晚近以來，開禁通商，各國雜處，多有崩通、蘇秦之流，創為別通開化之名，以沽寵於韓廷. 韓之政弛國貧，其誤於別通開化之謀者，非淺鮮，亦非一日矣. 何謂別通開化. 或圖引強鄰，背天朝，以與中國抗衡敵體. 或思聯英、美，結俄、倭，以與各國並駕齊驅. 不度德不量力，妄謀謬見，牢不可破. 此次派使赴倭，亦微聞存有深意，閔泳駿係閔妃之族姪，貴戚紈褲，固無能為. 且聞不能久於其任. 如其辭解來歸，必以金嘉鎭代攝，此人薄有文才，外若儒生，而心極陰險，識量褊淺，頗有寵於其君. 又隨員金良默，亦韓王之倖臣，心地識量，與嘉鎭等. 此二人俱別通開化之最著者也. 其誤君、誤國不可歷舉. 日前閔泳翊回國時，有廓清羣小之志，二人畏忌. 乃出於此.

竊以島夷性情狡黠，黨類紛雜. 二人至彼，難保無受欺自誤之事. 閣下蓋慮卓識，面面周詳，務乞密加檢查，防其簸弄. 倘有所聞，即希隨時密示. 以便設法杜翦，庶不令敗壞大局，遺誤匪細，則為幸多矣. 凱材輇任重，轉眴二稔. 值此殘局，變幻迭生. 愧無鉛刀之用，時虞隕越之羞，尤祈不遺在遠. 時錫誨言，至為叩禱. 肅此密布. 敬請台安. 諸惟愛鑒.

六月初十日.

7월 4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새로이 閔泳駿을 파견하여 일본에 사신으로서 상주시키기로 하여 金嘉鎭을 參贊으로, 金良默을 수행원으로 삼아 이미 6월 14일 일본 상선을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徐承祖 駐日公使에게[11] 비밀리에 방비하도록 서신을 보낸 사정을 이미 上司[李鴻章]께 전보로 보고하였고, 이에 관한 전보 지시[電諭]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11) 성사(星使)는 제왕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황제의 명으로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을 가리킨다. 서승조(徐承祖)는 자가 손기(孙麒)로, 1884년 12월부터 1888년 1월까지 주일본공사로 재직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시에 徐承祖 公使에게 비밀 서신 한 통을 보내 수시로 방비하고 혹시 듣는 바가 생긴다면 즉시 비밀리에 알려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사전에 차단하며 大局을 그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淸摺 초록

1.「袁世凱가 徐承祖에게 보낸 서신」: 삼가 徐承祖 公使에게 보내는 비밀 서신을 초록하여 살피보시도록 올립니다.

삼가 비밀리에 알립니다.

조선이 淸朝를 臣服한 것은 네 甲子에 이릅니다. 조정에서 우대하며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주 작은 일에까지 미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나라를 열고 통상을 시작하여 각국 사람이 雜處하게 되자, 蒯通이나 蘇秦같은[12] 무리가 많이 나타나 따로 開化해야 하다는 명분을 만들어 조선 조정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있습니다. 조선은 정치가 해이해지고 나라는 가난해 그 별도의 開化를 도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르친 일이 얕지 않고. 또 그 시간도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무엇을 별도의 開化라고 할까요? 혹은 强隣을 끌어들여 天朝를 배반함으로써 중국에 대항하는 체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영국·미국과 연합하고 러시아·일본과 결탁함으로써 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덕과 힘을 헤아리지 않으니 결코 망령된 계획과 잘못된 견해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신을 일본에 보냈는데 은밀히 들으니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閔泳駿은 閔妃의 族姪인데 貴戚 출신으로 원래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듣건대 그 직임을 오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만일 사임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金嘉鎭이 대신 할 터인데, 이 사람은 두루 文才가 있어 겉으로는 유생 같지만 마음은 극히 음험하고 식견은 비루한데, 자못 그 군주에게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또 수행원 金良默 또한 조선 국왕의 총신으로 심지와 식견이 김가진과

12) 괴통(蒯通)은 진말한초(秦末漢初)의 변사(辯士)이고, 소진(蘇秦)은 진대(秦代)의 유세객(遊說客)으로 진에 저항하기 위해 나머지 6국이 연합하자는 합종책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별도로 開化로 통해야 한다고 가장 분명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군주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일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전에 閔泳翊이 귀국하였을 때 소인배 무리들을 일소하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를 두려워하고 꺼려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생각건대, 섬 오랑캐[島夷]는 성정이 교활하고 黨類가 복잡합니다. 두 사람이 그곳에 이르러 속임수를 당해 스스로를 그르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閣下께서는 깊은 생각과 탁월한 식견을 갖추어 모든 면에 빈틈없으시니, 비밀리에 조사하셔서 그들이 농락당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혹시 듣는 바가 있으면 바라건대 수시로 비밀리에 알려 주십시오. 이를 통해 방법을 강구해 사전에 문제를 막음으로써 大局을 무너뜨리지 않고 작지 않은 문제를 빠뜨리지 않게 된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저 袁世凱는 재주는 모자란데 임무가 무겁고, 임무를 맡은지 벌써 두 해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국을 당하여 앞날이 변환무쌍한데, 무딘 칼의 쓸모조차 없음에 부끄럽고, 임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까 종종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멀리 있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때때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우러러 바라며 이렇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냅니다. 삼가 안녕하시길 빕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4) 문서번호 : 2-1-3-19(1259, 2341)

사안 : 조선에 주재하는 袁世凱가 경비를 미리 수령할 것을 요청하였기에 天津海關道에게 지시하여 뽑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駐韓遠道請預領經費, 已飭津海關道撥解).

날짜 : 光緒十三年七月二十六日(1887년 9월 1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卑署經費前於二月二十八日, 蒙憲台批准, 預領本年經費銀二萬兩, 當由津海關劉道發交操江兵船解韓, 照數驗收. 除先後隨時分別批發仁川、釜山、元山、龍山四口夏·秋薪公, 並照章支開卑署員弁薪水及雜項公用外, 現已所存無幾, 不敷開支, 轉瞬秋末. 各口又將分領冬季經費, 加以今夏添發龍山分辦薪公等費. 釜山現又建造公署, 均係於原領經費內動之, 較之往年需款加多. 而冬季封河以前, 卑署又須領款存儲, 以備本年冬末、明年春初之用. 重洋阻滯, 船便無多, 展轉復需時日. 若不預為綢繆, 誠恐臨時束手, 莫由接濟. 伏懇俯准預領本年經費銀一萬兩, 並儲備本年冬末、明年春初經費銀一萬兩, 共銀二萬兩, 以便及時酌發, 免致臨渴掘井. 如蒙允行, 即乞飭津海關道兌交便船轉寄.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批據稟預領經費銀二萬兩, 以備本年秋末至明春各口薪公等用, 候行署津海關劉道, 於應解江海關出使經費項下, 照數挪湊劃提, 交便輪解往朝鮮, 交該守查收, 並候咨總理衙門查照. 暨行江海關道列作收放. 該守應照章核實, 撙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動支, □稍靡費等因. 印發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7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 관서의 경비는 앞서 2월 28일에 올해 경비 은 2만 냥을 미리 수령하기로 李 中堂大人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天津海關道 劉汝翼이 군함 操江號에 넘겨 조선에 보내자, 그 액수를 확인하여 수령하였으며, 전후하여 수시로 仁川·釜山·元山·龍山 네 곳에 여름·가을 봉급용으로 보내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 제 관서 문·무 관원의 봉록 및 여러 항목의 공비로 지급하였는데, 지금 이미 남은 바가 거의 없어 지출하기에 부족한데 순식간에 늦가을이 다가옵니다. 각 항구에서는 앞으로 각기 동계 경비를 수령해야 하고, 더구나 이번 여름에는 龍山 分辦의[13] 봉록과 공비를 추가로 보내야 했습니다. 釜山에서는 현재 公署를 건조하고 있는데 모두 원래 수령한 경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지출이 필요한 자금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뱃길이 얼기 전에 제 관서도 또한 미리 비용을 수령하여 저축해 놓음으로써 올해 늦겨울 및 내년 초봄의 사용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바다로 막혀 있고 선편도 많지 않아 오가는 데 시일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리 수령하여 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필요한 때에 손이 묶여 꾸려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삼가 간청하건대, 올해 경비 은 1만 냥을 미리 수령하고, 아울러 올해 늦겨울 및 내년 초봄 경비 1만 냥을 미리 저축해 놓는 것을 허락하셔서 모두 은 2만 냥을 때에 맞춰 보내주셔서 목이 마르기를 기다려서 우물을 파는 사태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허락해주신다면 天津海關道에게 지시하여 배편으로 부쳐주십시오.

이 보고에 따라 경비 은 2만 냥을 미리 수령하여 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각 항구의 봉록 및 공비 지출을 하도록 허용하고, 天津海關道 劉汝翼에게 공문을 보내 江海關에 보내야 할 出使經費 항목에서 이 액수만큼 뽑아내어, 輪船을 통해 조선에 보내 袁世凱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리아문에도 자문을 보내 살펴보게 하고, 江海關道에게 공문을 보내

13) 袁世凱는 1886년 5월 및 1887년 8월에 龍山商務署의 관원 증설을 요청하여, 唐紹儀가 駐龍山 商務委員으로 임용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袁世凱는 응당 규정에 따라 철저히 확인한 다음 절약하여 지출함으로써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서에 관인을 찍어 발송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5) 문서번호 : 2-1-3-20(1260, 2342a)

사안 : 사신 민영준을 뽑아 일본에 파견하였음을 알리는 조선의 자문을 자문으로 보냅니다(咨送朝鮮簡派使臣閔泳駿, 往駐日本咨文).

날짜 : 光緒十三年七月二十六日(1887년 9월 1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本年六月二十二日, 准朝鮮外署督辦徐相雨照會內開：

照得本年六月十三日, 本國簡派協辦內務府事閔泳駿為辦理大臣, 司僕寺正金嘉鎭為參贊官, 往駐日本東京, 妥辦交涉事宜. 理應具由摺呈總理衙門、禮部、北洋大臣. 茲有咨文三道, 謹行送交貴總理查收轉達可也. 為此備文照會, 請煩貴總理查照施行.

等因. 准此. 理合將送到咨文三道, 稟請核咨.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將本衙門咨文存查外, 相應咨送, 請將貴衙門咨文查收. 其禮部咨文, 即祈就近轉送施行.

7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살펴보건대 올해 6월 22일 朝鮮 外署督辦 徐相雨의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올해 6월 13일 본국에서 協辦內務府事 閔泳駿을 辦理大臣으로 삼고, 司僕寺正 金嘉鎭을 參贊官으로 삼아 일본 도쿄로 가서 常駐하며 교섭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연유를 알리는 문서를 갖추어 총리아문·예부·북양대신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문 3통을 삼가 귀 총리에게 보내니 받은 후에 대신 전달해주십시오. 이에 문서를 갖추어 조회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이러한 조회를 받았으니 마땅히 조선에서 보낸 자문 3통을 보내 검토하고 자문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 본 대신은 본 아문에 보낸 자문을 보존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 검토하고 받아보시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禮部로 보내는 자문도 즉시 대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6) 문서번호 : 2-1-3-21 (1261, 2342b)

사안 : 사신 閔泳駿, 金嘉鎭 등을 파견하여 일본 수도에 상주하면서 교섭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게 하였습니다(派使臣閔泳駿, 參贊金嘉鎭等, 駐紮日本京城, 妥辦交涉事宜).

날짜 : 光緒十三年七月二十六日(1887년 9월 13일)

발신 : 朝鮮國王

수신 : 總理衙門

七月二十六日, 朝鮮國王文稱：

敝邦與日本修好既久, 該國使臣來駐, 亦有年所. 敝邦之派使, 尚今未遑. 茲將差協辦內務府事閔泳駿為辦理大臣, 司僕司正金嘉鎭為參贊官, 同赴日本國京城, 仍為駐札 妥辦交際事宜, 已於本年六月十三日裝束離發. 除將在項事理, 謹具咨申, 請煩貴衙門照詳轉奏施行.

7월 26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은 일본과 修好한지 오래되었고 일본 사신도 와서 상주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지금까지 사신 파견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辦內務府事 閔泳駿을 辦理大臣으로, 司僕司正 金嘉鎭을 參贊官으로 삼아 함께 일본 도쿄로 보내 상주하면서 교섭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올해 6월 13일 행장을 꾸려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삼가 자문을 갖추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귀 아문에서는 살펴보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7) 문서번호 : 2-1-3-22(1262, 2342)

사안 : 조선이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사신과 중국 사신이 주고받는 공문 체제에 대해 이미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냈습니다(朝鮮派駐各國使臣與中國使臣往來文牘體制, 已咨照韓王).

첨부문서 : 1.「북양대신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北洋大臣致朝鮮國王咨文)」: 중국·조선 사신이 주고받는 공문은 마땅히 屬邦의 옛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자문으로 밝힙니다(咨明中韓使臣往來文牘, 應循照屬邦舊章).

날짜 : 光緒十三年七月二十七日(1887년 9월 14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二十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竊照朝鮮派駐各國使臣與中國駐紮各國欽差大臣往來文牘一事, 昨准貴衙門電復：

已分電四處使臣, 屬即照袁守之議, 咨照韓王.

等因. 除咨明朝鮮國王, 並錄稿分咨各國駐使外, 相應錄稿咨會貴衙門, 煩請查照.

照錄清摺：

1. 照錄文稿

為咨明事.

照得朝鮮係中國屬邦, 向來兩國官員往來文牘, 皆有體制. 貴國王前與泰西等國議立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商條約, 均備照會聲明："係中國屬邦. 分內一切應行各節, 與他國毫無干涉等因." 歷由貴國王照鈔咨請奏明在案. 今貴國派員赴日本駐紮, 並擬派員赴泰西各國通好. 惟查泰西及日本各國, 中國大皇帝均已派有欽差大臣駐紮. 彼此往來文牘, 自應循照舊章. 與朝鮮立約時照會本旨, 勿相違背. 所有朝鮮派駐各國之員, 無論何項職銜, 遇有公事, 與中國駐各國之大臣交涉, 應用呈文, 往來用銜帖. 中國駐各國之大臣, 與朝鮮駐各國之員遇有公事行文, 均用硃筆照會, 以符體制. 一切應行各節, 實與他國毫無干涉. 准欽命總理各國事務衙門王大臣諮商本閣爵大臣公同核定, 屬由本閣爵大臣咨照前來. 相應咨明貴國王, 煩請查照轉飭遵辦可也.[14]

7월 27일, 북양대신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에서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시키는 사신과 중국에서 각국에 주재하게 한 흠차대신이 주고받는 공문에 대해, 어제 다음과 같은 귀 아문의 답장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네 곳 사신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袁世凱의 논의에 따라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리고 아울러 원고를 초록하여 각국 주재 사신에게 자문으로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원고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 : 문서 초록

1.「북양대신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은 중국의 屬邦으로 과거 양국 관원이 주고받는 문서에는 모두 체제가 있었습니다. 귀 국왕은 전에 서양 각국과 통상 조약을 맺을 때 모두 照會를 보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며,

14) 앞 부분의 '煩請'은 아마도 '請煩'의 오류인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밝혔고, 누차 귀 국왕이 자문으로 베껴 본 대신이 대신 상주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15] 지금 귀국에서 관원을 일본으로 파견해 상주시켰고, 아울러 서양 각국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通好하고자 합니다. 서양 및 일본 등에는 중국 황제께서 이미 欽差大臣을 파견하여 주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차 주고받는 문서는 마땅히 옛 제도[舊章]를 따름으로써, 조선이 조약을 체결할 때 보낸 조회의 본뜻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조선이 각국에 파견하여 상주하는 모든 관원은 어떤 직함이든 상관없이 공무 때문에 각국에 상주하는 중국의 대신과 교섭할 때는 응당 [上行文의 형식인] 정문(呈文)을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 왕래에는 함첩(銜帖)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국에 상주하는 중국 대신이 각국에 상주하는 조선 관원에게 공무로 문서를 보낼 때는, 모두 [붉은색 먹물로 쓴 下行文인] 주필조회(硃筆照會)를[16] 사용함으로써 체제에 맞추어야 합니다.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아문의 王大臣이 본 大臣에게 상의하여 함께 검토하여 정한 다음, 본 대신에게 위촉하여 대신 자문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해당 사신들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준수하게 해주십시오.

15) '속방조회'에 대해서는 김형종 등 역, 『국역 『청계중일한관계사료』 4』(동북아역사재단, 2018)의 (2) 문서번호 : 2-1-1-61(422, 666a-677b)을 참조.

16) 주필(硃筆), 즉 붉은 색의 먹물로 쓰는 것은 그 문서가 아랫사람·부하에게 지시를 내리는 하행문(下行文)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8) 문서번호 : 2-1-3-24(1264, 2345b)

사안 : 북양아문에서 보낸 조선의 공문을 片文으로 보냅니다(片送北洋轉到朝鮮公文).
날짜 : 光緒十三年七月二十九日(1887년 9월 1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七月二十九日, 行禮部片文稱：

光緒十三年七月二十六日, 准北洋大臣送到朝鮮公文一角, 請就近轉送前來. 相應將原文一角片送貴部查收可也.

7월 29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다.

광서 13년 7월 26일에 北洋大臣이 조선으로 보내는 공문 1통을 받았는데 가까운 곳인 저희 총리아문에서 禮部에 대신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땅히 원문 1통을 片文으로 귀 부서에 보내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9) 문서번호 : 2-1-3-25(1268, 2352a)

사안 :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파견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자문을 보냈기에 北洋大臣에게 전보를 보내 자문으로 추궁하도록 하였습니다(朝鮮遣使日本先派後咨, 已電北洋大臣咨駁).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十三日(1887년 9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八月十三日, 行禮部片文稱：

朝鮮遣使日本一事, 先派後咨, 不便存案. 已由本衙門電達北洋大臣咨駁. 相應片行貴部查照辦理可也.

8월 13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파견한 후에 자문을 보냈으니 이것을 받아서 처리하기[存案]에 불편합니다. 이미 본 아문에서 北洋大臣에게 전보를 보내 자문으로 반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귀 禮部에 片文을 보내니 살펴서 처리하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0) 문서번호 : 2-1-3-26(1269, 2352b-2353b)

사안 : 주한 미국공사 딘스모어가 서신을 보내,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어째서 늦어지는지 물었습니다(駐韓美使函詢, 朝鮮遣使赴美何故遲行).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十六日(1887년 10월 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八月十四日,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來電：

准美國駐朝公使丹士謨函稱：

袁大人閣下. 前一個餘月, 此處官報鈔錄, 朝鮮國王簡派朴定陽駐劄美國京師全權大[臣]. 已於本月十六日, 接讀朝鮮統理衙門照會, 得悉赴美使臣業已派定, 不久即赴美國京都華盛頓云云. 該公使及參贊官、隨員, 一切料理齊備, 並有美人阿蘭醫生, 因奉國王命, 將隨公使赴美, 任其職事. 故將其傢私什物, 一並拍賣, 已帶其家眷赴仁川. 該公使未行之前, 亦已稟辭國王. 不料將行之時, 大人奉貴政府命, 干預此事, 故不能往. 余聞之, 甚為驚訝. 朝鮮國王將派使臣赴美, 是否奉貴政府之命, 乞請示知, 貴政府果有此舉動, 聞之豈能不為驚訝耶? 因查朝鮮前與美國訂立和約, 是李中堂費心代為辦理. 約內各款, 彼此亦早知之, 並且約內逐一註明, 彼此互相簡派使臣, 駐紮京師, 亦可彼此設立領事官, 駐紮通商口岸. 再者, 余不解貴政府, 因何故待美國, 迥然分別於日本, 是待我國有不相好之意. 朝鮮國王曾派使駐劄日本京都, 貴政府並無不允之竟. 余不解何故, 貴政府因此事, 待我政府有異於從前往來友睦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之誼、 約內久敦和好之說. 特此. 敬請升安. [西九月念七日中八月十一日]

又袁世凱復丹士謨函云：

美國公使丹士謨大人閣下.

本年貴曆九月二十七日, 敝曆八月十一日, 按准貴大臣照會內開各節. 本總理均已詳悉. 查朝鮮國王簡派朴定陽, 充貴國全權大臣及參贊等員經歷各事, 本總理先後所聞, 與貴大臣所聞大致相同. 至於朝鮮使臣將行之時, 大人奉貴政府命干預此事, 乃不能往, 以下各節是貴大臣揣度疑訝之詞, 尚未知其底蘊也. 茲為貴大臣詳言之. 查朝鮮自貴曆一千八百八十九年, 敝曆光緒八年, 由我政府特允其與貴國首立條約時, 已另有照會聲明："朝鮮為中國屬邦, 其分內應行各節, 與他國毫無干涉." 各等因. 想貴大臣未至朝鮮之先, 已早知之. 此次朝鮮簡派使臣, 分赴各國, 尚未向我政府行其分內之事. 所有應行自與貴國毫無干涉. 至前月朝鮮派赴日本辦事大臣, 是已行後始報我政府查核. 計此項公文去到日期, 我政府見之未久, 尚無復文之際, 適間又派使貴國之事. 我政府因疑朝鮮或有忽略其分內, 故有電命飭本總理, 照知朝鮮政府, 先行其分內事件, 以守屬體制, 並未聞有定止之說. 尤未聞因總理有定止之事. 本總理深知我政府與各國永敦友睦, 一律相, 斷無區別之意. 貴大臣將來自當明悉, 乃謂迥別於日本, 是貴大臣尚未詳其底蘊, 而揣度疑訝之過也. [西曆九月念九日我曆八月十三日]

等情. 電呈本閣爵大臣. 前來.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8월 1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14일에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미국 주조선 공사 딘스모어(Hugh A. Dinsmore, 丹時謨)[17]의 다음 서신을 받았습니다.

17) 딘스모어(Hugh A. Dinsmore, 丹時謨)는 제3대 주한미국공사이며, 1887년 3월 31일 서울에 도착한 뒤 1890년 5월 26일까지 재직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袁大人 각하께.

앞서 1개월 쯤 전에 이곳 관보에서 조선 국왕이 朴定陽을 파견하여 미국 京師의 全權大臣으로 주재시키겠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곧이어 본월 16일에 조선 총리아문의 조회를 받았는데, 미국으로 가는 사신이 이미 정해졌고 오래지 않아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朴定陽 公使 및 참찬관, 수행원 등이 모두 함께 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미국인 의사 알렌(Horace N. Allen, 阿蘭, 安連)이 국왕의 명을 받들어 공사를 수행하여 미국으로 가서 그 직임를 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집의 집기를 모두 판매하였고 이미 식구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해당 공사도 출발 전에 또한 이미 국왕에게 작별을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장차 출발하려고 할 때, 대인께서 귀 정부의 명령을 받아 이 일에 간섭하였기 때문에 朴定陽 공사는 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조선 국왕이 사신을 미국으로 보내는 일에 대해 귀 정부의 명령에 따라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까? 귀 정부에서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것을 듣고 어떻게 경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이 전에 미국과 수호조약을 맺은 것은 李 中堂大人께서 마음을 써서 대신 처리해 준 결과입니다. 조약 내 각 조항은 피차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약 내에서 일일이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피차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수도에 상주하며, 또한 피차 영사관을 설치하여 통상하는 항구에 주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다른 한편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귀 정부가 무슨 이유로 미국에 대한 대우가 일본과 다른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대할 때 서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 국왕은 일찍이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 수도에 상주시켰습니다. 그런데 귀 정부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로 귀 정부에서 이번 일에 대해, 미국 정부를 대함이 종전에 왕래하며 화목하게 지냈던 것과 조약 내 오래도록 돈독히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과 다른지 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삼가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양력 9월 7일, 음력 8월 11일]

다시 袁世凱가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미국공사 딘스모어 대인 각하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올해 양력[貴曆] 8월 27일 음력[敝曆] 8월 11일에 귀 대신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본 總理는 모두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 국왕이 朴定陽을 선발하여 미국 全權大臣에 임명한 일, 참찬 등의 관원들이 겪은 일에 대해, 본 총리가 전후로 들은 바는 귀 대신이 들은 바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조선 사신이 출발할 때 大人께서 귀 정부의 명령을 받아 이 일에 간섭하였기에 출발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바로 귀 대신께서 짐작으로 의심하고 놀랐다는 내용인데, 도리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귀 대신을 위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은 양력 1889년, 음력 광서 8년 우리 정부에서 귀국과 조약을 수립하는 일을 허락하였을 때, 이미 별도로 조회를 보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며,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귀 대신께서는 조선에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에서 사신을 각국으로 보내는데, 아직 우리 정부에 대해 그 직분 내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응당 해야 할 일은 본디 귀국과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달 조선에서 일본으로 辦事大臣을 파견하였고 이미 실행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공문을 받은 시기를 헤아려 보면, 우리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답장을 보내지 못한 사이에 귀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에서 혹시 그 직분 내의 일을 생략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심하였습니다. 때문에 본 총리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정부에 알려, 우선 그 직분 내의 일을 행하여 屬邦體制를 지키도록 하였지, 결코 사신 파견을 정지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본 총리를 통해 정지시키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본 총리는 우리 정부와 각국이 영원토록 우의를 돈독히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미국을 일본과 동등하게 대하였으며 결코 차별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귀 대신께서 앞으로 자연히 잘 아시게 될 것이며, "대우가 일본과 다르다"고 하신 것은, 귀 대신께서 그 마음을 자세히 모르신 채 지나치게 추측하고 의심한 것입니다. [양력 9월 9일, 음력 8월 13일]

[이상의 내용을 전보를 통해 받았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1) 문서번호 : 2-1-3-27(1270, 2354)

사안 : 조선에서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먼저 파견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니 체제에 어긋남이 있어 이미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朝鮮遣使日本先派後咨, 有違體制, 已咨覆該國王查照).

첨부문서 : 1.「이홍장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李鴻章覆朝鮮國王咨)」: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먼저 파견을 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니 지난 체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내온 자문은 받아서 처리하기 곤란합니다(遣使日本先派後咨, 於向來體制未合. 來咨未便存案).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十六日(1887년 10월 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茲本閣爵大臣, 因朝鮮遣使日本, 並未請示, 先派後咨, 於向來該國應行各節體制未合, 來咨未便存案咨覆該國王查照. 除咨行外, 相應抄稿咨明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

1. 照錄抄稿

為咨覆事.

前准貴國王六月二十一日咨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敝邦與日本修好既久, 該國使臣來駐, 亦有年所. 敝邦之派使, 尚令未遑. 茲特差協辦內務府事閔泳駿為辦理大臣, 司僕寺正金嘉鎭為參贊官, 同赴日本國京城, 仍為駐劄, 妥辦交際事宜. 已於本年六月十三日, 裝束離發. 除將右項事理, 謹具咨申, 請煩貴衙門照詳轉奏施行.

等因. 並准分咨欽命總理各國事務衙門、禮部各一件. 茲准總理各國事務衙門王大臣電咨內開：

中國已允朝鮮與各國通商, 必須先行請示, 俟允准派使後, 再赴各國, 方合體制. 亦於朝鮮與各國立約時, 照會聲明係中國屬邦, 分內一切應行各節,與他國毫無干涉等語意相符. 茲朝鮮遣使日本, 既稱於本年六月十三日, 裝束離發, 遲至六月二十一日始行具咨請奏, 先派後咨, 殊與向來應行各節體制未合, 來咨未便存案. 除行禮部外, 希即咨駁.

等因. 准此. 相應咨覆貴國王, 請煩查照. 須至咨者.

[咨朝鮮國王]

8월 1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이번에 본 北洋大臣은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사전에 먼저 지시를 요청하지 않고 파견을 먼저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니 지난 체제와 부합하지 않아 보내온 자문은 받아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그 원고를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

1.「이홍장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咨文」

자문으로 답장을 보냅니다. 전에 다음과 같은 귀 국왕의 6월 21일자 자문을 받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은 일본과 修好한 지 오래되었고 일본 사신도 와서 상주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지금까지 사신 파견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에 辦內務府事 閔泳駿을 辦理大臣으로, 司僕司正 金嘉鎭을 參贊官으로 삼아 함께 일본 도쿄로 보내 상주하면서 교섭 사안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올해 6월 13일 행장을 꾸려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삼가 자문을 갖추어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귀 아문에서는 살펴보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문과 더불어] 총리아문 및 禮部로 보내는 자문 각 1건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아문의 王大臣이 전보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조선과 각국의 통상을 허락해 주었으니, 모름지기 먼저 지시를 청한 다음에 사신 파견의 승낙을 받고 나서야 각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체제에 부합합니다. 또 조선과 각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조회로 밝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며,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뜻과도 부합할 것입니다. 이번에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미 올해 6월 13일에 행장을 꾸려 출발해 놓고 6월 2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문을 갖추어 상주를 청하였습니다. 파견을 먼저하고 자문을 나중에 보냈으므로 과거의 마땅히 해야 할 각 절차의 체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기에 불편합니다. 예부에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즉시 [귀 대신에게] 자문을 보내 반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귀 국왕에게 자문으로 답장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2) 문서번호 : 2-1-3-27(1271, 2355a-2361a)

사안 : 조선에 주재하는 袁世凱道臺가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보낼 때는 응당 먼저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이미 전보로 알렸습니다(駐韓袁道已遵電知照朝鮮, 遣使各國, 應先請示核准, 方可前往).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 領議政 沈舜澤에게 보내는 서신(袁世凱致朝鮮政府沈函)」: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보낼 때 마땅히 屬邦의 직분을 행하여 미리 청조에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朝鮮派使各國, 應先行屬邦之分, 請示中朝).

2.「袁世凱가 조선 내무부에 보내는 서신(袁世凱致朝鮮政內務府函)」: 北洋大臣이 황상의 유지를 전보로 전하니 마땅히 신속하게 국왕에게 전달하여 따르도록 하십시오(北洋電傳諭旨, 應速宜達朝鮮國王欽遵).

3.「袁世凱가 조선 領議政 沈舜澤에게 보내는 서신(袁世凱致朝鮮領議政沈函)」: 北洋大臣께서 유지를 전보로 전하였으니 즉시 국왕에게 전달하고 늦추지 않도록 하십시오(北洋大臣李電傳諭旨, 希速達韓王勿延).

4.「袁世凱가 조선 내무부에 보내는 서신(袁世凱致朝鮮政內務府函)」: 시간을 정하면 직접 조선 왕궁으로 가서 電旨를 선포하겠습니다(約時親詣韓宮, 宣達電旨).

5.「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袁世凱致朝鮮議政府照會)」: 北洋大臣께서 電報를 보내 무슨 이유로 [조선에서] 미리 상의도 하지 않고 곧바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는지 조사하도록 하셨습니다(北洋大臣電查, 何故未先預商, 卽行派使各國).

6.「조선 의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朝鮮議政府覆袁世凱函)」: 조·미조약에서 서로 사신을 파견하기로 정하였고, 조약문 또한 이미 승인을 얻었습니다. 근래 각국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하여 사신을 파견하여 미국에 답방하기로 하였습니다(美韓條約定有互派使臣, 約文亦早經邀准. 近日各國請之愈切, 乃定派使聘美).

7.「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袁世凱致朝鮮議政府照會)」: 곧 미국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신을 파견하는데 어째서 아직도 상의를 요청하지 않습니까?(派使赴美, 何故行期在卽, 猶未請商?)

8. 「조선 의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조회(朝鮮議政府覆袁世凱照會)」: 조선에서 해외로 사신을 파견할 때 지금까지 한편으로는 파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禮部·總署 및 北洋大臣께 咨文을 보냈으며, 결코 먼저 咨文을 보내고 나중에 파견한 선례가 없습니다(朝鮮派使出洋向係一面派送, 一面咨行禮部, 總署及北洋大臣, 並無先咨後派之例).
9.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답장 조회(袁世凱覆朝鮮議政府照會)」: 조선 정부에서 일본·미국에 사신을 보내 주재시키는데 미리 상의하고 승인을 청하지 않은 점을 견책합니다(譴責朝鮮派使駐紮日, 美未預先請准).
10.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袁世凱致朝鮮議政府照會)」: 조선이 각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에는 응당 먼저 승인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파견해야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유지를 받았습니다(奉旨朝鮮派使各國, 應先請准再往, 方合屬邦體制).
11. 「조선 의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조회(朝鮮議政府覆袁世凱照會)」: 조회를 이미 수신하였습니다(照會已收).
12. 「袁世凱가 조선 의정부에 보낸 조회(袁世凱致朝鮮議政府照會)」: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하는데 미리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미 電報로서 유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여전히 어물쩡 미국으로 보내는 사신에게 다시 都城을 나가 출발을 기다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세 가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임을 엄히 질책합니다(嚴責朝鮮派使未先請准, 已奉電傳諭旨, 猶含混赴美使臣復出城待發, 是犯三不韙).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一日(1887년 10월 6일)

발신 : 北洋大臣

수신 : 總理衙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八月二十日，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朝鮮派赴泰西各使臣一案，歷經電稟憲台鑒核，並迭奉電諭暨電開諭旨：

朝鮮派使西國，必須先行請示，俟允准後再往，方合屬邦體制．欽此．速照知韓政府欽遵．

等因．奉此各在案．謹將隨照會朝鮮政府並朝鮮政府照覆暨致朝鮮政府各函件，分繕清摺兩扣，恭呈憲鑒，伏乞核示，實為公便．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相應將原摺咨送貴衙門，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卑府與朝鮮政府各函件，繕呈憲鑒．

1.「致朝鮮政府沈」

敬啟者：

朝鮮依附中朝二百餘載，四遠八荒，莫不共知．自壬午年來，與美國首立條約，開禁通商，實先迭次派員，請允於中朝，而後奉行於東土．且由北洋奏派馬觀察、丁軍門與美使薛斐爾會議仁港，乃克蔵事．此玉帛交涉之始，已尚請於傅相，行所分內矣．迨壬午、甲申，與日本驟起干戈，中朝出師保護，迭派大員，主持重約．此兵戎交涉之大端，亦商請傅相，行所分內矣．英、德、意、法諸國，雖踵美國相繼訂約，皆先商請於傅相，而後奉行．近於俄國創議陸路通商條約，亦迭次派員，商請於北洋，並問及於鄙人．此又屢屢行所分內矣．他如巨文島之索還擔保，俄羅斯之不利韓土，均先行所分內，由中朝竭力保護者也．其餘事無巨細，凡有關於國計，應先聞於中朝者，亦指不勝屈．蓋自壬午以來，首立美約之先，已行所分內閱六稔矣．伏思中朝懷柔字小，何所不至？但伸保護之義，不計保護之利，東海蒼生，當共諒之．環顧四洲，果有如此者乎？

不圖晚近以來，聞貴政府迭次派員，勘定平壤，將開口岸．又派使諸國，已將成行．而未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行所分內, 商請傅相, 抑何故也? 貴政府或有意而然乎? 或無意而然乎? 或他有聞見而然乎? 此鄙人所晝夜熟思, 而不得其故者也. 鄙人忝任使命, 責守攸關. 名義所在, 無敢逃避. 惟望貴政府一言而決, 俾鄙人有所周旋, 無至辱命. 幸毋因循茹吐, 歷久不決, 非但誤人, 實亦自誤. 成敗利鈍, 所關匪細, 敢布腹心. 立俟回音. 肅此. 順頌勛祺.
八月初三日.

2.「致朝鮮內務府」
敬啟者：
今日九點鐘二刻, 奉大學士李電開諭旨. 當於九點三刻, 即速照會貴政府查照欽遵. 茲聞領議政沈, 經二點鐘之久, 尚未詣宮宣讀, 殊為詫異. 茲再恭錄電旨, 送上貴署, 希即稟達殿下, 宣讀欽遵. 並希於宣讀後, 示復為幸. 專肅. 順頌日祉. 立候回音.
八月初七日 晚十一點一刻.

3.「致領議政沈」
敬啟者：
今日九點二刻, 奉文華殿大學士李恭錄電旨一道, 當即於九點三刻, 趕速照會貴政府查照欽遵. 以為閣下當立時詣宮宣讀. 乃聞閣下經二時之久, 尚未詣宮, 未知已稟達殿下否? 竊意諭旨鄭重, 閣下如延閣時刻, 關係匪輕. 即祈明白迅示. 至盼. 專肅. 敬頌日祉.
初七日 晚十二點半鐘.

4.「致朝鮮內務府」
敬啟者：
日昨下午九點鐘二刻, 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諭旨一道. 當即照會貴政府查照欽遵. 想即詣宮宣讀, 乃經二點鐘之久, 聞尚未曾詣宮, 復於十一點鐘一刻, 恭錄電旨一道, 函送貴內務府, 稟達殿下. 立俟回音. 至今未見復. 竊念諭旨鄭重, 貴處既不示復, 本總理當親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王宮宣讀. 即祈請定時刻, 本總理即當查照進宮也. 專肅. 順頌日祉. 立候回音.
初八日 早七點半鐘.

以上各函. 朝鮮兩署惟於接閱後派員來稱：“悚惶萬萬, 不敢仰對. 蓋以王意未定, 不敢置答.” 嗣以其已照覆遵旨, 故未再催覆. 謹將卑府與朝鮮政府往來各照會, 繕呈憲鑒.

5.「照會朝鮮議政府」
爲照會查報事.
本總理於本月初二日, 奉文華殿大學士北洋大臣李電開：
韓交涉大端, 向與本大臣先商. 近聞分派全權赴各國, 並未預商, 卽將前往. 且各國並無朝鮮商民貿易, 何故派往. 徒增債累. 該員往辦何事, 有何意見, 卽照知韓政府查報. 等因. 奉此. 相應照會貴政府, 迅卽查覆, 以便轉報. 望切施行. 須至照會者.
八月初二日.

6.「朝鮮議政府照覆」
爲照覆事.
本月初二日, 接准貴總理照會內開云云. 等因. 查本國向有交涉大端, 必先商北洋大臣查核示遵, 非止一再. 美國首先通好, 而派員襄助, 妥訂條約. 嗣後泰西諸國, 繼至修好, 後先訂約. 所有條約, 皆備文咨報, 均經奏准, 此皆交涉大端之先商者也. 查本國與各國所訂條約內開：“彼此均得派遣使臣, 駐劄京城商辦交際事宜”等語. 原約旣經咨報奏准, 則約內所開各節, 亦皆邀准. 而且各國派使來往已有年所, 本國並無派員前往, 是以各國駐京使臣, 屢以遣使出洋爲請. 本國政府以朝鮮商民並無出洋貿易, 而出使經費究亦無著, 不允其請, 置爲緩圖. 至近日而各國之請愈切, 本國念及友誼, 重違其請, 乃派定歐美各國使臣, 姑以塞西人之請. 將此事由, 正擬商請傅相之際, 適承來文, 殊甚歉愧. 再准照開：“該員往辦何事, 有何意見?”等因. 查所辦之事, 卽條約內所云交際之事, 其意見亦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條約內所云敦和好之意, 並無他事, 亦無他意. 相應照覆貴總理, 請煩查照轉報施行. 須至照覆者.

八月初六日.

7.「照會朝鮮議政府」

爲照會事.

照得本年八月初六日, 准貴政府照會內開云云. 等因. 准此. 查朝鮮與各國議立條約並約內各節, 文華殿大學士李暨本總理早已詳悉, 無待貴政府重爲申明. 惟此次分派全權, 乃交涉之大端, 何並未預商, 卽將前往, 此中堂電問之大意也. 閱貴照會內開:"正擬商請傅相之際, 適承來文, 殊甚歉愧." 何赴美全權行期在卽, 而至今仍未商請耶? 如待去後再商, 猶得謂之商請乎? 此本總理所不解也. 貴政府如果無他意見, 實非本總理所敢聞也. 其餘各節, 謹當轉報. 惟中堂所問並未預商卽將前往一節, 貴政府並未明示, 礙難轉報. 卽希明白示覆, 以憑轉報. 須至照會者.

八月初六日.

8.「朝鮮議政府照覆」

爲照覆事.

照得本年八月初六日, 准貴總理照會內開云云, 等因. 查向例本國派使出洋, 均係一面派送, 一面咨行, 並無先咨後派之例. 是以本國曾簡全權大臣派赴亞、美、日本等國,[18] 而均係去後始咨. 今年派遣辦理大臣往駐日本, 而亦去後始咨. 此次赴美全權之行, 自應按照向例辦理. 此次照覆中正擬商請傅相之際等語, 亦此意也. 商請二字, 蓋與一面咨行無異意, 卽是正擬一面咨行之際也. 且查咨行一事, 向由國家備文投送總理衙門、 禮部、北洋大臣, 歷經在案. 此次亦應援照向例辦理, 以免參差. 合先照覆貴總理查照. 須至照覆者.

八月初七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照覆朝鮮議政府」

爲照覆事.

照得本月初七日, 准貴政府照會內開：

照得本年八月初六日, 准貴總理照會內開云云, 等因. 查向例本國派使出洋云云, 以免參差. 合先照覆查照.

等因. 准此. 查朝鮮向赴美全權, 係特派暫時報聘, 赴日本全權爲甲申議和, 均非駐紮全權可比. 至赴日本辦理公使, 雖已先派後咨, 尚未知中國覆咨奉允與否, 何得援以爲例? 且云商請二字與一面咨行無異意, 是貴政府尚未解商請二字之義. 商請者先商請其可否而後行, 非一面派一面咨之謂也. 現時已奉諭旨, 貴政府當已欽遵, 自無須再爲強辯. 相應備文照覆, 希卽查照. 須至照覆者.

八月初七日.

10.「照會朝鮮議政府」

爲照會事.

本日九點鐘, 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

總署來電：

奉旨：

朝鮮派使西國必須先行請示, 俟允准後再往, 方合屬邦體制.

欽此. 速照知韓政府欽遵.

等因, 奉此. 相應照會貴政府, 請煩查照欽遵. 須至照會者.

八月初七日.

11.「朝鮮議政府照覆」

爲照覆事.

本年八月初七日, 接准貴總理照會內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本日云云, 查照欽遵.
等因, 准此. 除將來文辭意稟明國王欽遵辦理外, 合先照覆貴總理查照. 須至照覆者.
八月初八日.

12.「照會朝鮮議政府」
爲照會事.
照得本月初七日下午九點鐘二刻, 恭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諭旨一道, 當卽備文照會貴政府查照欽遵. 至今未經接准照覆. 又聞派赴美國使臣, 現已出城, 殊爲詫異. 諭旨煌煌, 何等重大, 想貴政府定當祇懍欽遵. 乃貴政府始而未先預商, 繼而奉中堂電詢, 仍含糊強詞, 希圖派使去後, 擬以一咨了事, 終而於初七日下九點鐘二刻, 欽奉諭旨, 竟於初八日上午五點鐘, 派赴美使出城, 是貴政府犯三不韙矣. 雖欲強詞, 其將何以自解? 相應備文照會, 卽希貴政府查照施覆施行. 須至照會者.
此照會於八月初八日上午八點鐘發後, 朝鮮政府懇求退還注銷.

8월 20일에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泰西 각국에 사신을 보내는 사안에 대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전보로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전보 지시 및 유지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는 상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신속히 조선 정부에 알려 삼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보 지시와 유지를 받았으므로] 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과 조선 정부의 답장 조회 및 조선 정부에 보낸 각 서신을 각기 2통씩 淸摺으로 작성하여 삼가 살펴보시도록

18) 여기서 '亞'자는 아마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일본과 미국에 우선 사신을 보냈지,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보낸 적은 없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올립니다. 검토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신다면 진실로 편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원 문서를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삼가 袁世凱와 조선 정부가 주고받은 서신을 살펴보시도록 초록하여 올립니다.

1.「袁世凱가 조선 영의정 沈舜澤에게 보내는 서신」

삼가 알립니다.
조선이 중국 조정에 의지한 지 2백여 년으로 사방팔방의 일을 함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임오(1882)년 이후 미국과 먼저 조약을 수립하고 통상 금지를 풀었을 때, 누차 관원을 파견하여 중국 조정에 윤허를 청한 다음 조선에서 받들어 시행하였습니다. 또 北洋大臣의 주청에 따라 파견한 馬建忠과 丁汝昌이 미국 사신 슈펠트(薛斐爾)와 인천에서 회의를 통해 조·미조약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과의 교섭을 시작할 때 먼저 李 中堂大人[李鴻章]에게 청하여 [속방의] 본분을 다했던 것입니다. 임오·갑신년에 이르러 일본과 갑작스레 전쟁을 벌였을 때, 중국 조정에서 출병하여 보호해 주었고 여러 차례 고위 관원을 파견하여 거듭 조약 체결을 주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외교 교섭이란 큰 사안 역시 李 中堂大人에게 상의하고 요청하여 본분을 행하였습니다.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각국과는 비록 미국의 경우를 따라서 잇따라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모두 먼저 李 中堂大人에게 상의하고 요청한 이후 받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주창한 陸路通商條約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차례 관원을 파견하여 北洋大臣에게 상의·요청하였고 아울러 제게 문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금까지 누차 본분을 행해온 것입니다. 그밖에도 巨文島를 도로 찾을 수 있었던 것, 러시아가 조선 땅에서 기세를 펴지 못한 것 모두 먼저 조선이 본분을 행하고 중국 조정이 힘을 다해 보호해 준 결과입니다. 그 나머지 크고 작은 일을 따지지 않고 모두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일로서 응당 먼저 중국 조정에 문의해야 할 일은 이루 손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개 임오년 이후 미국과의 조약 수립을 시작으로 조선이 [속방으로서의] 본분을 행한 것이 따져보면 6년입니다. 淸朝가 懷柔하고 字小하는 일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단지 보호의 의무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천할 뿐 보호의 이익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은 東海의 백성들도 모두 알 것입니다. 두루 四洲를 돌아봐도 이러한 사례가 과연 달리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최근 들으니 귀 정부가 여러 차례 관원을 파견하여 平壤을 勘定하여 장차 항구를 열려 하고, 또한 다른 나라에 사절을 파견하는 일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본분을 행하여 李 中堂大人께 상의해서 요청하는 일을 미리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귀 정부가 혹시라도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혹 다른 뜻이 없는데도 그런 것입니까? 혹 달리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밤낮으로 깊이 생각해 봐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저는 외람되게도 使命을 맡았으니 그 책임과도 관련되는 바입니다. 명분과 의리가 있어 감히 피하지도 못합니다. 단지 귀 정부에서 한 마디로 결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가 몸을 움직여 사명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여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을 반복해서 오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면 단지 남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실로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成敗와 利鈍이 관계된 것이 적지 않아서 감히 속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회답을 기다립니다. 살펴 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8월 3일

2.「조선 내무부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오늘 9시 30분에 李 中堂大人으로부터 전보를 통해 유지를 받았습니다. 9시 3각에 즉시 귀 정부에 조회하여 살펴보시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들으니 영의정 沈舜澤이 두 시간이 지나도록 궁궐로 가서 宣讀하지 않았다고 하니 매우 이상합니다. 이에 다시 공경히 電旨를 초록하여 귀 관서로 보내니 바라건대 즉시 전하께 아뢰고 선독한 후 따라주십시오. 아울러 선독한 다음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회답을 기다립니다. 8월 7일 오후 11시 15분.

3.「영의정 沈舜澤에게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오늘 9시 30분에 李 中堂大人으로부터 電旨 한 통을 받고 즉각 9시 3각에 신속히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각하께서 응당 즉시 궁궐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서 선독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각하께서는 두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궁궐로 가지 않으셨다고 하니 이미 전하께 아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각하께서 시간을 늦추는 행동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즉시 답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삼가 날마다 복되시길 송축합니다. 7일 저녁 12시 30분.

4.「조선 내무부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에 李 中堂大人이 전보로 보낸 유지 1통을 받았기에 즉시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 살펴보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즉시 궁으로 가서 선독할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듣건대 아직도 궁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금 11시 1각에 공경히 전보유지 1통을 초록하여 내무부에 서신으로 보내 전하께 아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유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귀 정부에서 답장하지 않으니 본 총리가 마땅히 직접 왕궁으로 가서 선독해야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시간을 알려주시면 본 총리가 즉시 확인한 다음 궁궐로 가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립니다. 8일 아침 7시 30분.

이상 각 서신에 대해 조선의 두 관청에서 서신을 받은 다음 관원을 보내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너무나 황송해 감히 仰對하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국왕의 뜻이 정해지지 않아 감히 답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뒤이어 유지를 준수하겠다고 조회를 보냈다고 하기에 다시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삼가 제가 조선 정부와 주고받은 각 조회를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5.「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내 조사하여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이번 달 2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 조선의 [외교] 교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지금까지 본 대신과 먼저 상의하였다. 근래 듣기로는 全權公使를 각국에 파견하는 데 미리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출발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한다. 또 각국은 결코 조선 상민들과 무역을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로 파견해 보낸다는 말인가? 공연히 부담만 늘릴 뿐이다. 해당 관원이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즉시 조선 정부에 조회를 보내 조사하여 알려달라고 통보하라. [이에 따라] 마땅히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니 신속히 조사하여 답장을 보냄으로써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디 시급히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8월 2일.

6. 「조선 의정부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2일, 귀 총리께서 조회를 받았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지금까지 조선에서 [외교] 교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우선 北洋大臣과 상의하고 [北洋大臣께서] 검토하여 결정한 지시에 따랐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할 때에도 관원을 보내 도와주셔서 적절히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서양 각국과도 연이어 수교하고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든 조약은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보고하고 상주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교섭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미리 상의하였던 사례입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이 각국과 체결한 조약에는 "피차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수도에 주재시키면서 교제 업무를 상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조약은 이미 자문으로 보고·상주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조약에 기재된 조항 또한 모두 승인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국에서 사신을 보내어 왕래한 것이 이미 몇 년이 되었으나, 조선에서는 결코 관원을 보내지 않았으니, 이에 각국의 漢城 주재 사신들이 사신을 해외로 파견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조선 상민들이 전혀 해외로 나가 무역을 하지 않고, 또 사신 파견에 드는 경비 또한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승낙하지 않고 나중에 시행하기로 미뤄 두었습니다. 근래 들어 각국의 요청이 더욱 간절해지자 조선에서는 우의를 고려하여 거듭 그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기에 구미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일단 서양사람들의 요청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李 中堂大人과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을 드리려 하였는데 때마침 공문을 받았으니 심히 부끄럽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 저희가 받은 조회에서 “해당 관원이 가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생각건대, 이들이 하는 일은 조약에서 말한 “교제의 사무”이고 그 의견 또한 조약에서 말한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의도”로서 결코 다른 일이나 의도는 없습니다. 마땅히 귀 총리께 답장을 보내오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8월 6일.

7.「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냅니다.
올해 8월 6일, 귀 정부에서 보낸 조회를 받았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과 각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조약과 그 조항에 대해서는 李 中堂大人 및 저도 이전부터 모두 상세히 알고 있으니 귀 정부가 거듭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번에 全權公使를 파견하는 일은 교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인데 어찌 결코 미리 상의하지 않은 채 곧 출발시키려고 하는지 라는 것이 李 中堂께서 전보로 물어보신 취지입니다. 귀 정부에서 보낸 조회를 살펴보면 “이 일에 대해 李 中堂大人과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을 드리려 하였는데 때마침 공문을 받았으니 심히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전권공사가 곧장 미국으로 떠날 터인데, 아직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출발하고 나서 상의하려고 하였다면, 여전히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 정부에서 만일 다른 의견이 없다면 실로 제가 감히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삼가 마땅히 보고할 것입니다. 다만 李 中堂께 미리 상의하지 않고 곧장 출발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귀 정부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으니 보고 드리기에 곤란합니다. 즉시 명백하게 답장을 보내 이를 근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8월 6일.

8.「조선 의정부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올해 8월 6일, 귀 총리께서 보내신 조회를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지금까지 조선에서 사신을 해외로 보낼 때는 모두 한편으로는 사신을 파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문을 보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먼저 자문을 보내고 나중에 파견한 전례는 결코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 일찍이 全權大臣을 가려 뽑아 아시아, 미국, 일본 등 나라에 보냈을 때 모두 출발한 다음 비로소 자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辦理大臣을 일본에 보내 주재시킬 때에도 또한 출발한 다음에야 비로소 자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미국으로 全權大臣이 가는 것도 실로 응당 전례에 따라 처리한 것입니다. 이번 답장 조회에서 "李 中堂大人과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을 드리려 하였는데"라는 어구는 또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商請'이라는 두 글자는 대개 "다른 한편으로 자문을 보낸다"는 것과 다른 뜻이 아니며, 바로 "마침 자문을 보내려고 할 때"라는 뜻입니다. 또 자문을 보내는 일은 지금까지 나라에서 공문을 갖추어 직접 총리아문, 예부, 북양대신께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응당 전례에 따라 처리해야만 들쑥날쑥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선 귀 총리께 답장 조회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8월 7일.

9. 「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7일, 귀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내 왔습니다.

> 올해 8월 6일, 귀 총리께서 보내신 조회를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지금까지 조선에서 사신을 해외로 보낼 때는 …… 들쑥날쑥 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선 귀 총리께 답장 조회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선에서 미국으로 全權大臣을 파견하였던 것[19]은 특별히 잠시 답방을 하였던 것이고 일본으로 全權大臣을 보낸 것[20]은 甲申議和를 위한 것으로 모두 계속 주재하는 全權大臣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일본으로 辦理公使를 보낼 때, 비록 먼저 파견하고 나중에 자문을 보냈지만, 아직 中國에서 답장 자문을 보내지 않아 승인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어찌 이를 원용하여 전례로 삼을 수 있습니까? 또한 "商請이라는 두 글자는 대개 '다른 한편으로 자문을 보낸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귀 정부에서 아직 '商請' 두 글자의 뜻을 이해하지

19) 조·미조약 체결 후 조선 정부에서는 답방(報聘)을 위해 민영익(閔泳翊)을 전권대신으로, 홍영식(洪英植)을 부대신으로, 서광범(徐光範)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미국에 파견하였다.

20) 갑신정변 직후 조선 정부에서 사후처리를 위해 서상우(徐相雨)를 전권대신으로, 묄렌도르프를 부대신으로 임명하여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못한 것입니다. '商請'이라는 것은 우선 그 가부에 대해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한 다음에야 시행한다는 것으로, "한편으로 파견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문을 보내는 것"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미 유지를 받들었으니, 귀 정부에서는 응당 준수해야 할 터로, 재차 강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공문을 갖추어 답장 조회를 보내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월 7일.

10.「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냅니다.
오늘 9시,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신속히 조선 정부에 알려 삼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응당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준수해 주십시오. 이상.
8월 7일.

11.「조선 의정부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올해 8월 7일, 귀 총리께서 다음과 같은 조회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 살펴보시고 준수해 주십시오.
보내오신 공문의 뜻을 국왕께 아뢰고 준수하는 것 외에 마땅히 우선 귀 총리께 답장 조회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8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조선 의정부에 보내는 조회」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7일 오후 9시 30분, 삼가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통해 보내온 유지 1통을 받고 즉시 문서를 갖추어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 살펴보시고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답장 조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자 하니 미국에 보내는 사신이 이미 都城을 떠났다고 하는데 정말 괴이합니다. 황상의 유지가 찬란히 빛나고 있어 얼마나 중대한데, 귀 정부에서는 마땅히 삼가 공손히 따르고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 정부는 처음에는 미리 상의하지 않았고, 이어서는 李 中堂께서 전보로 물어본 바에 대해서 모호하게 억지를 부리면서 사신 파견 이후에 한 통의 자문으로 사안을 종결시키려고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7일 오후 9시 30분에 유지를 받들었음에도 결국 8일 오전 5시 미국으로 가는 사신이 漢城을 나가게 하였으니, 이는 귀 정부에서 세 가지 큰 잘못[三不韙]을 범한 것입니다. 비록 억지를 쓴다고 해도 앞으로 어찌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공문을 갖추어 조회를 보내니, 귀 정부에서 검토하시고 답장 조회를 보내주십시오. 이상.

이 조회가 8월 8일 오전 8시에 발송된 다음, 조선 정부에서는 회수하여 말소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3) 문서번호 : 2-1-3-28(1272, 2361b-2362b)

사안 : 조선 주재 袁世凱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은 일찍이 포크와 데니가 차례로 계책을 바치고 선동한 것으로, 閔泳翊이 귀국한 다음 비로소 서둘러 성사된 것입니다(駐韓袁道稟述, 朝鮮遣使各國早經福久, 德尼先後獻策誘煽, 迨閔泳翊歸國後, 始促成之).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1887년 10월 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查福久之未去也，卽有請朝鮮派使赴各國之議，謂：

韓貧弱不能自主，時受制於中國．各國每派代理公使及領事等官，亦隱不以敵體之國相待．若韓能派公使全權分赴各國，各國亦必派直正公使駐紮朝鮮，各有權勢，遇事牽制，中國自不敢以屬邦視之．

此言卑府去年已頻入於耳．當卽密囑金允植等，相機解阻，以爲必可中止．不圖德尼失寵無聊，知中國又不助以弄權，遂翻然附韓王自主之意，獻策設謀，屢以派使爲請．其用心蓋與福久同也．韓王聞策，已深嘉納．適閔泳翊回國，又力助之，王志愈決．藉事黜竄允植，先以派赴日本之辦事大臣，嘗試中國意旨．然後接派赴美全權，赴英、德、俄、法、意等國全權．在泳翊未始非有意愚弄其君也．而王昏不知，由四月至今，庶政皆廢，無日不以派使爲事．韓廷諸老成，皆不爲然，獨泳翊與德尼力主此議．又嗾美·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俄使請之, 益自信, 不可復挽矣. 及泳翊逃後, 韓諸臣及諸西人多密請卑府, 設法阻止. 卑府卽設法先後辦理, 已有轉機, 均經隨時電稟憲台鑒核各在案.

又因泳翊電催, 德尼以擔保爲詞, 務要速派, 以堅王意. 於時諸大臣沈舜澤、金宏集、金炳始、閔應植等, 日夜泣陳請罷, 究不獲已, 則王之謬妄可概知矣. 及欽奉諭旨後, 仍於次日早派赴美全權朴定陽, 出城待命. 嗣見卑府送文其政府, 按定時刻, 逐層駁詰, 並招其領議政沈舜澤面責之. 又備輿馬將[將]親詣王宮, 宣讀諭旨, 王始驚恐, 知如爲之不已, 卑府必先與之決裂, 乃命政府覆文欽遵諭旨辦理. 遲至下午酉刻, 始招朴定陽入城, 則王之剛愎又可見矣. 雖始而欽遵諭旨, 似有懍懼, 繼而諸臣勸諫, 稍有慚悔, 終而又爲西人羣小簸弄, 復有不平之意. 現已派員齎奏奉咨請示, 而私心竊冀中朝必恐失和於各國, 斷無不允之理, 則王之昏昧, 抑又可想矣. 惟有隨時稟承憲意, 恪遵辦理. 肅稟縷陳.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密咨貴衙門, 請煩查核.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포크[21]는 아직 떠나기 전에 조선에서 각국으로 사신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은 빈약하여 自主할 수 없어 때때로 중국의 제약을 받습니다. 각국에서 代理公使 및 領事 등의 관원을 매번 파견하는데 또한 은근히 대등한 나라로서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만일 조선에서 능히 公使에게 全權을 주어 각국에 파견할 수 있다면 각국에서도 또한 반드시 정직한 公使를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하게 할 것이고, 각 公使들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견제할 것이니 중국이 실로 감히 조선을 屬邦으로 간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제가 작년에 이미 자못 자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金允植 등에

21) 포크(Foulk, George C. 福久)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위로 임관되어 아시아함대 사령부에 소속되어 일본에서 근무하였다. 1885년 1월부터 1886년 7월까지 조선주재 임시대리공사로 활동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당부하여 기회가 있을 때 저지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데니[22]가 총애를 잃어 의지할 데가 없어지고 중국이 또한 권세를 휘둘러 도와주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마침내 불현듯 조선 국왕의 自主 의지에 부화뇌동하여 계책을 꾸며 바쳐 여러 차례 사신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는 대개 포크와 동일합니다. 조선 국왕은 이 계책을 듣고 이미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때마침 閔泳翊[23]이 귀국하여 또한 힘써 지지하자 국왕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구실을 대어 金允植을 쫓아내고, 우선 일본으로 辦事大臣을 파견하여 중국의 의지를 시험해보고, 그 후 계속하여 미국,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 등의 나라에 全權大臣을 파견하려고 하였습니다. 閔泳翊에게는 처음부터 그 군주를 우롱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국왕이 몽매하여 깨닫지 못하고 4월부터 지금까지 온갖 政事를 제쳐두고 사신 파견[에 대한 논의를] 일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조선 정부의 노련한 관료들은 모두 그렇지 않다고 여겼으나, 오로지 閔泳翊과 데니만 이 의견을 힘써 주장하였습니다. 또 미국·러시아 공사를 부추겨 [공사 파견을] 요청하게 하였고, 이에 자신감이 더해져 더이상 만류할 수 없었습니다. 閔泳翊이 도주한 다음, 조선 조정의 모든 신료 및 모든 서양인들이 수차례 비밀리에 제게 방법을 마련하여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즉시 방법을 마련하여 차례대로 처리하여 이미 轉機가 마련되었으며, 이미 수시로 전보를 통해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閔泳翊이 전보를 보내 독촉하고 데니가 보증하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왕의 뜻을 굳히게 하였습니다. 당시 沈舜澤, 金宏集, 金炳始, 閔應植 등이

---

22) 데니(Owen W. Denny. 德尼)는 미국영사관으로 상해, 천진에서 영사·총영사를 지낸 적이 있다. 1885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독일인 묄렌도르프의 후임으로 조선 외아문(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부임하였으나, 이후 원세개(袁世凱)와의 불화로 해고되었다. 『청한론(淸韓論)』(China and Korea) 등의 저서가 있다.

23)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은 자가 우홍(遇鴻)·자상(子相)이고, 호는 운미(芸楣)·원정(園丁)·천심죽재(千尋竹齋) 등이 있다. 아버지는 민태호(閔台鎬)로 1875(고종 12)년 민비(명성황후)의 오빠인 민승호(閔升鎬)와 그의 아들이 죽은 뒤 양자로 입양되어, 민비의 친정 조카로 정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된다. 이른바 '죽동궁(竹洞宮) 주인'으로 개화당 인사들이 그의 사랑도 자주 출입하였다. 하지만 점차 그들과 사이가 벌어진 그는 1884년 12월 개화당의 김옥균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으로 자상(刺傷)을 입었으며, 1886년 정부의 친로거청정책(親露拒淸政策)을 원세개(袁世凱)에게 밀고하였다가 정치적 위협을 느껴 홍콩·상해 등지로 망명하고 여생을 대부분 중국에서 보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밤낮으로 [찾아가] 울면서 그만둘 것을 간청하였으나 결국 멈추게 할 수 없었으니, 이로부터 왕의 망령됨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황상의 유지를 받든 다음에도 여전히 다음날 일찍 미국으로 가는 全權大臣 朴定陽에게 都城을 나가 지시를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조선 정부에 공문을 보내 시시각각 하나하나 누차 힐책하였고 또한 領議政 沈舜澤을 불러 면전에서 질책하였습니다. 또 말과 수레를 준비하여 직접 왕궁에 가서 유지을 宣讀하자 조선 국왕이 비로소 두려워하면서 만일 [사신 파견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제가 반드시 먼저 그들과 관계를 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에 정부에 지시를 내려 유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장 조회를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오후 5~7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朴定陽을 불러 都城에 들어오도록 하였으니, 또한 왕의 완고함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유지를 준행하며 삼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뒤이어 모든 臣僚들이 간언하자 조금 뉘우침이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서양인 몇 명에게 농락당하여 다시 불평의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미 관원을 [중국에] 보내 奏稿와 咨文을 가지고 가서 지시를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사심으로는 몰래 중국이 각국과의 우호 관계 파기를 우려하여 결코 [조선의 사신 파견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를 바라고 있으니, 왕의 몽매함을 또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수시로 보고하여 李 中堂大人의 뜻을 삼가 받들어 처리할 것입니다. 삼가 하나하나 진술하여 아룁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니, 응당 귀 아문에 비밀 자문으로 알려야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4) 문서번호 : 2-1-3-29(1273, 2363)

사안 : 袁世凱가 미국 公使 딘스모어와 서신을 통해 朝鮮이 中國의 屬邦이라는 사안에 대해 토론하였음을 전보로 보고하였습니다(駐韓袁道電稟, 與美使丹士謨函論朝鮮爲中國屬邦事).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1887년 10월 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八月十七日,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來電：

准美國駐朝公使丹士謨函稱：

袁大人閣下：

今收到日昨閣下回余前三日之文. 余問閣下等事亦已回文, 現無用多說. 不過因閣下回復之文, 語多婉轉, 未有直答, 悶悶. 至聞美韓立約時, 並有聲明我政府認爲中國屬邦等語, 余細查約內各款, 並無此意. 如閣下有此約本, 亦可查閱應無此事. 余不解貴政府擅得地位, 以動朝鮮與我政府交涉等事. 此請大人升安.

西十月初一日中八月十五日.

又袁世凱復丹士謨函云：

[美國公使丹士謨大人閣下：]

前日接奉第三十五號來示, 俱已聆悉. 至云敝曆一千八百八十二年, 貴曆光緒八年, 美韓立約時, 並有聲明我政府認爲中國屬邦, 細查約內並無此事一節. 惟查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美立約時, 另有照會聲明, 係朝鮮國王送於貴國大伯理璽天德者,[24] 附在約條同時繕定, 極有關係, 亦我國特允朝鮮與貴國立約之根本, 何以貴大臣所查之本,竟曰無此事耶? 貴政府收閱此文, 已經五年之久, 尚能曰未認此文乎? 此本總理所不解也. 本總理尚不知我政府擅得地位, 以動韓美交涉等事. 貴大臣何竟欲擅得地位, 以動朝鮮向我政府分內之事, 此尤本總理所不解也. 肅此布復. 順請升安.

中曆八月十七日, 西曆十月初三日.

等情. 電呈前來.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17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미국 조선 주재 공사 딘스모어[25]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袁大人께.

오늘 제가 3일에 보낸 서신에 대해 각하께서 어제 보내신 답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각하께 여쭤본 사안들은 또한 이미 답장 속에 담겨 있으니, 지금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하께서 보내주신 답장의 어투 대부분이 완곡하고 직설적으로 답해주지 않으셔서 고민스럽습니다.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울러 "조선 정부는 중국의 屬邦임을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알렸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약의 각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나 결코 이러한 뜻은 없었습니다. 만일 각하께서 이 조약본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한 응당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귀 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조선과 우리 정부 사이의 交涉 등 사무를 움직이려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력 10월 1일, 음력 8월 15일.

---

24)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은 'president'를 음역한 것이다.

25) 딘스모어(Hugh Anderson Dinsmore, 1850~1930, 丹士謨)는 미국 알칸사스(Arkansas) 주의 변호사를 지냈던 인물로 1887~1890년까지 조선 주재 미국 辦理公使로 재직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한 袁世凱가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국 공사 딘스모어께 :]

어제 보내주신 제35호 서신을 받았으며, 이미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양력 1882년, 음력 광서 8년, 미국과 조선이 조약을 체결할 때 아울러 '조선 정부는 중국의 屬邦임을 인정한다'고 알렸다고 하지만 조약을 상세히 살펴보면 결코 이러한 뜻은 없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照會를 준비하여 알린 것은 조선 국왕이 귀국 대통령께 보낸 것입니다. 조약 [체결에] 부수하여 동시에 마련되었던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며, 또한 중국에서 조선과 미국 간 조약 체결의 근본으로서 특별히 허용해 준 것인데 어찌 귀 대신께서 조사한 조약본에는 전혀 이러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귀 정부에서 이 조회를 받아 열람한 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 조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조선과 미국 간 교섭 등의 사무를 움직이려 한다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귀 대신께서는 어째서 끝내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여 중국 정부에 대한 조선의 본분 내 일을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이는 특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바입니다. 삼가 이와 같은 답장을 보냅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음력 8월 17일, 양력 10월 3일.

이러한 전보를 보내왔으므로, 응당 자문으로 귀 아문에 알리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5) 문서번호 : 2-1-3-30(1274, 2364a-2365b)

사안 : 조선이 서양 국가로 사신 파견을 요청하는 奏稿를 자문으로 송부합니다(咨送朝鮮奏請派使西國奏稿).

첨부문서 : 「조선 국왕의 奏摺(朝鮮國王奏摺)」 : 陪臣 朴定陽을 보내 駐美 사신으로 삼고, 趙臣熙가 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 각국을 방문하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奏請합니다(奏請准派陪臣朴定陽爲駐美使臣, 趙臣熙報聘英, 德, 意, 俄, 法各國).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1887년 10월 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八月十九日, 據朝鮮齎奏官禮賓寺主簿六品官尹奎燮來署面呈, 該國王奏派使西國先行請示稿一件, 並有分咨貴衙門、禮部暨本大臣各一件, 與奏稿大略相同. 該員擬本月二十日啟程進京, 詢以此件奏章, 由何衙門轉奏, 據云由禮部呈進等語. 相應照錄奏稿咨送貴衙門, 請煩查照.

1. 照錄奏稿：

謹奏, 爲派使西國先行請示, 仰冀允准, 以便前往事.

本年八月初七日, 據議政沈舜澤狀啓：

本日准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袁世凱照會：

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總署來電：

奉旨：

朝鮮派使西國 必須先行請示 俟允准後再往 方合屬邦體制.

欽此. 速照知韓政府欽遵.

等因. 奉此. 相應照會貴政府, 請煩查照欽遵.

等因. 理合稟請欽遵辦理.

等情. 竊念小邦世蒙天朝恩庇, 覆載高厚, 山海崇深, 無事不達, 有求必應. 至於外交一事. 特蒙我皇帝陛下眷念藩服, 力圖維持, 特允與美國首先通好, 而派員襄辦, 妥訂條約. 並先行照會聲明："朝鮮爲中國屬邦, 而內治、外交向來均得自主"等語, 使小邦恪守侯度, 而在各國平行相待, 體制交涉務歸兩全. 嗣後泰西各國相率而至, 續定和約, 亦皆以美約爲張本, 克臻妥善, 均經奏准在案.

美國於換約之後, 按照原約派全權大臣來駐都城, 而小邦曾遣使報聘而還. 至泰西各國則並與報聘而未遑. 是以各國使臣屢以遣使互駐爲請. 小邦念切時局, 思踐盟約, 現派陪臣朴定陽爲全權大臣, 擬令前往美國駐紮, 繼派陪臣趙臣熙爲全權大臣, 擬令前往英、德、意、俄、法等五國先修報聘, 仍行駐紮, 妥辦敦睦事宜. 理合據實奏明, 祈蒙格外天恩, 仍准該陪臣等前往, 以完使事, 而符原約.

再, 查向例朝貢、典禮等事, 咨由禮部轉奏. 通商、交際等事總理衙門王大臣、北洋大臣李鴻章轉奏, 非有極大事件, 不得輒有所奏. 此次電宣諭旨, 臣跪聆之下, 感悚難名. 茲敢不避瀆褻, 冒陳披瀝之忱. 臣無任戰栗待命之至. 緣係派使西國先行請示, 仰冀允准, 以便前往事理. 爲此謹具奏聞.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19일, 조선의 자문전달관 禮賓寺主簿六品官 尹奎燮이 제 衙門에 와서 조선 국왕이 서양 국가에 사신을 파견하기에 앞서 지시를 청하는 奏稿 1건, 또한 귀 아문과 禮部 및 제게 보내는 咨文 각 1건을 직접 제출하였는데, [자문의 내용은] 奏稿와 대략 동일합니다. 해당 자문전달관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번 달 20일 京師로 출발할 계획이며, 이 奏稿를 어떤 기관에서 대신 상주하는지 묻기에 禮部에서 올린다고 하였습니다. 응당 奏稿를 초록하여 자문으로 귀 아문에 보내오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 : 奏稿 초록

1. 奏稿 초록

삼가 주를 올립니다. 서양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기에 앞서 지시를 청하오니, 바라건대 승인해 주셔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8월 7일, 議政府 沈舜澤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오늘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가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文華殿大學士 李鴻章께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신속히 조선 정부에 알려 삼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응당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준수하십시오.

이상과 같은 조회를 받았으므로 응당 삼가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보고하여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조선은 대대로 天朝의 은혜로운 비호를 받았고, 그 은혜가 천지와 같이 높고 두터우며 산과 바다와 같이 높고 깊어서 아뢰지 않은 일이 없었고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 주셨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특히 황상께서 藩服을 생각하고 힘써 유지해 주시려는 마음을 받았으니,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하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시고 관원을 파견하여 적절히 조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울러 먼저 조회를 발송하여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지금껏 모두 자주할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셔서 조선이 제후의 법도[侯度]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가 지키게 하시고 각국과는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셨으니, 體制와 交涉 두 가지 모두 모름지기 온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서양 각국에서 잇따라 와서 계속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또한 모두 조·미조약을 바탕으로 삼아 능히 적절히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이미 상주하여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비준서를 교환한 후 조약에 따라 全權大臣을 파견하여 都城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 일찍이 파견하였던 사신들은 답방 후 돌아왔습니다. 서양 각국에는 답방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각국 사신들은 누차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주재시키자고 청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시국을 절실히 고려하고 조약을 실천하기로 생각하여, 현재 陪臣 朴定陽을 全權大臣으로 삼아 미국으로 파견·주재시키고 뒤이어 陪臣 趙臣熙를 全權大臣으로 삼아 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 등 5개국으로 파견해 우선 답방하고 그대로 주재하도록 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는 사무를 적절히 처리시키려고 합니다. 마땅히 사실대로 아뢰오니,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해당 陪臣이 그대로 출발하여 사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미국과 체결한] 조약에도 부합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합니다. 前例를 살펴보면, 朝貢·典禮 등의 사무는 禮部로 咨文을 보내 禮部에서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通商·交涉 등의 사무는 總理衙門王大臣, 北洋大臣 李鴻章이 대신 상주하였으며,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즉시 아뢸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전보로 선포하신 유지는 제가 꿇어앉아 경청하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송하였습니다. 현재 감히 번잡함을 무릅쓰고 충성의 마음을 함부로 아뢰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전율하며 지시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양으로 사신을 파견하는데 우선 지시를 요청하니 승인해 주셔서 [사신을] 보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이를 위해 삼가 주를 올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6) 문서번호 : 2-1-3-31 (1275, 2366a)

사안 : 조선에서는 이미 중국과 조선 간 使節·公使의 각종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답장 조회를 보냈습니다(朝鮮已7照覆遵辦中韓使節, 公使各項規定).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日(1887년 10월 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七月二十六日接奉憲台電諭：

朝鮮派使各國, 應查照該國與泰西各國立約, 原照會聲明："[朝鮮]係中國屬邦, 分內應行各節, 與他國毫無干涉"等語. 茲與總署王大臣核定, 朝鮮派往之員, 與中國駐紮大臣, 公事交涉應用呈文, 往來用銜帖. 中國欽使遇有公事行文朝鮮, 駐使用硃筆照會, 以符向章體制, 與他國毫無干涉. 除咨明朝鮮王並電咨各國駐紮大臣外, 希先照知朝鮮統署遵辦.

等因. 奉此. 卑府遵卽備文照會朝鮮統署. 茲於八月初一日接准朝鮮統署照覆內開：

同奉前因. 當經照知派往各國官員, 遵照辦理.

各等因. 准此. 理合稟請核咨.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存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월 2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저는 7월 26일, 李 中堂大人께서 전보로 보내 주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선이 각국에 사신을 보내는 것은 마땅히 조선이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회를 통해 밝힌 "중국 속방으로서 청과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절차는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말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총리아문 王大臣과 결정하기로는 조선에서 보낸 인원이 중국의 [해당국] 주재 大臣과 공무로 교섭할 때는 마땅히 呈文을 사용하고, 왕래할 때는 衙帖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의 欽差大臣이 공무로 조선의 주재 사신에게 공문을 보낼 경우에는 硃筆照會를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體制에 부합하도록 하며, 이것은 다른 나라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 조선 국왕에게 자문으로 알리고, 각국 주재 대신들에게 전보로 자문을 보내는 외에, 조선 統署에 미리 조회를 보내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저는 지시에 따라 즉시 문서를 갖추어 조선 統署에 조회를 발송하였습니다. 8월 1일, 朝鮮統署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조회를 보내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회를 받았습니다. 응당 이미 각국에 파견해 보낸 관리들에게 알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보고하오니, 검토하시고 총리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리니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시고 보관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7) 문서번호 : 2-1-3-32(1276, 2366b)

사안 : 조선의 자문전달관 尹奎燮이 京師로 향하여 이미 통행증을 발급하고 사람을 보내 호송하도록 하였습니다(朝鮮齎咨官尹奎燮赴京, 已發給路引派員伴送).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一日(1887년 10월 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署津海關道劉汝翼詳稱：

案查前蒙憲台札：

准禮部咨開：

嗣後朝鮮各員由海道赴津, 齎有奏咨文件來津, 務卽遵照定例暨奏准章程, 先期知照本部, 並給與來京路引派員伴送.

等因. 行令遵照在案. 茲於八月十九日准朝鮮署理通商事務成岐運函稱：

現有齎咨官尹奎燮, 於八月十八日由海道來津, 帶有書記金月潭、從人李性天、通詞李起初, 行李六包. 擬於二十日前往京都, 函請查照辦理.

等因. 到關. 准此. 除派委候補監大使壽祺, 妥爲伴送外, 理合詳請憲台查核轉咨並請繕發路引, 以便轉給該齎咨官執往, 實爲公便.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將路引印發轉給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월 2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署理天津海關道 劉汝翼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살피건대, 이전에 李 中堂大人께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禮部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이후 조선 관원이 바닷길로 天津에 올 때 奏本이나 咨文을 가지고 오는 경우 반드시 즉시 定例 및 奏准章程에 따라 우선 禮部에 통보하고 아울러 京師로 오는 통행증[路引]을 발급하고 사람을 보내 호송해주십시오.

즉시 이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8월 19일 朝鮮署理通商事務 成岐運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현재 자문전달관 尹奎燮이 8월 18일 바닷길로 天津으로 떠났으며, 서기 金月潭, 수행원 李性天, 통역 李起初 등을 대동하였고 여행 짐은 6개입니다. 20일에 京師로 가고자 하여 서신을 보내니, 검토하여 처리해주십시오.

候補監大使 壽祺를 보내 적절히 호송하도록 하는 외에, 마땅히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하시고 禮部에 咨文을 보내시고 아울러 통행증을 발급해 주시도록 요청함으로써 해당 자문전달관에게 지급하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증에 관인을 찍어 지급하는 외에 응당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8) 문서번호 : 2-1-3-33(1277, 2367a)

사안 : 조선이 사신을 보내 美國에 주재시키려는 것을 중국이 저지하므로 미국 정부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中國阻止朝鮮派使駐美, 美政府甚爲詫異).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一日(1887년 10월 7일)

발신 : 美國公使 덴비

수신 : 總理衙門

二十一日, 美國公使田貝照會稱：

本日接准本國外部來電內稱：

中國有阻止朝鮮國遣使駐美之事, 本國甚爲詫異, 心頗惜之, 囑本大臣轉知貴署.等因. 相應照會貴王大臣, 查照可也.

21일, 美國公使 덴비[26]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회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본국 外部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미국에 주재시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여 본국은 몹시 이상하다고 여기며, 마음이 자못 안타까우니, 총리아문에 대신 이 사실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따라 응당 귀 王大臣께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살펴봐 주십시오.

26) 덴비(Charles, Denby, 1830~1904, 田貝)는 1885~1898년까지 미국의 주중국 공사로 재직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9) 문서번호 : 2-1-3-34(1279, 2368a-2369a)

사안 : 尹奎燮이 가져온 조선 국왕의 자문을 片文으로 보냅니다(片送尹奎燮齎到朝鮮國王咨文).

첨부문서 : 「조선 국왕의 咨文(朝鮮國王咨)」 : 특별히 자문전달관을 파견하여 자문을 통해 陪臣 朴定陽, 趙臣熙를 서양 각국에 사신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도록 요청합니다(特遣齎咨官, 咨請准派陪臣朴定陽, 趙臣熙出使西洋各國).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三日(1887년 10월 9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三日, 禮部片文稱：

本年八月二十二日, 准朝鮮齎咨官尹奎燮齎咨到京. 除由本部·外, 相應將分咨貴衙門咨文一件, 片送貴衙門查照可也.

1. 照錄咨文：

朝鮮國王爲咨會事.

本年八月初七日, 據議政府領議政沈舜澤狀啓：

本日准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袁世凱照會：

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

總署來電：

奉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朝鮮派使西國，必須先行請示，竣允准後再往，方合屬邦體制.

欽此. 速照知韓政府欽遵.

等因. 奉此. 相應照會貴政府，請煩查照欽遵.

等因. 理合稟請欽遵辦理.

等情. 竊念小邦世蒙天朝法庇，覆載高厚，山海崇深，無事不達，有求必應. 至於外交一事，特賴我皇帝陛下眷顧綏靖之恩，亦前貴王大臣暨北洋大臣體恤經遠之謹，代爲籌劃，力圖維持，特允與美國首先通好，而派員襄辦，妥訂條約. 並先行照會聲明："朝鮮爲中國屬邦，而內治、外交向來均得自主"等語，使小邦恪守侯度，而在各國平行相待，體制交涉，務歸兩全. 嗣後泰西各國相率而續定和約，亦皆以美約爲張本，克臻妥善，均經奏准在案. 美國於換約之後，按照原約派全權大臣來駐都城，而小邦曾遣使報聘而還. 至泰西各國則並與報聘而未遑. 是以各國使臣屢以遣使互駐爲請. 小邦念切時局，思踐盟約，現派陪臣朴定陽爲全權大臣，擬令前往美國駐紮，繼派陪臣趙臣熙爲全權大臣，擬令往英、德、意、俄、法等五國先修報聘，仍行駐紮，妥辦敦睦事宜. 理合據實咨請貴王大臣查照，仍卽轉奏天陛，獲准該陪臣等前往，以完使事而符原約，實爲德便. 特差禮賓寺主簿尹奎燮齎奉前去. 爲此咨會，請煩貴王大臣照驗施行. 須至咨者.

8월 23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내왔다.

올해 8월 22일, 조선의 자문전달관 尹奎燮이 자문을 가지고 京師에 도착하였습니다. 본 禮部에서 자문에 근거하여 대신 상주하는 외에, 응당 귀 아문으로 나누어 보내는 자문 1통을 片文으로 귀 아문에 보내야 할 것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1. 자문 초록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8월 7일, 議政府 沈舜澤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늘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袁世凱가 보낸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文華殿大學士 李鴻章께서 보낸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총리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신속히 조선 정부에 알려 삼가 따르게 해야 할 것이다.

응당 귀 정부에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준수하십시오.

이상과 같은 조회를 받았으므로 응당 삼가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보고하여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조선은 대대로 天朝의 은혜로운 비호를 받았고, 그 은혜가 천지와 같이 높고 두터우며 산과 바다와 같이 높고 깊어서 아뢰지 않은 일이 없었고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응해 주셨습니다. 외교에 있어서 특히 황상께서 藩服을 생각하고 힘써 유지해 주시려는 마음을 받았으니, 미국과 가장 먼저 수교하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시고 관원을 파견하여 적절히 조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울러 먼저 조회를 발송하여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지금껏 모두 자주할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셔서 조선이 제후의 법도[侯度]를 삼가 지키게 하시고 각국과는 평등하게 대하도록 하셨으니, 體制와 交涉 두 가지 모두 모름지기 온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후 서양 각국에서 잇따라 와서 계속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또한 모두 조·미조약을 바탕으로 삼아 능히 적절히 처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모두 이미 상주하여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비준서를 교환한 후 조약에 따라 全權大臣을 파견하여 都城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 일찍이 파견하였던 사신들은 답방 후 돌아왔습니다. 서양 각국에는 답방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각국 사신들은 누차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주재시키자고 청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시국을 절실히 고려하고 조약을 실천하기로 생각하여, 현재 陪臣 朴定陽을 全權大臣으로 삼아 미국으로 파견·주재시키고 뒤이어 陪臣 趙臣熙를 全權大臣으로 삼아 영국·독일·이탈리아·러시아·프랑스 등 5개국으로 파견해 우선 답방하고 그대로 주재하도록 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는 사무를 적절히 처리시키려고 합니다. 마땅히 사실에 의거하여 귀 王大臣께 자문을 보내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검토해보시고 황상께 대신 상주해 주셔서 해당 陪臣들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받음으로써 사신의 업무를 완수하고 조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실로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禮賓寺主簿 尹奎燮을 보내 자문을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자문을 보내 알리니, 청컨대 귀 왕대신께서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0) 문서번호 : 2-1-3-35(1282, 2370b-2371b)

사안 : 袁世凱가 전보를 보내 보고하기를, 재차 미국 공사 딘스모어와 조선이 中國의 屬邦이라는 사안에 대해 서신으로 토론하였다고 합니다(駐韓袁道電稟, 再與美使丹士謨函論朝鮮爲中國屬邦事).

날짜 : 光緒十三年八月二十七日(1887년 10월 1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八月二十四日,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來電：

准美國駐朝公使丹士謨函稱：

袁大人閣下：

十月初三日第二十三號文已收到. 因在仁川數日, 返後事冗, 遲誤未能早復. 余甚喜聞閣下未認擅得地位, 如前來文所說. 至於閣下所云朝鮮國王之照會, 同條約一時訂送, 余尚未作公事得聞之. 今閣下作公事對我說, 余始得聞之. 並未得見此文及該草稿. 故余不能議文內事. 惟我只能說與萬國公法各款相背. 且自主國不能與屬國相敵, 已聞於未定約之前. 我全權大臣明白有此說, 所以我想大人或見該文另誤認他意. 無論如何, 余不得再對閣下說我政府視朝鮮國勢, 只照條約所載爲準. 此請升安.

西八十七年十月初七日, 中十三年八月二十一日.

又袁世凱復丹士謨函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美國公使丹士謨大人閣下：

接貴曆十十月初七日，敝曆八月二十一日，第三十七號文，俱悉一切. 朝鮮與貴國首立條約時附有照會一件，想貴大臣應早已作公事聞之，並久已見其文稿，無須本總理之瀆告而後始知. 乃貴大臣竟云並未作公事聞之，亦未見此文稿. 本總理殊爲訝惜. 然本總理實深知貴政府定有此文與條約同時覽悉. 至於公法背向並敵體與否，貴政府當早有定見，亦無待貴大臣此時之忽爲此說也. 或者貴大臣真有所聞未見於前乎? 然亦不難求見於後，自可知朝鮮向我國往來事體由來久矣. 貴大臣又云："本總理或將該文誤認爲他意"，本總理實明白有所指認，不知貴大臣所說誤認他意爲何意? 尤不知貴大臣所說誤認二字從何而出. 總之，無論如何，本總理視立約時朝鮮國所送之照會，甚爲緊要. 故必須再告貴大臣,以我政府視朝鮮只能照立約時照會聲明之件爲准. 並視與貴國及他國交涉毫不相干. 在貴大臣固不當擅得地位越俎過問. 乃本總理屢次言之，而貴大臣尚未明悉，誠不能不爲貴大臣深惜之. 此覆. 順請台安.

西八十七年十月初八日 中十三年八月二十二日.

等情. 電呈前來. 相應咨會貴衙門，請煩查照.

8월 2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24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 왔습니다.

조선 주재 미국 공사 딘스모어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 왔습니다.

袁大人께.

10월 3일, 제23호 문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仁川에서 수일 동안 머물다가 돌아온 후 쓸데없는 일들이 있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일찌감치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각하께서 이전에 보낸 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각하께서 조선 국왕이 조회와 조약을 동시에 마련하여 발송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 들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각하께서 공식적으로 제게 말씀하셨기에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 및 그 초고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조회의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단지 [이러한 내용이] 萬國公法의 각 내용과 서로 배치된다는 것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自主國은 屬國과 대등하지 않다는 것은 조약 체결 이전부터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우리 全權大臣께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이니, 저는 대인께서 혹 그 문장을 보고 다른 뜻으로 오인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미국 정부가 조선의 상황을 간주할 때 오로지 조약에 기재된 바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각하께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1887년 10월 7일, 음력 광서 13년 8월 21일.

저 또한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공사 딘스모어 대인께.

양력 10월 7일, 음력 8월 21일에 보내주신 제37호 문서를 받아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조선이 귀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할 때 조회 1통을 첨부하였는데, 제 생각으로는 귀 대신께서 응당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일찌감치 들어보셨고 또한 오래 전에 이미 그 원고를 보셨을 터이니,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린 후에 비로소 아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귀 대신께서는 뜻밖에도 공식적으로 결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원고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의아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귀 정부에서 이 [조회]문과 조약을 동시에 함께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公法에 배치된다는 주장과 敵體 여부에 대해서는 귀 정부에서 마땅히 일찍부터 정해진 견해가 있을 터, 또한 귀 대신께서 지금 갑작스레 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귀 대신께서는 실로 [조약 체결] 이전에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하신 것입니까? 그러나 또한 [조약 체결] 이후라도 쉽게 알 수 있으니, 지금까지 조선이 중국과 왕래하면서 취하였던 체제의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귀 대신께서는 또한 제가 혹 해당 원문을 다른 뜻으로 오인한 것이라 하셨으나 저는 진실로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으며, 귀 대신께서 말씀하신 "다른 뜻으로 오인한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귀 대신께서 말씀하신 '오인'이라는 두 글자가 [무엇을 근거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어찌 되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든 저는 조약 체결 당시 조선에서 발송한 조회가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귀 대신께 중국 정부가 조선을 간주할 때 오로지 조약 체결 당시 조회를 통해 밝힌 내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점은 귀국 및 다른 국가와의 교섭에 조금의 관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 대신께서 독단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주제넘게 간여하는 것은 본래 부당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귀 대신께서 아직 모두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진실로 귀 대신을 위해 심히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양력 1987년 10월 8일. 음력 광서 13년 8월 22일.

이에 대해 응당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1) 문서번호 : 2-1-3-36(1283, 2372)

사안 : 袁世凱와 조선 주재 미국 공사 딘스모어가 재차 서신으로 조선이 중국의 屬邦이라는 사안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袁世凱與駐韓美使丹士謨, 再函論朝鮮爲中國屬邦事).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初一日(1887년 10월 1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一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八月二十八日,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來電：

續准美國駐朝公使丹士謨函稱：

來文已經收到. 余前送閣下數文, 其中等語, 今毋庸再論. 余之此舉, 實不能免, 乃閣下以余爲干預貴政府與朝鮮體制, 深爲悶惜. 如果余所爲有過分之事, 我政府斷不喜悅. 不過只能守我國之體面, 照條約所定而已.

又袁世凱復丹士謨函云：

昨接貴大臣來文, 俱悉一切. 前文各節, 旣貴大臣不願再談, 固本總理之甚願也. 惟不信貴大臣意謂如免此舉, 竟至失貴國體面. 今奉告貴大臣, 以本總理之所舉, 實因守我政府之體制. 故本總理屢次瀆白而不敢憚其煩也. 至云貴政府必不悅貴大臣擅爲過分事, 實爲本總理所樂聞. 惟望貴大臣果踐此言, 以後自行分內, 庶免再有辯駁之端.

等情. 電呈前來. 相應咨會總理各國事務衙門, 請煩查照可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월 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8월 28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 왔습니다.

뒤이어 조선 주재 미국 공사 딘스모어가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보내 주신 문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각하께 여러 차례 보냈던 문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행위는 실로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각하께서는 귀 정부와 조선의 체제에 간섭한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만일 제가 한 행위 가운데 過分한 일이 있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나라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뿐입니다.

袁世凱 또한 딘스모어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제 귀 대신께서 보내 주신 문서를 받아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 이전 문서의 내용에 대해 이미 귀 대신께서 다시 거론하기를 원치 않으신데 본디 저도 심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대신께서 이러한 행위를 피하게 되면 결국 귀국의 체면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귀 대신께 고하는 바는, 제가 한 행위가 실로 우리 정부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귀 정부에서 귀 대신이 독단적으로 過分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하신 바는 실로 제가 듣고 싶었던 바입니다. 오로지 귀 대신께서 과연 이 말을 실천하시어 이후 스스로 본분에 맞는 일을 하셔서 재차 논쟁의 발단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의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응당 자문을 보내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2) 문서번호 : 2-1-3-37(1284, 2373a)

사안 : 조선에서 각국에 사절을 파견할 때는 반드시 세밀히 준비하고 신중히 시행해야 하며, 파견 후 體制와 交涉에 대해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으로 하여금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상유를 받았습니다(准朝鮮派使各國, 尙須詳籌愼行. 至派駐之後體制與交涉未盡事宜, 仍着李鴻章隨時通問籌商, 務臻妥協).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初三日(1887년 10월 19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三日, 軍機處交出光緒十三年九月初三日奉上諭：

禮部奏, 朝鮮國派使西國先行請示呈進奏章一摺, 披閱奏章內所陳各節, 情詞恭順, 具見悃誠. 朝鮮與各國立約, 旣有派使互駐之條, 現在遴員前往, 自無不可. 惟中國之與朝鮮推誠相與, 休戚與同. 該國物產無多, 商務未旺, 加以頻年多故, 國用日繁. 若再派使分駐各國, 並無應辦之事, 而從此常年頓添鉅款, 嗣後若因經費不繼, 竟行中輟. 或勉力籌措, 債負日增, 旣於國計無裨, 轉致遠方騰笑. 朝廷代爲區畫, 殊屬非計. 該國王務當仰體中朝覆庇保全之意, 將此事詳籌終始, 審愼而行. 至於派駐之後, 體制、交涉, 務歸兩全. 奏章所陳, 深爲得體. 所有派往各國之員, 與中國使臣往來, 均用屬邦體制, 前經李鴻章電奏, 該國已遵章辦理. 其餘未盡事宜, 仍著李鴻章隨時通問籌商, 務臻妥協.

欽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월 3일, 軍機處에서 광서 13년 9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유를 받아 보내왔다.

禮部에서 조선이 서양 국가로 사신을 파견하기에 앞서 지시를 청하면서 올린 奏章한 건을 상주하였는데, 奏章에서 진술한 각 내용을 읽어보니 감정과 언사가 공손하여 그 진지함을 알 수 있었다. 조선이 각국과 체결한 조약에는 이미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현재 인원을 선발하여 보내려는 것이 실로 불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은 조선과 정성껏 대하고 禍福을 함께하는 관계이다. 조선은 물산이 많지 않고 상업도 아직 흥성하지 않은 데다가 근래 사건이 많아 나라의 지출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만일 재차 사신을 파견하여 각국에 나누어 주재시키더라도 마땅히 처리해야 할 사무가 없고, 또한 이를 위해 매년 막대한 경비를 갑작스레 늘렸다가 이후 경비가 계속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중도에서 그만두게 될 것이다. 혹 억지로 [경비를] 마련하더라도 부채가 나날이 늘어날 것이나, 이는 국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먼 곳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중국] 조정에서 대신 마련해 주는 것은 전혀 좋은 계책이 아니다. 조선 국왕은 마땅히 中朝에서 보호하고 보전해 주려는 뜻을 우러러 살피는 데 힘써 이 사안을 시종 세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 다음에는 체제와 교섭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 奏章에서 진술한 바는 매우 적절하다. 각국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모든 관원이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 모두 屬邦體制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李鴻章이 조선에서 이미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전보로 상주한 바 있다.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3) 문서번호 : 2-1-3-38(1285, 2373b-2376a)

사안 :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한다는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하고 받은 유지를 알립니다(知照據咨轉奏朝鮮派使各國, 所奉諭旨一摺).

첨부문서 : 1.「禮部의 주접(禮部奏摺)」: 조선 국왕이 서양 각국으로 사신 파견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자문에 근거하여 대신 상주합니다(據咨轉奏朝鮮國王請准派使西洋各國).

2.「조선 국왕 李熙의 주접(朝鮮國王李熙奏摺)」: 陪臣 朴定陽, 趙臣熙를 서양 각국에 사신으로 파견하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주청합니다(奏請准派陪臣朴定陽, 趙臣熙出使西洋各國).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初五日(1887년 10월 21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九月初五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朝鮮國王遣官齎到奏本咨文抄錄轉奏一摺, 於光緒十三年九月初三日具奏. 本日准軍機大臣字寄, 奉上諭：27)

[省略]

照錄原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禮部謹奏」

爲據咨轉奏事.
光緒十三年八月二十二日, 朝鮮國王李熙特遣齎奏官尹奎燮恭齎奏本、咨文等件到部. 臣等公同閱看, 係因該國王奉到總理各國事務衙門電寄奉旨：

朝鮮派使西國, 必須先行請示, 俟允准後再往, 方合屬邦體制.

欽此. 該國王因與泰西各國換約以來, 先經美國派員來駐該國都城, 該國亦遣使報聘. 至各國則報聘而未遑. 各國使臣屢以遣使互駐爲請. 該國王念切時局, 思踐盟約, 擬遣陪臣等分往各國, 先修報聘, 仍行駐紮, 妥辦敦睦事宜. 據實奏明咨臣, 臣部代爲轉奏.等情. 除將該齎奏官尹奎燮等安置會同四譯館居住, 所有例賞筵宴事宜, 應由臣部照例辦理外, 謹抄錄該國王原奏原咨, 恭呈御覽.

再,此次該齎奏官, 係由天津赴京, 合併聲明. 爲此恭摺奏聞.

2.「朝鮮國王臣李熙, 謹奏」[28]

[省略]

9월 5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선 국왕이 관리를 파견하여 보내온 모든 奏本과 咨文을 초록하여 光緒 13년 9월 3일 대신 상주하였습니다. 오늘 군기대신은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省略]

---

27) 바로 앞의 62) 문서번호 : 2-1-3-37(1284, 2373a)에 나오는 상유와 같은 내용이다.
28) 이 책에 실린 (55) 문서번호 : 2-1-3-30(1274, 2364a-2365b)의 첨부문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첨부문서 : 原奏 초록

1.「禮部에서 삼가 아룁니다」

자문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광서 13년 8월 22일, 조선 국왕 李熙가 자문전달관 尹奎燮을 특별히 파견하여 공손히 奏本·咨文 등을 禮部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니 조선 국왕이 총리아문에서 전보를 통해 보낸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보낼 때 반드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승낙을 받기를 기다린 다음 보내야만 비로소 屬邦體制에 부합한다.

조선 국왕은 서양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이후 먼저 미국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조선 도성에 주재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에서도 또한 사신을 보내 답방하였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국에 대해서는 모두 답방하기에는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각국 사신들은 누차 사신을 보내 상호 주재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조선 국왕은 시국을 절실히 생각하고 조약을 실천하기로 생각하여, 현재 陪臣들을 각국에 보내 우선 답방하고 그대로 주재하도록 하여 우호를 돈독히 하는 사무를 적절히 처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의거하여 禮部로 자문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자문전달관 尹奎燮 등은 會同四譯館에 머물도록 하고 포상과 宴會 등의 모든 사무는 응당 禮部에서 前例에 따라 처리하는 것 외에, 조선 국왕이 보낸 奏本·咨文을 삼가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추가합니다. 이번 자문전달관은 天津에서 곧장 京師로 왔음을 함께 밝히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삼가 奏摺을 갖추어 아룁니다.

2.「조선 국왕 李熙가 삼가 주를 올립니다.」

[省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4) 문서번호 : 2-1-3-39(1286, 2376b)

사안 : 조선은 중국의 屬邦으로 외교에 대한 사항들은 前例에 따라 먼저 지시를 청하였습니다(朝鮮爲中國屬邦, 外交事項向例先行請示).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初十日(1887년 10월 2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美國公使 덴비

九月初十日, 給美國公使田貝照會稱：

光緒十三年八月二十一日, 接准文稱：

准外部來電：

中國有阻止朝鮮遣使駐美之事, 甚爲詫異. 囑爲轉知.

等因. 前來. 本衙門查朝鮮與貴國訂立條約, 原有派使互駐之條. 該國旣係照約而行, 中國無所用其阻止. 惟朝鮮爲中國屬邦, 交涉大端例須先行請示. 現已據該國王派員齎奏到京, 由禮部奏奉諭旨, 傳知遵照. 相應照復貴大臣查照可也.

9월 10일, 美國公使 덴비에게 다음과 같은 照會를 보냈다.

광서 13년 8월 21일,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外部에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미국에 주재시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여 본국은 몹시 이상하다고 여기며, 마음이 자못 안타까우니, 총리아문에 대신 이 사실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본 아문에서 살펴보니 조선이 귀국과 체결한 조약에는 본래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이미 조약에 근거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중국에서는 그것을 저지하더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은 중국의 속방으로 交涉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은 前例에 따라 먼저 지시를 청하였습니다. 현재 조선 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이미 奏本을 가지고 京師에 도착하였으며, 禮部에서 대신 상주하고 유지를 받아 알리고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응당 귀 대신께 답장 자문을 보내야 할 것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5) 문서번호 : 2-1-3-40(1287, 2377)

사안 : 조선 국왕이 이미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중국·조선의 使節 體制를 따르도록 지시하였다고 답장 자문을 보냈습니다(中韓使節體制, 朝鮮國王咨覆, 已飭派駐各國之員遵辦).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二十三日(1887년 11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二十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九月十七日, 准朝鮮國王八月三十日咨稱：

本年八月二十六日, 准貴大臣咨開：[29]

[省略]

等因. 准此. 查小邦係中國屬邦, 兩國官員往來文牘, 向來皆有體制. 此次派赴日本及擬派泰西各國之員, 亦應遵照舊章辦理, 業由本國飭知派駐各國之員, 遇有與中國欽差大臣公事交涉, 仍照向例辦理, 以符體制. 適接貴大臣來咨, 意見相同, 而辭旨較爲明晰. 承領之下, 實深欣幸. 除申飭派駐各國之員遵辦外, 相應咨復貴大臣查照可也.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29) (47) 문서번호 : 2-1-3-22(1262, 2342)에 실린 첨부문서1과 같은 내용이라 생략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월 23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9월 17일 조선 국왕이 8월 30일에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26일, 귀 대신께서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省略]

생각건대, 조선은 중국의 속방으로 양국 관원들이 주고받는 문서는 지금껏 모두 체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파견하고, 또 서양 각국에 파견하려는 사신들 또한 응당 옛 제도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미 조선에서는 각국에 주재하는 사신들에게 지시를 내려 중국의 欽差大臣과 공무로 交涉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전히 전례에 따라 처리하여 체제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때마침 귀 대신께서 보내신 자문을 받았는데, 의견이 서로 같고 언사의 뜻은 더욱 분명하였습니다. 받고나니 실로 깊이 다행으로 여기게 됩니다. 각국 주재 사신들에게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 외에, 마땅히 귀 대신께 답장 자문을 보내야 할 것이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자문이 전달되었으므로, 응당 귀 아문에 자문을 보내 알려야 할 것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6) 문서번호 : 2-1-3-41 (1288, 2378a)

사안 :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朝鮮派使美國事).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二十三日(1887년 11월 8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九月二十三日, 致北洋大臣李鴻章電函[見發電簿].

草目 : 朝鮮派使美國事由

9월 23일,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發電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7) 문서번호 : 2-1-3-42(1289, 2378b)

사안 :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朝鮮派使美國事).

날짜 : 光緖十三年九月二十四日(1887년 11월 9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二十四日, 北洋大臣李鴻章電函[見收電簿].

草目 : 朝鮮派使美國事

9월 24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收電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8) 문서번호 : 2-1-3-43(1290, 2379a)

사안 :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朝鮮派使美國事).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二十五日(1887년 11월 1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二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電函[詳見收電簿].

草目 : 朝鮮派使美國事由

9월 25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자세한 내용은 收電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에서 미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9) 문서번호 : 2-1-3-44(1291, 2379b-2382a)

사안 : 중국·조선 외교사절의 體制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응당 시행해야 할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였습니다(中韓駐外使節體制未盡事宜, 續籌定應行三端).[30]

날짜 : 光緒十三年九月二十六日(1887년 11월 1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欽奉九月初三日寄諭, "朝鮮派使各國未盡事宜, 著隨時通問籌商, 務臻妥洽." 因電飭袁世凱, 轉商該國應派駐劄公使, 不必用全權字樣. 去後, 九月二十三日接據袁世凱電稟：

頃准朝鮮外署齎咨照開：

本月初五日接准貴總理來文內開：

本年九月初五日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 本月初三日恭奉諭旨一道.

並各等因前來. 准此. 具由業經轉達國王. 茲奉國王咨文一件, 齎呈貴總理, 尚乞覓使寄呈北洋大臣查照. 並奉國王傳教：

前派各國使臣, 已束裝經月. 而轉瞬嚴冬, 道路迢遠. 如候由咨文往返籌商, 恐又須時日, 轉請袁總理先將咨內所開各節, 電達北洋大臣核籌電復, 卽便照辦.

等教. 奉此. 相應齎咨照會貴總理, 請煩查照. 卽將咨內各節, 電達奉復見示, 實爲公便.

30) 이 '세 가지 항목'은 이른바 '영약삼단(另約三端)'이라고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另朝鮮國王咨開：

爲咨請事.

九月初五日, 據外署督辦趙秉式啟稱：

本日准袁總理照開, 接奉貴大臣電開, 恭錄諭旨一道, 並貴大臣籌商改赴各國全權公使爲三等公使各節.

適聞之下, 感愧交集. 正擬商請之際, 於九月十八日齎奏官回, 接准禮部咨開：

恭錄諭旨一道, 並知照欽遵.

等因. 准此. 竊念小邦托庇天宇, 由來已久, 恪守侯度, 不敢外交. 然偏居東隅, 逼處他族, 每見輕於各國, 受侮於強隣. 乃荷貴大臣深謀籌畫, 囑與各國議立條約, 藉以互有牽制, 下免小邦宗社之危, 上紓天子東顧之憂. 而臣民惴惴, 時自警惕, 深恐有所隕越, 重遣天子之羞, 安敢稍忘懍惕, 自速其尤. 查此次派使一事, 迭辱貴大臣委曲詳籌, 無微不至. 東土臣民, 莫不銜感. 特有欽遵諭旨籌商妥協各節, 不能不爲貴大臣詳言之.

查敝邦與各國議定條約, 已閱數稔, 該約中有互相簡使駐紮之條. 前以敝邦籌款甚艱, 時有力不從約之憾. 乃近年各國前來公使屢請派使赴其本國, 互聘修睦, 益敦和好, 轉難辭卻, 不得已而有派使之議. 訪謀臣僚, 或謂日本幅勢相敵, 可派辦理公使以應之. 至泰西諸國, 幅員、權力不啻十倍, 不可不派大公使應之, 亦小國之上卿位當大國下卿之意也. 且敝邦褊小, 久爲各國所輕侮, 如派使不足以壯觀瞻, 尤恐益見輕侮, 玷辱天朝. 因酌派全權公使分別駐紮, 雖伸小邦敦睦之誼, 亦宣天朝柔遠之德. 迨恭奉諭旨, 垂念微悃, 俯賜區畫. 伏聆之下, 感激莫名, 極欲停止派使, 以仰慰天恩之高厚. 並承貴大臣籌商各節, 另改使號, 又極欲改派三等, 以副苦心之指畫. 而無如方派使之時, 實以派駐紮公使之初, 不諳體例, 未能先有商請於中朝. 已於派定之後, 卽飭外署知照各國使先報其政府, 以備接待. 如此時忽然改派, 深恐見疑於諸國, 失信於天下, 益啟各國輕侮之心, 而重強鄰窺伺之志. 小邦之辱亦天朝之憂也. 設至乖舛友睦, 嘖有煩言, 重貽天朝之憂, 尤增小邦之戾, 反復籌思, 實爲難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惟有恃列藩服，不揆煩猥，仍商請於貴大臣妥籌方便之道，各臻兩全之計，庶小邦全信於天下，修睦於強鄰，固能永其社稷以事天朝，則感幸．鄙忱更何旣極？倘能適合蓋籌，仍准派全權公使，擬卽飭該使前往，待報聘事竣調回，或以參贊等員代理，庶可節省經費，以仰答皇上垂念之恩．並飭該使至西國，復與中朝大臣，仍恪遵舊制，惟事恭謹，以無負貴大臣妥籌之意．是否有當，均希裁示．相應備文咨請．

云云．理合電稟乞示．

等情．當經本閣爵大臣電復袁世凱：

以來電述，韓王咨前派全權公使赴泰西各國，已知照各國使報其政府，未便另改使號，使人見疑，擬飭該使前往，待報聘事竣調回，以參贊代理，節省經費，並飭該使至西國後，與中朝大臣仍恪遵舊制，惟事恭謹云云，辭意遜順，本大臣無不曲爲體諒．惟欽奉上諭：

派駐之後，體制交涉務歸兩全．所有派往各國之員，與中國往來均用屬邦體制，其未盡事宜，仍著隨時通問籌商，務臻妥洽．

等因．本大臣亟應豫爲聲明有三端：

一．韓使初至各國，應先赴中國使館具報，請由中國欽差挈同赴外部，以後卽不拘定．

一．遇有朝會、公讌酬酢交際，韓使應隨中國欽差之後．

一，交涉大事，關係緊要者，韓使應先密商中國欽差核示．

此皆屬邦分內應行之體制，與各國無干，各國不能過問，卽係諭旨內未盡事宜籌商妥協之意．中國與朝鮮休戚相關，各欽差皆以名卿出使，必能推誠優待韓臣．汝應先照知外署轉達國王，務飭該使臣遵辦．俟咨到再復．

等因．已將復電寄達貴衙門在案．除分咨各國出使大臣外，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9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9월 3일 보내 주신 寄信上諭를 받았는데, “조선이 각국에 사절을 파견하는 데 미진한 사항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袁世凱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전보로 지시하여, 조선 국왕이 파견하려는 해외 주재 公使가 '全權'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조선 국왕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9월 23일,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방금 조선 外署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조회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달 5일, 귀 총리께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셨습니다.

올해 9월 5일 李 中堂大人께서 9월 3일 받은 유지 1통을 전보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 등은 이미 모두 국왕께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국왕의 咨文 1통을 받아 귀 총리께 전달하니, 또한 사신을 구하여 北洋大臣께 올려 살펴보시게 해주십시오. 아울러 국왕의 다음과 같은 傳敎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각국에 파견하려는 사신들이 여장을 꾸린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엄동설한이 찾아올 것이고 갈 길은 매우 멀다. 만일 자문을 주고받으며 상의하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긴 시일이 걸릴 것이니, 袁世凱總理에게 우선 자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北洋大臣께 전보로 대신 알려줄 것을 요청하고 北洋大臣께서 검토하여 답장 전보를 보내신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응당 귀 총리께 자문을 전달하고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자문의 내용 각 절에 대해 電報로 아뢰고 답장으로 지시를 받게 된다면 실로 다행일 것입니다.

별도로 조선 국왕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자문으로 요청합니다.

9월 5일, 外署督辦 趙秉式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오늘 袁總理가 조회를 보내서, 北洋大臣께서 전보를 통해 공손히 초록한 유지 1통과 北洋大臣께서 계획하고 상의하여 각국에 보내는 全權公使를 三等公使로 바꾸는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감격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하였습니다. [귀 대신과]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던 때, 마침 9월 18일 자문전달관이 돌아왔고 [그를 통해] 禮部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지 1통을 공손히 초록하여 [보내니] 또한 [이 내용을] 알리고 삼가 준수해 주십시오.

생각건대, 조선이 중국의 비호를 받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제후의 법도를 삼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켜 감히 외교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쪽 구석에 편벽하게 치우쳐 다른 나라를 가까이하면서 매번 각국에 경시당하고 강한 이웃으로부터 수모를 받았습니다. 이에 실로 귀 대신께서 깊이 도모하시고 계획하셔서 각국과 논의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어 서로 간에 견제하게 하여 아래로는 조선 종사의 위급함을 피하고 위로는 황상의 동쪽에 대한 우려를 풀어드릴 것을 당부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민은 두려움에 떨면서 때때로 경계심을 가지고 주어진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거듭 황상께 부끄러움을 드리지는 않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망각하여 그 죄를 재촉하겠습니까? 이번에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으로 누차 귀 대신에게 세밀한 부분까지 상세히 계획하여 작은 것조차 다루지 않으신 것이 없을 정도로 폐를 끼쳤습니다. 조선 신민 가운데 마음속 깊이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유지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주신 각 내용에 대해서는 귀 대신께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이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조약에서는 서로 사신을 뽑아 주재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에는 조선에서 경비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기에 때때로 힘이 모자라 조약을 따르지 못한다는 유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래 각국에서 보낸 公使들이 여러 차례 그 본국으로 사신을 보내 서로 방문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청하였는데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사신 파견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신료들은 혹 일본이 크기나 세력이 서로 필적하므로 辦理公使를 보내면 [그 요청에]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그 크기나 세력이 열 배나 되어서 大公使를 보내 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또한 小國 上卿의 지위가 大國 下卿의 지위에 상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조선은 협소하여 오래도록 각국이 경시하였으므로, 만일 파견한 사신의 외관에 웅장함이 부족하다면 더욱 경시할 것이고 天朝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헤아려 全權公使를 파견하여 나누어 주재시키려는 것은 비록 조선이 [각국과]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天朝가 먼 나라를 안무하는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지를 공손히 받아보니 미천한 진심을 배려하시고 고개를 수그려 계획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유지를] 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기에 사신 파견을 중단하여 높고 두터운 황상의 은혜를 심히 우러러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신께서 계획하신 내용을 받들어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바꾸고 또한 三等公使로 바꿔서 보내 苦心하여 마련해주신 계획에 매우 부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사신을 파견하려던 당시는 실로 외국 주재 공사를 보내는 것이 처음이어서 체례를 알지 못하여 중국과 미리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파견을 결정한 다음에는 外署에 지시를 내려 각국 사신들에게 먼저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접대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홀연히 [三等公使로] 바꾸어 파견하게 되면 각국의 의심을 사고 天下에 신임을 잃게 되어 각국의 경시하는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강한 이웃들이 기회를 엿보는 뜻을 더욱 무겁게 할까 깊이 우려됩니다. 조선의 치욕은 곧 天朝의 우환입니다. 가령 우호가 어그러져 입을 모아 비난하게 되면 거듭 天朝에 걱정을 끼치고 조선의 잘못이 더욱 늘어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실로 편안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藩服에 들어있음을 믿고 외람됨을 무릅써서 이전처럼 귀 대신께 편리한 방안이자 [體制와 交涉] 두 가지가 모두 온전해질 수 있는 계획을 적절히 마련해 주시기를 청하오니, 조선이 天下에 신뢰를 온전히 하고 강한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그 社稷을 영속시키고 天朝를 섬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진심 또한 어찌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만일 능히 적절한 계획에 맞추어 여전히 全權公使 파견을 허락해주신다면, 즉시 해당 사신을 출발하도록 하고 답방 사무가 종료되면 곧바로 귀국시키며, 혹 參贊 등의 관원이 대리하도록 하면 경비를 절약하여 황상의 돌보아주시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각국에 이르러서는 또한 중국의 흠차대신과의 관계에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삼가 일 처리를 하여 귀 대신께서 적절히 계획하여 주신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 방안이 타당한지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보내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袁世凱가] 마땅히 전보로 아뢰오니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저[李鴻章]는 이미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장 전보를 보냈습니다.

보내온 전보에 의하면 조선 국왕은 자문을 보내기 이전에 全權公使를 서양 각국에 파견하는 일을 이미 각국 사신들에게 알려 그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고치기 불편하고 또한 남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해당 사신을 출발시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록 하되 답방 사무가 끝난 후 곧 돌아오도록 하고 參贊이 그 임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경비를 절약하며,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국가에 도착한 후 중국의 欽差大臣들과의 관계에서 이전처럼 옛 제도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다만 삼가 정중히 일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 말뜻이 공손하여 본 대신은 뜻을 구부려 양해해주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다.

>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 다음에는 체제와 교섭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각국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모든 관원이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 모두 屬邦體制를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그래서 본 대신은 시급히 응당 미리 다음의 세 가지 단서[另約三端]를 밝히기로 하였다.

> 하나.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
> 하나.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
> 하나.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이는 모두 屬邦分內에서 응당 행해야 할 體制이며, 각국과 관계가 없고, 각국이 간여할 수 없다. 즉 유지에서 "미진한 사항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라고 한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조선과 禍福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欽差大臣들은 모두 이름난 관리로서 사신 임무를 맡은 것이니, 반드시 성의를 다해 조선 사신을 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너[袁世凱]는 응당 먼저 外署에 알려 국왕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국왕이 지시를 내려 해당 사신이 힘써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자문이 도착한 다음 다시 답장을 하겠다.

이미 답장 전보를 귀 총리아문에 보낸 바 있습니다. 각국 출사대신에게 각기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 응당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0) 문서번호 : 2-1-3-45 (1294, 2384a-2386a)

사안 :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에 대하여 屬邦體制와 관련된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여 전달함으로써 조선 국왕이 사신들에게 힘써 준수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朝鮮派使各國事, 已籌議有關屬邦體制三端, 轉達該國王, 務飭使臣遵辦).

날짜 : 光緒十三年十月十六日(1887년 11월 3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十月初十日准朝鮮國王咨開：31)

九月初五日, 據外署督辦趙秉式啟稱：

本日准袁總理照開, 接奉貴大臣電開, 恭錄諭旨一道, 並貴大臣籌商改赴各國全權公使爲三等公使各節.

適聞之下, 感愧交集. 正擬商請之際, 於九月十八日齎奏官回, 接准禮部咨開：

恭錄諭旨一道, 並知照欽遵.

等因. 准此. 竊念小邦托庇天宇, 由來已久, 恪守侯度, 不敢外交. 然偏居東隅, 逼處他族, 每見輕於各國, 受侮於強隣. 乃荷貴大臣深謀籌畫, 囑與各國議立條約, 藉以互有牽制, 下免小邦宗社之危, 上紓天子東顧之憂. 而臣民惴惴, 時自警惕, 深恐有所隕越, 重遺天子之羞, 安敢稍忘懔惕, 自速其尤. 查此次派使一事, 迭辱貴大臣委曲詳籌, 無微不至. 東土臣民, 莫不銜感. 特有欽遵諭旨籌商妥協各節, 不能不爲貴大臣詳言之. 查敝邦與各國議定條約, 已閱數稔, 該約中有互相簡使駐紮之條. 前以敝邦籌款甚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時有力不從約之憾. 乃近年各國前來公使屢請派使赴其本國, 互聘修睦, 益敦和好, 轉難辭卻, 不得已而有派使之議. 訪謀臣僚, 或謂日本幅勢相敵, 可派辨理公使以應之. 至泰西諸國, 幅員、權力不啻十倍, 不可不派大公使應之, 亦小國之上卿位當大國下卿之意也. 且敝邦褊小, 久爲各國所輕侮, 如派使不足以壯觀瞻, 尤恐益見輕侮, 玷辱天朝. 因酌派全權公使分別駐紮, 雖伸小邦敦睦之誼, 亦宣天朝柔遠之德. 迨恭奉諭旨, 垂念微悃, 俯賜區畫. 伏聆之下, 感激莫名, 極欲停止派使, 以仰慰天恩之高厚. 並承貴大臣籌商各節, 另改使號, 又極欲改派三等, 以副苦心之指畫. 而無如方派使之時, 實以派駐紮公使之初, 不諳體例, 未能先有商請於中朝. 已於派定之後, 卽飭外署知照各國使先報其政府, 以備接待. 如此時忽然改派, 深恐見疑於諸國, 失信於天下, 益啟各國輕侮之心, 而重強鄰窺伺之志. 小邦之辱亦天朝之憂也. 設至乖舛友睦, 嘖有煩言, 重貽天朝之憂, 尤增小邦之戾, 反復籌思, 實爲難安. 惟有恃列藩服, 不揆煩猥, 仍商請於貴大臣妥籌方便之道, 各臻兩全之計, 庶小邦全信於天下, 修睦於強鄰, 固能永其社稷以事天朝, 則感幸. 鄙忱更何旣極? 倘能適合蓋籌, 仍准派全權公使, 擬卽飭該使前往, 待報聘事竣調回, 或以參贊等員代理, 庶可節省經費, 以仰答皇上垂念之恩. 並飭該使至西國, 復與中朝大臣, 仍恪遵舊制, 惟事恭謹, 以無負貴大臣妥籌之意. 是否有當, 均希裁示. 相應備文咨請.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查朝鮮國王來咨內稱, 前派全權公使赴泰西各國, 已知照各國使報其政府, 未便另改使號, 使人見疑, 擬飭該使前往, 待報聘事竣調回, 以參贊代理, 節省經費, 並飭該使至西國後與中朝大臣仍恪遵舊制, 惟事恭謹云云, 辭意遜順. 本閣爵大臣無不曲爲體諒. 惟欽奉上諭：

派駐之後, 體制交涉務歸兩全. 所有派往各國之員與中國往來均用屬邦體制, 其未盡事宜仍著隨時通問籌商, 務臻妥洽.

等因. 欽此. 本閣爵大臣亟應豫爲聲明, 厥有三端：

一. 朝鮮使臣初至各國, 應先赴中國使館具報, 請由中國欽差挈同赴外部, 以後卽不拘定.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一. 遇有朝會公讌酬酢交際, 朝鮮使臣應隨中國欽差之後.

一. 交涉大事關係緊要者, 朝鮮使臣應先密商中國欽差核示.

此皆屬邦分內應行之體制, 與各國無干, 各國不能過問, 卽係諭旨內未盡事宜籌商妥協之意. 中國與朝鮮休戚相關, 各欽差皆以名卿出使, 必能推誠優待韓臣.

等因. 已先電飭總理交涉通商事宜袁世凱轉達朝鮮國王, 務飭該使臣遵辦在案. 茲准前因, 除再咨復朝鮮國王查照辦理, 仍俟該使臣等報聘事竣調回, 或以參贊等員代理, 節省經費, 並恪遵諭旨隨時通問籌商, 務臻妥洽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10월 1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10월 10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9월 5일, 外署督辦 趙秉式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오늘 袁總理가 조회를 보내서, 北洋大臣께서 전보를 통해 공손히 초록한 유지 1통과 北洋大臣께서 계획하고 상의하여 각국에 보내는 全權公使를 三等公使로 바꾸는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감격함과 부끄러움이 교차하였습니다. [귀 대신과]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하려고 하던 때, 마침 9월 18일 자문전달관이 돌아왔고 [그를 통해] 禮部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지 1통을 공손히 초록하여 [보내니] 또한 [이 내용을] 알리고 삼가 준수해 주십시오. 생각건대, 조선이 중국의 비호를 받은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제후의 법도를 삼가 지켜 감히 외교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쪽 구석에 편벽하게 치우쳐 다른 나라를 가까이하면서 매번 각국에 경시당하고 강한 이웃으로부터 수모를 받았습니다. 이에 실로 귀 대신께서 깊이 도모하시고 계획하셔서 각국과 논의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빌어 서로 간에 견제하게 하여 아래로는 조선 종사의 위급함을 피하고 위로는 황상의 동쪽에 대한 우려를 풀어드릴 것을 당부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신민은 두려

31) 바로 앞의 (69) 문서번호 : 2-1-3-44(1291, 2379b-2382a)에 실린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움에 떨면서 때때로 경계심을 가지고 주어진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거듭 황상께 부끄러움을 드리지는 않을지 깊이 우려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망각하여 그 죄를 재촉하겠습니까? 이번에 사신을 파견하는 사안으로 누차 귀 대신에게 세밀한 부분까지 상세히 계획하여 작은 것조차 다루지 않으신 것이 없을 정도로 폐를 끼쳤습니다. 조선 신민 가운데 마음속 깊이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유지에 따라 적절하게 마련해주신 각 내용에 대해서는 귀 대신께 상세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이 각국과 조약을 체결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조약에서는 서로 사신을 뽑아 주재시킨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에는 조선에서 경비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기에 때때로 힘이 모자라 조약을 따르지 못한다는 유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래 각국에서 보낸 公使들이 여러 차례 그 본국으로 사신을 보내 서로 방문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자고 청하였는데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사신 파견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논의에 참여한 신료들은 혹 일본이 크기나 세력이 서로 필적하므로 辦理公使를 보내면 [그 요청에] 응대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그 크기나 세력이 열 배나 되어서 大公使를 보내 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또한 小國 上卿의 지위가 大國 下卿의 지위에 상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조선은 협소하여 오래도록 각국이 경시하였으므로, 만일 파견한 사신의 외관에 웅장함이 부족하다면 더욱 경시할 것이고 天朝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헤아려 全權公使를 파견하여 나누어 주재시키려는 것은 비록 조선이 [각국과]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天朝가 먼 나라를 안무하는 덕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지를 공손히 받아보니 미천한 진심을 배려하시고 고개를 수그려 계획해 주셨습니다. 엎드려 [유지를] 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러웠기에 사신 파견을 중단하여 높고 두터운 황상의 은혜를 심히 우러러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귀 대신께서 계획하신 내용을 받들어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바꾸고 또한 三等公使로 바꿔서 보내 苦心하여 마련해주신 계획에 매우 부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사신을 파견하려던 당시는 실로 외국 주재 공사를 보내는 것이 처음이어서 체제에 익숙하지 않아 중국과 미리 상의하고 [승인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파견을 결정한 다음에는 外署에 지시를 내려 각국 사신들에게 먼저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접대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홀연히 [三等公使로] 바꾸어 파견하게 되면 각국의 의심을 사고 天下에 신임을 잃게 되어 각국의 경시하는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한 이웃들이 기회를 엿보는 뜻을 더욱 무겁게 할까 깊이 우려됩니다. 조선의 치욕은 곧 天朝의 우환입니다. 가령 우호가 어그러져 입을 모아 비난하게 되면 거듭 天朝에 걱정을 끼치고 조선의 잘못이 더욱 늘어날 것이니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실로 편안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藩服에 들어있음을 믿고 외람됨을 무릅써서 이전처럼 귀 대신께 편리한 방안이자 [體制와 交涉] 두 가지가 모두 온전해질 수 있는 계획을 적절히 마련해 주시기를 청하오니, 조선이 天下에 신뢰를 온전히 하고 강한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그 社稷을 영속시키고 天朝를 섬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진심 또한 어찌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만일 능히 적절한 계획에 맞추어 여전히 全權公使 파견을 허락해주신다면, 즉시 해당 사신을 출발하도록 하고 답방 사무가 종료되면 곧바로 귀국시키며, 혹 參贊 등의 관원이 대리하도록 하면 경비를 절약하여 황상의 돌보아주시는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각국에 이르러서는 또한 중국의 흠차대신과의 관계에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삼가 일 처리를 하여 귀 대신께서 적절히 계획하여 주신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 방안이 타당한지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보내 청해야 할 것입니다.

보내온 전보에 의하면 조선 국왕은 자문을 보내기 이전에 全權公使를 서양 각국에 파견하는 일을 이미 각국 사신들에게 알려 그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고치기 불편하고 또한 남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해당 사신을 출발시키도록 하되 답방 사무가 끝난 후 곧 돌아오도록 하고 參贊이 그 임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경비를 절약하며,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국가에 도착한 후 중국의 欽差大臣들과의 관계에서 이전처럼 옛 제도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다만 삼가 정중히 일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뜻이 공손하여 본 대신은 뜻을 구부려 양해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 다음에는 체제와 교섭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 각국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모든 관원이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 모두 屬邦體制를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그래서 본 대신은 시급히 응당 미리 다음의 세 가지 단서[另約三端]를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하나.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하나.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이는 모두 屬邦分內에서 응당 행해야 할 體制이며, 각국과 관계가 없고, 각국이 간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지에서 "미진한 사항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라고 한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조선과 禍福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欽差大臣들은 모두 이름난 관리로서 사신 임무를 맡은 것이니, 반드시 성의를 다해 조선 사신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袁世凱에게 전보를 보내 [이상의 내용을]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여 [조선 국왕이] 해당 사신에게 지시를 내려 해당 사신이 힘써 따라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와 같은 자문을 받았으므로 조선 국왕에게 재차 답장 자문을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하고 이전처럼 해당 사신 등이 답방 사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혹 참찬 등의 관원이 대리하도록 하여 경비를 줄이고 아울러 삼가 유지에 따라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자문으로 귀 총리아문에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1) 문서번호 : 2-1-3-46(1304, 2415b-2418a)

사안 : 조선 국왕과 협의하여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여 이미 따라 지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屬邦事例와 결코 어긋나거나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奏摺을 상주하였습니다(具奏與朝鮮國王籌商, 派使各國未盡事宜, 酌擬三端, 均已轉飭遵行, 與屬邦事例, 並無違礙).

첨부문서 : 1.「조선 국왕의 咨文(朝鮮國王咨)」: 자문을 통해 사신을 보내 각국에 답방하도록 허가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반드시 사신들이 체제를 준수하고 정중히 일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합니다(咨謝准派使報聘各國, 必飭其恪遵體制, 恭謹行事).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十四日(1887년 12월 28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四日, 軍機處交出李鴻章抄摺稱：

奏爲遵旨與朝鮮國王籌商派使各國未盡事宜, 酌擬三端, 現准咨覆照辦, 恭摺仰祈聖鑒事. 竊臣欽奉九月初三日寄諭：

朝鮮派使各國, 體制、交涉務歸兩全. 其未盡事宜, 仍著李鴻章隨時通問籌商, 務臻妥協. 等因. 欽此. 仰見聖朝保全藩服, 無微不至, 欽感莫名. 遵卽電飭駐紮朝鮮辦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轉商該國, 應派駐紮公使不必用全權字樣. 旋於九月二十三日接據袁世凱電稟：

准朝鮮外署照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奉國王傳教, 前派各使久已束裝. 如候由咨文往返籌商, 恐須時日, 請先電達北洋大臣籌覆.

並據該國王咨稱：

近年泰西各國屢請派使修聘. 諸國幅員權力十倍朝鮮, 不可不派大公使. 惟派使之初未諳體制, 未先商請中朝. 於派定後卽飭外署知照各國, 以備接待. 茲忽改派, 深恐見疑, 仍請准派全權公使前往, 待報聘事竣調回, 或以參贊等員代理, 庶可節省經費. 並飭該使至西國後, 與中國大臣仍恪遵舊制, 惟事恭謹.

等語. 辭意尙爲遜順. 臣覆加籌度, 更將有關體制者先與約定三端：

一. 韓使初至各國 應請由中國大臣挈赴外部.

一. 遇有讌會交際, 應隨中國大臣之後.

一. 交涉大事關係緊要者 先密商中國大臣核示. 並聲明此皆屬邦分內之體制, 與各國無干, 各國不得過問.

當卽電飭袁世凱轉達該國王照辦. 茲復准該國王咨稱：

於十月杪, 飭駐美公使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公使趙臣熙, 先後前所定三端, 並飭遵行. 咨請據情轉奏.

前來. 臣查朝鮮派使往駐泰西, 本係無益虛名, 徒糜國用. 前奉諭旨開示至爲精詳. 惟該國因原約有遣使互駐之條, 遂未先商請中朝, 遽以全權公使報聞各國. 此時慮以改派失信, 自是實情. 旣稱遣使後, 與中國使臣往來恪遵舊制, 臣所定擬三端, 又經遵行, 於屬邦事例, 並無違礙. 至所稱報聘事竣, 或以參贊等員代理, 以期節省經費, 亦係遵奉諭旨, 審度預籌. 謹將該國王咨文一道, 照繕淸單, 恭呈御覽. 除分咨總理各國事務衙門、禮部暨出使各國大臣外, 所有與朝鮮國王籌商派使各國未盡事宜, 酌擬三端, 現經照辦緣由, 理合恭摺具陳, 伏乞皇太后皇上聖鑒. 謹奏.

照錄淸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謹將朝鮮國王咨文一道，照繕清單，恭呈御覽.」

朝鮮國王爲咨照事.

本年九月二十六日，據外署督辦趙秉式啟稱：

竊於本月本日，接准袁總理照會內開：

茲於二十四日戌刻，奉文華殿大學士李覆電內開：

來電述韓王咨，前派全權公使赴泰西各國，已知照各國使報其政府，未便另改使號，使人見疑，擬飭該使前往，待報聘事竣調回，以參贊代理節省經費，并飭該使至西國後，與中朝大臣，仍恪遵舊制，惟事恭謹云云. 辭意遜順. 本大臣不能不曲爲體諒. 惟欽奉上諭：

派駐之後，體制交涉，務歸兩全. 所有派往各國之員，與中國往來均用屬邦體制，其未盡事宜，仍著隨時通問籌商，務臻妥洽.

等因. 本大臣亟應預爲聲明有三端，一. 韓使初至各國 應先赴中國使館具報 請由中國欽差挈同赴外部 以後卽不拘定. 一. 遇有朝會公讌酬酢交際，韓使應隨中國欽差之後. 一. 交涉大事關係緊要者，韓使應先密商中國欽差核示. 此皆屬邦分內應行之體制，與各國無干，各國不能過問，卽諭旨未盡事宜籌商妥協之意. 中國與朝鮮休戚相關，各欽差皆以名卿出使，必能推誠優待韓臣. 該道應先照知外署，轉達國王，務飭使臣遵辦，俟咨到再復.

各等因. 據此. 具見貴大臣仰體皇子字小之恩，曲諒敝邦難便之勢，俯允所請，仍舊使號，俾保信義於天下，不啟猜疑於鄰邦. 此後體制交涉無失兩全，用能永安其社稷，杜息夫煩言. 此皆貴大臣始終周全之至意也. 銘感之衷，更何有旣? 當卽於本月杪，飭駐美全權朴定陽，駐英、德、俄、意、法全權趙臣熙，先後前往泰西，各敬厥職. 至貴大臣遵旨妥籌三端，悉心籌畫，旣周且詳，尤爲欽佩. 除已飭外署照覆袁總理現行照辦，並飭朴定陽、趙臣熙遵行外，相應備文咨謝. 希卽貴大臣查照轉奏施行. 須至咨者.

光緒十三年十月二十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월 14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李鴻章의 奏摺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조선 국왕과 협의하여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장 자문을 받았기에, 삼가 주접을 마련하여 아뢰오니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9월 3일, [軍機處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寄信上諭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데 體制와 交涉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조정에서 藩服을 보전하시려고 세심한 것까지 생각하시는 마음을 우러러 뵐 때 정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시에 따라 즉시 袁世凱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국왕에게 응당 파견하여 주재시키려는 公使가 반드시 '全權'의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곧이어 9월 23일,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전보로 보고해 왔습니다.

조선 外署에서 다음과 같은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국왕께서 다음과 같은 傳敎를 내리셨습니다.

이전에 각국에 파견하려는 사신들이 여장을 꾸린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엄동설한이 찾아올 것이고 갈길은 매우 멀다. 만일 자문을 주고받으며 상의하기를 기다린다면 아마도 너무 긴 시일이 걸릴 것이니, 우선 北洋大臣께 전보로 알려 계획하셔서 답장 전보를 보내주시기를 요청하라.

아울러 조선 국왕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근래 서양 각국이 누차 그 본국으로 사신을 보내기를 요청하였는데, 서양 국가들은 그 크기나 세력이 열 배나 되어서 大公使를 보내 응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신을 파견하려던 당시는 체제에 익숙하지 않아 중국과 미리 상의하고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파견을 결정한 다음에는 外署에 지시를 내려 각국 사신들에게 먼저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접대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지금 홀연히 [三等公使로] 바꾸어 파견하게 되면 각국의 의심을 사게 되니, 여전히 全權公使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답방 사무가 종료되면 곧바로 귀국시키며, 혹 參贊 등의 관원이 대리하도록 하면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으며, 해당 사신이 서양 각국에 이르면 중국 欽差大臣과의 관계에서는 옛 제도를 그대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다만 삼가 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 말뜻이 여전히 공손하였습니다. 제가 다시 상황을 헤아려 나아가 장차 體制와 관련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더불어 약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하나.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이상의 내용은 즉시 袁世凱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조선 국왕이 다시 자문을 보내왔습니다.

10월 말, 駐美公使 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公使 趙臣熙에게 앞서 정한 세 가지 항목을 따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자문으로 알리니 이를 근거로 대신 상주해주십시오.

생각건대, 조선에서 사신을 서양 각국에 보내 주재시키는 것은 본디 무익하고 헛된 명성을 좇아 함부로 나라 재정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받은 유지에서 지시하신 바가 지극히 정밀하고 상세합니다. 다만 조선이 [서양과 체결한] 조약에 사신을 파견하여 서로 주재시킨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中朝와 먼저 상의하여 [승인을] 요청하지도 않고 황급히 全權公使를 보내 각국에 답방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현재 [三等公使로] 바꾸어 보내면 신임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실로 이것이 實情이기도 합니다. 사신을 보낸 다음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는 옛 제도를 준수하겠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제가 마련한 세 가지 항목 또한 이미 준행하고 있으니 屬邦事例와 결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답방 사무 종료 후 혹은 參贊 등의 관원으로 대리하게 하여 경비를 절약한다고 한 것도 또한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헤아려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삼가 조선 국왕의 자문 1통을 초록하여 淸單으로 갖추어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총리아문, 禮部 및 出使各國大臣에게 각각 자문을 보내는 외에, 조선 국왕과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일을 상의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고 현재 [조선에서] 이미 그에 따라 처리하였던 모든 경과를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오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첨부문서 :

1.「조선 국왕의 자문 1통을 정서하여 淸單으로 만들어 공손히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올해 9월 26일, 外署督辦 趙秉式이 다음과 같은 狀啓를 올렸습니다.

오늘 袁世凱 總理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회를 받았습니다.

24일 戌刻에 李 中堂大人께서 다음과 같은 답장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온 전보에 의하면 조선 국왕은 자문을 보내기 이전에 全權公使를 서양 각국에 파견하는 일을 이미 각국 사신들에게 알려 그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별도로 사신의 칭호를 고치기 불편하고 또한 남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해당 사신을 출발시키도록 하되 답방 사무가 끝난 후 곧 돌아오도록 하고 參贊이 그 임무를 대리하도록 하여 경비를 절약하며, 아울러 해당 사신이 서양 국가에 도착한 후 중국의 欽差大臣들과의 관계에서 이전처럼 옛 제도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다만 삼가 정중히 일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뜻이 공손하여 본 대신은 뜻을 구부려 양해해주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은 바 있다.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킨 다음에는 체제와 교섭 두 가지 모두 온전히 지켜야 할 것이다.……각국에 파견하여 주재하는 모든 관원이 중국 사신과 왕래할 때 모두 屬邦體制를 따르도록 하고……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이전처럼 [李鴻章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힘쓰라.

그래서 본 대신은 시급히 응당 미리 다음의 세 가지 단서[另約三端]를 밝히기로 하였다.

하나.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하나.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검토·지시를 받는다.

이는 모두 屬邦分內에서 응당 행해야 할 體制이며, 각국과 관계가 없고, 각국이 간여할 수 없다. 즉 유지에서 "미진한 사항은 협의하여 적절히 처리"하라고 한 뜻이기도 하다. 중국은 조선과 禍福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각 欽差大臣들은 모두 이름난 관리로서 사신 임무를 맡은 것이니, 반드시 성의를 다해 조선 사신을 우대할 수 있을 것이다. 袁世凱는 먼저 外署에 알려 조선 국왕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선 국왕이] 해당 사신에게 지시를 내려 힘써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문을 기다려 다시 답장을 할 것이다.

귀 대신께서는 작은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황상의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시고 조선의 어려운 형세를 양해해 주셔서 머리를 수구려 청한 바를 허락해주시어 이전의 사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천하에 신의를 지키고 이웃 국가들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후 體制와 交涉 모두 그 온전함을 상실하지 않게 되어 그 사직을 영원토록 안정시키고 쓸데없는 비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귀 대신께서 시종 주도면밀하게 처리해주신 지극한 뜻입니다. 감격하는 마음이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이번 달 초 駐美全權 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全權 趙臣熙를 차례대로 서양으로 보내 각각 삼가 그 직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귀 대신께서 유지를 받들어 적절히 마련하신 세 가지 항목은 마음을 다하여 계획하신 것으로서 주밀하고 또한 상세하니 더욱 탄복스럽습니다. 이미 外署에 지시를 내려 袁總理에게 현재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장 조회를 발송하고, 아울러 朴定陽과 趙臣熙에게 따르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문서를 갖추어 자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 대신께서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서 13년 10월 20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2) 문서번호 : 2-1-3-47(1306, 2419b)

사안 : 조선이 각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무를 계속 처리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자문으로 알립니다(咨會續籌辦朝鮮派使各國未盡事宜, 酌擬三段).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十七日(1887년 12월 3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爲照本閣爵大臣於本年十一月十一日, 在保定省城差弁具奏, 遵旨與朝鮮國王籌商派使各國未盡事宜, 酌擬三端, 現准咨覆照辦一摺. 相應抄摺咨會貴衙門. 請煩查照.

(1) 照錄摺單：詳見十一月十四日軍機處交出

11월 1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제가 올해 11월 11일 保定省城에서 하급 무관을 보내 유지에 따라 조선 국왕과 조선이 각국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사무를 협의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조선 국왕이 그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답장 자문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접을 상주하였습니다. 응당 주접을 초록하여 귀 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1) 摺單 초록 : 11월 14일, 軍機處에서 교부한 문서에서 자세하게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3) 문서번호 : 2-1-3-48(1308, 2421a-2425a)[32]

사안 : 조선 인삼 상인이 樂安縣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으니, 天津 주재 조선 관원에게 알려 대신 조사하여 답장해주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朝鮮賣參商人在樂安縣屬病故, 請轉行該國駐津大員查覆).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1888년 1월 11일)

발신 : 江西巡撫 德馨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二十八日, 江西巡撫德馨文稱：

據總局司道會同布政使李嘉樂、按察使瑞璋詳稱：

光緒十三年七月初七日, 本藩司前護撫篆任內, 批據樂安縣知縣夏宗鏊詳稱：

光緒十三年六月十六日, 訪聞縣屬西隅地方, 有朝鮮國賣參客人在歇店病故情事. 當卽差查. 去後, 旋據西隅地保樂壽蓮報：

據店主龔福姑投稱：

本年六月十五日下午, 有朝鮮國賣參客人, 不知名朴姓, 肩負布包雨傘一人來店投宿. 因向吸洋烟, 中途感冒暑熱, 染患烟痢, 不能飮食. 次日早晨病勢愈重, 伊卽代請醫生, 一面邀同地保、隣佑, 將布包開看, 點明物件, 逐一開單, 不料朴姓服葯無效, 延至十六日下午病故.

等語. 往看屬實. 合將所遺布包內高麗參及衣鞋零星物件稟呈察核.

等情. 並據店主龔福姑稟同前由. 各到縣. 據此. 卑職隨將呈到參衣等物, 逐一點明

32) 본 문건은 내용상 '朝鮮遣使與體制問題'와 관련이 없다. 아마도 『淸季中日韓關係史料』 편집 당시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開單，包封儲庫，一面捐廉買備棺木，帶同刑仵前詣，先勘得該屍身穿藍布圓領大袖單衫，下著白布單褲，足穿白布襪．勘畢相驗．據仵作劉祥喝報：

已死朝鮮國人，不知名朴姓，年約四十餘歲，量得屍長四尺八寸，膀寬七寸，胸高五寸．驗得仰面面色黃瘦，兩眼胞合，兩眼睛在內，上下唇吻有鬚，上下牙齒全，口微開，舌在內，兩手微握，兩手心黃色，肚腹低陷，腎囊子全．合面髮際頭髮鬖鬆，未薙，挽成螺髻，穀道糞污 ,兩腳心黃色．餘無故，委係生前患病身死．

報畢親驗無異．當場填格，屍飭棺殮封，交地保淺埋標記，取領同仵結附券．隨傳店主、醫生、隣佑查訊．據地保樂壽蓮供，與報詞同．據店主龔福姑供：

年四十七歲，樂安縣人，向在西隅地方開設歇店．光緒十三年六月十五日下午，有朝鮮國賣參客人不知名朴姓，肩負布包雨傘一人來店投宿．因患烟痢(利?)，不能飲食．十六日早晨病勢更重．小的當就代請醫生元桂宗診視，一面喊同地保樂壽蓮，隣佑元逢春、詹長龍、楊勝華、樂皆生、習德盛把布包開看．內有小高麗參三百七十一枝、斷參五十六枝、牛骨圖書一個、戥子一把、網衫一件、刷子一個、小琥珀墜二個、青綢紗一條、白棉紗帶二條、烟槍一枝、烟燈一盞，外有羽綾鞋一雙、雨傘一把，對眾逐一開單．不料朴姓服葯沒效，延至十六日下午病故．小的就邀同地保，赴案稟報的．朴姓由何處來，店是何名字，現年若干歲，當時漏未問明．朴姓尚欠小的代付醫葯錢並歇錢四百二十五文，沒有付給．是實．

據醫生元桂宗供：

向做醫生．光緒十三年六月十六日早晨，龔福姑來請醫生，到他店內看病，醫生當就前往診得朝鮮國人，不知名朴姓．因平素吸食洋烟，中途感受署熱，染患烟痢，當用黃芩、枳實、芍葯、滑石等葯給服．不料病勢沉重，服葯沒效，到下午病故．委沒誤用方葯．情事是實．

各等供．據此．訊之隣佑元逢春、詹長龍、楊勝華、樂皆生、習德盛供亦無異，並據各具甘結前來．卑職伏查此案，朝鮮國人不知名朴姓病故之處，現經驗訊明確．面黃肌瘦，穀道糞污，委係患痢身死，並無別故，應與店主、地、隣及訊無誤用方葯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醫生，均毋庸議．屍棺封交地保淺埋標記，參枝等物暫儲縣庫，是否允協，理合開造清冊，具文詳請查核．

再，查朝鮮商民帶貨入內地貿易，如果未納稅厘，照章應將貨物查拏入官．惟光緒十年五月間南昌、新建兩縣查獲朝鮮國人羅承五等，均未請領執照、稅單．各帶高麗參，先後來江西售賣，俱奉局議將餘剩貨物，免其入官．今朴姓所遺參枝，檢查包袱內並無稅單、執照，曾否完納稅厘，無從詢悉，究應作何辦理？與所遺衣物一併送交何處收存，均懇批示遵行．又朴姓所遺圖章上，有密陽朴奎恒信印七字，下有文五桐四字(?)．字密陽是否該國地名，奎恒是否朴姓之名，無憑懸揣，合併聲明．

等情．奉批：

局會同藩、臬兩司核明例章，飭遵詳辦．

等因．到局．當查光緒八年十一月間奉發刊刻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並未議有朝鮮商民在內地病故條例．惟章程內開：

朝鮮久列藩封，典禮所關一切均有定制，毋庸更議．現在各國既由水陸(路)通商，自宜亟開海禁，令兩國商民一體互相貿易，共霑利益，其邊界互市之例，亦因時量爲變通．此次所訂水陸貿易章程，係中優待屬邦之意，不在各與國一體均霑之例．茲定各條如左．

等因．是朝鮮久列藩封，一切早有定制，本局無案可稽．卽經移藩、臬兩司衙門，查明例章會辦．嗣准藩司衙門覆稱：

查前於嘉慶二十一年間奉准兩廣督部堂咨：

日本國遭風難夷四十七名漂流到粵．奏明查照向辦成案，委員護送至浙江，附搭便船回國，請飭沿途護送．

等因．當經行據玉山縣詳報，該難夷內有水手，防助染患痘症，服藥無效，於二十一年二月十六日在船身故．經該縣帶同刑仵驗明，委係生前患痘症身死，並無別故．屍棺飭保領埋，填格取結．詳經前司，詳奉前撫部院咨明，戶、兵部既兩廣督部堂、浙江撫部院查照．又於咸豐十一年二月二十三日奉准欽差大臣兩江督部堂曾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准盛京禮部等衙門咨：

奏報撫邨琉球國遭風難民，護送歸國案內，有該國難民江比嘉，到省後因病身故．委員會驗，委係病斃，並無別故．隨卽飭屬棺殮領埋，妥爲標記．

各等因在案．今該朝鮮國客人朴姓來江售賣參枝，並未奉准咨行有案．是否與所訂貿易章程相符，現在患病身故，就地淺埋標記，所遺參枝等物如何給還，應否詳請咨明通商大臣衙門一體咨行遵辦．近年各國事宜旣歸局中辦理．此案應由局核明，按章會辦．計粘抄原詳並原奏、咨共各一件．

復於本年九月初六日，准臬司衙門移開：

光緒十三年八月十六日，奉爵督部堂曾批．樂安縣詳報朝鮮國賣參客人不知名朴姓在歇店病故一案，驗訊緣由．奉批：

查南昌、新建等縣查獲張信漢等，無照單高麗參說免入官各案．本爵部堂衙門無案可稽．據詳前情，仰江西按察司會同善後局確核妥議，詳覆飭遵．

等因．查「[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內開：

第二條．朝鮮商民在中國已開口岸所有一切財產罪犯等案，無論被告、原告爲何國人民，悉由中國地方官按律審斷，並知照朝鮮委員備案．

又：

第一條，如遇有疑難事件，聽其由駐津大員詳請南北洋大臣定奪．

各等語．今該縣詳報朝鮮國賣參客民不知名朴姓，並無照單，入內地賣參病故，是否比照第二條由中國據律辦理，本署司衙門無案可稽，應由局核明例案，會核詳辦．

各等因．前來．本司道等覆查，「續定朝鮮商民未領執照潛往貿易游歷章程」內開：

嗣後未開口岸各處，遇有商民未領執照潛行貿易游歷，應照前定貿易章程第二條私逃例，由地方官將該商民送交商務委員，解回本國懲辦．

等因．今朝鮮國賣參客人不知名朴姓，在樂安縣屬西隅地方歇店病故．茲經會查並未奉有該國商民在中國內地病故專條．且該商來江貿易，又未奉准咨會有案．現在歇店患病身故，旣經樂安縣帶同刑仵驗訊明確，將呈到參衣等物逐一點明，開單包封儲庫，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屍身由縣捐廉買備棺木殮封, 交地保淺埋標記, 亦係優待遠人之意. 惟已埋屍身, 應否聽其家屬自行派人搬回, 遺存參物等件如何給還, 查無似此例案, 究應如何辦理. 擬請咨行朝鮮國現派駐津大員查明, 該故商有無的實家屬, 詳晰覆咨江, 再行照辦, 俾昭妥協. 是否有當, 理合會文詳請分咨總理各國事務衙門、通商大臣轉行該國駐津大員查明議覆咨江, 以便照辦.

等情. 到本部院. 據此. 除分咨外, 相應呈明. 爲此咨呈欽命總理各國事務衙門, 謹請查照, 希卽轉行該國駐津大員查明議覆, 咨江照辦施行.

11월 28일, 江西巡撫 德馨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總局司道가 布政使 李嘉樂, 按察使 瑞璋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13년 7월 7일, 본 布政使가 이전 護理巡撫[33]로 일하고 있을 때 樂安縣 知縣 夏宗鑾가 올린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광서 13년 6월 16일, 縣 경내의 西隅 지방을 방문하였더니 조선의 인삼 상인이 여관에서 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시 差役을 보내 조사하였으며, 이후 西隅 地保[34] 樂壽蓮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점주 龔福姑가 다음과 같은 投狀을[35] 올렸습니다.

올해 6월 15일 오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 인삼 상인이 어깨에 보따리와 우산을 메고 혼자 여관에 와서 투숙하였습니다. 종래 아편(洋烟)을 피운 데다가 도중에 감기와 더위 때문에 아편으로 인한 이질(烟痢)에 걸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세가 더욱 심해져서 [점주는] 대신 의생을 불렀고, 한편으로는 地保와 이웃 사람을 불러 보따리를 열어 그 안에 든 물건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박씨가 복용한

33) 호리(護理)란 포정사나 안찰사가 상급의 총독 또는 순무의 직을 대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34) 지보(地保. 또는 地方)는 지방관이 향촌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임명한 역인(役人)을 지칭한다. 지방관이 위임한 업무를 담당하고, 지방관의 명령과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35) 투(投)는 투장(投狀), 또는 투사(投詞)를 의미하며, 원래는 고소장이 수리된 이후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를 지칭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약이 효과가 없었고 16일 오후에 사망하였습니다.

가서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가 남긴 보따리 속의 고려 인삼 및 의복·신발 등 자질구레한 물건을 함께 올려보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점주 龔福姑의 보고도 함께 縣 衙門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올려 받은 인삼·의복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목록을 만들고 포장·봉인한 뒤 창고에 두었으며, 한편으로는 돈을 내어 싼값의 관목을 사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시 차역[仵作][36]을 대동하여 가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시신은 위에는 목둘레가 둥그렇고 소매가 큰 단삼을, 아래에는 하얀색 홑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발에는 하얀색 버선을 신고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검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시 차역 劉祥喝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사망한 조선인은 성은 박씨, 이름은 불명이며 약 40세이고 시신의 키는 4척 8촌(약 160cm), 어깨너비는 7촌(약 23cm), 가슴 높이는 5촌(약 16cm)입니다. 검시하면서 누운 얼굴은 얼굴색이 누렇고 여위었으며, 두 눈을 감고 있고 두 눈동자가 그 안에 있으며, 위아래 입술에 수염이 있고 위아래 치아는 온전하며, 입이 조금 열려 있고 혀가 안에 있으며, 양손은 살짝 쥐고 있고 손바닥은 황색이며, 배는 꺼져 있고, 고환(腎囊子)은 온전합니다. 등쪽 머리카락이 난 부분은 봉두난발이고 薙髮은 하지 않았으며, 머리를 아무렇게나 막 끌어 올려 상투를 틀었으며, 항문은 더럽고, 양쪽 足心은 황색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확실히 생전의 병환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보고가 끝나고 친히 점검해보니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검시보고서 양식을 메우고, 시신은 관에 넣어 염을 한 다음 뚜껑을 덮었고, 地保에게 넘겨 가매장하고 표지를 세웠으며, 영수증을 받아 검시 차역과 함께 관련서류철에 넣었습니다. 이후 점주, 의생, 이웃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였습니다. 地保 樂壽蓮의 진술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점주 龔福姑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47세이며 낙안현 사람으로 지금까지 西隅 지방에 살면서 여관을 열었습니다. 광서 13년 6월 15일 오후,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 인삼 상인이 어깨에 보따리와 우산을 메고 여관에 투숙하였습니다. 아편으로 인한 이질을 앓고 있어서

36) 오작(仵作)은 인명(人命)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시신 검시를 담당하던 차역(差役)이다. 원래 지방관이 직접 검시를 해야 하였으나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으므로 오작이 이를 대신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16일 새벽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를 대신하여 의생 元桂宗에게 왕진을 요청하였고, 한편으로는 地保 樂壽蓮, 隣佑 元逢春, 詹長龍, 楊勝華, 樂皆生, 習德盛 등을 불러 보따리를 풀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고려인삼 371뿌리, 잘린 인삼 56뿌리, 소뼈로 만든 도장 1개, 천칭 1개, 그물 형태로 짠 적삼 1벌, 솔 1개, 작은 호박 장식 2개, 파란색 주름실 1뭉치, 백면 실타래 2뭉치, 아편대 1개, 아편에 불을 붙이는 등 1개가 있었고, 밖에는 羽緞으로 만든 신발 1쌍, 우산 1개가 있었으며, 앞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하나 목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박씨가 복용한 약이 효과가 없어 16일 오후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地保를 불러 함께 현 아문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박씨가 어디에서 왔고, 그가 속해 있는 점포의 이름이 무엇이며, 올해 몇 세인지 등은 당시에 깜빡 잊고 물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박씨는 제가 대신 지불한 약값과 숙박비 425文을 또한 빚지고 있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의생 元桂宗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래 의생일을 해왔습니다. 광서 13년 6월 16일 새벽, 龔福姑가 와서 제게 자기 가게로 가서 진찰해달라고 하여, 바로 가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인을 진찰하였습니다. 평소에 아편을 피운 데다가 중도에 더위를 먹고 아편으로 인한 이질을 앓았기 때문에 응당 黃芩, 枳實, 芍药, 滑石 등의 약을 복용시켰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세가 침중하여 복용한 약의 효과가 없이 오후에 사망하였습니다. 분명히 약을 誤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웃 사람 元逢春, 詹長龍, 楊勝華, 樂皆生, 習德盛을 심문하여 얻은 진술 또한 다르지 않았으며, 아울러 각각 확인서[甘結]를[37] 갖추어 올렸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이 사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박씨 성의 조선인이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은 현재 이미 검시와 [관련자] 심문을 통해 명확합니다. 얼굴이 누렇고 야위었으며 항문이 더러운 것을 보면 확실히 이질을 앓아서 사망한 것으로 결코 다른 원인은 없으니 응당 점주와 地保, 이웃 사람 및 약을 誤用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죄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체를 넣은 관은 봉인하여 地保에게 주어 가매장하고 표지를

37) 감결(甘結)은 관부에 제출하는 서명을 한 「확인서」로 확인한 사실이 맞지 않거나 어긴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세우도록 하고 인삼 등의 물건은 잠시 현 아문 창고에 보관토록 한 조치가 적절한지 응당 淸册을 만들고 문서를 갖추어 보고하니 검토해 주십시오.

추가합니다. 조선 상민들이 화물을 가지고 내지로 들어와 무역을 하는데, 만일 關稅와 釐金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章程에 따라 마땅히 그 화물을 조사하여 관부에서 몰수해야 합니다. 다만 광서 10년 5월, 南昌·新建縣 두 곳에서 조선인 羅承五 등을 조사·체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허가증과 납세 증명서를 신청·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고려인삼을 가지고 차례로 江西省에 와서 판매하였으나 모두 總局의 논의를 받들어 나머지 화물에 대한 몰수를 면제하였습니다. 현재 박씨가 남긴 인삼에 대해서는 그의 보따리를 검사한 결과 납세 증명서나 허가증이 없으므로 關稅와 釐金를 완납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니,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인삼과] 그가 남긴 의복 등을 합쳐서 어느 곳에 보내 보관하도록 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지시를 내려 따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박씨가 남긴 도장의 위에는 '密陽朴奎恒信印'이라는 일곱 글자가 쓰여 있고 아래에는 '文五桐' 네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密陽이라고 쓴 것이 조선의 地名인지, 奎恒이 박씨의 이름인지 아무런 짐작할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아룁니다.

이 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總局은 布政使·按察使와 함께 前例와 章程을 상세히 검토하여 보고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總局은 이에 따라] 광서 8년 11월 중 인쇄되어 배포된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검토해 보았는데, 조선 상인이 내지에서 병으로 사망한 일에 대한 條例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章程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藩封으로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典禮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는 정해진 제도가 있어 다시 논의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 각국과 수로를 통해 통상하고 있으니, 응당 신속하게 海禁을 풀어 양국 상민이 모두 서로 무역을 통해 이익을 누리게 해야 하고, 변경 지역의 互市 定例도 또한 시세에 따라 적절하게 變通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水陸貿易章程은 중국이 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각 조항을 마련하였다.

조선은 오랫동안 藩封으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일체의 [典禮는] 일찍부터 정해진 제도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저희가 참고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미 布政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按察使 衙門에 移文을 보내 前例와 章程을 조사하여 함께 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布政使 衙門에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가경 21년, 兩廣總督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한 47명의 일본인이 표류하여 광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成案에 비추어 위원을 보내 浙江까지 호송하여 편리한 배편으로 귀국시키고자 하니 연도에서 호송하도록 지시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주를 올립니다.

[이에 대해] 이미 玉山縣에 문의하였더니 그 답장으로 돌아온 보고에 따르면, 표류한 일본인 가운데 누군가가 천연두에 걸려 약을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21년 2월 16일 배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지현이 검시 차역을 대동하여 검시한 결과 확실히 생전에 천연두에 걸려 사망한 것이었고, 다른 원인은 없었습니다. 시체가 담긴 관은 地保가 수령하여 매장하고 격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전 司道에게 보고하고, 司道가 巡撫에게 보고하였으며, 巡撫는 戶部·兵部 및 兩廣總督·浙江巡撫에게 咨文을 보내 알린 바 있습니다. 또 함풍 11년 2월 23일 欽差大臣兩江總督 曾國藩이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盛京禮部 등의 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습니다.

풍랑을 만나 표류한 류큐(琉球)의 난민을 돌봐주고 호송해 귀국시킨다는 내용으로 상주하였는데, 류큐 난민 江比嘉가 省에 도착한 후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람을 보내 함께 검시하였는데 확실히 병으로 사망한 것이었으며 다른 원인은 없었습니다. 즉시 속료들에게 시신을 관에 넣어 가져가 매장하고 적절히 표지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금 조선 상인 박씨가 江西省에 와서 인삼을 판매한 일에 관하여 자문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반포된 「貿易章程」과 부합하는지 여부, 현재 병환으로 사망하여 그 지역에 가매장하고 표지를 세우게 하였는데 그가 남긴 인삼 등의 물품은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등은 응당 보고서를 올려 通商大臣衙門에 자문으로 알려 그 지시를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각국과 관련된 사무는 모두 總局에 넘겨 처리합니다. 이 안건도 응당 總局에서 검토하고, 章程에 따라 함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보고서 및 原奏, 咨文을 각각 1건씩 초록하여 첨부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시 올해 9월 6일, 按察使 아문에서 다음과 같은 移文을 보내왔습니다.

광서 13년 8월 16일, 曾國藩 總督께서 樂安縣에서 조선 인삼 상인 박씨가 여관에서 사망한 안건에서 검시·심문한 경과를 보고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南昌과 新建 등의 縣에서 張信漢 등을 수사하여 체포하였으나 허가증이 없는 고려 인삼에 대해서는 몰수를 면제해 주었던 사례가 있다. 본 총독아문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전에 보고한 사정에 따라 江西 按察司가 善後局과 함께 확실히 검토하고 적절히 논의하여 다시 보고서를 올려 다시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따르도록 하라.

조사해보건대, 「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의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조선 상민이 중국의 이미 개방한 항구에서 [범한] 모든 재산 범죄 등의 안건은 피고·원고가 어떤 나라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두 중국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판하되, 아울러 조선 위원에게 알려 기록해 두게 한다.

또 제1조에서는,

제1조. 만일 의심스럽거나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의] 天津 주재 고위 관원이 南·北洋大臣에게 보고하여 결정을 요청하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현의 보고에 따르면 조선의 인삼 상인 박씨는 허가증이 없이 내지에 들어와 인삼을 팔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제2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중국에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할지 본 아문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응당 귀 총국에서 전례를 검토하여 함께 보고·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 司道 등이 다시 조사해보니 「續定朝鮮商民未領執照潛往貿易游歷章程」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방하지 않은 항구 등 각지에서 상인이 허가증을 수령하지 않고 몰래 들어가 무역·여행하는 일이 발생하면, 응당 이전에 반포한 「貿易章程」 제2조의 私逃例에 비추어 지방관이 해당 상인을 商務委員에게 넘기고, 商務委員이 본국으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현재 조선의 인삼 상인 박씨는 樂安縣 소속 西隅 지방의 여관에서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에 대해] 지금 이미 함께 검토하였으나 조선 상민이 중국 내지에서 병으로 죽었을 경우를 다룬 전문 조항이 없습니다. 또 해당 상인이 江西에 와서 무역하는 것에 대해 자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현재 여관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이미 樂安縣에서 검시 차역과 함께 檢驗·審問하여 명확해졌고, 보고한 인삼·의복 등의 물건은 하나하나 확인하여 목록으로 작성하고 포장·봉인하여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시신은 현에서 돈을 내어 싼값으로 관을 마련하여 염을 하고 뚜껑을 덮은 뒤 地保를 시켜 가매장하고 표지를 세우게 하였는데, 이는 또한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뜻입니다.

다만 시신을 이미 매장하였는데 그 가족들이 스스로 사람을 보내 시신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인삼 등의 유품은 어떻게 돌려줄지 등에 대해서는 이 사안과 유사한 사례가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청컨대,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조선 국왕이 天津 주재 고위 관원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고 사망한 상인에게 확실한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고 분명하게 조사하여 江西巡撫에게 咨文을 보내고, 재차 그에 따라 처리하여 적절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방안이 타당한지 아닌지 응당 함께 보고서를 올려 요청하니, 總理各國事務衙門과 通商大臣에 각기 咨文을 보내서 天津 주재 조선 고위 관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가 조사하여 답장을 보내면, [이에 따라] 江西巡撫께 咨文을 보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본 순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문을 발송하는 외에 응당 설명하는 글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총리아문에 자문을 올리오니 검토하시고 조선의 天津 주재 고위 관원에게 전달하여, 그가 조사하고 답장을 보내면 江西巡撫에게 자문으로 알려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4) 문서번호 : 2-1-3-49(1309, 2425b-2427b)[38]

사안 : 조선에서 중국 백성을 체포한 사건을 조사해보니 일을 벌려 말썽을 일으킨 별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審明朝鮮拿獲中國人民一案, 並無滋事起釁別情).

날짜 : 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九日(1888년 1월 12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二十九日, 軍機處交出慶裕抄摺稱：

爲審明朝鮮國拏獲中國民人並該國人一案, 並無滋事啟衅別情, 謹將議結緣由, 恭摺仰祈聖鑒事.

竊奴才於光緒十二年四月初一日, 准禮部咨, 鈔錄朝鮮國王咨文轉奏一摺. 於光緒十二年三月二十三日具奏. 本日奉旨：

依議.

欽此. 查鈔奏內開：

准盛京禮部遞到朝鮮國王咨文一件, 公同閱看, 係因奉天通化縣捕盜兵役, 向該國惠山鎮與該處官吏追捕匪徒, 致鎮民金周至爲匪徒王姓所傷, 翌日身死. 捉獲匪徒十八名, 內有中國人十一名, 朝鮮人七名, 現在嚴囚, 以待處置. 在囚王姓因病身死. 該國王略敘案情, 咨請代奏. 惟其中有無啟衅別故, 亦難懸揣. 請旨飭下盛京將軍詳細查明辦理.

38) 본 문건도 내용상 '朝鮮遣使與體制問題'와 관련이 없다. 아마도 『淸季中日韓關係史料』 편집 당시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等因. 並鈔錄該國王原咨到奉. 奴才遵卽札飭東邊道委員, 會同通化縣查明詳辦. 去後, 旋據通化縣知縣黃毓森稟稱：

查得該縣並無飭派捕盜營兵追捕朝鮮人之事. 惟十一年六月間, 曾有朝鮮國移送滋事人張泳悅、何成、王計元、池中文、李士中、王成等六名到縣. 因訊無重情, 當卽責釋. 該國並未言及有鎭民金周至被王姓致傷斃命, 並王姓在囚病死之事. 茲將張泳悅、何成、王計元、池中文之兄池中山四名, 傳案押候會審. 李士中、王成、池中文三名業已出外, 不知去向. 除照會朝鮮咸鏡道, 將滋事人解送來縣候訊外, 理合先行稟覆.

嗣又據該縣詳報, 押犯張泳悅於光緒十二年六月二十二日因病身死, 經東邊道札委懷仁縣驗訊詳報在案. 茲據東邊道奎訓詳稱：

據委員懷仁縣知縣俞承卿, 會同現署通化縣知縣張寅, 准朝鮮咸鏡道將該國越犯高萬伯、金巖回、千云凡等三名移送到縣, 經該委員會同該縣提案訊明. 解由該道覆審明確. 詳請查核具奏前來. 奴才隨覆加確核, 緣高萬伯、金巖回、千云凡均係朝鮮端川縣人, 何成、王計元、池中山與在押病故之張泳悅、未到之池中文、李士中、王成均在通化縣十八道溝居住, 種地度日. 光緒十一年三月間, 高萬伯等因該國連年荒歉, 來至大江十九道溝, 打魚謀生. 是年六月, 不記日期, 張泳悅向朝鮮人楊姓、曲姓索欠爭鬧, 何成等與未到案之池中文內向解勸. 適朝鮮官人前往捉捕, 何成等向剖說, 因言語不通, 將何成等並高萬伯等一併帶去. 經該國官長將高萬伯等審照犯越之罪, 定擬發配,[39], 張泳悅、何成等一併移送通化縣審辦. 經該縣訊無重情, 分別責釋. 旋由朝鮮國王咨請禮部代奏請旨："飭下奴才慶裕詳查辦理"等因. 遵卽札飭東邊道委員會同通化縣查明詳辦. 旋據通化縣查案稟覆：

將張泳悅等傳案看押, 照會朝鮮咸鏡道, 將滋事人移送審訊, 押犯張泳悅旋卽病故. 經東邊道委員驗訊詳報. 茲據東邊道奎訓轉據該縣等將各犯提案訊明, 解由該道覆訊明確, 詳請核奏. 奴才覆加查核無異, 應卽議結.

查此案朝鮮民人高萬伯等因該國荒歉, 私越邊界, 打魚謀生, 雖訊無滋事別情, 究屬不合. 惟已由該國治罪發配, 自應解回該國, 仍照原定罪名辦理. 中國民人張泳悅因向朝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人楊姓等索欠爭鬧，致滋事端，本有應得之罪．現已在押病故，應毋庸議．何成、王計元因張泳悅與朝鮮人口角爭吵，同向解勸，致被拏獲，並無越境滋釁情事，應與爲弟代質之池中山，均勿庸議．張泳悅在押身死之處，業經該道飭委懷仁縣知縣俞承卿驗訊明確，委係病劇醫治不痊所致．看役並無凌虐情弊，並免置議．朝鮮咨文所稱匪徒王姓將鎮民金周至執鐮所傷身死，並王姓在囚病死各節，業經該道提犯嚴訊明確，均稱並無其事，應准免其查究．案已訊明，未到人證，免傳省累．張泳悅屍棺飭令浮埋，標召認領．除批飭東邊道照並咨行禮、刑二部查核外，　所有審明朝鮮國拏獲中國民人並該國人一案並無滋事起衅別情，分別議結緣由，理合恭摺具陳，伏乞皇太后、皇上聖鑒．謹奏．

光緒十三年十一月二十八日，奉硃批：

該部知道．

欽此．

11월 29일, 軍機處에서 [奉天府尹] 慶裕가[40] 올린 다음과 같은 주접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조선에서 중국 백성과 조선인을 체포한 사건을 조사해보니 말썽을 일으켜 분쟁을 연 별다른 사정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논의하여 매듭지은 경과를 삼가 공손히 주접으로 갖추어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광서 12년 4월 1일, 禮部의 자문을 받았는데,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대신 상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주접을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해당 주접은 광서 12년 3월 23일 상주하였는데, 오늘 다음과 같은 유지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

39) 정의(定擬)는 사건을 심사하여 죄를 결정하고 선고를 하는 것, 또는 판결문 초안을 말한다. 발배(發配)는 범인을 머나먼 변경 지방으로 압송하여 배치하는 것(노역형이나 유배형 등)이다.

40) 경유(庆裕. ?~1894)는 자가 난포(兰圃)로 만주정백기인(满洲正白旗人) 출신으로, 봉천부윤(奉天府尹)·조운총독(漕运总督)·열하도통(热河都统)·복주장군(福州将军) 등의 자리를 거쳤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 초록한 주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盛京禮部에서 전달해준 조선 국왕의 자문 1건을 받아 함께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奉天 通化縣의 포도병역(捕盜兵役)이 조선의 惠山鎭에 가서 그곳 관리와 함께 匪徒를 추격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주민 金周至가 匪徒 왕씨에게 상해를 입어 다음 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붙잡힌 匪徒 18명 가운데 중국인이 11명, 조선인이 7명이었으며, 현재 엄히 가두어 두고 處置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수감 중 왕씨가 병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조선 국왕이 사안의 사정을 대략 서술하여 자문으로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난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또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盛京將軍에게 유지를 내리셔서 상세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 조선 국왕이 원래 보낸 자문도 함께 초록하여 [본 봉천부윤에게] 보내왔습니다. 이에 유지에 따라 즉시 東邊道에게 지시를 내려 관원을 파견하여 通化縣 知縣과 함께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通化縣 知縣 黃毓森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조사해보니 해당 현에서 捕盜營 병사를 보내 조선인을 추격하여 체포하도록 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11년 6월에 일찍이 조선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張泳悅, 何成, 王計元, 池中文, 李士中, 王成 등 6명을 현 아문에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취조 결과 중대한 罪情이 없었기에 즉시 가볍게 질책하고 석방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惠山鎭 주민 金周至가 왕씨에게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고, 왕씨가 수감 중 병사하였다는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張泳悅, 何成, 王計元, 池中文의 형 池中山 4명은 소환하여 會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李士中, 王成, 池中文 3명은 이미 외지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朝鮮 咸鏡道에 조회를 보내 문제를 일으킨 죄인들을 현 아문으로 압송하여 심문을 기다리도록 하는 외에, 응당 먼저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 보고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뒤이어 다시 通化縣 知縣이 구류 중인 張泳悅이 광서 12년 6월 22일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미 東邊道가 懷仁縣 知縣을 보내 검시·심문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 東邊道 奎訓의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委員 懷仁縣 知縣 俞承卿과 현임 通化縣 知縣署理 張寅이 조선 함경도에서 현 아문으로 압송한 조선의 월경 죄인 高萬伯, 金巖回, 千云凡 등을 인수하였습니다. 해당 위원은 [通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縣] 知縣과 함께 이들을 끌어다가 심문한 뒤, 東邊道에게 압송하였고, 東邊道가 다시 명확하게 심문하였습니다.

[東邊道는] 이렇게 보고하면서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본 봉천부윤은 다시 그 내용을 확인하였더니, 사건의 연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高萬伯, 金巖回, 千云凡은 모두 조선 端川縣 사람이고, 何成, 王計元, 池中山과 구금 중에 병으로 사망한 張泳悅, 출두하지 않은 池中文, 李士中, 王成은 모두 通化縣 十八道溝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광서 11년 3월, 高萬伯 등은 조선에서 연이어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압록강 十九道溝에 와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도모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모일, 張泳悅이 조선인 양씨·곡씨에게 빚을 독촉하여 싸움이 일어났고, 何成과 출두하지 않은 池中文은 내심 중재하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조선 관원이 가서 체포하려고 하자 何成 등이 중재에 나섰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何成 등과 高萬伯 등이 한꺼번에 연행되었습니다. 이미 조선 지방관이 高萬伯 등을 심리하고 犯越 죄에 비추어 유배(發配)를 선고하였고, 張泳悅, 何成 등은 모두 通化縣에 이송하여 심리·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通化縣 知縣의 심문 결과 중대한 罪情이 없었기에 각각 가볍게 질책하고 석방하였습니다. 그 직후 조선 국왕이 禮部에 자문을 보내 제게 상세히 조사·처리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유지를 청하는 상주를 대신 올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지를 받들어 즉시 東邊道에게 관원을 파견하여 通化縣 知縣과 함께 조사하여 보고·처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곧이어 通化縣 知縣이 사안을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張泳悅 등을 소환하여 잡아두고, 조선 함경도에 조회를 보내 사단을 일으킨 사람들을 이송하여 심문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는데, 갇혀있던 張泳悅가 곧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미 東邊道가 관원을 보내 검시·심문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知縣 등이 범죄자들을 끌어다가 심문하여 [罪情을] 밝힌 뒤 東邊道에게 올려 보냈고, 지금 東邊道 奎訓이 재차 명확하게 심문한 다음 보고를 올려 검토하고 상주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더 검토하였으나 다름이 없었으므로, 응당 즉각 사안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 안건에서 조선 백성 高萬伯 등은 조선의 기근으로 인해 사사로이 변경을 넘어와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렸으므로, 비록 심문 결과 말썽을 일으킨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만 이미 조선에서 죄를 처벌하여 유배를 보내기로 하였으니 응당 조선으로 돌려보내 원래의 죄명에 따라 그대로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백성 張泳悅은 조선인 양씨 등에게 빚을 독촉하여 싸움이 일어나 사단을 만들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버렸으니 본래 응당 받아야 할 벌이 있으나, 이미 구금 중에 병으로 사망하였으니 응당 그 처벌을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何成, 王計元은 張泳悅이 조선인과 말다툼을 하자 함께 중재에 나서다가 연행된 사람들로 변경을 넘어 싸움을 일으킨 일이 없으니, 응당 동생을 위해 대신 잡혀있는 池中山과 함께 [처벌을]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張泳悅이 구금 중에 사망한 부분은 이미 해당 東邊道가 懷仁縣 知縣 俞承卿을 보내 검시·심문하여 명확히 하였는데, 확실히 병세가 심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낫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간수들이 학대한 폐단이 없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처벌을 논의는 면제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보낸 자문에서 匪徒 왕씨가 낫으로 惠山鎭 주민 金周至를 상해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왕씨는 구금 중에 병사하였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東邊道가 범인들을 끌어다가 엄히 심문하여 확인하였으며 모두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응당 그에 대한 추궁을 면제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사안이 이미 명확해졌으므로 출두하지 않은 증인들은 소환을 면제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張泳悅의 시신이 든 관은 가매장하여 표지를 세우고, [가족을] 불러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東邊道에게 刑部·禮部에 照會·咨文을 보내 검토해 줄 것을 청하도록 지시한 것 외에, 조선에서 체포한 중국 백성과 조선 백성을 조사해보니 말썽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킨 별다른 사정이 없어서 각각 심의하여 종결한 모든 경과를 삼가 주접을 갖추어 아뢰니, 황태후·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3년 11월 28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해당 部에 알리라.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5) 문서번호 : 2-1-3-50(1310, 2428a)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派使事).
날짜 : 光緒十三年十二月初五日(1888년 1월 1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五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報簿].
草目 : 朝鮮派使由

12월 5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報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6) 문서번호 : 2-1-3-51(1311, 2428b)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派使事).
날짜 : 光緒十三年十二月初六日(1888년 1월 1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六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報簿].
草目 : 朝鮮派使由

12월 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報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7) 문서번호 : 2-1-3-52(1312, 2429a)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派使事).
날짜 : 光緒十三年十二月初十日(1888년 1월 2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十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報簿].
草目 : 朝鮮派使由

12월 1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報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8) 문서번호 : 2-1-3-53(1313, 2429b)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派使事).
날짜 : 光緒十三年十二月十一日(1888년 1월 2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報簿].
草目 : 朝鮮派使由

12월 1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報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9) 문서번호 : 2-1-3-54(1315, 2430b)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派使事).
날짜 : 光緒十三年十二月十四日(1888년 1월 2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四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報簿].
草目 : 朝鮮派使由

12월 14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報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0) 문서번호 : 2-1-3-55(1316, 2431a)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派使事).
날짜 : 光緒十三年十二月十八日(1888년 1월 3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八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報簿].
草目 : 朝鮮派使由

12월 18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報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1) 문서번호 : 2-1-3-56(1320, 2436a)

사안 : 조선 국왕이 각국에 사신 파견을 은혜롭게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咨文을 보내왔으므로 이를 咨文으로 보냅니다(咨送朝鮮國王感謝恩准派使各國咨文).

날짜 : 光緒十四年正月二十二日(1888년 3월 4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二日, 禮部文稱：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移咨本部及總理各國事務衙門並北洋大臣咨文各一件, 係因上年該國王遣官齎奏派使西國互駐, 先行請示, 蒙恩允准, 該國王感激天恩, 咨請本部代爲轉奏. 等因. 除由本部另行辦理外, 並將分咨總理衙門咨文一件移送, 查照可也.

1월 22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盛京禮部에서 조선 국왕이 본 禮部와 總理衙門, 北洋大臣에게 각각 보내는 자문을 한 통씩 보내왔습니다. [이 咨文은] 작년 조선 국왕이 관원을 파견하여 奏稿를 가져와서 서양 각국에 사신을 보내 주재시키는 사안에 대해 우선 지시를 청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히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국왕이 황상의 은혜에 감격하여 본 禮部에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자문으로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禮部에서 별도로 처리하는 외에, 아울러 총리아문에게 보내는 자문을 이송하니, 참고하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2) 문서번호 : 2-1-3-57(1321, 2436b-2437b)

사안 : 각국으로의 사신 파견을 은혜로이 승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感激恩准派使各國).

날짜 : 光緒十四年正月二十二日(1888년 3월 4일)

발신 : 朝鮮國王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二日, 朝鮮國王文稱：

光緒十三年九月十八日, 承准貴部咨, 節該：

主客司案呈：

所有朝鮮國王遣官齎到奏本、咨文抄錄轉奏[本咨文鈔錄轉奏]一摺,[41] 於光緒十三年九月初三日具奏. 本日准軍機大臣字寄, 奉上諭：[42]

[省略]

欽此. 遵旨寄信前來. 等因. 到部. 相應恭錄諭旨, 鈔錄本部原奏, 知照朝鮮國王欽遵可也.

等因. 欽此. 竊小邦派使西國一事, 茲蒙皇上覆庇體恤之恩, 亦荷貴王大臣經畫周全之猷. 如垂鑒諒, 特允所請, 俾小邦體制、交涉務歸兩全, 用能永安其社稷, 感戴銘佩, 更何可旣. 所有未盡事宜, 叠經北洋大臣電商妥協. 當卽於九月杪飭駐美全權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全權趙臣熙後先進發, 並將分內應行各節, 恭謹遵辦. 至伏承訓謨洋洋, 敕諭申申, 實不勝銜結之忱. 除擬前頭使行奉表伸謝外, 相應先行咨照, 請煩貴王大臣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毅轉奏施行.

1월 22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3년 9월 18일, 귀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습니다.[43]

［省略］

유지에 따라 이를 寄信上諭로 禮部에 보내왔습니다. 마땅히 삼가 유지를 초록하고, 본 禮部에서 올린 奏章을 초록하고 조선 국왕에게 알려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禮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선은 서양 국가에 사신을 보내는 일에서 皇上의 보호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귀 왕대신께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마련해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고 양해해 주셔서 특별히 청한 바를 윤허하시고, 작은 나라로 하여금 體制와 交涉 두 가지 모두 온전케 하여 그 사직을 영원히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어찌 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미진한 사항은 누차 北洋大臣과 전보를 통해 적절히 상의하였습니다. 마땅히 9월 말, 駐美全權 朴定陽, 駐英·德·俄·意·法全權 趙臣熙를 차례로 출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屬邦의 본분 내에서 응당 해야 할 각 사항은 삼가 공손히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웅대한 가르침과 계획을 받고 [황제께서] 끊임없이 내려주신 勅諭를 엎드려 받았으니, 실로 은혜에 보답코자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 사신을 보내 表文을 올려 감사의 뜻을 아뢰도록 하는 것 외에, 응당 우선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왕대신께서 살펴보시고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

41) [ ] 안의 내용은 무언가의 오류로 잘못 들어간 부분으로 보인다.

42) 이하의 내용은 앞의 (62) 문서번호 : 2-1-3-37(1284, 2373a)에 실린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 "이 상유를 예부와 이홍장에게 알리고, 아울러 예부에서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여 알리도록 하라(將此諭知禮部´ 李鴻章, 並由該部傳諭朝鮮國王知之)"는 구절이 마지막에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43) 총리아문에 보내는 것이므로 '귀 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부분이 아니다. 아마 예부로 보내는 자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닌가 싶다. 바로 뒤의 '主客司案呈'은 그 점을 확실하게 확인하여 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3) 문서번호 : 2-1-3-58(1323, 2438b)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遣使事).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初一日(1888년 3월 13일)

발신 : 出使大臣 張蔭桓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一日, 出使大臣張蔭桓函[詳見美股出使檔].

草目 : 朝鮮遣使各節由

2월 1일, 出使大臣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美股의 出使檔에 보인다].[44]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내용.

44) 미고(美股. 美國股)는 주로 미국 및 독일·페루·이탈리아·스웨덴·노르웨이·벨기에·덴마크·포르투갈 관련 사무 및 해방(海防), 중국인 화교노동자 등의 사무를 맡은 총리아문의 한 부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4) 문서번호 : 2-1-3-59(1324, 2439a-2440b)

사안 :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屬邦體制를 따르지 않고 張蔭桓 大臣을 먼저 방문하지 않은 일로 袁世凱를 힐책하였습니다(詰袁韓駐美朴定陽, 未遵屬邦體制, 先晤張大臣事).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 정부 및 外署에 보낸 조회(袁世凱致韓政府及外署照會)」: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에게 體制를 준수하여 먼저 中國出使大臣을 방문하고 모든 것을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속히 지시하십시오(速飭赴美朴使, 遵守體制, 先晤中國出使大臣, 商辦一切).

2.「조선 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조회(韓政府覆袁世凱照會)」: 朴定陽 公使가 體制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실로 조선 정부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전보를 보내 이전의 논의를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朴使未遵體制事, 實非韓政府意旨. 已電飭遵照前議辦理).

3.「조선 外署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조회(韓外署覆袁世凱照會)」: 이미 駐美公使 朴定陽에게 이전에 논의한 중국과 조선의 외국 주재 사신이 응당 준수해야 하는 체제 관련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일 처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已飭駐美朴使, 遵照前議, 中·韓駐外使節應遵體制三端行事).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初六日(1888년 3월 1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二月初六日，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十二月初一日戌刻，奉憲電開示：

駐美張大臣電：

韓使廿六到，朴卽照會外部，准照覆朔日接見. 韓使託病未來. 頃派員詰問，只允銜帖、呈文、硃筆照會三事. 另約三端，據稱，知有來電，惟政府須與袁妥議，未奉明文云.

卽催韓政府速電朴使遵照前議，准三端辦理.

等因. 奉此. 當卽遵照照會朝鮮政府、外務衙門，迅卽發電該使遵照前議三端辦理. 嗣於初五日先後接准韓政府、外衙門照覆：

已發電該使遵辦.

等因. 業經擇要電稟憲台鑒核在案. 茲將卑府遵電與韓政府、外衙門往來各照會繕具清摺，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韓赴美朴使遵章與韓政府、外署往來照會繕呈憲鑒.

1.「照會韓政府、外署」

爲照會事.

竊照本日戌刻，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

駐美張大臣電，韓使二十六到，朴卽照會外部，准照覆朔日接見. 韓使託病未來. 頃派員詰問，只允銜帖、呈文、硃筆照會三事. 另約三端，據稱，知有來電，惟政府須與袁妥議，未奉明文云. 卽催韓政府速電朴使遵照前議，准三端辦理.

等因. 奉此. 查前此議准三端，曾准外務衙門、貴衙門九月二十七日照覆內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已將電復. 各等因. 轉稟國王現行照辦.
等語. 本總理業經轉詳北洋大臣各在案. 何以該使有並未奉明文等語, 殊爲詫異. 極應照會貴政府、衙門, 迅卽發電派赴美國全權朴, 飭卽遵照前議准三端辦理, 並望卽刻見復, 以便轉報. 須至照會者.
十二月初一日

2.「韓政府照覆」
爲照復事.
照得本月初二日, 接准貴總理照會內開云云.
等因. 准此. 查前此議准三端, 曾經飭知派赴美國全權朴遵照辦理. 未知該使到美何不詳愼, 致多枝節. 適聆之下, 寔所不安. 已卽發電赴美全權朴, 飭卽遵照前議辦理. 爲此相應照覆, 請煩查照. 須至照覆者.
十二月初五日.

3.「韓外署照覆」
爲照覆事.
照得本月初二日, 接准貴總理照會內開云云.
等因. 前來. 准此. 查業將前議准三端, 當經飭知派赴美國全權朴欽遵辦理在案. 未審該使初到美國, 何不遵照前議, 准第一端先行辦理, 致令詰問. 本督辦聆悉之下, 寔深悚仄. 卽將來文各節, 茲於本月初三日, 發電駐美全權朴, 飭遵前此三端辦理. 爲此備文照覆, 請煩貴總理查照, 將此轉達北洋大臣爲要. 須至照覆者.
十二月初五日.

2월 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가 12월 1일 戌刻 李 中堂大人께서 電報로 보낸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국 주재 흠차대신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電報를 보냈다.

朴定陽 公使는 26일 도착하였고, 그는 즉시 [미국] 外部에 조회를 보냈으며, 초하루에 접견하겠다는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환을 이유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사람을 보내 힐문하였더니 단지 銜帖, 呈文, 硃筆照會 세 가지 사항만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별도로 약정한 세 가지 항목['另約三端']에 대해서는 전보가 온 것은 알고 있으며, [조선] 정부가 반드시 袁世凱와 적절히 논의하였을 터이지만, [그에 대한] 정식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시 조선 정부에 연락하여 속히 朴定陽 公使에게 전보를 보내 이전의 논의에 따라 세 가지 항목을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하라고 독촉하라.

[袁世凱는] 응당 즉시 지시에 따라 조선 정부와 外務衙門에 照會를 보내 해당 公使에게 신속히 전보를 보내 이전에 논의하였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뒤이어 5일, 조선 정부와 外務衙門으로부터 차례대로 다음과 같은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보를 보내 해당 공사에게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그 요점을 추려 전보로써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보 지시에 따라 조선 정부, 外務衙門과 주고받은 照會를 첨부문서로 갖추어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니] 응당 귀 아문에 자문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 : 삼가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제도를 준수하는 일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 外署와 주고받은 照會를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조선 정부, 外署에 보낸 照會」

조회를 보냅니다.

삼가 오늘 戌刻 李 中堂大人께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미국 주재 흠차대신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電報를 보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朴定陽 公使는 26일 도착하였고, 그는 즉시 [미국] 外部에 조회를 보냈으며, 초하루에 접견하겠다는 답장 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환을 이유로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사람을 보내 힐문하였더니 단지 銜帖, 呈文, 硃筆照會 세 가지 사항만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별도로 약정한 세 가지 항목['另約三端']에 대해서는 전보가 온 것은 알고 있으며, [조선] 정부가 반드시 袁世凱와 적절히 논의하였을 터이지만, [그에 대한] 정식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시 조선 정부에 연락하여 속히 朴定陽 公使에게 전보를 보내 이전의 논의에 따라 세 가지 항목을 따라 일을 처리하게 하라고 독촉하라.

살펴보건대, 이전에 논의하여 승인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外務衙門과 귀 아문에서는 일찍이 9월 27일 다음과 같이 답장 조회를 보냈습니다.

이미 전보를 보내 해당 공사에게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이를 北洋大臣께 보고하였습니다. 어찌 해당 공사가 정식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는지 심히 이상합니다. 응당 신속하게 귀 정부, 外務衙門에 조회를 보내니 속히 駐美全權 朴定陽에게 전보를 보내 이전에 논의하여 승인한 세 가지 항목을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즉시 답장을 보내 주셔서 [북양대신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1일.

2.「조선 정부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2일, 귀 총리께서 보내신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논의하여 승인한 세 항목('영약삼단')에 대해서는 일찍이 駐美全權 朴定陽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朴定陽 공사가 미국에 도착한 후에 어찌하여 신중하지 못하게 불필요한 말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불안합니다. 이미 즉시 駐美全權 朴定陽에게 전보를 보내 이전 논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응당 답장 조회를 보내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12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조선 外署의 답장 조회」

답장 조회를 보냅니다.

이번 달 2일, 귀 총리께서 보내신 조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논의하여 승인한 세 가지 항목은 이미 美國全權 朴定陽에게 알리고 삼가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알린 바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처음 미국에 도착한 뒤 어째서 이전에 논의하여 승인한 첫 번째 항목을 먼저 처리하지 않아서 詰問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外部督辦은 이에 대해 듣자마자 정말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즉시 보내주신 조회의 각 내용을 이번 달 3일 駐美全權 朴定陽에게 전보로 알리고 이전에 논의한 세 가지 항목을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 조회를 보내오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살펴보시고 이를 北洋大臣께 대신 보고해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12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5) 문서번호 : 2-1-3-60(1325, 2441a-2444a)

사안 :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出使大臣 張蔭桓을 먼저 방문해야 하는 體制를 따르지 않아, 조선 外署를 견책하였습니다(駐美韓使朴定陽, 未遵體制, 先晤出使大臣張蔭桓, 已詰責韓外署).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 外署에 보낸 서신(袁世凱致韓外署函)」: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張蔭桓 大臣을 먼저 방문해야 하는 體制를 따르지 않아 견책합니다(詰責赴美朴使, 未遵體制, 先晤張大臣).

2.「조선 정부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서신(韓政府覆袁世凱函)」: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體制를 따르지 않은 것은 실로 본 정부의 뜻이 아니니 마땅히 처벌을 논의하여 견책하겠습니다(赴美朴使, 未遵體制, 實非本政府之意, 當議處施譴).

3.「조선 外署에서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서신(韓外署覆袁世凱函)」: 朴定陽 公使가 답장 전보를 보내 본 정부가 실로 일찍이 體制를 따르라고 지시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니,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조사하여 견책하겠습니다(朴使覆電, 不明本政府實曾飭遵體制, 俟返命時, 查核施譴).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初六日(1888년 3월 1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竊照十二月初二日午刻，接奉電諭開示：

駐美張大臣來電：

頃晤外部，為韓使先容，外部謂：

韓為中屬，美與立約，亦承中意，務推愛相待. 行告田使達署云,[45] 韓使明日往謁，商遞國書. 當免枘鑿,[46] 我盡我道，原非市恩.

該使迄未來見，殊驕. 推此以應外交，恐誤. 乞電諭韓廷並達署.

等語. 韓王前咨請代奏，詞意恭順，何朴使陽奉陰違，望詰責.

等因. 奉此. 當即遵照繕函致韓政府、外衙門逐條詰責. 嗣於二十五日，先後接到韓政府、外衙門復函二件. 除隨時擇要電稟憲台鑒核外，茲將卑府與韓政府、外衙門往來各函繕具清摺，恭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詰責韓赴美朴使，與韓政府、外署往來各函，繕呈憲鑒.

1.「致韓政府、外署函」

敬啟者：

昨夜，以赴美全權違背定章事，奉傳相電開各節，當已即時備文照會貴政府、衙門各在案. 茲於本日午後，又奉傳相電開：

張大臣二十九電：

頃晤外部，為韓使先容，外部謂：“韓為中屬，美與立約，亦承中意，務推愛相待. 行告田使達署云，韓使明日往謁，商遞國書. 當免枘鑿，我盡我道，原非市恩.”該使迄未來見，殊驕. 推此以應外交，恐誤. 乞電諭韓廷並達署.

等語. 韓王前咨請代奏，詞意恭順，何朴使陽奉陰違，望詰責.

等因. 奉此. 查傳相遵旨妥籌三端，第一款為韓使初至各國，應先赴中國使館，再報請由中國欽差挈同赴外部，此後即不拘定. 各等因. 當即照會貴政府、衙門，准九月二十七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照覆內開：“已轉稟國王，現行照辦.” 復查十月二十日國王咨謝傅相文內亦云：“已飭朴定陽、趙臣熙，遵行是傅相奉旨妥籌三端.” 該使已聞之熟而奉之久矣. 乃迭奉傅相據張大臣來電云：“赴美使臣朴至美，並不遵章先赴中國使館，而以託病為辭，即自請美外部定期接見. 又不報請中國欽差挈同赴外部，竟以未奉明文為託辭.” 設該使實屬有病，何以能定期接見美外部? 設該使實未奉貴政府明文，貴政府又豈有虛應中朝而實相賺之理? 設該使已奉明文私自違背，則不但敢抗貴政府命令，竟亦不遵中朝定章? 其與國王所咨“已飭遵行,” 外務署貴衙門所覆“已稟國王現行照辦”之文，毋乃大相徑庭乎! 反覆揆度，殊不可解. 誠如張大臣所電，推此以應外交，恐將有誤者也.

且查傅相於九月二十四日來電詳述妥籌三端，本總理即於本日遵飭照會貴衙門，旋准外務署貴衙門二十七日照覆：“已稟飭照辦.” 復查國王咨謝文內稱：“九月二十六日據外督辦啓稱各節，即奉飭覆，而赴美使朴於十月初二日始由仁川開行”. 計傅相來電至該使首途之時，已經八日之久，貴政府尚得曰：“未及飭遵”乎? 該使亦得曰：“未奉明文”乎? 至該使向張大臣稱謂：“知有來電,” 誠屬寔情，乃曰：“未奉明文,” 何自相矛盾之甚耶! 又云：“須政府與袁妥議,” 現時經兩月之久，本總理未聞貴政府有何相議. 且前准外務署、貴衙門照覆內開：“已稟飭照辦,” 尚有何妥議乎? 尤見該使虛捏欺飾之極. 且張大臣所稱：“迄未來見，殊驕.” 似此尤與國王九月二十三日咨請內稱：“飭該使惟事恭謹”之意，大相背謬.

該使想由貴政府素所深信，故以全權相委，而舉動若此，寔為意料所不及也. 特將奉傅相電開，國王前咨請代奏，詞意恭順，何朴使陽奉陰違等諭，及本總理謹遵飭逐條詰責各節，肅函布聞，請即從速示覆，以便轉報. 即頌台安.

十二月初二日.

2.「韓政府覆函」

敬覆者：

前承函示，以赴美全權朴違章一事，奉傅相第二次來電詰問各節，均已聆悉. 查前議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端，已於赴美使臣起行之前，飭令遵辦，業經國王咨請傅相轉奏在案．未知該使至美為何託詞不遵，致此詰問，實属驚怪．且念設遇難處，尤當先謁張大臣，商請妥協，乃竟病未往，言詞支吾，滋彤謬妄，甚非國王前"飭惟事恭謹"之本意也．

國王聞之惋惜，深為不安．故政府實憂無以自暴以解中朝之惑也．所有該使違章之罪，亟應議處，而現在本人出疆，無以施譴，擬俟調回到國，再行議處，以重體制為要．尚求將此事情，委曲轉報，感幸不盡．肅此佈復．並頌勛祺．

十二月二十五日．

3.「韓外署覆函」

敬覆者：

曩奉函示，逐條詰責等語，擎讀在案．第據該使朴覆電，未能的寔明晰．未審該使朴至美後意見如何而致此．然託病未來，已難自速違章．況謂奉明文，豈敝政府未嘗飭遵耶？是尤無以自解也．我國王殿下，目聞此報，殊為震怒．本督辦亦不勝驚惑之至．

總之，該使朴謬妄之實，涯涘自見．容俟該反命之日，應由敝政府再行查核施譴．尚祈貴總理，特賜涵諒為感．肅此奉佈．再頌升安．

十二月二十五日．

2월 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12월 2일 午刻 李 中堂大人께서 電報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습니다.

미국 주재 흠차대신 張蔭桓[47]이 다음과 같은 電報를 보냈다.

---

45) 덴비(Charles Harvey Denby, 1830~1904, 田貝)는 1885~1898년까지 미국의 주중국 공사(駐中公使)로 있었다.

46) 枘鑿는 '方枘圓鑿'의 약칭으로, 모난 자루와 둥근 구멍을 가리킨다. 이는 서로 맞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사물이나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47) 장음환(長蔭桓, 1837~1900)은 字가 호만(皓鬘), 號는 초야(樵野) 또는 홍면거사(紅棉居士)로, 광동성(廣東省) 남해현(南海县) 출신이다. 첫 번째로 참가한 현시(县试)에서 낙방한 후 다시 과거시험을 보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방금 (미국) 外部와 만나 조선 公使를 위해 미리 잘 봐 달라고 부탁하였더니, (미국) 外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屬邦으로서,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중국의 의사를 따랐으며, 힘써 소중히 상대하였습니다. 덴비 公使로 하여금, 總理衙門에 가서 조선 公使가 내일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여 國書를 전달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의사가) 서로 맞지 않을 것을 면하기 위해 제 할 도리를 다한 것일 뿐, 인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朴定陽) 公使는 아직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무례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에 응한다면 잘못될까 우려됩니다. 바라건대 조선 정부와 外署에 전보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鴻章이 보기에) 조선 국왕이 전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는, 그 내용이 공순하였는데, 어찌 朴定陽 公使가 겉으로는 받들면서 속으로는 이를 어기는 것인지, 견책하기를 바란다.

(袁世凱는 이러한 李鴻章의 지시를 받아) 응당 이에 따라 조선 정부와 外署에 서신을 보내 조목마다 견책하였습니다. 이후 25일에, 전후로 조선 정부와 外署의 답장 서신 2건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요점을 추려 전보로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하시도록 하는 것 외에, 지금 제가 조선 정부 및 外署와 주고받은 각 서신을 갖추어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李鴻章은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니) 응당 귀 總理衙門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않고, 외국어와 양무(洋务)를 연구하면서 다른 경로로 관계에 진출하였다. 즉 21세에 연납(捐納)으로 지현관함(知县官衔)을 사고 산동순무(山东巡抚)의 막우(幕友)로 있으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도원(道员)으로 승진하고 후에는 안휘안찰사(安徽按察使)까지 승진하였다. 1884년 서태후의 인정을 받아 3품 경함(三品卿衔)을 제수받고 총리아문(总理各国事务衙门)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에는 미국(美国)·스페인(日斯巴尼亚. 西班牙)·페루(秘鲁) 3개국 출사대신으로 특파되어, 워싱턴에서 3년을 머물렀다. 귀국 후에는 총리아문 대신 겸 호부시랑(户部侍郎)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줄곧 외교와 재정 양 방면에서 중임을 맡으면서 청조의 중요 대신의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무술변법 당시 光緒帝의 총애를 받아 개혁을 추진하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光緒帝의 회견을 이끌었다. 서태후가 정변(政變)을 발동하고 훈정(訓政)을 실시하면서 신강(新疆)으로 유배되었으며, 8개국 연합군의 침략 직전 사형을 당해 1900년 6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주미 사신으로 있는 동안의 기록을『三洲日记』로 남겼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첨부문서 : 삼가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와 조선 정부 및 外署를 견책하며 주고받은 각 서신을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조선 정부와 外署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어젯밤, 미국에 간 전권대신이 章程을 어긴 일로 李 中堂大人의 전보를 받고 즉시 문서를 갖추어 貴 정부와 外署에 照會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다시 李 中堂大人의 전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張蔭桓 大臣이 11월 29일에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방금 (미국) 外部와 만나 조선 公使를 위해 미리 잘 봐 달라고 부탁하자 (미국) 外部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屬邦으로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중국의 의사를 따랐으며, 힘써 소중히 상대하였습니다. 덴비 公使로 하여금 總理衙門에 가서 조선 公使가 내일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여 國書를 전달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양국의 의사가) 서로 맞지 않을 것을 면하기 위해 제 할 도리를 다한 것일 뿐, 인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朴定陽) 公使는 아직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으니, 이는 매우 무례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에 응한다면 잘못될까 우려됩니다. 바라건대 조선 정부와 外署에 전보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鴻章이 보기에) 조선 국왕이 전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는, 그 내용이 공순하였는데, 어찌 朴定陽 公使는 겉으로는 받들면서 속으로는 이를 어기는 것인지, 견책하기를 바란다.

(袁世凱가 이러한 李鴻章의 지시를 받아) 李 中堂大人이 諭旨를 받아 만든 '另約三端'을[48]

---

48) '另約三端'은 앞 책에서도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설명한다. 그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조선 사신은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 2. 朝會나 공식 연회 등 음식과 술로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있으면 조선 사신은 응당 중국 欽差大臣의 뒤를 따라야 한다. 3. 交涉과 관련된 큰 사안으로 관계가 긴요한 경우 조선 사신은 응당 먼저 중국 欽差大臣과 비밀리에 상의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검토해보니, 첫 번째 항목이 "조선 사신이 각국에 처음 도착하였을 때, 응당 먼저 中國 使館에 가서 보고하고 중국 欽差大臣(즉 미국주재 중국공사)이 인솔하여 그 나라의 外部에 함께 가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즉시 貴 아문과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냈었고, 9월 27일에 "이미 국왕께 보고를 드렸고, 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10월 20일 국왕께서 李 中堂大人께 감사를 표하며 보낸 咨文에도 또한 "이미 朴定陽과 趙臣熙에게 지시하여, 李 中堂大人이 諭旨를 받아 만든 '另約三端'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즉 해당 사신들은 이미 (이에 대해) 들은 지 익숙하며 받든 지 오래된 것입니다.

연이어 李 中堂大人이 보낸 전보를 받았는데, 張蔭桓 대신이 전보를 보내 말하길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미국에 도착한 뒤 章程에 따라 먼저 중국 使館에 가지 않고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었으며, 스스로 미국 外部에 청하여 기일을 정해 접견하자고 하였다. 고 합니다. 또 중국 欽差大臣의 인솔 아래 미국 外部에 같이 갈 것을 보고를 통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국 "정식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였다고 합니다. 설령 해당 公使가 실제로 병이 났다고 한다면, 어찌 기일을 정해 미국 外部를 접견할 수 있습니까? 설령 해당 公使가 실제로 貴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貴 정부는 또한 어찌 중국 조정에 거짓으로 대응하면서 실제로는 서로 속일 수 있습니까? 설령 해당 公使가 이미 정식 공문을 받았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면, 이는 貴 정부의 명령에 감히 대항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중국 조정이 정한 章程도 따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는 국왕께서 咨文을 보내 "이미 그에 따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貴 外署에서 "국왕께 보고하여 현재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답장하였던 문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거듭 헤아려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張蔭桓 대신이 전보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외교에 응한다면 잘못될까 두렵습니다.

또 검토해보니, 李 中堂大人이 9월 24일 전보를 보내 '另約三端'을 만든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고, 본 총리는 그날 바로 지시에 따라 貴 아문에 照會를 보냈으며, 이어 貴 외무아문으로부터 곧장 27일에 "이미 보고를 올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는 답장

검토·지시를 받는다. 그런데 朴定陽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한 다음 이 중 첫 번째 사항을 어기고 주미 청국 공사 張蔭桓의 三端 준수 요청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미국 국무성과 클리블랜드 대통령에게 國書를 전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照會를 받았습니다. 다시 검토해보니 조선 국왕이 보낸 감사의 咨文에, “9월 26일 外署 督辦의 狀啓를 받아 즉시 (外署로 하여금 袁世凱에게) 답장을 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는 10월 2일에 인천에서 출발하였습니다”라고 답장하였습니다.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보내온 후로 해당 公使가 출발하기까지의 시간을 헤아려보면 이미 8일이나 지났음에도, 貴 정부는 여전히 “미처 따르도록 지시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당 公使 또한 어찌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해당 公使가 張蔭桓 대신에게 이르길, “전보가 온 것은 알고 있다”고 하였는데, 진실로 이러하다면 그런데도 “아직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스스로 아주 큰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드시 조선 정부가 袁總理와 적절히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현재 2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본 총리는 貴 정부가 어떻게 서로 논의하려는지 아직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또 전에 貴 外署가 “이미 보고를 올려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고 한 답장 照會를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적절히 논의할 무엇이 있습니까? 이는 해당 公使가 거짓으로 꾸며 대려 한 것이 매우 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張蔭桓 大臣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니, 매우 무례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특히나 조선 국왕이 9월 23일 咨文을 보내, 해당 公使로 하여금 “오로지 삼가 정중히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 내용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해당 公使는 貴 정부가 평소에 깊이 신뢰하여 全權을 위임한 것이겠지만, 행동거지가 이러하리라고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보내, “조선 국왕이 전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청하였을 때는 그 내용이 공순하였는데, 어찌 朴定陽 公使는 겉으로는 받들면서 속으로는 이를 어기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본 총리가 삼가 이에 따라 조목마다 견책하라고 하시어, 이렇게 서신을 갖추어 알리는 바이니, 청컨대 조속히 답장을 보내주시어 (李 中堂大人께) 보고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12월 2일.

2. 「조선 정부의 답장 서신」

삼가 답장을 드립니다.

미국에 간 全權大臣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일로 李 中堂大人이 두 번째 전보를 보내 힐문하도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사안에 대해, (전에 보내주신 서신을 통해)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였던 '另約三端'은, 미국에 간 사신이 출발하기 전에,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을 (해당 사신에게) 지시하였던 것으로서, 이미 국왕께서 李 中堂大人께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신이 미국에 도착한 후 어찌하여 핑계를 대며 따르지 않아 이러한 힐문에까지 이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생각건대 설령 곤란한 경우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오히려 응당 먼저 張蔭桓 대신을 찾아뵈어, 상의하여 적절한 협조를 요청해야 하거늘, 병이 나서 가지 못하였다고 얼버무리고 있으니 더더욱 사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국왕께서 전에 "삼가 정중히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신 뜻과도 심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국왕께서 이를 듣고 안타까워하시며, 심히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이에 정부는 진실로 우려하면서, 중국 조정의 의혹을 푸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사신이 章程을 어긴 죄는 시급히 응당 논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 본인이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 있어 견책을 실행할 수 없으니, 본국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논의·처벌함으로써 체제를 중히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소상하게 보고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이상과 같이 답장을 보냅니다.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12월 25일.

3. 「조선 外署의 답장 서신」

삼가 답장합니다.

전에 서신을 통해 조목마다 견책하신 내용은 삼가 잘 읽었습니다. 다만 해당 公使 朴定陽이 답장으로 보낸 전보를 받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명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해당 公使 朴定陽이 미국에 간 후 어떤 의견이 있어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을 핑계로 찾아뵙지 않은 것은, 이미 章程을 어겨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물며 정식 공문을 받고 운운하였는데, 어찌 우리 정부가 아직 ('另約三端'을) 따를 것을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는 특히나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왕 전하께서는 이 보고를 들으시고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본 督辦 역시 놀랍고 당혹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해당 公使 朴定陽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공사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응당 우리 정부가 다시 검토하여 견책하도록 하겠습니다. 貴 총리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려 이를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삼가 이상과 같이 답장을 드립니다. 재차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6) 문서번호 : 2-1-3-61 (1326, 2444b-2449b)

사안 : 조선의 出使五國大臣 趙臣熙에게 엄격히 지시하여, 體制를 따라 각 都城에 도착하면 반드시 먼저 중국 出使大臣을 만나 상의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嚴飭韓出使五國趙臣熙, 遵守體制, 到各都須先見中國出使大臣商辦各事).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袁世凱致韓政府照會)」: 조속히 出使五國大臣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體制를 삼가 따라 다시는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십시오(速電飭出使五國趙臣熙, 恪遵體制以免再違定章).

2.「조선 정부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韓政府覆袁世凱照會)」: 즉시 出使五國參贊官을 추가로 파견하여 趙臣熙 大臣에게 體制를 삼가 따를 것을 거듭하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卽令添派出使五國參贊官, 申告趙使恪遵體制).

3.「袁世凱가 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袁世凱致韓外署照會)」: 응당 조속히 出使五國大臣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體制를 삼가 따라 各國 都城에 도착하면 먼저 중국 出使大臣을 만나 모든 일을 상의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應速電飭出使五國趙臣熙恪遵體制, 至各國都城先晤中國出使大臣商辦一切).

4.「조선 外署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韓外署覆袁世凱照會)」: 中·韓 使節體制에 대해서는 이미 參贊官 李容泰에게 지시하여, 趙臣熙에게 제대로 알려 삼가 따르고 어긋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中·韓使體制事, 已飭參贊官李容泰申告趙臣熙恪遵毋違).

5.「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袁世凱致韓政府照會)」: 中·韓 使節體制에 대해서는 응당 趙臣熙 사신에게 지시하여 제대로 따름으로써 章程을 중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中·韓使節體制事, 應札飭趙使詳悉遵照以重定章).

6.「조선 정부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韓政府覆袁世凱照會)」: 즉시 趙臣熙 사신에게 지시를 보내, 삼가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卽行札趙使, 恪遵前議辦理).

7.「袁世凱가 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袁世凱致韓外署照會)」: 중국과 조선의 使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體制에 대해서는, 응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趙臣熙 大臣에게 삼가 따를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中·韓使節體制事, 應附參贊官前往之便, 札飭趙使恪遵).

8.「조선 外署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韓外署覆袁世凱照會)」: 전에 논의한 '另約三端'에 대해 상세하고 빠짐없이 趙臣熙 大臣에게 지시하여 삼가 따르게 하였습니다(卽將前議三端詳悉札飭趙使恪遵).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初六日(1888년 3월 1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十二月初五日, 奉憲台電諭內開：

議定三端國王既咨請轉奏, 使臣必應遵辦. 應送文韓政府, 速電五國使到彼時都時先見中國欽差商辦.

等因. 奉此. 當即遵照照會韓政府外衙門. 去後, 嗣接照覆內開：

赴五國趙使尚在香港, 現派參贊一員赶往趙使所留之地. 會同前赴各國, 即將前議面飭該參贊申告趙使遵照.

等因. 卑府當即以該朴使曾奉明文, 尚爾託詞抗違, 茲令參贊申告, 恐仍留為該趙使託詞之地. 除已擇要電稟憲鑒外, 復行照駁韓政府外衙門, 請附該參贊前往之便, 札飭該趙使詳悉遵照. 嗣於本月十四日先後接准韓政府外衙門照覆即行札飭. 等因. 除已隨時擇要電稟憲台鑒核外, 茲將卑府與韓政府外衙門往來各照會, 繕具清摺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送文韓政府、外署飭赴五國趙使遵照三端往來照會, 繕呈憲鑒.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照會韓政府」

為照會事.

照得本月初五, 接准貴政府照覆內開：

照得本月初二日, 接准貴總理照會內開：

本日戌刻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 云云.

等因. 准此. 查前此議准三端, 曾經飭知派赴美國全權朴遵照辦理. 未知該使到美何不詳慎致多枝節. 適聆之下, 實所不安. 已即發電赴美全權朴, 飭即遵照前議辦理.

等因. 准此. 查前屆議准三端, 已由國王咨請文華殿大學士李轉奏核定各在案. 該使等自應恪遵辦理以符定章, 不意該使竟將奏定章程及貴政府飭遵各節公然抗違, 殊属任性妄為, 不識大體, 並負貴政府委任全權之意, 實不勝惋惜疑訝之至. 惟該使既已違背定章, 現在業經貴政府發電飭遵. 而赴英德俄意法全權趙, 亦繼該使朴發往泰西, 應慮該使趙或亦另有見聞. 復違章定, 尤属不成事體. 即應備文照會貴政府, 請煩從速電飭該使趙復詳查照恪遵三端, 先後至各國京都時, 即先往中國欽差大臣處商辦一切, 免致又有歧異而違定章. 望即見覆施行. 須至照會者.

十二月初六日.

2.「韓政府照覆」

為照覆事.

照得本月初六, 接准貴總理照會內開, 云云. 等因. 准此. 查本國赴英德俄意法全權趙尚在道次, 而現有參贊官一員擬將赶往趙使所留之地, 會同前赴泰西各國. 當即將依前議面飭該參贊官, 令其申告趙使遵照辦理可也. 相應照覆貴總理查照. 為此照覆. 須至照覆者.

十二月初八日.

3.「照會韓外署」

為照會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照得本月初五日，接准貴督辦照覆內開：

本月初二日戌刻，奉文華殿大學士李電開，駐美張大臣電韓使云云．等因．前來．准此．查業將前議准三端，當經飭知派赴美國全權朴欽遵辦理在案．未審該使初到美國，何不遵照前議准第一端先行辦理，致令詰問．本督辦聆悉之下，實深悚仄．即將來文各節，茲於本月初三日發電駐美全權朴，飭遵前此三端辦理．為此備文照覆，請煩貴總理查照，將此轉達北洋大臣．

等因．准此．查前居議准三端，已由國王咨請文華殿大學士李轉奏核定各在案．該使等自應恪遵辦理以符定章，不意該使竟將奏定章程及貴衙門飭遵各節，公然抗違，殊屬任性妄為，不識大體，並負貴政府委任全權之意，實不勝惋惜疑訝之至．惟該使既已違背定章，現在業經貴衙門發電飭遵．而赴英德俄意法全權趙，亦繼該使朴發往泰西，應慮該使趙或亦另有見聞．復違定章，尤屬不成事體．極應備文照會貴督辦，請煩從速電飭該使趙復詳查照恪遵三端，先後至各國京都時，即先往中國欽差大臣處商辦一切，免致又有歧異而違定章．望即見覆施行．須至照會者．

十二月初五日．

4.「韓外署照覆」

為照覆事．

照得本月初五，接准貴總理來文內開，云云．等因．前來．准此．查駐紮五國全權趙方留香港，須參贊官李容泰至同往各國,[49] 該參贊行將首途．茲將所有定章各節，面飭一切，轉詳全權趙恪遵毋違在案．該全權趙自應初到各國，遵照三端辦理．為此備文照覆，請煩貴總理查照可也．須至照覆者．

十二月初九日．

5.「照會韓政府」

為照會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照得本月初八日，接准貴政府照覆內開：

本月初六，接准貴總理照會內開，云云．各等情．准此．查本國赴英德俄意法全權趙尚在道次，而現有參贊官一員擬將趕往趙使所留之地，會同前赴泰西各國．當即將依前議面飭該參贊官，令其申告趙使遵照辦理可也．相應照覆查照．

等因．准此．查赴英德俄意法五國全權趙尚在道次，現有參贊官一員擬將赶往趙使所留之地，會同前赴泰西各國，自無庸從速電飭該使趙復詳查照．惟該參贊未行之前，貴政府應附該參贊前往之便，札飭該使詳悉遵照，方合事體而重要公．乃經本總理以文牘相煩，而貴政府始僅依前議面飭該參贊官，令其申告，殊非慎重緊要公事之道，尤非慎重奏定章程之意．本總理礙難馮信．且該朴使已奉有貴政府明文，尚託詞於未奉明文任意抗違．況以參贊官口舌申告，適足以資該使趙托詞抗違之地乎？由此觀之，或者該使朴所稱："未奉明文"者，果亦有因耶！貴政府縱有此等政令，實非本總理所敢聞，即希貴政府附該參贊官前往之便，札飭該使趙詳悉遵照以符體制而全定章．相應照會貴政府查照．望切即覆施行．須至照會者．

十二月初八日．

6.「韓政府照覆」

為照覆事．

照得本月初八日，接准貴總理照會內開，云云．等因．准此．當即於參贊官前往之便，札飭五國全權趙著令恪遵前議辦理可也．相應照覆，貴總理查照．須至照復者．

十二月十四日．

7.「照會韓外署」

為照會事．

照得本月初九日，接准貴督辦照覆內開：

本月初五日，接准貴總理來文內開，云云．等因前來．准此．查駐紮五國全權趙，方留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港, 須參贊官李容泰至同往各國, 該參贊行將首途. 茲將所有定章各節, 面飭一切轉詳全權趙恪遵毋違在案. 該全權趙自應初到各國, 遵照三端辦理. 為此, 備文照覆, 請煩貴總理查照.

等因. 准此. 查赴英德俄意法五國全權趙, 芳留香港, 須參贊官李容泰至同往各國, 自無庸從速電飭該使趙復詳查照. 惟該參贊未行之前, 貴督辦應附該參贊前往之便, 札飭該使詳悉遵照, 方合事體而重要公. 乃經本總理以文牘相煩, 而貴衙門始僅依前議面飭該參贊官令其申告, 殊非慎重緊要公事之道, 尤非慎重奏定章程之意. 本總理礙難憑信. 且該使朴已奉有貴衙門明文, 尚託詞於"未奉明文", 任意抗違. 況以參贊官口舌申告, 適足以資該使趙託詞抗違之地乎? 由此觀之, 或者該使朴所稱："未奉明文"者, 果亦有因耶! 貴衙門縱有此等政令, 實非本總理所敢聞, 即希貴衙門附該參贊官前往之便, 札飭該使趙詳悉遵照, 以符體制而全定章. 相應照會貴督辦查照. 望切即覆施行. 須至照會者.

十二月初九日.

8.「韓外署照覆」

為照覆事.

照得本月十三日, 接准貴總理來文內開, 云云. 等因. 前來. 准此. 本督辦當將前議三端詳悉札飭, 附該參贊官前往之便, 飭即帶去確文該全權趙, 免致口舌轉詳以資托詞之地. 令其遵照辦理, 以符體制而全定章. 相應照覆貴總理, 請煩查照可也. 須至照覆者.

十二月十四日.

2월 6일, 북양대신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49) 이용태(李容泰. 1854~1922)는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남양부사, 장흥부사, 고부군 안핵사, 의정부 참찬, 평리원 재판장, 특명전권공사, 중추원 찬의 등을 지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비서감경, 경효전제조, 원수부찬모관 등을 역임한 관료다. 1910년에는 한일합병에 기여한 공으로 남작 작위를 받았으며 1922년 7월 사망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가 12월 5일 李 中堂大人께서 電報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에 대해서는 조선 국왕이 이미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사신은 반드시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응당 조선 정부에 문서를 보내, 조속히 5개국에 전보를 보내 그곳에 도착하면 먼저 중국 欽差大臣을 만나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하라.

마땅히 이에 따라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낸 후, 이어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5개국에 파견한 趙臣熙 사신이 아직 香港에 있어서, 현재 參贊 한 명을 파견하여 趙臣熙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속히 가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各國으로 가서, 전에 논의한 것에 대해 해당 參贊으로 하여금 趙臣熙 사신에게 제대로 알려 잘 따르도록 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사신 朴定陽이 일찍이 정식 공문을 받고도 여전히 핑계를 대어 저항하며 위배하였기에, 지금 參贊으로 하여금 (趙臣熙 大臣에게) 거듭하여 알리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저는 여전히 해당 趙臣熙 사신이 나중에 핑계를 댈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미 요점을 간추려 전보로 보고를 올려 검토하시도록 한 것 외에, 다시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내 논박하면서 해당 參贊이 가는 편에 덧붙여 趙臣熙 사신에게 상세하게 지시하여 따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본월 14일,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이 즉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답장 照會를 전후로 보내왔습니다. 이미 수시로 요점을 간추려 전보로 보고를 올려 검토하시도록 한 것 외에, 지금 저와 조선 정부 및 외무아문 사이에 오고 간 照會를 삼가 올려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 : 삼가 조선정부와 外署에 문서를 보내 5개국에 파견된 趙臣熙 사신으로 하여금 '另約三端'을 따르도록 한 사안과 관련하여 오고 간 照會를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에 귀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 이번 달 2일에 "오늘 戌刻에 李 中堂大人의 전보를 받았습니다"라는 귀 총리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이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에 대해서는 일찍이 미국에 파견한 전권대신 朴定陽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신이 미국에 도착한 후 어찌하여 신중하지 못하게 불필요한 말썽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소식을 듣고 보니, 정말 불안합니다. 이미 즉시 駐美全權 朴定陽에게 전보를 보내, 이전 논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三端'은 이미 조선 국왕이 李 中堂大人에게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신 등은 응당 스스로 삼가 이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章程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뜻밖에 해당 사신이,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 및 귀 정부에서 따르라고 지시한 여러 사항을 공공연히 위배하였으니, 이는 특히나 제멋대로 된 행동으로서 大體를 모르는 것이며, 아울러 귀 정부가 全權을 위임한 뜻을 저버리는 것이니, 실로 안타깝고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신은 이미 정해진 章程을 위배하였고, 현재 이미 귀 정부에서 전보를 보내 (章程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된 전권대신 趙臣熙 또한 해당 사신 朴定陽을 따라 泰西로 떠났으니, 응당 해당 사신 趙臣熙가 혹여나 마찬가지로 다른 견문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다시 章程을 어긴다면 더더욱 사태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귀 정부에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조속히 해당 사신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해당 사신이) 다시 상세히 검토하여 '另約三端'을 삼가 준수함으로써, 선후로 각국 수도에 도착하면 곧바로 먼저 중국 欽差大臣에게 가서 모든 업무를 상의해 처리하고 다시는 달리 행동하여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6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6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본국에서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한 전권대신 趙臣熙가 아직 가는 도중이라, 현재 參贊官 한 명을 趙臣熙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급히 보내, 함께 泰西 각국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마땅히 전에 논의한 바에 대해, 해당 參贊官이 趙臣熙 사신에게 거듭하여 알림으로써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귀 총리에게 답장 照會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상. 12월 8일.

3.「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에 다음과 같은 貴 督辦의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 이번 달 2일 戌刻에 李 中堂大人이 전보를 보내, 駐美全權 張蔭桓 大臣이 조선 사신에 대해 전보로 알린 사실에 대해 전해왔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미 미국에 파견한 全權大臣 朴定陽에게 알려 삼가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신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뒤 어찌하여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第一端에 따라 먼저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힐문을 당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督辦은 (이에 대해) 모두 듣고 보니, 실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에 받았던 문서의 각 내용을 이번 달 3일에 전보로 駐美全權大臣 朴定陽에게 알려, 전에 논의하였던 '另約三端'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살펴보시고, 이를 北洋大臣께 전달해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전에 논의하여 확정한 '另約三端'은 이미 조선 국왕이 李 中堂大人에게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확정되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사신 등은 응당 스스로 삼가 이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章程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뜻밖에 해당 사신이,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 및 귀 정부에서 따르라고 지시한 여러 사항을 공공연히 위배하였으니, 이는 특히나 제멋대로 된 행동으로서 大體를 모르는 것이고, 아울러 귀 정부가 全權을 위임한 뜻을 저버리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이니, 실로 안타깝고 의아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신은 이미 정해진 章程을 위배하였고, 현재 이미 귀 정부에서 전보를 보내 章程을 따르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된 全權大臣 趙臣熙 또한 해당 사신 朴定陽을 따라 泰西로 떠났으니, 응당 해당 사신 趙臣熙가 혹여나 마찬가지로 다른 견문을 가지고 있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다시 章程을 어긴다면 더더욱 사태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응당 신속하게 문서를 갖추어 귀 督辦에게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조속히 해당 사신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해당 사신이) 다시 상세히 검토하여 '另約三端'을 삼가 따름으로써, 선후로 각국 수도에 도착하면 곧바로 먼저 중국 欽差大臣에게 가서 일체 업무를 상의해 처리하고 다시는 달리 행동하여 章程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5일.

4.「조선 外署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5일에 귀 총리가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駐紮五國全權大臣 趙臣熙가 지금 香港에 머무르고 있어, 參贊官 李容泰를 보내 같이 각국에 가도록 해야 하므로, 해당 參贊官이 곧 출발할 것입니다. 章程의 각 내용을 전권대신 趙臣熙에게 모두 제대로 알려 삼가 이를 따르고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해당 參贊官에게)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전권대신 趙臣熙는 응당 각국에 처음 도착하면 '另約三端'에 따라 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

12월 9일.

5.「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8일에 귀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6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본국에서 영국·독일·러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이탈리아·프랑스에 파견한 전권대신 趙臣熙가 아직 가는 도중이라, 현재 參贊官 한 명을 趙臣熙 사신이 머무는 곳으로 급히 보내, 함께 泰西 각국에 가게 하였습니다. 마땅히 전에 논의한 바에 대해, 해당 參贊官이 趙臣熙 사신에게 거듭하여 알림으로써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照會를 보내니 살펴봐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5개국에 파견한 전권대신 趙臣熙가 아직 가는 도중이라, 현재 參贊官 한 명을 급히 趙臣熙가 머무는 곳으로 보내 같이 泰西 各國에 가게 한다고 하니, 당연히 使臣 趙臣熙에게 신속하게 전보를 보내 다시 상세히 검토하라고 지시할 필요는 없을 터입니다. 다만 해당 參贊官이 아직 출발 전이니, 귀 정부는 응당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公文으로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지시하여 상세하고 빠짐없이 따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事體에 부합하고 긴요한 공무를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본 총리가 문서로 번거롭게 하였지만, 귀 정부가 처음부터 단지 전에 논의한 대로 해당 參贊官에게 대면 지시를 내려 그가 (趙臣熙 사신에게) 제대로 알리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는 긴요한 공무를 신중히 여기는 방법은 아니며,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을 신중히 여기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 총리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당 朴定陽 公使는 이미 귀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핑계를 대어 제멋대로 위반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參贊官이 구두로 제대로 알린다고 하는 것은, 해당 使臣 趙臣熙가 핑계를 대어 위반할 여지를 제공하기에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보건대, 혹시 해당 使臣 朴定陽이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던 것 역시 과연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귀 정부에 설사 이러한 형태의 政令이 있다 할지라도, 실로 본 총리가 감히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닌즉, 바라건대 귀 정부는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公文을 통해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상세하고 빠짐없이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體制에 부합하고 정해진 章程을 온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정부에 照會를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즉시 답장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8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參贊官이 가는 편에 찰문을 보내 五國 全權大臣 趙臣熙로 하여금 삼가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照會를 보내니, 귀 총리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14일.

7.「조선 外署에 보낸 照會」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9일에 귀 督辦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 이번 달 5일에 귀 總理가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駐紮五國全權大臣 趙臣熙가 마침 香港에 머무르고 있어, 參贊官 李容泰로 하여금 같이 各國에 가도록 해야 하는 즉, 해당 參贊官이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정해진 모든 章程의 각 내용을 (해당 參贊官에게) 대면 지시하여 全權大臣 趙臣熙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함의로써 삼가 그에 따르고 위반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全權大臣 趙臣熙는 응당 각국에 처음 도착하면 '另約三端'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
> 이에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 5개국에 파견된 全權大臣 趙臣熙가 마침 香港에 머무르고 있어, 參贊官 李容泰로 하여금 같이 각국에 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소용이 없으니 조속히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전보를 보내 다시 상세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다만 해당 參贊官이 아직 출발 전이니, 귀 督辦은 응당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公文으로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지시하여 상세하고 빠짐없이 준수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바야흐로 事體에 부합하고 긴요한 공무를 중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본 총리가 문서로 서로 번거롭게 하였기에 귀 정부가 비로소 단지 전에 논의한 대로 해당 參贊官에게 대면 지시를 내려 그가 (趙臣熙 사신에게) 구두로 알리게 한 것 같은데, 이는 긴요한 공무를 신중히 여기는 방법은 아니며, 상주하여 결정된 章程을 신중히 여기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본 총리는 이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당 朴定陽 公使는 이미 귀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고도,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핑계를 대어 제멋대로 위반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參贊官이 구두로 제대로 알린다고 하는 것은, 해당 使臣 趙臣熙가 핑계를 대어 위반할 여지를 제공하기에 딱 들어맞는 것 아닙니까? 이로 보건대, 혹여 해당 使臣 朴定陽이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던 것은, 과연 또한 원인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貴 아문에 비록 이러한 형태의 政令이 있다 할지라도, 실로 본 총리는 들어본 바가 없는 즉, 바라건대 貴 아문은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덧붙여, 公文으로 해당 使臣 趙臣熙에게 상세하고 빠짐없이 준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體制에 부합하고 정해진 章程을 온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 督辦에게 照會를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바라건대 즉시 답장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9일.

8. 「조선 外署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13일에 귀 총리가 보낸 문서를 받았습니다. 본 督辦은 마땅히 전에 논의한 '另約三端'에 대해 상세하고 빠짐없이 지시할 것이며, 해당 參贊官이 가는 편에 확실한 문서를 가지고 가게 하여 해당 全權大臣 趙臣熙에게 전달함으로써, 구두 보고를 하여 핑계를 댈 여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가 ('另約三端'에) 따라 처리하게 함으로써, 體制에 부합하고 정해진 章程을 온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총리에게 답장 照會를 보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7) 문서번호 : 2-1-3-63(1335, 2468a-2469b)

사안 : 조선은 외국 주재 使節이 부임하면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같이 가기로 한 章程을 변통하기를 원하였으나, 바꾸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諭旨를 받아 전보로 알렸습니다(朝鮮欲變通駐外使節抵任, 須由中使挈同赴外部一節, 已遵旨轉達不准更張).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 정부 및 外署에 보낸 照會(袁世凱致韓政府及外署照會)」: 중국과 조선의 使節 體制를 바꾸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점을 諭旨에 따라 전달합니다(遵旨轉達, 不准更改中·韓使節體制).

2.「조선 정부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韓政府覆袁世凱照會)」: 照會를 받아 이미 諭旨를 국왕께 전달하였습니다(接准照會, 已將電旨轉達國王).

3.「조선 外署가 袁世凱에 보낸 답장 照會(韓外署覆袁世凱照會)」: 照會를 받아 국왕께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接准照會, 已轉達韓王遵照前議辦理).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十一日(1888년 3월 2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本月初十日, 朝鮮外署督辦趙秉式以國命來稱：

接朴使電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定三端本不敢違. 惟至美後, 查探物情, 如由華使挈往外部, 美廷有意斥退國書. 故冒罪違章, 始全使命. 待回請罪.

云. 國王意如五國使繼至各國, 再有此種難便, 重違定章, 殊非事體. 擬請先探憲意,[50] 如垂念難便苦情, 准其將挈同赴外部一節變通辦理, 即具咨懇請. 得允後再飭知五國使恪遵各端, 先見華使商明, 免同挈往, 以全事體而免違章.

等語. 當經電稟憲台鑒核訓示. 旋於十一日酉刻接奉憲台電開：

總署本日電：

三端既經議定, 豈容輕改更張. 著即電知該國王恪遵前議辦理. 遵旨電達.

云. 即致韓政府轉達.

等因. 奉此. 當即欽遵照會韓政府、外衙門轉達國王, 恪遵前議辦理. 嗣於十四日十七日先後接准韓政府、外衙門照覆：

欽遵電旨, 轉達國王.

各等因. 除已隨時擇要電稟憲台鑒核外, 茲將卑府與韓政府、外衙門往來各照會, 繕具清摺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奉電轉達電旨與韓政府、外署往來照會, 繕呈憲鑒.

1.「照會韓政府外署」

為照會恭錄電旨事.

昨據外署督辦趙、貴督辦以王命來稱：

接朴使電啟：“前定三端, 本不敢違. 惟至美後, 查探物情, 如由華使挈往外部, 美廷有意斥退國書. 故冒罪違章, 始全使命. 待回請罪.”云.

王意如五國使繼至各國, 再有此等難便, 重違定章, 殊非事體. 擬請先探憲意, 如垂念難便苦情, 准其挈同赴外部一節變通辦理, 即具咨懇請. 得允後再飭知五國使恪遵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端, 先見華使商明, 免同挈往, 以全事體而免違章.

各等語. 當即電請文華殿大學士李 核示. 旋由文華殿大學士李 轉電總理衙門王大臣請旨定奪. 茲於本日酉刻接奉文華殿大學士李 電開：

總署本日電："三端既經議定, 豈容輕改更張. 著即電知該國王, 恪遵前議辦理. 遵旨電達."云. 即致韓政府轉達.

等因. 奉此. 相應欽遵照會貴政府、督辦查照, 轉達國王殿下, 恪遵前議辦理. 望切即覆. 須至照會者.

十二月十一日.

2.「韓政府照覆」

為照覆事.

本月十二日,接准貴總理照會內開, 云云. 等因. 准此. 除恭將電旨轉達國王外, 相應照覆, 貴總理查照. 須至照覆者.

十二月十七日.

3.「韓外署照覆」

為照覆事.

照得本月十一日,接准貴總理照會內開, 云云. 等因前來. 奉此. 本督辦欽遵電旨, 轉達國王殿下, 遵照前議辦理. 相應照覆. 須至照覆者.

十二月十四日.

2월 1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

50) 憲은 상사·상관을 가리키는 용어다. 원세개의 상관은 바로 李 中堂大人으로 지칭되는 李鴻章을 가리킨다. 아래에 나오는 憲臺 역시 지방관이 知府 이상의 상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번 달 10일에 조선 外署의 督辦 趙秉式이 國命으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논의하여 확정하였던 '另約三端'을 본래 감히 어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도착한 후 物情을 살펴보니, 만약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이에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김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돌아가 죄를 청하기를 기다립니다.

국왕께서는 5개국 使臣이 뒤이어 각국에 도착한 후 다시 이러한 종류의 불편이 생겨 거듭 정해진 章程을 어긴다면 事體에 매우 어긋날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이에 청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李 中堂大人의 뜻을 살펴 만약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사정을 배려하여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같이 간다'고 하는 부분을 변통해 처리해 주실 수 있다면, (정식으로) 咨文을 갖추어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허를 얻은 다음, 다시 5개국 사신에게 알려 각 章程을 삼가 따르게 하여, 먼저 중국 사신을 만나 상의하되 같이 (外部에) 가는 것은 면함으로써 事體는 온전히 하되 章程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곧바로 전보로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 후 훈시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어 11일 酉刻에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總理衙門으로부터 오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다.

'另約三端'은 이미 논의하여 확정된 것인데, 어찌 가벼이 고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조선 국왕에게 전보로 알려, 전에 논의한 대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諭旨를 받아 전보로 전달합니다.

이를 즉시 조선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라.

이에 곧바로 삼가 지시를 받들어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내 국왕께 전달하게 하고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14일과 17일에 선후로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으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전보로 보내주신 諭旨를 받아 국왕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수시로 요점을 간추려 전보로 보고를 올려 검토하시도록 한 것 외에, 지금 저와 조선 정부 및 외무아문 사이에 오고 간 照會를 삼가 올려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리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십시오.

첨부문서 : 삼가 전보를 받들어 諭旨를 전달한 일로, 조선 정부 및 外署와 오고 간 照會를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조선 정부와 外署에 보낸 照會」

전보로 받은 諭旨를 삼가 초록하여 照會를 보냅니다.

어제 外署 督辦 趙秉式과 귀 督辦이 王命으로 보내온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논의하여 확정하였던 '另約三端'을 본래 감히 어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도착한 후 物情을 살펴보니, 만약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이에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김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돌아가 죄를 청하기를 기다립니다.

국왕께서는 5개국 使臣이 차례로 각국에 도착한 후, 다시 이러한 종류의 불편이 생겨 거듭 정해진 章程을 어긴다면, 事體에 매우 어긋날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이에 청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李 中堂大人의 뜻을 살펴 만약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사정을 배려하여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같이 간다'고 하는 부분을 변통해 처리해 주실 수 있다면, (정식으로) 咨文을 갖추어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허를 얻은 후, 다시 5개국 사신에게 알려 각 章程을 삼가 따르게 하여, 먼저 중국 사신을 만나 상의하되 같이 (外部에) 가는 것은 면함으로써, 事體는 온전히 하되 章程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곧바로 李 中堂大人께 전보를 보내 검토 후 훈시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어 李 中堂大人께서 總理衙門 王大臣께 전보를 전달하여 결정해 주십사 諭旨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酉刻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總理衙門에서 오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另約三端'은 이미 논의하여 확정된 것인데, 어찌 가벼이 고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조선 국왕에게 전보로 알려, 전에 논의한 대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諭旨를 받아 전보로 전달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즉시 조선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라.

이에 마땅히 말씀을 받들어 귀 정부와 귀 독판에게 照會를 보내니, 검토하시고 국왕 전하께 전달하여 삼가 전에 논의한 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즉시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월 11일.

2.「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12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삼가 전보로 받은 諭旨를 국왕께 전달한 것 외에, 마땅히 답장 照會를 보내니 귀 총리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12월 17일.

3.「조선 外署의 답장 照會」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번 달 11일에 귀 총리로부터 照會를 받았습니다. 본 督辦은 삼가 전보로 보내주신 諭旨에 따라, 국왕 전하께 전달하여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상.

12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8) 문서번호 : 2-1-3-64(1336, 2470a)

사안 : 조선 사신이 미국에 도착하여 國書를 올려보냈음을 咨文으로 보고하는 사안(咨報韓使到美呈遞國書).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二十一日(1888년 4월 2일)

발신 : 出使大臣 張蔭桓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一日, 出使大臣張蔭桓文[詳見美股出使檔].

草目 : 咨報韓使到美呈遞國書由

2월 21일, 출사대신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美國股 出使檔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 사신이 미국에 도착하여 國書를 올려보냈음을 咨文으로 보고하는 내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9) 문서번호 : 2-1-3-65(1337, 2470b)

사안 : 조선 사신의 미국 주재 상황을 서신으로 설명하는 사안(函述韓使駐美情形).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二十一日(1888년 4월 2일)
발신 : 出使大臣 張蔭桓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一日, 出使大臣張蔭桓函[詳見美股出使檔].
草目 : 函述韓使駐美情形由

2월 21일, 출사대신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자세한 내용은 美國股 出使檔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 사신의 미국 주재 상황을 서신으로 설명하는 내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0) 문서번호 : 2-1-3-66(1338, 2471a)

사안 : 황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奏摺을 대신 상주해달라는 조선 국왕의 咨文을 받아, 초록하여 보냅니다(鈔送據咨轉奏朝鮮國王恭謝天恩摺稿).

첨부문서 : 1.「禮部의 奏摺(禮部奏摺)」: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 황상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조선 국왕의 奏摺을 대신 상주합니다(據咨轉奏朝鮮國王爲准派使各國恭謝天恩).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二十二日(1888년 4월 3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二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本部據咨轉奏朝鮮國王恭謝天恩一摺, 於光緒十四年二月十八日具奏, 本日奉旨：

知道了.

欽此. 相應抄錄原奏, 知照總理衙門可也.

1.「照錄粘單」

禮部謹奏.

為據咨轉奏事.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一件. 臣等查閱來咨, 係因上年該國擬派使前往泰西各國互駐, 遣官賫奏來京, 先行請示, 蒙恩允准, 該國王接奉諭旨, 感激天恩, 恭伸謝悃, 咨請臣部, 代為轉奏. 等情. 謹抄錄原咨, 恭呈御覽. 為此謹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월 22일, 예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예부의)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本部는 天恩에 감사하는 奏摺을 대신 올려줄 것을 청하는 조선 국왕의 咨文을 받아, 광서 14년 2월 18일에 상주하였고, 오늘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알았다.

이에 마땅히 原奏를 초록하여 總理衙門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1.「첨부문서 초록」

예부에서 삼가 아룁니다.
咨文을 받아 대신 상주합니다. 성경 예부에서 보내 온, 조선 국왕의 咨文 1건을 받았습니다. 보내온 咨文을 臣等이 검토해보니, 작년에 조선 국왕이 서양 각국에 사신을 보내 주재시키는 문제로, 관원을 파견해 奏稿를 가져와서 먼저 지시를 청하고 이에 대해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국왕은 이러한 諭旨를 받고 나서 황상의 은혜에 감격하여 삼가 정성스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본 예부에 대신 상주해 줄 것을 咨文으로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삼가 原咨를 초록하여 올리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奏를 올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1) 문서번호 : 2-1-3-67(1339, 2471b)

사안 : 조선의 朴定陽 公使가 이미 미국에 國書를 전달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수행원 직명을 덧붙여 열거하였다고, 出使大臣 張蔭桓이 咨文을 보내왔습니다(出使大臣張蔭桓咨, 韓朴使申呈, 已向美遞呈國書, 附開隨員職名).

날짜 : 光緒十四年二月二十五日(1888년 4월 6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二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四年二月二十九日, 准出使美、西、秘國大臣張上年十二月二十五日咨開[51]：

案據朝鮮嘉善大夫協辦內務府事、駐紮美國全權大臣朴定陽呈稱：

為申稱事. 竊惟本公使以本年十一月二十六日來抵美國華盛頓, 十二月初五日遞呈國書. 隨率人員左幅開列. 為此, 理合備文申呈賜鑒.

後開全權大臣朴定陽, 參贊官李完用, 書記官李夏榮李商在, 繙譯官李采淵, 隨員姜進熙李憲用各職名. 文尾署光緒十三年十二月日, 鈐用朝鮮國特派全權大臣印篆文.

呈報到本大臣. 據此. 合亟咨會. 為此, 咨請查照備案.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51) 美·日·秘國은 美国, 日斯巴尼亚(에스파니아. 즉 스페인), 秘鲁(페루) 3국을 가리킨다. 1889년부터 3년간 미국, 스페인, 페루 3개국의 외교 관원으로 있었던 최국인(崔国因)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出使美日秘三国日记』를 펴내기도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월 25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광서 14년 2월 29일에,[52]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작년 12월 25일에 보낸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의 嘉善大夫協辦內務府事 美國全權大臣 朴定陽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합니다. 본 公使는 올해 11월 26일에 미국 워싱턴에 와서 12월 5일에 國書를 전달하였습니다. 수행 인원은 다음처럼 열거합니다. 이에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보고를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전권대신 朴定陽, 참찬관 李完用, 서기관 李夏榮·李商在, 번역관 李采淵, 수행원 姜進熙·李憲用. 광서 13년 12월 일, 朝鮮國特派全權大臣 印.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을 보내 알리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52) 원문에 2월 29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홍장이 總理衙門에 이 문서를 보낸 날짜가 광서 14년 2월 25일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2) 문서번호 : 2-1-3-68(1341, 2473a)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韓遣使事).
날짜 : 光緒十四年三月初四日(1888년 4월 14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四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信簿].
草目 : 韓遣使事由

3월 4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信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3) 문서번호 : 2-1-3-69(1342, 2473b)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韓遣使事).
날짜 : 光緖十四年三月初十日(1888년 4월 2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十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報簿].
草目 : 韓遣使事由

3월 10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信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4) 문서번호 : 2-1-3-70(1343, 2474a-2475a)

사안 : 조선의 駐日 대리 公使 金嘉鎭이 아직 만나러 오지 않은 일로 黎庶昌 大臣이 조선 外署에 알려, 조선 外署가 (金嘉鎭에게) 찾아볼 것을 서신으로 지시하였습니다(韓駐日代使金嘉鎭迄未進見, 黎大臣已轉告, 韓外署函飭往謁).

첨부문서 : 1.「出使日本大臣 黎庶昌이 袁世凱에 보낸 서신(出使日本大臣黎庶昌致袁世凱函)」: 金嘉鎭은 결코 만나러 오지 않았으며, 조선인의 가슴에는 '自主'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로놓여 있어, 도저히 깰 수가 없습니다(金嘉鎭並未來見, 朝人胸中, 橫一自主二字, 牢不可破).

2.「袁世凱가 出使日本大臣 黎庶昌에게 보낸 답장 서신(袁世凱覆出使日本大臣黎庶昌函)」: 金嘉鎭이 아직 만나러 오지 않은 일로 조선 정부를 완곡히 힐문하였더니, 당연히 서신을 보내 만나보기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金嘉鎭未進見事, 已婉詰韓廷, 據云當函囑往謁).

날짜 : 光緒十四年三月十二日(1888년 4월 2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三月十二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朝鮮前往駐紮日本使臣閔泳駿, 於去年十月即行遄返, 由參贊金嘉鎭代理. 泳駿到漢, 囑卑府函致黎大臣, 以中東一室,[53] 該參贊在彼, 務請照拂一切.

茲接黎大臣覆函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金嘉鎭兩次到門投片，並未進見. 隔絕情形，更為可惡.

等因. 卑府當即轉告韓政府、外署. 據云即函飭該參贊金嘉鎭往謁，尚未知其果否照遵. 除已函復黎大臣外，理合將黎大臣來函暨卑府覆函，繕摺附呈憲鑒.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密咨貴衙門，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與駐劄日本黎大臣來往函兩件，繕呈憲鑒.

1.「黎大臣來函」

再.[54] 前接台函，言朝鮮金嘉鎭等在此，該國公使託為照應. 不知朝人胸中橫一自主二字，牢不可破. 弟到已兩月，除接任及過年，金嘉鎭兩次到門投片，并未進見外，其餘一無往還. 隔絕情形，較之昔年金玉均等在此，更為可惡. 密以奉聞. 再頌台祺. 不宣.[55]

二月初四日到.

2.「覆黎大臣函」

接奉惠函，恭讀附示,[56] 敬悉種切，比擒興居勞苒，至以為頌.[57] 韓自通商開禁以來，見聞日廣，炫惑日多，兼以西人愚弄於其間. 每覺中國之強不及泰西，又鑒安緬之覆轍,[58] 故時蓄一引強自衛，侈然自主之心，連年潛啓強邦，形迹屢見. 而中國時局亦有鞭長莫及之勢. 即如去歲派使駐扎各國，竟不請命中朝，具加全權字樣，經諭旨責問. 傅相駁結，立定章程，於銜帖、呈文硃筆照會外，復約三端，而赴美朴使竟敢抗違，不遵三端，復經傅相電示，命凱詰責，始猶掩飾推諉，終乃歸過使臣，謬妄之行，不一而足. 承示金君僅兩次投片並未進見，無非強飾自主之故智. 凱已婉詰韓廷，據云當即函囑該參贊往謁，未知其果否遵照. 凱才輇任重，深慮隕越，前屢請代，終未獲允. 幸瓜期不遠，或可卸此重負，聊藏鳩拙耳. 閣下不遺在遠，尚乞時賜教言，以資韋佩是幸.[59] 手此布覆.[60] 敬請台安，並希密鑒.

二月十四日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월 12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에서 駐日本使臣으로 보낸 閔泳駿이 작년 10월 급히 돌아오는 바람에, 參贊 金嘉鎭이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閔泳駿이 漢城에 도착한 후 제게 부탁하기를, 黎庶昌[61] 大臣에게 서신을 보내 중국과 조선은 한 집안이니 해당 參贊은 일본에 있으면서 모든 걸 잘 보살펴 주십사 요청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黎庶昌 大臣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서신을 받았습니다.

金嘉鎭은 두 차례 문 앞에서 片文을 건넸을 뿐, 결코 아직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단절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응당 저는 곧바로 조선 정부와 外署에 알렸고, (조선 정부와 外署가) 이르길 즉시 해당 參贊 金嘉鎭에게 서신으로 찾아가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는데, (해당 參贊이) 과연 그에 따랐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黎庶昌 大臣에게 서신으로 답장을 보낸

53) 여기서 中東은 청과 조선을 가리킨다. 상황에 따라 이 단어는 청과 일본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서는 청과 조선을 가리키는 것이다.

54) '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다. '추가합니다' 또는 '첨부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55) 불선(不宣)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뜻으로 서신 말미에 쓰는 상용어다.

56) 附示는 여기서 앞의 1. 「黎大臣來函」을 가리키는 것 같다. 문장 첫머리에 '再', 즉 '추가합니다'는 용어를 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첨부 이전의 본문은 여기의 맥락과 상관이 없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57) '比擒輿居舅弟, 至以為頌' 부분은 뜻이 불분명하다.

58) 安緬은 安南과 緬甸, 즉 베트남과 미얀마(버마)를 말한다.

59) 韋佩는 佩韋佩弦의 줄임말로, 자신의 단점·성격을 보충·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패(佩)는 몸에 붙인다, 위(韋)는 무두질한 가죽, 현(弦)은 활시위를 말한다. 전국시대(戰国時代) 서문표(西門豹)가 성급함을 바로 잡기 위해 헐겁게 무두질한 가죽을 입었고, 춘추시대(春秋時代)의 동안우(董安于)는 느긋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팽팽한 활시위를 몸에 둘렀다는 고사에서 나왔다.

60) 수차(手此)는 손수 이 서신을 쓴다는 뜻으로, 서신 말미에 쓰는 상용어다. 포복(布覆)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답장한다는 서신 용어다.

61) 여서창(黎庶昌, 1837~1898)은 자가 순재(純齋)로, 귀주성(貴州省) 준의(遵義) 사람이다. 증국번(曾國藩)의 막우로 있으면서 그의 신임을 얻어 강소성에서 여러 관직을 맡았고, 光緖 년간에는 곽숭도(郭崇燾), 증기택(曾紀澤) 등을 따라 유럽에 가서 공사관 참찬을 지냈다. 1881년 주일본대신(駐日本大臣)으로 임명되어 3년간 일본에 머물렀다가, 모친상으로 귀국하여 3년간의 정우(丁憂) 기간을 보내고 1884년 다시 일본으로 파견되면서 선후로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주일본대신을 지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 외에, 마땅히 黎庶昌 大臣이 보내온 서신 및 제가 답장한 서신을 첨부하여 올리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고를 받아) 마땅히 貴 아문에 비밀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첨부문서 : 삼가 黎庶昌 駐日本大臣과 주고받은 서신 두 건을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黎庶昌 大臣이 보내 온 서신」

추가합니다. 전에 보내신 서신에서 조선의 金嘉鎭이 여기에 있으니 조선 公使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였음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의 가슴에는 '自主'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가로놓여 있어, 아주 견고하여 깰 수가 없음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도착한 지 이미 2개월이 지났음에도, 직무를 인계받았을 때와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 金嘉鎭이 두 차례 문 앞에서 片文을 건넸을 뿐 전혀 만나러 들어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밖에는 전혀 왕래가 없었습니다. 서로 단절된 상황이, 예전에 金玉均이 여기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비밀리에 알립니다. 재차 행복을 축원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2월 4일 도착.

2.「黎庶昌 大臣에게 보내는 답장 서신」

보내주신 서신과 첨부한 내용을 받아 삼가 잘 읽고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조선은 통상과 개방을 시작한 이래 견문이 나날이 넓어지자 현혹되는 바도 나날이 늘어난 데다가, 더욱이 서양인들은 그 사이에서 우롱하고 있습니다. 매번 중국의 강함이 서구에 미치지 못함을 보는 데다가 또한 베트남과 버마가 (프랑스와 영국에 의해) 뒤집히는 것을 살펴보았기에, 이 때문에 줄곧 强國을 끌어들여 自衛를 도모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지금은 분수에 넘치게 自主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强國과 몰래 교류하는 흔적을 누차 보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시국 역시 손을 뻗고 싶어도 닿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 (조선이)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주재시키면서도 끝내 중국의 지시를 요청하지 않은 채 모두 '全權'이라는 용어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덧붙였으므로, 諭旨를 통한 責問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李 中堂大人께서 논박하고 즉각 章程을 정하여 (조선 公使가 올리는) 銜帖·呈文에는 (중국 公使가 상사의 지시라는 것을 상징하는) 硃筆로 照會하도록 하는 것 외에, 다시 3가지 조항('另約三端')을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는 마침내 감히 이를 거스르고 '另約三端'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李 中堂大人께서 전보로 제게 견책할 것을 지시하시자, 처음에는 실상을 은폐하고 핑계를 대다가 결국은 모든 잘못을 朴定陽 사신 탓으로 돌리는 등 그릇된 행동은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어 金嘉鎭의 경우, 단지 두 차례 片文을 건넸을 뿐 결코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自主'를 억지로 꾸미려는 낡은 계책이 아닌 게 없습니다. 제가 이미 조선 정부에 완곡하게 견책하였고, (조선 정부가 답하기를) 즉시 해당 參贊에게 서신을 보내 만나보러 가도록 재촉하였으나 과연 (해당 參贊이) 그에 따랐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능력은 부족한데 임무는 막중하여, 걱정에 고개가 수그러들고, 이 때문에 전에 누차 교체를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임기가 거의 다 되었으니, 혹여 이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잠시 무능함을 감추고 있을 따름입니다. 각하께서 멀리 계시지 않으니 때때로 가르침을 청해 제 단점을 고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답장을 보냅니다. 삼가 평안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밀리에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2월 14일 발송.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5) 문서번호 : 2-1-3-71(1344, 2475b)

사안 : 조선에서 서양 각국에 사신을 파견한 사안(韓遣使西洋各國事)

날짜 : 光緖十四年三月二十日(1888년 4월 30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三月二十日, 行北洋大臣李鴻章信[詳見密啟].

草目 : 韓遣使西國由

3월 20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상세한 내용은 密啟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에서 서양에 사신을 파견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6) 문서번호 : 2-1-3-72(1345, 2476a-2476b)

사안 : 조선 사신 朴定陽이 직접 國書를 전달하여, 중국 사신의 인솔을 청한다는 體制를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시 교활하게 속이면서 책임을 미루니, 응당 조선에 어떻게 힐문할 것인지 북양대신에게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韓使朴定陽逕遞國書, 未遵體制請中使挈帶, 復狡詐推諉, 應如何詰問該國, 請下北洋大臣籌定辦法).

날짜 : 光緒十四年四月初九日(1888년 5월 19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四月初九日, 軍機處交出張蔭桓抄片稱：

再. 上年七月臣准總理衙門電, 朝鮮遣使來美. 復准北洋大臣咨. 光緒十三年九月初三日, 奉上諭. 禮部奏朝鮮國派使西國, 先行請示, 呈進奏章一摺. 等因. 欽此. 並准抄錄朝鮮國王奏稿及與該國續訂二端咨會到美.

臣於該使員朴定陽初抵美境, 即照會美外部, 以屬國遣使, 當挈同該使來晤, 至該使遞國書, 則請外部照例帶領. 旋准外部復定相見之期, 乃該使員既抵美都, 並不通謁, 遽行照會外部. 臣飭參贊官詰詢, 該使員以未奉該國明文為詞. 經參贊官輾轉開導, 猶未領悟, 當於該使員未見外部之前, 臣親往外部, 認明屬國, 為之先容. 外部以朝鮮為中朝屬國, 久已洞悉, 即美與立約, 亦承中朝之意, 無不推愛優待. 等語. 臣經電達李鴻章, 轉電總理衙門察照, 并函告劉瑞芬[62]、洪鈞,[63] 聯為一氣.

該使遞國書後, 乃具銜版來見. 詰以津約三端, 何以不遵. 該使員又託病為解. 告以歐洲通使歷千百年, 人地習熟, 亞洲遣使西來不逾廿載, 凡百生疏, 欲聯邦交, 須格外留意, 該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使員茫然不知. 且以章服一事與參贊官絮絮辨駁, 僅據呈報抵美日期及使館各員職名. 臣給與時憲書後,[64] 使員曾來賀歲. 臣仰體聖朝字小之義, 仍與往還. 然證以李鴻章保定來文粘附該國王咨復一稿, 則該使員之狡詐, 恐不足為朝鮮修睦. 臣當鈔咨照會, 使之感愧. 至應如何詰問該國及未盡事宜, 應由李鴻章酌量辦理. 所有朝鮮遣使來美, 臣與美廷認明朝鮮屬國各緣由, 除電咨外, 臣謹附片陳明. 伏乞聖鑒. 謹奏.

光緒十四年四月初八日, 奉硃批：

該衙門知道.

欽此.

4월 9일, 군기처에서 다음과 같은 張蔭桓의 附片을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첨부합니다. 작년 7월 臣은 조선에서 미국에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總理衙門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북양대신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광서 13년 9월 3일, "예부에서, 조선이 서양에 사신을 파견하기에 앞서 지시를 청하는 문제로 奏章을 올렸다"고 하는 내용의 上諭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조선 국왕의 奏稿 및 조선과 續訂한 두 가지 조항('另約三端')을 초록하여 咨文으로 미국에 보낸 것을 받았습니다.

臣은 해당 사신 朴定陽이 미국 경내에 도착한 다음, 바로 미국 外部에 照會를 보내, 속국에서 사신을 파견하였으니 응당 해당 사신을 인솔하여 찾아볼 것이며, 해당 조선 사신이 國書를

62) 유서분(劉瑞芬, 1827~1892)은 자가 지전(芝田)으로, 안휘성(安徽省) 지주(池州) 사람이다. 1885년 영국과 러시아 등지의 출사대신으로 임명되었으며, 1889년 본국으로 돌아와 광동순무(廣東巡撫)로 재임하다가 1892년 임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63) 홍균(洪鈞, 1839~1893)은 자가 도사(陶士), 호가 문경(文卿)으로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 사람이다. 1881년 내각학사(內閣學士)로 임명되었고, 관직은 병부좌시랑(兵部左侍郎)에까지 올랐다. 1889~1892년까지 러시아·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 4개국의 출사대신으로 있었다. 귀국 후에는 總理衙門의 대신으로 임명되었다.

64) 時憲書는 時憲曆이라고도 하며, 명 말에 정해지고 청대에 반행된 역법인데, 음력·농력(農曆)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아마 (미국에서 쓰이는 서양 역법에 기초한) 달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전달하려면, 바로 外部에 요청하여 例에 따라 데리고 가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곧바로 外部에서 다시 서로 만날 시기를 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선 사신이 미국 수도에 도착하고도 결코 (저를) 만나러 오지 않은 채, 갑자기 미국 外部에 照會를 보냈습니다. 臣은 參贊官에게 따져 물을 것을 지시하였는데, 해당 사신 일행은 아직 조선의 공식 문건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삼았습니다. 參贊官이 이리저리 지도하여 일깨우려 하였으나 여전히 깨닫지 못함에, 응당 해당 사신이 外部를 만나기 전에 臣이 직접 外部에 가서 속국임을 확인시키고 그를 위해 잘 봐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外部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인식한 지 오래되어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중국의 의사를 따랐고 소중히 대우해주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臣은 李鴻章에게 전보를 보내 總理衙門에 그 전보를 전달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아울러 劉瑞芬과 洪鈞에게도 서신으로 알려 함께 행동하자고 알렸습니다.

해당 조선 사신은 國書를 전달한 후에야 銜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另約三端'을 따르지 않았는지 힐문하자, 해당 사신은 또다시 병이 났었다는 구실로 해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서로 사신을 파견한 지 매우 오래되어 사람과 지리에 대해 익숙히 알고 있지만, 아시아에서 서구에 사신을 파견한 지는 20년이 채 안 되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수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알려주자, 해당 사신은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또 章服 문제로 參贊官과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가리어 논박한 후에야, 겨우 미국에 도착한 일자와 공사관 인원의 직명을 보고받았습니다. 臣이 달력을 제공해준 다음, 해당 공사 관원들이 새해 인사를 하러 찾아왔습니다. 臣은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는 조정의 뜻을 받들어 여전히 그들과 더불어 왕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홍장이 保定에서 보내온 문서에 첨부된 조선 국왕의 답장 咨文으로 살펴보건대, 해당 公使의 교활함은 조선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화목하게 만들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臣은 마땅히 (조선 국왕의) 咨文을 초록하여 照會를 보냄으로써 해당 公使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조선을 힐문할지와 나머지 미진한 사항은 응당 이홍장이 나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에서 미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臣이 미국에 조선이 속국임을 확인시킨 연유에 대해, 전보 咨文을 보낸 것 외에, 臣이 삼가 따로 附片을 올려 밝히니,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광서 14년 4월 8일, 다음과 같은 硃批를 받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당 아문에 알려라.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7) 문서번호 : 2-1-3-73(1346, 2477a)

사안 : 조선 사신의 미국 도착 후 일에 대해 이미 북양대신에게 알려 방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음을 알리는 답장 서신(函覆韓使抵美各事, 已告北洋大臣籌定辦法).

날짜 : 光緒十四年四月初十日(1888년 5월 20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出使大臣 張蔭桓

四月初十日, 致出使大臣張蔭桓函[詳見密啟].

草目 : 函覆韓使抵美各節已告北洋籌定辦法由

4월 10일, 출사대신 張蔭桓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상세한 내용은 密啟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 사신의 미국 도착 후 일에 대해 이미 북양대신에게 알려 방법을 마련하라고 하였음을 서신으로 답장하는 내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8) 문서번호 : 2-1-3-74(1350, 2481b-2482a)

사안 : 조선의 대리 公使 金嘉鎭이 이미 出使日本大臣 黎庶昌을 만나보았습니다(韓代使金嘉鎭已拜會出使日本大臣黎庶昌).

첨부문서 : 1.「出使日本大臣 黎庶昌이 袁世凱에 보낸 답장 서신(出使日本大臣黎庶昌覆袁世凱函)」: 조선의 金嘉鎭 대리 公使가 이미 찾아와 만났는데, 실로 완곡하게 힐문해주신 덕분입니다(韓金署使已前來拜會, 實台端婉詰之功).[65]

날짜 : 光緒十四年四月三十日(1888년 6월 9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四月三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前於二月間接奉駐日本黎大臣來函內開：

朝鮮駐日本參贊代理使臣金嘉鎭兩次到門投片, 並未進見.

等語. 當由卑府轉告韓政府. 據云即函飭該參贊往謁. 等情.

除函復外, 當即具稟並將黎大臣來函與卑府復函, 繕摺附呈憲台鑒核各在案. 茲於四月初九日復接黎大臣覆函內開：

三月中旬該參贊金嘉鎭始前來拜會.

等情. 理合將黎大臣覆函, 繕具清摺附呈憲鑒.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65) 台端은 서신에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경어(敬語)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照錄清摺」

謹將駐日本黎大臣覆函, 繕呈憲鑒.

慰亭仁兄大人閣下.[66]

接誦二月望日手書, 具承一切. 就讀韓廷記績, 腸谷宣勤, 企仰何似? 金署使自弟去臘抵任以來,[67] 到門投片後, 雖於倭人讌會中常常見面, 頗致周旋, 訖未晉署一謁. 直至三月中旬, 始帶同繙譯前來拜會. 想必是該外務有函來屬, 故爾如此. 此實台端婉詰之功也. 現已定期請讌, 加意綢繆, 當可漸臻親密. 此間交涉, 諸凡平平, 尚稱順手. 外務大臣久改大隈重信, 伊藤博文頃充樞密院長, 接辦內閣總理者係黑田清隆. 局面又小有更變, 朝防暫可無事. 所宜備者只東北一方耳. 手復. 即頌勛祺.

愚弟黎庶昌頓.

三月二十六日.

4월 30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2월 중에 黎庶昌 駐日本大臣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조선의 駐日本參贊 대리 公使 金嘉鎭이 두 차례 문 앞에서 片文을 건넸을 뿐, 전혀 아직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응당 저는 곧바로 조선 정부에 전달해 알렸고, (조선 정부는) 해당 參贊에게 서신을 보내 찾아가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黎庶昌 大臣에게) 서신으로 답장을 보낸 외에, 마땅히 보고서를 갖추면서 아울러 黎庶昌 大臣이 보내온 서신 및 제가 답장한 서신을 첨부하여 李 中堂大人께 검토해 주십사 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9일 다시 黎庶昌 大臣이 보내온 다음과 같은 답장 서신을 받았습니다.

3월 중순에 해당 參贊 金嘉鎭이 비로소 찾아와 만났습니다.

66) 慰亭은 袁世凱의 字이다. 仁兄은 서신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다.
67) 臘은 臘日(음력 12월 8일)이나 아니면 12월을 가리키는 용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응당 黎庶昌 대신의 답장 서신을 첨부해 올리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보고를 받았으므로) 이에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리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1.「淸摺 초록」

삼가 黎庶昌 駐日本大臣의 답장 서신을 올려 보내니, (李 中堂大人께서) 검토해 주십시오.

慰亭 仁兄大人께.
2월 보름날의 서신을 받아 읽었으며, 모든 내용을 받들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기록을 살피시고 우여곡절을 명확히 해 주시니, 삼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金嘉鎭 대리 공사는 제가 지난달 부임한 이래로, 문 앞에 와서 片文을 건넨 뒤에도 일본인들과의 연회에서 종종 만나 제법 교제하게 되었지만, (저의) 관아로 인사하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방문하였습니다. 분명히 조선의 외무대신이 서신을 보내와 독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실로 귀하께서 완곡하게 견책해주신 덕분입니다. 현재 이미 약속을 잡아 연회에 초대하였고 신경 써서 꼼꼼히 준비하고 있으니, 분명히 점차 친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의 교섭 업무는 모두 특별한 것이 없으며, 순조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무대신은 오쿠마 시게노부로 바뀌었고, 이토 히로부미는 추밀원장이 되었으며, 내각총리대신을 승계한 사람은 구로다 기요타카입니다. 국면에 변화가 적으니 조정의 방비에도 당분간은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북 방면에 대해서만 대비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행복을 축원합니다. 저 黎庶昌이 삼가 올립니다.
3월 26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9) 문서번호 : 2-1-3-75(1359, 2494a-2497a)

사안 : 조선의 朴定陽 사신이 章程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미 조선에 주재하고 있는 袁世凱 道員이 (조선 정부 및 外署에) 照會를 보내 확실히 조사하도록 하였다고 미국 出仕大臣 張蔭桓이 咨文으로 답장하였습니다(出使美國張大臣咨覆, 韓朴使違章事, 已由駐韓袁道照會切實查究).

날짜 : 光緒十四年六月二十六日(1888년 8월 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六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六月初八日, 接奉憲台札開：

五月二十八日, 准出使美、日、秘國大臣張咨開：

光緒十四年三月二十五日, 准貴大臣咨開：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袁世凱稟稱：

竊照本月初十日, 朝鮮外署督辦趙秉式以國王命來稱：

接朴使電啓：

前定三端本不敢違. 惟至美後, 查探物情, 如由華使挈往外部, 美廷有意斥退國書. 故冒罪違章, 始全使命. 待回請罪.

云. 國王意如五國使繼至各國, 再有此種難便, 重違定章, 殊非事體. 擬請先探憲意, 如垂念難便苦情, 准其將挈同赴外部一節變通辦理, 即具咨懇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請得允後，再飭如五國使恪遵各端先見華使商明，免同挈往以全事體而免違章.

等語. 當經電稟憲台鑒核訓示，旋於十一日酉刻接奉憲台電開：

總署本日電：

三端既經議定，豈容輕改更張. 著即電知該國王，恪遵前議辦理. 遵旨電達.

云. 即致韓政府轉達.

等因. 奉此. 當即欽遵照會韓政府、外衙門轉達國王恪遵前議辦理. 嗣於十四日、十七日，先後接准韓政府、外衙門照覆：

欽遵電旨轉達國王.

各等因. 除已隨時擇要電稟憲台鑒核外，茲將卑府與韓政府、外衙門往來各照會，繕具清摺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請煩查照.

等因. 准此. 查朴使電報該國內稱：

前定三端，本不敢違. 惟至美后，查探物情，如由華使挈往外部，美廷有意斥退國書. 故冒罪違章，始存使命. 待回請罪.

等語. 不知該使所謂查探物情者，果何所據. 當該使來美之初，本大臣照會外部，以屬國遣使挈同來見，請定期接晤，已准外部照覆，而該使不來通謁. 因於上年十一月二十八日，派參贊前往詰問，該使以津約三端未奉政府明文，堅不遵照. 本大臣只可親往外部，為之先容，以圓外部定期接晤之說. 所有問答要言，前經電達貴大臣查照. 該使所電，證以本大臣與美外部照會問答各節，大相徑庭. 該國憑該使一電，遽請將已定之事，變通辦理，殊屬非是.

大凡遣使之國，奉使之人，均以誠信為本. 若謂兩地遙隔，便可以詐偽為之，甚非慎重邦交之意. 奉使在外，若有商請政府之事，須確有憑據，又於本國實有裨益，庶可酌請. 苟以虛無縹渺之詞，冀逞私臆，幾何不誤國事也. 且挈晤外部係一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呈遞國書係一事，本大臣照會美外部時業已聲明．如美廷設有斥退國書之意，則外部照覆豈能如是圓到？外部答本大臣之言，又豈能如是切當？即如該使之說查探物情如是，何以本大臣派員詰問時，該使但以未奉該國明文搪塞，其他概不提及？縱該使意存自外，不肯關白本大臣，亦應電商該國政府示遵．事關三國交際，非使者所能專擅．萬國公法頭等公使本有代君行權之條，此係各國未設電線以前舊說．現在電報廣通，朝發夕至，即頭等公使遇此等要件，亦不得如是辦法．況非頭等公使乎!

朝鮮既奏准遣使，而不責使者以遵奉條教．設奉使之人無知妄作，事後但以回國請罪為解，恐於該國遣使之意有損無益．茲朴使於違章之後，該國電詢，乃捏造子虛烏有之言，以自欺其政府．該國政府既據電商請變通，抑何速也?

本大臣本年正月十四日，准貴大臣抄奏咨會，准朝鮮國王咨請代奏遵辦之文．當於正月二十五日，照會朴使詢其三端明文究於何年月日奉到．正月二十七日，據該使呈復:

津約三端於光緒十三年十二月初四日亥刻承奉本國電飭恭遵．理合備文呈復．等語．證以該國政府上年十二月二十五日函復袁升道所稱:

前議三端，已於赴美使臣啓行之前飭令遵辦．業經國王咨請轉奏．

等語．又相矛盾．韓政府之言實，則朴使之言虛矣．若朴使之言實，則韓政府之言虛矣．尤訝朴使電報政府自認"冒罪違章，"而其呈復本大臣又謂:"津約三端係上年十二月初四日亥刻奉到，"閃爍其詞，一似無可質證者．該國既責該使違章，又欲變通前議．若非明奉諭旨斥駁，則該國一誤再誤，未始非用人不當之累也．朝鮮藩服垂數百年，設有不檢，中國向存字小之誼，無不予以寬典．惟該國既與歐墨諸洲通使，自應慎選使才，否則遺害無窮．屬國之憂，抑亦中國所軫念也．

所有該使呈文並徐參贊詰問節畧,[68] 業於二月十一日抄粘咨會．茲准前因，除照會朴使外，理合咨明貴大臣察核轉行袁升道照會韓廷，俾祛謊惑，以顧國維，並令飭取朴電物情確據見覆．此[此)說有關中美睦誼，信如所云．是韓為華累，美且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薄華而拒韓，拳念邦交虛實，均應澈究．望切施行．

等因．到本閣爵大臣．准此．合行札飭，札到該升道，即便照會韓政府查明據實具覆．等因．奉此．當即備文照會朝鮮政府暨外署，迅速逐細查明據實見覆，以憑轉詳．去後，當於十三日，接准該政府照覆內開：

查前此敝邦駐美使臣朴定陽電稟：

查探物情，有意斥退國書．

等語．未知該使有何所據，而外署督辦只憑來電密商於貴總理，實出無隱之意而已．茲承北洋大臣訓示，張大臣駁辨各條，義峻理嚴，深以中外邦交為念．反覆以思，驚悚不安．至三端飭遵一案，該使既自認冒罪違章，而其呈復張大臣乃以奉到電飭日子執定為證者，自歸歧異，無庸更核所有該使因何漫稱查探物情各等語．本政府無以懸揣臆對，俟詰明該使再行詳覆，實合事理．相應先此備文照覆貴總理，請煩查照，婉辭轉詳為感．

等因．准此．同日接准該外署照覆，詞同前因．理合據覆，稟請憲台鑒核轉咨，實為公便.[69]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6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

68) 李文杰,『中國近代外交官群體的形成(1861~1911)』(三聯書店, 2017), 311~314쪽의「駐美參贊」명단에 따르면 徐參贊은 아마 徐寿朋(?~1901)을 가리키는 것 같다. 자는 진재(进斋)로 직예(直隸) 청원(清苑) 사람으로 본적은 절강성(浙江省) 소흥(绍兴)이었다. 1876년 도원(道員) 신분으로 미국·일본공사관의 이등참찬, 주페루참찬·섭행공사사(摄行公使事) 등을 지냈으며, 1898년 귀국하여 안휘성(安徽省)의 휘녕지태광도(徽宁池太广道), 안휘안찰사를 지냈으나, 반년도 되지 않아 소환되어 삼품경당(三品京堂)으로 전권의약대신(全权议约大臣)에 충임되어 1899년 9월 대한제국과「한·청통상조약청」을 체결하였고, 뒤이어 출사한국대신(出使韩国大臣)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1900년 의화단 사건 이후 이홍장의 추천으로 신축조약 체결을 돕도록 소환되었고, 외무부 좌시랑으로 승진하였으나 곧 병사하였다.

69) 公便은 公事에 便하다는 뜻이다. 上行文의 끝맺음을 하는 말로 '实为公便'이란 용어를 자주 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가 6월 8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8일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보낸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광서 14년 3월 25일, 귀 대신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이번 달 10일에 조선의 外署督辦 趙秉式이 국왕의 지시로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보내 온 다음과 같은 狀啓를 받았습니다.

전에 의정하였던 '另約三端'을 본래 감히 어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도착한 후 物情을 살펴보니, 만약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이에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김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돌아가 죄를 청하기를 기다립니다.

국왕께서는 5개국 使臣이 차례로 각국에 도착한 후 다시 이러한 종류의 불편이 생겨, 거듭 정해진 章程을 어긴다면 事體에 매우 어긋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이에 청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李 中堂大人의 뜻을 살펴 만약 이렇게 불편하고 괴로운 사정을 배려하여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같이 간다'고 하는 부분을 변통해 처리해 주실 수 있다면, (정식으로) 咨文을 갖추어 간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허를 얻은 후, 다시 5개국 사신에게 알려 각 章程을 삼가 따르게 하여, 먼저 중국 사신을 만나 상의하되 같이 (外部에) 가는 것은 면함으로써, 事體는 온전히 하되 章程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곧바로 李 中堂大人께 전보를 보내 검토 후 훈시해 주실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어 11일 酉刻에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總理衙門에서 오늘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

'另約三端'은 이미 논의하여 결정된 것인데, 어찌 가벼이 고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조선 국왕에게 전보로 알려, 전에 논의한 대로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諭旨를 받아 전보로 전달합니다.

(이것을) 즉시 조선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에 곧바로 삼가 지시를 받들어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에 照會를 보내 국왕께 전달하게 하고 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14일과 17일에 선후로 조선 정부와 외무아문으로부터 각각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전보로 보내주신 諭旨를 받아 국왕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수시로 요점을 간추려 전보로 보고를 올려 검토하시도록 한 것 외에, 지금 저와 조선 정부 및 외무아문 사이에 오고 간 照會를 삼가 올려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咨文으로 알리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검토해보니 朴定陽 公使가 조선에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전에 議定하였던 '另約三端'을 본래 감히 어길 뜻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도착한 후 物情을 살펴보니, 만약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이에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김으로써 사명을 온전히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돌아가 죄를 청하기를 기다립니다.

해당 公使가 이야기한 "物情을 살핀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公使가 미국에 처음 왔을 무렵에 본 대신은 (미국) 外部에 照會를 보내, 속국에서 사신을 보냈으니 인솔하여 같이 가서, 기일을 정해 정식으로 만날 것을 청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미 (이에 대해) 外部의 답장 照會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公使는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28일 參贊官을 보내 힐문하였더니, 해당 公使는 '另約三端'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끝내 따르지 않았습니다. 본 대신은 친히 外部에 가서 그를 잘 봐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外部가 기일을 정해 만나자고 하였던 말을 둘러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문답 要言은, 전에 전보로 전달하여 귀 대신이 검토하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해당 公使가 전보로 한 이야기는, 본 대신과 미국 外部가 照會로 주고받은 문답의 각 내용이 증명하듯,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은 해당 公使의 전보 하나만을 근거로 하여 갑자기 이미 정해진 일을 바꾸어 처리하자고 청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릇 사신을 파견한 나라나, 사신이 된 사람이나 모두 신뢰를 근본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양쪽이 멀리 떨어져 있어 거짓말로 넘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邦交를 신중히 하려는 의도와 크게 어긋난 것입니다. 외국에 사신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만약 정부에 상의하여 요청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여, 또 본국에도 실제로 보탬이 되는 것이라야만 비로소 참작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허한 말로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 과시하려 한다면 어찌 나랏일을 그르치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 공사의) 인솔 아래 外部에 만나러 가는 것이 한 가지 일이고, 國書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일로서, (이는) 본 대신이 미국 外部에 照會를 보냈을 때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설령 國書를 물리칠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外部의 답장 照會가 어찌 이리 원만한 내용이었겠습니까? 外部에서 본 대신에게 답한 언사 또한 어찌 이리 사리에 꼭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즉 해당 公使가 이야기한 "物情을 살핀다"라는 것이 이와 같다면, 본 대신이 인원을 파견하여 힐문하였을 때 어찌 해당 公使는 단지 조선 정부의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하였다고만 얼버무리고,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설령 해당 公使의 뜻이 스스로 벗어나 본 대신에게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지라도 역시 응당 조선 정부에 전보로 상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하였을 것입니다. 사안이 세 나라의 외교와 관련된 것으로서, 사신이 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국공법에 頭等公使가 본래 군주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조목은, 각국이 전선을 설치하기 이전의 옛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전보가 널리 통하여 아침에 보내면 저녁에 도착하므로, 頭等公使가 이러한 요건을 만나더라도 또한 이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물며 頭等公使가 아닌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조선은 사신 파견에 대해 상주하여 승인을 받고서는 사신이 법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사신이 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덤벙거릴지라도, 사후에 단지 '귀국 후 죄를 청하겠다'는 것으로 변명하고 있으니, 아마도 조선이 사신을 파견하는 뜻에 손해만 끼칠 뿐 이익은 없을까 염려됩니다. 지금 朴定陽 公使는 章程을 어긴 후 조선 정부가 전보로 문의하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날조하여 스스로 그 정부를 속였습니다. 조선 정부는 그 전보에 의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여 변통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찌 이리 급할 수가 있습니까? 본 대신은 올해 정월 14일에, 조선 국왕이 (‘另約三端’을) 준수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문건을 대신 상주해달라고 청한 咨文을 받은 귀 대신이, (해당) 상주문을 초록하여 보내신 咨文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월 25일에 朴定陽 公使에게 照會를 보내 ‘另約三端’에 대한 공문을 도대체 무슨 해 몇월 며칠에 받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정월 27일에 해당 공사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津約三端’은 광서 13년 12월 4일 亥刻에, 본국에서 전보로 삼가 따를 것을 지시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이에 마땅히 문건을 갖추어 답변을 올립니다.

이는 조선 정부가 작년 12월 25일 袁世凱 升用道에게 다음과 같이 답신을 보냈습니다.

> 전에 논의한 ‘另約三端’은 미국에 부임한 朴定陽 公使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지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국왕께서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또한 서로 모순됩니다. 조선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朴定陽 公使의 말은 거짓입니다. 만약 朴定陽 公使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선 정부의 말은 거짓입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조선 정부에 보고하기를,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겼다”고 자인하였으면서도, 본 대신에게 답변을 올릴 때는 또다시 “‘津約三端’을 작년 12월 4일 亥刻에 받았다”고 하고 있으니, 말을 이리저리 둘러대는 것이 도저히 質證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은 해당 公使가 章程을 어긴 것에 대해 견책하였으면서도, 또한 전에 논의한 것을 변통하려고 합니다. 만약 반박하여 물리치는 諭旨를 명확히 받지 않는다면 조선은 계속하여 잘못을 저지를 것이며, 단지 사람을 잘못 써서 오는 폐해만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조선은 藩服으로 있은 지 수백 년으로서, 설령 제멋대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은 작은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情誼를 줄곧 지켜오면서 관대한 恩典을 베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미 歐美 여러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 스스로 응당 인재를 선택하고 부리는 데 신중해야 하는 바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끼치는 일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속국의 근심은 또한 중국이 마음 써서 걱정하는 바입니다.

해당 公使의 보고문과 徐壽朋 參贊이 힐문한 요약문 모두는 이미 2월 11일에 초록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 咨文에 덧붙여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와 같은 咨文을 받았으므로, 朴定陽 公使에게 照會를 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귀 대신에게 咨文으로 밝히는 바이니, 검토하신 후 升用道 袁世凱에게 보내 조선 정부에 照會하도록 함으로써, 의혹을 떨쳐버리고 국가의 法紀를 돌아보도록 하며, 아울러 朴定陽 公使가 전보로 이야기한 '物情'의 확실한 근거를 취하여 답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친목과 관계된 바라는 점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조선이 중국의 累가 된다면, 미국 또한 이로 인해 중국을 경시하고 조선을 거부할 것이니, 邦交의 허실을 염두에 두고 응당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부디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咨文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지시해야 할 것이니, 지시가 도착하면 袁世凱는 즉시 조선 정부에 照會하여, 조사하여 밝힌 후 사실에 근거하여 답장하도록 하게 하라.

(이러한 지시를 받았으므로 袁世凱는) 즉시 문서를 갖추어 조선 정부 및 外署에 照會를 보내, 신속하고 세세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사실에 근거하여 답장함으로써 그 보고를 받고 위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13일에, 해당 정부가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이전에 저희 쪽 駐美使臣 朴定陽이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物情을 살펴보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해당 사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外署 督辦은 단지 전보에 의지하여 귀 총리께 비밀리에 상의를 드린 것으로, 실로 숨기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지금 북양대신의 訓示를 받들어 張蔭桓 대신이 다툰 각 조목을 보니, 이치가 엄격하고 확실하여 中外의 邦交를 깊이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도 놀랍고 두려워 불안할 따름입니다. '另約三端'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신이 이미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겼다"고 자인하였으면서도, 張蔭桓 대신에게 보고를 올릴 때는 전보로 지시를 받은 일자를 스스로 정해 증거로 댐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해당 사신이 어찌하여 제멋대로 "物情을 살핀다"고 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본 정부는 짐작으로만 옳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해당 사신을 견책하여 명확히 밝힌 후 다시 자세히 답장을 드리는 것이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이에 앞서 귀 총리께 照會로 답장을 하는 바이니, 청컨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번거롭더라도 검토하시고 완곡하게 보고를 전달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날 해당 外署의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내용은 앞의 照會와 같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을 받아 李 中堂大人께 보고를 올려 청하는 바이니 검토하신 후 咨文을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0) 문서번호 : 2-1-3-76(1360, 2497b-2498a)

사안 :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천진에서 논의한 3가지 조항('津約三端')을 위배한 사안(赴美韓使朴定陽違背津議三條事).

날짜 : 光緒十四年六月二十六日(1888년 8월 3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六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六月初八日, 接奉憲台札開：

五月二十八日, 准出使美、日、秘國大臣張咨開：

竊照本大臣於光緒十四年三月二十五日, 准貴大臣來文, 以據袁升道世凱稟, 准朝鮮外署照復：

據朴定陽函稱, 該使員查探物情, 如由中國公使挈晤外部, 美廷有意斥退國書. 等情.

據稟咨會前來. 當經本大臣以該使員所稱, 有關中美睦誼, 照飭朴使具復. 去後, 茲據該使員呈復, 所稱"查探物情"一節, 詞意含渾, 並執定津議三端, 該使員係於上年十二月初四日奉電, 即起行日期亦與袁升道所稟不符. 相應照錄該使員呈文, 咨請查照施行.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合行札飭, 札到該升道, 即便查明照知. 計粘抄單.

等因. 奉此. 當即備文照會朝鮮政府暨外署迅速逐細查明, 據實見覆以憑轉詳. 去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當於十三日，接准該政府照覆內開：

查朴使呈覆所稱，查探物情及執定奉電兩節，另有照覆，無須疊煩．至其起行日期，或因該使主辭朝而言，貴總理所報以其開船為據，致有此不符歟．相應照覆貴總理，請煩查照，轉詳可也．

等因．准此．同日接准該外署照覆，詞同前因．理合據覆稟請憲台鑒核轉咨，實為公便．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核．

6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6월 8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8일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내왔다.

삼가 본 대신은 光緒 14년 3월 25일 귀 대신이 보내신 咨文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升用道 袁世凱가 다음과 같은 조선 外署의 답장 照會를 받은 후, 귀 대신께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보내온 서신을 받았는데, 해당 公使는 “물정을 살펴보니 중국 사신의 인솔 아래 外部에 가게 되면, 미국 정부가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신은 해당 공사가 이야기한 것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친목과 관계된 것이라 여기고, 朴定陽 公使에게 답장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公使가 답장을 올린 것을 받았는데, “물정을 살핀다”라고 한 구절에 대해서는 표현이 모호하고, ‘津議三端’에 대해서는 해당 公使가 작년 12월 4일에 전보로 받들었다고 하고 있으며, 출발 일자 역시 袁 升道가 보고하였던 바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마땅히 해당 公使가 올린 보고를 초록하여 咨文으로 보내니, 청컨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땅히 지시를 내리는 바이니, 지시가 도착하면 원세개는 즉시 조사하여 알리도록 하라. 초록문은 첨부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세개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즉시) 문서를 갖추어 조선 정부 및 外署에 照會를 보내, 신속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여 밝힌 후 사실대로 답장함으로써, 이에 따라 보고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13일에 해당 정부가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보내왔습니다.

검토해보니 朴定陽 公使가 올린 회신에서 "物情을 살핀다"고 하였던 부분과 전보로 ('津議三端'을) 받들었다고 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장 照會가 있었으니 번거롭게 중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발 일자에 대해서는, 혹여 해당 公使는 출발에 앞서 조정에 가서 하직 인사를 드렸던 시점을 이야기하고, 귀 총리께서는 선박이 출발한 시점을 근거로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차이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마땅히 귀 총리께 照會로 답변을 드리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보시고 보고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날 해당 外署가 보내온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내용은 앞의 照會와 같습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을 받아 李 中堂大人께 보고를 올려 청하는 바이니 검토하신 후 咨文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아)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1) 문서번호 : 2-1-3-77(1364, 2502a)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三韓派使事).

날짜 : 光緖十四年七月初三日(1888년 8월 1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初三日, 致北洋大臣李鴻章函[詳見密啟].

草目 : 三韓派使由

7월 3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상세한 내용은 密啟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2) 문서번호 : 2-1-3-78(1365, 2502b)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三韓派使事).

날짜 : 光緒十四年七月十四日(1888년 8월 2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七月十四日, 北洋大臣李鴻章電函[詳見收電簿].

草目 : 三韓派使由

7월 14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收電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3) 문서번호 : 2-1-3-79(1379, 2521b)

사안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朝鮮遣使事).

날짜 : 光緖十四年九月十八日(1888년 10월 2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九月十八日, 收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電信簿].

草目 : 朝鮮遣使由

9월 18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電信簿에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의 사신 파견에 관한 사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4) 문서번호 : 2-1-3-80(1394, 2544a-2549a)

사안 :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사안에 대해, 袁世凱가 조사하여 밝혔습니다(駐韓袁道查究韓駐美朴定陽使違制事).

첨부문서 : 1.「원세개가 조선 정부 및 外署에 보낸 서신(袁世凱致韓政府及外署函)」: 전에 북양대신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 간 朴定陽 公使가 章程을 어긴 일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시일이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조사하여 답변하지 않고 있으니 특별히 재차 힐문하는 바입니다(前奉北洋大臣札訓, 查究赴美朴使違制事, 時逾百日, 迄未查覆, 特再行詰問).

2.「조선 정부 및 外署가 袁世凱에 답장한 서신(韓政府及外署覆世凱函)」: 朴定陽 公使가 章程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이미 문의를 하였는데도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니, 해당 사신이 귀국하기를 기다려 철저히 조사한 후 처벌하고자 합니다(朴使違制事經詢未得回音, 擬俟該使回國, 徹查議處).

3.「원세개가 조선 정부 및 外署에 보낸 서신(袁世凱致韓政府及外署函)」: 朴定陽 公使가 조선에 돌아오는 정확한 일자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請示知朴使返韓確期).

4.「조선 정부가 회수한 답장 서신(韓政府抽回覆函)」: 아직 朴定陽 公使의 출발 일자를 모르니, 정확한 보고가 올라오면 다시 서신으로 전달하겠습니다(尙不知朴使行期, 如有確報, 再行函達).

5.「조선 外署가 회수한 답장 서신(韓外署抽回覆函)」: 아직 朴定陽 公使의 출발 일자를 모르니, 정확한 보고가 올라오면 즉시 서신으로 전달하겠습니다(尙不知朴使行期, 如有確報, 卽將函達).

6.「원세개가 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袁世凱致韓政府函)」: 朴定陽 公使가 章程을 어긴 일과 관련하여, 조선 정부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견책하다(朴使違制事, 譴責韓政府, 推諉不當).

7.「원세개가 조선 外署에 보낸 서신(袁世凱致韓外署函)」: 朴定陽 公使가 章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어긴 일과 관련하여, 조선 外署는 책임을 전가하고 말을 이리저리 바꾸어서는 안됩니다(朴使違制事, 譴責韓外署, 不應推諉責任, 依違其詞).

8.「조선 정부가 따로 고쳐서 袁世凱에 답장한 서신(韓政府另改覆袁世凱函)」: 이미 전보를 보내 朴定陽 公使가 다음 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재촉하였습니다(已發電促朴使返國下月可抵).

9.「조선 外署가 따로 袁世凱에 답장한 서신(韓外署另覆袁世凱函)」: 朴定陽 公使는 다음 달에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입니다(朴使下月卽自美返國).

날짜 : 光緒十四年十一月初六日(1888년 12월 1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十一月初四日,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本年六月初八日, 奉憲台札開：

五月二十六日, 准出使美、日、秘大臣張咨開, 朝鮮駐美使臣朴定陽違章, 並澈究該使電稟：“查探物情, 有意斥退國書”各緣由一案.

當經遵飭照會韓政府、外署查覆, 嗣准照覆以“俟詰明該使, 再行詳覆.” 等因. 業經稟請憲台查核各在案. 伏查六月至今, 已百有餘日, 該政府、外署應早詰明該朴使, 乃迄今尚無續告. 卑府當經隨時電稟請示, 並奉電諭, 遵卽於九月十八日函催該政府、外署查覆. 去後, 嗣於二十六日准該政府、外署覆函. 概稱:

該使將匪久回國, 擬面詢事實, 澈底查究, 據稟議處.

等語. 查韓廷向於此案任意狡抗, 希圖託延. 其云“匪久回國”一語, 似難准信. 復於二十八日函詰以該使已否啓行, 何時抵境, 望明白詳覆. 十月初五日復准該政府、外署覆函, 概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該使已否啓行，何時抵境，未可的對.

等語. 復查該朴使行止進退，韓廷豈有未聞? 顯係狡抗託延，殊非商辦要公之道. 因於十月初七日逐層函詰，該政府、外署自知無可置辯，乃稟請韓王撤該使速回. 王亦自知詞詘術窮，非含糊推諉所能了事，乃允電招該使從速回國，並令政府派員暨外署督辦趙秉稷先後來卑署謝罪請恕，力懇繳銷詰函,[70] 並懇將初五日復函抽回，另改具覆函，告明該朴使啓行及抵境日期. 卑府查朝鮮各官前來稱述各語尚屬恭順，因即允其所請辦理. 謹將卑府與韓政府、外署往來函八件及繳銷抽回函四件，抄具清摺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批飭俟朴定陽回抵朝鮮，再催詰問具報外，相應將清摺咨送貴衙門，請煩查核.

照錄清摺：謹將卑府與韓政府、外署往來各函件，繕呈憲鑒.

1.「致韓政府、外署函」

敬啓者：

本年六月初八日，奉文華殿大學士李札開：

五月二十八日，准出使美、日、秘大臣張咨開，朝鮮駐美使臣違章，並澈究該使電稟查探物情有意斥退國書等語一案.

當即照會貴政府、衙門查照，迅速逐細查明，據實見覆，以憑轉詳. 去後，旋於六月十三日，准貴政府、衙門照覆內開：

查前此敝邦駐美使臣朴定陽電稟：

查探物情，有意斥退國書.

等語. 未知該使有何所據，而本政府、督辦只憑來電，密商於貴總理，亶出無隱之意而已. 茲承北洋大臣訓示，張大臣駁辯各條，義峻理嚴，深以中外邦交為念. 反覆以思，驚悚不安. 至三端飭遵一案，該使既自認"冒罪違章，"而其呈復張大臣乃以奉到電飭日子執定為證者，自歸歧異，無庸更核所有該使因何漫稱查探物情各等語. 本政府、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辦誠難懸揣臆對, 俟詰明該使, 再行詳覆, 實合事理. 相應先此照覆, 請煩貴總理先此查照, 婉辭轉詳為感.

等因. 准此. 本總理當即將貴政府、衙門來文各意轉詳各在案. 惟計六月初八日至本月十八日已經百日之久, 想貴政府、衙門早應詰明該使詳細見覆, 俾得明白轉詳. 何以至今尚無一詞相告, 本總理殊為疑訝. 相應備函布問, 即希貴政府、衙門, 速將詰明該使各節詳晰見覆, 以憑轉報. 至為企盼. 手此. 順頌升祺, 並候回玉, 不一.[71]

九月十八日.

2.「韓政府、外署覆函」

敬覆者：

昨接大函內開云云.[72] 等因. 查六月間本政府、衙門, 將貴照會各節備函郵致駐美朴使, 逐細詰問. 至今未接回音. 正在懸望間, 茲奉函詢, 實不知所以為對也. 思朴使所云"查探物情"等語, 如非有十分確證, 則其輕信不審, 亦可以知之矣. 該使將匪久回國, 擬面詢事實, 澈底查究, 據稟議處, 並將詳細情形縷述尊處可也. 尚求鑒原為感. 此復. 順頌升安.

九月二十六日.

3.「致韓政府、外署函」

敬啓者：

前布寸函, 請詰明駐美朴使一節, 當准貴政府、衙門覆函內開云云. 等因. 准此. 查貴函所開該使朴定陽"匪久回國"一語, 未識該使已否由美啓行, 約計何時可抵韓境, 尚望明白詳覆, 至為禱盼. 手此. 順頌台祺, 並候玉言.

九月二十八日.

4.「韓政府抽回覆函」

敬覆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昨接來函內開云云. 等因. 查向據駐美朴使來信, 聞有身病將匪久回國而已. 其已否啓行, 何時抵境, 姑未可的對. 如有確報, 當由外署徑達尊處也. 此復. 並頌升安.
十月初五日.

5.「韓外署抽回覆函」
敬覆者：
接奉來函內開云云. 等因. 查向據駐美朴使來信, 聞有身病將匪久回國而已. 其已否啓行, 何時抵境, 未可的對. 如有確報, 當即仰布. 尚祈涵亮. 此復. 順頌升祺.
十月初六日.

6.「致韓政府函－已繳銷」
敬啓者：
本月初五日, 准貴政府覆函內開云云. 等因. 准此. 查該使朴定陽有全權使任, 而貴政府為號令所自出. 如該使行止不先請示, 而貴政府亦不與聞, 猶得謂之政府乎? 且該使受朝鮮重任, 自應貴政府之命是聽. 如不待命令而自為行止, 亦得謂之朝鮮使臣乎? 本總理將謂：“必無是理.” 查貴函有云：“據朴使來信, 聞有身病將匪久回國.” 等語. 果有此信, 必貴政府已允其即回, 確實可據, 始可以此覆告本總理. 豈有僅據該使自稱將回, 貴政府未加允否, 遽爾輕信, 即以此覆告本總理耶? 況電報咫尺, 瞬息萬里, 該使啓行與否, 理應隨時電達, 即貴政府既准本總理鄭重函詢, 亦不難隨時電查, 而貴政府來函委為何時抵境未可的對, 猶可說也. 乃委為已否啓行未可的對, 實未免依違之詞, 非本總理之所願聞. 總之, 為國之道, 非信不立, 以此論交尚且不可. 況用之中韓往來要公乎! 本總理深為貴政府惜之.
再. 貴函又云：
　如有確報, 當由外署徑達尊處.
等語. 惟查此案迭奉諭旨, 事體重大, 向由貴政府往返商辦. 如僅由外署徑達, 恐難以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達中朝, 是貴政府欲藉以推諉也. 夫依違其詞, 推諉其事, 在朴定陽猶失使體. 豈貴政府而亦出此, 誠非所望. 惟望貴政府將該使已否啓行一節, 從實詳覆. 實為至盼. 此布. 順頌台祺. 並候復音.

十月初七日.

7.「致韓外署函－已繳銷」

敬啓者：

本月初六日, 准貴督辦覆函內開, 云云. 等因. 准此. 查該使朴定陽有全權使任, 而貴督辦統交涉之大權. 如該使行止不先請示, 而貴督辦亦不與聞, 猶得謂之統署乎? 且該使受朝鮮重任, 自應貴統署之命是聽. 如不待命令而自為行止, 亦得謂之朝鮮使臣乎? 本總理將謂：“必無是理.” 查貴函有云：“據朴使來信, 聞有身病將匪久回國.” 等語. 果有此信, 必貴統署已允其即回. 確實可據, 始可以此覆告本總理. 豈有僅據該使自稱將回, 貴統署未加允否, 據爾輕信即以此覆告本總理耶? 況電報咫尺, 瞬息萬里, 該使啓行與否, 理應隨時電達, 即貴督辦既准本總理鄭重函詢, 亦不難隨時電查, 而貴督辦來函委為何時抵境未可的對, 猶可說也. 乃委為已否啓行未可的對, 實未免依違之詞, 非本總理之所願聞.

總之, 為國之道非信不立, 以此論交尚且不可. 況用於中韓往來要公乎! 本總理深為貴督辦惜之. 惟望貴督辦將該使已否啓行一節, 從實詳覆. 實為至盼. 此布. 順頌台祺, 並俟復音.

十月初七日.

11월 8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11월 4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

70) 繳銷는 문서를 반납하여 그 문서의 효력을 말소한다는 의미이다.
71) 불일(不一)은 하나하나 상세히 말하지 않는다, 못한다는 뜻으로, 서신 말미에 쓰는 상용어다.
72) 대함(大函)은 다른 사람에게서 온 서신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삼가 올해 6월 8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6일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咨文을 보내,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으니, 해당 公使가 전보로 "물정을 살펴보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다"고 보고한 각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지시를 받들어 조선 정부와 外署에 照會를 보내 조사 후 답장하라고 하였고, 이어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해당 公使를 견책하여 밝힌 후, 다시 상세히 회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올려 李 中堂大人께서 검토해 주십사 청한 바 있습니다. 엎드려 살펴보건대 6월부터 지금까지 이미 백여 일이 지났고, 해당 정부와 外署는 응당 조속히 해당 朴 公使를 견책하여 밝혀야 함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 뒤이은 보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수시로 李 中堂大人께 전보로 보고하여 지시를 청하고 아울러 전보로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9월 18일 해당 정부와 外署에 서신을 보내 조사하여 회신을 재촉하였습니다. 그 후 26일에 해당 정부와 外署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모두

해당 公使가 오래지 않아 귀국할 것이니, 직접 만나서 사실을 묻고 철저히 조사해서 밝힌 후, 보고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조선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제멋대로 교활하게 저항하면서 핑계를 대어 지연시키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지 않아 귀국한다"고 한 말도 신뢰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이에) 다시 28일에 서신을 보내, 해당 사신이 이미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답장하기를 견책하였습니다. 10월 5일에 다시 조선 정부와 外署의 다음과 같은 답장 서신을 받았습니다. 모두

해당 사신이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보아도 해당 朴 사신의 행방과 거취에 대해 조선 정부가 어찌 들은 바가 없겠습니까? 이는 분명 교활하게 저항하면서 핑계를 대어 지연시키는 것이니, 중요한 공무를 상의하여 처리하는 도리에 매우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10월 7일 거듭 서신을 보내 견책하였더니, 조선 정부와 外署는 변명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는, 국왕에게 보고를 올려 해당 公使를 철수시켜 신속히 돌아오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국왕 역시 언사가 허술하고 책략이 다하자 모호하게 책임을 전가해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스스로 깨닫고는, 전보를 보내 해당 公使를 조속히 불러들여 귀국시킬 것을 윤허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고 外署督辦 趙秉稷으로 하여금 선후로 제게 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청할 것을 지시하고, 제가 보낸 힐문 서신을 반납하여 말소시켜 줄 것을 힘써 간청하였습니다. 또 5일에 보낸 답신을 회수한 다음 따로 고쳐서 회신함으로써 해당 朴 사신의 출발 및 도착 일자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조선 각 관원이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그래도 공순하여, 간청한 대로 처리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삼가 저와 조선 정부 및 外署 사이에 주고받은 서신 8건과 반납하고 회수한 서신 4건을 초록하여 첨부해 올리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朴定陽이 조선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재촉하여 힐문한 후 보고를 올리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외에, 응당 첨부문서를 貴 아문에 咨文으로 보내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첨부문서 : 삼가 저와 조선 정부 및 外署 사이에 주고받은 각 서신을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1.「조선 정부와 外署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올해 6월 8일, 李 中堂大人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5월 28일에 미국·스페인·페루 3개국 出使大臣 張蔭桓이 咨文을 보내, 조선의 駐美公使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으니, 해당 公使가 전보로 "물정을 살피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다"고 보고한 각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곧바로 귀 정부와 外署에 照會를 보내, 검토한 후 신속하고 자세하게 조사해 밝혀서 사실대로 답장함으로써, 이에 의거하여 보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6월 13일 다음과 같은 귀 정부와 外署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이전에 저희 쪽 駐美使臣 朴定陽이 전보로 다음과 같이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物情을 살펴보니, 고의로 國書를 물리칠 것 같았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당 사신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본 정부와 外署督辦은 단지 전보에 의지하여 귀 총리께 비밀리에 상의를 드린 것으로, 실로 숨기지 않은 뜻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지금 북양대신의 訓示를 받들어 張蔭桓 대신이 다툰 각 조목을 보니, 이치가 엄격하고 확실하여 中外의 邦交를 깊이 유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해도 놀랍고 두려워 불안할 따름입니다. '另約三端'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신이 이미 "죄를 무릅쓰고 章程을 어겼다"고 자인하였으면서도, 張蔭桓 대신에게 보고를 올릴 때는 전보로 지시를 받은 일자를 스스로 정해 증거로 댐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졌으니, 해당 사신이 어찌하여 제멋대로 "物情을 살핀다"고 한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본 정부와 外署독판은 짐작으로만 옳다고 판단할 수 없으니, 해당 사신을 견책하여 명확히 밝힌 후 다시 자세히 답장을 드리는 것이 진실로 사리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이에 앞서 照會로 답장하는 바이니,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총리께서 먼저 검토하시고 완곡하게 보고를 전달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총리는 바로 귀 정부와 外署에서 온 문건의 각 내용을 전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아려보면 6월 8일부터 본월 18일까지 이미 100일이나 지났으니, 귀 정부와 外署는 조속히 해당 사신에게 힐문하여 상세히 답장함으로써 분명하게 보고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터인데, 어찌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알려주지 않는지 본 총리는 매우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에 마땅히 서신을 갖추어 문의하는 바이니, 귀 정부와 外署는 조속히 해당 사신을 힐문하여 밝힌 각 내용을 상세히 회신함으로써, 이를 전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9월 18일.

2.「조선 정부와 外署의 답신」

삼가 알립니다.

어제 보내주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6월 중에 본 정부와 外署는 귀하께서 보내신 照會의 각 내용에 대해 서신을 갖추어 우편으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朴定陽 公使에게 보내 하나하나 자세히 힐문하였습니다. 아직 답장을 받지 못하여 한참 걱정하던 중에 지금 문의 서신을 받으니 실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에 朴定陽 公使가 이야기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물정을 살핀다”는 말에 만약 충분한 확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솔히 믿고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公使가 장차 머지않아 귀국할 것이니, 직접 만나 사실을 물어 철저히 조사한 다음 보고에 의거하여 처벌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자세한 정황을 귀하께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길 빕니다.
9월 26일.

3.「조선 정부와 外署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전에 제가 서신을 보내,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朴定陽 公使를 힐문하여 사실을 밝혀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 귀 정부와 外署로부터 바로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토해보니 귀하의 서신에 해당 公使가 “오래지 않아 귀국한다”는 말이 있는데, 해당 公使가 미국에서 출발하였는지와 대략 언제 조선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 분명하고 상세하게 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9월 28일.

4.「조선 정부가 회수한 답신」

삼가 답장합니다.
어제 보내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駐美公使 朴定陽이 서신을 보내와서,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임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진실로 정확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확한 보고가 올라온다면, 응당 外署에서 귀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신을 마칩니다. 아울러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조선 外署가 회수한 답신」

삼가 답장합니다.

보내신 서신을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보니 전에 駐美公使 朴定陽이 서신을 보내와서,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임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이미 출발하였는지와 언제 조선에 도착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확한 보고가 올라온다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6일.

6.「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이미 반납하여 말소함)」

삼가 알립니다.

본월 5일에 귀 정부에서 보낸 답신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해당 公使 朴定陽은 全權을 부여받아 임용된 것이고, 귀 정부는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만약 해당 公使가 행동거지에 대해 먼저 지시를 청하지 않고 귀 정부 역시 들은 바가 없다면, 이를 정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해당 公使는 조선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응당 오로지 귀 정부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거지를 결정한다면, 또한 조선의 사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총리는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서신을 보니 "朴定陽 公使가 서신을 보내와서 (朴 公使가)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서신이 있었다면, 필시 귀 정부는 이미 그의 귀국을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확실하여 근거를 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변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해당 사신이 장차 스스로 귀국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만 근거하여, 귀 정부의 허락 여부도 없이 돌연 가벼이 믿은 채,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장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전보를 보내면 거리가 가까워져 순식간에 만 리를 가니, 해당 사신의 출발 여부도 마땅히 수시로 전보로 알릴 것입니다. 귀 정부는 이미 본 총리가 거듭 서신으로 문의한 것을 받았으니, 수시로 전보를 보내 조사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 정부가 서신을 보내 진실로 "언제 도착할지 아직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로 "이미 출발하였는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말을 돌려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총리가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컨대,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신뢰가 아니면 설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邦交를 논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하물며 중국과 조선 사이에 오고 가는 중요한 공무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본 총리는 심히 귀 정부에 대해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첨부합니다. 귀하의 서신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확실한 보고가 올라오면 응당 外署에서 직접 귀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이미 누차 諭旨를 받든 것으로서 사태가 아주 중대하니, 귀 정부에서 오고 가며 상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단지 外署에서만 전달한다면 중국 조정에 전해지기 어려울까 염려되니, 귀 정부는 이것을 빌미로 또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입니다. 무릇 말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朴定陽은 사신으로서의 체신을 완전히 잃은 것과 같습니다. 어찌 귀 정부 또한 이런 식으로 나서려는지, 진실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귀 정부가 해당 사신이 이미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10월 7일.

7. 「조선 外署에 보낸 서신(이미 반납하여 말소함)」

삼가 알립니다.

본월 6일에 귀 督辦으로부터 답신을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해당 公使 朴定陽은 全權을 부여받아 임용된 것이고, 귀 督辦은 외교 교섭의 대권을 통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公使가 행동거지에 대해 먼저 지시를 청하지 않고, 귀 督辦 역시 이에 대해 간여하지 않는다면, 어찌 統署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해당 公使는 조선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응당 오로지 귀 統署의 명령만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거지를 결정한다면, 역시 이를 조선 사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총리는 "결코 이런 이치는 없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朴定陽 公使가 서신을 보내와서 (朴 公使가) 병이 들어 곧 머지않아 귀국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과연 이러한 서신이 있었다면, 필시 귀 統署는 이미 그의 귀국을 허락하였을 것입니다. 확실하여 근거를 댈 수 있어야만 비로소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변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해당 사신이 장차 스스로 귀국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에만 근거하여, 귀 統署의 허락 여부도 없이 돌연 가벼이 믿은 채, 본 총리에게 이러한 답변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전보를 보내면 거리가 가까워져 순식간에 만 리를 가니, 해당 사신의 출발 여부도 마땅히 수시로 전보로 알릴 것입니다. 귀 督辦은 이미 본 총리가 거듭 서신으로 문의한 것을 받았으니, 수시로 전보를 보내 조사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 督辦이 서신을 보내 진실로 "언제 도착할지 아직 정확히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로 "이미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로 말을 돌려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총리가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요컨대,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신뢰가 아니면 설 수가 없으니, 이것으로 邦交를 논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하물며 중국과 조선 사이에 오고 가는 중요한 공무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본 총리는 심히 귀 督辦에 대해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귀 督辦이 해당 공사가 이미 출발하였는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상세히 답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평안하시길 빌며, 회신을 기다립니다. 10월 7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5) 문서번호 : 2-1-3-81 (1404, 2555b)

사안 : 조선 使臣 朴定陽이 병으로 인해 이미 10월 16일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韓朴使因病, 已於十月十六日起程還國).

날짜 : 光緒十五年正月初五日(1889년 2월 4일)

발신 : 出使大臣 張蔭桓

수신 : 總理衙門

正月初五日, 出使大臣張蔭桓文稱：

案據朝鮮使員朴定陽報稱：

有病行暫還國. 姑使書記官李夏榮臨時代辦事務, 並留隨員姜進熙同幹. 遇有交涉事件之可以密商者, 專賴庇護.

等情. 據此. 查該使員朴定陽已於十月十六日起程回國. 合亟據情咨呈貴衙門, 請煩查照備案.

5월 5일 出使大臣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 使臣 朴定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이 생겨 임시로 귀국합니다. 일단 서기관 李夏榮에게 임시로 대신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隨員 姜進熙를 남겨 함께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긴밀하게 상의할 교섭 사건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건대 使臣 朴定陽은 이미 10월 16일 출발하여 돌아갔습니다. 마땅히 사실에 따라 貴아문에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6) 문서번호 : 2-1-3-82(1405, 2556a)

사안 : 조선 使臣 朴定陽이 이미 병으로 귀국하였습니다(韓朴使已因病還國).

날짜 : 光緒十五年正月初六日(1889년 2월 5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正月初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正月初二日, 准出使美日秘國張咨開：

案據朝鮮使員朴定陽報稱：

有病行暫還國. 姑使書記官李夏榮臨時代辦事務, 並留隨員姜進熙同幹. 遇有交涉事件之可以密商者, 專賴庇護.

等情. 據此. 查該使員朴定陽已於十月十六日起程回國. 合亟據情咨會貴大臣, 請煩查照備案.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1월 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1월 2일 美日秘國 使臣 張蔭桓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조선 使臣 朴定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이 생겨 임시로 귀국합니다. 일단 서기관 李夏榮에게 대신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隨員 姜進熙를 남겨 함께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긴밀하게 상의할 교섭 사건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생긴다면 전적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살펴보건대 使臣 朴定陽은 이미 10월 16일 출발하여 돌아갔습니다. 마땅히 신속하게 사실에 따라 귀 대신에게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보를 받고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7) 문서번호 : 2-1-3-83(1407, 2557a-2558b)

사안 : 조선의 駐美 使臣 朴定陽이 병으로 인해 일본에 머물고 있으니 귀국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금 조선 外署에서 그 章程 위반 문제를 상세 조사할 것입니다(韓駐美使臣朴定陽, 因病淹留日本, 俟其返國, 再由該外署詳查違制事).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 정부 및 外署에 보낸 서신(袁世凱致朝鮮政府及外署函)」: 사신 朴定陽의 행적 및 章程 위반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였는지 묻습니다(查詢朴使行止及違制事, 已否詳究).

2.「조선 정부에서 袁世凱에 답한 서신(朝鮮政府覆袁世凱函)」: 사신 朴定陽이 병으로 인해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니 章程 위반 사항은 귀국 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朴使因病留日, 違制事, 俟其返國, 澈底查究).

3.「조선 外署에서 袁世凱에게 답한 서신(朝鮮外署覆袁世凱函)」: 사신 朴定陽이 병으로 인해 일본에 머무르고 있으니 章程 위반 사항은 귀국 후 상세히 조사하겠습니다(朴使因病留日, 違制事, 俟其返國後詳究).

날짜 : 光緒十五年二月初三日(1889년 3월 4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朝鮮駐美使臣朴定陽違章並澈究該使電稟一案, 曾經照會朝鮮政府、外署, 並屢次函詰暨該政府、外署復函告明該朴使啓行及抵境日期, 均經稟請憲台查核並奉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鈞批各在案. 茲查十月初十日, 朝鮮政府外署復函內開：

該使當可不日由美啟行, 來月內可抵敝境.

等語. 應於十一月間, 旋抵韓境現, 已十二月初而該使回國, 仍無消息. 當即具函詰問該政府外署. 去後, 茲准覆函內開：

該使已於十二月十七日抵日本,[73] 因病淹留, 病間即當言旋.

各等語. 卑府查其詞意, 尚非全事支吾. 應俟該使回國後, 再行請其澈究. 謹將卑府與朝政府外署往來函三件, 抄具清摺, 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飭俟該使回國後, 照催澈究具報外, 相應照抄清摺, 咨送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卑府與朝鮮政府、外署往來函三件錄呈憲鑒

1.「致朝鮮政府、外署函」

敬啓者：

本年十月初十日, 准貴政府督辦覆函內開：

查向據敝邦駐美使臣朴定陽來信, 該使病甚, 懇求回國, 昨已發電, 允其速回. 諒當不日由美啟行, 來月內可抵敝境也.

等因. 准此. 查貴函內所開來月者即十一月也. 現時屆計已出該月數日. 駐美使朴定陽是否已抵韓境, 該使前屆電稟各節是否已澈底查究, 均望迅速詳示, 以憑轉報. 專此佈達. 順頌台祺. 即祈示復為盼.

十二月初七日.

2.「朝鮮政府覆函」

敬復者：

昨接貴總理函詢駐美使已否抵境一事. 查該使臣朴定陽, 由美啟發已久, 逾期未回. 正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望間, 得便船來信, 早於去年十七日,[74] 行至日本東京, 病勢添就, 不得已中留調理, 病間自當言旋. 至前次電稟各節, 一俟回國澈底查究, 再行奉佈可也. 此覆. 順頌台安.
十二月十一日.

3.「朝鮮外署覆函」
敬覆者：
本月初七日, 准貴總理來函開, 駐美使臣朴定陽是否抵境一事. 查該使臣由美啟發已久, 逾期未還. 正懸望間, 接船遞來信, 業於十一月十七日搭抵日本東京, 病勢越添, 不得前來, 淹留調病, 病間自當言旋. 至前居電稟各節, 容俟回國, 應由敝政府澈底查究, 再行奉佈, 望貴總理照諒可也. 肅此奉覆, 並頌台安.
十二月十四日.

2월 3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朝鮮 駐美使臣 朴定陽이 章程을 위반한 것과 아울러 해당 사신의 전보 보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안과 관련하여, 일찍이 조선 정부와 外署에 照會를 보냈고, 또한 여러 차례 서신으로 조선 정부와 外署를 힐문하여 사신 朴定陽의 출발 일정 및 도착 일정을 명확히 밝히도록 독촉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일찍이 李 中堂大人께서 검토하시도록 보고를 올렸고, 각기 그에 대한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0일에 조선 정부와 外署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신은 곧 미국에서 출발하여 다음 달 안에 조선 경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당 11월쯤에는 조선에 도착해야 하는데, 현재 이미 12월 초이지만 해당 사신의

73) 十二月은 十一月의 오기로 보인다. 朴定陽은 光緒 14년(고종 25) 10월 24일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출발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도쿄에 도착하였다.
74) 去年은 去月의 오기로 보인다. 朴定陽이 일본에 도착한 일자는 光緒 14년(고종 25) 11월 17일이며 위의 문건도 같은 해 작성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귀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서신을 갖추어 조선 정부와 外署에 힐문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신은 이미 11월 17일에 일본에 도착하였으나 병으로 인해 일본에 체류하고 있으니 병이 조금 나으면 즉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그 말뜻을 살펴보건대, 아예 변명을 일삼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당 해당 사신이 귀국한 후에 다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삼가 제가 조선 정부 및 外署와 주고받은 서신 3건을 첨부문서로 초록하여 올리오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신이 귀국한 후에 照會로 재촉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보고토록 하는 것 외에, 마땅히 초록한 첨부문서를 咨文으로 貴 아문에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袁世凱가 조선 정부 및 外署와 주고받은 서신 3건을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1.「조선 政府와 外署에 보내는 서신」

삼가 알립니다.

올해 10월 10일에 귀 조정의 督辦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폐방의 주미 사신 朴定陽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는데, 해당 사신이 병이 심해 간절히 귀국을 요청하며 어제 전보를 발송하였기에 속히 귀국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헤아려보건대 곧장 미국에서 출발하여 다음 달 중에는 조선 경내에 도착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귀 서신에서 언급한 다음 달이라는 것은 바로 11월입니다. 지금 도착 일자가 이미 11월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미 사신 朴定陽이 이미 조선 경내에 도착하였는지, 해당 사신이 전에 올린 전보 보고의 각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였는지, 신속하고 상세히 알려주어 李 中堂大人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만 줄이며 아룁니다. 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장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2월 7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조선 정부의 답장」

삼가 답장으로 알립니다.

지난번 귀 總理의 서신을 받았는데, 駐美 使臣이 조선 경내에 도착하였는지를 묻는 사안이었습니다. 살펴보니 해당 사신 朴定陽은 이미 미국에서 출발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便船을 통해 보낸 서신을 받았는데, 앞서 지난 11월 17일에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다가 병세가 심해져 부득이하게 거기에 머무르며 조리하고 있으며 병이 조금 나아지면 응당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올린 전보 보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귀국하면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답장합니다. 편안하길 송축합니다.

12월 11일.

3.「조선 外署의 답장」

삼가 답장으로 알립니다.

본월 7일 귀 총리의 서신을 받았는데, 駐美 使臣 朴定陽이 조선 국경에 도착하였는지를 묻는 사안이었습니다. 살펴보니 해당 사신 朴定陽은 미국에서 출발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선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받았는데, 이미 11월 17일 (배를 타고) 일본 도쿄에 도착하였는데, 병세가 더 심해져 오지 못하고 머물러 병을 조리하고 있으며, 병이 조금 나아지면 응당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올린 전보 보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귀국하면 마땅히 폐 조정에서 철저히 조사한 후 다시 알려드리겠으니, 귀 총리께서는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이며 답장을 올리고, 아울러 평안하길 송축합니다.

12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8) 문서번호 : 2-1-3-84(1411, 2564a-2568b)

사안 : 데니(Owen N. Deny)가 조선을 떠난 일을 袁世凱가 보고하였습니다(袁世凱稟報德尼離韓事).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올린 조선 정부 및 조선 주재 각국인의 최근 상황을 적은 첨부문서(袁世凱呈報韓廷及駐韓各國近日情形清摺)」: (1) 조선 정부에서 미국 敎師를 초빙해서 練兵과 開礦을 하려고 합니다(韓廷擬聘美教師練兵開礦). (2) 조선 사신 朴定陽, 趙臣熙는 각기 도쿄와 홍콩에 체류하고 있습니다(韓使朴定陽, 趙臣熙, 仍各滯留倭京, 香港).

날짜 : 光緒十五年三月初八日(1889년 4월 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三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朝鮮政治教師美人德尼,[75] 於正月二十一日, 乘倭商船肥後丸去韓情形, 業經隨時據聞電稟憲台鑒核各在案. 伏查德尼去時, 衣服、行李悉已攜往, 惟傢俱、用物尚存該寓, 留華傭二名及韓兵丁等守之, 並囑韓陸兵総教師美人戴野暫住照料.[76] 臨行告西·韓人云：“將赴倭、滬游玩, 月餘可回,” 並無辭差回美等說. 而韓廷近來朝抄內, 亦未見褫其內務協辦及外署掌交司堂上等差之明文. 惟迭據西人談告, 多謂:“伊為脫身計, 必不返矣.” 似德尼近因兩月來上海洋文新聞紙內詳載伊與馬道建忠所商各件, 恥此聲聞. 不願遽辭韓差, 以寔其說, 故借詞赴滬, 即由滬回美, 庶免在此西·韓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各人抵面譏誚之辱. 然識者皆曰："德尼受華俸而去, 所撰冊文乃為鈞金之具, 是前之所談, 俱屬無稽, 而後之為人, 尤無足輕重, 亦德尼終身之累也." 韓廷及各國人自德尼去後. 謠喙頓息, 尚屬安靜. 正月來瑞雪時雨, 頗稱膏潤. 惟全羅、慶尚、忠清南三道內有三十餘郡, 因去年亢旱, 甚見災荒. 據韓員云：

計舊存陳穀及鄰境接濟, 僅可支至春末三月, 以後恐將餓殍徧野.

等語. 謹將韓廷近時及在韓各國人情形, 另摺條繕, 呈請憲鑒.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密咨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韓廷及駐韓各國人近日情形, 條繕清摺, 恭呈憲鑒.

1.「袁世凱呈報韓廷及駐韓各國近日情形清摺」：(1) 韓廷擬聘美教師練兵開礦 (2) 韓使朴定陽趙臣熙, 仍各滯留倭京、香港.

韓王自前年派使分赴各國, 中多梗阻, 已知自主之不易. 自去夏德尼撰冊刊布,[77] 徒竭心思, 尤知自主之難謀. 今則德酋辭去, 應極力改為, 滌除故智. 而微窺其隱, 似猶未能恝然, 若有相機再圖之意. 然以近二年來惑之之深, 謀之之力, 終不能稍償夙願, 雖此志不懈, 而未始無智盡能索之憾, 自此以後, 想亦不敢輕有妄舉. 韓王比年來虛糜帑項. 本無蓄儲, 自去年南三道荒歉, 度支尤窘. 然猶不能撙節糜費, 惟日以設法聚斂, 昂價售官為事. 被災各區仍責其以錢代米, 外官自監司以下十售七八, 該官等勢不得不極力剝削, 以償其所納之價. 用是各道居民日不聊生, 迭釀事變. 幸韓民夙懦, 刑禁嚴苛, 尚不至遽成巨盜, 然由此不已, 亦終恐為禍腹心.

韓宮出入羣小, 日久日多, 亦愈趨愈下. 近稱別入侍,[78] 得以便宜入宮者, 大小百餘人. 向年別入侍中, 或有稍知事體時事者, 俱先後見幾, 圖求外官, 冀以自保. 而今之別入侍中, 更無一人稍識道理. 大都皆下流卑污、巧諛逢迎之徒, 韓王縱或有善念之萌, 斷難勝旦旦之斧伐. 似羣小不除, 韓王恐終無明德之日.

韓王本多猜疑, 近年尤甚. 自政府大臣以下, 無一人能專任其事者. 雖貴戚信臣, 如閔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植[79]、閔泳煥等,[80] 亦以韓王疑信無常, 退有後言, 各欲自保, 不敢分任勞怨. 故韓王俾晝作夜, 徒事遑遑. 而政事廢弛於下, 不能振刷, 皆由於此. 閔妃荒辭如故, 剛愎尤甚. 信任巫女號真靈君者及世子乳母吳氏, 作偽干政. 又崇尚禱祀, 甚至瞽矇亦得拜官. 月費數萬, 率以賣官償其資, 道路以目, 莫敢誰何. 朝臣稍有氣骨者, 輒放斥之. 諸閔中, 無老幼、賢愚, 並置顯要. 據韓人云："朝臣之無人未有過於今日者."

韓前設典圜局, 鑄造金·銀錢及大·小銅錢, 俱仿倭式, 鑄嵌"大朝鮮開國若干年"字樣. 先後鑄銅錢, 約計十餘萬緡. 諸老成咸言其不便, 前左相金炳始尤亟言之. 因於去年十月停鑄, 而已成之錢, 亦未出用. 或謂："錢嵌國號、年號, 頒行國中, 有妨奉朔稱藩之義." 故王有所疑忌, 而不敢輕用也.

韓廷美人四名, 教練韓兵. 曾先選武員子弟少年四十餘人, 操習兵技. 類皆紈褲,[81] 虛應故事. 教練尚未期月, 昨王已選該子弟一半, 充為練軍哨官, 其久歷行間之哨弁, 多無故撤換. 復將該子弟一半, 不分能否, 均擢升六品. 如此選將用兵, 恐難免自焚之慮.

韓使朴定陽在美延僱礦師美人皮士亞者,[82] 訂立一年合同, 年薪五千元. 自去冬到韓, 今已數月, 因氷雪方盛, 未赴內地. 王欲俟春煖派往各處查勘, 借巨欵還積債, 開礦償補. 然韓廷議多成少, 恐亦徒糜礦師薪資耳.

去年韓王建造洋式宮殿,[83] 僱俄人薩巴丁,[84] 監其役. 又因其不諳工作, 復託法使僱法人薩樂弼代監.[85] 正月抵韓, 據法人擬圖, 將造洋殿一所, 方十五丈, 高三層. 計費數十萬, 計時經年. 韓王猶疑未決, 或謂："其必不能成."

韓設南路電綫,[86] 分建四局, 商報極少. 每日統計收費, 不符一局半日之用. 韓王與香港閔泳翊往來電信, 悉用南綫. 至由釜山入海電費, 俱由釜山海關稅項劃償. 聞去年冬季所收稅項, 尚不符其報價. 今春王將以南路所餘之綫料, 加購百餘里, 添設漢城至元山之電綫. 或謂："將由元山設至俄界." 然揣韓目前之力, 必不能遽辦.

韓使朴定陽尚在倭京. 有西人自倭來者謂："頻逢定陽, 並無疾病, 而故為逗留." 趙臣熙在香港, 尚無行意. 據韓人密告云：

定陽恐回國, 為卑府詰責見罪. 臣熙恐西行, 為卑府更議其後. 故君臣迴翔, 知卑府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期已滿, 待卑府去後. 再招定陽、泳翊, 回國謀議, 即當飭臣熙行.

等語. 盖派使一案, 韓王聽信德尼、泳翊及昧事華員之言, 終疑卑府作梗, 敗其大謀. 閔泳翊厭久於外, 近有回意. 王及妃思之甚切, 日前擢秩一品, 遙除以內務府督辦差, 並頻促捉招之. 泳翊忌卑府得韓人心, 恐見陰害, 堅不敢回. 王及妃因愈憎卑府. 時陰派人刺探韓人與卑府往來者, 及卑府動靜. 故卑府素善之韓人, 皆不敢無故來謁. 而外面仍與卑府殷然如故. 每朔望必遣近侍, 來敝署勞問, 每令節必遣近侍, 餽送食物. 卑府亦曲為酬答, 外示欵洽. 近有謠喙謂:"二三月間, 中國定派兵五萬, 水陸並進, 吞據韓境." 王頗驚疑, 卑府倍為安閒鎮靜, 以釋其惑.

韓外署督辦久不派寔缺人員, 皆謂:"將留以待違章有功之朴定陽也." 現仍以趙秉稷署理, 秉稷稍柔媚, 事無鉅細, 不稟王不敢行. 故外署公事, 一切廢弛, 較金允植督辦時, 不啻天淵. 在此各國使員咸謂:

韓外署已成虛設, 不足與議事.

等語. 在此各國使員近頗安靜. 俄使韋貝,[87] 自德尼去後. 頻與相見, 似氣焰不如前日之睥睨. 盖韋貝與丹士謨[88]、德尼向為狼狽,[89] 今見德尼已去, 士模亦將有替, 勢成孤立, 自不敢不稍斂其迹. 法使葛林德時持華當據韓議.[90] 而韓王不知其衷, 以法與中國有夙怨, 頗欲引近之, 時派近臣, 與之聯絡, 寵信在韋貝右. 丹士謨三月間將有來代者. 韓王嘱小人留之, 使接德尼事, 始士謨亦頗力謀, 近鑒德尼, 又生疑畏, 尚未允留, 諉以緩議. 韓諸老成頗欲阻撓, 未知果能中止否耶.

---

75) 데니(Owen N. Deny. 德尼, 1838~1900)는 조선 말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이다. 오리건주 출신으로, 본국에서 검사·판사를 거쳐 1877년 이후 미국의 중국주재 天津 영사와 上海 총영사를 지냈으며, 1886년(고종 23) 이홍장(李鴻章)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袁世凱를 조선에 파견하면서 이전에 파견되었던 외교 고문 묄렌도르프(Möllendorf)를 대신하였다. 外衙門掌交司 堂上과 協辦內務府事를 겸임한 데니는 이후 고종의 입장에 호응하여 청의 대조선 정책과 조선 내정에의 간섭에 반대하고 袁世凱의 무도한 횡포를 비난하였으며, 1888년(고종 25)에는 한·러 수호통상조약을 주선, 조선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조약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런 행동으로 이홍장에 의해 외교 고문직을 파면당하였다. 조선에서의 체험을 정리한 『淸韓論(China and Korea)』(1888)이란 저서가 있다.

76) 조선 정부는 임오군란 이후 장교 양성과 근대식 군대 양성을 위해 미국에 군사교관을 요청하였다. 이에 1888년 4월 수석교관 다이(William M. Dye, 戴野), 조교관 커민즈(Edmund H. Cummins)·리(Joh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월 8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G. Lee)와 일본의 고베(神戶) 주재 미국영사관에 근무하던 닌스테드(F. H. Nienstead) 등 4명의 미국인 교관을 파견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는 1888년 2월 연무공원(鍊武公院)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위의 미국인 교관들이 군사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77) 여기서 책은 아마 『淸韓論(China and Korea)』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78) 別入侍는 신하가 국왕을 사적으로 찾아뵙는 행위를 가리킨다.

79) 민응식(閔應植. 1844~1903)은 자는 성문(聖文), 호는 우당(藕堂),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민영우(閔泳愚)의 아들이다. 1882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민비의 친척으로 임오군란 때 충주 장호원(長湖院)의 자택을 민비의 피신처로 제공하여 출세의 길을 열었다. 이듬해 혜상공국총판·대사성, 친군후영영무, 좌영사·협판내무부사·이조판서·병조판서의 요직을 지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김홍집내각(金弘集內閣)이 성립되었을 때 물의를 일으켜 전라도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당하였다.

80)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字)는 문약(文若)이며 호는 계정(桂庭)이다. 참봉 민태호(閔泰鎬)에게 양자로 갔다. 1878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정자(正字) 동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으나 임오군란으로 친아버지가 살해되자 사직하였다. 1884년 이조참의에 임명된 뒤 다시 도승지·이조참판·개성유수·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887년 이후 호조판서·병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윤 등을 지내고 1895년 8월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되었으나.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주미전권 대사에 부임하지 않고 귀향하였다. 1896년 4월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특명 전권공사로 임명되었고, 그 뒤 군부대신이 되었다가 이듬해 1월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공사가 되었다. 1905년 참정대신·외무대신을 역임하고 다시 시종무관장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에 찬동한 5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였으나, 11월 30일 자결하였다.

81) 紈褲는 귀족 자제들이 입던 섬세한 비단으로 만든 바지를 말하는데, 아나가 귀족 자제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82) 1888년 알렌의 주선으로 고용되었던 미국인 광산업자 피어스(Aillerd I. Pierce, 皮於瑞)로 보인다.

83) 경복궁 乾淸宮의 觀文閣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觀文閣은 원래 御眞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다가 1888년 서양식 석조물로 개건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1891년에 마무리되었다. 최초에는 사바틴이 건축 지휘를 담당하였으나 조선 관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간에 그만두었다. 궁궐 내 만들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축물이다.

84) 사바틴(1860~1921, Afanasy I. Seredin-Sabatin, 薩巴丁)은 러시아 출신 건축가로 조선 정부의 요청에 따라 1883년부터 다양한 서양식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를 담당하였다. 그가 참여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인천 해관 청사, 인천 世昌洋行 사택, 경복궁 觀文閣, 러시아 공사관, 獨立門, 덕수궁 重明殿, 손탁호텔 등이 있다. 을미사변 때 민비(명성황후)의 시해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귀국하였다.

85) 살르벨르(Salebelle, 薩樂弼 또는 士羅別)는 조선 왕궁 건축 등을 위해 1889년 초에 입국하였다.

86) 조선의 전신 선로는 초기에 청에서 자금과 인력을 파견하여 청과 조선을 연결하는 北路電線을 건설하였다(서울-제물포, 서울-의주).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남로전선도 처음에는 청의 한성전보총국(漢城電報摠局, 華電局이라고 함)에서 가설하기로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에 진척이 없자 1887년 조선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가설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전신 재료와 기술자를 확보하여 1883년 5월에 준공하였다. 아울러 남로전신의 주요한 기점인 공주, 전주, 대구, 부산에 각각 분국을 설치하여 주사와 위원을 배치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선 정치 教師 미국인 데니(Owen N. Deny)가 1월 21일 倭商船 肥後丸를 타고 조선을 떠난 상황은 이미 수시로 정보를 받아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각기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데니가 떠날 때 의복과 여행 물품을 모두 가지고 갔고 오직 가구와 일상용품만 그 거처에 남겨 놓았으며, 중국 일꾼 2명 및 조선 병정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고, 아울러 조선 육군 수석교관 미국인 다이(William M. Dye)에게 잠시 머무르며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출발할 때 서양인들과 조선인에게 "일본과 상해에 가서 유람할 것이니 한 달쯤 후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였고, 결코 임무를 사직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의 최근 官報에서도 데니의 內務協辦 및 外署 掌交司堂上 등의 직임을 교체한다는 명확한 내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서양인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확인해 보니, 대부분 "그가 몸을 빼낼 계획을 실행한 것이니 필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데니는 최근 두 달 동안 上海 서양 신문지에서 그와 馬建忠이 논의한 각 건이 상세히 게재된 것 때문에, 이러한 소문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선 관직을 사직하여 그 내용이 증명되는 것은 원치 않기에 상해로 간다고 말을 꾸미고는 상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곳에서 서양인과 조선인들을 만나 비난당하는 치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식자들은 모두 말합니다. "데니가 중국에서 봉급을 받아 조선에 갔으면서도 편찬한 책이나 글은 모두 돈을 버는 도구로 삼았으니, 전에 이야기한 바는 모두 터무니없는 게 되었고, 이후에 그 사람됨도 더욱 보잘것없이 되었으니, 이 또한 데니가 죽을 때까지의 허물이 될 것이다." 조선 정부 및 각국인들은 데니가 떠난 후에 선동하는 말들이 모두

였다.

87) 베베르(Karl I. Veber, 韋貝)는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1884년 러시아 전권대사로서 한·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85년부터는 주한 러시아 대리 공사 겸 총영사로 재직하였다.

88) 딘스모어(Hugh Anderson Dinsmore, 1850~1930, 丹士謨)는 미국 아칸소(Arkansas) 주의 변호사를 지냈던 인물로 1887~1890년까지 조선 주재 미국 辦理公使로 재직하였다.

89) 狼狽는 狼狽为奸의 준말로 함께 작당하여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다.

90) 당시 주한 프랑스 대리공사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는 조선식으로 이름을 葛林德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직지』(흔히 『직지심경』으로 알려진 이 책은 1377년에 청주 흥덕사(興德寺)에서 찍어 낸 것이 초인본(初印本)이며, 현존하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 중 가장 오래된 이 금속활자본은 현재 하권만이 전해지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를 수집하여 자신의 성(葛)을 이 책에 기록하였고, 플랑시의 손에서 떠난 책은 경매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둥지를 틀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라져 도리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1월 중에 상서로운 눈과 때맞는 비가 내려 자못 윤택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라, 경상, 충청 세 도의 30여 군은 작년의 가뭄 때문에 災荒이 심합니다. 조선 관원에 따르면, "계산해 보면 예전에 남은 묵은 곡식과 접경 지역에서 도움이 있어도 겨우 늦은 봄 3월까지 버틸 수 있다. 이후에는 아사자가 들에 널리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삼가 조선 정부의 최근 움직임과 조선에 있는 각국인의 상황을 따로 문서를 갖추어 올림으로써 살펴보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니, 마땅히 貴 아문에 비밀리에 咨文을 보내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조선 정부 및 조선 주재 각국인의 최근 상황을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1. 「袁世凱가 올린 조선 정부 및 조선 주재 각국인의 최근 상황을 적은 첨부문서」: (1) 조선 정부에서 미국 敎師를 초빙해서 練兵과 開礦을 하려고 합니다. (2) 조선 사신 朴定陽, 趙臣熙는 각기 도쿄와 홍콩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조선 국왕이 전년에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보냈는데 도중에 대부분이 막혀버리자 자주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데니가 책을 지어 간행하였지만, 한갓 心思만 소진하였을 뿐 자주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것을 더욱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데니가 사직하고 떠났으니 응당 힘을 다해 바꾸고 이전의 낡은 꾀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바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마치 기회를 보아 다시 시도할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깊이 미혹되어 힘써 도모하였지만 끝내 숙원을 조금도 이루지 못하였으니, 비록 이러한 뜻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소진하였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을 터이므로, 이후에는 생각건대 감히 경거망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 국왕은 최근 몇 년 동안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아무런 저축도 없고, 작년 삼남에 흉년이 들어 재정이 더욱 군색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낭비를 줄이지 못하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오로지 방법을 마련하여 수탈하거나 값을 올려 관직을 판매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재해를 입은 각 지역에 대해서도 쌀 대신 돈을 내도록 독촉하고, 지방관은 감사 이하 열에 일곱 여덟은 돈으로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들은 악착같이 수탈하여 자신들이 바친 대가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이에 각 도의 주민들은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게 되어 누차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선 백성은 본디 나약하고 형벌과 금령이 엄격하기에 아직은 급격히 巨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태가 멈추지 않는다면 또한 끝내 재앙의 복심이 될 것입니다. 조선 궁정에 출입하는 소인배 무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또 수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래 別入侍라고 일컬으면서 제멋대로 입궁하는 사람이 크고 작게 백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과거 別入侍를 한 사람 가운데에는 그래도 조금은 事體와 時事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모두 전후하여 기회를 보아 지방관 자리를 요청하여 스스로를 보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別入侍 가운데에는 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모두 하류의 추잡하고 아첨을 잘하는 무리뿐이니, 조선 국왕이 가령 좋은 생각의 싹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매일 열심히 도끼질하는 것을 결코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소인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 국왕은 끝내 明德하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조선 국왕은 본래 의심이 많았는데 근년 들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부의 대신 이하로 어느 한 사람 일을 전담하여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貴戚·信臣인 閔應植, 閔泳渙 같은 이들도 또한 조선 국왕이 의심과 신뢰를 반복하고, 물러난 다음에는 꼭 뒷말이 있으니 각자 스스로를 보전하고자 할 뿐 노고와 원망을 감히 나누어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선 국왕은 밤을 낮으로 삼아 헛될 일에 허둥거리기를 일쑤입니다. 정사가 아래에서 해이해져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閔妃의 황당한 말들은 예전과 같고 고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真靈君이라는 무녀와 세자의 유모 吳氏를 신임하며 정사에 간여하게 합니다. 또 禱祀를 숭상하여 심지어 盲人에게까지 관직을 제수하였습니다. 매달 수만 금을 소비하는데, 모두 관직을 팔아 그 자금을 메우는데, 곳곳을 감시하여 감히 누구라도 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신하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골이 있는 사람은 번번이 유배 보내거나 배척합니다. 여러 閔氏들은 나이나 현명함을 막론하고 모두 요직에 둡니다. 조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부의 신하 가운데 인물이 없던 적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은 없었다."

조선에서 전에 典圜局을 설치하여 金·銀錢 및 大·小 동전을 주조하였는데, 모두 일본식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방하여 "大朝鮮 開國〇〇年"이란 글자를 새겨넣었습니다. 전후 주조한 동전은 약 10여 만 꾸러미입니다. 여러 원로가 모두 그 불편함을 언급하였고, 전 좌의정 金炳始가 더욱 이를 지적하자, 이 때문에 작년 10월에 주조를 정지하였으나 이미 완성된 동전은 또한 내다 쓸 곳이 없습니다. 혹은 말합니다. "동전에 국호와 연호를 넣어서 국내에 頒行하는 것은 中國의 正朔을 받들며 諸侯國을 자처하는 義理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국왕이 꺼리는 바 있어 감히 쉽사리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 미국인 4명을 초빙하여 병사들을 敎鍊합니다. 지난번에 우선 무관 자제 중 청년 40여 인을 선발하여 군사기술을 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귀족 자제 부류라서 대충 시늉만 냅니다. 교련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어제 국왕은 이미 이 자제들 절반을 練軍哨官으로 선발하여 충당시켰고, 오랫동안 군대에 있었던 哨官들은 대부분 까닭도 없이 해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관 자제들 절반은 그 능력도 묻지 않고 모두 6품관으로 발탁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교를 선발하고 병사를 쓰니 스스로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사신 朴定陽이 미국에서 礦師로 미국인 피어스(Aillerd I. Pierce)를 고용하여 연봉 5천 원으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작년 겨울 조선에 도착하였고 지금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눈과 얼음이 두터워 內地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왕은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각처로 파견하여 조사를 시킨 후, 거금을 빌려 밀린 채무를 갚고 광산을 개발하여 이를 메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은 논의는 많지만 성사되는 일은 적으니 아마도 헛되어 礦師의 연봉만 낭비할 것 같습니다.

작년 조선 국왕은 서양식 궁전을 건조하고자 러시아인 사바틴(Afanasy I. Seredin-Sabatin)을 고용하여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프랑스 공사에게 부탁해서 프랑스인 살르벨르(M. Salebelle)를 고용하여 대신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1월에 조선에 도착하자 이 프랑스인의 설계에 따라 서양식 전각 한 곳을 건조하려는데 사방 15丈, 높이는 3층입니다. 비용은 수십 만이 예상되고 시간은 1년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 국왕이 머뭇거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혹자는 "반드시 완성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선에서 南路電綫을 설치하면서 4局을 만들었는데, 상업적 이용은 매우 적습니다. 매일의 수입을 계산해보면 1局의 반일 비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조선 국왕은 홍콩의 閔泳翊과 전신을 왕래할 때 모두 南路電綫을 이용합니다. 부산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전신 비용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釜山海關의 세입에서 배정하여 갚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거둔 세입이 여전히 그 보상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올봄 국왕은 장차 南路에서 남은 전선에 추가로 백여 리를 구매하여 漢城에서 元山에 이르는 전선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혹자는 "元山을 거쳐 러시아 지역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현재 물력을 헤아려보면 필시 갑작스레 처리할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조선 사신 朴定陽은 아직 도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어떤 서양인은 "朴定陽을 누차 만났으나 결코 질병은 없었기 때문에, 고의로 지체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趙臣熙는 홍콩에 있으며 아직 움직이려는 뜻이 없습니다. 어떤 조선 사람이 다음처럼 밀고하였습니다.

> 朴定陽이 귀국을 두려워하는 것은 저로부터 견책을 당하고 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趙臣熙가 유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그 뒷일을 따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君臣이 빙빙 돌면서 고민하다가 제 임기가 이미 찼다는 것을 알고는 제가 조선을 떠나길 기다렸다가 다시 朴定陽과 민영익을 불러들여 모의하고, 그 즉시 趙臣熙를 유럽에 가도록 지시하려는 속셈입니다.

대개 사신 파견 사안은 조선 국왕이 데니, 閔泳翊 및 일을 잘 모르는 중국 관원의 말을 믿고, 결국은 제가 훼방을 놓아 큰 대사를 그르쳤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익은 오랫동안 외국에 있는 것에 염증이 나서 최근 귀국할 뜻이 있습니다. 국왕과 왕비도 그를 몹시 생각하여 일전에는 1품으로 발탁하면서 멀리서 내무부 독판의 직임을 내렸으며, 누차 독촉하여 불러들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영익은 제가 이미 조선인의 마음을 얻었기에, 음해를 당할까 두려워 감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왕과 왕비는 이 때문에 갈수록 저를 미워합니다. 때때로 몰래 사람을 파견하여 저와 왕래하는 조선 사람이나 제 동정을 探問합니다. 이 때문에 저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조선 사람들은 모두 일이 없이는 감히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왕과 왕비는) 겉으로는 여전히 저와 예전처럼 정감이 있는 것처럼 시늉하여, 매월 초에는 반드시 近侍를 제 官署로 보내 勞問하고 매번 명절 때마다 반드시 近侍를 파견하여 음식물을 보냅니다. 저 또한 곡진히 대응하여 겉으로는 친밀합니다. 근래 다음과 같은 뜬소문이 있었습니다. "2, 3개월 안에 중국에서 병력 5만을 파병하는데 수륙 양면으로 진군하여 조선 지역을 점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국왕이 자못 놀라고 의심스러워하기에 제가 배로 문안하고 진정시켜 그 의혹을 풀어주었습니다.

조선의 外署 督辦에는 오래도록 實缺 인원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모두 말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자리를 남겨두어 장차 章程을 위반하여 공을 세운 朴定陽을 기다릴 것이다.” 지금은 여전히 趙秉稷이 署理하고 있는데, 조병직은 조금 연약하고 눈치를 보느라 일이 크고 작은 것을 상관하지 않고 국왕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감히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外署의 공무 모든 것이 해이해졌으니, 金允植이 독판을 맡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 이상이 납니다. 이곳의 각국 외교관들도 모두 말합니다.

조선의 外署는 이미 헛설치한 것이 되어버려 사안을 같이 논의하기에 부족합니다. 이곳의 각국 외교관들은 최근 자못 안정을 찾았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 Veber)는 데니가 떠난 다음 여러 차례 만났는데, 전날의 기세등등하던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베베르와 딘스모어((Hugh Anderson Dinsmore)는 과거 데니와 함께 무리를 지어 못된 짓을 하였는데, 지금 데니가 떠나고 딘스모어 또한 장차 교체될 예정이라 형세상 고립되었으니 자연히 조금 그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공사 플랑시(Collin de Plancy)는 현재 중국을 지지하면서도 조선의 주장을 따르는 척하는데, 조선 국왕은 그 속도 모르고 프랑스와 중국이 묵은 원한이 있다고 여기고는 그를 끌어다 가까이 두고자 지금 근신을 파견해 연락하면서, 베베르보다 훨씬 총애와 신뢰를 보냅니다. 딘스모어는 3월쯤에 대신할 사람이 올 예정입니다. 조선 국왕은 제게 부탁하여 그를 만류하여 데니의 일을 이어받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딘스모어도 자못 힘써 도모하였지만 최근 데니를 거울삼고 또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 아직 체류를 허락하지 않고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조선의 여러 원로들은 자못 이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과연 중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9) 문서번호 : 2-1-3-85(1420, 2576a-2576b)

사안 : 조선 사신 朴定陽이 병으로 인해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으니, 귀국하면 章程을 어긴 일을 조선 정부가 상세히 조사하게 하겠습니다(韓使朴定陽, 因病淹留日本, 俟其返國, 卽催令該政府詳究違制事).

날짜 : 光緒十五年三月二十三日(1889년 4월 22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三月二十三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詳稱：91)

竊照本年正月二十一日, 奉憲台札開：

正月初二日, 准出使美日秘國大臣張咨開：

案據朝鮮使員朴定陽報稱：

有病行暫還國, 姑使書記官李夏榮臨時代辦事務, 並留隨員姜進熙同幹, 遇有交涉事件之可以密商者, 專賴庇護.

等情. 據此. 查該使員朴定陽, 已於十月十六日, 起程回國. 合亟據情咨會貴大臣, 請煩查照備案.

等因. 到本閣爵大臣. 准此. 合行札飭, 到該升道, 即便查照.

等因. 奉此. 當即照會韓政府外署查照, 並請俟該使到韓, 查詢澈究, 即行見覆. 去後, 於二月十三日, 准該政府照復內開：

查駐美朴使回至日本, 中留調病之由, 已經函告在案. 該使病尚未差, 歸期稍延. 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俟到境, 查詢澈究, 再行佈覆.

等因. 復於是月二十一日, 又准該外署照覆, 同前等因. 准此. 除俟該使到韓, 澈詢明確, 再行詳報外, 理合先行詳請憲台查核, 寔為公便.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飭俟朴定陽回後, 即催令查詢, 澈究具報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3월 23일 北洋大臣 李鴻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21일에 다음과 같은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1월 2일에 出使美日秘大臣 張蔭桓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조선 使臣 朴定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병이 생겨 임시로 귀국합니다. 일단 서기관 李夏榮에게 임시로 대신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隨員 姜進熙를 남겨 함께 일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긴밀하게 상의할 교섭 사건이 생긴다면 전적으로 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살펴보건대 조선 使臣 朴定陽은 이미 10월 16일 출발하여 돌아갔습니다. 마땅히 사실에 따라 귀 대신에게 咨文을 보내 알리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서를 받아, 응당 升用道 袁世凱에게 지시하니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받아 즉시 조선 정부와 外署에 照會하여 확인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해당 사신이 조선에 도착하면 즉시 철저히 조사한 다음 곧바로 답장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2월 13일 조선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駐美 사신 朴定陽이 돌아오다가 일본에 이르러 중간에 머물면서 병을 조리하고 있다는 사유는 이미 서신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해당 사신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아, 귀국 시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 도착하면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금 답장을 보내겠

91) 앞에서는 보고를 올릴 때 보통 稟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詳稱 역시 상사에게 올리는 보고, 즉 上行文를 가리키는 것이니 뜻에는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詳稱은 上行文인 보고서(詳文)를 올려 알려왔다는 뜻이지, 상세하게 알린다는 뜻은 아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습니다.

다시 이번 달 21일에 해당 外署의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앞서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사신이 조선에 도착하면 철저히 조사하여 명확히 밝히게 한 다음 다시 상세히 보고하는 것 외에, 마땅히 우선 상세한 상황을 李 中堂大人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도록 보고하는 것이 진실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朴定陽이 돌아오면 즉시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0) 문서번호 : 2-1-3-86(1495, 2714b-2721a)

사안 : 조선 국왕이 논의를 준수하여 朴定陽을 罷職하겠으나 다만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미 袁世凱에게 지시하여 기회를 보아 엄히 재촉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韓王遵議, 罷朴定陽職, 惟請延期施行, 已飭袁世凱, 相機嚴催妥辦).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 국왕을 만나 나눈 대화 기록(袁世凱與韓王晤談紀錄)」: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것에 대해 확실하게 罷職하여 죄를 정해야 한다고 논의하였습니다(論朴定陽違制, 定予罷職定罪).

2.「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보낸 照會(袁世凱致韓政府照會)」: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문제를 아직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까닭으로 두 가지 직책을 제수하였는지, 시일을 정해 조선 국왕을 만나 뵙고자 요청합니다(朴定陽違制, 尙未查究, 何故更拜二職, 請約期晉見韓王).

3.「袁世凱가 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袁世凱退還韓政府覆文)」: 朴定陽이 관직을 받은 것은 전례에 따른 행사일 뿐이며, 조선 국왕은 최근 大妃의 병환이 있어 접견하시기 곤란합니다(朴定陽授官, 乃循例行事, 韓王近有問寢之憂, 未便接見).

날짜 : 光緒十六年正月二十一日(1890년 2월 10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正月二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正月十九日,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竊照十五年十一月間, 韓廷授駐美全權使臣朴定陽以都承旨兼副提學兩職一案, 業經卑府將詰辦各詳細情形隨時電稟憲台鑒核, 並迭奉鈞諭飭遵各在案. 伏查朴定陽違章捏報, 韓政府曾允俟調回查辦. 卑府曾於本年秋間定陽回韓時, 迭次照詰該政府, 乃延至四閱月, 仍未准照覆前來. 卑府遵奉憲諭, 亦未再事催迫, 詎至十一月十二日, 忽見抄報內開, 定陽除授都承旨兼副提學兩職. 任要秩顯, 非特該政府有爽前議, 抑且違碍事體. 卑府稟奉憲台電諭, 遵於十三日照詰該政府, 並照知韓內務府, 即內署達王, 擬於十四日請見面陳定陽案. 當准該政府照覆內開：

查朴定陽授官一事, 不過循例而授, 並非別有意見, 恐不必詫訝.

等因. 同日准該內署覆函內開：

今日上午十二點鐘入宮請見一事, 現在天氣不調, 國王有問寢之憂,[92] 未便代稟接見. 各等語. 卑府因其詞多狡展, 即分派員弁, 將該政府及內署文函退還, 並面語駁詰. 旋准該內署改繕覆函內稱：

今日請見一節, 業經稟明. 現因天氣不調, 國王有問寢之憂, 未便接見. 俟將來日康復奏慶, 即擬奉聞.

等語. 十五日又准該政府照復, 概同前文. 卑府復遣員駁還, 惟逐日遣派差弁入宮問趙太妃病狀, 並詢訂謁見日期. 更派員赴韓領議政沈舜澤家, 坐催覆文. 意欲使韓王厭苦, 舜澤窘促, 庶可早日結束. 未幾士民紛議, 咸怨韓王, 以太妃病可聞此案顛末, 頗以有失大義, 譴責韓王. 王因是悚惕, 於十六日密令定陽上疏辭職, 王批允開去副提學職. 而都承旨仍舊, 意欲止卑府之詰, 安太妃之心, 息士民之議. 然其批允辭職, 並非褫革, 且副提學本非要任, 開去亦何關輕重? 故仍派人按日赴宮, 並守催舜澤. 韓王憚煩, 至十八日傳曰："都承旨等許遞, 前望單子入之."[93] 金九鉉等落點云. 然並未將定陽姓名列入, 自與此案毫無干涉. 適因王派外督辦閔種默來謂："卑府合依駐津韓員見關道商辦事例, 當見內外署督辦會商一是." 卑府嚴詞駁拒, 稱將稟請憲台核辦. 因即不派人入宮, 亦不復守催舜澤, 置之數日. 王頗深疑慮. 至二十一日更派閔種默來稱：

前言極失, 務乞宥恕. 不勝慚悚. 王意將請見閣下. 惟不願談辦定陽案, 可仍歸政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妥辦.

等語. 卑府謂：

不因政府將此案久懸, 固無庸見. 王倘仍諉諸政府, 不願面談, 請見更屬無謂.

次日種默復來稱：“王可接見談辦. 惟請毋為執辯.” 卑府答以:“王如准理妥辦, 固無事執辯, 否則難免多瀆.” 種默去後. 卑府稔知韓王近信細臣, 如種默等外臣, 概不能盡達卑府所言, 且不能深悉王意. 因令人諷其近臣洪在義來謁,[94] 即引談定陽案, 反復譬喻以大局利害, 令達王聽. 在義出身賤役, 因壬午年救閔妃於亂兵中, 故得近倖, 累官兵使, 尤為王所親信, 當可詳達一切. 二十五日在義來稱：“昨日所言, 已冒死盡達. 王甚悔動, 俟接見時, 必可妥商辦理. 惟辦朴罪或不能過重.”

二十九日又以王命來, 約定於十二月初四日請見. 當日復准內署函訂, 卑府即如期前往, 王外甚親密, 多敘寒溫. 談及朴案, 王惟請卑府周旋. 卑府因傳語每多隔膜, 擬請筆談. 而屏後有人屢遣小宦官告王謂：“不便形於紙筆,” 卑府強而後可. 畧書數行而阻者頻至, 王即以“當另派心腹造商, 務請周旋.”等語見囑. 卑府在韓多年, 稍解韓語, 既見王有所制, 再三瀆談, 亦屬無益, 或且轉致失和. 因囑譯員, 問王以定陽案究辦與否, 方可電覆憲台, 而王惟支吾, 遂即辭出.

至外室逢戚臣兵曹判書閔泳煥. 卑府告以：

此來為奉憲令, 特請王示朴案究竟辦否, 而王始終不答, 惟囑周旋了事, 將何以電覆, 又何以周旋, 務請轉詢王意, 究竟辦朴與否, 諭令心腹來告, 方可量力從中周旋.

卑府回署, 在義當晚即來稱：“王意概同接談各語.” 卑府答以：“王如欲輕減朴罪, 或可周旋, 倘絕不究治, 斷難結案. 務請詢明詳示.” 去後, 在義復迭來商辦. 卑府相機引誘, 切寔開導, 頗費唇舌, 王始允先罷朴定陽職, 既請將定陽禁錮終身.

十二日在義來更請, 將此案權由卑府捏報謂已懲辦等語. 卑府謂：

王意殊多反覆, 直以卑府為玩具, 寔無法代為周旋. 且捏報欺罔, 非所敢聞. 惟有仍即稟請憲台核辦, 恐自此中韓搆嫌, 有礙大局, 竊為韓慮之.

在義謔請姑毋稟陳憲台, 當仍冒死力請於王, 倘終不究辦, 再聽公所為. 十日來稱：[9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王已決計，准照初議，罷定陽職，再無改悔．惟近日慶典甚多，不便即辦．俟至明年正月中旬，必當辦治．

卑府答以：

諉為慶典，以待來年，殊無禮例，卑府不敢轉稟．且汝迭次異詞，尤未足為據．請王另派戚貴重臣前來，善辭言明，方可酌稟．

二十一日申刻，閔泳煥來傳王語云：

朴定陽有罪，亟應嚴治．惟定陽近日病甚，臥不能起，而朝鮮律例，非王面訊一次，不能辦治，俟其稍愈，即召訊辦罪．

等語．卑府竊意韓王既經其重臣來告，或不至輕易更為反覆．惟其銳意自主，似恐治定陽罪，即失其自主之權．且以卑府見王未久，而定陽罷職，又慮各國人顯見為違章之故受制中朝，有損其體．故復輾轉延宕，以明正為辭，詭譎多端，殊非可以理喻，可以聲嚇，尤非筆墨口舌可以禁制．在中國時勢維艱，固未易遽示嚴威，用彰天罰．然欲令決計嚴辦定陽，似必須預籌一決裂辦法．倘任其含糊了結，則誠如憲諭，恐趙臣熙亦將效尤輕違定章，口舌更多，似不如因其拖延，而亦拖不與結，則趙臣熙自未敢遽爾啓行．臣熙淹留香港近三年，未必非職是之故，是亦所以羈縻之一法也．

至韓王事事狡黠，處處弄巧．意謂可以掩人耳目，示各國以權由己出，不失其自主体制．殊不知掩耳盜鈴，適足自償事機，貽笑鄰國，亦誠闇昧之尤者矣．茲謹將卑府照詰韓政府文、退還該政府照覆各一件及晤韓王談記錄，繕清摺二扣，恭呈憲台鑒核，瑣屑臚陳．伏乞訓示施行．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除批：

上年十二月二十三日來稟，並清摺閱悉，韓王准照議罷朴定陽職，以近日慶典甚多為詞，允俟正月中旬辦治．復據閔泳煥傳語：

朴定陽有罪，亟應嚴治，惟朝鮮律例，非韓王面訊一次，不能辦治，俟朴定陽病愈，召訊辦罪．

等因，仰仍相機嚴催妥辦，毋任拖延．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等因. 印發外,[96] 相應密咨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本年十二月初四日未刻, 卑府與韓王晤談瑣記錄繕清摺. 恭呈憲鑒.

1.「袁世凱與韓王晤談紀錄」

縷敘寒暄畢.

凱云：“十一月十三日奉中堂電諭, 以朴定陽案, 命凱面陳顛末. 未知殿下亦有所聞否?”

王答：“已有所聞. 朴定陽不遵定章, 誠有不合. 余亦甚憾. 特有未便, 礙難即治以罪.”

凱云：“三端定章, 本由奏定, 殿下亦曾咨請中堂轉奏遵, 乃朴定陽至美京後, 竟不遵行, 迭經凱照詰政府商辦, 案懸二年, 仍未能結. 且政府並允俟定陽回國議處, 不期上月忽除授都承旨兼副提學, 未知殿下詳知其事否?”

王答：“定陽拜都承旨乃照例事, 非升職也.”

凱云：“定陽有罪待治, 照例亦不應授官. 總之, 凱與政府往來各文, 殿下俱已見否?”

王答：“均已閱見. 惟務請閣下周旋, 求為免究為幸.”

凱云：“如只求免究, 安能了事. 究竟殿下辦定陽否, 乞明告.”

王吞吐不答.

凱因請云：“譯員傳語, 或有誤聽, 可否請以筆代話.”

王顧命宦者取筆紙, 未至而自屏風內有人遣一少年宦者, 以東語致請云：“朴使案不便形於文蹟.” 侍側數宦亦即同聲附和, 言其不便.

王沈吟久之, 令譯員云：“此時耳目太多, 不便筆談, 如有所議, 請回署條書送下.”

凱答：“奉中堂電諭, 面陳要公, 不得殿下明教, 未便回署. 覆告筆談, 似無妨礙. 幸毋過慮.”

王有慚色, 允暫筆談, 督促宦者取筆紙, 並召令戚臣閔泳韶代筆.[97]

凱書云：“前年派使一案, 在內廷及中堂意本謂：“應改派三等公使,” 派駐全權, 已非初意. 因殿下具咨切請, 不得不格外曲原, 勉副鈞意, 隨即議定三端, 以存上屬體制. 而朴定陽至美遽違首端, 尤非內廷及中堂初意. 且極有妨碍中韓體制. 政府何以久置不辦, 不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言. 特請殿下明教.”

王命書答：“傅相始終曲眷, 不勝感激. 至朴定陽事, 已詳悉於政府往復文中, 不必架疊. 惟在慰廷善為斡旋耳.”98)

凱書云：“重承鈞教, 敢不為力. 特定陽違章如不懲治, 在中國視為有損事體. 而殿下又以懲治定陽為不便, 以此相持, 焉有周旋妥辦之道. 且凱微末, 非敢自專, 惟望殿下妥辦詳示.”

王方命書答, 而自內宦者頻來阻撓. 王強令代答：“中東一室, 如以此相持, 便非外禦其侮之意. 惟在閣下左右之耳. 容當另派心腹人前往密商.”

凱見宦者迭出, 力言未便, 如再固請談亦無益. 且恐失和, 因令譯員復云：“究竟定陽案殿下懲辦與否, 乞明教.”

王惟云：“俟另派員告.”

凱再三請, 王終不言辦否. 凱因辭出. 再筆談紙王特存宮內, 凱囑人抄出, 終未送來. 似王不欲以字蹟為據也. 合併聲明.

謹將照詰韓政府文暨退還該政府照覆文, 錄繕清摺, 恭呈憲台鑒核.

計開：

2.「照詰韓政府文」

為照會事.

案照本年七月二十四日, 本總理以朴定陽違章捏報一案, 照請貴政府分別查究. 又於八月初九日. 奉文華殿大學士李電飭. 送還貴政府照覆, 並逐層駁詰. 本總理遵即分別辦理各在案. 查違章事案何等重大. 傅相電諭又何等鄭重? 不期貴政府竟擱置三閱月之久, 至今仍未照覆. 尤可異者, 昨日接閱朝報, 朴定陽忽又除授都承旨兼副提學. 本總理十分詫訝, 殊不知貴政府意果何居, 何為至此. 頃已稟奉文華殿大學士李電飭, 本總理即請見國王, 面陳一切. 除已照會內務府稟知, 定於明日上午十二點鐘, 本總理入宮請謁外, 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應照會貴政府, 請煩查照. 迅將朴定陽所以除授之故, 在貴政府意果何居, 何為至此, 明白見覆為要. 須至照會者.

十一月十三日.

3.「退還韓政府照覆文」

為照覆事.

照得本月十三日, 接准貴總理照會內開：

案照本年七月二十四日. 云云. 明白見覆為要.

等因. 查朴定陽授官一事, 不過循例而授, 實非別有起見, 恐不必致為詫訝也. 近日寒事總至, 國王有問寢之憂, 未便接見, 以此涵諒為荷. 相應備文照覆, 請煩貴總理查照. 須至照覆者.

十一月十四日.

1월 2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

92) 問寢은 병문안을 말하는데 바로 뒤에 趙太妃病狀이 나오므로 바로 이 사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93) 前望單子는 이전에 올린 望單子(望記), 즉 어떤 직책에 합당한 인물을 천거 또는 위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94) 洪在羲는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자는 성남(聖南), 호는 규산(圭珊)이다. 충청도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동학농민전쟁 때 정부군을 이끌었던 조선 말기의 무관인데, 임오군란이 발발하였을 때 무예별감(武藝別監)이던 그는 閔妃(明成皇后)를 궁궐에서 탈출시킨 공을 세워 이후 중용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乙未事變) 때 훈련대장으로 광화문을 수비하다가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95) 내용상 十日은 오기로 보인다.

96) 除批 … 等因印發外는 하급기관에 보내는 공문 형식으로 … 라는 내용[批]를 날인하여 발송[印發]하여 지시한다는 뜻이다. 지시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批에서 等因까지의 부분을 따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97) 민영소(閔泳韶. 1852~1917)는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자는 순약(舜若)으로 민철호(閔哲鎬)의 아들이며, 민규호(閔奎鎬)에게 입양되었다. 1878년 문과에 급제한 다음 대교(待敎)에 임용되어 관직을 시작하고, 이조참판, 예조참판, 부제학, 대사성, 도승지 등을 거쳐 공조참판, 호조참판, 경연특진관, 의정부 당상, 상의원 제조, 사옹원제조, 직제학, 지경연 등을 지냈다. 1894년 병조판서로 재직하면서 홍종우를 시켜 망명 중인 개화파 김옥균의 암살을 사주하였다. 일제강점 이후 한일합병 공로로 1910년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98) 慰廷은 袁世凱의 字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월 19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광서 15년 11월 무렵 조선 정부에서 駐美 全權使臣 朴定陽에게 도승지 겸 부제학 두 직책을 수여한 일에 대해, 이미 제가 힐문하여 따진 상세한 상황을 수시로 전보를 통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렸고, 아울러 여러 차례 지시를 받들어 지킨 바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朴定陽이 章程을 어기고 허위로 보고한 일에 대해 조선 정부는 지난번에 朴定陽이 돌아오면 조사해서 처리하기로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가을 朴定陽이 조선으로 돌아올 때 여러 차례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견책하였지만, 4개월을 끌면서 여전히 답장 照會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따라 다시 재촉하여 압박하지 않았는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11월 12일 조선 관보를 보니, 朴定陽에게 도승지 겸 부제학 두 직책을 제수하였습니다. (해당 관직은) 임무가 중요하고 官秩이 높으니, 조선 정부에서 이전의 논의를 어긴 것일 뿐 아니라 일 처리방식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에 저는 李 中堂大人께 아뢴 후 전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13일에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힐문하고, 아울러 조선 내무부, 즉 內署에 照會를 보내 內署에서 국왕에게 알려 14일에 직접 만나 뵙고 朴定陽 안건을 따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 朴定陽이 관직을 받은 사안은 단지 관행에 따라 제수한 것에 불과하며 결코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의아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날 해당 內署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받았습니다.

> 오늘 상오 12시에 입궁하여 국왕을 알현하는 뵙는 사안은 현재 날씨가 좋지 못하고 趙大妃의 병환이 있어 문안을 드려야 하니 알현을 대신 여쭙기는 곤란합니다.

저는 그 말에 교활하게 변명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즉시 문·무 관원을 보내 조선 정부 및 內署의 文函을 돌려보내고 직접 방문하여 견책하였습니다. 곧바로 內署로부터 내용을 바꾼 답장을 다시 받았습니다.

> 오늘(국왕을) 뵙겠다는 사안은 이미 아뢰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좋지 않고 국왕께는 趙大妃의 문병을 해야 하시므로 접견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좋은 소식이 있게 되면 즉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다시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를 받았는데 대개 앞의 글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관원을 보내 따지고 답장을 돌려보냈으며, 날마다 임무를 준 하급 무관을 궁궐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여보내 趙大妃의 병상을 묻고 아울러 알현 일자를 문의하여 확정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인원을 領議政 沈舜澤의 집으로 보내, 거기서 버티고 앉아 답장을 재촉하게 하였습니다. 조선 국왕을 힘들게 고민하도록 만들고 沈舜澤을 난처하게 하면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士民이 분분히 따지면서 모두 조선 국왕을 원망하고, 趙大妃가 병중에 이 사안의 始末을 듣는다면 자못 大義를 잃었다고 생각하여 조선 국왕을 견책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국왕은 이 때문에 당황하고 근심하여 16일 비밀리에 朴定陽에게 사직 상소를 올리게 하였고, 국왕은 副提學職의 면직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승지직은 여전히 예전대로 두었는데, 제 비난을 멈추고 趙大妃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士民의 논의를 잠재우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직을 허락하였지만, 결코 罷職한 것은 아니며 부제학은 본래 요직도 아니니, 사직이 어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보내 날마다 입궁시키고, 아울러 沈舜澤을 지키고 앉아서 독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선 국왕이 번거롭게 여겨 18일에 傳敎하기를, "都承旨 등에 대해 遞職을 허락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기 위한) 前望單子를 들이도록 하라"라고 하여 金九鉉 등을 낙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朴定陽의 이름을 결코(傳敎 중에) 넣지 않았으니 자연히 이 안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게 됩니다. 마침 국왕이 外署督辦 閔種默을 보내와서, "駐天津 조선 관원이 (淸의) 海關道를 만나 논의하는 사례에 따라, 內署·外署 독판을 함께 만나 일체를 논의합시다"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엄준한 말로 이를 반박하여 거절하고는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검토하시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내 입궁시키지도 않고, 또한 沈舜澤 집에서 앉아 지키는 일도 중단시킨 채, 며칠을 두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못 의심과 걱정이 깊어져 21일에 다시 閔種默을 파견하였고, 閔種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이전의 말은 매우 실수한 것이니 청컨대 노여움을 가라앉히십시오.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국왕께서는 장차 閣下와의 만남을 요청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만 朴定陽의 문제를 담판하고자 하지는 않으시니, 정부로 돌려보내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답하였습니다.

> 정부에서 이 사안을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므로, 굳이 만나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왕께서 혹시라도 여전히 정부 핑계를 대면서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면 알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청은 더욱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날 閔種默이 다시 와서 말하였습니다. “국왕께서 접견하여 담판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주장을 고집하지 않기를 청합니다.” 저는 “국왕께서 적절한 처리를 허락하신다면 굳이 고집하여 따질 일이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번거로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고 답하였습니다.

閔種默이 떠난 후 제가 생각건대 조선 국왕이 믿고 가까이하는 細臣들을 잘 아는데, 閔種默 같은 外臣들은 대체로 제 말을 모두 온전히 전달할 수도 없으며, 또한 국왕의 뜻을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국왕의 근신 洪在羲에게 넌지시 기별을 넣어 그가 저를 만나러 왔을 때, 朴定陽 사안을 꺼내어 거듭해서 대국적 측면의 이해로 비유하고 깨우쳐 국왕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洪在羲는 賤役 출신이지만 임오년에 반란 군병 속에서 閔妃를 구해냈습니다. 이 때문에 寵臣이 되어 누차 승진하여 兵馬節度使에 오르고 국왕으로부터 더욱 신임을 받고 있으니, 모든 사항을 상세히 전달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25일 洪在羲가 와서 말하길, “어제 말씀하신 바는 죽음을 무릅쓰고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국왕께서는 매우 후회하시면서 접견을 하게 되면 필시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하겠으나, 다만 朴定陽의 죄를 처리할 때 너무 과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29일에는 다시 국왕의 명으로 와서 12월 4일에 알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內署로부터 서신 예약을 받고서, 저는 즉시 시간에 맞추어 국왕을 알현하였습니다. 국왕은 겉으로는 매우 친밀하였고 인사말을 길게 하였습니다. 이야기가 朴定陽 사안에 이르자 왕은 제게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譯官을 통해) 전달받는 말은 매번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필담을 요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풍 뒤에 어떤 사람이 여러 차례 어린 환관을 보내 왕에게 알리기를 “필담으로 문서에 남기기는 곤란하다”고 권하였으나,[99] 제가 계속 고집하자 결국 필담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략 몇 줄을 쓰다 보면 번번이 방해하는 사람이 끼어들자, 국왕은 곧 “따로 심복을 파견하여 상의할 터이니 힘써 주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조선에 여러 해 동안 있어 조선어를 조금 알기에 국왕이 남의 통제를 받는 것을 보자 다시 번거롭게 이야기해 보았자 역시 무익하고

99) 병풍 뒤의 어떤 사람은 아마 국왕의 원세개 접견을 함께 한 민비(명성황후)를 가리키는 것 같다. 국왕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달리 없고, 국왕의 외국인 접견 시 민비가 뒤에서 함께 자리를 한 다른 사례도 보이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혹시라도 和氣를 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譯官에 부탁하여, "朴定陽 사안을 조사해 처리할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야 李 中堂大人께 전보로 답할 수 있습니다"고 물었습니다만, 국왕이 여전히 우물쭈물하자 즉시 인사를 하고 물러 나왔습니다.

外室에 이르러 戚臣 병조판서 閔泳煥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 여기에 온 것은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든 것이라 국왕께 결국 朴定陽 사안을 처리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특별히 요청하여 물었지만, 국왕께서는 시종 답을 하지는 않고 오로지 제가 주선하여 사안을 완결지어 달라고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이러니 장차 뭐라고 전보로 보고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주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결국 朴定陽을 처리할 것인지 국왕의 뜻을 대신 물어본 다음, 심복을 시켜 알려주면 그때야 제가 비로소 힘껏 주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官署로 돌아오자 洪在羲가 그날 늦게 와서 말하길, "국왕의 뜻은 대부분 접견할 때 나눈 이야기와 같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답하길, "국왕께서 만일 朴定陽의 죄를 경감하려고 한다면 혹시라도 주선할 수 있지만, 만일 절대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단연코 사안을 매듭짓기 어려울 것이다. 명확히 여쭌 후에 상세히 알려주었으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洪在羲가 다시금 누차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회를 보아 유도하면서 절실히 권고하여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였는데, 국왕이 비로소 먼저 朴定陽의 罷職을 윤허한 다음에야, 朴定陽의 終身禁錮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12일 洪在羲가 다시 방문을 요청하더니, 이 사안을 잠시 제가 이미 징계하여 처리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답하였습니다.

> 국왕의 뜻이 여러 번 뒤집히니 단지 나를 장난감으로 여기는 것이라, 결코 대신 주선할 수 없다. 또 허위 보고로 상사를 속인다는 것은 감히 들어본 적이 없다. 오로지 즉시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보고해야 할 것 같다. 아마도 이후 중국과 조선에 불편한 감정이 생겨 大局에 지장이 생길 것이니, 나는 조선을 위해 걱정이 된다.

洪在羲가 잠시 李 中堂大人께 보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면서,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힘써 국왕에게 청할 것이며, 혹시 끝내(朴定陽을) 처벌하지 않으면 다시 제가 하는 바를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10일 다시(洪在羲가)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국왕께서 이미 처음 논의대로 朴定陽을 罷職하겠다고 결심하셨고, 다시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최근 慶典이 매우 많아 즉시 처리하기는 불편합니다. 내년 1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순이 되면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저는 답하였습니다.

慶典을 핑계로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儀禮上 전례가 없는 것이니, 나는 감히 이것을 대신 보고할 수 없다. 그리고 너는 여러 번 말을 바꾸니 믿을 수 없다. 국왕께 요청하여 戚貴 重臣을 보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분명하게 말하면 그때야 참작해서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21일 申刻, 閔泳渙이 와서 다음과 같은 국왕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朴定陽은 죄가 있으니 서둘러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다만 朴定陽은 최근 병이 깊어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조선 율례에는 국왕이 직접 한 차례 신문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가 조금 나아지면 즉시 불러다 심문하고 죄를 다스리겠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조선 국왕이 이미 重臣을 통해 와서 알렸으니 아마도 경솔히 다시 뒤집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自主에 마음을 쏟고 있는데 朴定陽의 죄를 다스리면 곧 그 自主의 권리를 잃게 될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국왕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朴定陽이 罷職되면, 각국인들이 (朴定陽이) 章程을 어겨 중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되어 그 체면이 손상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뒤집으며 시간을 끌다가 명확히 처리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이는 짓이 많으니 특별히 이치로서 타이를 수도 없고, 큰소리로 위협해야 하며, 더욱이 筆墨과 口舌로서 禁制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 시세가 어려워 실제로 갑작스레 엄격한 위엄을 보임으로써 天罰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朴定陽을 엄히 처리하게 결정하도록 만들려면, 아마 반드시 강력한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얼렁뚱땅 처리하도록 내버려 놔둔다면 진실로 李 中堂大人의 지시처럼 아마 趙臣熙 또한 이를 본받아 定章을 더욱 가벼이 어길 것이고, 뜬소문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 아마도 질질 끄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 질질 끌면서 제대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으면, 趙臣熙도 자연히 감히 급작스레 출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趙臣熙가 홍콩에 체류한 지는 3년 가까이 되니 바로 이런 것 때문일 터이니, 이 또한 羈縻의 한 방법입니다.

조선 국왕은 사사건건 교활한 모습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수단을 부립니다. 남들의 이목을 가려서 각국인에게 권력이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自主의 體制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이 스스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일 처리의 기회를 망치고 이웃 나라에 비웃음을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진실로 정말 어리석은 경우입니다.

이에 제가 조선 정부를 견책한 照會, 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각 1건 및 조선 국왕을 만나 이야기한 기록을 2개의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렸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을 상세히 아뢰오니 훈시를 내려주시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23일 올라온 보고와 첨부문서는 모두 살펴보았다. 조선 국왕은 논의한 대로 朴定陽을 罷職하겠지만, 慶典이 많다는 구실을 내세워 내년 1월 중순을 기다려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다시금 閔泳渙으로부터의 전언에 의하면,

> 朴定陽은 죄가 있으니 응당 신속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나, 조선 율례에는 조선 국왕이 직접 한 차례 신문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으니, 朴定陽의 병이 조금 나아지는 것을 기다렸다가(그를 불러) 심문한 후 죄를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회를 보아 엄격히 독촉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되, 지연시키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의 지시를 직인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貴 아문에 비밀리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의 照錄 : 올해 12월 4일 未刻에 저와 조선 국왕이 만나 담판한 번쇄한 기록을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1.「袁世凱가 조선 국왕을 만나 나눈 대화 기록」

수차례 안부 인사를 나누었다.

袁世凱 : "11월 13일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朴定陽 사안에 대해 제게 직접(국왕을) 만나 전말을 진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國王 :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朴定陽이 定章을 준수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마땅하지 않습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나 역시 매우 유감입니다. 다만 바로 죄를 다스리기에는 불편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袁世凱 : “(另約)三端 定章은 본래 上奏하여 정해진 것이고, 전하 또한 지난번에 李 中堂大人께 咨文을 보내 준수하겠다는 것을 대신 상주하여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朴定陽이 미국 수도에 도착한 후 끝내 章程을 따라 실행하지 않았기에 여러 번 제가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힐문하면서 협의하였는데, 사안이 2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조선 정부에서는 朴定陽이 귀국하면 議處할 것을 승낙하고도 갑자기 지난달에 도승지 겸 부제학을 제수하였으니, 전하께서는 그 일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國王 : “朴定陽을 도승지에 제수한 것은 전례에 따른 것이지 승진이 아닙니다.”

袁世凱 : “朴定陽은 죄가 있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전례에 따르더라도 역시 관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저와 조선 정부가 주고받은 각 문건을 전하는 모두 이미 보셨는지요?”

國王 : “모두 이미 보았습니다. 다만 閣下께서 주선해주시길 힘써 부탁드리니, 처벌을 면제하게 해주신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袁世凱 : “처벌 면제만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전하께서는 朴定陽을 처리할 것인지요?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國王은 신음을 토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다.

袁世凱의 요청 : “譯員이 말을 전하는 것은 혹시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 청컨대 글로서 말을 대신하는 것은 어떤지요?”

國王이 환관에게 명령하여 筆紙를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가져오기 전에 병풍 안쪽에서 어떤 사람이 어린 환관을 보내 조선어로 요청하였다. “朴定陽 사안은 문서로 남기기 곤란합니다.” 옆에서 모시던 몇몇 환관 역시 같은 소리로 호응하며 곤란함을 이야기하였다.

國王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譯員을 시켜 말하였다. “지금은 이목이 너무 많으니 필담을 하기에 불편합니다. 논의할 바가 있다면 官署로 돌아가신 후에 글로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袁世凱 :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를 받고 직접 뵙고 중요한 공무를 아뢰었지만, 전하로부터 명확한 가르침을 얻지 못하였으니 官署로 돌아가기가 편치 않습니다. 필담으로 답을 주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國王은 부끄러운 기색을 띠더니, 잠시 필담을 허락하고는 환관에게 筆紙를 독촉하고 아울러 척신 閔泳韶를 불러 대신 쓰게 하였다.

袁世凱의 글 : “전년의 사신 파견 사안에 대해 (淸) 內庭 및 中堂大人의 뜻은 본래 ‘응당 3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사로 바꾸어 파견하는 것'이었고, 전권 파견은 애초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咨文을 보내 간절히 청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히 양해하여 국왕의 뜻에 힘써 부응하였고 곧이어 (另約)三端을 논의하여 정함으로써 상국과 속국의 체제(上屬體制)를 존속시켰습니다. 그런데 朴定陽이 미국에 도착하자 갑작스레(三端의) 首端을 위반하였으니,[100] 특히 內廷과 中堂의 처음 의도와 어긋납니다. 또 中韓의 體制에 아주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는 어째서 오래도록 방치하며 처리하지 않고, 이전의 말을 실천하지 않는지요? 특별히 전하의 밝은 가르침을 청합니다."

國王이 답을 쓰도록 지시하였다 : "李 中堂이 시종일관 곡진히 돌봐주시니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朴定陽 사안은 조정과 주고받은 문서에서 이미 자세히 나와 있으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閣下께서 잘 주선해주는 것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袁世凱의 글 : "여러 차례 국왕의 하교를 받았으니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朴定陽의 章程 위반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중국에서는 事體에 손상을 입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또 朴定陽의 처벌을 불편하게 여겨 이처럼 버틴다면 어찌 주선하여 적절히 처리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저는 미미한 존재라 감히 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적절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國王이 답을 쓰도록 지시할 때 내정에서 환관이 빈번히 와서 방해하였다. 國王이 억지로 대신 답하게 하였다 : "중국과 조선이 한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서로 버티는 것은 결코 밖에서 감싸주는 뜻[外禦其侮]이 아니게 됩니다. 오직 閣下께서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을 따름입니다. 삼가 별도로 심복을 보내 은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저는 환관들이 계속 나와 끼어드는 것을 보고는 힘써 말하기가 불편하였고, 다시 이야기를 청하는 것 역시 무익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和氣를 잃을까 걱정되어 譯官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袁世凱의 답) : "결국 朴定陽 사안에 대해 전하는 징계를 하실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國王 : "별도로 사람을 파견하여 알려드리는 것을 기다려주십시오."

재삼 요청하였으나 國王은 끝내 처벌 여부를 말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100) 三端의 첫 번째 항목은 조선 외교관이 외국에 도착할 경우, 그곳에 주재하는 청국 공사를 방문한 후 그의 인도 아래 함께 해당 국가의 외부무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물러 나왔습니다. 한편 筆談을 한 종이는 國王이 특별히 궁내에 두도록 하였는데, 제가 베껴내 보내주도록 부탁하였지만 끝내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국왕은 문자를 증거로 삼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조선 정부를 힐문한 照會 문서 및 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를 첨부문서로 만들어 삼가 李 中堂大人께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첨부문서 :

2.「조선 정부를 견책한 照會 문서」

照會합니다.
올해 7월 24일 본 총리는 朴定陽이 章程을 위반하고 허위보고한 사안에 대해 귀 조정에 照會를 보내 각기 조사·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 8월 9일에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귀 조정의 답장 照會를 돌려보내고 낱낱이 반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총리는 이를 따라 즉시 구분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章程을 위반한 사안은 얼마나 중대합니까?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는 또 얼마나 정중합니까? 그런데 뜻밖에 귀 조정에서는 끝내 3개월 동안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답장 照會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어제 官報를 보니 朴定陽이 갑자기 도승지 겸 부제학 직을 제수받았습니다. 본 총리는 몹시 의아하게 여겼고, 귀 조정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李 中堂大人께 보고하여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본 총리가 즉시 국왕의 알현을 요청하여 직접 모든 사항을 진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내무부에 照會하여 위에 알리게 한 대로, 내일 오후 12시에 본 총리가 입궁하여 알현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 외, 마땅히 귀 정부에 照會하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朴定陽에게 관직을 제수한 이유와 귀 정부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째서 이렇게 하는지 명백하게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돌려보낸 조선 정부의 답장 照會 문건」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살펴보니, 본월 13일에 귀 총리로부터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올해 7월 24일 운운. 명백하게 답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定陽에게 관직을 제수한 사안은 단지 전례에 따라 내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로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오니, 아마도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근래 국경문제가 한꺼번에 생겼고 국왕께서는 趙大妃의 병으로 문안을 걱정하시니 접견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문서를 갖추어 답장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귀 총리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월 1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1) 문서번호 : 2-1-3-87(1501, 2729a)

사안 : 조선에서 사신 파견에 대해 三端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朝鮮遣使事, 可否酌改三端).

날짜 : 光緒十六年二月初二日(1890년 2월 20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二月初二日, 致北洋大臣李鴻章函[詳見密啟].

草目. 朝鮮遣使, 可否酌改三端由

2월 2일,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密啟에 상세히 보인다].

내용 요약 : 조선이 사신 파견에 대해 三端을 고칠 수 있는지 묻는 내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2) 문서번호 : 2-1-3-88(1504, 2731b-2733a)

사안 : 조선에서 全權을 三等使로 바꾸되 전에 의정한 三端의 변통을 요구하기에 袁世凱로 하여금 논의하여 처리하게 하였습니다(朝鮮欲改全權爲三等使, 求變通前定三端, 已飭遠道議辦).

첨부문서 : 1.「李鴻章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장 전보(李鴻章覆袁世凱電)」: 조선이 三等使로 바꾸고 전에 정한 三端의 변통을 요청하니, 응당 어떻게 고칠지 적절히 논의하라(韓改派三等使, 求變通前定三端, 應如何酌改希妥議).

2.「袁世凱가 이홍장에게 보낸 답장 전보(袁世凱覆李鴻章電)」: 조선이 三等使로 (외국공사를) 바꾸고 중·한 사절 체제를 變通하는 일은, 마땅히 기회를 보아 적절히 논의하겠습니다(韓改派三等使, 變通中·韓使節體制事, 當相機妥議).

날짜 : 光緒十六年二月十一日(1890년 3월 1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函稱：

敬密復者：

接奉二月二日直字九百八十六號公函：

以朝鮮請酌改前議定之出使三端, 現彼既願改全權為三等使. 似可略予轉圜, 仍不失上國體制.

等因. 查前議三端本由該國王允行咨請轉奏, 是以奏明飭遵. 詎料該國面從心違, 朴定陽至美, 並未先謁商華使. 嗣經樵野責問,[101] 韓外署函復袁守. 雖有朴冒罪違章待回議罪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之語，而朴回國已久，袁再四詰催，不但未予嚴譴，且欲晉擢顯秩，其意似獎朴以勸違章者，視同兒戲，狡慢可惡.

現袁仍照案商催， 朴定陽稍知畏避， 引疾未出. 正與相持， 其遣使歐洲之朴齊純忽稱[102]：“如改全權為三等使，即可不遵三端.” 蓋欲以此嘗試全改前議也. 文卿前電西國無帶見之例.[103] 然第一端明言：“請由華使挈赴外部，以後即不拘定.” 因韓使初到，人地生疏，其赴外部送信憑，可由華使同往，代為道達. 見君則無須帶往. 故云不拘定也. 原議本無必須帶見之，十四年臘月，韓請刪第一端. 鴻章復以先謁華使，如謂無庸挈往，即准通融，實於該國交涉事體，毫無窒礙. 至第二、三端亦不過略存上國體制耳. 今該國王欲全廢前議,[104] 屢懇袁守周旋. 鴻章自不便堅持己見，應先令該國自行妥議，如何改法，再為酌核. 業於二月初三日，電飭袁守，俟朴齊純來詢，議覆核辦. 袁覆俟與朴鄭面議，迄今尚無續報. 謹將來往兩電鈔呈鑒察.

竊揆該國君臣反覆無常，狡變莫測. 其云“改全權為三等使，” 尚未可遽信. 即係三等使，照公法亦寄信憑於他國之君者，與全權名異實同. 若必令從華使後，隨事商之華使，仍不甘心，則上國體制何在？ 前議三端，本係斟酌而出，在中國並非過亢，在朝鮮亦非甚卑. 該國王誤聽小人煽惑，既允復翻，成何事體？ 朴齊純曾充駐津商務委員，性行狡詐. 彼既云：“我不待中東議明，斷不冒昧前往.” 或者藉詞延緩西行，亦息事甯人之道. 除俟袁守與該國議有規模，再行電請示遵外，合先密覆. 祗頌中堂、王爺大人鈞祺.

照錄抄電

1.「李鴻章覆袁世凱電」

復朝鮮袁升道，二月初三日酉刻.

前電朴齊純謂：“改全權為三等使，求改三端.” 查十四年九月間，咨商改全權為三等，韓覆未允. 嗣洪文卿電， 西國不准屬邦遣使， 向無帶見之例. 是年臘月， 韓派鄭秉夏求汝,[105] 轉懇刪第一端華使挈往外部. 鴻覆以應先謁華使商辦，如華使謂可無庸挈往，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准通融, 旨仍駁斥. 今韓如果降派三等使, 確有明文, 前議三端究應如何酌改, 仍不失上國體制, 庶與前奉諭旨籌商妥協之意相符, 未便一概抹煞. 俟朴再來詢, 先與妥議電復核辦. 江酉.[106]

2.「袁世凱覆李鴻章電」

袁升道來電, 二月初四日酉刻到.

江電敬悉. 俟朴來相機妥議. 聞鄭秉夏不日將由外任回漢. 如其來, 較朴等尤能盡情. 凱. 支.[107]

---

101) 樵野는 出使美日秘大臣 张荫桓의 號이다.

102) 박제순(朴齊純. 1858~1916)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호는 평재(平齋)이다. 1883년 별시문과에 합격한 이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主事)를 시작으로 10월 천진주재(天津駐在) 종사관(從事官) 등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 호조참판, 이조참판, 농상공부대신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제국기에는 외부대신, 육군 참장, 의정부 참정대신, 내부대신 등을 지냈으며, 수차례 외부대신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을사조약 체결 때문에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작 작위를 받았으며, 1916년 6월 20일 사망하였다.

103) 文卿은 청말의 외교관 洪钧(1839~1893)의 號이다. 洪钧은 字가 도사(陶士)이고, 강소성(江蘇省) 오현(吴县. 오늘날의 苏州) 출신이다. 1868년 과거에서 장원으로 합격하여 翰林院修撰에 임명되었다. 이후 호북학정(湖北学政), 내각학사(内阁学士), 병부좌시랑(兵部左侍郎)을 거쳐 1889년에서 1892년 사이 驻俄·德·奥·荷兰四国大臣이 되었다.

104) 맨 앞의 '今'은 원문은 '令'이나 문맥상 '今'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105) 정병하(鄭秉夏. 1849~1896)는 중인(中人) 출신으로 자는 자화(子華)이며, 호는 남고(南皐)이다. 본관은 온양(溫陽)으로 조사시찰단원, 밀양부사, 농상공부 협판 등을 역임하였다. 1881년 조사시찰단을 보낼 때, 통상사무아문(通商事務衙門) 관리로 광산·조폐·제철·피혁 등에 관련된 기계의 구입을 위해 오사카(大阪)에 파견되었다. 그 뒤 1889년 협판(協辦)으로 승진하였는데, 고종이 외국 사정을 즐겨 들었기 때문에 별입시(別入侍)에 포함되어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박정양이 주미공사로 부임하여 이른바 '另約三端'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자, 고종의 명령에 따라 袁世凱를 방문하여 경위를 밝히고, 청의 공사를 먼저 방문해야 한다는 조건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고종과 민비의 신임을 받아 왕실재정을 맡았으나 아관파천 이후 역적으로 몰려 이완용(李完用)의 심복에게 경무청 문앞 돌다리 위에서 피살되었다.

106) 여기서 江은 전보에서 사용하는 韻目으로 '3日'을 가리킨다. 전보의 韻目에는 각기 1일부터 31일까지를 가리키는 1~6개의 글자가 배치되어 있다.

107) 여기서 支는 전보에서 사용하는 韻目으로 '4日'을 가리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월 1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삼가 비밀리에 답장합니다.
2월 2일 다음과 같은 直字 986호 公函을 받았습니다.

> 조선에서 전에 議定한 出使 三端의 개정을 요청하였는데, 현재 조선에서는 全權을 三等使로 바꾸길 원합니다. 아마도 대략 전환을 허락해 주더라도 여전히 上國의 體制를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전에 논의한 三端은 본래 조선 국왕이 승낙한 후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때문으로 지시대로 따르겠다고 상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겉으로는 따르고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하여, 朴定陽이 미국에 도착하자 먼저 주미공사를 찾아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주미공사 張蔭桓이 이에 대해 문책을 하자 조선 外署에서는 袁世凱에게 서신으로 답장을 하였습니다. 비록 (서신에는) 朴定陽이 죄를 범하고 章程을 어겼으니 귀국하면 논의해서 죄를 주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朴定陽이 귀국한 지 오래되고 袁世凱가 여러 차례 견책하였음에도 엄한 견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높은 관직에 발탁하려고 하니, 그 뜻은 아마도 朴定陽을 장려하여 章程 위반을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놀음처럼 처리하니 너무 교활하여 오만하여 가증스럽습니다.
지금 袁世凱가 이 사안에 대해 여전히 처리를 독촉하자, 朴定陽도 조금은 두려움을 느껴서인지 병을 핑계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버티고 있는 와중에 유럽에 사신으로 파견된 朴齊純이 갑자기, "全權을 三等使로 바꾸면 三端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대개 이를 통해 이전의 논의를 모두 바꿔보려고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洪鈞은 이전의 전보에서 서양에는 (상국 사신이 속국 사신을) 인솔하여 가서 만나는 전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另約三端'의) 第一端에 "중국공사를 통해 함께 (해당 국가의) 외무부로 가겠다고 요청하며 그 이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신이 처음 외국에 도착하면 사람과 지역이 생소하니 외무부에 가서 신임장을 제출할 때 중국공사가 함께 인솔하여 가서 대신 이야기해주는 것입니다. 군주를 만날 때는 모름지기 인솔하여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애받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原議에서는 본디 반드시 인솔하여 가서 만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광서) 14년 12월 조선에서 第一端의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저(李鴻章)는 먼저 중국공사를 만나되 가령 (중국공사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함께 갈 필요는 없다고 한다면 즉시 그렇게 융통해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니 실로 조선의 교섭 체제에 대해 조금도 장애가 없습니다. 제2·3端 또한 上國의 體制를 대략 존속하는 데 불과합니다. 지금 조선 국왕은 이전의 논의를 모두 폐기하자고 여러 차례 袁世凱에게 주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고집하기에는 불편하므로, 응당 먼저 조선에서 어떻게 고칠지 스스로 적절히 논의한 다음 다시 검토해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미 2월 3일 袁世凱에게 전보로 朴齊純이 찾아와 물으면 논의한 후, 보고하여 검토·처리하겠다고 지시하였습니다. 袁世凱는 朴齊純, 鄭秉夏와 직접 논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장하였는데, 지금까지 후속 보고는 없습니다. 주고받은 전보 2건을 초록하여 검토해보시도록 올립니다.

제가 헤아려보건대, 조선 군신은 일을 뒤집는 경우가 자주 있고 교활한 짓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全權을 三等使로 바꾸겠다"는 것도 아직 믿을 수 없습니다. 三等公使는 萬國公法에 따르면 역시 타국 군주에게 신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니, 全權과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가령 중국공사의 뒤를 따르는 것과 여러 사안을 중국공사와 논의하는 것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上國의 體制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에 논의한 '另約三端'도 본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내놓은 것으로 중국에 있어 결코 지나치게 높인 것도 아니고 조선에 있어 결코 지나치게 낮춘 것도 아닙니다. 조선 국왕이 소인들의 선동을 듣고서 이미 승낙한 일을 다시 뒤집고자 하니 어떻게 이런 일 처리가 있겠습니까? 朴齊純은 일찍이 駐天津 商務委員을 역임하였는데, 성품과 행동이 교활합니다. 그는 "중국과 조선의 논의가 확정되지 않으면 결단코 덮어놓고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혹은 이런 핑계를 대며 유럽행을 늦추는 것도 문제를 진정시키고 사람을 안정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袁世凱와 조선이 논의하여 틀이 잡히면 다시 전보를 보내 지시를 요청한 후 따르는 것 외에, 마땅히 먼저 비밀리에 답장해야 할 것입니다. 中堂과 王爺 大人께서 평안하기를 송축합니다.

抄電의 照錄

1. 「李鴻章이 袁世凱에게 답한 電報」

조선의 升用道 袁世凱에 대한 답장. 2월 3일 酉刻

이전 전보에서 朴齊純이 "全權(使臣)을 三等使로 바꾸고, 三端의 개정을 요청합니다"라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였다. 살펴보니 광서 14년 9월 무렵, 咨文을 보내 전권을 삼등으로 바꾸는 일을 상의한 적이 있는데, 조선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답장하였다. 이후 洪鈞의 전보에서 서양에서는 속방의 사신 파견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래 (속방의 사신을) 인솔하여 가는 전례가 없다고 하였다. 이 해 12월 조선에서 鄭秉夏를 파견하여 너(袁世凱)를 찾아, "중국공사가 조선공사를 인솔하여 外務部로 가는 章程의 第一端을 삭제하는 일을 대신 간청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나는 응당 먼저 중국공사를 찾아가 논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가령 중국공사가 함께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융통을 허락한다고 답장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조선의 이런 요구를) 논박하여 물리치라는 諭旨도 있었다. 지금 조선에서 만일 三等使로 강등하여 파견하겠다는 것에 관한 확실한 문서가 있다면, 전에 논의한 三端을 응당 어떻게 바꿔야 上國의 體制를 잃지 않을 것인지 검토해야, 비로소 전에 적절히 협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신 諭旨의 뜻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일괄하여 (조선의 요청을) 말살해버리기는 곤란할 것이다. 박제순이 다시 물어오길 기다려 우선 그와 적절히 논의한 다음 전보를 답장을 보내 (내 지시를 받고) 처리하도록 하라.
3일 酉刻.

2. 「袁世凱가 이홍장에게 답한 전보」

升用道 袁世凱가 보낸 전보. 2월 4일 酉刻에 도착.
3일에 보내신 전보를 삼가 읽었습니다. 朴齊純이 오면 기회를 보아 적절히 논의하겠습니다. 鄭秉夏가 곧 外職을 마치고 漢城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가 오면 박제순과 비교할 때 더욱 말이 잘 통할 것입니다.
袁世凱 올림. 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3) 문서번호 : 2-1-3-89(1509, 2744a-2745b)

사안 : 조선의 五國使臣 趙臣熙가 멋대로 귀국하여, 조선 정부에서 이미 견책을 가하였고 아울러 다른 관원으로 바꾸어 파견하였으니, 명확히 自主에 마음을 두고 中·韓의 使節體制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韓出使五國趙臣熙, 擅自回國, 韓廷已加罪譴, 並改派他員, 顯見居心自主, 欲去中·韓使節體制).

날짜 : 光緒十六年二月十七日(1890년 3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二月十七日, 北洋大臣直隸總督李鴻章文稱：

二月十四日,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朝鮮五國全權使臣趙臣熙擅自回國, 即由韓廷治罪, 並派員替代各情形, 業經隨時電稟憲台鑒核各在案. 伏查趙臣熙淹留香港兩年有餘. 時經韓王嚴促西行, 不遵三端定章辦理. 而臣熙惟以"請先刪改三端, 乃可不遵"等語相執論. 韓王多方嘗試, 期改三端, 究未能如所望, 亦復無如臣熙何, 憎怒甚切. 同在香之閔泳翊, 尤與臣熙牴牾. 適以朴定陽違章至成爭端, 歷年詰駁, 未能結束, 臣熙愈有可藉詞, 而韓王尤無可為計. 自去秋臣熙見定陽回韓後迭經卑府責問, 王終不能顯拒中國, 遺笑遠近, 大局堪危, 復深知三端之未易刪改, 因迭次電稱病沉, 請王允回. 而王方以圖改三端, 念終未泯, 且知臣熙病係托故, 堅執不允. 而臣熙竟不通知泳翊, 藉事由香港潛經日本回韓. 正月十一日至釜山, 而韓廷猶未之聞, 逾日聞之. 王意甚怒, 誓誅臣熙以示懲戒, 經卑府婉轉呵護乃免. 十二日夜驟升朴齊純內務協辦之職, 並傳教經稱臣熙因病許褫差,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改派朴齊純往代. 時臣熙猶未抵仁川, 其所以立即派代者. 盖欲使各國見五國全權, 雖因病回, 亦未嘗一日虛位, 冀存其自立虛體耳.

十三日, 臣熙率隨員南宮檍[108]、蔡賢植[109]、李商在,[110] 及前派充駐美參贊之美人醫生阿倫等同抵仁川. 臣熙即疏請治以擅回之罪, 自繫仁川, 敬待王命. 王經數日不能決其所宜, 迭使人訪商於德尼等. 嗣知各國人均知臣熙棄命擅回, 寔非因病, 掩耳盜鈴之計, 未足欺人. 至十六日, 王復傳教云："御命出疆, 何等慎重. 雖病勢難雖,[111] 而使事未竣, 徑先回還, 揆以事體, 駭妄極矣. 五國公使趙臣熙施以竄配之典." 等語. 次日臣熙進至郊外, 即定以全羅道咸悅縣為配所,[112] 臣熙即由郊外行. 識者惜之, 而各國人仍不免騰口貽笑. 昨晤英署總領事禧在明,[113] 據云：

> 韓派全權直同兒戲, 不如勸其毋再派往. 如或不然, 可令其派三·四等公使, 最為妥便. 似此全權, 派往何用?

等語. 惟查韓王近年來視派全權為自主發軔之基, 自經三端節制, 殊失興會, 三年來惟此一事, 橫亘於衷. 此外謬妄詭計, 且因此不遑他及, 斷不肯改派三·四等公使, 並不肯飭遵三端. 意可想見, 其派齊純者, 亦一時倉卒權宜之計, 必不飭其即行. 要惟力圖設法請改三端, 倘終不蒙允, 當必乘隙相機另派柔媚昧事之員, 前往違章辦理. 卑府前晤齊純, 探其去否, 據云："須商請中國改刪三端, 再去為妥." 其見亦與臣熙差同. 特齊純不如臣熙之強項耳.

再. 韓駐日本使金嘉鎭於本月二十一日乘美兵船回抵仁川, 次日來漢. 王頗倖近, 惟嘉鎭亦小人, 尤必不能安愚息事, 變擾多端, 誠在在堪虞也.

謹將韓使趙臣熙回國各情形, 縷晰密陳. 為此肅稟鈞鑒.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密咨貴衙門, 請煩查照.

---

108) 남궁억(南宮檍. 1863~1939)은 서울 출생으로 본관은 함열(咸悅)이며, 자는 치만(致萬), 호는 한서(翰西)이다. 1883년에 영어학교(英語學校)에 1년간 다닌 후 묄렌도르프의 견습생으로 있다가, 1887년 전권 대신 조민희(趙民熙)의 수행원으로 상해에 갔다. 1893년 칠곡 부사(漆谷府使) 등을 역임하였고, 1895년 내부 토목 국장이 되어 탑골 공원 공사를 맡았다. 그 후 홍화학교(興化學校)의 교사로서 영문법과 국사를 가르치고, 독립협회에 가입하였다가 투옥되었고, 석방되자 이해 황성신문사(皇城新聞社) 사장이 되었다. 1905년에 성주 목사(星州牧使), 1906년 양양 군수(襄陽郡守)로 있으면서 양양에 현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월 1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2월 14일,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 袁世凱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선의 全權使臣 趙臣熙가 멋대로 귀국하였는데, 즉시 조선 정부에서 죄를 다스리고 아울러 관원을 파견하여 교체한 각 상황은 이미 수시로 전보를 통해 李 中堂大人께 살펴보시도록 아뢴 적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趙臣熙는 홍콩에 2년여 머물렀습니다. 당시 조선 국왕이 유럽행을 엄히 재촉하여 三端 章程을 따르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趙臣熙는 "먼저 三端을 개정해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버텼습니다. 조선 국왕은 여러

학교(峴山學校)를 설립, 이듬해 대한협회장(大韓協會長)이 되고, 이후 교육가로 활동하였다. 1933년 무궁화와 우리나라 역사 사건으로 체포되어 복역 중 1935년 병으로 석방되었다.

109) 한·러밀약 당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일한 하급 관리로 宮內府種牧課長, 內藏院種牧課長蔡賢植, 中樞院議官, 咸鏡北道交界官 등을 지냈다.

110) 이상재(李商在. 1850~1927)는 본관은 한산(韓山). 호 월남(月南)이며, 본명 계호(季皓)로 충남 서천(舒川) 출생이다. 1867년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서울에서 박정양(朴定陽)과 사귀어 그의 식객 노릇을 하다가, 1881년 그가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으로 일본에 갈 때 수행원이 되어 도일(渡日)하였다. 1884년 우정국 총판(郵政局總辦) 홍영식의 권유로 우정국 주사(主事)가 되어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갑신정변 후 낙향하였다. 1887년 박정양이 초대 주미공사에 임명되자 그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1등서기관으로 근무하였으나, 이듬해 사신 일행과 함께 귀국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 후 박정양이 내무독판(內務督辦)이 되자 우부승지(右副承旨) 겸 경연참찬(經筵參贊)이 되었고, 이어 학무아문참의(學務衙門參議)로 학무국장(學務局長)을 겸임하였다. 1895년 학부참사관(學部參事官)·법부참사관(法部參事官)을 지내고, 중추원1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을 거쳐 의정부(議政府) 총무국장이 되었다. 서재필(徐載弼)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 부회장이 되어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고, 1898년 독립협회 사건으로 구금되었으며, 1902년 개혁당(改革黨) 사건으로 3년간 복역하는 동안 그리스도교도가 되었다. 1904년 특사로 출옥, 1905년 의정부 참찬에 임명되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사 파견 준비차 내밀히 한규설(韓圭卨)·이상설(李相卨)의 집을 왕래하던 중 체포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2개월 후 석방되었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1921년 조선교육협회(朝鮮敎育協會) 회장이 되었고, 이듬해 조선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으나 곧 병사하였다.

111) 雖는 强의 오기로 보인다.

112) 咸悅縣은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일대에 설치된 조선 시대 지방 관청이자 행정구역 명칭이다.

113) 힐리어(1849~1927, Walter C. Hillier, 禧在明)는 영국 출신의 외교관이자 중국 전문가다. 1867년 주중 영국 영사관에서 통역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대중국 외교의 일선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다. 1879년부터는 북경에서 서기에 임명되었으며 1883년에는 주중 영국 대사 파크스와 함께 조영 조약을 맺기 위해 수행하였다. 1889년에는 애스턴(William George Aston)의 뒤를 이어 주한 영국 총영사(Consul-General)로 부임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지로 시도하면서 기필코 三端을 개정하려고 하였지만 끝내 바라는 대로 할 수 없었고 또한 趙臣熙를 어떻게 하지 못하자 증오와 분노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함께 홍콩에 있던 閔泳翊은 趙臣熙와 더욱 갈등을 빚었습니다. 마침 朴定陽의 章程 위반 사건이 쟁점이 되어 몇 년 동안 논쟁하며 마무리가 안 되자, 趙臣熙 또한 구실을 댈 말이 생겼고 조선 국왕은 더욱 부릴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난가을 朴定陽이 조선에 돌아온 후 여러 차례 제게 문책을 받고, 국왕이 끝내 중국을 명확히 거부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비웃음을 사며 大局이 위태로운 것을 보자 趙臣熙는 三端의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전보를 보내 병을 칭하면서 국왕에게 귀국 승인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三端 개정을 힘써 추진하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또 趙臣熙의 병이 억지 구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집을 부리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趙臣熙는 끝내 閔泳翊에게도 통지하지 않고 일을 핑계로 홍콩에서 몰래 일본으로 갔다가 조선에 돌아왔습니다. 1월 11일 부산에 도착하였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알지 못하다가 며칠 지나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매우 분노하여 맹세코 趙臣熙를 죽여 징계를 보이겠다고 하였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변호한 후에야 그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2일 밤에는 갑자기 朴齊純을 內務協辦으로 승진시키고 아울러 趙臣熙는 병 때문에 체직을 허락하고 박제순으로 교체하여 파견한다고 傳敎를 내렸습니다. 당시 趙臣熙는 인천에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즉시 그 대리자를 파견한 것입니다. 대개 五國全權 사신은 비록 병으로 귀국하였지만, 하루라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을 각국에 보여주어, 그 자립의 헛된 체면을 존속시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13일 趙臣熙가 수행원 南宮檍·蔡賢植·李商在 및 전에 주미 참찬에 임명된 미국인 의사 알렌[114]과 함께 인천에 왔습니다. 趙臣熙는 상소를 올려 멋대로 귀국한 죄를 처벌해달라고

114) 알렌(1858~1932, Horace N. Allen, 阿倫, 安連)은 미국 선교사이자 외교관으로서 조선 고종 정권의 대외 정책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1883년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로서 중국 上海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 1884년 주한 미국공사관의 의사가 되어 조선에서 의료활동 및 선교를 시작하였다.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은 閔泳翊을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조선 왕실과 매우 가까워졌으며, 이후 왕실 의사 및 정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1887년 주미 전권대사로 파견된 朴定陽의 고문으로서 함께 미국으로 가서 '另約三端'의 준수를 거부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의 간섭을 규명하는 내용을 국무성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1890년에는 주한 미국공사관의 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897년에는 주한 미국 공사 겸 총영사가 되었다. 1890년 雲山광산 채굴권, 1891년 경인철도 부설권, 1897년 전력회사 설립권 등을 미국이 획득할 수 있도록 교섭하였다. 조선의 상황에 대해 *The Korean Repository, Korean Tal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하며, 인천에서 스스로를 묶고는 삼가 왕명을 기다렸습니다. 국왕은 수일 동안 마땅한 조치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여러 차례 사람을 시켜 데니 등과 상의하였습니다. 이후 각국인들이 趙臣熙가 명령을 내던지고 멋대로 귀국하였으며 실제로는 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얕은꾀로 속이는 계책은 남을 속이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16일 왕이 다시 傳敎하기를, "어명으로 국경을 나섰으니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비록 병세가 심하더라도 사신의 임무를 마치지 않고 경솔히 귀국하였으니, 事體를 헤아려보건대 경망스러움이 너무 심하다. 五國公使 趙臣熙에게 竄配하는 형벌을 시행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趙臣熙가 교외에 이르자 즉시 全羅道 咸悅縣을 配所로 정하여 趙臣熙는 교외에서 바로 떠났습니다. 식자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고, 각국인들은 여전히 험담을 하며 비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영국 署總領事 힐리어(Walter C. Hillier)를 만났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 조선의 全權 파견은 단지 아이들 놀이와 같으니, 다시금 파견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만 못합니다. 가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4등 사신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권을 파견하여 무엇에 쓰겠습니까?

다만 살펴보건대 조선 국왕은 근년에 全權의 파견을 自主가 창출되는 기반이라고 보는데, 三端의 통제를 받아 특히 동력을 잃었기에 3년 동안 이 문제를 항상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짓과 속이는 행동이 있는데 또한 이 때문에 다른 일을 처리할 겨를이 없어, 결단코 3·4등 공사의 파견을 기꺼워하지 않을 것이고 또 三端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朴齊純을 파견한 것도 한때의 다급한 임시방편이므로 반드시 그가 곧장 가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애써 방법을 찾아 三端의 개정을 요청하겠지만 만일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도 틈을 타서 따로 아첨을 잘하고 일에는 아둔한 관원을 별도로 파견하여 가서 章程을 어기고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전에 朴齊純을 만나 출발 여부를 탐문하였는데, "모름지기 三端의 개정을 중국에 요청한 다음 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그의 견해도 또한 趙臣熙와 같습니다. 다만 朴齊純은 趙臣熙만큼 강경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첨부합니다. 한편 駐日 사신 金嘉鎭이 본월 21일 미국 군함을 타고 인천으로 돌아왔고,

Things korean 등을 저술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음날 한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국왕이 자못 총애하며 가까이합니다만 金嘉鎭 역시 소인이라 사태를 안정시킬 수 없고 문제의 실마리들이 많아 진실로 곳곳이 걱정됩니다. 삼가 조선 사신 趙臣熙가 귀국한 각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여 비밀리에 아룁니다. 이에 삼가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으므로 마땅히 貴 아문에 비밀리에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4) 문서번호 : 2-1-3-90(1556, 2814a-2815b)

사안 : 조선 署理公使 李鶴圭가 직접 찾아와 중국이 조선을 정벌하려고 한다는 新聞의 내용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朝鮮署使李鶴圭面詢, 報載中國欲伐朝鮮是否確實).

첨부문서 : 1.「신문지 기사 번역(新聞紙譯文)」: 중국이 장차 朴定陽 등의 사안 때문에 조선을 정벌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속국의 분수를 벗어난 것을 징계하려 한다(中國將以朴定陽等案, 征伐朝鮮懲其屢犯屬國分限).

날짜 : 光緒十六年七月二十日(1890년 9월 5일)

발신 : 使日大臣 黎庶昌

수신 : 總理衙門

七月二十一日, 出使大臣黎庶昌函稱：

六月十九肅寄昌字第六十六號函, 並抄摺二扣, 計邀鈞詧. 朝鮮署使李鶴圭,[115] 日前署面詢, 謂:

見日本新聞, 載有中國征伐朝鮮一事, 係因撤棧,[116] 及處置朴定陽、雇用李善得,[117] 三端是否的確, 求為明示.

庶昌答以：“新聞所載, 毫不足憑. 如果用兵, 此是何等大事, 我處必有電報, 反覆開諭.” 似已晤曉, 次日又接一函, 有：“終宵思維, 不能成寐, 求為電詢北洋.”等語. 適於是日接到李傅相初七日來函, 庶昌又令繙譯往告, 以“信中並未提及征伐朝鮮, 絕無是事.” 伊始放心. 庶昌深惜朝鮮之愚, 而又憫李鶴圭之怯懦. 茲將新聞譯抄呈鑒.

六月二十八日, 萬壽聖節讌客,[118] 正值西曆八月中旬, 率多下鄉避暑, 來客不多, 足以成禮. 庶昌俟摒擋清楚, 亦擬赴近鄉作旬日之游. 閱『申報』知京津一帶大水連年,[119] 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害不已, 賑貸維艱. 日本今年雨水亦多, 田稻淹傷不少, 秋收仍不免歉薄. 現值各衙門放假之時, 東京別無多事. 伏乞轉回堂憲為禱. 專肅. 敬請均安.[120]

照錄清摺

1.「繙譯新聞紙」

現征伐朝鮮, 現在四川提督宋慶奉李相國之命, 目下在旅順口日夜訓練兵卒, 磨劍治砲, 如臨事之狀, 以致謠言不一. 或云："朝鮮不依中國處治, 出使美國之朴定陽, 又京城撤棧一事, 不與袁世凱商量, 直照會李中堂, 及不謀於中國而雇用李善德, 種種犯屬國分限. 故李中堂大怒, 俟秋高馬肥時征之. 令宋公準備兵器如此." 或曰："練兵伐朝鮮, 其時尚早. 目下因李中堂試驗兵船、檢閱兵器次, 此擬試驗在福建船廠所造鉄甲兵船龍咸號機器、速力, 因順便巡閱北洋諸口, 至旅順閱兵. 故宋公專心練兵以待." 或曰："朝鮮今日外面雖號獨立, 其實隸属我中國, 內治、外交無不仰我鼻息, 滿朝臣僚戰戰兢兢. 如此弱國, 何用練兵磨器? 只要李中堂下一嚴令, 袁觀察一開口, 韓民叩首, 舉國而為中國之臣民矣. 今日宋公之練兵者, 非此. 蓋守衛北境以備俄國之窺伺." 諸說紛紛, 信偽不可知. 然自以柔主義之曾侯故後,[121] 李中堂之對朝鮮益以壓抑主義, 故傍人之云如此.

按四川提督宋公者征長髮賊有大功.[122] 今年七十四歲精神奕奕. 本年三月二十二日陛見, 上問尚能騎馬馳驅否, 駐防旅順畏外洋人否. 奏對, "臣祗知鎮撫外人, 不知所畏. 騎馬馳驅係臣得意事." 又將昔日南戰北伐戰跡上奏. 皇上大悅, 蓋宋公亦今日中國一大豪傑也.

115) 이학규(李鶴圭. 1852~?)는 조선의 문신이자 대한제국·일제강점기의 관료로, 본관은 홍주이다. 1883년 규장각 검서관,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1885년 형조 정랑, 1890년 내무부 주사로 임명되었다. 1890년 주일본공사관 서기관, 1893년 교섭아문 주사, 총무사 주사, 1894년 6월 외무아문 참의를 거쳤으며 1894년 이후 주로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1899년 평리원 검사, 1900년 시강원 첨사를 거쳐 1902년부터 1904년까지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을 역임했다. 1910년부터 1921년까지 강원도 참여관을 역임하였다.

116) 李鶴圭는 1890년 4월 6일부터 1891년 9월 2일까지 주일 공사관에 재직하였다. (한철호,「개화기(1887~1894) 주일 조선공사의 파견과 외교 활동」『조선문화』27, 2001, 30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월 21일, 出使大臣 黎庶昌이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내왔다.

6월 19일 昌字 제66호 公函과 첨부문서 2건을 삼가 보냈으니 이미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조선 署理公使 李鶴圭가 얼마 전 官署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일본신문을 보니 중국이 조선을 정벌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撤棧[123] 및 朴定陽의 처치, 李善得(Charles W. Legendre)의 고용 등 세 가지 문제와 관련되었다는데 사실인지 명확히 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

117) 이선득(1830~1899, Charles W. Legendre, 李善得)은 미국 외교관으로서 청과 조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제국주의자 및 반청론자로 평가받는데, 주청 廈門 미국 영사로 근무할 당시 1867년 미국 로버트호의 대만 난파와 선원 피살사건이 발생하자 미군함을 파견하는 포함외교를 주도하였다. 1872년에는 일본에서 대만 침공을 위한 외교 고문으로 발탁하였고, 배상금 교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일본 천황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이후 주일 공사 金嘉鎭과 조선 주한 일본 대리공사 곤도(近藤眞鋤)의 추천으로 조선 정부의 고문관으로 전격 발탁되어 1890년 2월 協辦內務府事에 임명되었다. 이에 總理衙門에서는 李善得이 과거 일본의 대만침공에 동행하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경계하였고, 袁世凱 등은 조선과 일본과의 공모를 의심하면서 조선 정부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李善得은 고문관이 된 이후, 청 차관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 및 다른 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조선·일본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고 있었던 漁採 사안의 협상 대표로 활약하였다.

118) 萬壽聖節은 황제의 생일을 말한다. 광서제(光緖帝)의 만수절은 음력 6월 20일(양력 1871년 8월 14일)이었다.

119) 『申报』는 상업신문으로 원명은 『申江新报』이다. 申江은 上海를 가리키는 용어다. 1872년 上海에서 창간되어 1949년 5월에 정간되었는데, 근대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행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신문이었다.

120) 專肅은 서신의 맺음말이고, 敬請은 편안하시기를 청한다는 頌祝의 용어다.

121) 曾侯는 曾國藩을 가리킨다. 曾國藩은 태평천국의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1864년 毅勇侯에 봉해졌다.

122) 長髮賊은 太平天國軍을 가리킨다. 청조의 습속인 辮髮을 거부하고 중국 전통의 長髮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123) '撤棧'은 청 상인의 行棧 이전 문제를 가리킨다. 조선과 청은 1882년 「중국·조선상민수륙무역章程(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이후 '章程')을 통해 상대국 수도에서의 공식적인 무역을 인정하였다. 章程 4조에 따르면 '조선 상인은 北京에서 章程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은 조선의 楊花津과 漢城에 들어가 行棧을 개설(朝鮮商民, 除在北京例准交易與中國商民準入朝鮮楊花津·漢城開設行棧)'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 정부에서는 서울에서 무역하는 청 상인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다른 나라들의 동일한 권리 요구 때문에 청 측에 行棧을 용산으로 이전[撤棧]하도록 요청하였다. 청에서도 최초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한·러 밀약설, 朴定陽의 미국 파견 등 조선·청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이주에 대한 청 상인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해 기존의 논의를 철회하였다. 청 상인과 조선 상인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1887년 이후 청 상점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아울러 1890년 1월에는 서울 육의전 및 시전 상인들이 외국 상인, 특히 청 상인의 이전을 호소하면서 영업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저는 “신문에 실려 있는 바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만일 병력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일입니까? 우리 쪽에서 반드시 전보를 보내 여러 차례 알리고 타일렀을 것입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깨우친 것 같았는데, 다음날 다시 서신 한 통을 받았는데, “밤새 생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北洋衙門에 전보를 보내 물어봐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마침 李 中堂大人께서 7일에 보낸 서신을 받았기에, 제가 다시 통역관을 보내서 “서신 중에 결코 조선을 정벌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절대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알리자 그가 비로소 마음을 풀었습니다. 저는 조선의 어리석음이 매우 안타깝고, 또한 이학규의 나약하고 겁많은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신문을 譯抄하여 올립니다.

6월 28일 萬壽聖節의 빈객은 마침 서력 8월 중순이라 대부분 고향으로 피서를 가기에 찾아오는 손님이 많지는 않을 것이니 예식은 충분히 치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들이 수습되기를 기다렸다가 또한 고향 근처로 가서 열흘가량 쉬고자 합니다. 『申報』를 보니 북경·천진 일대에 해를 거듭하여 큰 홍수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재해가 끊이지 않으니 재해구제 조치가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도 올해는 비가 또한 많이 내려 물에 잠기거나 손상된 곡식이 적지 않아 추수에 흉작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각 관공서는 휴가철이며 도쿄에는 별달리 사안이 많지 않습니다. 청컨대 中堂大人께 대신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모두 편안하시기를 청합니다.

첨부문서 照錄

1.「신문지 기사 번역」

지금 조선을 정벌하고자, 현재 四川提督 宋慶이 李 中堂大人의 명령을 받아 旅順 항구에서 밤낮으로 병졸을 훈련하고 칼과 대포를 정비하는데 마치 실전에 임한듯한 모습이라며, 다양한 소문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조선은 중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고 朴定陽을 미국으로 出使시켰고, 또 京城에서의 撤棧 문제를 袁世凱와 상의하지 않고 李 中堂에게 바로 照會를 보냈으며, 중국과 상의하지 않고서 李善德을 고용하는 등 종종 屬國의 分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李 中堂이 크게 노해서 가을에 말이 살찔 때를 기다려 조선을 정벌하고자, 宋公으로 하여금 병기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병사를 훈련하여 조선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벌하기에는 그 시기가 아직 이르다. 지금 李 中堂은 병선을 시험하고 병기를 검열하고자 이번에는 福建船廠에서 제조한 철갑선 군함 龍咸號의 기기와 속력을 시험하기 위해, 北洋의 여러 항구를 두루 순시한 다음 旅順에 이르러 閱兵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宋公이 전심으로 병사를 훈련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조선은 오늘날 겉으로는 독립을 부르짖는데, 실상은 우리 중국에 예속되어 내치와 외교가 우리 눈치를 살피지 않음이 없어 온 조정의 신료들이 전전긍긍한다. 이와 같은 약소국에다 무엇하러 훈련된 병사와 잘 다듬은 무기를 쓰겠는가? 李 中堂께서 한번 엄령을 내리고 袁 觀察이 한 번 입을 열면, 조선 백성은 머리를 땅에 두드리며 온 나라가 중국의 臣民이 될 것이다. 오늘날 宋公의 연병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대개 북쪽 국경을 방어하며 러시아가 엿보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다." 여러 소문이 분분하지만,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온건주의자인 曾國藩이 작고한 후 李 中堂이 조선을 더욱 抑壓主義로 대하였기에 주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四川提督 宋公은 태평천국의 반란을 정벌할 때 큰 공을 세웠다. 올해 나이는 74세이지만 정신은 멀쩡하다. 올해 3월 22일 皇上을 알현하였을 때 皇上께서 여전히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지, 旅順에 주둔하면서 洋人이 두렵지는 않은지를 물으셨다. 그는 "신은 단지 外人을 鎭撫해야 함을 알 뿐이며, 두려운 바는 모릅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은 신이 자랑하는 일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또 지난날 남·북에서의 전투와 정벌의 공적을 아뢰었다. 皇上께서 크게 기뻐하셨으니, 대개 宋公 역시 오늘날 중국의 일대 호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5) 문서번호 : 2-1-3-91(1561, 2823a-2825a)

사안 :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의 죄를 처벌하지 않으니, 중국에서는 中·韓 使節體制의 변통을 거부하여 조선 五國使臣의 출발을 지연시켜야 합니다(韓廷未治朴定陽違章之罪, 中國卽不變通中·韓使節禮制, 以延宕五國使成行).

날짜 : 光緒十六年八月二十五日(1890년 10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道員袁世凱稟稱：

竊照十五年冬間, 職道迭次照詰韓政府, 以韓駐美使臣朴定陽違章一案, 業於是年十二月二十三日抄摺稟請憲台鑒核. 旋於十六年二月初八日, 接奉批示遵照各在案. 茲於本年七月二十二日, 准韓議政府領議政沈舜澤照覆內開：

案照光緒十五年八月間, 准貴總理文函查究駐美使臣朴定陽違章一案. 適值該使抱病經年, 未能面核, 至延數月, 日切慚悤. 近來該使病漸痊可, 因詳加查核, 據稱各節, 多涉支吾, 難概憑信. 唯堅稱：

到美後, 實不便遵照定章首端辦理, 且實值偶病, 未能進謁張大臣.

等語. 本政府據查該使至美卽不便遵照首端, 自應電告本政府, 轉啟請咨妥商改定, 或進謁張大臣, 面商歸正. 敝邦仰荷天朝厚恩, 無微不至, 必有以妥為變通, 全交際而息謠疑, 該使何得竟自擅違? 並謂：“有身病不進謁張大臣, 妥商辦理,” 其在事體, 豈容若是? 已啟由殿下施以罷職之典. 惟本政府約束無素, 至生歧議, 殊切悚愧,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相應照覆貴總理，請煩查照，轉稟北洋大臣鑒核可也.

等因. 准此. 忽於八月初三日，接閱朝報內開：

傳曰："前後罷散人，並分揀仍任前職."[124]

等語. 職道探據韓人告稱：

朴定陽亦在分揀之中.

惟該報內未載明，以正擬查照來文核繕轉稟間，乃於本月初三日，接閱朝報內開：

傳曰："前後罷散人，並揀仍任前職."

等語.[125] 未知十日前罷職之朴定陽，是否亦在分揀任職之中，相應備文照會貴政府，請煩查照，迅即見覆，以便轉詳.

等因. 去後，除俟該政府照覆前來，再續核稟報，並已先後電稟請示遵飭轉詳外，所有韓政府照覆朴定陽違章已施罷職，並照詢該政府查覆各緣由，理合稟請鑒核.

又據另單密稟：

竊照韓駐美使臣朴定陽違章一案，韓廷雅不欲治定陽罪，損其自主國體，故借端拖延，又經一年有餘. 彼固巧為疲玩，以支吾中國，中國亦正宜即其拖宕不結，以牽制其五國使不敢遽爾啟行. 是以自春徂夏，亦未再事催商，迨至今秋. 韓王久病，妃專處分，欲設法將定陽案草草了結，期令五國使早日成行，曾迭派近臣鄭秉夏來商請設法免究. 職道惟以不辦定陽罪，斷不能結，各語告之. 嗣乃於七月十六日朝報開載：

傳曰："謂有身病番公不進，其在事體，豈容若是? 協辦內務府事朴定陽，施以罷職之典."

等語. 惟查因番公不進，是指誤值班而言，與違章案若無相涉，想韓人狡黠多端，自必預為抵賴地步. 因即令其飭政府照覆前來，再為核辦. 而韓廷亦自知掩耳盜鈴，不便飭該政府照覆，初只欲飭外署督辦面告結案，職道堅持不可. 至是月二十二日，始具覆前來，竟以番公不進，強牽為不謁張星使，並隱寓以請改三端之意，復派秉夏來稱：

擬日間即將定陽開復敘用. 至並請設法刪改三端，飭五國使，即行赴歐.

職道再三駁阻，謂：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三端姑不能議，定陽如即敘用，與不辦同，斷難結案.

等語. 詎韓廷聽信倖臣閔商鎬邪說，謂：

定陽本可無庸辦罪，徒損己自主之體，益重華干預之權，所失甚大，急宜起用，不可再誤.

韓廷深以為悔，因責秉夏誤入職道術中，致此損辱，秉夏惶恐數日，不敢入宮. 至八月初五日朝報即開，有"前後罷散人並分揀，仍任前職"一節，雖未列明定陽名姓，而定陽自在其中，是亦韓人巧玩之故智. 當即電稟請示，遵即照詢該政府，定陽是否在分揀任職之中. 去後. 職道審度韓人意向，必又遲擱不理，另事拖宕. 竊擬中國亦正可因其不理，以相與拖宕不結，庶五國使仍不敢遽行，復即其道以柔之，亦未始非計也. 謹將韓廷續辦朴定陽違章一案各情形稟請核示.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批：

朝鮮駐美使臣朴定陽違章，韓廷不治其罪，暫予罷黜數日，仍復前職，既經該道接閱朝報備文照詢. 如彼遲擱不理，我亦將此案暫懸不結，牽制其五國使臣難遽成行，該道所陳，未為無見.

等因. 印發外，相應咨明貴衙門，請煩查照.

8월 25일 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道員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광서 15년 겨울 무렵 제가 조선 政府에 여러 차례 照會를 보내 조선의 駐美 사신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일을 힐문하였다는 사안은 이미 올해 12월 23일 첨부문서로 올려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16년 2월 8일에 지시를 받들어 따른 바 있습니다. 지금 올해 7월 22일 조선 議政府 領議政 沈舜澤의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124) 罷散人은 관직을 그만두어 한가하게 된 사람을 말하며, 分揀은 가려서 구분한다는 뜻이다.
125) 이 뒷부분에 袁世凱가 조선 정부에 뒤에 나오는 내용의 항의 照會를 보낸다는 구절이 빠진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살펴보니 광서 15년 8월 무렵 귀 총리의 문서를 받았는데 주미 사신 朴定陽이 章程을 위반한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해당 사신이 병에 걸려 해를 넘겼으므로 직접 조사하지 못해 몇 개월이 지연되면서 날마다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래 해당 사신의 병이 조금 나아졌기에 상세히 조사·검토를 하였는데 진술한 각 항목은 대부분 얼버무리는 것이라 대개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계속 다음과 같은 진술을 고집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 실로 章程의 첫 번째 항목을 준수하여 처리하기는 어려웠으며, 또 진실로 병이 생겨 張蔭桓 大臣을 찾아뵐 수 없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조사해보건대, 해당 사신이 미국에 도착해 (三端의) 첫 번째 항목을 따르기 불편하였다면, 당연히 정부에 전보를 보내 狀啓를 올려 (淸에) 咨文을 보내 적절히 상의해서 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張蔭桓 대신을 만나 직접 상의해서 올바르게 처리하였어야 합니다. 조선은 삼가 天朝의 두터운 은혜를 받아 왔기에,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이르지 않음이 없었으므로, 반드시 적절하게 변통하여 국가 간의 교제를 온전히 하고 의심을 불식시켰어야 하였는데, 해당 사신이 어떻게 멋대로 章程을 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울러 "身病 때문에 張蔭桓 대신을 만나 상의하여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일 처리에 어떻게 이런 짓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狀啓를 올려 전하께서 罷職의 刑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정부에서 평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분란이 생겼으니 몹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마땅히 귀 총리에게 답장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고 북양대신께 대신 보고하여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照會를 받았는데, 갑자기 8월 3일 조선의 官報에 "傳敎하길, '전후의 罷散人은 모두 分揀하여 前職을 그대로 맡게 하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제가 조선인에게 탐문해보니, "朴定陽 역시 分揀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官報 내에는 명확하게 실려 있지 않았기에 조선 정부의 照會문을 검토하여 李 中堂大人께 문서를 갖추어 보고하려는 참에 본월 3일에 받은 관보를 보니 "전후의 罷散人은 모두 分揀하여 前職을 그대로 맡게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 다음과 같이) "10일 전 罷職된 朴定陽이 분간하여 前職을 맡도록 하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응당 문서를 갖추어 귀 정부에 照會를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조사해서 신속하게 답장을 보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고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照會를 보냈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답장 照會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검토하여 보고를 올리고, 아울러 이미 전후하여 전보로 지시를 청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자세히 보고하는 것 외에, 조선 정부에서 답장 照會를 보내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기에 이미 罷職하였다는 것, 그리고 조선 정부에 照會를 보내 조사해서 답장해달라고 요청한 각 내용을 마땅히 보고하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別單을 통해 다음과 같은 (袁世凱의) 비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 주미 사신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사안은 조선 정부에서 비록 朴定陽의 죄를 다스림으로써 그 自主 국체를 손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대며 질질 끌다가 또한 1년여가 지났습니다. 조선에서 진실로 교묘하게 중국을 우롱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으니, 중국 또한 마땅히 시간을 끌며 마무리를 짓지 않음으로써 (유럽) 5개국 사신이 갑자기 출발하는 일을 견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봄에서 여름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시금 서둘러 독촉하여 상의하지 않아 올가을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국왕은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어 왕비가 전적으로 처분을 하는데, 방법을 마련하여 朴定陽 안건을 대충 마무리 짓고 기필코 5개국 사신을 서둘러 출발시키고자, 여러 차례 근신 鄭秉夏를 보내서 방법을 마련해 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朴定陽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말로 답하였습니다. 이어 7월 16일의 官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傳敎하길, "身病이 있다면서 番次에 따른 공무에 나오지 않으니 일 처리상 어찌 이와 같은 짓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協辦內務府事 朴定陽에게 罷職의 刑典을 시행하라."

그런데 番次를 서는 공무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당직 근무를 잘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章程을 어긴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선인은 매우 교활하여 당연히 자연스럽게 반드시 미리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조선 정부에 다시 답장 照會를 보내라고 요구하여 다시 검토·처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스스로도 얕은꾀로 속이려는 짓임을 알고 있기에, 정부에 답장 照會를 보내라고 지시하기에 불편하여 처음에는 단지 外署 督辦을 제게 직접 보내 사안을 마무리 짓자고 요청해왔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견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 22일에야 비로소 답장 照會를 갖추어 보내 왔는데, 결국 番次에 나아가지 않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는 것을 가지고 張蔭桓 대신을 만나보지 않은 것에 억지로 갖다 붙이면서, 아울러 은근히 三端의 개정을 요청하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鄭秉夏를 파견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조만간 朴定陽을 敍用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청컨대 방법을 마련하여 三端을 폐지하고, 5개국 사신에게 지시하여 즉시 유럽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재차 논박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三端은 지금 잠시 논의할 수 없으며, 朴定陽을 즉각 敍用하는 것은 그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 결단코 (朴定陽의 章程 위반)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알았겠습니까? 조선 정부는 倖臣 閔商鎬의 다음과 같은 邪說을 듣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朴定陽에게는 본래 처리할 죄가 없습니다. 그를 처벌하면 自主의 체통을 헛되이 손상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조선에 간여하는 권한을 더할 뿐이니, 잃는 바가 크고 깊습니다. 응당 조속히 박정양을 등용하고, 다시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조선 정부는 깊이 후회하고, 이 때문에 鄭秉夏가 제 술수에 말려들어 이러한 모욕을 받게 되었다고 책망하니, 鄭秉夏는 두려워하면서 수일 동안 감히 입궁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 5일에 이르러 官報에 "전후의 罷散人을 모두 분간하여 前職을 그대로 맡게 하라"는 내용이 실렸는데, 비록 朴定陽의 성명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朴定陽은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또한 조선인의 교활한 낡은 꾀입니다. 따라서 응당 이를 전보로 보고하여 지시를 요청한 다음 그에 따라 즉각 조선 정부에 分揀하여 임용하는 대상에 朴定陽이 있는지 照會로 물었습니다. 그 후 제가 조선인의 의향을 헤아려보건대 필시 또 질질 끌면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로 연기하며 늦추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기에 중국 역시 그들이 처리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사안의 마무리를 미루며 완결짓지 않는다면 아마도 5개국 사신도 감히 갑자기 출발하지는 못할 것이며, 다시 도리로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 또한 계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가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이 章程을 어긴 사안을 처리한 후속 상황을 각기 보고하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袁世凱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의 주미 공사 朴定陽이 章程을 어겼으나 조선 정부에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임시로 며칠간 罷職하였다가 그대로 다시 前職에 복귀시켰다. 袁世凱가 조선 官報를 보고 照會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내 물었는데 저토록 질질 끌면서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나 역시 잠시 이 사안을 제쳐두어 마무리하지 않고, 5개국 사신이 갑자기 출발하기 어렵게 견제하고자 한다. 袁世凱의 의견은 그럴듯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지시를 職印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咨文을 貴 아문에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6) 문서번호 : 2-1-3-92(1597, 2877a)

사안 : 陳同書가 비밀리에 아뢴『朝鮮近議』를 咨文으로 보냅니다(咨送陳同書密陳朝鮮近議).

날짜 : 光緒十七年正月十一日(1891년 2월 19일)

발신 : 閩浙總督 卞寶第

수신 : 總理衙門

正月十一日, 閩浙總督卞文稱：

據辦理福州電報局、兼辦文報·通商局務、候選知府陳同書稟稱：126)

竊卑府日前晉謁, 承詢朝鮮近事, 稟陳大概, 未盡所言. 卑府前辦朝鮮電報總局, 蒙北洋商憲李札委, 兼辦龍山商務, 並委襄辦朝鮮交涉通商事宜. 供差韓地, 三載有餘, 與該國君臣常時聚晤, 並各國使臣、領事相與往還. 留心訪察, 見朝鮮時事日非, 似須及時籌辦, 以免後日之患, 不揣謭陋曾撰『朝鮮近議』一, 今承下問, 繕寫上陳, 以備採擇. 等情. 並抄呈清摺前來察核. 所陳有無可採, 相應據情密呈. 為此咨呈總理衙門, 謹請酌核施行.

1월 11일 閩浙總督 卞寶第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辦理福州電報局 兼辦文報·通商局務 候選知府 陳同書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126) 陳同書는 1886년 조선에 파견되어 朝鮮電報總局을 담당하면서, 襄辦朝鮮交涉通商事宜의 직함으로 龍山商務의 처리를 보조하였다. "辦理福州電報局·兼辦文報·通商局務·候選知府"이란 직함은 福州電報局을 맡으면서 아울러 文報와 通商에 관한 국무를 처리하는 候選知府(知府로서의 選用을 대기하는 직함)라는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가 일전에 찾아뵈었을 때 조선의 최근 일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대략 말씀드렸지만 다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朝鮮電報總局을 담당하였을 때 北洋通商大臣 李鴻章의 위임 지시를 받아 龍山商務를 처리하고 아울러 朝鮮의 交涉·通商 事務를 돕게 되었습니다. 조선에 파견된 지 3년 남짓 동안 조선 君臣과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국 사신 및 영사들과도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신경을 써서 방문하고 관찰하였는데, 조선의 時事가 날로 잘못되는 것을 보고는 제때 계획을 짜야만 후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고루함을 헤아리지도 않고 『朝鮮近議』 한 편을 지었었습니다. 지금 下問을 받았기에 베껴서 올림으로써 채택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첨부문서를 보내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陳同書가 아뢴 것 가운데 채택할 것이 있는지 마땅히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비밀리에 올립니다. 이에 귀 總理衙門에 咨文으로 보내오니 삼가 참작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7) 문서번호 : 2-1-3-93(1633, 2922a-2923a)

사안 : 조선 내무 협판 李善得이 일본에 가서 조약 및 漁採章程을 개정하는데, 전언에 따르면 은근히 中國이 정한 三端을 어기고 장래에 五國使臣을 파견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합니다(朝鮮內務協辦李善得, 赴日改訂條約及漁採章程, 傳有隱違中朝所定三端, 爲將來派五國使伏脈之意).

첨부문서 : 1.「조선 정부에서 李善得에게 준 증명 문서(朝鮮政府給李善得文憑)」: 특별히 李善得을 일본으로 보내 조약 항목의 수정과 漁採章程을 議定합니다(特派李善得, 赴日議定修改條款及漁採章程).

날짜 : 光緒十七年十月初七日(1891년 11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月初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候選同知直隸州唐紹儀稟稱：127)

竊本年夏間, 日本漁船在朝鮮濟州採魚, 與韓人毆傷一案, 嗣詢韓外署, 謂："此案尚易了結." 各等情, 均經袁道先後電稟憲鑒各在案. 嗣於九月初十日, 韓廷派其內務府協辦美人李善得, 攜帶文憑, 前赴日本商辦各事. 復經卑職先後電稟憲鑒各在案. 伏查韓濟州日本漁船滋事一案, 已可了結. 此次李善得派赴日本, 名為改訂條約及漁採章程, 亦未免不另有別情. 據在韓西人有云：

韓廷派李善得前赴日本, 攜有國書. 抵日國後, 可以徑遞, 意借西人為名, 以隱違中朝所定三端, 為將来派五國使伏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其说亦不為無因. 惟查李善得所攜文憑, 雖有韓王盖印, 似非國書體裁. 前曾索韓外署督辦閔種默, 抄稿來閱, 據閔種默亦云：

乃文憑非國書.

等語. 想李善得當無能為. 謹將李善得赴日所攜文憑, 另繕清摺, 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批：

據稟並清摺均悉. 韓廷派美國人李善得, 赴日本商辦漁採章程, 既有韓王教書, 即係國書. 閔種默謂："係文憑," 殊屬飾說. 但李善得並非駐使, 未必為將來派五國使伏脈. 仰仍將李善得赴日本所商各事, 隨時密探具報.

等因. 印發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韓派李善得攜赴日本文憑, 繕摺恭呈憲鑒.

計開：

1.「朝鮮政府給李善得文憑」

大朝鮮國大君主勅曰：

本國與大日本國通商既久, 和好日敦. 現據兩國通商章程內載約條及漁採章程, 合有講論條款改定新章事. 茲特派協辦內務府事李善得為辦務使, 特授權利委任前往, 宜悉心商辦, 務臻妥善. 凡我臣民按此知悉. 應請大日本國大皇帝, 照此認准, 並諭臣民一體咸知.

欽此.

大朝鮮國開國五百年, 朕御極之二十八年八月二十八日, 在漢陽景福宮親筆畫押, 蓋用國寶, 大君主畫押.[國寶]

奉勅督辦交涉通商事務 臣閔種默.[印]

127) 당소의(唐绍仪. 1862~1938)는 자가 소천(少川)으로 광동성 향산현(香山县. 珠海 唐家湾镇 唐家村) 출신으로 清末民初의 저명한 정치가·외교가다. 어려서 上海에서 공부한 뒤 1874년 제3차 미국으로 유학하는 아동(留美幼童)에 선발되어 미국에 유학한 다음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고 1881년 귀국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 候選同知·直隸州[128] 唐紹儀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여름 무렵 일본 어선이 조선 濟州에서 漁採하다 조선인과 싸우다 상처를 입은 사안[129]에 대해, 그 후 조선 外署에 물어보니 "이 사안은 그래도 쉽게 해결될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모두 升用道 袁世凱가 선후로 전보를 보내 살펴보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0일 조선 정부에서 내무부 협판 미국인 李善德을 파견하여 증명 문서를 휴대하고 일본에 가서 각 사안을 논의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제가 선후하여 전보를 보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한 바 있습니다. 조사해보건대, 조선 제주도에서 일본 어선이 말썽을 일으킨 사안은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이번에 李善得이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명색은 조약 및 漁採章程을 개정한다는 것이지만, 또한 따로 다른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선에 있는 서양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조선 정부에서 李善得을 파견해 일본으로 보낼 때 國書를 가지고 갔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뜻은 서양인을 파견하는 것을 명목으로 삼아 中國에서 정한 三端을 은밀히 위반하여 장래에 5개국 사신을 파견할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李善得이 휴대한 증명 문서는 비록 조선 국왕의 國寶를 찍었다고 해도 아마 國堉 體裁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에 조선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온 袁世凱와 인연을 맺고, 조선에서 활동하였고, 袁世凱가 청일전쟁 직전 귀국한 다음 그의 대리를 맡았고, 이후 주조선 한성영사(汉城领事), 주조선 총영사(总领事) 등을 지냈다. 청말 신해혁명 때 남북의화(南北议和)에서 북방 대표를 맡았고, 중화민국의 첫 번째 내각총리(内阁总理)를 지내기도 하였다.

128) '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 候選同知·直隸州'라는 직함은 (휴가를 얻어 잠시 중국으로 돌아간 袁世凱의) 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를 대신하는 候選同知·直隸州(知府의 副職인 同知나 直隸州의 知州로서의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직함)라는 뜻이다.

129) 188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 연해에서 일본 어선이 漁採하는 과정에서 민가에 침입하거나 이를 단속하려는 조선 관원과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1890년에는 조선 포유사(浦有司)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891년에는 일본 어선들이 제주도에 정박하여 조선 어민의 물고기를 약탈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高宗實錄』 고종 28년 8월 22일을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外署 督辦 閔種默에게 抄稿를 요구하여 검토하였고, 閔種默 또한,

증명 문서이지 國書가 아닙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李善得은 응당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터입니다. 삼가 李善得이 일본에 갈 때 휴대한 증명 문서를 첨부문서로 보고서에 함께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唐紹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보고와 첨부문서를 모두 확인하였다. 조선 정부에서 미국인 李善得을 일본으로 보내 漁採章程을 논의하는데, 이미 조선 국왕의 敎書를 소지하였으니 바로 國書에 해당한다. 閔種默이 "증명 문서다"고 한 것은 꾸민 말임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다만 李善得은 주재 사신은 아니므로 반드시 장래에 5개국 사신을 파견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李善得이 일본에 가서 상의하는 각 사안을 수시로 밀탐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이상의 지시를 직인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십시오.

첨부문서의 照錄 : 조선에서 파견한 李善得이 일본으로 가지고 간 증명 문서를 첨부문서로 만들어 공경히 올립니다.

첨부문서 :

1.「조선 정부에서 李善得에게 준 증명 문서」

大朝鮮國 大君主의 詔勅 :

本國과 大日本國은 통상한 지 오래되어 和好가 날로 돈독해졌습니다. 현재 양국 通商章程에 실려 있는 約條 및 漁採章程을 보니 마땅히 條款을 논의하여 새로운 章程으로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協辦內務府事 李善得을 특별히 辦務使로 파견하면서 특별한 권한을 위임하여 보내니, 응당 마음을 다해 논의·처리하여 적절한 결과를 얻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릇 우리 신민들이 이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응당 大日本國 大皇帝께서 이것을 認准하고 아울러 신민들에게 曉諭하여 모두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大朝鮮國 개국 500년, 짐의 등극 28년 8월 28일, 한양 경복궁에서 친필로 畫押하고 國寶를 찍는다. 大君主 畫押. [國寶]

督辦交涉通商事務 臣閔種默이 조칙을 받듭니다. [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8) 문서번호 : 2-1-3-94(1634, 2923b-2925b)

사안 :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의 죄를 처벌하지 않고 다시 기용하여 관직을 주었는데, 만일 여전히 농간을 부려 일을 벌인다면 즉시 唐紹儀를 통해 비밀리에 조사하여 보고한 후 엄히 처리하라는 諭旨를 청해야 합니다(韓廷未治朴定陽罪, 復起用授官, 倘仍敢播弄生事, 卽由唐紹儀密查具報請旨嚴辦).

첨부문서 : 1.「唐紹儀가 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唐紹儀致韓政府函)」: 朴定陽을 다시 등용하여 戶曹判書를 제수한 일을 견책합니다(譴責起復朴定陽, 授戶曹判書事).

2.「조선 정부가 唐紹儀에게 답한 서신(韓政府覆唐紹儀函)」: 朴定陽을 다시 등용하여 관직을 주었지만, 결코 높은 官秩이거나 重任이 아니니, 北洋大臣께 허락해 달라고 대신 간청해주시기 바랍니다(朴定陽起復授官, 並非顯秩重任, 祈轉懇北洋大臣准許).

날짜 : 光緒十七年十月初七日(1891년 11월 8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月初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候選同知直隸州唐紹儀稟稱：

竊本年九月十八日, 韓報內開：“朴定陽除授戶曹判書,” 業經電稟憲台鑒核, 並奉示遵辦各情形, 均電稟憲鑒在案. 伏查袁道甫經內渡, 韓廷遽將朴定陽起用, 顯係有意嘗試. 嗣經遵諭送函詰責韓政府. 去後. 韓王屢派鄭秉夏來云：

王見致政府函, 難於答復. 懇請設法代求憲台恕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等語. 卑職答以：

朴定陽係違章待罪之人, 前施罷職, 已屬輕典. 今復何故錄用? 請貴政府仍施罷職治罪, 即是辦法. 舍正不由, 另懇設法, 紹儀實難代求.

秉夏復述王意云：

定陽前違定章, 已經政府施以罷職. 今雖授以戶曹判書, 並非重任. 朝鮮以吏·兵二曹為重要, 戶曹輕於二曹, 無甚關係. 務請設法代求.

等語. 卑職答以：

姑送復函稿來閱, 倘無大礙, 再為代求.

嗣送稿來, 迭經駁改, 始加"朴定陽抗違定章及請憲台核奪准許"數語, 當即電呈鑒核訓示在案. 惟查朴定陽案, 前經袁道駁詰兩年, 韓廷施以罷職, 始為結束. 至今已將一年之久, 復行起用, 尚非出使交涉重任. 據該政府覆函內稱：“給以簡職, 懇請憲台允許.” 措詞轉圜, 似可暫為結束. 謹將卑職詰韓政府函及該政府覆函, 另繕清摺, 附呈鑒核. 伏乞憲台嚴批, 俾卑職轉照該政府, 以戒將來. 是否有當, 伏候訓示.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批：

據稟, 韓廷起用朴定陽, 除授戶曹判書, 懇該丞代請恕允.[130] 查朴定陽前者抗違定章, 案關重大, 議定褫職示懲, 本不應再行起用. 惟據韓政府述稱：

給以簡職, 無甚關係.

中朝厚待屬藩, 或不苛責. 倘仍委以重任, 或朴定陽敢於播弄生事, 復蹈故轍, 該員隨時密查具報. 定即請旨嚴辦, 仰即照知朝鮮政府查照. 候咨總理衙門查核. 摺存.

等因. 印發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卑職與韓政府往來兩函, 繕呈憲鑒.

1.「致韓政府函」

敬啟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袁總理曾奉文華殿大學士李電諭：“朴定陽既係罷職待罪之人，嗣後如再錄用，宜稟聞.” 等因. 昨閱日報內開：“朴定陽除授戶曹判書.” 等情. 查該朴使前赴美國，抗違中朝定章，逆拒國王命令，案情重大. 迭經袁總理送文詰責貴政府，並准照覆施以罷職之典，業經轉報各在案. 今該朴使待罪未治，復授戶曹判書，未審貴政府果何意見. 如以違章拒命為無罪，即不應施以罷職. 如以違章拒命為有罪，則僅施罷職，已屬曲宥，即不應復行錄用. 貴政府賞罰黜陟，量有權衡. 該朴使宜罰而賞，既黜旋陟，是明示以為人臣者可以抗逆者. 不惟不加之罪，且復榮以顯秩，既非教忠之道，亦非政體所宜，恐非中朝所願聞. 想貴政府必不出此. 茲忽前後謬異若是，惟貴政府圖之，特函佈詢. 即希貴政府詳細見覆，以憑轉報. 肅此. 順頌台祉.

九月十九日.

2.「韓政府覆函」

敬覆者:

昨接來函，備悉壹是. 查前美使朴定陽抗違定章，案情重大. 是以早經敝政府施以罷職，庸示懲勘，未敢委以重任. 然此次除授朴定陽戶曹判書之職，並非敝政府顯秩獎用之意. 竊謂先懲後敘，事體攸悚. 然給以簡職，事無甚關係. 想中朝厚待弊邦，不至有所見責於敝政府. 惟祈貴代理轉懇北洋大臣李核奪准許，實為公便. 是所至盼. 肅此. 順頌台祺.

九月二十四日.

10월 7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 候選同知直隸州 唐紹儀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9월 8일 조선의 신문에 “朴定陽에게 戶曹判書를 제수한다”는 내용이 실려, 이미 전보를 통해 李 中堂大人께 살펴보시도록 보고하였고, 아울러 지시에 따라 처리한 각 상황은

130) ‘丞’은 본래 拯救라는 뜻에서 확대되어 돕거나 보좌한다는 뜻, 나아가 보조하는 관리, 즉 副職을 가리키기도 한다. 여기서는 袁世凱의 임무를 잠시 대리하는 唐紹儀를 가리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모두 전보로 李 中堂大人께 검토하시도록 보고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升用道 袁世凱가 잠시 (휴가를 얻어) 중국으로 건너가자 조선 정부에서 갑작스레 朴定陽을 기용한 것을 보면, 분명히 시험해보려는 뜻이 있습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서신을 보내 조선 정부를 견책하였습니다. 그 후 조선 국왕이 여러 차례 鄭秉夏를 파견하여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국왕께서 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을 보았지만 답장하기 곤란합니다. 방법을 마련하여 대신 李 中堂大人께 너그럽게 허락해주시길 간청해주십시오.

저는 답하였습니다.

朴定陽은 章程 위반과 관련되어 처벌을 기다리는 죄인이고, 전에 罷職하는 刑典을 시행한 것도 이미 가벼운 벌에 해당합니다. 지금 다시 어떠한 연고로 등용하는지? 청컨대 귀 정부에서 여전히 그대로 罷職시켜 처벌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正道를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서 별도로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간청하니 저로서는 실로 대신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鄭秉夏는 다시 국왕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朴定陽이 전에 章程을 어긴 일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 罷職을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戶曹判書 관직을 내렸지만, 결코 중요한 직책이 아닙니다. 조선에서는 吏曹와 兵曹가 중요하며 戶曹는 吏曹·兵曹보다 훨씬 가벼우니. 큰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방법을 마련하여 대신 요청해주십시오.

저는 답하였습니다.

일단 답장 서신의 원고를 보내면 살펴보고, 만약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금 대신 요청하겠습니다.

이후 답장 서신의 원고를 보내왔는데 여러 차례 논박을 거쳐서야 비로소 "朴定陽이 章程을 위반한 내용과 李 中堂大人께서 검토하신 후 허락해달라"는 몇 구절이 덧붙여졌기에, 즉시 李 中堂大人께 전보를 보내 검토 후 훈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朴定陽은 전에 升用道 袁世凱가 두 해 동안 논박하며 질책하자 조선 정부에서 罷職함으로써 비로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기용하였는데, 그래도 사신으로서 교섭을 담당하는 중요 직책은 아닙니다. 조선 정부의 답장 서신을 받았는데, "한 직을 주었으니 李 中堂大人께서 허락해주길 요청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어가 그래도 원만하여 잠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 정부를 견책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신 및 조선 정부의 답장 서신을 보고서의 첨부문서로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李 中堂大人께서 엄한 批答을 내려주심으로써 제가 조선 정부에 대신 照會를 보내 앞으로의 일을 경계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조치가 마땅한지 삼가 훈시를 기다립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 唐紹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을 기용하여 戶曹判書를 제수하고 唐紹儀에게 대신 너그럽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를 간청하였다. 朴定陽이 전에 章程을 위반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였기에 遞職하여 징계를 보이는 것으로 議定하였으니, 본래 다시 기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조선 정부의 말에 따르면, "한직을 주어 큰 관계는 없다"고 하며, 中國은 屬藩을 후대해 왔기에 아마도 엄하게 견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만약 朴定陽에게 중요 직책을 맡기거나 혹은 朴定陽이 감히 농간을 부리며 말썽을 부려 다시금 지난 전철을 밟는다면, 唐紹儀는 수시로 비밀리에 조사하여 보고하라. 반드시 즉각 엄히 처리하라는 諭旨를 청하고, 조선 정부에 照會로 알려 그에 따르게 할 것이다. 咨文을 보내 總理衙門에서 검토하는 것을 기다리라. 첨부문서는 보존하라.

이상의 지시를 직인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 외에,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리오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십시오.

첨부문서의 照錄 : 삼가 제가 조선 정부와 주고받은 서신을 보고서를 갖추어 올리니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조선 정부에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전에 袁世凱 總理가 李 中堂大人의 전보 지시를 받았는데, "朴定陽은 이미 罷職되어 처벌을 기다리는 죄인이므로 이후 만일 다시 등용한다면 마땅히 보고하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朴定陽에게 戶曹判書를 제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사신 朴定陽은 전에 미국으로 가서 中國의 章程을 어기고 국왕의 명령에 거역하였으니 사안이 아주 중대하였습니다. 이에 袁世凱 總理가 문서를 보내 귀 정부를 질책하였고, 罷職의 刑典을 시행하였다는 답장 照會를 받은 다음 李 中堂大人께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朴定陽 사신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형벌을 기다리며 아직 처벌받지 않았는데 다시금 戶曹判書를 제수하니, 귀 정부가 과연 어떠한 생각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일 章程 위반과 명령 거역을 무죄로 여긴다면 罷職을 시행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章程 위반과 명령 거역을 유죄로 생각한다면 단지 罷職만을 시행한 것도 이미 애써 용서해 준 것이 되므로, 나아가 다시 등용한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 정부의 賞罰과 黜陟은 당연히 적절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신 朴定陽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데 상을 주거나, 이미 내쫓았는데 다시 승진시키는 것은 人臣된 자들에게 항명하고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꼴입니다. 비단 처벌을 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높은 官秩로 영화를 누리니 忠을 가르치는 도리가 아니며 또한 政體上 마땅한 일도 아니고, 아마도 中國도 듣기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생각기에 귀 정부에서도 필시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전후로 잘못과 차이가 이와 같은데 귀 정부에서 그것을 도모하니, 특별히 서신을 보내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상세히 답장하여 대신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만 줄입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9일.

2.「조선 정부의 답장」

삼가 답장을 드립니다.
어제 보내주신 서신을 받고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전 미국 사신 朴定陽이 章程을 거부하고 위반한 일은 사안의 내용이 중대합니다. 이 때문에 일찍이 조선 정부에서 罷職을 시행하여 징계를 보였고, 감히 중요 직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朴定陽에게 戶曹判書를 제수한 것은 결코 조선 정부에서 官秩을 높이고 장려해서 쓰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징계하고 이후에 등용한 것은 일 처리에 죄송한 바입니다. 다만 한직을 주는 일은 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中國에서는 조선을 후대해 왔기에 조선 정부를 견책하는 데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代理께서 북양대신 李 中堂大人께 검토하여 허락해주시도록 대신 간청해주신다면, 실로 순조로운 처리가 될 것입니다. 몹시 바라는 바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4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9) 문서번호 : 2-1-3-95(1635, 2926a)

사안 : 조선 朴定陽에 대해 임용을 허락하였지만, 重任을 맡기거나 혹은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됩니다(韓朴定陽准予超用, 但不得委以重任, 或再充使臣之職).

날짜 : 光緒十七年十月十五日(1891년 11월 1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北洋大臣 李鴻章

十月十五日, 行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七年十月初七日, 接准大咨內開：

代理駐紮朝鮮 候選同知直隸州唐紹儀稟稱：131)

本年九月十八日, 韓廷除授朴定陽戶曹判書, 當經電稟遵諭函詰韓政府, 嗣據復稱：朴定陽前違定章, 案情重大, 是以施以罷職. 此次除授戶曹判書, 並非顯秩, 無甚關係, 懇請准許.

等因. 除批發外, 備文咨照前來.

本衙門查朴定陽前充使臣, 遇事播弄, 抗違定章, 案情甚重, 迭經詰責, 始議定罷職示懲. 此次起用, 雖曰：“給以簡職,” 仍恐復蹈故轍. 應請貴大臣轉飭唐丞知照朝鮮政府, “朴定陽雖准起用, 不得委以重任, 不准再充使臣之職.” 庶足以懲前失而垓後患. 為此咨行貴大臣查照可也.

131) 이하의 내용은 앞 문서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생략된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15일,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냈다.

광서 17년 10월 7일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代理駐紮朝鮮 候選同知直隸州 唐紹儀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9월 18일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에게 戶曹判書를 제수하였기에 전보로 北洋大臣께 아뢰었고, 그 지시에 따라 조선 정부에 서신으로 힐문하였더니, 이후 다음과 같은 조선 정부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朴定陽은 전에 章程을 위반한 것은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기에 罷職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戶曹判書를 제수하였지만, 결코 높은 官秩이 아니고 크게 관계된 바가 없으니 허락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안에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것 외, 咨文을 갖추어 알립니다.

본 總理衙門에서 살펴보건대, 朴定陽은 전에 使臣에 충당되었는데 일마다 농간을 부리고 章程을 위반하였으니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여 누차 질책을 해서야 비로소 罷職함으로써 징계를 보이기로 議定하였습니다. 이번에 등용한 일은 비록 한직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을까 염려됩니다. 응당 귀(李鴻章)대신께 唐紹儀에게 지시하여 "朴定陽에 대해 비록 임용을 허락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된다"고 대신 조선 정부에 알리도록 요청해야만, 이전의 잘못을 징계하고 그것을 거울삼아 훗날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貴 大臣께 咨文을 보내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0) 문서번호 : 2-1-3-96(1642, 2930a-2930b)

사안 : 朴定陽에 대해 비록 임용을 허락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된다는 내용을 이미 조선 정부에 전달하여 따르도록 하였습니다(准起用朴定陽, 不得委以重任, 或再充使職, 已轉知韓政府遵照).

날짜 : 光緒十七年十二月初十日(1892년 1월 9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十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代理駐紮朝鮮商務交涉事宜、候選同知直隸州唐紹儀詳稱：

竊照本年十月十七日, 奉憲台批開：

據稟, 韓廷起用朴定陽, 除授戶曹判書, 懇該丞代請恕允. 查朴定陽前者抗違定章, 案關重大, 議定褫職示懲, 本不應再行起用. 惟據韓政府述稱, 給以簡職, 無甚關係, 中朝厚待屬藩, 或不苛責. 倘仍委以重任, 或朴定陽敢於播弄生事, 復蹈故轍. 該員隨時密查具報, 定即請旨嚴辦, 仰即照知朝鮮政府查照, 候咨總理衙門查核.

等因. 奉此. 當即遵照照會朝鮮政府及外署查照. 去後. 旋於本月初九日, 准該政府領議政沈舜澤照覆內開：

頃接貴代理照會. 等因. 仰荷中朝寬容, 感悚交摯. 相應遵照施行. 為此照覆.

等因. 前來. 理合詳請查核,[132] 寔為公便.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總理各國事務衙門, 請煩查照.

132) 詳請은 上行文인 보고서(詳文)를 올려 요청한다는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일 10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代理駐紮朝鮮商務交涉事宜 候選同知直隸州 唐紹儀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살펴보건대 올해 10월 17일에 다음과 같은 李 中堂大人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을 기용하여 戶曹判書를 제수하고 唐紹儀에게 대신 너그럽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를 간청하였다. 朴定陽이 전에 章程을 위반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였기에 遞職하여 징계를 보이는 것으로 議定하였으니, 본래 다시 기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다만 조선 정부의 말에 따르면, "한직을 주어 큰 관계는 없다"고 하며, 中國은 屬藩을 후대해 왔기에 아마도 엄하게 견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만약 朴定陽에게 중요 직책을 맡기거나 혹은 朴定陽이 감히 농간을 부리며 말썽을 부려 다시금 지난 전철을 밟는다면, 唐紹儀는 수시로 비밀리에 조사하여 보고하라. 반드시 즉각 엄히 처리하라는 諭旨를 청하고, 조선 정부에 照會로 알려 그에 따르게 할 것이다. 咨文을 보내 總理衙門에서 검토하는 것을 기다리라.

이런 지시를 받고, 즉시 그에 따라 조선 정부 및 外署에 알려 살피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본월 9일에 조선 정부 領議政 沈舜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최근 귀 代理의 照會를 받았습니다. 삼가 中國의 관용을 받게 되니 감격과 죄송함이 교차합니다. 마땅히 준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답장 照會를 보냅니다.

이런 照會를 받았으므로 응당 검토해보시도록 보고하여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總理衙門에 咨文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1) 문서번호 : 2-1-3-97(1646, 2937a)

사안 : 조선 정부에서 朴定陽을 기용하는 것에 대해 이미 (總理衙門의 검토에) 따라 승인을 받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혹은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됩니다(韓政府起用朴定陽, 已遵照允認, 不委以重任, 或令其再充使職).

날짜 : 光緒十八年正月十九日(1892년 2월 1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正月十九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案准貴衙門咨：

韓官朴定陽前充使臣, 抗違定章, 罷職示懲. 雖起用不得委以重任, 並不准再充使臣之職. 咨行轉飭知照.

等因. 當經札飭代理駐紮朝鮮商務交涉事宜、候選同知直隸州知州唐紹儀, 照會韓政府遵照. 去後. 茲據該丞詳稱：

當即遵照照會朝鮮政府及外署查照. 去後. 旋於十四日, 准該政府領議政沈舜澤照覆內開：

照得本月十一日, 接貴代理照會內開：

本月初七日, 接奉北洋大臣大學士李札開：

十月十七日, 准總理衙門咨開：

戶曹判書朴定陽前充使臣, 抗違定章, 罷職示懲. 雖准起用, 不准再充使臣之職, 庶足以懲前失而垲後患. 查照見覆.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等因. 准此. 相應遵照施行.

等因. 前來. 准此. 理合詳請查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1월 19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다음과 같은 귀 總理衙門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조선 관원 朴定陽이 전에 使臣에 충당되었는데 章程을 어겼기에 罷職시켜 징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임용하더라도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결코 다시는 使臣에 충임해도 안 됩니다. 咨文을 보내니, 대신 지시를 전달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에 따라 바로 代理駐紮朝鮮商務交涉事宜 候選同知直隸州知州 唐紹儀에게 지시를 내려 조선 정부에 알려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唐紹儀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唐紹儀는) 곧바로 지시에 따라 조선 정부 및 外署에 알려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14일에 조선 정부 領議政 沈舜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장 照會를 받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본월 11일에 귀 代理로부터 다음과 같은 照會를 받았습니다.

본월 7일에 북양대신 李 中堂大人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10월 17일 總理衙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戶曹判書 朴定陽은 전에 使臣에 충당되었는데 일마다 농간을 부리고 章程을 위반하였으니 罷職시킴으로써 징계를 보였다. 이번에 비록 등용을 허락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결코 다시 使臣에 충임하지도 않아야만, 비로소 이전의 잘못을 징계하고 그것을 거울삼아 훗날의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답장을 주십시오.

이러한 (總理衙門의) 지시를 (李鴻章과 唐紹儀를 통해) 전달받았으니, (조선 정부는) 마땅히 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唐紹儀는 조선 정부로부터) 이런 답장을 받았으니, 마땅히 살펴보시도록 보고를 올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李鴻章은 唐紹儀로부터)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으니, 마땅히 貴 아문에 咨文을 보냅니다.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2) 문서번호 : 2-1-3-98(1880, 3300a)

사안 : 일본의 조선 주재 公使에 관한 사항(日韓駐使事).

날짜 : 光緒十八年四月一日(1894년 5월 5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四月初一日, 北洋大臣李鴻章電[詳見收電簿].

浮籤 : 韓倭駐使事

4월 1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다[상세한 내용은 收電簿에 보인다].

첨부 내용 :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 公使에 관한 사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3) 문서번호 : 2-1-3-99(1890, 3309b)

사안 : 片文을 보내 朝鮮의 賀表 양식을 이미 발급하였는지 문의합니다(片詢朝鮮賀表式樣, 已否頒發).[133]

날짜 : 光緒二十年四月二十七日(1894년 5월 30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四月二十七日, 行禮部片稱：

本月二十六日, 接准北洋大臣電稱：

朝鮮國王遣使進賀八月皇太后加上徽號盛典, 並十月聖節, 擬五月二十日後起行. 惟尚未奉到部頒表式, 轉請代催禮部.

等因. 相應片行貴部, 已否將表式辦發, 並何月日頒, 由何處轉遞, 先行聲復本衙門, 以便轉復北洋大臣可也.

4월 27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이번 달 26일, 北洋大臣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조선 국왕이 8월 皇太后께 徽號를 올리는 성대한 의식과 10월의 聖節[134]에 사신을 보내는

133) 賀表란 唐·宋 이후 국가에 중요한 경축 행사가 있을 때, 신하들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올렸던 표문(表文)의 일종이다. 보통 진사(陈谢. 관직이나 하사에 대한 감사)나 경축·진헌(进献)의 경우에 쓰였으며, 명대(明代) 이후에는 만수절(萬壽節)이나 원단·동지 등의 경전(慶典)을 맞았을 때 내외의 신료들이 贺表나 賀箋을 올리게 되었다. 表는 황제와 황태후에게, 箋은 황후에게 올리는 것이다.

134) 성절(聖節)이란 만수성절(萬壽聖節) 또는 만수절(萬壽節)이라고 하며, 황제의 생일을 지칭한다. 광서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데, 5월 20일 이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135] 다만 아직 禮部에서 발급하는 賀表의 양식을 받지 못하였으니 (조선을) 대신하여 禮部에 (賀表 양식 발급을) 재촉해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응당 귀 禮部에 片文을 보내 賀表 양식을 이미 처리하여 발급하였는지, 언제 발급하였고 어떤 기관에서 전달하였는지 우선 본 아문에 답장으로 알려주시면 北洋大臣께 대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光緒帝)의 만수절은 음력 6월이므로, 본문에서 지칭하는 만수절은 자희태후(慈禧太后), 일명 서태후(西太后)의 만수절인 음력 10월 10일을 지칭하며, 특히 상기 문건이 작성된 光緒 20(1894)년은 자희태후의 60번째 생일이었다.

135) 『高宗實錄』에 따르면 진하겸사은사(進賀兼謝恩使) 이승순(李承純)·부사(副使) 민영철(閔泳喆)·서장관(書狀官) 이유재(李裕宰)가 고종에게 사폐(辭陛)한 것은 음력 6월 10일이었다.(『高宗實錄』 고종 31년 6월 10일) 이 자리에서 고종은 이승순에게 청 조정에 별도로 일본인의 서울 주둔 상황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承政院日記』 고종 31년 6월 10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4) 문서번호 : 2-1-3-100(1893, 3311a)

사안 : 조선에서 進賀表文 서식 발급을 요청하여 이미 兵部에 교부하여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朝鮮請頒進賀表文式樣, 已交兵部飛遞).

날짜 : 光緒二十年四月三十日(1894년 6월 3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四月三十日, 禮部文稱：

接准北洋大臣電稱：

朝鮮國王遣使進賀八月皇太后加上徽號盛典, 並十月聖節, 擬五月二十日後起行. 惟尚未奉到部頒表式, 轉催禮部, 已否將表式辦發, 並於何月日頒, 由何處轉遞, 先行聲覆.[136]

等因. 前來. 查本年八月十五日加上徽號禮成, 應進慶賀皇太后表文、皇上表文, 經本部奏准, 據內閣將清·漢表文式樣, 撰就交出到部. 本部即行刊刻清·漢表式二通, 於四月十六日, 交兵部飛遞朝鮮國王在案. 至十月聖節表式, 現在未據內閣撰交到部, 俟交到時, 再行頒發. 相應片覆貴衙門, 查照轉覆可也.

136) 이 문서는 앞문서와 비교해보면 이홍장의 요청 전보와 總理衙門의 편문을 함께 뒤섞어 인용하고 있다. 聲覆의 '聲'은 선포·반포한다는 뜻이 있고, 覆은 답장한다는 것이므로 聲覆은 답장하여 알린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월 30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北洋大臣이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조선 국왕이 8월 皇太后께 徽號를 올리는 성대한 의식과 10월의 聖節에 사신을 보내는데, 5월 20일 이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禮部에서 발급하는 賀表의 양식을 받지 못하여 禮部에 대신 재촉해주시도록 요청하였으니, 賀表 양식을 이미 처리하여 발급하였는지, 언제 발급하였고 어떤 기관에서 전달하였는지 우선 답장으로 알려주십시오.

살피건대, 8월 15일 徽號를 올리는 의식이 이루어질 때 皇太后와 皇上을 慶賀하며 올려야 하는 表文에 대해 禮部에서 이미 상주하여 허가를 받았고, 內閣에서 滿洲語와 漢文 표문 양식을 작성하여 본 禮部로 보내왔습니다. 본 禮部에서는 즉시 滿洲語·漢語 표문 양식 2통을 간행하여 4월 16일 兵部에 넘겨서 신속하게 조선 국왕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10월 聖節의 表文 양식은 현재 아직 內閣에서 작성하여 본 예부로 보내지 않았으니 보내오는 대로 다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당 片文으로 貴 아문에 답장을 보내니, (貴 아문에서) 검토하고 대신 답장을 전달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조선 국왕의 중국 사신에 대한 궤송 금지 (禁韓王饋送華使)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조선 국왕의 중국 사신에 대한 궤송 금지 (禁韓王饋送華使)

(1) 문서번호 : 2-1-4-01 (1573, 2841b)

사안 : 이후 조선 국왕이 사신에게 선물로 바치는 은냥을 금지합니다(嗣後禁止朝鮮國王饋送使臣銀兩).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1890년 11월 27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六日, 軍機處交稱：

本日軍機大臣面奉諭旨：

續昌等奏：[1]

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2] 藉端苛派, 並請由出使經費項下酌撥使臣治裝銀兩.

等語. 著該衙門議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欽此. 相應傳知貴衙門, 欽遵辦理可也.

此交.

10월 1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諭旨를 전달해왔다.

오늘 軍機大臣은 다음과 같은 諭旨를 직접 (구두로) 받았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바치고, 이를 빌미로 백성에게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사신들의 여행 비용을 지급하게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해당 衙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게 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았으므로) 응당 貴 아문에 알려서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諭旨를 전달합니다.

---

1) 續昌(?~1892)은 蒙古正白旗 출신의 旗人으로 同治 연간에 軍機章京, 員外郎, 總理各國事務衙門章京 등을 역임하였다. 光緒 10년(1884) 兩淮鹽運使로 임명된 후, 조선의 甲申政變 당시 吳大澂과 함께 조선에 와서 사후 처리를 담당하였다. 광서 15(1890)년 戶部左侍郎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續昌은 음력 9월 2일, 趙大妃의 사망에 대한 弔祭正使에 임명되어 조선 파견이 결정되었다(『淸德宗實錄』 光緒 16년 9월 2일). 輪船을 타고 9월 24일 인천에 도착하였고(『고종시대사』 고종 27년 9월 24일) 9월 26일 한성에 도착하여 고종을 만났고(『高宗實錄』 고종 27년 9월 26일), 9월 29일 한성을 떠났다.

2) 餽送은 선물로 보낸다거나 또는 그러한 물건이나 예물을 가리킨다. 조선에서 청의 칙사에게 궤송을 보내는 것은 오랜 관례가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문서번호 : 2-1-4-02(1574, 2842)

사안 : 사신들에게 조선에서 바치는 선물의 접수를 금지하여, 조선에서 이를 빌미로 백성에게 가혹하게 뜯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신들의 여행·포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지급하여 體制를 유지해야 합니다(請禁止使臣接受朝鮮饋送, 以免該國藉端苛派, 竝於出使經費項下酌給治裝, 賞犒等費, 以維體制).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1890년 11월 27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六日, 軍機處交出續昌等抄片稱：[3]

再. 查朝鮮國向來預備天朝敕使, 常年攤派差徭,[4] 即有敕需名目,[5] 存儲待用. 每遇冊封、賜奠各典禮,[6] 所存不敷, 復行取之民間. 聞每次總派銀十數萬兩. 其實餽送正·副使銀物等件, 計其單開, 每分約需銀數千兩, 修理房屋, 鋪陳一切, 統計所用亦不過數万兩. 且歷次使臣除例定禮物外, 其餘多有不受者,[7] 乃該國仍舊攤派, 託詞敕需, 徒歸中飽,[8] 苦累其民, 欲怨於我. 即如此次, 聞自該國王母妃故後, 即派辦此差. 迨奉旨改由海道行走, 彼此已派至六七分, 其餘未交之款, 始行豁免, 該國百姓鼓舞, 歡呼咸頌天朝恩德. 伏查該國自藩服以來, 凡有使臣前往, 即有餽送之儀, 歷蒙列聖恩施, 疊次減免. 奴才等竊查該國王餽送銀兩一節, 易滋流弊, 可否請旨諭飭該國王, 嗣後奉使大臣, 除例定土儀, 准其致送,[9] 以盡事大之誠外, 所有餽送銀兩, 概行禁革, 並請飭下該國王, 嚴行約束臣寮, 毋得藉端苛派, 以廣皇仁而示體恤? 抑奴才等更有請者. 向來奉使該國, 治備行裝、賞需一切所費, 實屬繁多, 而體制攸關, 又未便稍形儉嗇. 在奴才等受恩深重, 自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資斧,[10] 竭力尚可摒擋. 惟思嗣後奉使大臣, 設或力有未逮, 籌措必致為難. 若因陋就簡,[11] 殊體制有礙. 查出使各國一切用項, 均有經費可支. 合無仰懇天恩, 嗣後奉使朝鮮大臣, 亦由總理衙門於出使經費項下酌撥銀兩, 作為治裝、賞犒之需, 俾資津貼? 奴才等為顧全大體起見, 不揣冒昧, 據實直陳, 是否有當, 伏候聖裁.

謹奏.

10월 16일, 軍機處에서 續昌 등이 올린 附片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추가합니다. 살피건대,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勅使가 올 것을 대비하여 평년에 차요(差徭)를 할당하니, 바로 칙수(勅需)라는 명목으로 쌓아두어 쓰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매번 册封, 賜奠 등의 典禮가 있게 되면 쌓아둔 것이 부족하면 다시 민간에서 취합니다. 듣자 하니 매번 총액으로 銀 십수만 냥을 할당하여 거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正使와 副使에게 바치는 은냥이나 선물 등은 그 목록에 열거된 내용을 계산해보면 1인당 약 銀 수천 냥이 필요하고, 칙사가 묵는 건물이나 침구를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쓰는 돈은 통틀어 수만 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지금껏 (조선에 파견된) 사신들은 定例에 따른 예물 이외에 그 나머지는

3) '片'(또는 夾片)은 독자적인 奏摺으로 올릴 필요가 없거나 원 주접에서 서술하기 불편하여, 주접에 따로 끼워서 첨부하는 간단한 형식의 추가 上奏文이다.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의 성명, 날짜, 사유 등이 적히지 않으며, 보통 '再'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謹奏'로 끝을 맺는다. '附片', 또는 '片文'이라고도 한다.

4) 差徭는 원래는 백성에게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을 말하는데, 당연히 돈으로 대신 거두는 金納化의 경우도 적지 않다.

5) 칙수(勅需)란 칙사의 영접·접대·전송에 소용되는 물자를 지칭한다.

6) 賜奠은 원래 皇帝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아마 제사나 그와 관련된 의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이를테면 1844년 청의 칙사에게 정례에 따른 접대 외에 따로 은 5천 냥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고, 심지어 국경을 나설 무렵에는 조선 관료가 청의 칙사에게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왕에게 중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아마 이러한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淸宣宗實錄』 道光 24年 4月 庚子의 기사를 참조).

8) 중포(中飽)는 부정한 수단으로 가운데서 가로채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9) 토의(土儀)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토산품을 의미한다.

10) 資斧는 여비를 말한다.

11) '因陋就簡'이란 변변치 못한 본래의 조건을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대부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당하고 勅需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빼돌리니 그 백성에게 해를 입히면서도 그 원한은 저희에게 돌아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듣자 하니 조선 국왕의 모후 趙大妃가 사망한 다음 바로 이 차요를 할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諭旨를 받들어 (종전의 육로에서) 海路로 바꾸어 조선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미 (기존 징수액의) 6~7할을 거두었지만, 나머지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을 그래도 면제해 주자 조선 백성이 크게 고무되어 환호하면서 중국의 은덕을 감탄하고 칭송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조선은 藩服이 된 이래 사신이 가게 되면 곧 선물을 보내는 儀禮가 있었지만, 역대 황제들께서 은혜로이 이것을 누차 감면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살피건대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보내는 일은 쉽사리 폐단을 늘리므로, 諭旨를 내리셔서 조선 국왕이 이후 중국에서 보낸 칙사에게 定例에 따른 토산품을 보내 事大의 정성을 극진히 하도록 허가하는 것 외에는, 선물로 보내는 모든 은냥을 일괄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지시하셔서 신료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勅需를 빌미로 가혹하게 거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皇上의 인자함을 넓히고 조선에 대한 보살핌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해도 되겠습니까?
더구나 저희가 또 청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으로 가는 사신들이 행장을 꾸리거나 이들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로 繁多하지만, 體制와 관련이 있어 또한 조금이라도 인색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깊은 은혜를 입었기에 스스로 여비를 준비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 여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앞으로 사신으로 가는 대신들이 혹여나 힘에 부친다면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곤란해질까 우려됩니다. 만일 변변치 못한 상황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대강 일을 처리한다면 특별히 體制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조사컨대, 각국에 사신을 파견하는 모든 비용은 지급할 수 있는 경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皇上의 은혜를 우러러 간청하오니, 앞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가는 대신에게도 總理衙門에서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은냥을 지급함으로써 여비와 포상 비용으로 삼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大局에 만전을 꾀한다는 뜻에서 외람되이 사실대로 솔직하게 아뢰오니, 타당한지에 대해 皇上의 결정을 엎드려 기다립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문서번호 : 2-1-4-03(1575, 2843a)

사안 : 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도 사정을 헤아려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주청합니다(奏請酌給隨同出使之通官獎賞, 以免其賠累).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1890년 11월 27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六日, 軍機處交出續昌等抄片稱：

再.[12] 查禮部通官向無陞階可敘. 惟以隨同出使為優差.[13] 此次奴才等奉使朝鮮, 經該部派出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 隨同前往. 奴才等面奉諭旨：

嚴加約束通官等, 不准收受銀物. 等因.

欽此. 曾經面奏如該通官等當差謹慎, 由奴才等奏明獎賞, 當蒙俞允. 查該通官等此次均能破除舊習, 謹慎當差, 並招搖、需索情事, 業據道員袁世凱查明稟覆在案. 惟該通官等既無應陞官階, 自未便令其賠累, 可否量加獎賞, 出自逾格恩施, 再嗣後隨同出使之通官, 可否酌給津貼之處, 伏候聖裁. 謹奏.

12) '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다. '추가합니다' 또는 '첨부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13) 優差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대우나 수입, 혜택 등이) 좋은 업무·임무·공작·사업(差)이라는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16일, 軍機處에서 續昌 등이 올린 附片을 초록하여 보내왔다.

추가합니다. 생각건대, 禮部의 통역관들은 지금까지 (공로를) 평가하여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신 파견을 수행하는 것을 우대받는 임무로 간주합니다. 이번 저희가 조선으로 사행 지시를 받자 이미 禮部에서는 6품 통역관 豫和와 7품 통역관 恆霈를 파견하여 함께 가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직접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통역관 등을 엄격히 단속하여 은냥 등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

이미 황상께 직접 해당 통역관 등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지런하고 신중하여 저희가 포상을 내려주시기를 구두로 주청하여 바로 윤허를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해당 통역관 등은 이번에 모두 능히 낡은 관습을 타파하고 부지런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울러 소요를 일으키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道員 袁世凱가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습니다.[14] 다만 해당 통역관 등은 마땅히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없을 뿐 아니라, 실로 스스로 자신들의 손실을 감당하도록 하기는 곤란하니, (공로를 헤아려) 파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적절하게 포상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 적절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어떨지, 엎드려 황상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14) 다음에 나오는 (9) 문서번호 : 2-1-4-09(1581,2846a-2849b)를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문서번호 : 2-1-4-04(1576, 2843b)

사안 : 이번에 조선으로의 사신 수행원으로서 禮部에서 파견한 통역관들에게 1인 당 銀 400냥을 포상하라는 諭旨를 받았습니다(旨賞此次奉使朝鮮隨員禮部派出通官, 每員銀四百兩).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1890년 11월 27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六日, 軍機處交稱：

本日, 軍機大臣面奉諭旨：

續昌等奏：

此次奉使朝鮮, 禮部派出通官, 當差謹慎, 請量加獎賞.

等語. 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 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相應傳知貴衙門, 欽遵辦理可也.

此交. 計粘鈔片一件.

10월 1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오늘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러한 諭旨를 받았으므로) 응당 貴 아문에 알려서 上諭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알리는 바입니다. 片奏 초록본 1건을 첨부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문서번호 : 2-1-4-05(1577, 2844a)

사안 : 諭旨를 받아 두 명의 통역관에게 포상하는 은냥은 어떻게 수령해야 합니까?(奉旨賞給兩通官之銀兩, 應如何承領?)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1890년 11월 29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月十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15)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 准軍機處片交：

本日, 軍機大臣面奉諭旨：

續昌等奏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謹慎, 請量加獎賞等語. 六品通官預和、七品通官恆需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應傳知禮部, 欽遵辦理.

等因. 片交到部. 查此項恩賞銀兩, 應令該通官如何承領之處, 希即聲覆過部, 以憑辦理可也.

---

15) 주객사(主客司)는 빈례(賓禮) 및 외빈(外賓) 접대사무를 관장하는 예부(禮部)의 한 부서로 번속국(藩屬國)과 관련된 사무라는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다. 안정(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堂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당정고(呈堂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제본(題本)이나 각 성에 보내지는 咨文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낸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문의 초반 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1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습니다.
오늘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주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러한 내용의) 片文이 본 禮部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이 항목의 포상 은냥을 응당 해당 통역관들이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즉시 밝혀 본 禮部에 답장을 보내주셔서 처리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呈堂稿는 보통 대부분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문서번호 : 2-1-4-06(1578, 2844b)

사안 : 總理衙門에 가서 通譯官들이 포상 은냥을 수령하는 날짜를 알립니다(知照赴署承領通款賞銀日期).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十八日(1890년 11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月十八日, 行禮部片稱：

光緒十六年十一月十六日, 准軍機處交出面奉諭旨：

續昌等奏：

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勤慎, 請量加獎賞.

等語. 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 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欽遵傳知前來. 旋准貴部咨同前因. 此項獎賞銀兩, 本衙門定於十月二十日支放. 相應片行貴部, 屆時出具印領, 派員赴署承領可也.

10월 18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아 (總理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需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아 알려왔습니다. 곧바로 뒤이어 귀 禮部로부터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 항목의 포상 은냥에 대해 본 아문에서는 10월 20일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응당 貴 禮部에 片文으로 알리니, 기한이 되면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갖추고 總理衙門에 인원을 보내 받아가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문서번호 : 2-1-4-07(1579, 2845b)

사안 : 사신들이 조선에서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여비 은냥을 적절하게 헤아려 지급하자는 上奏에 대해서, 응당 禮部에서 (답장 上奏의) 초고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禁止使臣接受朝鮮饋送, 酌在出使經費項下撥給治裝銀兩一摺, 應由禮部主稿).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十八日(1890년 11월 29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月十八日, 行禮部片稱：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 准軍機處交出面奉諭旨：

續昌等奏：

嗣後出使朝鮮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藉端苛派, 並請由出使經費項下酌撥使臣治裝銀兩.

等語. 著該衙門議奏.

欽此. 傳知前來. 查此摺應由貴部主稿, 會同本衙門議奏. 相應片行貴部, 欽遵辦理可也.

10월 18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諭旨를 보내왔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앞으로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보내고 이를 빌미로 백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들에게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울러 출사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사신의 여비 은냥을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아문에서 논의하여 상주하라.

이상.

이러한 諭旨를 (본 總理衙門에) 알려왔습니다. 생각건대, 이에 대한 답장 상주는 마땅히 禮部에서 초고를 마련하고 본 總理衙門과 함께 논의하여 상주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片文을 귀 禮部에 보내니, 諭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 문서번호 : 2-1-4-08(1580, 2845b)

사안 :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통역관들의 포상금 수령을 요청합니다(請領奉使朝鮮通官賞銀).

첨부문서 : 1.「수령증(印領)」: 조선으로의 사명을 받들어간 6품 통역관 豫和 및 7품 통역관 恆霈의 포상금 수령증(印領恩賞奉使朝鮮六品通官六品通官豫和及七品通官恆霈賞銀).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二十日(1890년 12월 1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日, 禮部文稱：

准總理各國事務衙門片稱：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准軍機處交出面奉諭旨：

續昌等奏：

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勤慎, 請量加獎賞.

等語. 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 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欽遵傳知前來. 旋准禮部咨同前因. 此項獎賞銀兩, 本衙門定於十月二十日支放. 應片行禮部, 屆時出具印領派員赴署承領.

等因. 前來. 相應出具印領, 派員赴貴衙門祗領可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照錄印領.

禮部為印領事.

所有此次隨往奉使朝鮮之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應領恩賞銀每員四百兩, 相應出具印領派員赴貴衙門祗領.

所領是實.

10월 20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總理各國事務衙門에서 보낸 다음과 같은 片文을 받았습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아 (總理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아 (본 總理衙門에) 알려왔습니다. 곧바로 뒤이어 귀 禮部로부터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이 항목의 포상 은냥에 대해 본 아문에서는 10월 20일 지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응당 貴 禮部에 片文으로 알리니, 기한이 되면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갖추고 總理衙門으로 인원을 보내 받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응당 도장을 찍은 수령증을 갖추어 貴 아문에 인원을 보내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1.「영수증」초록

禮部에서 수령합니다.

이번에 조선으로의 사신을 수행하여 함께 간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가 응당 수령해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할 각각의 포상금 400냥은 마땅히 직인을 찍은 영수증을 갖추고 貴 아문에 인원을 보내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수령한 바가 사실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 문서번호 : 2-1-4-09(1581, 2846a-2849b)

사안 : 袁世凱가 조사 결과 조선에 보낸 사신의 수행원, 인부들이 돈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이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袁世凱稟報, 欽使赴韓隧從, 人役查無需索情弊).

첨부문서 : 1.「袁世凱가 조선의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에게 보낸 서신(袁世凱致韓館伴官, 遠接使, 提調官函)」: 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었다면 지명하여 전달함으로써, 그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中國使韓通官, 人役等, 若有勾通需索情弊, 指名轉告憑辦).

2.「조선의 遠接使 沈舜澤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韓遠接使沈履澤覆袁世凱函)」: 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폐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내주신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中國使韓通官, 人役等, 若有情弊攸關之處, 卽遵來諭隨時轉告).

3.「조선의 館伴官 南廷哲, 提調官 閔泳商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韓館伴官南廷哲提調官閔泳商覆袁世凱函)」: 전보로 보내신 지시는 특별히 보살펴 주시려는 것이니, 감히 이를 받들어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欽使電諭, 格外優恤, 敢不奉以週旋?)

4.「袁世凱가 조선의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에게 보낸 서신(袁世凱致韓館伴官, 遠接使, 提調官函)」: 사신께서 곧 돌아가실 것인데 통역관과 인부 등을 감찰하여 이들이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지 답신해 주십시오(欽使卽將返程, 請將稽察通官, 員役, 有無勾通需索各情見覆).

5.「조선의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韓館伴官, 遠接使, 提調官覆袁世凱函) : 이번에 조선에 파견된 사신의 수행원, 인부들 모두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없었습니다(此次使韓從員役, 皆無勾通需索情弊).

6.「袁世凱가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낸 서신(袁世凱致伴送使大護軍李裕承函)」: 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결탁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다면, 지명하여 전달함으로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주십시오(中國使韓通官, 人役等, 若有勾通需索情弊, 請指名轉告, 以便法辦).

7. 「伴送使大護軍 李裕承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袁世凱函)」: 중국에서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인부 등이 만일 폐단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내주신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中國使韓通官, 人役等若有情弊攸關之處, 卽遵來諭隨時轉告).
8. 「袁世凱가 伴送使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낸 서신(袁世凱致伴送使大護軍李裕承函)」: 사신께서 곧 돌아가실 것인데 통역관과 인부들을 감찰하여 이들이 결탁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일이 있었는지 답신해 주십시오(欽使卽將回程, 請將稽察通官, 員役, 有無勾通需索各情回覆).
9.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이 袁世凱에게 보낸 답신(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袁世凱函)」: 이번에 조선에 파견된 사신의 수행원, 인부가 모두 공모하여 돈을 요구한 폐단이 없었습니다(此次使韓隨員役, 皆無勾通需索情弊).

날짜 : 光緒十六年十月二十六日(1890년 12월 7일)

발신 : 北洋大臣 李鴻章

수신 : 總理衙門

十月二十六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道員袁世凱稟稱：

竊照本年九月二十日, 接奉憲台電開：

准蒙欽憲續、崇特派,[16] 職道稽查隨從通官、人役, 如有勾通需索情弊, 立卽稟明究辦, 勿稍徇隱.

等因. 奉此. 伏查朝鮮每逢天使來臨入界以後, 例派正卿一員充遠接使,[17] 沿途供給, 皆該員管理. 入館以後,[18] 又例派戶曹判書兼充提調官,[19] 判書一員兼充館伴官,[20] 所有一切饋遺、供給, 皆該二員管理. 禮成出城, 復例派正卿一員充伴送使, 回程供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給，又由該員管理．職道因先後函令該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21]、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22]、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23]、伴送使大護軍李裕承等剴諭所屬各員役一律遵照：[24]

倘通官、人役等，有勾通需索情弊，立即指名，轉告職道，分別稟辦，毋稍徇隱．

各等因．欽憲啟節抵仁後，[25] 復依次函詢該四員：

究竟通官、人役有無勾當、需索情弊，即祈明白見覆，以便彙稟．

各語．去後．均先後於九月二十九、十月初三等日，准該四員覆稱：

遵照奉以周旋，暨毫無有弊．

各等情．職道遵飭認真稽查隨從、員役，亦並無勾通、需索情弊．除經隨時稟覆欽憲，並將與韓員往來各函件，繕摺具呈外，所有遵奉電飭稽查各情，理合據實彙稟，並將與韓員往來各函件，具摺錄呈憲鑒，伏乞訓示．

等情．到本閣爵大臣．據此．相應咨呈貴衙門，請煩查照．[26]

照錄清摺：謹將與韓員往來各函，繕具清摺，恭呈憲台鑒核．

計開：

1.「致韓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函」敬啟者：

頃奉欽差大臣續、崇電開：

此次赴韓，所有一切饋遺，概不收受．仰該道臨時稽查隨從、通官、人役，如有勾通、需索情弊，立即稟明究辦，勿稍徇隱．

等因．奉此．查欽憲此次來韓，仰體天朝字小之恩，優加軫恤，無微不至．茲復格外慮防，諭飭鄭重．本總理自當實力奉行，仰副憲廑．用以特布貴館伴官、遠接使、提調官查照，剴諭所屬各員役一律遵照．倘通官、人役等，有勾通需索情弊，立即指名，轉告本總理，分別稟辦，毋稍徇隱，至負欽憲優待藩屬之意．專此．順頌台祺．諸惟澄照．[2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九月二十一日.

2.「韓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覆函」

敬稟者:

頃奉大函, 以欽差大臣續崇、電開：

此次赴韓, 所有一切饋遺, 概不收受. 隨從、通官、人役如有需索情事, 勿稍徇隱. 等因. 此係天朝優待屬邦, 無微不至. 仍荷貴總理仰副欽憲格外軫恤之至意. 拜聆之下, 纫感無極. 履澤職忝遠接一應典禮, 不克周到是懼. 至遇有情弊攸關之處, 即當遵來諭, 隨時函懇貴總理商量可也. 專此. 鳴謝. 順請台安. 統惟亮照.[28] 不莊.[29]

九月二十二日.

3.「韓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覆函」

敬覆者:

昨奉大函, 敬悉一切至憲諭. 鄭重剴摯, 實係格外優念, 敢不奉以週旋也?

即頌時祉, 統希亮照.[30]

九月二十二日.

4.「致韓館伴官刑曹判書 南廷哲、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再函」

敬啟者:

前奉欽差大臣續、崇電飭本總理, 稽查隨從、員役勾通、需索情弊, 當經函請貴館伴官、遠接使、提調官查照, 剴諭所屬各員一律遵照. 去後. 並准貴館伴官、遠接使、提調官函覆各在案. 茲查使節日間即當返程, 亟應將本總理稽查情形, 據情稟覆, 用再函詢貴館伴官、遠接使、提調官, 所有隨從、通官、人役究竟有無勾通、需索各情弊, 即祈明白見覆, 以便彙稟, 實為公便. 專此. 順頌時祉. 立候覆音.

九月二十九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韓館伴官刑曹判書南廷哲、遠接使內務府督辦沈履澤、提調官戶曹判書閔泳商覆函」

敬覆者:

頃奉貴總理來函, 詢及員役有無需索情弊. 查此次欽憲兩大人奉承皇諭, 克體眷憂, 以至隨從、員役亦皆凜遵憲飭, 毫無有弊. 雖一切應行膳儀, 概不收留. 並無以伸誠展禮, 歉固有之弊於何論? 銘感之極, 理合佈謝, 用紓兩大人厪念之至. 順頌台祉.

九月廿九日.

6.「致伴送使大護軍李裕承函」

敬啟者:

前奉欽差大臣續崇電開:

此次赴韓所有一切饋遺, 概不收受. 仰該道臨時稽查隨從通官、人役, 如有勾通、需索情弊, 立即稟明究辦, 勿稍徇隱.

等因. 奉此. 查欽差此次來韓, 仰體天朝字小之恩, 優加軫恤, 無微不至. 茲復格外慮防, 諭飭鄭重. 本總理自當實力奉行, 仰副憲厪. 茲當憲節回程之時, 用以特布貴伴送使查照, 剴諭所屬各員役沿途一律遵照. 倘通官、人役等有勾通、需索情弊, 立即指名轉告本總理, 分別稟辦, 毋稍徇隱, 至負欽憲優待藩屬之意. 專此. 順頌台祺. 諸惟澄照.

九月二十九日.

7.「韓使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函」

敬啟奉覆:

欽差兩大人仰體字小之恩, 優加軫恤, 誰或勾通需索, 有徇隱等事乎? 謹當寔力奉行, 亟圖仰副憲厪. 統希亮照.

十月初一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致韓伴送使大護軍李裕承再函」

敬啟者:

前奉欽憲飭稽查通官、人役勾通、需索各情弊, 曾經函告貴伴送使, 請嚴飭各員役一律遵照, 勿稍徇隱, 並准函覆各在案. 日間憲節即行出境, 登船內渡, 究竟通官、人役有無勾通、需索情弊, 祈即明白見覆, 以便彙稟, 實為公便. 專此. 順頌時祉. 立候覆音.

十月初二日.

9.「韓伴送使大護軍李裕承覆函」

謹啟:

仰副憲節行將發輪猶慮, 其或有情弊, 復勞詢問. 此次兩憲大人嚴束各員, 雖私相情□,

十月初三日.

16) 여기서 崇은 숭례(崇禮)를 가리킨다. 만주 정황기(正黃旗) 출신으로 당시 호부우시랑(戶部右侍郞)으로 있으면서 속창(續昌)과 함께 조선에 파견되었다. 欽憲은 조선에 보내는 청의 勅使를 가리키는데 欽은 황제가 직접 특별한 임시 임무를 주어 파견하는 欽差大臣를 가리키며, 憲은 상사·상관을 가리킨다.

17) 遠接使는 중국 사신이 올 때 조선 정부에서 2품관 중에서 문명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遠接使로 삼아 의주(義州)까지 가서 중국 사신을 영접하고 연회를 열었다.

18) 여기서 館은 太平館을 말한다. 太祖 2년 고려의 정동행성을 태평관(太平館)으로 고치고, 太祖 4년 대대적으로 개수(改修)한 이래 중국 사신이 묵는 숙소로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 외국 사신을 맞아 접대하던 곳으로는 숭례문 안쪽에 두었다. 조선에서는 중국 칙사가 碧蹄館에 이르면 영접사(迎接使) 등을 파견하고, 국왕은 왕세자 이하 문무 신하를 거느리고 慕華樓에 거동, 칙사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경복궁으로 안내해 칙서를 전달받고 다례(茶禮)를 베푼 뒤 태평관에 머물게 하였다. 이때 하마연(下馬宴)을 베풀어 대접하고, 그다음 날 임금이 거동하여 익일연(翌日宴)을 베풀고, 국사를 논의하고 물러가면 다시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어 전송하였다.

19) 제조관(提調官)은 원래 기술(技術) 계통의 일을 관장하던 관직(官職)이다. 관제(官制)에서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이 관아(官衙)를 실질적으로 관장(管掌)할 경우 도제조(都提調) 혹은 제조(提調)라고 칭하였다.

20) 관반관(館伴官)은 관반사(館伴使)라고도 하며, 원래 고려 시대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관직으로서, 대체로 정3품 이상의 고관 중에서 임명하였다.

21) 심이택(沈履澤, 1832-?) 1857년 문과에 합격한 후, 한성부 판윤, 이조판서, 예조판서, 형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22) 남정철(南廷哲, 1840~1916)은 1882년 문과에 급제하여 공조 참판, 천진주재 대원, 이조 참판, 형조 참판, 호조 참판을 지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사은겸동지부사로 중국을 방문하고 한러밀약 사건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26일, 北洋大臣 李鴻章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道員 袁世凱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9월 20일 李 中堂大人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전보를 받았습니다.

欽差大臣 續昌과 崇禮를 특별히 파견하신다는 諭旨를 받았으니, 道員 袁世凱는 수행하는 통역관과 인부들이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등의 부정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조선은 매번 중국 칙사가 경내에 들어오면 定例에 따라 正卿 1명을 遠接使로 파견하였으며, (漢城까지의) 여정에서 접대는 모두 해당 관원이 관리하였습니다. (漢城의) 太平館에 들어온 이후에는 또한 定例에 따라 戶曹判書를 提調官, 判書 1명을 館伴官에 겸임시켜 모든 선물과 접대를 해당 두 관원이 관리하였습니다. 典禮가 끝나고 (사신이) 漢城을 나가면, 또한 定例에 따라 正卿 1명을 伴送使로 파견하고 돌아가는 길의 접대 또한 해당 관원이

양해를 구하는 고종의 친서를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1889년 대사헌을 거쳐서 이듬해 협판교섭통상사무(協辦交涉通商事務)·도승지·형조판서·예조판서·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23) 민영상(閔泳商, 1829~1910)은 1872년 문과에 합격한 후,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 공조판서, 형조판서, 충청도 관찰사,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90년 당시에는 홍문관제학으로 있었다.

24) 대호군(大護軍)이란 오위(五衛)의 종3품 무관직으로서 상호군(上護軍), 호군(護軍) 등과 함께 대궐 내에 설치된 호군청(護軍廳)에서 숙직하며 궁성 4대문 밖의 직숙(直宿)과 광화문의 수호 책임을 담당하였다. 후기 오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문무관 또는 잡직에 체아직(遞兒職)으로 주어졌다. 이유승(李裕承, 1835~?)은 1864년 문과에 급제한 뒤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이조참판,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890년 대왕대비(趙大妃) 사망 후 예조판서로서 국장을 수행하였으나 전례(典禮) 절차의 착오로 罷職되었다가, 대호군으로서 반송사(伴送使)를 맡았다.

25) 계절(啟節)이란 고대 중국의 사신이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부절(符節)을 가지고 간 것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고급 관리들이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26) 원문은 請請查照이나 請煩查照가 본래 올바른 표현이다.

27) 澄照는 맑게 살펴본다는 뜻이다.

28) 亮照는 亮察과 마찬가지로 밝게 살펴본다는 뜻이다. 앞의 澄照와 비슷한 뜻이다. 즉 상대방이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고 결정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다. '统希亮察', '统祈垂鉴', '维希朗照' 등도 모두 같은 뜻이다.

29) 不莊은 서신 말미에 쓰는 겸사(谦词)로 恭遜하지 못했다, 不敬하였다는 뜻이다.

30) 統希亮照는 바로 앞 문서에 나오는 統惟亮照와 마찬가지의 뜻이다.

31) 备輸는 背书를 한다, 즉 뒷면에 서명하여 보증·확인한다는 뜻이고, 實款은 실질적인 성의나 은근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32) 統希亮燭은 역시 앞에 나온 統希亮照나 統惟亮照와 같은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관리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履澤,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 등에게 차례로 서신을 보내, "만일 통역관과 인부 등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이름을 지목하여 저에게 전달하여 알림으로써, 각기 보고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소속 관원과 인부들이 모두 따르게 절실히 타이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欽差大臣이 길을 떠나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海路를 통해) 인천에 도착하신 후,[33] 다시 순서대로 해당 4명의 관원에게 서신을 보내 "통역관과 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이 대관절 있었는지 즉시 명백하게 답장을 보내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의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4명의 관원이 모두 차례대로 9월 29일, 10월 3일 등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지시를 받들어 그에 따라 응대하였고, 조그마한 폐단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시를 받들어 수행원과 인부들을 꼼꼼히 조사하였는데 역시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은 없었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 수시로 欽差大臣께 답장 보고를 하고, 아울러 조선 관원과 주고받은 각종 서신을 첨부문서로 올리는 것 외에, 전보로 보내신 지시를 받들어 조사한 모든 사정을 마땅히 사실대로 종합하여 아뢰고, 아울러 조선 관원과 왕래한 각종 서신을 첨부문서로 올리니, 지시를 내려주시길 엎드려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응당 貴 아문에 咨文으로 알려야 할 것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 조선 관원과 왕래한 각종 서신을 첨부문서로 갖추어 李 中堂大人께서 살펴보시도록 올립니다.

---

33) 1890년 6월 사실상 고종에게 국왕의 지위를 승계하게 하였던 조대비(趙大妃)가 서거하자, 조선에서는 전통관례에 따라 고부사(告訃使)를 북경에 파견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지만, 원세개가 조대비의 장례를 기회로 조문을 위한 조칙사(弔勅使)를 파견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결국 고종이 궁궐 밖으로 나가 조칙사를 마중하고 그 앞에서 고두(叩頭)의 의례를 행하도록 강요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대질서의 의례를 여전히 재현함으로써 조선의 속방 지위를 '국제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조선이 구실로 내건 경비부담 문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은 조칙사를 육로를 이용하는 전통을 깨뜨리고 처음으로 해로(海路)를 통해 파견하고, 조선이 선택한 마산포(馬山浦)를 거부하고 인천(仁川)으로 입국하게 하여 그 선전 효과를 부풀리는 방법을 강행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조선의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覆澤,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에게 보낸 서신」

삼가 알립니다.

방금 欽差大臣 續昌, 崇禮께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조선으로 갈 때 어떠한 선물이든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袁世凱는 때가 되면 수행원, 통역관, 인부들을 감찰하여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欽差大臣이 이번에 조선에 오시면서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는 황상의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시고 지극히 세세한 것까지 특별히 아끼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히 폐단 방지를 생각하시면서 정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응당 힘을 다해 이 지시를 받들어 欽差大臣의 정중함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히 이 사실을 귀 館伴官·遠接使·提調官께 알리니, 소속 각 관원과 인부들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따르도록 절실히 타일러 주십시오. 만일 통역관, 인부 등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지명하여 제게 전달해 주셔서, 각기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감추고 숨겨 欽差大臣이 藩服을 우대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히 알립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9월 21일.

2.「조선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履澤의 답신」

삼가 아룁니다.

방금 보내주신 서한을 받았는데, 欽差大臣 續昌, 崇禮께서 전보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조선으로 갈 때 어떠한 선물이든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수행원, 통역관, 인부가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이는 중국이 지극히 세세한 것까지 屬邦을 우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欽差大臣이 특별히 屬邦을 어여삐 여기시는 지극한 뜻을 귀 총리께서 우러러 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 말씀을 들으면서 끝없이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황송하게도 欽差大臣을 멀리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접대한 모든 典禮가 주도면밀한 것이 되지 못했을까 두렵습니다. 만일 폐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응당 즉시 보내주신 지시에 따라 수시로 서신을 통해 귀 총리께 논의해 주시길 간청하겠습니다. 이에 특별히 알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시길 빌겠습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십시오. 불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9월 22일.

3.「조선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의 답신」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어제 보내주신 서신을 받아서 欽差大臣의 지시를 모두 삼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뜻이 정중하고 진지하여 실로 특별히 우대해 주시려는 생각이니, 감히 어찌 그에 따라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

4.「조선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遠接使 內務府 督辦 沈履澤,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이전에 欽差大臣 續昌, 崇禮가 제게 수행원과 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셔서, 이미 서신을 보내 귀 館伴官, 遠接使, 提調官께 이에 따라 소속 각 인원이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타일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귀 館伴官·遠接使·提調官의 답신을 두루 받았습니다. 지금 欽差大臣이 며칠 내에 응당 돌아가실 것이니, 응당 신속하게 조사한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재차 귀 館伴官·遠接使·提調官에게 서신을 보내 문의하니 모든 수행원·통역관·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는지에 대하여 즉시 명백하게 답장해 주셔서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특별히 보냅니다.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곧장 답신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9월 29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조선 館伴官 刑曹判書 南廷哲, 遠接使 內務府督辦 沈履澤, 提調官 戶曹判書 閔泳商의 답신」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방금 귀 총리께서 서신을 보내 수행원, 인부들이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생각건대, 이번에 두 분 欽差大臣이 皇上의 지시를 받들어 조선을 돌보시고 걱정하시는 그 뜻을 체현하셨으니, 수행원·인부들 또한 모두 欽差大臣의 지시를 엄숙히 준수하여 조그마한 폐단조차도 없었습니다. 응당 드려야 하는 일체의 선물도 모두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의로서 드리는 예물조차 전혀 없었는데 부끄럽게 옛날의 폐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극히 감격스럽기에. 응당 감사의 뜻을 전달하여 두 대인께서 힘쓰신 지극한 염려를 덜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9월 29일.

6.「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내는 서신」

삼가 알립니다.

이전에 欽差大臣 續昌, 崇禮께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내셨습니다.

> 이번에 조선으로 갈 때 어떠한 선물이든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袁世凱는 때가 되면 수행원, 통역관, 인부들을 감찰하여 만일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

欽差大臣이 이번에 조선에 오시면서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는 황상의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시고 지극히 세세한 것까지 아끼고 돌보아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특별히 폐단 방지를 생각하시면서 정중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응당 힘을 다해 이 지시를 받들어 欽差大臣의 정중하심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欽差大臣이 돌아가시는 때를 맞이하여 이에 특별히 알리니, 귀 伴送使께서는 이에 따라 소속 관원들이 돌아가는 도중에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절실히 타일러 주십시오. 만일 통역관·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다면 즉시 지명하여 제게 전달해주셔서, 각기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감추고 숨겨 欽差大臣이 藩服을 우대하시는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별히 보냅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9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조선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의 답장 서신」

삼가 답장을 보냅니다.
두 분의 欽差大臣이 작은 나라를 어여삐 여기시는 은혜를 우러러 체현하셔서 특별히 아끼고 돌보아 주셨는데, 어느 누가 감히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겠으며, 이를 숨기는 일이 있겠습니까? 삼가 응당 힘을 다해 받들어서 欽差大臣의 애쓰시는 마음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8.「조선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삼가 알립니다.
이전에 欽差大臣이 통역관, 인부들을 감찰하여 이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한 폐단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셔서, 이미 서신을 보내 귀 伴送使께 알리고 각 관원과 인부들에게 일률적으로 준수하되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된다고 절실히 타일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답장도 받았습니다. 며칠 내에 欽差大臣이 길을 떠나 국경을 벗어나고 배를 타고 돌아갈 터인데, 통역관, 인부들이 결탁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폐단이 있었는지 즉시 명백히 답장을 주셔서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특별히 보냅니다.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곧장 답신을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10월 2일.

9.「조선 伴送使 大護軍 李裕承의 답신」

삼가 아룁니다.
귀 총리께서는 欽差大臣이 輪船을 타고 돌아가실 때조차 여전히 혹시 폐단이 있었는지 우려하시는 마음을 받들어, 다시 수고롭게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두 분 欽差大臣이 각 인원을 엄격히 단속하셔서, 비록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것이거나 전례가 있던 경우일지라도 이미 드리려고 준비하였던 것도 처음부터 조금도 지시를 어긴 것이 없다는 점은 이전에 이미 진심을 갖추어 확인해드린 바 있습니다. 헤아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 문서번호 : 2-1-4-10(1583, 2850b)

사안 : 조선에 사신으로 갔던 통역관들의 상금 은냥은 이미 본 아문에서 대신 지급하였으니, 즉시 응당 출사경비 항목에서 그 액수만큼 뽑아서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使韓通官償銀, 已由本署墊發卽, 應於出使經費項下, 照數撥還).

날짜 : 光緒十六年十一月五日(1890년 12월 1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江海關道 龔照瑗

十一月初五日, 給江海關道龔照瑗劄稱：[34]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 由軍機處交出面奉諭旨：

續昌等奏：

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勤慎, 請量加獎賞.

等語.

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 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欽遵傳知前來. 旋准禮部咨同前因. 查此項獎賞銀兩, 本衙門已於十月二十日, 如數墊發. 相應札行江海關道, 即於出使經費項下, 照數撥還, 以清款目可也.

34) 해관도(海關道)는 관도(關道)라고도 하며, 1858년 해관의 외국인 세무사 제도가 시작된 이래 청 정부에서 해관을 감독하고 관할 지역의 대외 교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전국에 설치된 15개의 해관도 가운데 전직(專職)인 천진(天津)의 진해관도(津海關道)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도대(道台)가 겸직하였고, 강해관도(江海關道) 역시 소송태도(蘇松太道)가 겸직하였다. 공조원(龔照瑗. 1835~1897)은 자가 仰蘧, 호가 卫卿으로 안휘성(安徽省) 합비(合肥) 출신이다. 1886년 上海道台(蘇松太道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分巡苏松太常等地兵备道이다), 1891년 절강안찰사(浙江按察使) 등을 역임하였다. 차(箚)는 차자(箚子)로 관청에서 사용하던 간단한 형식의 상주문이나 관청끼리 주고받던 공문서를 가리킨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월 5일, 江海關道 龔照瑗에게 다음과 같은 劄文을 보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아 (總理衙門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를 받아 (본 總理衙門에) 알려왔습니다. 곧바로 뒤이어 禮部로부터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각건대, 이 항목의 포상금은 본 아문에서 이미 10월 20일 액수대로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응당 江海關道에게 지시하여, 즉시 出使經費 항목에서 그 액수만큼 뽑아서 상환하여 그 항목을 청산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 문서번호 : 2-1-4-11(1584, 2851a)

사안 : 이후 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는 사안을 논의하여 상주하기 위해 咨文을 통해 會奏에 들어가는 堂衙을 알고자 합니다(議奏嗣後出使朝鮮, 禁止該國王饋送銀兩一案, 咨取會奏堂衙).

날짜 : 光緒十六年十一月九日(1890년 12월 20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初九日, 禮部文：

所有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撥治裝、津貼一摺, 相應將奏稿片送貴衙門會畫.[35] 俟議結畫齊後, 仍將原稿並開列各堂衙,[36] 一併咨送過部, 以便定期具奏. 俟定有具奏日期, 再行知照貴衙門, 一體會奏可也.[37]

11월 9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여비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주접을 會奏하는 문제는 응당 주접 원고를 片文으로 貴 아문에 보내 함께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논의가 정리되고 계획이 마련되면

35) 會畫는 함께 설계하거나 계획을 마련한다(會議策劃)는 뜻으로 보인다.
36) 堂은 원래 관리들이 사안을 심사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장소, 즉 사무실을 가리키므로 堂衙은 일 처리에 관련된 부서의 명칭이나 주무·책임 관료의 직함을 말한다.
37) 會奏는 한 명 이상의 관료나 여러 관청·부서에서 공동으로 聯名하여 상주한다는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전처럼 주접 원고와 열거한 堂銜을 함께 咨文으로 禮部에 보내, 기한을 정하여 상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상주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貴 아문에 알려 함께 會奏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2) 문서번호 : 2-1-4-12(1589, 2867a)

사안 : 會奏할 주접 초고를 돌려보내면서 아울러 堂衙을 열거하여 보냅니다(送還會奏稿, 並開送堂衙).

날짜 : 光緒十六年十一月二十三日(1891년 1월 13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一月二十三日, 行禮部片文稱：

光緒十六年十一月初九日, 接准文稱：

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給治裝津貼一摺, 應將奏稿片送會畫, 俟議結畫齊後, 仍將原稿並開列堂衙一併送部, 以便定期具奏.

等因. 前來. 本衙門業經議結畫齊, 稿內並有簽商之處. 相應開列堂衙並會奏一件片送貴部酌核. 俟定有奏期, 先行知照本衙門可也.

11월 23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광서 16년 11월 9일 다음과 같은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여비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주접을 會奏하는 문제는 응당 주접 원고를 片文으로 貴 아문에 보내 함께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논의가 정리되고 계획이 마련되면 이전처럼 주접 원고와 열거한 堂衙을 함께 咨文으로 禮部에 보내, 기한을 정하여 상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 아문에서는 이미 논의가 정리되고 계획이 마련되었으며, 주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원고 내에 아울러 쪽지로 상의할 내용을 붙여 두었습니다. 응당 연명에 필요한 堂銜 및 會奏 초고 1건을 片文으로 귀 禮部에 보내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주 기일이 정해지면 우선 본 아문에 알려 주시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3) 문서번호 : 2-1-4-13(1590, 2867b)

사안 : 會奏 날짜를 알리면서, 아울러 이전에 알려온 堂衙에 덧붙여 쓸 내용이 있는지 묻습니다(知照會奏日期, 查詢前送堂衙有無註寫).

날짜 : 光緒十六年十二月七日(1891년 1월 16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七日, 禮部文稱：

所有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撥津貼一摺, 本部定於本月初九日會奏, 相應片行貴衙門查照. 於是日一體會奏, 所有前送堂衙, 現在有無出差等項事故, 務於初八日午刻以前, 聲覆過部. 如不聲覆, 本部即照前送堂衙, 繕摺具奏可也.

12월 7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여비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상주하는 奏摺은 이번 달 9일에 會奏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응당 貴 아문에 片文을 통해 알려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함께 會奏하는데 이전에 보냈던 堂衙 가운데 현재 출장 등의 변동이 있는지를 8일 午刻 이전까지 저희에게 답장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답장이 없다면 저희는 즉시 이전에 전송해 주셨던 堂衙에 따라 奏摺을 갖추어 상주하겠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문서번호 : 2-1-4-14(1591, 2868a)

사안 : 會奏의 堂衙을 다시 열거하여 보냅니다(再行開送會奏堂衙).

날짜 : 光緒十六年十二月八日(1891년 1월 17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十二月初八日, 行禮部片稱：

昨准片稱：

會奏嗣後出使朝鮮酌撥津貼一摺, 定於本月初九日具奏. 前送堂衙, 有無出差等項事故, 務於初八日聲復過部.

等因. 本衙門現將堂衙再行開列, 片送貴部查照可也.

12월 8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어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에는 적절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會奏하는 奏摺은 이번 달 9일 상주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보냈던 堂衙 가운데 출장 등의 변동이 있는지 가능하면 8일 저희에게 답신해 주십시오.

본 아문에서는 堂衙을 재차 열거하여 귀 禮部에 片文으로 보내니 검토해 주십시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5) 문서번호 : 2-1-4-15(1592, 2868b)

사안 : 會奏의 날짜가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知照延期會奏).

날짜 : 光緒十六年十二月九日(1891년 1월 18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初九日, 禮部片稱：

所有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項下酌撥津貼一摺, 前定於初九日會奏. 今本部改於本月十壹日會奏, 相應片行貴衙門. 於是日一體會奏, 前送堂銜有無出差等項事故, 務於初十日午刻以前聲覆過部. 如不聲覆, 本部仍照前送堂銜繕摺具奏. 因用印不及, 徑行白片可也.

12월 9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片文을 보냈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바치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여비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상주하는 奏摺은 이전에 9일에 會奏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 禮部에서 이번 달 10일 會奏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응당 片文을 보내 貴 아문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날 함께 會奏하는데 이전에 보냈던 모든 堂銜 가운데 현재 출장 등의 변동이 있는지 10일 午刻 이전까지 가능하면 저희에게 답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답장이 없다면 저희는 즉시 그대로 이전에 보냈던 堂銜에 따라서 奏摺을 갖추어 상주하겠습니다. 직인을 찍을 여유가 없어서 (도장을 찍지 않은) 片文을 곧바로 보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6) 문서번호 : 2-1-4-16(1593, 2869a-2871b)

사안 : 사후 조선에 출사하는 경우 적절하게 헤아려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奏摺을 會奏하여 "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았으므로, 삼가 초록하여 알립니다(會奏嗣後出使朝鮮酌撥津貼一摺, 奉旨依議, 恭錄知照).

첨부문서 : 1.「禮部 등의 아문에서 會奏한 奏摺(禮部等衙門會奏摺)」: (1) 이후 조선으로 사신을 보낼 때는 定例에 따라 정해진 토산품 등의 물품은 이전과 같이 처리하는 것 외에, 正使·副使 및 수행원 등에게 선물로 주는 모든 은냥은 일괄 금지합니다(嗣後奉使朝鮮除例定土儀等物照舊外, 所有饋送正副使及隨員等銀兩概行禁革). (2) 사신으로 가는 대신들은 1인당 출사경비 항목에서 여비·포상금 등의 비용 2,000냥을 지급하며, 통역관은 1인당 보조금 500냥을 지급합니다(奉使大臣每員酌於出使經費項下撥給治裝, 犒賞等費貳千兩, 通官每員酌給津貼五百兩).

날짜 : 光緒十六年十二月十二日(1891년 1월 21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十二月十二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會奏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 由出使經費項下, 酌撥銀兩, 以資津貼一摺, 於光緒十六年十二月十一日奏. 本日奉旨：

依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欽此. 相應抄錄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遵照可也.

1. 照錄原奏

禮部等衙門謹奏. 為遵旨議奏事.

光緒十六年十一月十六日, 准軍機處片交軍機大臣面奉諭旨：

續昌等奏：

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王國餽送銀兩, 藉端苛派, 並請由出使經費項下, 酌撥使臣治裝、銀兩.

等語. 著該衙門議奏.

欽此. 同日又准軍機處片交軍機大臣面奉諭旨：

續昌等奏：

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謹慎, 請量加獎賞.

等語. 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 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欽遵鈔錄原奏片交前來. 查原奏內稱：38)

朝鮮國向來豫備天朝敕使, 常年攤派差徭, 即有敕需名目, 存儲待用. 每遇冊封、賜奠各典禮, 所存不敷, 行取之民間. 每次總派銀十數萬兩. 其實餽送正·副使銀兩等件, 計其單開, 每分約需銀數千兩, 修理房屋, 鋪陳一切, 統計所用亦不過數万兩. 且歷次使臣除例定禮物外, 其餘多有不受者, 乃該國仍舊攤派, 托詞敕需, 徒歸中飽. 竊查該國王餽送銀兩一節, 易滋流弊, 可否請旨諭飭該國王, 嗣後奉使大臣, 除例定土儀, 准其致送外, 所有致送銀兩, 概行禁革, 並請飭下該國王, 嚴行約束臣寮, 毋得藉端苛派. 抑更有請者, 向來奉使該國, 治備行裝、賞需一切所費, 實屬繁多. 嗣後奉使大臣力有未逮, 必致因陋就簡, 殊於體制有碍. 合無仰懇天恩, 嗣後奉使朝鮮大臣, 總理衙門於出使經費項下酌撥銀兩, 作為治裝、份賞犒之需, 俾資津貼?

等語. 禮部查例開：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使臣回京，該國王餽送宴金，除例應收受者，使臣不得於正禮外，多帶儀物，違者參奏.等語. 恭查雍正十三年奉上諭：

朝鮮感戴我朝之恩，虔修職貢，甚為恭敬. 凡大臣官員差往彼國者，向有餽送儀物舊例. 朕以厚往薄來為念,[39] 若令使臣照例收受，恐該國不免繁費，若概不收受，又恐該國王以使臣遠涉，缺餽賮之禮，有歉於心. 著此次詔使始，凡餽送白金、儀物等項，悉照舊例，裁減一半，永著為令.

欽此. 欽遵在案. 聖訓昭垂,[40] 久宜遵守. 惟近年來該國自遭喪亂，民生困苦，物力艱難情形，迥非昔比. 此次該國王母妃薨逝，告訃來京，即據使臣具呈，懇免遣使賜奠，當經臣部據情代奏，欽奉諭旨：

特派大員，改由北洋乘坐輪船，徑往該國，禮成仍由海道回京，以免該國陸路供億之繁.（等因）.

欽此. 仰見朝廷恩禮藩封，有加無已. 今侍郎續昌等，奉命前往祭奠，體察該處苛派情形，以餽送正·副使銀兩一節，易滋流弊，奏請概行禁革等語，自係為因時變通起見，臣等公同酌議，擬如該侍郎所奏，請旨飭下該國王，嗣後如有奉使大臣前往該國，除例定土儀等物，准其照舊致送外，所有餽送正·副使臣，以及隨往官員等銀兩，概免致送，以示體恤而杜流弊. 自奉旨禁革以後，該國王及奉使大臣，均不得擅行與受.

至奉使朝鮮該大臣治備行裝、賞需所費，寔屬繁多. 該侍郎等請，於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酌撥銀兩，作為治裝、賞犒，俾資津貼之處. 總理各國事務衙門查，該侍郎所稱："奉使該國，治備行裝、賞需，所費繁多，"自係寔在情形，應如所請，嗣後詔使前往朝鮮，擬每員津貼銀二千兩，由出使經費項下支用，以免賠累. 又侍郎續昌等片奏：

向來奉使朝鮮，禮部揀派六·七品通官二員隨往，該員等勞苦異常，回京並無陞階可保. 惟以該國所得之項為優差. 此次概行禁革，並無需索情事，可否量加獎賞，並擬嗣後一併酌給津貼，俾免賠累.

總理各國事務衙門查，此次禮部派出之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當差勤慎. 欽奉諭旨，每人賞銀四百兩，業經發給在案. 惟該通官等往返艱辛，別無獎敘，既應杜其弊端，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即當加以體恤, 擬請嗣後派出之員, 每人給予銀五百兩, 一併由出使經費項下撥發. 所有臣等遵議緣由, 是否有當, 伏乞皇上聖鑒. 此摺係禮部主稿, 會同總理各國事務衙門辦理. 再. 原摺係臣續昌條奏, 是以未經列銜, 合併聲明. 為此謹奏請旨.

12월 12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조선에 사신을 보낼 때 조선 국왕이 선물로 주는 은냥을 금지하고, 출사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은냥을 지급하여 보조금으로 삼도록 할 것을 청하는 奏摺은 광서 16년 12월 11일 上奏하였습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

응당 原奏를 초록하고 總理衙門에 알려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原奏의 초록

禮部 등 아문에서 삼가 주를 올립니다. 諭旨에 따라 논의하여 상주합니다.
광서 16년 11월 16일, 軍機處에서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받은 다음과 같은 諭旨를 片文으로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 이후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바치고, 이를 빌미로 백성에게 가혹하게 수탈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사신들의 여행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합니다.

---

38) 실제로 여기서 인용된 부분은 일부 생략되거나 단어가 바뀐 부분이 있다. 앞에 나온 (2) 문서번호 : 2-1-4-02(1574, 2842)를 참조.
39) 厚往薄來란『禮記 中庸』의 "朝聘以時, 厚往而薄来, 所以怀诸侯也"라는 구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천자(天子)가 제후(諸侯)에게 하사품은 후하게 보내고 공납은 적게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40) 昭垂는 명백하게 밝히거나 드러낸다는 뜻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당 衙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다시 상주하게 하라.

이상. 같은 날 재차 軍機處에서 軍機大臣이 직접 구두로 받은 다음과 같은 諭旨를 보내왔습니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需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上諭를 받들어 原奏와 片文을 초록하여 보내왔습니다. 살피건대, 原奏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에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勅使가 올 것을 대비하여 평년에 차요(差徭)를 할당하니, 바로 칙수(勅需)라는 명목으로 쌓아두어 쓰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매번 册封, 賜奠 등의 典禮가 있게 되면 쌓아둔 것이 부족하면 다시 민간에서 취합니다. 듣자 하니 매번 총액으로 銀 십수만 냥을 할당하여 거둔다고 합니다. 실제로 正使와 副使에게 바치는 은냥이나 선물 등은 그 목록에 열거된 내용을 계산해보면 1인당 약 銀 수천 냥이 필요하고, 칙사가 묵는 건물이나 침구를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쓰는 돈은 통틀어 수만 냥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지금껏 (조선에 파견된) 사신들은 定例에 따른 예물 이외에 그 나머지는 대부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여전히 이전처럼 할당하고 勅需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빼돌립니다. 저희가 살피건대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로 보내는 일은 쉽사리 폐단을 늘리므로, 諭旨를 내리셔서 조선 국왕이 이후 중국에서 보낸 칙사에게 定例에 따른 토산품은 보내 事大의 정성을 극진히 하도록 허가하는 것 외에는, 선물로 보내는 모든 은냥을 일괄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선 국왕에게 지시하셔서 신료들을 엄격히 통제하여 빌미를 만들어 가혹하게 거두지 못하도록 청합니다. 더구나 또 청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으로 가는 사신들이 행장을 꾸리거나 이들을 포상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실로 繁多합니다. 앞으로 사신으로 가는 대신들이 혹여나 힘에 부친다면 비용을 마련하는 일이 반드시 곤란해져서 특별히 體制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皇上의 은혜를 우러러 간청하오니, 앞으로 조선에 사신으로 가는 대신에게도 總理衙門에서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헤아려 은냥을 지급함으로써 여비와 포상 비용으로 삼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禮部에서 前例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신들이 京師로 돌아올 때 조선 국왕이 은냥을 선물하는데, 定例에 따라 응당 받아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사신들이 정규 예물 이외에 더 많은 儀物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탄핵 상주를 올리라.

공손히 살피건대 옹정 13년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습니다.

조선은 우리 조정의 은혜를 감격하며 받고, 경건히 공납을 바치는 것에 매우 공손하였다. 모든 고위 관원이 그 나라에 임무를 받아 파견되면 지금까지 예물을 선물하는 前例가 있었다. 나는 후하게 베풀고 적게 받는 것을 염두에 두니, 만일 사신이 前例에 따라 그대로 받게 한다면 조선은 큰 비용을 들까 우려하고, 만일 모두 받지 않도록 한다면 또한 사신이 먼 곳에서 오는데 대접하는 예가 부족하여 조선 국왕이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까 우려된다. 이번에 詔勅에 따라 조선에 가는 사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에서 선물하는 白金이나 예물 등은 모두 前例의 규모에 비추어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영원한 법령으로 삼도록 하라.

이상.

지금까지 이상의 上諭를 지켜왔습니다. 皇上의 교훈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니 오랫동안 마땅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래 조선은 재난을 당하고 민생은 어려우며 재정이 곤란한 상황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조선 국왕의 母妃(즉 趙大妃)가 사망하자 京師에 와서 訃告하였는데, 해당 사신은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 제전(祭奠)에 참여하는 것을 면제해달라고 간청하였고, 저희 禮部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이미 대신 상주하여,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고위 관원을 특파하되 (이전에 陸路로 칙사가 왕래하였던 것과는 달리) 北洋에서 輪船을 타고 곧장 조선으로 가고, 祭奠 의식이 끝나면 그대로 바닷길을 통해 京師로 돌아오도록 하여, 육로로 가서 조선이 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게 하라.

이상.

조정에서 藩封에 대하여 은혜로이 예우 해줌에 끝이 없음을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 侍郎 續昌 등이 명을 받아 祭奠에 참여하러 가면서, 조선에서 (이를 빌미로) 가혹하게 수탈하는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正使·副使에게 선물로 주는 은냥이 쉽사리 폐단을 일으키므로 모두 금지할 것을 주청하였는데, 이는 시세에 따라 前例를 변통하려는 뜻입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의하여, 해당 侍郎이 주청한 바와 같이 조선 국왕에게 지시를 내리셔서 이후 사신으로서 대신이 조선에 갈 때 定例에 따른 토산품 등의 예물은 이전처럼 보내는 것을 허용하는 것 외에, 正史·副使 및 수행 관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모든 은냥은 모두 보내지 않도록 하여 조선을 보살펴 주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이를 禁止하는 諭旨를 받게 된 후 조선 국왕이나 중국 사신은 모두 멋대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에 사신으로 가는 대신의 여비나 포상 비용의 경우 실로 繁多합니다. 해당 侍郎 등은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적절하게 은냥을 지급하여 여비와 포상 비용으로 삼아 보조해주자고 주청하였습니다. 總理衙門에서 해당 侍郎이 말한 바를 검토해보니,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데 여비와 포상에 드는 비용이 繁多하다"는 점은 확실히 사실이므로, 응당 (해당 侍郎이) 청한 바와 같이 이후 詔勅을 받아 조선으로 가는 사신들에게 1인당 보조금 은 2,000냥을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여 이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侍郎 續昌 등이 片奏에서 다음처럼 아뢰었습니다.

> 지금까지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때 禮部에서 6·7품 통역관 2명을 선발하여 수행하도록 보냈는데, 해당 인원들의 노고가 특별한데도 京師로 돌아와 추천하여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 없습니다. 오로지 조선에서의 소득 때문에 이것을 우대받는 임무로 간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모두 금지하였고, (조선에 가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도 없었으므로 적절하게 헤아려 포상해도 될지, 그리고 아울러 이후 이들에게 한꺼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지 않게 해 주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總理衙門에서 조사해보니, 이번에 禮部에서 파견한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은 업무 처리에 부지런하고 신중하였습니다. 그래서 諭旨를 받들어 각기 은 400냥의 포상금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통역관 등이 (조선에) 다녀올 때 고생스러웠지만 별도로 장려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이미 그 폐단을 없앴으니, 응당 더욱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후 파견된 관원들은 1인당 은 500냥을 지급하고 일괄적으로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출하고자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皇上의 上諭에 따라) 모여 논의한 모든 결과가 타당한지 皇上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이 奏摺은 禮部가 초안을 작성하고 總理衙門과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추가합니다. 原 奏摺은 續昌 등이 상주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가 職銜을 열거하지 않았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이에 삼가 주를 올려 諭旨를 청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 문서번호 : 2-1-4-17(1598, 2877b-2878a)

사안 : 조선에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에게 總理衙門에서 대신 지급한 포상금을 보내 상환합니다(解還墊發派朝鮮通官賞銀).

날짜 : 光緒十七年十二月十二日(1891년 3월 12일)

발신 : 江海關道 聶緝槼

수신 : 總理衙門

二月初三日, 江海關道聶緝槼申稱：[41]

光緒十六年十一月十八日, 奉兵部火票遞到憲臺衙門札：[42]

光緒十六年十月十六日, 由軍機處交出面奉諭旨：

續昌等奏：

此次奉使朝鮮禮部派出通官, 當差勤慎, 請量加獎賞.

等語. 六品通官豫和、七品通官恆霈, 著每人賞銀四百兩, 由總理衙門出使經費項下給發.

欽此. 欽遵傳知前來. 旋准禮部咨同前因. 查此項獎賞銀兩, 本衙門已於十月二十日如數墊發. 相應札行江海關道, 即於出使經費項下照數撥還, 以清款目.

等因. 到關. 奉此. 職道遵即在於收存出使經費項下, 動支庫平銀捌百兩,[43] 歸還憲臺衙門墊發前項獎賞之款. 查有京莊號商源豐潤,[44] 素稱誠實, 堪以飭令匯兌,[45] 赴京交納, 理合具批呈解. 仰祈憲臺俯賜鑒核, 飭收歸墊,[46] 印掣批廻,[47] 發交該號商, 齎回備案,[48] 實為公便. 為此備由呈, 乞照驗施行.[49] 須至呈者.[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計： 呈解奉提墊發派使朝鮮通官二員獎賞 庫平銀捌百兩正

41) 섭집규(聶緝槼. 1855~1911)는 湖南 衡山 출신으로서 자는 仲芳이다. 증국번(曾國藩)의 사위이기도 한데, 나중에 저명한 기업가가 되었다. 1890년 소송태도(蘇松太道)에 임명되었으며, 절강안찰사(浙江按察使), 강소포정사(江苏布政使), 호리강소순무(护理江苏巡抚), 안휘순무(安徽巡抚), 절강순무(浙江巡抚) 등을 지냈다. 소송태도 임직 당시 관상합판(官商合辦) 기업이던 화상방직신국(華商紡織新局)의 주식을 매입하여 1909년 독자 경영 방식의 항풍방직신국(恒豊紡織新局, 일명 恒豊紗廠)으로 전환하였다. '申稱'의 '申'은 말하다, 거듭하여 설명하거나, 설명하여 해석한다는 뜻이다.

42) 화표(火票)란 청대 긴급 공문을 대신 전달할 때 사용하던 증명서다. 역참(驛站. 驛傳)은 원래 兵部가 관할하였기에 역참을 통해 긴급 공문을 전달하려면 兵部의 증명서인 화표가 필요하였다.

43) 動支는 자금을 옮겨서 지출·지급한다는 뜻이다. 고평은(库平银)은 청대 국고수지(國库收支)에 사용하던 표준 화폐단위로 관은(关银)·관평냥(关平两)·관평은(关平银)·해관냥(海关两)이라고도 한다. 청조 중기 이후 해관(海关)에서 사용하던 일종의 장부기입용 화폐단위(虛银两이라고 한다)이다. 쉽게 말해 고평은은 즉 海關에서 수출·수입 관세를 거둘 때 사용하던 표준 銀兩(약 39그램 무게의 純銀으로 실제는 銀의 성분이 93% 남짓)이다. 청대에는 전국 통일의 표준이 없어 각지에서 실제 유통하던 銀兩의 성분, 무게, 명칭 등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일종의 통일적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44) 원풍윤(源豐潤)은 중국 근대의 저명한 기업가인 엄신후(嚴信厚, 1839~1907)가 상해에서 창설한 표호(票號)로서 당시 풍부한 자본력과 넓은 영업망, 높은 신용도로 유명하였다. 북경, 상해, 홍콩, 복주(福州)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갖추고 있었다.

45) 중국의 전통적 금융기관인 표호(票號)는 표장(票莊), 회표장(匯票莊), 회태장(匯兌莊)으로도 불리며 대부분은 산서(山西) 상인들이 개설하였다.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상인들이 거래를 위해 다른 지역에 송금하고자 할 때 표호에서 송금액에 해당하는 회표(匯票)를 발급하면 수령인이 이 회표를 해당 표호의 지점이나 지점과 관계가 있는 표호에 가서 기입된 금액을 수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금융기관을 통해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대신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태(匯兌)라고 한다. 당시 표호에 대한 세간의 신뢰도는 절대적이었으며, 표호는 공금을 보관, 운송하거나 대출을 시행하는 등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46) 歸墊은 여기서 대신 미리 지급해 준 것을 상환하는 자금을 가리킨다.

47) 印掣는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는 뜻이고, 비회(批廻)란 이미 모종의 문서나 물품·자금 등을 받았다는 증거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돌려보내는 문서, 즉 일종의 반송용 영수증, 수령확인문서다.

48) 齎回는 가지고 돌아온다는 뜻이고, 備案은 공문 서류철에 넣는다는 뜻이니 관청에 제출하여 보관한다는 뜻이다.

49) 驗은 驗文으로 詳文과 마찬가지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공문서(呈), 즉 上行文의 일종이다. 照驗施行은 그 말미에 사용하는 관용구다.

50) 須至呈者는 呈文, 즉 上行文의 말미에 써서 문서의 내용이 완결되었음을 알린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월 3일, 江海關道 聶緝槼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광서 16년 11월 18일, 兵部의 火票를 이용하여 전달한 總理衙門의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광서 16년 10월 16일, 軍機處에서 직접 구두로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아 보내왔다. 續昌 등이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이번에 조선에 사신으로 갈 때 禮部에서 파견하였던 통역관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부지런하고 신중하였기에 적절하게 장려하는 포상을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6품 통역관 豫和, 7품 통역관 恆霈에게 각각 은 400냥을 포상하고, 總理衙門의 出使經費 항목에서 지급하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가 전달되어 왔다. 곧바로 뒤이어 禮部로부터 같은 내용의 咨文을 받았다. 생각건대, 이 항목의 포상금은 본 아문에서 이미 10월 20일 액수대로 대신 지급하였다. 응당 江海關道에게 지시하니, 즉시 出使經費 항목에서 그 액수만큼 뽑아서 상환하여 그 항목을 청산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지시가 저희 江海)關에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따라 즉시 出使經費 항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경비 항목에서 庫平銀 800냥을 옮겨서 總理衙門에서 대신 미리 지급한 포상금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조사해보니 北京에도 지점이 있는 票號 源豐潤은 평소 믿을만하다고 하므로 이곳을 통해 자금을 兌換하여 京師에서 (總理衙門)에 납부하게 할 만합니다. 따라서 응당 반송용 수령확인 문서를 갖추어 올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總理衙門에서는 이를 검토하셔서 대신 지급한 상환 자금을 수령하고 확인 도장을 찍은 반송용 수령확인문서를 해당 표호에 넘겨줌으로써, 해당 票號가 가지고 돌아와 (江海關에서) 보존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실로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사유를 문서를 갖추어 올리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첨부 : 조선으로 파견한 통역관 2명에게 總理衙門에서 대신 지급한 포상금을 상환하기 위해 庫平銀 8백 냥을 올려보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 문서번호 : 2-1-4-18(1602, 2882b)

사안 : 통역관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상환하여, 액수만큼 수령하였습니다(撥還通官賞銀, 如數收訖).

날짜 : 光緒十七年十二月二五日(1891년 4월 3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江海關道 聶緝槼

二月二十五日, 給江海關道聶緝槼劄稱：

光緒十七年二月初三日, 據江海關道申稱：

前准劄開：

墊發奉使朝鮮通官獎賞庫平銀八百兩, 令於出使經費項下發還.

遵即照數動撥, 交號商源豐潤, 滙京交納, 申請核收.

等因. 前來. 本衙門已如數撣收訖. 除將原批盖印, 發交該商齎回外, 相應劄行該關道查照可也.

2월 25일, 江海關道 聶緝槼에게 다음과 같은 劄文을 보냈다.

광서 17년 2월 3일, 江海關道가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이전에 받은 劄文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신과 함께 조선에 간 통역관들에게 대신 지급한 포상금 庫平銀 800냥은 出使經費 항목에서 상환하라.

이에 따라 즉시 (대신 지급하신) 금액만큼 옮겨서 源豐潤 票號에 넘겨, 京師에서 대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납부하게 하였으니, 검토하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아문에서는 이미 그 금액만큼 수령을 완료하였다. 원래의 반송용 수령확인문서에 도장을 찍어 해당 票號號商에 넘겨서 가지고 돌아가도록 한 것 외에, 응당 해당 關道에게 劄文을 보내니 검토해보면 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기타
(其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타
(其他)

(1) 문서번호 : 2-1-5-01 (51, 60b-62a)

사안 : 조선 국왕이 咨文을 보내 진술하기를, 비적들이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니 길림장군에게 지시하시어 착실히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朝鮮國王咨陳匪類侵擾邊界, 請飭吉林將軍認眞詳查).[1]

날짜 : 同治六年三月八日(1867년 4월 12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同治帝

三月初八日, 本衙門奏稱：

為禮部據咨轉奏, 朝鮮國王臚陳與俄人交兵情形, 請旨飭查, 恭摺具陳, 仰祈聖鑒事.

1) 이와 관련된 자료는 김형종 편역,『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2~19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또 김형종 등 역,『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1』(동북아역사재단, 2012)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러시아인의 한인 개간 유인」및「월경한인의 체포 및 저지」에 많은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2) 해당 咨文의 원문은『同文彙考』4, 犯越 3에 수록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同治六年三月初一日，由軍機處交出禮部據咨轉奏，朝鮮國王臚陳與俄人交兵情形一摺，軍機大臣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欽遵(前來). 查朝鮮國王原咨內稱：[2]

同治五年十二月十八日子時，匪類十百為羣，來過三洞山邊，設伏我軍一齊放銃，滾戰二十里. 到江灘半冰處，賊黨亂流爭涉. 中丸撲地者，隨即舁歸，涉氷淹沒者亦多. 掳獲牛馬六十匹，釜子三十座，車子二十輛.

並稱：

近緣俄羅斯人迭來侵擾. 始焉立界牌,[3] 以示其無相踰越之意. 已又投書契，欲售其互為交易之計. 衣帶之隔，殆如無人戈鋋之尋.[4] 若將有事，情狀難測，憂虞非細，煩乞轉奏天陛,[5] 益嚴邊圍之厲禁，永杜匪類之竭來.

等因. 臣等查本年二月十四日，由軍機處交出禮部據咨轉奏，朝鮮國王來文內稱：

同治五年十月二十五六等日，有該國慶源府所管之河山鎮白顏村居民尹才官等九名，先後越江逃去. 三十日上國人數百為羣渡江而來，在逃諸人之妻孥財產、牛馬之留在本村者，盡為搬運. 村人金應哲等六名亦全家隨往. 村民防禦之際，為流丸被傷者三人. 江邊防守之幕，並被燒火三次.

又稱：

十一月二十日，異樣人十二名來到慶興府東門外. 一人以本國語音唱言：

俄羅斯將築室於界牌近處，恐貴府驚疑，我奉都統書，先來通知.

仍於當日渡江而去.

各等情. 當經臣等以事關邊徼，憑陵屬國，必須澈底根究. 謹將俄人歷年招引朝鮮人等，在吉心河開墾地畝及內地奸民張保汰暗攜地圖潛赴俄境，欲開銀穴各情，恭摺具陳請下吉林將軍查辦在案. 茲復據朝鮮國王來咨，以五年十二月十八日，匪類十百為羣，來過三洞山邊，設伏擊敗. 查與前次咨稱各節，核其時日相隔，不過月餘. 此次擊敗匪類是否即係前項人等仍蹈故轍，藉資搶掠，或係中國，擊敗馬賊逃竄之餘，抑或俄人有意尋衅，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為嘗試, 均未可知. 如係內地匪徒越境搶掠, 朝鮮自應殄此殘暴, 以靖邊陲. 若係俄人無端啟衅, 侵擾鄰邦, 朝鮮亦不能不用力抵禦. 惟朝鮮慶源府城, 與琿春隔江遙對. 而琿春以東, 即係俄界, 三處毗連, 一葦可渡. 邊防稍有疎虞, 宵小易於潛踪. 況朝鮮正當多事之秋. 北鄙尤關緊要. 該國自宜嚴飭該邊將吏加意關防. 而中國匪徒時越邊境, 頻陵屬國, 關係亦非淺鮮. 相應請旨飭下禮部, 咨照朝鮮國王確切查明.

此次越界匪類, 如係中國人民, 自應據實覆陳, 無所用其顧慮. 至於界牌近處, 俄人已未築有屋室. 界牌係在何國地方一併聲覆. 朝鮮文內既有"轉奏天陛, 益嚴邊禁"之語, 難保非實有中國人在內, 不過不敢顯為指斥. 在中國自應嚴慎邊防, 杜絕竄越, 並請飭下吉林將軍, 按照朝鮮國王前後來咨所稱各節, 逐細詳查, 據實覆奏. 事關邊徼, 斷不可稍涉含混. 並嚴飭巡江各卡官弁, 務須不分晝夜, 認真稽查, 以清疆域而弭衅端. 所有朝鮮國王臚陳與俄人交兵情形, 請旨飭查緣由, 理合恭摺具陳. 是否有當, 伏乞皇太后、皇上聖鑒訓示.

謹奏.

軍機大臣奉旨：

另有旨.

欽此.

---

3) 1860년 北京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에 이루어진 1861년의 '中俄興凱湖會議'에서 러시아와 청은 烏蘇里江口에서 豆滿江口에 이르는 吉林 東部의 邊界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 경계선 위에 8개의 界碑(Ⅰ·Ⅰ·K·Ⅱ·H·O·Ⅱ·T[J.I.K.L.N.O.P.T])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비록 청 측의 협조가 있었지만, 대부분 러시아 측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界碑는 모두 나무로 만든 것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썩거나 부서지거나 불에 타버렸고, 종이에 써서 붙인 글자가 씻겨나가는 등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본문에서 세웠다고 하는 界牌는 바로 두만강 하구에 세워진 界牌(土字界碑)에 대해서도 "두만강 왼쪽은 바다에서 20리를 넘지 않는 지점에 界牌 하나를 세우고 위에 러시아의 T문자를 쓴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海口)로부터 약 45리 되는 지점에 土字界碑를 세웠고, 이 점은 나중에 중국 측에서 吳大澂의 주도 아래 琿春 勘界와 嚴杵河會議(1886)를 통해 土字碑를 다시 세우고 부근의 黑頂子(우리측 기록으로는 羅鮮洞) 지역을 회수하는 근거가 되었다.

4) 戈鋋은 창(戈)과 작은 창(鋋)으로서 무기, 또는 전쟁을 의미한다.

5) 天陛는 天宮의 계단과 섬돌을 말하는데, 나아가 천상 궁궐, 제왕 궁전의 계단·섬돌, 즉 황제의 조정(朝廷)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월 8일 본 아문에서 다음과 같이 上奏하였다.

조선 국왕이 러시아인과 교전한 상황을 진술한 咨文을 받아 禮部에서 대신 상주하면서, 諭旨를 내려 조사해줄 것을 奏請하는 奏摺을 공손히 갖추어 아뢰오니 皇上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동치 6년 3월 1일, 禮部가 조선 국왕이 러시아인과 교전한 상황을 진술한 咨文에 근거하여 대신 上奏한 奏摺에 대하여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다고 전해왔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이상과 같은 諭旨가 전달되어 왔습니다.

살피건대, 조선 국왕은 원 咨文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치 5년 12월 18일 子時, 비적 1,000명이 무리를 이루어 三洞山 부근을 넘어왔습니다. 매복하였던 우리 군이 일제히 총을 쏘아, 20리에 걸쳐 혼전을 벌였습니다. 강가 모래톱의 절반 정도 얼음이 언 곳에 이르자 匪賊들은 어지러이 흩어지며 서로 건너려고 다투었습니다. 총을 맞고 땅에 쓰러진 자들도 즉시 다른 사람들이 둘러 메고 함께 돌아갔으며, 얼음을 밟고 건너려다 빠져 죽은 자 또한 많았습니다. 牛馬 60필, 가마솥 30개, 수레 20량을 포획하였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인들이 자주 침범하면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境界碑를 세워 서로 경계를 넘나들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書契를 보내 서로 교역을 하자는 계책을 쓰고 있습니다. 좁은 강을 사이에 두었으나 마치 사람들이 서로 무기를 찾는 일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앞으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우니 그 우려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번거롭더라도 황제께 대신 상주하여 변경의 금령을 더욱 엄히 하여 영원히 비적들이 왕래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總理衙門에서 조사해보니 2월 14일 軍機處에서 禮部가 조선 국왕의 (咨文)에 따라 대신 상주한 주접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동치 5년 10월 25, 26일 등에, 조선 慶源府 관할의 河山鎭 白顔村의 주민 尹才官 등 9명이

을 가리키기도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로 강을 건너 도주하였습니다. 30일, 중국인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강을 건너와서 도주한 사람들의 처자식, 財產과 牛馬 가운데 白顔村에 남겨져 있던 것들을 모두 운반해 갔습니다. 村民 金應哲 등 6명 또한 가족 모두 따라갔습니다. 村民들이 (이들을) 방어할 때 날아오는 탄알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강변에 방어를 위해 (설치한) 천막 또한 세 차례 불에 탔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11월 20일, 외국인[異樣人) 12명이 慶興府 동문 밖에 왔습니다. 1명이 조선어로 크게 말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앞으로 경계비 근처에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귀 府에서 놀라고 의심스러워 할 것 같아, 제가 交界官의 서신을 받아 가지고 와서 먼저 통지합니다.

그리고 당일로 강을 건너 돌아갔습니다.

저희 總理衙門은 이미 이 일이 邊境과 관련되고 屬國을 침범하는 일이기에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삼가 러시아인들이 여러 해 동안 조선인 등을 꾀어내 吉心河 지역에서 땅을 개간시키는 일과 內地의 奸民 張保汰가 몰래 지도를 가지고 러시아 경내로 잠입하여 銀鑛[銀穴]을 열려고 하였던 사정 등에 대하여 삼가 공손히 奏摺을 갖추어 吉林將軍에게 지시를 내려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주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조선 국왕이 보내온 咨文에서 동치 5년 12월 18일 비적 1,000명이 무리를 이루어 三洞山 부근을 넘어오자 매복하였다가 격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전에 咨文을 통해 알렸던 사정들과 시간을 따져보면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격퇴한 비적들이 이전 사건의 주동자들로서 그대로 전철을 답습하여 빌미로 삼아 약탈하였던 것인지, 혹 중국인으로서 격퇴하였던 馬賊들 가운데 도주한 잔당인지, 아니면 러시아인들이 고의로 분란을 일으키고자 먼저 떠보려고 하였던 것인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만약 內地의 비적들이 국경을 넘어 약탈한 것이라면 조선에서는 스스로 응당 이러한 잔폭한 무리를 섬멸하여 변경을 안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일 러시아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이웃 나라를 침범한 것이라면, 조선 또한 힘을 써서 방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선 慶源府城과 琿春은 강을 사이에 두고 멀찌감치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琿春 동쪽은 러시아 경계인지라 세 나라의 국경이 서로 연접하고 있는데 한 척의 거룻배로도 건널 수 있습니다. 변경 방비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다면 못된 무리가 쉽사리 종적을 감출 수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물며 조선은 현재 많은 일에 닥쳐 있는 시간이라, 북쪽 변경의 방비는 특히 중요합니다. 조선은 실로 마땅히 변경의 장수와 관리들에게 엄히 지시하여 더욱더 방어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비적들이 때때로 변경을 넘어가 누차 속국을 침략하니 관계되는 바가 또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응당 저희는 禮部에서 조선 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확실히 조사하여 밝히도록 지시하는 諭旨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경을 넘어간 비적들이 만일 중국인이라면 실로 응당 사실에 따라 답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꺼릴 일이 없습니다. 아울러 경계비 근처 러시아인들은 이미 건물을 지었는지, 境界碑가 어느 나라 지방에 있는지 함께 밝혀 답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의 咨文에 이미 "황상께 대신 상주하여 변경의 금령을 더욱 엄격히 해주십시오"라고 하였으므로 실제로 중국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우며, 단지 감히 이것을 드러내놓고 지적하지 않은 데 불과합니다. 중국에서는 실로 응당 변경 방어를 엄격히 하여 비적들이 조선에 몰래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고, 아울러 吉林將軍에게 지시하여 조선 국왕이 차례대로 보낸 咨文의 각각 내용에 따라 하나하나 상세히 조사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답장 상주를 하도록 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이 일은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결코 조금이라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강을 순찰하는 각 초소의 문·무 관원들에게 힘을 다해 반드시 밤낮을 가리지 말고 착실히 감찰하여 疆域을 분명히 하고 분쟁의 발단을 제거하는 데 힘쓰도록 엄히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국왕이 러시아인들과 전투를 벌인 모든 사정을 진술하고 諭旨를 내려 조사하도록 해 주실 것을 청한 연유에 대하여 응당 공손히 奏摺을 갖추어 아룁니다. 이런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皇太后, 皇上께서 살펴보시고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上諭를 받았다.

별도의 諭旨가 있을 것이다.

이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문서번호 : 2-1-5-02(90, 107b-109b)

사안 : 兩江總督이 조선 匪民을 조사하여 체포하는 일에 관한 답장을 비밀 咨文으로 보냅니다(密咨兩江總督咨覆訪拿朝鮮匪民事).

첨부문서 : 1.「兩江總督의 咨文(兩江總督咨文)」: 조선 匪民의 왕래가 일정치 않으므로 總理衙門에서 각국 公使에게 체포에 협조해 주도록 대신 照會를 보내주시기를 요청합니다(朝鮮匪民來去不定, 請轉總署照會各國公使協同緝捕).

날짜 : 同治七年八月二十日(1867년 10월 5일)

발신 : 禮部

수신 : 總理衙門

八月二十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准兩江總督曾咨稱：

據蘇松太道稟稱：

遵飭密訪, 朝鮮匪民來去無定.

等情. 合咨禮部, 轉咨總理各國事務衙門查核辦理.

等因. 前來. 相應抄錄該督原文, 密咨總理各國事務衙門查照可也.

1. 照錄原文.

兩江總督曾, 為咨明事.

據蘇松太道稟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本年七月初一日，奉札開：

六月二十五日，准禮部咨：

主客司案呈：

同治七年六月十四日，准總理各國事務衙門咨稱：

本衙門具奏朝鮮國近被洋船滋擾，先經籌辦一摺．於同治七年六月十三日，軍機大臣奉旨：

依議．

欽此．相應抄錄原奏，恭錄諭旨，密咨禮部，欽遵辦理．

等因．前來．除轉咨該國王外，相應抄錄總理各國事務衙門原奏，飛咨兩江總督，迅即遵奉諭旨，密飭所屬將朝鮮匪民七名嚴密訪挐，解送該國王懲辦，毋任聞風逃逸．事關欽奉，妥速辦理可也．

等因．並抄單．准此．合就抄單札道，即便遵照，在于上海附近購覓眼線，將朝鮮匪民崔喜一等七名嚴密緝挐，解送該國王懲辦，毋任聞風逃逸．勿違．

等因．奉經分札密訪松海防廳[6]、上海縣會捕局，[7] 暨會審委員陳丞福勳[8]、洋務委員胡令裕燕[9]、葛令繩孝，[10] 分股購覓眼線，將匪民崔喜一等，務獲解送．去後．嗣於七月初三日，奉撫憲札同前，由下道又經分札轉飭，並將遵辦緣由，具復在案．茲據該廳縣局委各員稟稱：

密訪得上海小東門外有外國教堂名曰：‘三德.’[11] 同治五年間，有洋人自朝鮮來滬，帶有朝鮮國人九名，同住該堂．此後來去無常，行踪甚秘．本年春間，聞該堂洋人同朝鮮國人二名，搭船前往朝鮮國，不便上岸，仍由原船回滬．至閏四月復同朝鮮人六名他去，所往何處，無從查詢．其在滬時，曾改穿中國服式，因言語不通，人莫能知其姓名．此外復加細訪，並無朝鮮人逗遛在滬．容仍不時探緝，遇有朝鮮人來，即盤詰確切，解送辦理．

等情．具稟前來．伏查本年五月間，職道訪有美國人秦鎮西，[12] 係美國繙譯秦右之子，[13] 久居上海，最喜生事．法國人非而恩，[14] 係向在朝鮮傳教之人，于本年三四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間，勾結華洋匪人，乘坐布國船隻，由滬前赴朝鮮，盜發該國王墳情事．當經照會法、布、美等國領事，令其查訊，並究出同往華人姓名，以憑飭拏嚴辦．嗣准法領事白來尼照復,[15] 為非而恩力辯其誣．且言船主、水手均屬無罪．布領事德登貴照復,[16] 以此案三人，均非所屬．惟前赴高麗之輪船，因張掛北德意記旗號，是以立在布國船薄，該船主、水手並不知此三人謀計，無從責罰．美總領事西華.[17] 則抄粘公堂會審情形.[18] 與五月下旬所呈新聞紙，語意相同，無非為開脫秦鎮西地步．惟昂不爾國領事欣臣復函內稱：[19]

查有該國人噯伯自高麗回來後,[20] 即經提訊，業將全案口供等，據遞送昂布爾大議事廳，按照所應得之罪辦理．

等語．且均未究出華人姓名，以致無從查辦．當其出往之時，有無朝鮮人相與煽惑勾結，亦不能悉其端倪．然以時考之，則與該國王原奏內稱："有異船一隻，停泊洪州牧外洋，登岸隳墳"之語，可以遙相印證．

今該廳縣等所訪朝鮮人出沒踪跡，似即係崔善一等無疑．職道復經察訪，聞前往上海三德教堂之朝鮮人，均于本年閏四月，附搭洋船前赴烟台．該處並無外國教堂，或僦屋居住，或又赴他處，均未可定．惟伊等既經歸教勢，必恃西人為護符，去來自若，難保不重到上海．其潛匿之處，亦必不出教堂、洋房之外．若非知照領事協力會拏，則難購線緝獲，各國領事必出頭阻撓．用將遵飭密訪及前次照會查辦緣由，稟祈鑒核，應否咨請禮部，轉咨總理衙門照會英、法、美三國公使，令其轉飭上海、烟台領事，會同地方官一體嚴拏解究，勿稍袒匿，或可就獲．其法領事白來尼，偶有入教之人，必致竭力庇護．倘非該國公使切使飭辦，更恐徒託空言，仍無實際．職道愚昧之見，是否之當，伏乞鈞裁．

等情．到本部堂．據此．當經批飭：

據稟已悉，候咨明禮部，轉咨總理衙門查核辦理．至該朝鮮匪民來去無定，如由烟台仍到上海，自可即在三德教堂等處，得其踪跡．仰仍分飭該聽縣局委各員，督線隨時嚴密跴緝．勿得意存諉懈．切切．仍候撫院批示．繳.[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等語. 印發在案. 相應咨明. 為此合咨禮部, 相煩查照, 希即轉咨總理衙門查核辦理. 望切施行.

---

6) 해방청(海防廳)은 연해 지방의 방어 업무를 위해 설치된 관청으로, 해방동지(海防同知) 또는 해방통판(海防通判)이 담당하였다. 전국적으로 해방동지는 총 14명(직예 1명, 봉천·산동·강소·복건 각각 2명, 절강 5명), 해방통판은 총 2명(복건·광동 각각 1명)이 설치되었다.

7) 상해 회포국(會捕局)은 1866년 상해도가 프랑스 조계에 설치한 기구로서 프랑스 조계로 도주한 중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8) 회심위원(會審委員)이란 1864년 5월, 상해도대(上海道臺) 응보시(應寶時)가 영국 부영사(副領事)와 함께 구성한 혼합 법정인 양경빈북수(洋涇浜北首) 이사아문(理事衙門)의 중국인 재판관(讞員)을 지칭한다. 양경빈북수 이사아문은 1869년 상해공공조계회심공해(上海公共租界會審公廨)가 정식 성립하면서 폐지되었다. 진복훈(陳福勳, 1810~?)은 절강 출신으로 1862년부터 상해 회방국(會防局), 기기국(機器局) 등에서 근무하였다.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강소순무(江蘇巡撫) 이홍장의 총애를 받기도 하였다. 1868년 8월, 양강총독(兩江總督) 증국번에 의해 양경빈북수 이사아문의 위원에 임명되어 중외 교섭사건을 전담하였다. 陳丞福勳은 陳福勳이 지방관의 보좌관, 또는 현승(縣丞)의 직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쓰이는 표현이다.

9) 양무국(洋務局)은 太平天國軍의 상해 위협 당시 영국·프랑스에 대한 알선 및 외국군과의 협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졌던 회방국(會防局)이 태평천국의 진압 이후 철폐된 후 각 지역의 대외 업무, 중외 교섭사건을 총괄하기 위해 상해도대(上海道臺) 아문에 건립한 기구이다. 양무위원은 양무국의 인원을 지칭한다. 호유연(胡裕燕)은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 단지 『광서청하현지(光緒清河縣志)』 26권의 수찬자(修纂者)로 검색이 되므로, 아마도 하북성(河北省) 청하현(清河縣) 출신으로 보인다. '胡令裕燕'은 胡裕燕이 지현 또는 동급의 직함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갈승효(葛繩孝, 1833~1909)는 절강 출신으로 1860년 이홍장의 막부에 들어가 단련(團練)을 조직하였고,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여 외국군의 통역을 담당하였다. 태평천국 진압 후 양무(洋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양무위원으로 중외교섭 사무를 처리하였다.

11) 1850년대 이후 천주교 선교회 단체들은 상해에 대표 사무소(帳房)를 설치하였는데, 이 중 파리외방傳教회가 설립하였던 사무소의 명칭이 삼덕당(三德堂)이다.

12) 프레드릭 젠킨스(Fredrich B. Jenkins. 秦鎭西)는 상해의 미국 총영사 통역으로서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 사건의 주도자 중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13) 벤자민 젠킨스(Benjamin Jenkins. ?~1871. 秦右)는 미국 감리회 소속 선교사로 1849년부터 상해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다. 1862년 이후 상해영사관 통역, 부총영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1871년 상해에서 사망하였다.

14) 페롱(Stanislas Féron. 非而恩)은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선교사로 병인박해 당시 상해로 겨우 탈출하였다. 이때 최선일 등 중국 거주 천주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페르트에게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해 부장품을 탈취하고, 이를 조선의 개항을 위한 대원군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 프랑스로 소환되었다가 인도로 전출되었다.

15) 브레니(Brenier de Montmornad. 1813~1894. 白來尼)는 프랑스 외교관으로 1864~1869년까지 프랑스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월 20일, 禮部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兩江總督 曾國藩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냈습니다.

蘇松太道[22]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조사하였는데 조선 匪民의 왕래가 일정치 않습니다.

마땅히 禮部에 咨文을 보내 總理衙門에 대신 咨文을 보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咨文을 받았으므로) 응당 兩江總督의 원문을 초록하여 總理衙門에 비밀 咨文으로 보내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해 총영사로 재직하였다. 1876~1879년까지 중국주재 프랑스 공사를 지냈다.

16) 德登貢은 테튼보른(A. Tettenborn)이라는 것 외에 인적 사항은 불명이다.

17) 시워드(George F. Seward. 1840~1910는 미국 외교관으로 1861~1876년까지 상해 주재 총영사를, 1876~1880년까지 중국주재 미국 공사를 지냈다.

18) 회심공해(會審公廨)는 동치 7년(1868), 상해도대(上海道台)와 英·美 등의 영사가 체결한 『양경빈설관회심장정(洋泾浜设官会审章程)』에 근거하여 1869년 영미조계(英美租界)에 설립되었다. 양경빈북수 이사아문 자리에 설치되었다. 또한 회심공당(会审公堂. Mixed Court)이라고도 하는데, 상해도대가 임명한 회심관(會審官)과 외방배심관(外方陪审官. 외국영사)이 공동으로 조계 내에서 영사재판권을 누리는 국가의 교민이 피고가 된 경우 이외의 모든 안건, 즉 조계 내의 중국인과 관련된 소송안건을 처리하였다.

19) 하인센(Rudolph Heinsen. ?~1868. 欣臣)은 함부르크 출신의 상인으로, 독일 Siemssen 사의 상해 지점장(1859~1868)이자 1861년부터 이듬해까지 상해 주재 독일(프로이센) 영사였다. 1864년에는 상해 공공조계 공부국(工部局) 이사로 활동하였다. 1867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상해 주재 초대 영사에 임명되었다.

20)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 1832~1903)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유태계 상인으로서 1851년 홍콩으로 건너와 상업에 종사하다가 1854년 상해로 이동하였다. 조선과의 무역 개통을 위해 1866년 3월과 8월,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다. 이후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프랑스인 선교사 페롱, 미국인 젠킨스, 그리고 조선인 천주교도들과 함께 1868년 5월 충청도 홍주(현재의 홍성)에 상륙하여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하여 상해로 철수하였다. 이후 함부르크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1) 繳은 문서를 받은 사람이 이 문서의 지시대로 처리한 다음 원 문서를 다시 반납하라는 지시이다.

22) 소송태도(蘇松太道)는 강소성(江蘇省)의 소주(蘇州)·송강(松江)·태창주(太倉州) 등지를 관할하는 도대(道臺)로서 정식 명칭은 분순소송태상등지병비도(分巡苏松太常等地兵备道)이다. 상해에 주재하였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Taotai of Shanghai'로서 아편전쟁 이후 외교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원문 초록

兩江總督 曾國藩이 咨文으로서 알립니다.

蘇松太道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6월 25일 禮部의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다.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동치 7년 6월 14일, 總理衙門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냈습니다.

본 아문은 조선이 근래 입은 西洋船의 소요에 대해 우선 이미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奏摺을 상주하였고, 동치 7년 6월 13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논의한 대로 하라.

이상.

마땅히 원 奏摺을 초록하고 諭旨를 삼가 기록하여 禮部에 비밀리에 咨文으로 보내 지시에 따라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咨文을 總理衙門이) 보내왔습니다. 조선 국왕에게 咨文을 전달하는 외에, 마땅히 總理衙門의 원 奏摺을 초록하여 兩江總督에게 신속하게 咨文으로 보내 즉시 諭旨를 받들어 신속히 소속 관원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朝鮮의 匪民 7명을 엄밀히 조사·체포하고 조선 국왕에게 移送하여 처벌하도록 하게 하되, (그들이) 풍문을 듣고 제멋대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諭旨를 받든 일이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禮部로부터) 초록한 명단도 받았다. 마땅히 초록한 명단을 蘇松太道에게 보내니 즉각 지시에 따라 上海 부근에서 정탐꾼을 사서 조선 匪民 崔喜一 등 7명을 엄밀히 체포하여 조선 국왕에게 移送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그들이) 풍문을 듣고 제멋대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시를) 어기지 말라.

이러한 (兩江總督의 지시를 받아 蘇松太道는) 이미 松海防廳, 上海縣 會捕局, 會審委員 陳福勳, 洋務委員 胡裕燕과 葛繩孝에게 각각 지시하여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하여, 조를 나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정탐꾼을 사서 匪民 崔喜一 등을 체포하고 이송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7월 3일, 江蘇巡撫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받아, 제가 이미 다시 각각 지시하였고, 아울러 그에 따라 처리한 경과에 대해 답장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海防廳, 上海縣 會捕局 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上海 小東門 바깥에 三德이라는 외국 교회가 있습니다. 동치 5년 서양인이 조선에서 上海로 오면서 조선인 9명을 데리고 와서 해당 교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후 이들의 왕래가 일정치 않고 행적이 심히 비밀스러웠습니다. 듣기에 올봄 해당 교회의 서양인이 조선인 2명과 함께 배를 타고 조선으로 갔으나 상륙할 수 없어서 다시 원래 타고 갔던 배로 上海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윤4월에 재차 조선인 6명과 다른 곳으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쫓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上海에 있을 때 일찍부터 중국 복식으로 갈아입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도 그 성명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 외에도 다시 더욱 상세히 조사하였으나, 조선인이 上海에 머무른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처럼 불시에 탐문·체포하겠으며 上海에 온 조선인을 만나면 즉시 확실하게 철저히 추궁하여 移送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생각건대, 올해 5월 본 上海道臺가 조사하였던 미국인 젠킨스(Fredrich B. Jenkins)는 미국인 통역관 젠킨스(Benjamin Jenkins)의 아들로 오랫동안 上海에 거주하였으며 일 벌이기를 아주 좋아하였습니다. 프랑스인 페롱(Stanislas Féron)은 지금까지 조선에서 선교를 한 사람으로 올해 3·4월 사이 중국인·서양인 비도와 결탁하여 프로이센[布國] 선박을 타고 상해에서 조선으로 가서, 조선 국왕의 (조상) 무덤을 도굴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미 프랑스, 프로이센, 미국 領事에게 조회를 보내 관련자를 심문하고 아울러 함께 (조선에) 간 중국인의 성명을 밝혀내서 엄히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 영사 브레니(Brenier de Montmornad)가 답장 조회를 보내 페롱이 모함을 당한 것이라 강변하였습니다. 또한 선주와 선원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프로이센 영사 테튼보른(A. Tettenborn)도 답장 조회를 보내, 이 사안에 (연루된) 3명 모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선으로 향한 윤선은 북독일연방(北德意記)의 깃발을 내걸었으므로 프로이센 선박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만, 해당 선박의 선주나 선원은 결코 이들 3인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총영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워드(George F. Seward)는 회심공당(會審公堂)에서의 공동재판(會審) 상황을 초록하여 첨부해 보냈는데, 그 내용은 5월 하순에 올린 신문 보도와 내용이 같으며, 이것은 젠킨스의 혐의를 벗겨 주기 위한 발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함부르크 영사 하인센(Rudolph Heinsen)이 다음과 같이 답장으로 알려왔습니다.

> 우리 국민인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가 조선에서 돌아온 후 즉시 끌어다가 심문하였고, 이미 사안 전체와 관련된 구두 진술 등을 함부르크 大議事廳으로 보내, 그가 저지른 죄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장에서 모두 관련된 중국인의 성명을 밝혀내지 못하였으므로, 조사하여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 서로 꼬드겨서 결탁한 조선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고려해보면, 조선 국왕의 원 奏摺에서 "異樣船 1척이 洪州牧 外洋에 정박한 뒤 상륙하여 분묘를 파헤쳤다"는 말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나마 증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해당 海防廳, 上海縣 등에서 조사한 조선인의 출몰 종적이 아마도 崔善一 일행임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상황을 조사해보니, 상해 三德 교회로 갔던 조선인들이 모두 올해 윤4월 서양 선박을 타고 烟台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烟台에는 외국인 교회가 전혀 없으므로 혹 거기에서 집을 빌려 거주하는지, 혹 다른 곳으로 갔는지 모두 종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미 敎勢에 귀의하여 반드시 서양인들을 호신부로 믿고 태연히 왕래할 것이므로 다시 上海로 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숨은 곳 또한 반드시 교회나 서양인의 가옥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領事들에게 照會를 보내 함께 협력하여 함께 체포하지 않는다면 정탐꾼을 고용하여 체포하기 어려울 것이고, 각국 領事들은 반드시 얼굴을 들이밀고 이를 방해할 것입니다.

이에 지시를 받들어 비밀리에 조사한 내용과 이전에 받은 照會를 처리한 상황을 보고하오니 살펴보시고 禮部에 咨文으로 요청하여 總理衙門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 공사에게 照會를 보내 그들이 上海, 烟台의 領事로 하여금 지방관과 함께 엄밀히 체포하고 이송·처벌하도록 하되, 조금도 庇護하지 않게 한다면 혹시 체포할 수도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프랑스 영사 브레니는 入敎한 사람이 있다면 필시 힘을 다해 庇護하려 할 것입니다. 만일 그 공사가 절실히 지시하여 처리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헛된 공언에만 의지하여 여전히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우매한 의견이 타당한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판단해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이러한 보고가 (본 兩江總督에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보고는 이미 모두 보았다. 禮部에 咨文으로 알리고 禮部에서 總理衙門에 대신 咨文을 보내 검토·처리하기를 기다리라. 조선 匪民들의 왕래가 일정치 않지만 만일 烟台에서 다시 上海로 왔다면 즉시 三德 교회 등에서 그 종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전처럼 해당 海防廳, 上海縣 會捕局의 각 위원에게 지시하여 정탐꾼을 감독하여 수시로 엄밀히 수색·체포하도록 하되, 조금도 책임을 미루거나 나태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절실히 시행하라. 그대로 巡撫의 批示를 기다리라. (이 지시공문은 다시) 반납하라.

이상의 지시를 이미 職印을 찍어 내려보냈습니다. 마땅히 이를 禮部에 咨文으로 알려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살펴보시고 總理衙門에 대신 咨文을 전달하여 검토·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절실하게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문서번호 : 2-1-5-03(91, 110)

사안 : 각국 공사들에게 照會를 보내 조선 비민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일이 누설되어 그들이 몰래 멀리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응당 이전처럼 兩江總督과 山東巡撫가 地方官들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체포하도록 할 것을 청합니다(照會各使助捕朝鮮匪民, 轉恐事洩, 暗令遠□, 仍應請江督東撫密飭地方官緝拿).

날짜 : 同治七年九月一日(1867년 10월 16일)

발신 : 總理衙門

수신 : 禮部

九月初一日, 行禮部文稱：

同治七年八月二十日, 准貴部咨稱：

兩江總督曾咨：

據蘇松太道稟稱：

遵飭密訪, 朝鮮匪民來去無定.

等情. 合咨禮部轉咨總理衙門查核辦理.

相應抄錄該督原文, 密咨總理各國事務衙門查照.

等因. 前來. 本衙門查抄單內開：

上海東門外, 有外國教堂名曰三德. 有洋人帶朝鮮國人, 同住該堂. 來去無常, 行蹤甚秘. 人訪聞三德教堂之朝鮮人, 均於本年閏四月附搭洋船, 前赴烟台. 伊等恃西人為護符, 去來自若, 難保不重到上海. 應請禮部轉咨總理衙門, 照會英、法、美三國公使, 令各轉飭上海、烟台領事, 會同地方官一體嚴拏.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等語. 查朝鮮奸民勾串洋人, 潛赴伊國, 發墳滋事, 該國王籲求中國代為挐解, 自應由中國地方官購線密訪嚴挐. 若遽照會外國使臣, 或恐從中庇護, 暗令遠□轉, 致無從蹤跡矣. 既據兩江總督咨覆貴部, 應由貴部咨行兩江總督、山東巡撫, 密飭各該地方官, 購線嚴緝務獲. 相應咨覆貴部查照辦理可也.

9월 1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동치 7년 8월 20일, 귀 禮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兩江總督 曾國藩이 다음과 같은 咨文을 보냈습니다.

蘇松太道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라 비밀리에 조사하였는데, 조선 匪民의 왕래가 일정치 않습니다.

응당 禮部에 咨文을 보내 總理衙門에 대신 咨文을 보내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해당 總督의 원 咨文을 초록하여 總理衙門에 비밀 咨文으로 보내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아문에서 초록해보낸 문서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上海 東門 바깥에 三德이라는 외국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서양인이 조선인을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들의 왕래가 일정치 않고 행적이 심히 비밀스러웠습니다. 사람을 보내 조사해보니 三德 교회의 조선인들은 모두 올해 윤4월에 외국 선박을 타고 烟台로 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서양인을 호신부로 삼고 태연히 왕래하므로 다시 上海로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응당 禮部에 청하여 總理衙門에 咨文을 보내 영국, 프랑스, 미국 3국 공사에게 照會를 보내 각각 上海, 烟台 領事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그들이 지방관과 함께 조선인들을 일체 엄히 체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조선 奸民이 서양인과 결탁하여 몰래 조선에 가서 분묘를 파헤친 사건을 일으켜, 조선 국왕은 중국이 대신 범인을 체포하여 이송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므로, 실로 응당 중국 지방관이 정탐꾼을 사서 몰래 조사하고 엄히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황급히 외국 공사들에게 照會를 보낸다면, 혹시 그들이 중간에서 庇護하여 몰래 그들을 멀리 도주시키면 도리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 종적을 쫓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兩江總督이 귀 禮部에 답장 咨文을 보냈으므로, 귀 禮部에서 兩江總督, 山東巡撫에게 咨文을 보내 그곳 지방관들에게 몰래 지시하여 정탐꾼을 사서 엄격히 힘을 다해 체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응당 귀 禮部에 답장 咨文을 보내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문서번호 : 2-1-5-04(274, 332a)

사안 : 禮部에서 咨文에 근거해 대신 상주한 奏摺에 대해 삼가 諭旨를 초록하여 알립니다(禮部據咨轉奏一摺, 恭錄諭旨知照).

날짜 : 光緒二年九月十五日(1876년 10월 31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九月十五日, 軍機處交出本日禮部奏, 據咨轉奏一摺, 軍機大臣面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原摺單, 知照貴衙門欽遵可也.

9월 15일, 軍機處에서 오늘 禮部에서 咨文에 따라 대신 상주한 奏摺에 대하여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諭旨를 직접 구두로 받았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응당 원 奏摺 및 첨부문서를 초록하여 貴 아문에 알려 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문서번호 : 2-1-5-05(275, 332b)

사안 : 조선에서 중국·영국 사이에 발생한 교섭 사건 소식을 전해 듣고 의혹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朝鮮傳聞中英發生交涉事件, 不勝疑慮).
날짜 : 光緒二年九月十五日(1876년 10월 31일)
발신 : 軍機處
수신 : 總理衙門

九月十五日, 軍機處交出禮部奏摺稱：

准盛京禮部送到朝鮮國王咨文一件. 臣等公同閱看, 係因前有英國交涉事件. 現已明奉諭旨辦結, 中外相安. 該國想未知悉, 傳聞疑慮, 飛咨馳報. 臣等不敢壅於上聞. 謹抄錄原咨, 恭呈御覽. 為此謹密奏聞.

9월 15일, 軍機處에서 禮部에서 상주한 다음과 같은 奏摺을 교부하였다.

盛京禮部에서 보내온 조선 국왕의 咨文 1건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니 이전에 영국과의 교섭 사건이 있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이미 분명히 諭旨를 받들어 처리가 완료되었고, 중외가 서로 평안합니다. 조선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전해 들은 말로 의혹과 우려가 생겨 시급히 咨文을 보내 알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히 황상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원 咨文을 초록하여 공손히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에 삼가 비밀리에 상주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문서번호 : 2-1-5-06(276, 332b)

사안 : 중국·영국 사이의 교섭이 이미 처리 완료되어 중외가 서로 평안합니다. 조선이 전해 들은 말로 인해 듣고 놀라고 우려하고 있으니 즉시 답장 咨文 보내기를 청합니다(中英交涉業已辦結, 中外相安. 朝鮮傳聞驚慮各情, 卽請咨覆).

날짜 : 光緒二年九月十七日(1876년 11월 2일)

발신 : 總署

수신 : 禮部

九月十七日, 行禮部文稱：

光緒二年九月十五日, 准軍機處抄交禮部, 據咨轉奏一摺. 旋准貴衙門咨送原奏一件, 並朝鮮國原咨. 等因. 前來. 本衙門查原咨內稱：

講修官趙寅熙呈稱[23]：

據日本使臣傳聞, 英國方尋事於中國, 不知衅端有無, 不勝驚慮.

等語. 茲奉諭旨：

該衙門知道.

欽此. 本衙門遵查, 前與英國有交涉事件, 已於本年七月三十日, 明奉諭旨辦結. 從此中外相安, 並無別有尋衅之事. 與貴衙門原奏之意相符. 茲准該國王咨稱, 傳聞驚慮各情, 足徵相關念切. 應由貴衙門, 即將前項緣由, 轉行咨覆該國王知悉. 為此咨行貴衙門查照辦理可也.

23) 강수관(講修官)은 고종(高宗) 때 외국과의 수교(修交)·통상(通商) 등에 관한 조약(條約)의 체결을 맡아하던 임시 관직, 또는 그 관리를 말한다. 조인희(趙寅熙. ?~?)는 자가 사의(士義), 호가 양재(暘齋)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월 1일 禮部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냈다.

光緖 2년 9월 15일, 軍機處에서 禮部가 咨文에 따라 대신 상주한 奏摺 1건을 보내왔습니다. 곧이어 貴 아문에서 咨文으로 보낸 원 奏摺 1건 및 조선 국왕의 원 咨文을 받았습니다. 본 아문에서 원 咨文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講修官 趙寅熙가 아뢰기를, 일본 使臣으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영국이 바야흐로 중국에서 일을 벌이고자 한다는데, 분쟁의 실마리가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놀라움과 우려를 떨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았습니다.

해당 아문에 알리라.

이상.

본 아문에서 지시에 따라 살펴보니, 이전에 영국과의 교섭 사건이 있었지만, 올해 7월 30일 분명히 諭旨를 받들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중외가 서로 평안하며 결코 별다른 분쟁은 없습니다. 貴 아문의 원 奏摺에서 아뢴 뜻과 부합합니다. 지금 조선 국왕의 咨文에서 전해 들은 말로 인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중국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간절한 관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응당 貴 아문에서 앞의 경위를 조선 국왕에게 대신 답장 咨文으로 보내 모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貴 아문에 咨文을 보내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본관은 양주(楊州)로 대사간, 이조참판, 경기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1876년 6월 5일 일본 이사관(理事官)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제물포에 도착하자 당시 행호군으로서 강수관(講修官)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그와의 접촉과정에서 선박의 항세(港稅) 및 화물 수출입의 관세를 면제하는 실책을 범하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인 타협을 보아 7월 5일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및 무역규칙을 체결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문서번호 : 2-1-5-07(1188, 2178a-2179a)

사안 : 간사한 무리가 러시아의 보호를 요구하는 문서를 날조하였음을 아뢰고, 특별히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표합니다(奏陳奸細捏造求俄保護文憑, 申謝特垂矜恕之恩).[24]

날짜 : 光緒十二年十一月十一日(1886년 12월 6일)

발신 : 조선 국왕

수신 : 總理衙門

十一月十一日, 朝鮮國王文稱：

朝鮮國王, 為恭伸謝悃事.

光緒十二年九月二十一日, 承准禮部咨. 節該.[25]

主客司案呈：

所有朝鮮國王遣官齎到咨文, 抄錄轉奏一摺, 於光緒十二年八月二十九日具奏, 九月

24) 이것은 시기로 보아 제2차 한·러 밀약에 관련된 문건으로 보인다. 제1차 한·러 밀약이 좌절된 이후 淸의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증대되고 袁世凱의 권한이 커지자 조선 내에서는 이에 저항하여 다시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었다. 袁世凱와 동시에 서울에 부임한 베베르(K. I. Veber) 대리공사가 궁정을 자주 출입하면서 閔妃 계열 및 친러파와 긴밀히 접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에의 접근 움직임에 대해 1886년 8월 13일에 袁世凱는 '러시아의 개입을 호소한 고종의 밀서'라는 것을 이홍장에게 전보로 보고하였다. 그 문서는 영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베베르 공사에게 보낸 고종의 서한으로서 민영익(閔泳翊)을 통해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홍장이 주청 러시아 공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조회하자,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러 밀약은 사실무근이며 그러한 고종의 밀서를 접수한 사실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8월 16일). 이홍장은 러시아 측의 해명을 받은 뒤 이 사건을 일단락하였지만, 고종은 이러한 밀서가 날조된 것임을 중국에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 문서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25) 절해(節該)는 보통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복을 피해 생략되거나 요약된 형태임을 나타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初一日，准軍機大臣字寄,[26] 奉上諭：[27]

禮部奏. 朝鮮國王遣官齎咨赴部，懇請代奏，抄咨呈覽一摺. 察核咨內所稱："去月忽有奸細捏造文憑"一事，此必樂禍之徒，為構間之計，應永遠作為廢紙. 現已飭令外署，將此意照會各國公使. 仍鉤核奸細，鋤除亂萌. 並於天朝恩庇覆載,[28] 披瀝詳陳，情詞肫懇. 朝鮮恪守侯度二百餘年，罔有攜貳. 頻歲以來，內憂不靖，外患相尋，均經天朝派兵飛渡，護持彈壓，危而後安. 該國戴恩戴德，斷不應生變計，自外生成. 此次文憑一節，如果實有其事，朝廷定即興師問罪. 今既據查明，實係小人捏造. 一聞此事，舉朝惶悚，具見真心服事之概，深堪嘉許. 惟自來立國之道，全在君臣同德，內政肅清. 雖有小人，無從造言作偽. 我朝優待屬藩，視同一體. 朝鮮密邇幾輔，尤與內地行省無異. 民情之向背，政治之得失，一一難逃洞鑒，而整軍經武，剔蠹除奸，尤屬休戚相關，不容膜視. 嗣後該國王務當屏斥邪佞，親近賢臣，矢恪恭翼戴之實心，為長治久安之至計. 庶幾永靖疆圍，克保宗祧，用副中朝奠安藩服、有加無已之殷懷. 於該國王有厚望焉. 著禮部傳諭該國王知之.

欽此. 遵旨寄信前來. 等因. 到部. 相應恭錄知照朝鮮國王欽遵可也.

等因.（欽此）.[29] 竊念小邦恪守侯度，罔有間焉. 驟聞奸細文憑以來，舉懷惶懼，莫有攸措. 乃蒙皇上恲幪涵育之澤，亦維貴王公諸大臣周旋保全之惠，特垂矜諒，免許明辨，德至厚也，恩莫大焉. 感戴銜結，不容名言. 至伏承訓謨洋洋，敕諭申申，敢不書紳銘[30]，為修身之戒？謹擬前期使行奉表伸謝. 為此先行咨覆，煩乞貴王公諸大臣照驗轉奏施行.

---

26) 軍機處의 軍機大臣이 기밀 사건에 대하여 황제를 대신해 특정 관료나 관청에 전달하는 상유인 기신상유(寄信上諭)의 경우, 첫머리에 자기(字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7) 해당 상유는『淸德宗實錄』12년 9월 1일 기사에 보인다.

28) 복대(覆載)란 덮어주고 떠받쳐 준다는 뜻으로 황제의 은덕을 의미한다.

29) '欽此'는 아마도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중국 공문서의 형식대로라면 '准此'가 보다 적절한 용어다.

30) 신명(紳銘)이란 서신명폐(書紳銘肺)의 줄임말로 어떠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허리띠에 써 놓고 가슴에 깊이 새겨두는 것을 의미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월 11일, 조선 국왕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다.

조선 국왕이 감사하는 진심을 공손히 아룁니다.
광서 12년 9월 21일, 禮部로부터 다음과 같은 咨文을 받았습니다. (생략).
主客司에서 다음과 같은 기안 문서를 올렸습니다.
조선 국왕이 자문전달관을 파견하여 보내온 咨文을 초록하여 대신 상주한 奏摺 1건은 광서 12년 8월 29일 상주하였고, 9월 1일 軍機大臣이 다음과 같은 寄信上諭(字寄)를 받아 보내왔습니다.
禮部에서 조선 국왕이 자문전달관을 파견하여 禮部에 咨文을 보내 대신 상주해 줄 것을 간청하자, 咨文을 초록하여 올린 奏摺을 상주하였다. 咨文에서 말한 "지난달 홀연히 간사한 무리가 문서를 날조하였습니다"라는 사안을 보면, 이는 필시 재앙을 즐기는 무리가 이간시키기 위해 짠 계획으로 응당 영원히 廢紙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미 (조선의) 外署에 (국왕이) 지시를 내려 이 뜻을 각국 公使에게 照會로 알리도록 하였다. 또 여전히 간사한 무리를 조사하고 추궁하여 분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은혜로운 비호와 은덕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였으니, 그 감정과 용어가 성실하고 간절하였다. 조선은 諸侯의 법도를 지킨 지 200여 년이 되었고, 두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다. 근래 여러 해 동안 내우외환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으나, 모두 중국에서 군대를 보내 신속히 건너가도록 하여 보호하고 진압하여 위태로움을 안정으로 바꾸었다. 조선은 중국의 은덕을 감사히 받들고 있어서 결코 딴마음을 품었을 리 없고, 밖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문서의 문제가 과연 사실이라면 조정에서는 즉시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미 조사하여 밝혀진 것처럼 실제로는 小人의 날조였다. 일단 이 일을 알게 되자 조선의 모든 사람이 황송해하며 진심으로 섬기려는 풍모를 보였으니 깊이 嘉納할 만하다.
다만 원래 立國의 길은 모두 군신이 함께 덕을 베풀고 內政을 엄히 숙정하는 데 달려 있다. 그렇다면 비록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말을 꾸며낼 방법이 없다. 우리 청조는 屬藩을 우대하여 한 몸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경사 지역과 가까워, 특히 내지의 行省과 다를 것이 없다. 민정(民情)의 향배와 정치의 득실 모두 하나하나 우리가 꿰뚫어 보는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군대를 정돈하고 간악한 무리를 없애는 것은 특히 국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안위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니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이후 조선 국왕은 마땅히 간사한 近臣을 제거하고 현명한 신하를 가까이하면서 맹세코 삼가 중국을 공손히 받드는 진심을 다듬어, 이를 장구하고 편안한 통치를 위한 지극한 계획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변경이 영원히 안정되어 종사를 지킬 수 있고, 중국에서 번복을 안정시키고 끊임없이 은근하게 품어주려는 은덕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국왕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禮部에서 조선 국왕에게 이 上諭를 전달하여 알리라.

(이러한 上諭를 軍機大臣이) 본 禮部에 보내왔습니다. 응당 공손히 초록하여 알리오니 조선 국왕은 이를 준행하도록 하십시오.

(조선 국왕이 생각해보니) 조선은 제후의 법도를 지킴에 있어서 조금도 틈이 없었습니다. 간사한 무리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돌연히 알게 된 이래 모두 황송하고 두려운 마음을 품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황상께서 내려주신 庇護하고 길러주시는 은혜와 귀王公大臣들께서 주선하여 보전해 주려는 혜택을 받게 되어, 특별히 긍휼하게 양해하여 주시고 명백하게 변명하는 일을 면제해 주셨으니, 그 덕이 지극히 두텁고 은혜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감격하여 결초보은하려는 마음은 어떠한 아름다운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없이 풍부한 가르침과 거듭된 지시를 엎드려 받았으니, 어찌 감히 허리띠에 쓰고 가슴에 새겨 수신(修身)을 위한 훈계로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前期 使行에게 表文을 받들고 가게 하여 감사함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선 먼저 답장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더라도 귀王公大臣들께서 검토하여 대신 상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찾아보기

|ㄱ|

葛繩孝 540
甲申議和 208
江蘇巡撫 541
江西巡撫 德馨 270, 274, 280
姜進熙 337, 383, 384, 403
강해관(도) 178, 506, 523, 524
康熙帝 128
巨文島 203
境界碑 532, 534
京師 88, 89, 220, 224, 228, 241, 243, 520
京城 438
慶源府 532, 533
慶裕 283
慶興府 533
高麗와 영국의 조약(조영조약) 152, 155, 156
공동감계 111
공문 체제 183
龔福姑 274, 275, 276
工部 156
工部局章程 156
龔照瑗 505
관세(關稅) 156, 161, 277
廣東水師提督 93
劖通 175
交隣司 77
具德秀 78
구로다 기요타카 353
國書 451, 452
軍械所 51, 93, 135
군기대신(軍機大臣) 36, 88, 90, 100, 103, 109, 110, 112, 167, 169, 240, 476, 482, 485, 517, 518, 540, 547
군기처(軍機處) 66, 83, 84, 87, 95, 99, 106, 108, 126, 144, 145, 146, 147, 166, 167, 169, 170, 237, 238, 262, 265, 269, 281, 283, 346, 347, 475, 476, 477, 478, 480, 482, 485, 486, 488, 491, 506, 517, 518, 523, 532, 547, 548, 550
軍亂 110
기계(무기) 구매 43, 50, 53, 54, 55, 82
기계(軍器) 제조 및 학습 36, 43, 50, 52, 55, 63, 81, 82, 84, 88, 89, 91, 113
기계 학습 및 제조와 연병 37, 53
機器 81, 83, 84, 88, 101, 126
기기국(機器局) 38, 51, 52, 105, 128
岐元 68, 69, 71, 72
길림장군(吉林將軍) 38, 529, 53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金嘉鎭 174, 175, 181, 182, 194, 340, 342, 344, 351, 352, 353, 433
金景遂 78
金宏集 77, 213
金九鉉 413
金良默 174, 175
金陵機器局 132, 134, 137
金晩植 143, 145
金明均 105
金炳國 77
金炳德 77
金炳始 213, 399
金輔 77
金奭準 99
金勝均 78
金玉均 76, 343
金月潭 225
金允植 82, 83, 84, 87, 88, 89, 95, 99, 101, 102, 105, 172, 212, 213, 401
金應哲 533
金周至 284, 286

| ㄴ |

나가사키 76
羅承五 277
낙안현 275
南宮檍 432
南路 400
南路電綫 399
南廷哲 493, 500, 501, 502, 503
南昌 277
내무부 420
內署 412, 414

| ㄷ |

다이(William M. Dye) 396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143, 145
唐紹儀 451, 452, 454, 456, 458, 461, 463, 465
大沽口 132, 134, 138
德源 41
데니(Owen N. Deny) 211, 213, 391, 396
덴비 公使 226, 242, 307, 308
島夷 176
도쿄 73, 75, 76, 182, 390
東藩 127
東邊道 284, 285, 286
동삼성(東三省) 38, 129
同治帝 529
동해(凍害) 126, 204
頭等公使 360
두만강[圖們江] 38
杜牧 129

| ㄹ |

러시아 해군제독 레소프스키(Lessovski) 38, 75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 76
류큐(琉球) 문제 73, 75, 278

| ㅁ |

馬建常 160
馬建忠 203
만국공법(萬國公法) 233, 360, 427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41
묄렌도르프(穆麟德) 163, 165, 168
무기(軍器) 제조 81, 82, 84, 87, 91, 11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무비(武備) 강구(학습) 25, 28, 31, 36, 37, 40, 50, 61, 64, 65, 66, 68, 71, 83, 84, 87, 120, 126, 128, 129
무역장정(貿易章程) 111, 278
미국 外部 309, 348, 360
미국 전권사신 76
미국 (주조선) 공사 딘스모어(Hugh A. Dinsmore, 丹時謨) 188, 189, 190, 215, 216, 217, 231, 232, 233, 235, 236, 401
미국 해군제독 38
美國公使 덴비 226, 242, 307, 308
미국과의 조약 190, 203
閔鎌鎬 77
閔妃 175, 398
閔商鎬 445
閔泳商 493, 500, 501, 502, 503
閔泳韶 418
민영익(閔泳翊) 176, 211, 213, 399, 400, 432
민영준(閔泳駿) 174, 175, 180, 181, 182, 194, 342
閔泳渙 398, 415, 416, 417
閔應植 213, 398
閔種默 76, 413, 414, 452, 453
閔致庠 78

| ㅂ |

박씨 274, 275, 276, 277
樸永善 77
朴泳鈺 90
朴泳孝 141, 142, 143, 144, 145, 146, 165, 166, 168
朴定陽 190, 191, 218, 221, 227, 229, 239, 266, 268, 295, 297, 300, 301, 302, 303, 308, 309, 310, 311, 319, 321, 322, 323, 325, 329, 330, 336, 337, 344, 346, 347, 354, 358, 359, 360, 362, 364, 365, 366, 370, 371, 376, 377, 379, 380, 381, 383, 384, 385, 386, 388, 389, 390, 391, 397, 399, 400, 402, 403, 404, 405, 412, 413, 414, 415, 417, 419, 421, 426, 432, 435, 437, 438, 440, 442, 443, 444, 445, 454, 456, 457, 458, 460, 461, 462, 464, 465
박제순(朴齊純) 426, 427, 428, 432, 433
潘駿德 102, 105
白文彬 114
白樂論 90
白顔村 533
蕃國 37
藩邦 51
藩服 38, 50, 100, 102, 103, 110, 220, 229, 254, 260, 265, 361, 479
藩封 109, 128, 277, 519
베베르(Karl I. Veber) 401
辨理公使 253, 259
邊錫運 127
卞實第 447
卞元圭(卞元奎) 39, 41, 43, 50, 52, 54, 78, 88, 89, 90, 116
別入侍 398
兵馬節度使 414
兵部 470, 523
保定(省城) 83, 87, 91, 99, 269, 348
봉천(奉天) 38, 52
봉천부윤 285
봉천장군(奉天將軍) 69, 72
부산(釜山) 66, 68, 156, 178
釜山海關 400
북경 168, 438, 523
북양대신(北洋大臣) 李鴻章 25, 27, 31, 36, 43, 50, 61, 62, 65, 66, 8, 69, 71, 81, 82, 91, 92, 93, 104, 105, 111, 112, 113, 115, 116, 118, 119, 124, 130, 131, 132, 133, 134, 136, 137, 138, 142, 150, 152, 158, 159, 160, 164, 171, 1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73, 174, 177, 178, 180, 181, 183, 184, 186, 187, 188, 189, 192, 193, 195, 196, 202, 206, 208, 211, 212, 215, 216, 218, 219, 221, 222, 223, 224, 231, 232, 235, 236, 244, 245, 246, 247, 248, 249, 256, 258, 269,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7, 299, 301, 302, 303, 306, 318, 326, 328, 336, 337, 338, 339, 340, 342, 345, 346, 347, 350, 351, 352, 354, 357, 364, 365, 367, 368, 369, 370, 371, 375, 378, 384, 386, 388, 391, 395, 402, 403, 405, 411, 422, 423, 426, 429, 431, 440, 442, 448, 449, 451, 454, 456, 460, 461, 462, 463, 464, 467, 468, 471, 494
북양(대신)아문(北洋衙門) 54, 55, 79, 186, 438
브레니(Brenier de Montmornad) 541
블라디보스토크(海蔘崴) 38

| ㅅ |

사바틴(Afanasy I. Seredin-Sabatin) 399
사절의 體制(使節體制) 244, 249, 326, 429, 440
山東巡撫 544, 546
살르벨르(M. Salebelle) 399
三端 418, 419, 422, 423, 426, 431, 433, 445, 449, 451
三德(교회) 541, 542, 543, 545
三洞山 532, 533
三等公使(3등 공사. 三等使) 252, 254, 258, 259, 265, 418, 423, 426, 427
上國 109
上國의 體制 426, 427, 428
商民水陸貿易章程 112
上屬體制 419
上海(縣) 396, 541, 542, 545
上海縣 會捕局 541, 543
徐光範 143, 145
署(理)天津海關道 80, 225
署北洋大臣 93, 101, 105, 112, 114, 158
徐相雨 162, 163, 164, 165, 166, 168, 181
徐壽朋 361
徐承祖 173, 174, 175
瑞璋 274
聶緝槼 521, 523, 524
盛京禮部 142, 145, 164, 168, 278, 284, 293, 548
盛京將軍 68, 69, 71, 72, 79, 284
成岐運 225
蘇松太道 539, 540, 545
邵友濂 153, 154, 158
蘇秦 175
속국(屬國) 233, 348, 435, 438, 533
속방(屬邦) 183, 184, 191, 195, 215, 216, 217, 220, 223, 231, 235, 242, 243, 245, 277, 295, 307, 308, 501
屬邦分內(에서 응당 행해야 할) 體制 255, 261, 268
屬邦事例 262, 266
屬邦體制 148, 150, 191, 196, 202, 209, 220, 229, 238, 241, 255, 256, 260, 267, 297
屬藩 458, 463, 553
續定朝鮮商民未領執照潛往貿易游歷章程 279
續昌 476, 478, 482, 485, 486, 488, 499, 501, 502, 503, 517, 518, 519, 520, 523
宋慶 438
宋景和 114
松海防廳 540
壽祺 225
水陸貿易章程 277
수분하(綏芬河) 38
水師 120, 124, 126
水師學堂 128, 129
수신사(修信使) 141, 142, 143, 144, 145, 146, 16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66, 168
수출세 156
崇禮 499, 501, 502, 503
슈펠트(蕭佛爾. 薛斐爾) 38, 203
習德盛 276
시시도[宍戶] 공사 73, 75
시워드(George F. Seward) 542
新建親軍 102
新建縣 277
申報 438
申正熙 77
沈舜澤 195, 203

| ㅇ |

樂皆生 276
樂壽蓮 274, 275, 276
樂安縣 270, 279, 280
安東縣 52
알렌(Horace N. Allen, 阿蘭, 安連) 190
兩江總督 535, 540, 544, 546
兩廣總督 278
楊勝華 276
楊花鎭 156
魚允中 79, 80, 109, 114
漁採章程 449, 452
에도[江戶] 41
黎庶昌 340, 342, 351, 353, 435, 437
旅順 128, 438, 439
연병(練兵) 37, 39, 43, 51. 53, 54, 55, 58, 82, 87, 88, 92, 93
烟台 545
延煦 168
營口 53
영국·독일과의 조약 152, 158, 159
另約三端(세 가지 조항. 三端. 津約三端) 255, 256, 260, 266, 267, 300, 301, 308, 309, 311, 314, 319, 320, 321, 322, 324, 325, 329, 330, 344, 348, 358, 359, 361, 362, 364, 365, 378, 418, 419, 422, 423, 426, 427, 431, 433, 445, 449, 451
영선사 101
영평부(永平府) 25, 28, 30, 37
예부(禮部) 8, 36, 41, 51, 54, 55, 63, 87, 108, 102, 111, 112, 141, 142, 145, 146, 164, 166, 167, 168, 169, 170, 172, 181, 186, 187, 194, 196, 208, 219, 220, 221, 225, 227, 228, 238, 239, 240, 241, 243, 252, 258, 266, 283, 285, 286, 288, 293, 295, 334, 347, 468, 469, 470, 471, 481, 482,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7, 518, 519, 520, 523, 532, 535, 539, 540,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3, 554
豫和 481, 485, 487, 490, 491, 506, 518, 520, 523
吳長慶 93, 95, 99, 102, 103, 106, 108, 110, 118, 119
오쿠마 시게노부 353
오페르트(Ernst Jakob Oppert) 542
玉山縣 278
王德均 51, 102, 105
王得功 102
王永發 132, 135, 138
倭館 41
外蕃 53
外部(外署. 外務衙門) 226, 242, 254, 259, 265, 268, 300, 301, 307, 308, 310, 319, 329, 330, 347, 348, 358, 359, 360, 362, 366, 379, 381, 404, 428, 444, 553
요코하마 76
용산(龍山) 178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워싱턴 337
元逢春 276
원산(元山) 66, 68, 156, 178, 400
元昔運 78
袁世凱 102, 118, 119, 120, 124, 125, 127, 130, 131, 132, 134, 135, 137, 138,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4, 189, 190, 195, 196, 202, 203, 211, 212, 215, 216, 217, 220, 223, 229, 231, 232, 235, 236, 251, 252, 254, 255, 261, 265, 266, 267, 268, 297, 303, 306, 313, 314, 318, 326, 328, 340, 342, 352, 354, 357, 361, 362, 365, 370, 371, 375, 386, 388, 389, 391, 396, 397, 403, 405, 412, 418, 423, 426, 427, 428, 431, 442, 445, 446, 451, 457, 458, 481, 493, 494, 499, 501, 503
源豐潤 523, 524
윌리스(George O. Willes, 威厘士) 157
劉祥喝 275
劉瑞芬 348
柳秀完 77
劉汝翼 178
柳鐘翕 90
劉含芳 51
柳協用 77
俞承卿 286
유지개(游智開) 25, 28, 29, 37, 40, 51, 62
陸路 128
陸路通商條約 203
尹奎燮 219, 224, 225, 227, 228, 230, 241
尹滋悳 77
尹才官 532
尹泰駿 77, 90
威海 128
恩承 145
의주 52, 53
李嘉樂 274
李根培 90
釐金 277
李起初 225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75, 162, 168
李東仁 76, 78
李冕相 124, 126, 129
李命宰 77
李商在 337, 432
李善得(李善德. Charles W. Legendre) 437, 438, 449, 451, 452
李性天 225
異樣船 542
李完用 337
이용숙(李容肅) 25, 28, 29, 62, 63, 64
李容泰 313, 322, 324
이유원(李裕元) 25, 28, 30, 31, 37, 40, 50, 53, 64
李應浚 82, 84, 87, 89
李暐 77
李裕承 493, 494, 500, 504
李應憲 78
李載德 99
李濟馬 78
李祖淵 77
李 中堂大人(李鴻章) 29, 40, 41, 62, 80, 125, 131, 135, 155, 190, 203, 204, 205, 206, 208, 210, 213, 214, 225, 252, 267, 300, 307, 308, 309, 310, 311, 319, 320, 321, 329, 330, 344, 358, 363, 388, 396, 403, 404, 415, 417, 420, 431, 434, 438, 442, 443, 456, 458, 499
李重夏 78
李采淵 337
李最應 77
이토 히로부미 353
李夏榮 337, 383, 384, 403
李昰應 99
李鶴圭 435, 43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李憲用 337
이홍장(李鴻章) 30, 50, 63, 72, 83, 87, 99, 108, 120, 127, 129, 192, 220, 229, 238, 254, 265, 348, 423
仁川 156, 178
仁川分署 135
일본 국서 68
任慶準 78

| ㅈ |

字林西字報 156
咨文 225
自主 233
張士珩 131, 132, 134, 135, 137
張樹聲 99, 101, 114
張信漢 279
長淵 53
張泳悅 284, 285
張蔭桓 296, 297, 300, 306, 308, 309, 310, 311, 321, 332, 333, 336, 337, 347, 350, 354, 358, 362, 365, 376, 377, 378, 383, 384, 403, 426, 443, 445
全權公使 205, 207, 252, 253, 254, 258, 259, 260, 266, 267
전권대신(全權大臣) 208, 213, 214, 221, 229, 233, 320, 321, 324, 325, 337
典圜局 398
浙江巡撫 278
呈文 185, 223, 300, 301
鄭範朝 77
鄭秉夏 427, 428, 444, 445, 457
丁汝昌 203
丁日昌 27, 37
정조여(鄭藻如) 43, 51, 53, 54, 62, 72
製造局 51
濟州 129, 451
젠킨스(Benjamin Jenkins) 541
操江(輪船. 兵輪) 132, 135, 138, 178
趙甯夏 99
趙大妃 412, 413, 421, 479, 519
趙龍鎬 82, 84, 87, 88
趙秉式 252, 258, 267, 329, 330, 358
趙秉稷 377, 401
조선 국왕 36, 39, 41, 53, 55, 63, 83, 84, 87, 88, 95,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8, 109, 110, 111, 112, 117, 118, 119, 120, 124, 125, 126, 130, 132, 135, 136, 137, 138, 141, 142, 143, 144, 145, 146, 148, 150, 152, 161, 162, 164, 165, 166, 168, 169, 172, 175, 182, 183, 184, 190, 191, 192, 193, 213, 218, 227, 228, 232, 239, 240, 241, 244, 245, 252, 254, 256, 258, 260, 262, 265, 266, 267, 269, 280, 284, 285, 308, 310, 320, 321, 334, 335, 347, 358, 293, 294, 397, 398, 399, 401, 405, 413, 417, 451, 471, 475, 476, 479, 507, 509, 511, 513, 517, 518, 519, 532, 533, 534, 550, 551, 553, 554
조선 내무부 195, 204, 205
조선 外署 252, 265, 297, 302, 303, 311, 313, 314, 322, 324, 325, 326, 340, 371, 380, 381, 386, 390, 400, 426, 451
조선 의정부 195, 196, 206, 207, 209
조선 인삼 상인(박씨) 270, 274, 275, 279
조선 정부 및 外署(외무아문) 297, 300, 307, 308, 319, 342, 359, 362, 366, 370, 376, 386, 388, 389, 403, 465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277, 279
朝鮮電報總局 448
趙臣熙 218, 221, 227, 229, 239, 266, 268, 295, 309, 313, 314, 319, 320, 321, 322, 323, 3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25, 391, 397, 400, 416, 429, 431, 432, 433, 434
趙寅熙 550
趙忠熙 77
주일본공사 75
주필조회(硃筆照會) 185
駐美公使 266, 376, 377
周馥 109, 114
朱先民 102
駐天津 商務委員(天津 주재 조선 고위 관원) 125, 270, 280, 413, 427
硃筆照會 223, 300, 301
中國 106, 108, 109, 277, 279
中堂大人 366, 413, 418, 500
曾國藩 278, 279, 439, 539, 540, 545
陳同書 447
真靈君 398
陳福勳 540
津約三端(津議三端. 另約三端) 361, 364, 365

| ㅊ |

參贊(參贊官) 190, 194, 254, 255, 260, 265, 266, 267, 313, 314, 321, 322, 323, 324, 325, 342, 344, 348, 352, 359
蔡賢植 432
천진(天津) 25, 38, 39, 50, 52, 61, 62, 64, 65, 68, 71, 80, 81, 82, 83, 87, 89, 91, 101, 113, 120, 124, 126, 128, 175, 220, 229, 241, 253, 254, 259, 260
天津軍械所 110, 131
天津器機(製造)局 36, 88, 89, 94, 114, 116
天津 機器·製造 兩局(各局) 95, 99, 102, 105
천진해관도(天津海關道) 51, 53, 109, 115, 177, 178
天津行營製造局 115
詹長龍 276
체제(體制) 149, 151, 221, 229, 233, 236, 237, 265, 268, 303, 313, 416, 346, 419, 477, 479, 518
총리아문(總理衙門. 總署) 25, 28, 31, 36, 43, 61, 65, 66, 68, 71, 73, 77, 79, 81, 84, 88, 91, 92, 95, 102, 104, 106, 108, 111, 112, 113, 115, 118, 127, 130, 133, 136, 141, 142, 143, 144, 146, 148, 150, 152, 153, 158, 159, 160, 162, 164, 165, 166, 169, 170, 171, 173, 177, 180, 181, 182, 185, 186, 187, 188, 192, 194, 196, 208, 211, 215, 218, 220, 221, 222, 223, 224, 226, 227, 229, 231, 235, 237, 239, 241, 242, 244, 246, 247, 248, 249, 256, 262, 266, 269, 270, 280, 281,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6, 297, 303, 307, 308, 326, 329, 330, 332, 333, 334, 335, 336, 338, 339, 340, 345, 346, 347, 348, 350, 351, 354, 358, 364, 367, 368, 369, 371, 383, 384, 386, 391, 402, 405, 422, 423, 429, 435, 440, 447, 448, 449, 454, 458, 460, 461, 462, 463, 464, 465, 467, 468, 470, 475, 477, 479, 480,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4, 505, 506, 507, 509, 511, 512, 513, 514, 517, 518, 520, 521, 523, 524, 529, 532, 533, 535, 539, 540, 542, 543, 544, 545, 547, 548, 549, 551
崔善一 542
崔性學 90
崔喜一 541
출사경비(出使經費) 항목 178, 476, 477, 479, 483, 485, 487, 488, 489, 491, 505, 506, 507, 509, 514, 517, 518, 520, 523
出使大臣 73, 296, 303
勅使 478, 518
親軍 119
親政 171, 17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沈履澤 500, 501, 503
沈舜澤 78, 135, 195, 204, 213, 214, 220, 228, 413, 442, 463, 465, 493

| ㅌ |

卓挺植 76
테튼보른(A. Tettenborn) 541
톤세[船鈔] 156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 統署) 73, 77, 190, 223, 382
通商章程 452
通化縣 284

| ㅍ |

파스크[巴夏禮] 157
페롱(Stanislas Féron) 541
平壤 204
포시예트(摩闊崴) 38
포크 211, 212, 213
프랑스 해군제독 콜베르(瞿貝賚) 38
플랑시(Collin de Plancy) 401
피어스(Aillerd I. Pierce) 399
피터대제 76

| ㅎ |

河山鎭 白顔村 532
하여장(何如璋) 73, 75
하인센(Rudolph Heinsen) 542
夏宗鎤 274
何增珠 102
韓龍源 78
漢城(한성) 135, 206, 210, 342, 400
한양 52, 156
咸鏡道 284
咸悅縣 433
함첩(銜帖) 185, 223, 300, 301
銜帖·呈文 344
恆霈 481, 483, 485, 487, 490, 491, 506, 518, 520, 523
해로(海路) 53, 54, 61, 63, 71, 80
海防廳 541, 542, 543
許其光 51
虛無黨 76
刑部 286
惠山鎭 284, 286
胡裕燕 540
혼춘(琿春) 38, 533
洪鈞 348, 426, 428
洪在羲 415
黃毓森 284
會同四譯館 241
회심공당(會審公堂) 542
懷仁縣 284, 286
欽差大臣 185, 245, 255, 260, 261, 265, 267, 309, 320, 322, 500, 501, 502, 503, 504
僖順王(肅宗) 128
힐리어(Walter C. Hillier) 43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 자료총서 41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5

초판 1쇄 인쇄 2020년 5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5월 27일

역　　김형종·조병식
펴 낸 이　김도형
펴 낸 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9
홈페이지　www.nahf.or.kr
제작·인쇄　경인문화사

© 동북아역사재단, 2020

ISBN 978-89-6187-537-0 94910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시스템(http://kolis-net.nl.go.k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 CIP2020020110)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